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369호
2016. 9. 8.(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6-1841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
제2016-1842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

◈ 고 시

제2016-271호 도시계획시설(공원)명칭 제정 고시 ····· 6
제2016-272호 수요자 맞춤형(연극인 전용) 2호 공공임대주택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고시 ····· 6
제2016-273호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 8
제2016-274호 도시계획시설(장충단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43
제2016-275호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44
제2016-277호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52
제2016-27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57
제2016-279호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60
제2016-280호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74
제2016-281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177
제2016-282호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185
제2016-283호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1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88
제2016-284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 304
제2016-285호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신이문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 ····· 304
제2016-287호 대조 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392
제2016-288호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00

◈ 공 고

제2016-1775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 408
제2016-1776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 408

제2016-1802호 2016년도 제15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 409
제2016-180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411
제2016-1811호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 412
제2016-1820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412
제2016-1824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414
제2016-1825호 설계업·감리업 등록 공고 ····· 415
제2016-1828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 415
제2016-1832호 종합공사시공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 416
제2016-1833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416
제2016-1839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 421
제2016-1846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 422
제2016-1847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425
제2016-1848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열람공고 ····· 426
제2016-1857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광장)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 427
제2016-1859호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 430

◈ 구 고 시

제2016-95호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종로구) ····· 431
제2016-8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조성] 실시계획 인가(변경)고시(노원구) ····· 452
제2016-77호 도시관리계획(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은평구) ····· 458
제2016-11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변경(경미한사항)인가 고시(마포구) ····· 459
제2016-7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동작구) ····· 460
제2016-13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강동구) ····· 462

◈ 구 공 고

제2016-624호 도시관리계획(한남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용산구) ····· 465
제2016-101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강서구) ····· 467
제2016-1085호 도시계획시설(꿩고개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강서구) ····· 471
제2016-108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구로구) ····· 473
제2016-108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 473
제2016-126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영등포구) ··· 475

제2016-1044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서초구) ····· 479
제2016-1048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서초구) ····· 481

◈ 사업소고시

제2016-18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483
제2016-18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483

◈ 기 타

제2016-319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484
제2016-32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484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41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행정수요 증대 분야 인력 재배치 및 직무특성을 고려한 직급 조정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공무원 총 정원 변경 없이, 정원의 직급·직렬 조정을 통해 행정수요 증대 분야 인력 보강 및 직무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2133-6732, FAX : 2133-0822, E-mail : jspark3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42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립대학교 학생 지원 및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 조정
2. 주요내용
   가. 심리 상담 및 양성평등 관련 상담 수행으로 학생과 내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학생상담센터'의 정규기구화
   나. 신규 정보시스템 개발수요 증가로 부서 간 조정 등 전산정보원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부원장 설치 및 분장사무 구체화
   다. 학교 내 타 부설연구소와의 명칭 일원화를 위한 양자정보처리연구단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2133-6732, FAX : 2133-0822, E-mail : jspark3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1호

도시계획시설(공원)명칭 제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등포구 관내 신규 조성된 공원에 대하여 부시장 방침(행정과- 110325호, 1995.3.20)에 의거 그 명칭을 제정하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명칭 제정내역

연번	구 분	위 치	규모(㎡)	제정 공원명칭	비고(기존명칭)
1	어린이 공원	은평구 녹번동 17-5	5,153.3	양천리누리터어린이공원	녹번1-3지구 어린이공원
2	소공원	영등포구 당산동4가 80-6외 1	1,642.7	새말소공원	SK소공원
3	〃	영등포구 당산동5가 9-3 일대	1,500	당산나루소공원	당서1,2,3공원
4	〃	영등포구 당산동4가 1-4 일대	715	이음소공원	이음공원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02-2133-2038) 및 은평구 공원녹지과(☎02-351-8008), 영등포구 푸른도시과 (☎02-2670-3579)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2호

수요자 맞춤형(연극인 전용) 2호 공공임대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서울특별시는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수요자 맞춤형(연극인전용) 2호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 수요자 맞춤형(연극인 전용) 2호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2. 사업주체
   ○ 성 명 : SH공사 사장 변창흠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86-12번지
4. 사업기간 :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65) 및 에스에이치공사 공동체주택사업부(전화번호 : 02-3410-738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요자 맞춤형(연극인 전용) 공공임대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 colspan="6">사 업 승 인 내 역</th><th>비 고</th></tr>
<tr><td colspan="3">① 대 지 위 치</td><td colspan="6">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86-12번지</td><td rowspan="11"></td></tr>
<tr><td colspan="3">② 대 지 면 적(㎡)</td><td colspan="6">315.00</td></tr>
<tr><td colspan="3">③ 건 축 면 적(㎡)</td><td colspan="6">143.12</td></tr>
<tr><td colspan="3">④ 연 면 적 (㎡)</td><td colspan="6">523.01</td></tr>
<tr><td colspan="3">⑤ 건 폐 율(%)</td><td colspan="6">45.43</td></tr>
<tr><td colspan="3">⑥ 용 적 률(%)</td><td colspan="6">145.6</td></tr>
<tr><td rowspan="3">⑦ 주택 규모</td><td colspan="2">동수 및 층수</td><td colspan="6">1동, 지하1층, 지상5층</td></tr>
<tr><td rowspan="2">주택 형별</td><td>국민임대</td><td colspan="6">전용 16㎡ : 10세대
전용 32㎡ : 4세대</td></tr>
<tr><td>계</td><td colspan="6">총 14세대</td></tr>
<tr><td colspan="3">⑧ 사 업 기 간</td><td colspan="6">2016. 9월 ~ 2017. 3월</td></tr>
<tr><td rowspan="2">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td><td colspan="2">기타집회장
(대본리딩룸,
공용세탁실)</td><td colspan="6">64.37㎡</td></tr>
<tr><td colspan="2">기타집회장
(커뮤니티 룸)</td><td colspan="6">49.38㎡</td></tr>
<tr><td rowspan="3">⑪ 단위 세대 면적</td><td colspan="2">구분</td><td>세대수</td><td>전용</td><td>주거공용</td><td>공급면적</td><td>기타공용</td><td>계약면적</td></tr>
<tr><td rowspan="2">국민임대</td><td>16형</td><td>10</td><td>15.74</td><td>7.00</td><td>22.74</td><td>6.32</td><td>29.06</td></tr>
<tr><td>32형</td><td>4</td><td>31.48</td><td>13.99</td><td>45.47</td><td>12.64</td><td>58.11</td></tr>
</tabl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3호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88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서울특별시 신림선 경전철 민간 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서울특별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남서울 경전철(주)
   ○ 대표자 : 강 태 구
   ○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51, 6층(신대방동, 롯데타워)
3. 사업의 목적
   ○ 기존 도시철도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친환경 대중 교통체계 수립
   ○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 도로교통 혼잡완화 및 친환경적 시스템도입으로 도시환경개선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
   ○ 위치 : 여의도(샛강역)~대방역(국철)~보라매역(7호선)~신림역(2호선)~서울대 앞
   ○ 사업규모 : 연장 7.76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총사업비 : 5,606억원(2007년 7월 1일 불변가격 기준)
   ○ 내 용 : 사업시행자 요청에 의한 줄파기 등 가시설 분야 승인
5. 사업시행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이내
   ○ 운영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간
6.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BTO방식)
7. 소요토지 확보 및 이용계획
   ○ 소요토지 확보 : 보상관련업무는 민간사업자의 위탁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며, 보상비는 서울특별시 부담
   ○ 소요토지 이용 : 서울특별시는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에 대한 필요한 권리행사 인정(무상사용)
8.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 결정조서 : 따로붙임 1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따로붙임 2
10. 실시계획승인 관련 서류 열람장소
   ○ 열람장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02-772-7146~9)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0층
   남서울경전철(주)(☎ 070-8667-5105)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51, 6층(신대방동, 롯데타워)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사항

가. 결정취지

지하철 소외지역인 서울 서남부 지역에 신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증가 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철도)을 결정(변경)

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

1.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 결정조서

1) 본선(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도시철도(신림선)	영등포구 여의도동 56번지 일원 (9호선 샛강역)	관악구 신림동 211번지 일원 (서울대 입구)	대방역 (국철) 신림역 (2호선) 보라매역 (7호선) 샛강역 (9호선)	7,760	78,184.7	2016.4.7 (서울시 제2016-98호)	•철도 일부중복 (샛강역,대방역,보라매역,신림역) •학교 일부중복 (서울공고,서울삼성고) •공원 일부중복 (자매공원,보라매공원,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종합의료시설 일부중복 (서울보라매병원) •자동차정류장 일부중복 (한남운수서림차고지) •하천 일부중복 (샛강,봉천천,도림천) •도로 일부중복 (여의대방로,여의동로, 올림픽대로, 노들로, 노량진로, 보라매로,신림로)

※ 본선 면적은 정거장, 차량기지 면적을 제외함.

2) 정거장(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중복결정)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1	철도	도시철도 (101정거장)	영등포구 여의도동 56번지 일원	1,559	-	1,559	2016.4.7 (서울시 제2016-98호)	샛강역, 여의동로, 자매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중복결정)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2	철도	도시철도 (102정거장)	동작구 대방동 117-7번지 일원	1,993	-	1,993	2016.4.7 (서울시 제2016-98호)	대방역, 노량진로
	103	철도	도시철도 (103정거장)	동작구 대방동 466-41번지	2,503.5	감)69.6	2,433.9		여의대방로
	104	철도	도시철도 (104정거장)	동작구 대방동 466-49번지 일원	1,971.5	증)3.1	1,974.6		보라매역, 서울공고, 여의대방로
	105	철도	도시철도 (105정거장)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일원	2,261	-	2,261		보라매공원
	106	철도	도시철도 (106정거장)	동작구 신대방동 395-61번지 일원	2,480	-	2,480		보라매공원, 보라매로, 보라매병원
	107	철도	도시철도 (107정거장)	관악구 봉천동 985번지 일원	2,889.8	-	2,889.8		보라매로
	108	철도	도시철도 (108정거장)	관악구 신림동 1467-10번지	2,954.1	-	2,954.1		신림역, 신림로
	109	철도	도시철도 (109정거장)	관악구 신림동 92-32번지 일원	1,932	-	1,932		신림로, 도림천
	110	철도	도시철도 (110정거장)	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일원	1,738	-	1,738		신림로, 도림천
	111	철도	도시철도 (111정거장)	관악구 신림동 210번지 일원	2,498	-	2,498		관악산도시자연공원

3) 차량기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2	철도	도시철도 (차량기지)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12,073	2016.4.7 (서울시 제2016-98호)	보라매공원 중복결정

4)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구 분	연장 또는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	철도	도시철도(신림선)	동작구 대방동 504번지 외16필지	길이(m)	75.0	-	75.0	2016.4.7 (서울시 제2016-98호)	본선터널: 480m ~ 555m
					폭(m)	11.0	-	11.0		
					높이(m) (지표면기준)	-19.89 ~ -30.74	-	-19.89 ~ -30.74		
					면적(㎡)	785	-	785		
기정	1-2	철도	도시철도(신림선)	동작구 신대방동 370-1번지	길이(m)	20.0	-	20.0	2016.4.7 (서울시 제2016-98호)	본선터널: 2,700m ~ 2,720m
					폭(m)	11.0	-	11.0		
					높이(m) (지표면기준)	-10.38 ~ -13.42	-	-10.38 ~ -13.42		
					면적(㎡)	190	-	190		
기정	1-3	철도	도시철도(신림선)	관악구 신림동 1641-69번지 외4필지	길이(m)	50.0	-	50.0	2016.4.7 (서울시 제2016-98호)	본선터널: 5,300m ~ 5,350m
					폭(m)	0 ~ 1.0	-	0 ~ 1.0		
					높이(m) (지표면기준)	- 9.32 ~ -16.39	-	- 9.32 ~ -16.39		
					면적(㎡)	27	-	27		

2. 변경사유서

1)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03 104	철도 (도시철도)	〈 면적변경 〉 - 정거장: 24,779.9㎡ → 24,713.4㎡ (감 66.5㎡)	○103정거장: 정거장 환기덕트 연장 축소로 인한 출입구 위치조정으로 편입면적 감소 ○104정거장: 정거장 구조물계획 변경으로 편입면적 증가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사유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1 1-2 1-3	철도 (도시철도)	〈 기정 〉 - 동작구 대방동 504 일원 : 높이(지표면기준) -19.89 ~ -30.74, 면적 785㎡ - 동작구 신대방동 370-1 : 높이(지표면기준) -10.38 ~ -13.42, 면적 190㎡ - 관악구 신림동 1641-69 일원 : 높이(지표면기준) - 9.32 ~ -16.39, 면적 27㎡	○ 신림선경전철 본선이 지나가는 지하구간으로서 철도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물을 유지관리, 운영, 보호하기 위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을 결정함

다.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 : 게재생략

라. 지형도면 : 지형도면 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게재생략

붙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수용할 토지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	영등포구 여의도동	56	공원	16,458.0	73.4	영등포구					
2	영등포구 여의도동	5	도로	36,241.0	14.5	서울특별시					
3	영등포구 여의도동	5-6	도로	1,845.0	22.7	서울특별시					
4	영등포구 여의도동	5-7	제방	11,387.0	16.7	서울특별시					
5	영등포구 신길동	4203	도로	2,966.0	192.4	국(국토교통부)					
6	영등포구 신길동	1372	도로	862.0	18.2	서울특별시					
7	영등포구 신길동	1164-1	대지	934.0	15.4	서울특별시					
8	영등포구 신길동	1164	대지	14,117.4	27.1	국(국방부)					
9	영등포구 신길동	869-1	도로	395.0	29.5	영등포구					
10	영등포구 신길동	869-2	대지	598.5	20.0	영등포구					
11	영등포구 신길동	869	대지	617.4	105.3	영등포구					
12	영등포구 신길동	1192	도로	4,564.9	2.7	서울특별시					
13	동작구 대방동	466-41	도로	2,392.1	87.5	서울특별시					
14	동작구 대방동	466-49	도로	2,506.1	0.1	서울특별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5	동작구 대방동	390-5	학교 용지	58,071.8	98.4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시종로구송월길48 (신문로2가)				
16	동작구 대방동	466-10	도로	26,919.0	11.7	동작구					
17	동작구 대방동	466-51	도로	4,288.3	16.1	서울특별시					
18	동작구 신대방동	370-1	대지	31,752.0	50.0	주식회사농심	서울시동작구여의대방로112 (신대방동)				
19	동작구 신대방동	395	공원	340,123.0	613.1	서울특별시					
20	동작구 신대방동	385-2	대지	21,208.0	76.7	국(국방부)					
21	동작구 신대방동	385-13	도로	314.0	16.7	서울특별시					
22	동작구 신대방동	425	대지	24,573.0	163.6	서울특별시					
23	관악구 봉천동	727-8	도로	3,375.0	29.2	서울특별시					
24	관악구 봉천동	726-3	공원	3,554.0	10.1	서울특별시					
25	관악구 봉천동	972-2	대지	257.0	257.0	이명순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229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노량진 중앙지점)	근저당권	
						전화석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3길 31 1503호(봉천동, 보라매롯데캐슬)				
26	관악구 봉천동	972-4	대지	124.3	124.3	이명순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229	관악농업협동조합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1366	근저당권	
								이명순		가처분	
27	관악구 봉천동	702-12	도로	3,320	0.4	서울특별시					
28	관악구 봉천동	702-77	도로	13	2	조병학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405	대방세무서	동작세무서	압류	
								동작세무서	동작세무서	압류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동작구청	동작구청	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가압류	
29	관악구 봉천동	972-3	대지	345	345	전만조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229	관악농업협동조합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66	근저당권	
						전화석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3길 31 1503호 (봉천동,보라매 롯데캐슬)				
30	관악구 봉천동	985	도로	1,525	75	서울특별시					
31	관악구 봉천동	971-1	대지	647.9	32.4	김융태	동작구 신대방동 395-65 현대APT2301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55	근저당권	
						김초자	동작구 신대방동 395-65 현대APT2301				
32	관악구 신림동	1432-79	대지	411.9	7.4	조원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51길40, 303호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	
33	관악구 신림동	1467-10	도로	13,438.7	79	서울특별시					
34	관악구 신림동	1432-81	대지	945.8	41.1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2가 111-1				
35	관악구 신림동	1422-43	도로	313.3	15	서울특별시					
36	관악구 신림동	1637-12	대지	246.2	29.9	서울특별시					
37	관악구 신림동	1642-9	도로	16,551	11	서울특별시					
38	관악구 신림동	808-369	대지	137	1	이경호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808-369	관악중앙새마을 금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 922-38	근저당권	
								주식회사하나카드		가압류	
								관악세무서		압류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39	관악구 신림동	808-370	대지	30	1	이청식	관악구 신림동 1693 국제산장APT108-1304				
40	관악구 신림동	92-32	종교	3,156	38	재단법인 인천주교 서울대교수유지재단	서울시 중구 명동2가1				
41	관악구 신림동	808-372	대지	104	94	박범수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30길27 113-1803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	근저당권	
						성백옥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30길27 113-1803				
42	관악구 신림동	848-11	대지	17	9	김광석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42-9 동방 201호				
43	관악구 신림동	808-373	대지	72	72	김광석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42-9 동방 201호				
44	관악구 신림동	92-385	대지	15	13	김광석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55-189 현대APT101-601				
45	관악구 신림동	808-374	대지	88	84	정희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808-373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압류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압류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압류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권	
46	관악구 신림동	808-407	하천	2,268	37.1	국(국토교통부)					
47	관악구 신림동	808-375	대지	79	74	한금례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29길 8 107-1202	신림신용협동조합	서울 관악구 신림로 272	근저당권	
								김 경	서울시 관악구 대학18길 6, 101동	근저당권	
48	관악구 신림동	808-376	대지	64	63	천낙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09-80				
49	관악구 신림동	808-377	대지	36	35	유종원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808-377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50	관악구 신림동	92-390	대지	19	7.7	국(기획재정부)					
51	관악구 신림동	112-40	대지	100	11	유기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09-45				
52	관악구 신림동	112-36	대지	919	1	황의영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92-217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84	근저당권	
						김종훈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09-99				
53	관악구 신림동	112-43	도로	5.0	4.0	류기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09-46				
54	관악구 신림동	110-11	도로	505.0	19.5	서울특별시					
55	관악구 신림동	838-2	도로	174.0	7.5	국(국토교통부)					
56	관악구 신림동	110-10	대지	2,269	491	정헌치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637 12동301호 (광장동,워커힐아파트)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2건	
						정호연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초현리 449-9				
						정호정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 10-608				
57	관악구 신림동	116-30	대지	154	153	정헌치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637 12동301호 (광장동,워커힐아파트)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2건	
						정호연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초현리 449-9				
						정호정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 10-608				
58	관악구 신림동	838-22	도로	157.0	1.8	국(국토교통부)					
59	관악구 신림동	116-4	도로	62.0	5.6	서울특별시					
60	관악구 신림동	116-20	대지	334.0	15.0	최병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달말이로13 101-1501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84	근저당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61	관악구 신림동	131-3	대지	711.0	21.6	서울특별시					
62	관악구 신림동	131-35	도로	40.0	14.8	서울특별시					
63	관악구 신림동	815-8	도로	105.0	2.9	국(국토교통부)					
64	관악구 신림동	211-3	도로	305.0	3.1	관악구					
65	관악구 신림동	211	공원	3,193.0	207.4	서울특별시					

□ 사용할(지하) 토지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사용기간 : 사용권리취득일부터~도시철도 존속시까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 )~( )m 까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	영등포구 여의도동	5	도로	36,241	218.5	서울특별시					26.95	-7.55m~-26.12m사이 18.57m
2	영등포구 여의도동	56	공원	16,458	1,292.6	영등포구					27.18	-7.58m~-26.28m사이 18.7m
3	영등포구 여의도동	5-6	도로	1,845.0	239.3	서울특별시					6.86	-7.65m~-26.19m사이 18.54m
4	영등포구 여의도동	3-9	도로	20,512	451.0	서울특별시					29.46	-7.65m~-26.19m사이 18.54m
5	영등포구 여의도동	5-7	제방	11,387	609.3	서울특별시					25.44	-7.59m~-26.19m사이 18.6m
6	영등포구 여의도동	57	하천	30,033	624.0	국(국토교통부)					20.44	-7.47m~-26.13m사이 18.66m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 )~( )m 까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7	영등포구 여의도동	58	하천	18,261	375.0	국(국토교통부)					17.46	-7.39m~-26.01m사이 18.62m
8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지번			514.0						18.26	-6.51m~-25.93m사이 19.42m
9	영등포구 신길동	4200	도로	93.0	90.0	국(국토교통부)					6.22	6.7m~-16.45m사이 23.17m
10	영등포구 신길동	1372	도로	862.0	3.8	서울특별시					0	7.07m(지상돌출부)
11	영등포구 신길동	4203	도로	2,966.0	1,049.6	국(국토교통부)					17.71	1.61m~-16.93m사이 18.54m
12	영등포구 신길동	4205	도로	271.0	19.0	국(국토교통부)					17.79	1.65m~-16.93m사이 18.58m
13	영등포구 신길동	1179	도로	2,452.2	846.0	서울특별시					18.05	3.18m~-16.68m사이 19.86m
14	영등포구 신길동	4875	도로	3,749.0	1,890.0	서울특별시					18.59	6.22m~-15.36m사이 21.58m
15	영등포구 신길동	4876	도로	1,498.0	1,107.0	서울특별시					18.04	11.57m~-12.36m사이 23.93m
16	영등포구 신길동	4877	도로	3,729.0	761.0	서울특별시					17.36	10.2m~-106m사이 116.2m
17	영등포구 신길동	1164	대지	14,117.4	2.0	국(국방부)					4.38	19.79m~1.4m사이 18.39m
18	영등포구 신길동	1164-1	대지	934.0	43.6	서울특별시					9.33	19.79m~-3.13m사이 22.92m
19	영등포구 신길동	4878	도로	2,372.0	1,932.0	서울특별시					12.22	23.4m~-106m사이 129.4m
20	영등포구 신길동	4879	도로	2,392.0	2,066.0	서울특별시					11.82	23.4m~3.56m사이 19.84m
21	영등포구 신길동	869-1	도로	395.0	365.5	영등포구					6.11	25.05m~6.69m사이 18.36m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 )~( )m 까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22	영등포구 신길동	869-2	대지	598.5	135.8	영등포구					6.11	25.05m~6.69m사이 18.37m
23	영등포구 신길동	869	대지	617.4	35.8	영등포구					6.39	25.05m~6.69m사이 18.37m
24	영등포구 신길동	1192	도로	4,564.9	113.3	서울특별시					5.49	25.05m~6.69m사이 18.37m
25	영등포구 신길동	855-1	도로	661.5	52.0	서울특별시					7.75	25.05m~9.84m사이 15.21m
26	영등포구 신길동	4880	도로	3,451.0	1,934.0	서울특별시					13.18	22.1m~-5m사이 27.1m
27	영등포구 신길동	4881	도로	1,139.0	958.0	서울특별시					16.10	13.54m~-9.61m사이 23.15m
28	영등포구 신길동	4882	도로	1,283.0	1,015.0	서울특별시					9.96	5.21m~-106m사이 111.21m
29	영등포구 신길동	4883	도로	2,647.0	2,042.0	서울특별시					9.96	5.21m~-13.33m사이 18.54m
30	영등포구 신길동	623-1	대지	1,111.0	80.0	국		채무자:송해경			13.5	12.78m~-10.16m사이 22.94m
						서울특별시		상도4동 새마을금고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198-43	근 저당권		
31	영등포구 신길동	1190	도로	12,961.8	25.0	서울특별시					6.58	12.78m~-10.16m사이 22.94m
32	영등포구 신길동	505-1	대지	116.6	25.0	국(기획재정부)					6.58	12.78m~-10.16m사이 22.95m
33	영등포구 신길동	506-1	대지	13.9	0.1	서울특별시					6.57	12.78m~-10.16m사이 22.96m
34	영등포구 신길동	4884	도로	5,541.0	385.0	서울특별시					19.09	6.79m~-11.75m사이 18.54m
35	영등포구 신길동	미지번			92.0						18.71	7.61m~-11.75m사이 19.36m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 )~( )m 까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36	영등포구 신길동	4209	도로	3,832.0	1,470.0	서울특별시					14.52	13.76m~-10.93m사이 24.69m
37	영등포구 신길동	4272	도로	218.0	96.0	서울특별시					10.28	14.61m~-3.69m사이 18.3m
38	영등포구 신길동	4270	도로	50.0	50.0	서울특별시					10.66	14.03m~-3.84m사이 17.87m
39	영등포구 신길동	4302	도로	8,588.0	144.0	서울특별시					9.45	15.35m~-3m사이 18.35m
40	동작구 대방동	498	하천	8,169	486.0	국(건설부)					20.19	-5.39m~-25.05m사이 19.66m
41	동작구 대방동	498-1	도로	8,995	470.0	국(건설부)					22.23	-3.99m~-23.93m사이 19.94m
42	동작구 대방동	86-5	도로	43	2.0	서울특별시					25.12	-3.99m~-22.67m사이 18.68m
43	동작구 대방동	86-2	도로	4,585	465.0	서울특별시					24.68	-2.87m~-22.53m사이 19.66m
44	동작구 대방동	86-8	도로	370	65.0	서울특별시					23.21	-2.73m~-21.41m사이 18.68m
45	동작구 대방동	504	대지	2,524.0	234.2	대방연립주택재건축조합외5인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50-7유정빌딩209			대지권	20.78	-2.03m~-21.27m사이 19.24m
46	동작구 대방동	87-6	도로	1,061	72.0	서울특별시					19.25	-1.89m~-20.57m사이 18.68m
47	동작구 대방동	98-4	대지	172.0	132.0	주식회사 올세	서울시중구남대문로5길 25(북창동)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19 (을지로2가)	근저당권	18.90	-1.33m~-20.43m사이 19.1m
48	동작구 대방동	101-33	대지	73.0	42.0	주식회사 올세	서울시중구남대문로5길 25(북창동)				18.62	-1.19m~-20.01m사이 18.82m
49	동작구 대방동	101-14	대지	129.0	20.0	주식회사 올세	서울시중구남대문로5길 25(북창동)				18.97	-0.91m~-20.01m사이 19.1m
50	동작구 대방동	101-34	도로	30	30.0	동작구					18.84	-0.91m~-19.73m사이 18.82m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 )~( )m 까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51	동작구 대방동	101-15	대지	96.0	10.0	강정숙	서울시동작구여의대방로 62길12-7(대방동)				19.19	-0.77m~-19.59m사이 18.82m
52	동작구 대방동	101-16	대지	17.0	17.0	국(기획재정부)					19.19	-0.77m~-19.59m사이 18.82m
53	동작구 대방동	101-17	대지	2.0	2.0	국(기획재정부)					19.37	-0.77m~-19.45m사이 18.68m
54	동작구 대방동	101-25	전	5.0	5.0	국(국토교통부)					19.19	-0.77m~-19.59m사이 18.82m
55	동작구 대방동	101-27	도로	21.0	21.0	국(국토교통부)					23.12	-0.49m~-19.31m사이 18.82m
56	동작구 대방동	64-9	철도 용지	2,902.0	139.0	국(국토교통부)					22.25	0.49m~-19.45m사이 19.94m
57	동작구 대방동	101-46	철도 용지	314.0	175.0	서울특별시					19.24	1.25m~-17.91m사이 19.16m
58	동작구 대방동	510	대지	892.3	6.5	대방전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97-1			대지권	20.39	-2.03m~-20.85m사이 18.82m
59	동작구 대방동	98-5	대지	129	101.0	국(기획재정부)					19.18	-0.91m~-20.43m사이 19.52m
60	동작구 대방동	511	대지	2,695.8	7.9	대방전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97-1			대지권	18.67	-1.05m~-19.73m사이 18.68m
61	동작구 대방동	98-7	대지	26.0	22.0	이도원	서울시동작구여의대방로 62길16-1(대방동)	이미영	서울중구서애로3길28 (필동3가)	가압류	19.19	-0.77m~-19.59m사이 18.82m
								국민건강보험 공단동작지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여의도동)	압류		
								김상순	서울마포구임정로21길 20-2(신공덕동)	가압류		
								서울특별시 동작구		압류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 )~( )m 까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62	동작구 대방동	101-35	도로	20.0	20.0	동작구					19.54	-0.63m~-19.45m사이 18.82m
63	동작구 대방동	98-8	대지	172.0	42.0	이용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관문길 60 101동1006호(양근리 현대아파트)				22.77	-0.49m~-19.59m사이 19.1m
64	동작구 대방동	94-1	철도 용지	2,708.0	240.0	국(국토교통부)					19.86	0.77m~-19.17m사이 19.94m
65	동작구 대방동	106-2	대지	79.0	54.0	손연봉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7 (안암동4가)				19.33	1.16m~-17.91m사이 19.07m
66	동작구 대방동	106-11	대지	112.0	60.0	국(기획재정부)					18.95	1.31m~-17.77m사이 19.08m
67	동작구 대방동	106-1	철도 용지	33.0	33.0	국(국토교통부)					19.12	1.25m~-17.77m사이 19.02m
68	동작구 대방동	106-5	도로	132.0	57.0	국(기획재정부)					18.36	1.35m~-17.49m사이 18.84m
69	동작구 대방동	106-3	도로	1,524.0	51.0	국(건설부)					18.15	1.38m~-17.29m사이 18.67m
70	동작구 대방동	101-30	도로	251.0	125.0	서울특별시					18.24	1.38m~-17.38m사이 18.76m
71	동작구 대방동	118-5	도로	136.0	23.0	국(기획재정부)					17.88	1.39m~-17.19m사이 18.58m
72	동작구 대방동	117-7	도로	2,023.0	1,043.0	국(국토교통부)					17.82	1.6m~-17.17m사이 18.77m
73	동작구 대방동	120-3	도로	136.0	101.0	국(국토교통부)					17.73	1.63m~-16.94m사이 18.57m
74	동작구 대방동	121-3	도로	198.0	159.0	국(국토교통부)					17.96	1.68m~-16.92m사이 18.6m
75	동작구 대방동	466-1	도로	2,045.3	607.0	서울특별시					17.73	3.18m~-16.9m사이 20.08m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 )~( )m 까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76	동작구 대방동	466-31	도로	4,586.4	137.0	서울특별시					18.59	6.22m~-15.36m사이 21.58m
77	동작구 대방동	466-33	도로	1,883.0	116.0	서울특별시					18.04	11.57m~-12.36m사이 23.93m
78	동작구 대방동	466-35	도로	505.8	67.0	서울특별시					16.54	11.57m~-6.97m사이 18.54m
79	동작구 대방동	466-37	도로	2,371.9	183.0	서울특별시					12.22	23.4m~4.86m사이 18.54m
80	동작구 대방동	466-41	도로	2,392.0	756.5	서울특별시					11.82	23.4m~3.56m사이 19.84m
81	동작구 대방동	466-43	도로	5,370.6	94.0	서울특별시					13.18	22.1m~-5m사이 27.1m
82	동작구 대방동	466-45	도로	1,651.9	28.0	서울특별시					16.05	13.54m~-9.39m사이 22.93m
83	동작구 대방동	466-47	도로	764.0	26.0	서울특별시					18.44	9.15m~-13.12m사이 22.27m
84	동작구 대방동	466-49	도로	2,506.1	764.9	서울특별시					19.74	5.43m~-106m사이 111.43m
85	동작구 대방동	390-5	학교 용지	58,071.8	79.1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시종로구송월길48 (신문로2가)				5.73	13.67m~-10.1m사이 23.77
86	동작구 대방동	466-10	도로	26,919.0	28.3	동작구					5.72	13.7m~-10.12m사이 23.82m
87	동작구 대방동	466-51	도로	4,288.3	1,570.9	서울특별시					9.54	6.79m~-11.75m사이 18.54m
88	동작구 신대방동	378-10	도로	6,043.0	407.0	동작구					18.01	9.05m~-11.75m사이 20.8m
89	동작구 신대방동	377-5	도로	340.0	7.0	서울특별시					17.34	9.05m~-10.31m사이 19.36m
90	동작구 신대방동	381-7	도로	142.0	119.0	서울특별시					16.45	9.87m~-9.49m사이 19.36m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 )~( )m 까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91	동작구 신대방동	375-12	도로	1,640.0	283.0	서울특별시					12.26	16.23m~-9.08m사이 25.31m
92	동작구 신대방동	375-11	도로	172.0	11.0	서울특별시					6.89	17.88m~-6.64m사이 24.52
93	동작구 신대방동	500-8	도로	3,616.0	270.0	서울특별시					9.4	15.7m~-3.48m사이 19.18m
94	동작구 신대방동	373-7	도로	20.0	12.0	국(건설교통부)					8.68	15.61m~-2.06m사이 13.55m
95	동작구 신대방동	370-1	대지	31,752.0	190.0	주식회사농심	서울시동작구여의대방로 112 (신대방동)				9.42	16.99m~-1.78m사이 18.77m
96	동작구 신대방동	385-2	대지	21,208.0	82.3	국(국방부)					4.64	22.16m~0.92m사이 21.24m
97	동작구 신대방동	385-13	도로	314.0	19.3	서울특별시					5.2	20.13m~5.7m사이 14.43m
98	동작구 신대방동	395	공원	340,123.0	24,163.9	서울특별시					6.5	16.41m~2.85m사이 13.56m
99	동작구 신대방동	425	대지	24,573.0	357.4	서울특별시					5.12	16.39m~2.65m사이 13.74m
100	동작구 신대방동	395-61	도로	17,459.0	2,847.0	서울특별시					5.05	16.43m~-1.34m사이 17.77
101	동작구 신대방동	429-7	도로	77.0	51.0	동작구					7.63	19.56m~2.12m사이 17.44m
102	동작구 신대방동	425-20	도로	169.0	53.0	서울특별시					7.66	19.52m~1.96m사이 17.56
103	관악구 봉천동	727-8	도로	3,375.0	1,558.8	서울특별시					9.06	19.44m~0.9m사이 18.54m
104	관악구 봉천동	726-3	공원	3,554.0	2.9	서울특별시					0	4.34m(지상돌출물)
105	관악구 봉천동	728	도로	268.0	1.0	서울특별시					6.43	18.67m~6.1m사이 12.57m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 )~( )m 까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06	관악구 봉천동	844-4	도로	1,229.0	33.0	국(국토교통부)					10.26	19.44m~0.68m사이 18.76m
107	관악구 봉천동	729-11	도로	36.0	28.0	국(국토교통부)					10.22	19.35m~0.63m사이 18.72m
108	관악구 봉천동	730-2	도로	2,410.0	1,143.0	서울특별시					10.28	19.49m~-0.09m사이 19.58m
109	관악구 봉천동	843-2	구거	996.0	43.0	국(국토교통부)					10.35	18.45m~-0.13m사이 18.58m
110	관악구 봉천동	839-2	도로	1,631.0	76.0	국(국토교통부)					10.43	18.41m~-0.22m사이 18.63m
111	관악구 봉천동	702-12	도로	3,320.0	1,831.6	서울특별시					10.37	18.41m~-0.13m사이 18.54m
112	관악구 봉천동	986-1	도로	203.0	133.9	관악구					10.62	18.72m~-1.09m사이 19.81m
113	관악구 봉천동	986-2	도로	1,190.4	18.9	관악구					10.62	18.72m~-1.09m사이 19.81m
114	관악구 봉천동	985	도로	1,525.0	1,146.0	서울특별시					11.12	17.82m~-0.72m사이 18.54m
115	관악구 봉천동	976-12	하천	2,140.2	189.0	관악구					11.08	17.84m~-0.74m사이 18.58m
116	관악구 신림동	1466-4	하천	1,607.6	203.0	관악구					11.08	17.84m~-0.74m사이 18.58m
117	관악구 신림동	1467-6	도로	1,366.6	135.0	서울특별시					11.05	17.8m~-0.8m사이 18.6m
118	관악구 신림동	1467-7	도로	10,431.4	2,253.0	서울특별시					11.74	17.74m~-4.15m사이 21.89m
119	관악구 신림동	1467-9	도로	5,247.6	2,567.0	서울특별시					14.35	14.39m~-6.42m사이 20.81m
120	관악구 신림동	1467-10	도로	13,438.7	3,547.2	서울특별시					16.60	11.28m~-6.42m사이 17.7m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 )~( )m 까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21	관악구 신림동	1422-43	도로	313.3	24.9	서울특별시					2.44	19.94m~-1.45m사이 21.39m
122	관악구 신림동	1642-9	도로	16,550.5	7,304.0	서울특별시					13.48	22.61m~-6.3m사이 28.91m
123	관악구 신림동	1637-12	대지	246.2	7.1	서울특별시					0	9.22m(지상돌출물)
124	관악구 신림동	1641-69	대지	349.6	3.0	황준택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69				9.83	21.57m~2.55m사이 19.02m
125	관악구 신림동	1641-74	대지	140.6	8.0	김동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74				9.69	21.81m~3.03m사이 18.78m
126	관악구 신림동	1641-75	도로	172.4	3.0	관악구					9.60	21.93m~3.27m사이 18.66m
127	관악구 신림동	1641-76	대지	228.0	9.0	배수창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467-29 타워팰리스오피스텔지1107	한국씨티은행	서울시 중구 다동 39	근저당권	9.48	22.29m~3.39m사이 18.9m
128	관악구 신림동	1641-82	대지	284.2	4.0	임연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36-60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권	9.39	22.29m~3.75m사이 18.54m
						김지송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36-60	주식회사 비지에프 리테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5	근저당권		
129	관악구 신림동	808-263	하천	8,002.0	835.0	국(국토교통부)					10.75	23.19m~4.07m사이 19.12m
130	관악구 신림동	808-407	하천	2,268.0	1,786.9	국(국토교통부)					10.75	23.19m~4.07m사이 19.12m
131	관악구 신림동	92-390	대지	19.0	10.3	국(기획재정부)					8.21	22.17m~4.2m사이 17.97m
132	관악구 신림동	92-391	도로	22.0	1.0	국(국토교통부)					5.8	21.67m~9.64m사이 12.03m
133	관악구 신림동	808-393	하천	3,753.0	151.0	국(국토교통부)					10.28	23.54m~4.65m사이 18.89m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 )~( )m 까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34	관악구 신림동	808-132	하천	7,422.0	1,372.0	국(국토교통부)					12.72	24.41m~4.65m사이 19.76m
135	관악구 신림동	408-157	도로	181.0	83.0	관악구					11.55	24.41m~5.55m사이 18.86m
136	관악구 신림동	408-6	도로	1,167.0	112.0	서울특별시					11.60	24.49m~5.71m사이 18.78m
137	관악구 신림동	839-3	도로	22.0	22.0	국(국토교통부)					13.68	24.57m~5.87m사이 18.7m
138	관악구 신림동	839-1	도로	80.0	41.0	국(국토교통부)					13.79	24.73m~5.87m사이 18.86m
139	관악구 신림동	408-158	도로	1,634.0	86.0	관악구					13.99	24.88m~5.87m사이 19.01m
140	관악구 신림동	408-1	도로	2,988.0	1,406.0	서울특별시					12.18	25.67m~5.87m사이 19.8m
141	관악구 신림동	808-133	하천	12,655.0	2,377.0	국(국토교통부)					10.95	28.62m~7.05m사이 21.57m
142	관악구 신림동	94-314	도로	880.0	267.0	서울특별시					8.20	26.86m~7.77m사이 19.09m
143	관악구 신림동	407-23	도로	15.0	2.0	이정옥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4가 86				9.40	27.96m~9.41m사이 18.55m
144	관악구 신림동	407-24	도로	30.0	28.0	관악구					10.46	28.18m~9.41m사이 18.77m
145	관악구 신림동	406-86	도로	1,408.0	418.0	서울특별시					9.15	29.06m~9.41m사이 19.65m
146	관악구 신림동	808-400	하천	80.0	80.0	국(국토교통부)					11.48	28.46m~9.59m사이 18.87m
147	관악구 신림동	406-73	도로	347.0	235.0	관악구					10.19	29.06m~9.92m사이 19.14m
148	관악구 신림동	406-88	대지	8.0	2.0	고정진	서울시 강남구 원지동 510				8.90	29.06m~10.52m사이 18.54m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 )~( )m 까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49	관악구 신림동	406-5	하천	2,880.0	629.0	서울특별시					8.90	29.72m~10.52m사이 19.2m
150	관악구 신림동	808-401	하천	3,549.0	294.0	국(국토교통부)					9.92	30.16m~11.07m사이 19.09m
151	관악구 신림동	808-135	하천	317.0	127.0	국(국토교통부)					11.01	30.27m~11.4m사이 18.87m
152	관악구 신림동	808-412	하천	192.0	81.0	국(국토교통부)					10.93	30.38m~11.84m사이 18.54m
153	관악구 신림동	112-6	도로	5,704.0	2,099.0	서울특별시					10.97	30.16m~11.92m사이 18.24m
154	관악구 신림동	838-22	도로	157.0	55.2	국(국토교통부)					5.2	32.53m~14.1m사이 18.43m
155	관악구 신림동	110-11	도로	505.0	302.5	서울특별시					5.19	32.53~14.1m사이 18.43m
156	관악구 신림동	116-4	도로	62.0	56.4	서울특별시					11.32	19.79m~5.43m사이 14.36m
157	관악구 신림동	116-5	도로	2,303.0	1,553.0	서울특별시					11.28	34.6m~16.04m사이 18.56m
158	관악구 신림동	838-2	도로	174.0	11.5	국(국토교통부)					5.08	32.49m~14.08m사이 18.41m
159	관악구 신림동	838-6	도로	1,046.0	1.0	국(국토교통부)					5.47	32.1m~18.6m사이 13.5m
160	관악구 신림동	116-33	도로	73.0	54.0	관악구					5.47	32.1m~18.6m사이 13.5m
161	관악구 신림동	808-404	하천	601.0	515.0	국(국토교통부)					11.79	33.18m~13.53m사이 19.65m
162	관악구 신림동	808-134	하천	9,099.0	406.0	국(국토교통부)					11.79	33.18m~13.53m사이 19.65m
163	관악구 신림동	116-35	하천	325.0	2.0	서울특별시					11.85	33.18m~14.64m사이 18.54m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 )~( )m 까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64	관악구 신림동	838-21	도로	109.0	91.0	국(국토교통부)					11.32	34.6m~15.62m사이 18.98m
165	관악구 신림동	117-10	도로	397.0	337.0	서울특별시					11.22	35.14m~15.76m사이 19.38m
166	관악구 신림동	838-10	도로	11.0	10.0	국(국토교통부)					11.13	35.14m~16.6m사이 18.54m
167	관악구 신림동	118-5	도로	2,216.0	402.0	관악구					10.97	36.26m~16.6m사이 19.66m
168	관악구 신림동	815-8	도로	105.0	76.1	국(국토교통부)					10.75	36.82m~17.72m사이 19.1m
169	관악구 신림동	808-406	하천	1,844.0	1,700.0	국(국토교통부)					10.91	37.94m~16.04m사이 21.9m
170	관악구 신림동	131-35	도로	40.0	25.2	서울특별시					10.69	34.83m~17.37m사이 17.46m
171	관악구 신림동	131-3	대지	711.0	140.4	서울특별시					10.69	35.73m~18.82m사이 16.91m
172	관악구 신림동	815-2	도로	140.0	86.0	국(국토교통부)					10.77	36.42m~17.83m사이 18.59m
173	관악구 신림동	808-386	하천	249.0	210.0	국(국토교통부)					10.48	38.5m~19.4m사이 19.1m
174	관악구 신림동	815-6	도로	148.0	110.0	국(국토교통부)					10.44	38.64m~19.4m사이 19.24m
175	관악구 신림동	131-7	도로	910.0	785.0	관악구					10.33	39.34m~19.4m사이 19.94m
176	관악구 신림동	131-27	대지	317.0	1.0	김태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51-5	신림-봉천 터널 도로		구분 지상권	10.41	38.5m~19.96m사이 18.54m
						김재형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51-5					
						김태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51-5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 )~( )m 까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황영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60-6					
177	관악구 신림동	131-29	대지	317.0	2.0	주기란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86	신림-봉천 터널 도로		구분 지상권	10.33	38.64m~20.1m사이 18.54m
						임종우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0, 1동902호	주식회사우리 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 저당권		
								금천세무서		근 저당권		
								주식회사지에 스리테일		근 저당권		
178	관악구 신림동	131-39	대지	167.0	1.0	박봉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131-39	신림-봉천 터널 도로		구분 지상권	10.23	38.92m~20.38m사이 18.54m
								관악농업협동 조합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1	근 저당권		
179	관악구 신림동	131-30	대지	331.0	2.0	박구종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84 (4층)	주식회사우리 은행	관악농업협동조합	근저당 권	10.23	38.92m~20.38m사이 18.54m
								신림-봉천터 널도로		구분 지상권		
180	관악구 신림동	132	도로	397.0	387.0	관악구					9.91	40.46m~20.94m사이 19.52m
181	관악구 신림동	815-1	도로	249.0	206.0	국(국토교통부)					10.13	39.48m~20.52m사이 18.96m
182	관악구 신림동	808-387	하천	1,194.0	620.0	국(국토교통부)					10.11	39.34m~20.8m사이 18.54m
183	관악구 신림동	103-298	도로	296.0	65.0	서울특별시					9.86	41.58m~21.56m사이 20.02m
184	관악구 신림동	산3-8	도로	595.0	484.0	서울특별시					9.99	41.58m~21.08m사이 20.5m
185	관악구 신림동	산4-6	임야	308.0	108.0	서울특별시					10.03	42.14m~23.04m사이 19.1m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 )~( )m 까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86	관악구 신림동	808-128	하천	7,800.0	1,054.0	국(국토교통부)					10.32	43.54m~19.4m사이 24.14m
187	관악구 신림동	226	전	911.0	33.0	서울특별시					10.32	42.98m~24.16m사이 18.82m
188	관악구 신림동	813-6	도로	178.0	118.0	국(국토교통부)					10.30	43.54m~24.44m사이 19.1m
189	관악구 신림동	813-2	도로	79.0	79.0	국(국토교통부)					10.11	43.68m~24.86m사이 18.82m
190	관악구 신림동	808-129	하천	1,361.0	80.0	국(국토교통부)					9.96	44.24m~25.14m사이 19.1m
191	관악구 신림동	225-2	도로	3,353.0	908.0	서울특별시					10.86	44.64m~24.58m사이 20.06m
192	관악구 신림동	225-3	학교	5,363.0	189.0	서울특별시 (교육감)					10.61	44.68m~25.84m사이 18.84m
193	관악구 신림동	225-29	답	327.0	281.0	서울특별시					11.56	44.68m~26.08m사이 18.6m
194	관악구 신림동	225-27	전	403.0	56.0	서울특별시					11.64	44.64m~25.93m사이 18.71m
195	관악구 신림동	225-30	전	249.0	188.0	서울특별시					11.67	44.66m~26.04m사이 18.62m
196	관악구 신림동	812-4	도로	350.0	40.0	국(국토교통부)					11.75	44.58m~26.04m사이 18.54m
197	관악구 신림동	812-3	구거	376.0	75.0	국(국토교통부)					11.65	44.58m~26.02m사이 18.56m
198	관악구 신림동	211-3	도로	305.0	169.9	관악구					11.75	44.58m~26.04m사이 18.54m
199	관악구 신림동	211	공원	3,193.0	1,847.6	서울특별시					14.69	44.46m~25.92m사이 18.56m
200	관악구 신림동	211-10	공원	2,222.0	221.0	서울특별시					14.78	44.46m~25.92m사이 18.54m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 )~( )m 까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201	관악구 신림동	210	공원	4,367.0	509.0	서울특별시					16.75	44.54m~26m사이 18.54m
202	관악구 신림동	805	잡종지	681.0	207.0	국(기획재정부)					14.59	44.44m~25.9m사이 18.54m

□ 사용할(일시) 토지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사용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 해당구간 공사 완료일까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	영등포구 여의도동	56	공원	16,458.0	530.0	영등포구					
2	영등포구 여의도동	5	도로	36,241.0	61.0	서울특별시					
3	영등포구 여의도동	5-6	도로	1,845.0	25.0	서울특별시					
4	영등포구 여의도동	3-9	도로	20,512.0	78.0	서울특별시					
5	영등포구 여의도동	5-7	제방	11,387.0	117.0	서울특별시					
6	영등포구 여의도동	57	하천	30,033.0	2.0	국(국토교통부)					
7	영등포구 신길동	4200	도로	93.0	3.0	국(국토교통부)					
8	영등포구 신길동	1372	도로	862.0	41.0	서울특별시					
9	영등포구 신길동	4203	도로	2,966.0	202.0	국(국토교통부)					
10	영등포구 신길동	4877	도로	3,729.0	11.0	서울특별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1	영등포구 신길동	1164	대지	14,117.4	32.0	국(국방부)					
12	영등포구 신길동	1164-1	대지	934.0	80.0	서울특별시					
13	영등포구 신길동	4878	도로	2,372.0	5.0	서울특별시					
14	영등포구 신길동	4879	도로	2,392.0	15.0	서울특별시					
15	영등포구 신길동	1192	도로	4,564.9	73.0	서울특별시					
16	영등포구 신길동	869-2	대지	598.5	29.0	영등포구					
17	영등포구 신길동	869	대지	617.4	34.0	영등포구					
18	영등포구 신길동	855-1	도로	661.5	40.0	서울특별시					
19	영등포구 신길동	623-1	대지	1,111	42	국					
						서울특별시		상도4동 새마을금고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198-43	근저당권	
20	영등포구 신길동	1190	도로	12,961.8	12.0	서울특별시					
21	영등포구 신길동	505-1	대지	116.6	30.0	국(기획재정부)					
22	영등포구 신길동	506-1	대지	13.9	3.0	서울특별시					
23	영등포구 신길동	4883	도로	2,647.0	43.0	서울특별시					
24	영등포구 신길동	4884	도로	5,541.0	65.0	서울특별시					
25	영등포구 신길동	4209	도로	3,832.0	237.0	서울특별시					
26	영등포구 신길동	4272	도로	218.0	51.0	서울특별시					
27	영등포구 신길동	4302	도로	8,588.0	42.0	서울특별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28	영등포구 신길동	4270	도로	50.0	21.0	서울특별시					
29	동작구 대방동	117-7	도로	2,023.0	199.0	국(건설교통부)					
30	동작구 대방동	118-5	도로	136.0	7.0	국(기획재정부)					
31	동작구 대방동	117-4	도로	33.0	9.0	국(건설부)					
32	동작구 대방동	94-3	도로	53.0	4.0	국(국토교통부)					
33	동작구 대방동	117-1	대	10.0	1.0	국(기획재정부)					
34	동작구 대방동	340-5	대	1,646.0	1.0	국(국방부)					
35	동작구 대방동	340-6	대	263.5	3.0	국(국방부)					
36	동작구 대방동	466-35	도로	505.8	9.0	서울특별시					
37	동작구 대방동	466-37	도로	2,371.9	46.0	서울특별시					
38	동작구 대방동	374-4	도로	623.5	13.0	국(건설부)					
39	동작구 대방동	383-17	대	604.4	27.0	이무길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970			대지권	
						허일범	서울 서초구 방배동 776-3 궁전아파트 A동 901호				
						김영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0-14 A동 202호				
40	동작구 대방동	383-18	대	249.9	19.0	김정상	서울시 서초구 1622-3 미도맨션2동 102호			대지권	
						박여임	서울시 서초구 1622-3 미도맨션2동 102호				
41	동작구 대방동	383-19	주유소	141.5	1.0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 (역삼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42	동작구 대방동	466-41	도로	2,392.1	205.0	서울특별시					
43	동작구 대방동	466-49	도로	2,506.1	94.0	서울특별시					
44	동작구 대방동	390-5	학교용지	58,071.8	55.0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신문로2가)				
45	동작구 대방동	466-10	도로	26,919.0	75.0	동작구					
46	동작구 대방동	399-3	대	971.1	19.0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47	동작구 대방동	466-51	도로	4,288.3	293.0	서울특별시					
48	동작구 신대방동	375-11	도로	172.0	4.0	서울특별시					
49	동작구 신대방동	370-1	대	31,752.0	178.0	주식회사농심	서울시동작구여의대방로112(신대방동)				
50	동작구 신대방동	375-12	도로	1,640.0	79.0	서울특별시					
51	동작구 신대방동	500-8	도로	3,616.0	146.0	서울특별시					
52	동작구 신대방동	373-7	도로	20.0	8.0	국(건설교통부)					
53	동작구 신대방동	395	공원	340,123.0	5,782.0	서울특별시					
54	동작구 신대방동	385-2	대	21,208.0	96.0	국(국방부)					
55	동작구 신대방동	385-13	도로	314.0	47.0	서울특별시					
56	동작구 신대방동	425	대	24,573.0	162.0	서울특별시					
57	동작구 신대방동	395-61	도로	17,459.0	780.0	서울특별시					
58	동작구 신대방동	429-7	도로	77.0	9.0	동작구					
59	동작구 신대방동	425-20	도로	169.0	36.0	서울특별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60	관악구 봉천동	727-8	도로	3,375.0	488.0	서울특별시					
61	관악구 봉천동	726-3	공원	3,554.0	25.0	서울특별시					
62	관악구 봉천동	728	도로	268.0	11.0	서울특별시					
63	관악구 봉천동	702-17	도로	미등록	3.0						
64	관악구 봉천동	702-11	대지	245.0	1.0	임동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7 롯데APT 1605호				
65	관악구 봉천동	702-80	대지	23	9	손재호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37-48 205-104호	손정호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 우성아파트 10-1702	공유자	
						손정호	서울시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6,101동 2706호				
66	관악구 봉천동	985	도로	1,525.0	74.0	서울특별시					
67	관악구 봉천동	986-2	도로	1,190.0	19.0	관악구					
68	관악구 봉천동	986-1	도로	203.0	53.0	관악구					
69	관악구 봉천동	702-12	도로	3,320.0	175.0	서울특별시					
70	관악구 봉천동	702-44	도로	474.0	11.0	관악구					
71	관악구 봉천동	702-77	도로	13.0	8.0	조병학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405	대방세무서	동작세무서	압류	
								동작세무서	동작세무서	압류	
								동작구청	동작구청	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소관:신용지원부)	가압류	
72	관악구 봉천동	971-1	대지	647.9	67	김융태	동작구 신대방동 395-65 현대APT230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55	근저당권	
						김초자	동작구 신대방동 395-65 현대APT2301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73	관악구 신림동	1432-79	대지	411.9	3.0	조원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51길40, 303호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 지상권	
74	관악구 신림동	1432-81	대지	945.8	2.0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2가 111-1				
75	관악구 신림동	1471-2	도로	2,197.7	8.0	관악구					
76	관악구 신림동	1433-1	대지	193.7	4.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19층	서울시 관악구		압류	
77	관악구 신림동	1433-3	대지	467.4	12.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19층	서울시 관악구		압류	
78	관악구 신림동	1433-4	대지	129.3	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19층				
79	관악구 신림동	1421-29	대지	1,380.2	35.0	주식회사한미은행	서울시 중구 다동 39			대지권	SK 허브
						주식회사상륜개발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82				
80	관악구 신림동	1468-9	도로	263.8	6.0	관악구					
81	관악구 신림동	1422-5	대지	1,877.3	25.0	주식회사 일성산업개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8-2 안제타워3층	서울시 지하철공사	서울시서초구방배동447-7	구분지상 권설정	대지권
82	관악구 신림동	1422-43	도로	313.3	63.0	서울특별시					
83	관악구 신림동	1467-10	도로	13,438.7	500.0	서울특별시					
84	관악구 신림동	1642-9	도로	16,551.0	154.0	서울특별시					
85	관악구 신림동	1637-28	도로	855.2	1.0	관악구					
86	관악구 신림동	1637-12	대지	246.2	30.0	서울특별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87	관악구 신림동	808-407	하천	2,268.0	67.0	국(국토교통부)					
88	관악구 신림동	808-369	대지	137.0	13.0	이경호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808-369	관악중앙새마을금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 922-38	근저당권	
								주식회사 하나카드		가압류	
								관악세무서		압류	
89	관악구 신림동	808-370	대지	30.0	2.0	이청식	관악구 신림동 1693 국제산장APT108-1304				
90	관악구 신림동	92-32	종교	3,156.0	133.0	재단법인 인천주교 서울대교수유지재단	서울시 중구 명동2가1				
91	관악구 신림동	808-263	하천	8,002.0	222.0	국(국토교통부)					
92	관악구 신림동	808-372	대지	104.0	8.0	박범수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30길27 113-1803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 (서울대입구역지점)	근저당권	
						성백옥					
93	관악구 신림동	848-11	대지	17.0	7.0	김광석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42-9 동방 201호				
94	관악구 신림동	92-385	대지	15.0	2.0	김광석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55-189 현대APT101-601				
95	관악구 신림동	808-374	대지	88.0	4.0	정희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808-373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압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압류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압류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권	
96	관악구 신림동	808-375	대지	79.0	5.0	한금례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29길 8 107-1202	신림신용 협동조합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72	근저당권	
								김경	서울시 관악구 대학18길 6, 101동	근저당권	
97	관악구 신림동	808-376	대지	64.0	1.0	천낙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09-80				
98	관악구 신림동	92-390	대지	19.0	1.0	국(기획재정부)					
99	관악구 신림동	808-377	대지	36.0	1.0	유종원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808-377				
100	관악구 신림동	92-386	도로	29.0	3.0	관악구					
101	관악구 신림동	92-391	도로	22.0	4.0	국(국토교통부)					
102	관악구 신림동	808-261	도로	63.0	7.0	관악구					
103	관악구 신림동	112-40	대지	100.0	18.0	유기렬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09-45				
104	관악구 신림동	112-36	대지	919.0	5.0	황의영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92-217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84	근저당권	
						김종훈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09-99				
105	관악구 신림동	112-43	도로	5.0	1.0	류기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09-46				
106	관악구 신림동	838-2	도로	174.0	4.0	국(국토교통부)					
107	관악구 신림동	110-10	대지	2269.0	137.0	정헌치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637 12동301호 (광장동,워커힐아파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2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정호연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초현리 449-9				
						정호정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 10-608				
108	관악구 신림동	110-5	도로	2,764.0	1.0	관악구					
109	관악구 신림동	116-30	대지	154.0	1.0	정헌치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637 12동301호 (광장동,워커힐아파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2건	
						정호연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초현리 449-9				
						정호정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 10-608				
110	관악구 신림동	838-6	도로	1,046.0	3.0	국(국토교통부)					
111	관악구 신림동	116-20	대지	334.0	26.0	최병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달말이로13 101-150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4	근저당권 3건	
112	관악구 신림동	116-33	도로	73.0	16.0	관악구					
113	관악구 신림동	112-6	도로	5,704.0	80.0	서울특별시					
114	관악구 신림동	838-22	도로	157.0	7.0	국(국토교통부)					
115	관악구 신림동	110-11	도로	505.0	44.0	서울특별시					
116	관악구 신림동	116-32	도로	9.0	9.0	서울특별시					
117	관악구 신림동	808-1	하천	4,403.0	4.0	국(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18	관악구 신림동	116-5	도로	2,303.0	40.0	서울특별시					
119	관악구 신림동	808-417	하천	36.0	5.0	국(국토교통부)					
120	관악구 신림동	808-404	하천	601.0	22.0	국(국토교통부)					
121	관악구 신림동	815-8	도로	105.0	3.0	국(국토교통부)					
122	관악구 신림동	131-35	도로	40.0	2.0	서울특별시					
123	관악구 신림동	131-3	대지	711.0	68.0	서울특별시					
124	관악구 신림동	808-406	하천	1,844.0	12.0	국(국토교통부)					
125	관악구 신림동	808-134	하천	9,099.0	37.0	국(국토교통부)					
126	관악구 신림동	812-3	구거	376.0	1.0	국(국토교통부)					
127	관악구 신림동	812-4	도로	350.0	28.0	국(국토교통부)					
128	관악구 신림동	211-3	도로	305.0	43.0	관악구					
129	관악구 신림동	211	공원	3,193.0	221.0	서울특별시					
130	관악구 신림동	805	잡종지	681.0	20.0	국(기획재정부)					
131	관악구 신림동	210	공원	4,367.0	103.0	서울특별시					
132	관악구 신림동	211-10	공원	2,222.0	177.0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4호

도시계획시설(장충단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호(2009. 1. 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72호(2009. 9. 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50호(2014. 10. 1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2014-408호(2014. 11. 27)로 실시계획 인가 된 중구 장충동2가 산14-67번지 일대 장충단공원 내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공연장 건립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67번지 외 2필지(산14-68, 산14-2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장충단공원)사업
   나. 사업의 명칭 :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공연장 건립공사
3. 사업의 규모
   가 .증축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국립중앙극장	12,129.88	37,928.05	12,129.88	37,928.05	변경없음

   나. 주요내용
   - 전속단체공연장 증축 3,967.98㎡, 해오름극장 화장실 등 증축 638㎡
   - 전속단체공연장 지상부 광장 및 녹지조성, 별오름극장 연면적 정정(감 0.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국립중앙극장 대표 안호상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67번지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 초 : 인가일로부터 ~ 2016. 9. 15일까지
   - 변 경 : 인가일로부터 ~ 2016. 12. 31일까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02-3783-59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5호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03.23)로 정비예정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38호(2012.12.13)로 정비예정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56-421번지 일대 장미아파트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성수동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성동구 성수동1가 656-421번지 일대
   나. 면 적 : 11,084㎡
2. 정비구역 지정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성수동 1가 656-421일대	-	증)11,084	11,084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11,084.0	11,084.0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625.9	625.9	5.6	-
	도 로	-	증)625.9	625.9	5.6	-
획 지	소 계	-	증)10,458.1	10,458.1	94.4	-
	획 지	-	증)10,458.1	10,458.1	94.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1,084.0	-	11,084.0	100.0%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1,084.0	-	11,084.0	100.0%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위치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55	20~30	간선도로	6,910(-)	성수동1가	구의동	일반도로	-	건교부제249366.06.21	왕십리로
기정	소로	3	104	10	국지도로	638(-)	성수동1가656-641	성수동1가656-255	일반도로	-	서고시3호69.01.18	뚝섬로1길
기정	소로	3	118	8	국지도로	373(-)	성수동1가656-504	성수동1가656-241	일반도로	-	서고시3호69.01.18	왕십리로2길
변경	소로	3	118	8(일부:12)	국지도로	373(-)	성수동1가656-504	성수동1가656-24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38	6	국지도로	358(-)	성수동1가656-3	성수동1가656-98	일반도로	-	서고시3호69.01.18	
신설	소로	2	(01)	8	국지도로	48	성수동1가656-1970	성수동1가656-421	일반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신설도로의 번호(01)은 임시 번호임

※ 괄호 내용은 구역내 연장 및 폭원을 의미함.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118	소로 3-118	•도로 폭원 확장 - 기정 : 폭원 8m - 변경 : 폭원 12m	•보차분리를 위한 도로폭원 확장
-	소로 2-(01)	•도로신설 - B : 8m, L : 48m	•보행자보호를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설치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내	-	증)150	150	
	작은도서관		-	-	-	
	주민운동시설		-	증)300	300	
	어린이놀이터		-	증)500	500	
	계		-	-	950	

마.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11,084.0	획지	10,458.1	성수동 656-421번지 일대	6	-	-	6	-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법정상한		
신규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1,084.0	획지	10,458.1	성수동 656-421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50.0% 이하	285.0% 이하	60m이하 20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공급계획 : 299세대

■ 건립규모

건립규모	세대수		비고
	세대	비율(%)	
합 계	299	100.00	-
60㎡ 이하	163	54.52	소형주택:31세대
60㎡ ~ 85㎡ 이하	117	39.13	-
85㎡ 초과	19	6.35	-

• 전체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93.65%

■ 재건축소형주택 건설계획 : 31세대

건립규모		세대수	
		세대	비율(%)
합 계		31세대	100.00%
60㎡ 이하	39형	14세대	45.16%
	42형	14세대	45.16%
	59형	3세대	9.68%

심의완화 사항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4%, 신·재생에너지 공급률:1%, 지능형건축물:12%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85.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획지경계선으로부터 3m

기타사항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3m내에 보도(2m)를 설치하여 대지 동측 10m도로는 실사용 폭원 12m로, 남측 6m도로는 실사용폭원 8m로 조성하여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함.

■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산정

<table>
<tr><td>구 분</td><td colspan="4">산 정 내 용</td></tr>
<tr><td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구역면적</td><td>획지(공동주택)</td><td>계획정비
기반시설</td><td>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td></tr>
<tr><td>11,084.0㎡</td><td>10,458.1㎡</td><td>625.9㎡</td><td>89.0㎡</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td><td colspan="4">•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공공시설 등 시설물(국공립어린이집 400㎡) 기부채납
= 625.9㎡ − 89.0㎡ + 301.8㎡ = 838.7㎡ (※순부담율: 7.6%)</td></tr>
<tr><td>계획(기준)용적률</td><td colspan="4">• 계획(기준)용적률 : 210%</td></tr>
<tr><td>허용용적률</td><td colspan="4">•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 210% + 17% = 227%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4%)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1%) + 지능형건축물(12%)
※ 위에서 적용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지능형건축물)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 될 수 있음</td></tr>
<tr><td>정비계획
용적률 검토</td><td colspan="2">• 정비계획용적률 = 허용(기준)용적률×(1+1.3α)
= 227×(1+1.3×0.0802) = 250.67%
• 정비계획용적률 : 250%이하 적용</td><td colspan="2">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838.7㎡ / 10,458.1㎡
= 0.0802</td></tr>
<tr><td>예정법적상한용적률
(재건축 소형주택)</td><td colspan="4">•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85.0%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상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전용면적 60㎡ 이하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건설 [(285.0% − 250.00%) X 50% = 17.5%]
•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계획 : 대지면적 × 완화되는 용적률의 50%
= 10,458.1㎡ × 17.5% = 1,830.17㎡ 이상

<table>
<tr><td rowspan="2">건립
위치</td><td rowspan="2">세대수</td><td colspan="2">주택규모</td><td rowspan="2">연면적</td></tr>
<tr><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r>
<tr><td rowspan="3">획 지</td><td rowspan="3">31세대</td><td>59.98㎡</td><td>82.27㎡</td><td rowspan="3">•계획 = 82.27㎡ × 3세대 +
58.65㎡ × 14세대 +
54.88㎡ × 14세대
= 1,836.23㎡ ＞ 1,830.17㎡</td></tr>
<tr><td>42.87㎡</td><td>58.65㎡</td></tr>
<tr><td>39.99㎡</td><td>54.88㎡</td></tr>
</table>
</td></tr>
</table>

■ 공공시설 등 시설물 기부채납

○ 도입용도 : 국공립 어린이집

○ 운영주체 : 성동구청(관련법령에 따라 위탁운영 가능)

○ 시설규모 : 400㎡(단지내 지상1층(공급면적기준)) ※ 부지제공 환산면적 301.8㎡

바.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주변지역과 조화된 도시경관계획	
환경보전	생태면적률 적용 등 쾌적성 및 공공성을 고려한 정비계획	
재난방지	해당없음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현황 : 173세대(세입자포함 세대) - 변경 : 299세대(장기전세주택 31세대 포함) → 증가세대수 126세대	

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신규	성수동1가 656-421번지 일대	11,084.0 ㎡	획지	성수동1가 656-421번지 일대	10,458.1㎡	공동주택 용지

자.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연면적)
신 규	획지	10,458.1㎡	-	31	•60㎡이하 : 31세대 (10.36%) →54.88㎡(공급) × 14세대 + 58.65㎡(공급) × 14세대 + 82.27㎡(공급) × 3세대	1,836.23㎡ (장기전세주택 및 소형주택)

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2016. 5 .4.)

■ 조건사항

- 대상지 서측도로(8m) 계획 관련 연접한 지역의 차량통행시 회차가 가능하도록 추가공간 확보 및 보도 확보 검토
- 대상지 북측도로(12m)는 서측 구역계외 필지(성수동1가 656-444 등)로 인해 일정폭원 확보가 불가능하고, 대상지의 차량진출입을 위한 도로인 점 등을 감안하여 구역계 북서측 가각부 계획 적정성 검토 및 기부채납 조정 검토

4. 관계 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도서 참조

5.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02) 2133-7137) 및 성동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02) 2286-6557)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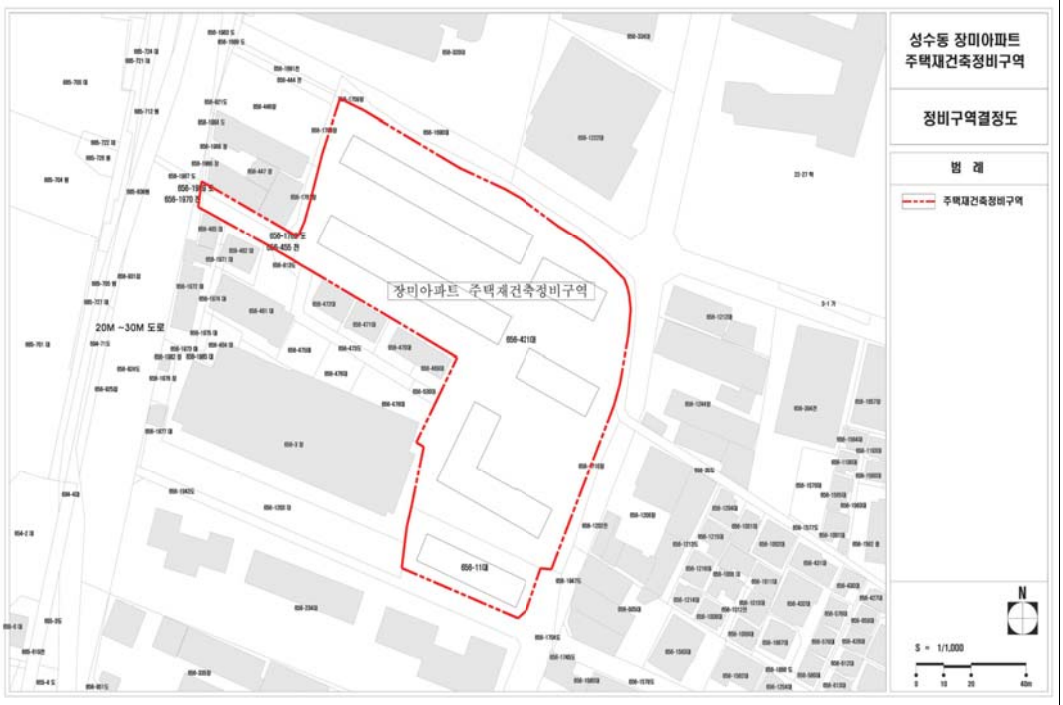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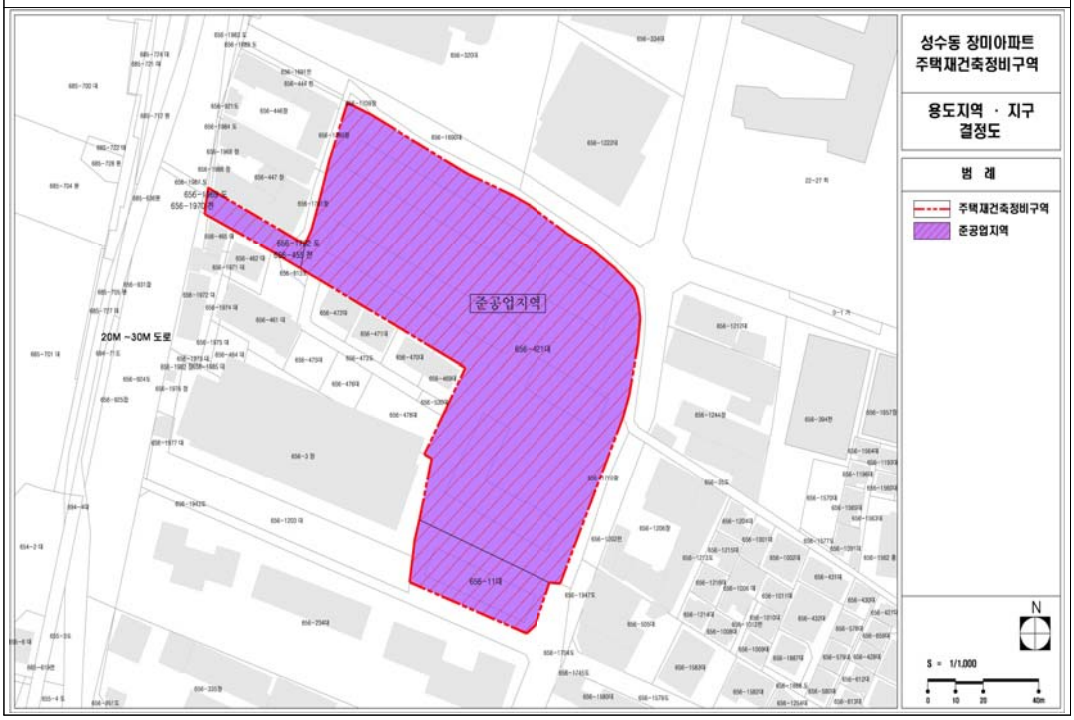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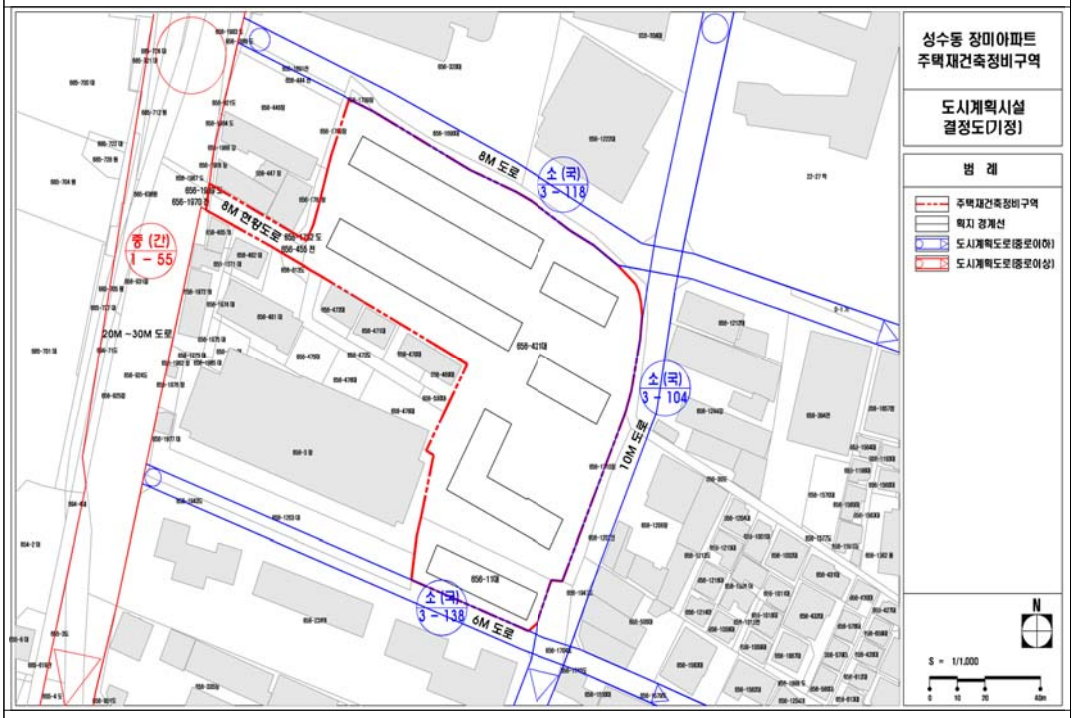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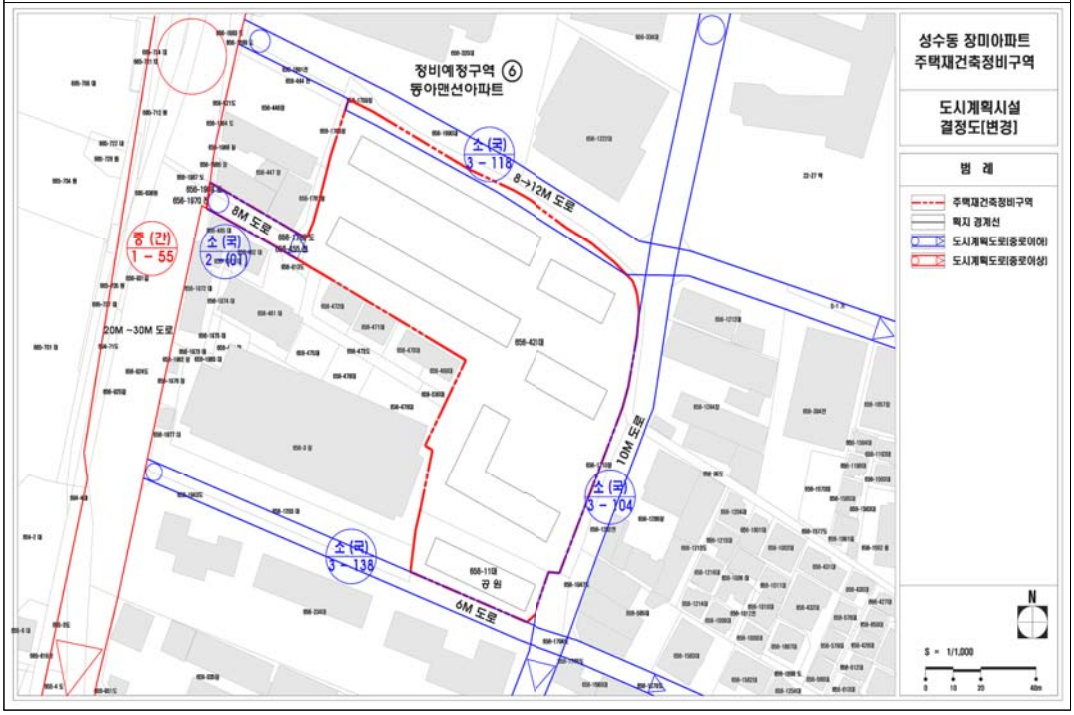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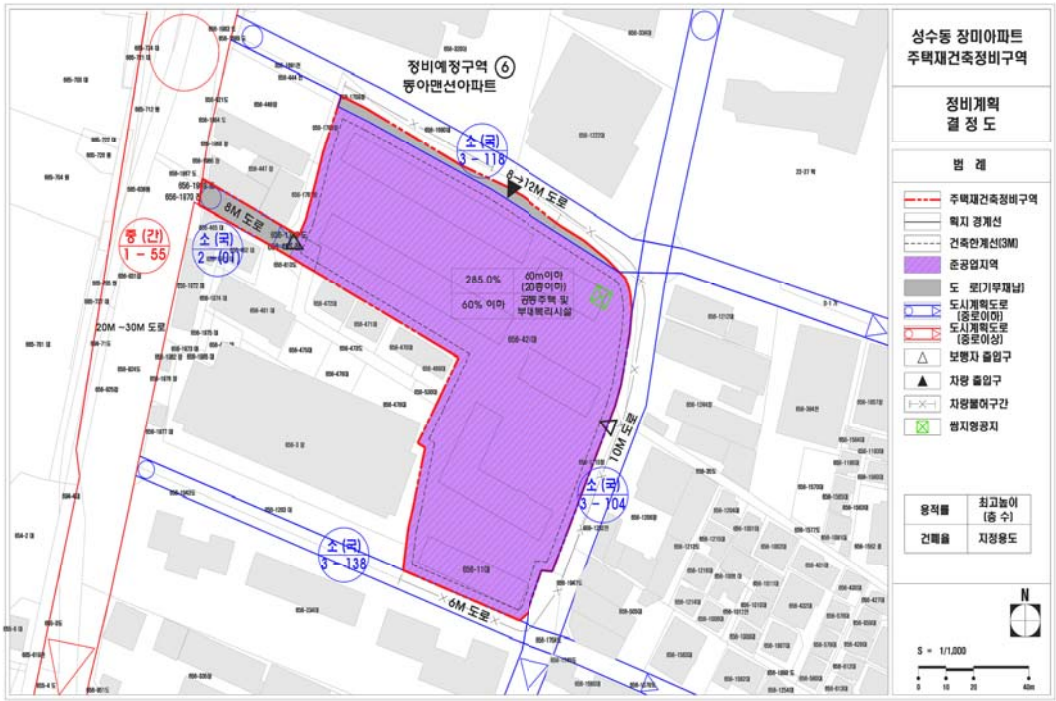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7호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4항에 따라 해제 결정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 : 3개 구역
   ○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내 돈의문4·5·6 존치구역(32,192㎡)

구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방식	면 적(㎡)	정비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돈의문4존치정비구역	종로구 평동 164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12,720	2005. 2. 5 (서울시고시 제2005-37호)
변경	해 제				

기정	돈의문5존치관리구역	종로구 평동 73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16,617	2005. 2. 5 (서울시고시 제2005-37호)
변경	해 제				

기정	돈의문6존치관리구역	종로구 평동 16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2,855	2005. 2. 5 (서울시고시 제2005-37호)
변경	해 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2. 위치도 및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정비예정구역 실효사유 및 실효일
   ○ 실효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해제
   ○ 실 효 일 : 고시 게재일

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19) 또는 종로구청 도시개발과(02-2148-2692)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임 : 정비예정구역 해제 도면

붙임

정비예정구역 해제 도면 (3개소)

1. 돈의문4존치정비구역(종로구 평동 164번지 일대)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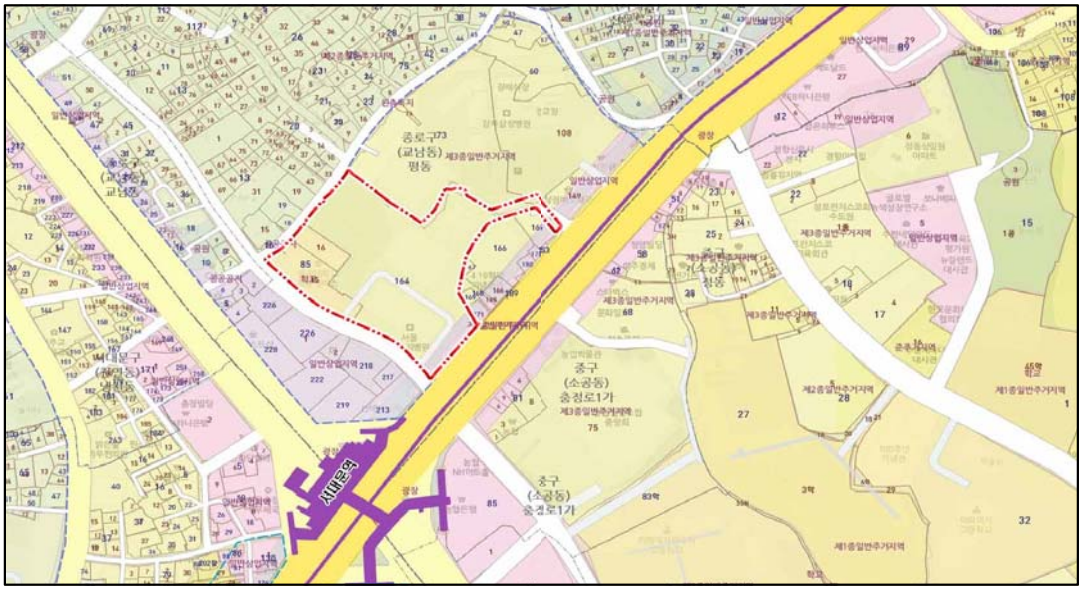

■ 정비예정구역해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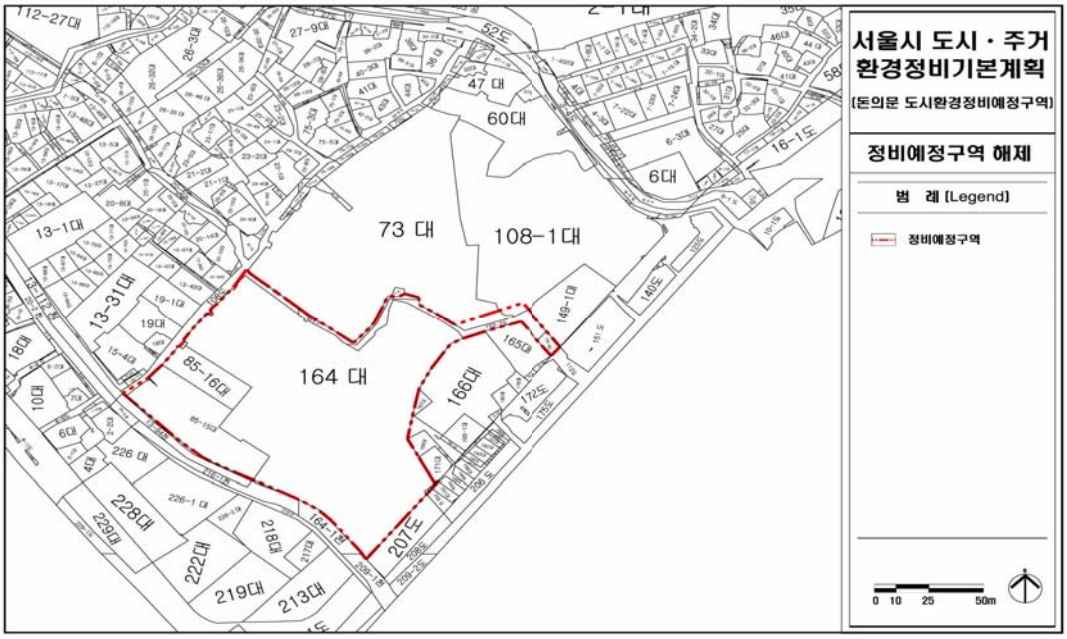

2. 돈의문5존치관리구역(종로구 평동 73번지 일대)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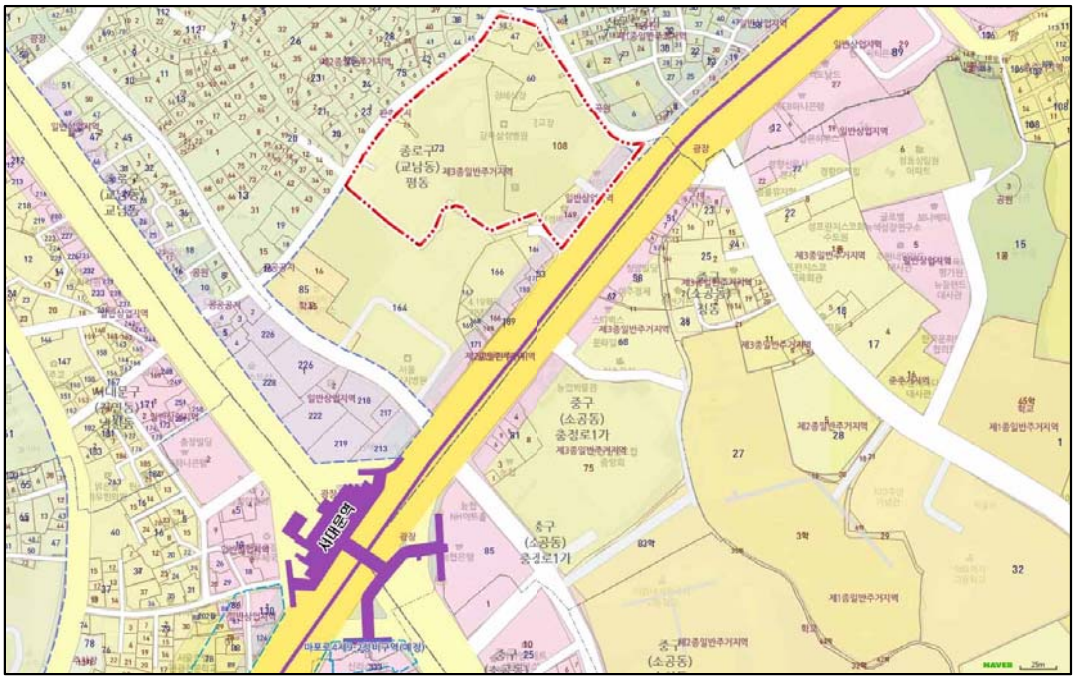

■ 정비예정구역해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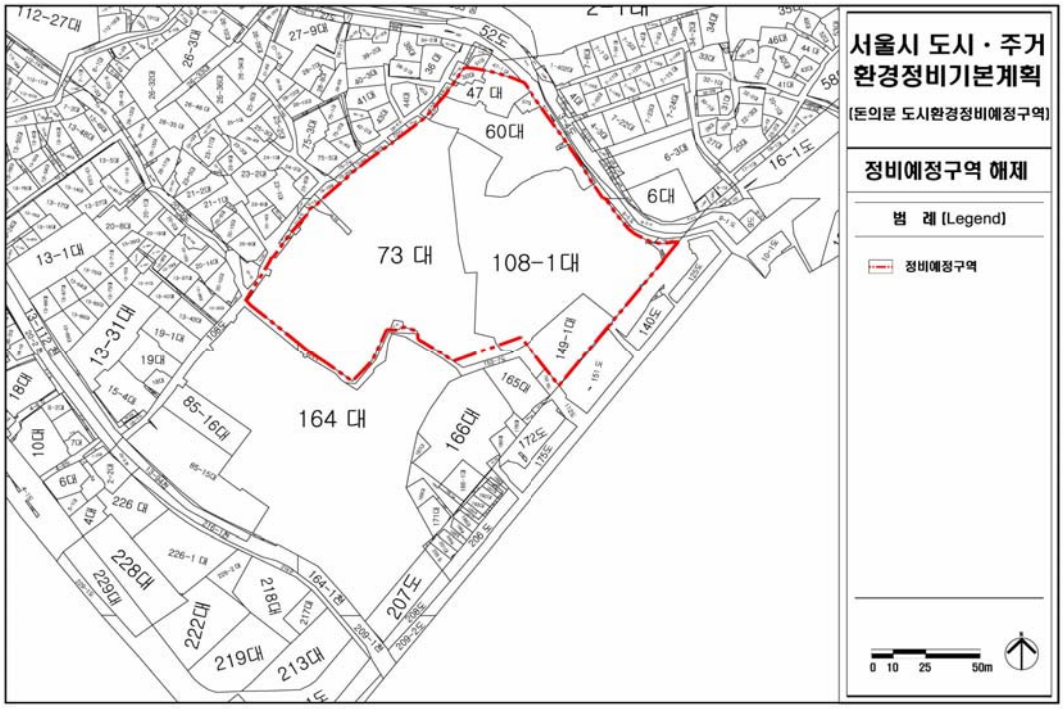

3. 돈의문6존치관리구역(종로구 평동 165번지 일대)

■ 위치도

■ 정비예정구역해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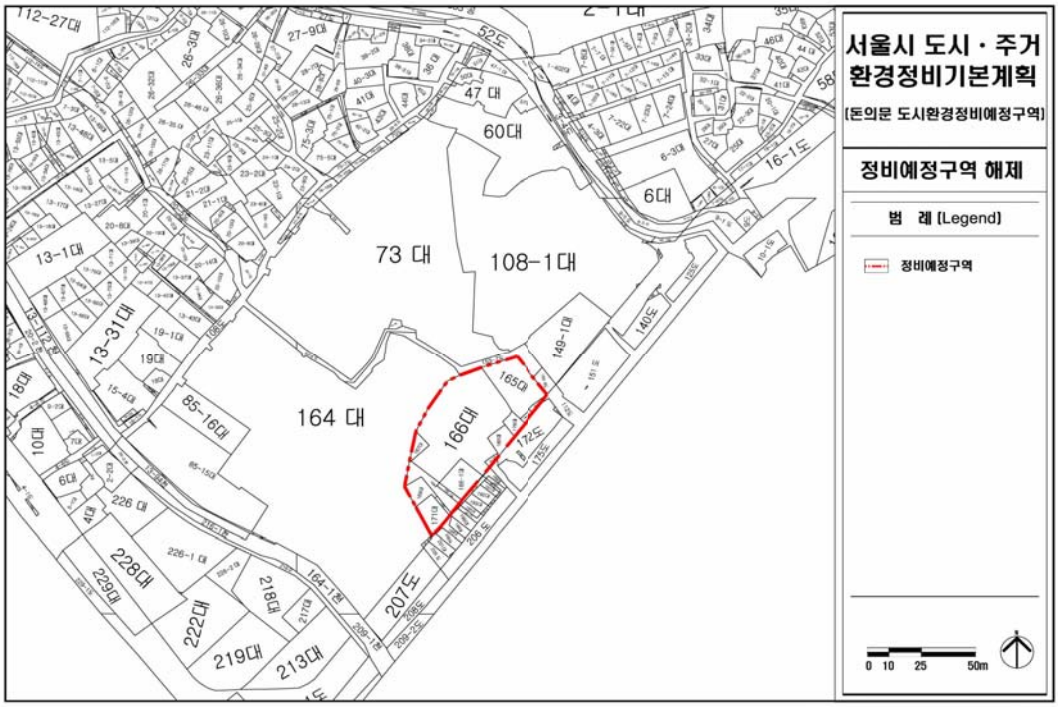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6-18호(1976.01.30.)로 도시계획 업무지구 지정 및 지적승인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5-121호(1985.02.26.)로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 및 업무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 된 강남구 삼성동 일부지역의 공용시설보호지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그 변경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 위치하던 한국전력,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공용 시설보호지구 지정 취지가 상실되고 해당지역에 재정비되는 지구단위계획〔국제교류 복합지구(코엑스 ~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지구단위계획〕으로 연속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 하게 되므로 공용시설보호지구를 폐지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함.

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사항

1 용도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시설 보호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	강남구 삼성동 일부지역	609,800.0	서고 18호 (76.01.30)	-
폐지	-	-	-	-	-	-	-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Ⅳ. 고시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시 도시계획과 (☎02-2133-8333) 및 강남구청 도시계획과(☎3423-611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위치도

청담대교
1.5Km
청담
공원
청담역
국제교류복합지구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
고등학교
500m
서울의료원부지
봉은사
봉은사역
종합
운동장
현대자동차부지
COEX
공용시설보호지구
면적 : 609,800㎡
종합운동장역
舊한국감정원부지
선릉
정릉
삼성역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잠실
우성
아파트
테헤란로(50m)
선릉역
삼성로(30m)
영동대로(70m)
탄천
N
은마
아파트
0 120 300 600m

○ 용도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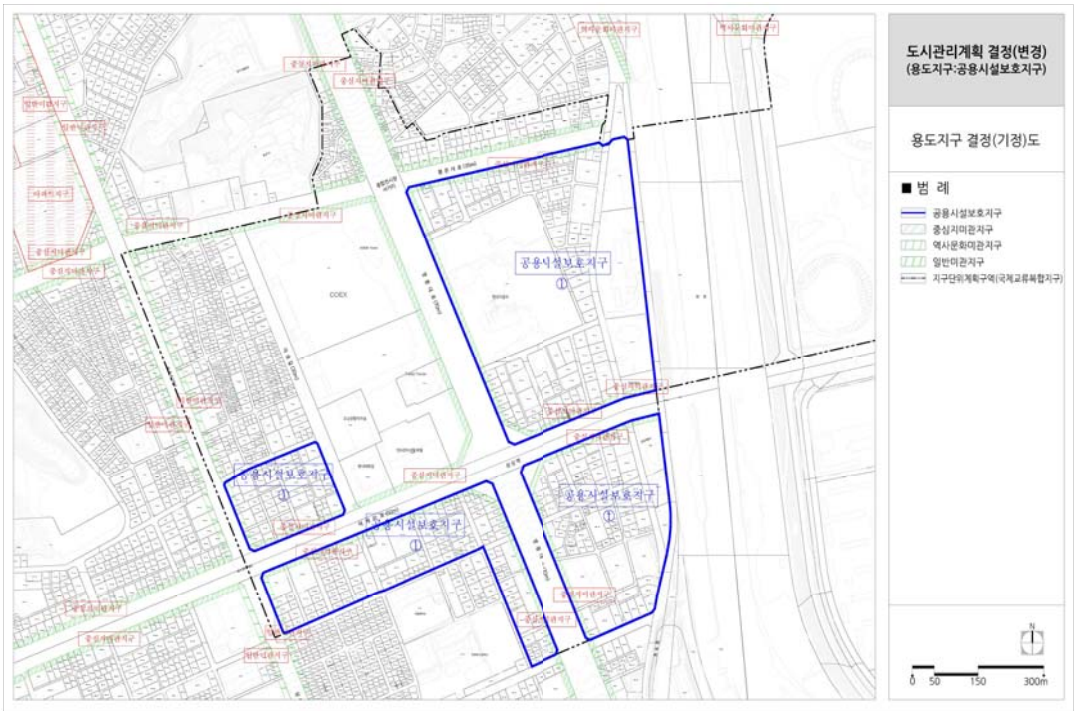

○ 용도지구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9호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72호(2003.11.18.)에 의거 천호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1호(2014.07.31.)에 의거 천호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의제처리)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6호(2014.11.0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1호(2015.10.1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천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강동구 천호동 362-60번지 일대	409,096.3	-	409,096.3	강동구 천호동일대 기성시가지 재정비 및 활성화, 집창촌과 노후 재래시장 정비 등을 통해 신 주거문화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함

2.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09,096.3	-	409,096.3	100.0
획지	소 계	282,822.4	-	282,822.4	69.1
	공동주택용지	45,827.0	-	45,827.0	11.2
	근린생활시설용지	33,348.3	-	33,348.3	8.2
	주상복합용지	27,510.0	-	27,510.0	6.7
	종교용지	453.0	-	453.0	0.1
	존 치	175,684.1	-	175,684.1	42.9
정비기반시설	소 계	126,273.9	-	126,273.9	30.9
	유 수 지	10,626.6	-	10,626.6	2.6
	녹 지	1,881.8	-	1,881.8	0.5
	공공청사	1,437.0	감) 30.8	1,406.2	0.3
	공 원	33,070.9	증) 30.8	33,101.7	8.1
	도 로	79,257.6	-	79,257.6	19.4

※ 천호1구역 측량성과로 인한 변경(30.8㎡,공공청사→공원)

나. 인구·주택수용계획(20,037인 / 8,461세대) : 변경없음

구 분		기존세대수	계획세대수				계획인구수
			소 계	일반분양	임대주택	기존세대	
합 계		6,987	8,461	1,525	170	6,766	20,037
재정비 촉진구역	천호1구역	999	999	882	117	-	2,498
	천호2구역	194	194	162	32	-	485
	천호3구역	502	502	481	21	-	1,255
	소계	1,695	1,695	1,525	170	-	4,238
존치관리구역		5,292	6,766	-	-	6,766	15,799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	공공청사	-	천호동422-1	1,437.0	감)30.8	1,406.2	09.11.26	천호1구역
기정	1	유수지	-	천호동329	10,626.6	-	10,626.6	75.10.7	천호7구역

※ 천호1구역 측량성과로 인한 변경(30.8㎡,공공청사→공원)

라.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	기정	14	천호근린공원	근린공원	천호동360	26,696.8	-	26,696.8	97.1.15	도로중복결정
	기정	21	천사공원	소공원	천호동363-5	1,617.2	-	1,617.2	72.4.22 09.11.26	천호5구역
	변경	47-1	-	소공원	천호동422-1	3,084.2	증)30.8	3,115.0	-	천호1구역
	기정	-	광진공원	어린이공원	천호동 338-19	1,672.7	-	1,672.7	-	천호7구역
녹지	기정	4	녹지	연결녹지	천호동423-96	1,881.8	-	1,881.8	13.12.12	천호3구역

※ 천호1구역 측량성과로 인한 변경(30.8㎡,공공청사→공원)

마. 교통계획 : 변경없음

바. 경관계획 : 변경없음

사.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409,096.3	-	409,096.3	-
재정비 촉진구역		천호1구역	38,508.2	-	38,508.2	-
		천호2구역	10,106.8	-	10,106.8	-
		천호3구역	23,266.4	-	23,266.4	-
존치 지역	존치 관리 구역	천호4구역	15,503.7	-	15,503.7	-
		천호5구역	50,613.5	-	50,613.5	-
		천호6구역	40,201.3	-	40,201.3	-
		천호7구역	117,313.2	-	117,313.2	-
		천호11구역	10,840.9	-	10,840.9	-
		천호12구역	6,402.2	-	6,402.2	-
		천호13구역	24,682.2	-	24,682.2	-
		천호14구역	13,980.4	-	13,980.4	-
	존치시설 등		57,677.5	-	57,677.5	올림픽로, 천호공원 등

아.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 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도서참조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도서참조

3) 존치관리구역 운영지침 : 도서참조

자. 용도지역·지구계획 : 변경없음

1) 용도지역계획

구분		면적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총계		409,096.3	-	409,096.3	-
주거 지역	소계	395,965.3	-	395,965.3	-
	제1종일반주거지역	49,403.9	-	49,403.9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8,205.4	-	138,205.4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106,072.1	-	106,072.1	-
	제3종일반주거지역	74,879.9	-	74,879.9	-
	준주거지역	27,404.0	-	27,404.0	-
상업 지역	소계	13,131.0	-	13,131.0	-
	일반상업지역	13,131.0	-	13,131.0	-

2) 촉진구역별 용도지역계획 : 변경없음

가) 천호1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총계		38,508.2	-	38,508.2	-
주거지역	소계	31,925.2	-	31,925.2	-
	제3종일반주거지역	4,521.2	-	4,521.2	-
	준주거지역	27,404.0	-	27,404.0	-
상업지역	소계	6,583.0	-	6,583.0	-
	일반상업지역	6,583.0	-	6,583.0	-

나) 천호2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총계		10,106.8	-	10,106.8	100.00
주거지역	소계	10,106.8	-	10,106.8	10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0,106.8	-	10,106.8	100.00

다) 천호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총계		23,266.4	-	23,266.4	100.00
주거지역	소계	23,266.4	-	23,266.4	10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950.7	-	1,950.7	8.1
	제2종일반주거지역	21,315.7	-	21,315.7	91.9

3)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천호동355~ 332-2	10,934	456	양측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2호 (2009.11)	-

차. 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구 분	구역명	주 된 용 도	건 폐 율	용적률(%)		높이계획	
				기준	최대 (법적상한)	평균층수 /최고층수	최고높이 (m)
재정비 촉진구역	천호1	공동주택, 판매 · 업무	50%이하	350	518	- / 40	135
	천호2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30%이하	190	300	- / 23	70
	천호3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30%이하	192	250	18 / 21	66

카.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 촉진사업별 비용분담계획(변경)

구분		재정비 촉진구역 ①	계획 기반시설 ②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④	유상매입 시설 ⑤	순부담면적 (㎡) (②-③-④-⑤)	비고
계		71,881.4	22,700.6	1,649.2	6,407.0	-	14,644.4 (20.4%)	
천호1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38,508.2	15,143.4	-	4,969.2	-	10,174.2 (26.4%)	
	변경	38,508.2	15,186.5	-	4,969.2	-	10,217.3 (26.5%)	
천호2재정비촉진구역		10,106.8	3,492.8	1,223.7	184.0	-	2,085.1 (20.6%)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23,266.4	4,021.3	425.5	1,253.8	-	2,342.0 (10.1%)	

※ 계획기반시설내 공공시설 설치 환산면적 포함(천호1, 천호3)

2) 기반시설별 재원조달계획

구분			면적(㎡)	사업비(백만원)			설치주체 및 비용분담		비고
				소계	보상비	공사비	공공 (시,구)	민간	
도로	촉진 구역	천호1구역	6,477.0	43,139	40,689	2,450	-	●	부지는 해당구역 사업시행자가 부담
		천호2구역	3,492.8	21,869	20,788	1,081	-	●	
		천호3구역	891.8	7,339	7,062	277	-	●	
	소로2-16호선		3,730.7	8,809	8,514	295	-	●	천호3구역 부담
	소계		14,592.3	81,156	77,053	4,103	-	-	-
공원 녹지	촉진 구역	천호1구역	3,115.0	19,136	18,690	446	-	●	부지는 해당구역 사업시행자가 부담
		천호3구역	1,881.8	16,614	16,265	349	-	●	
	소계		4,996.8	35,750	34,955	795	-	-	-
공공 청사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19,110.23 (연면적)	42,727	7,379	35,348	-	●	부지는 해당구역 사업시행자가 부담 (공영주차장 포함)

※ 소로2-16호선은 공공(강동구)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시행하되, 사업계획 승인전까지 해당조합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치할 것

타.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구분		합계	분양(부분임대 포함)				임대				
			소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총계		1,695	1,525	626	714	185	170	21	119	30	-
천호1촉진구역	기정	999	882	258	482	142	117	-	99	18	-
	변경	999	882	352	384	146	117	-	99	18	-
천호2촉진구역		194	162	35	106	21	32	-	20	12	-
천호3촉진구역		502	481	239	224	18	21	21	-	-	-

파.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분	사업시기	대상지역	비고
1단계	2005~2019	천호1구역, 천호2구역, 천호3구역	구역별 촉진사업 시행 소로2-16호선 조성
2단계	2009~2022	천호4구역, 천호5구역, 천호6구역, 천호7구역	존치구역 개별사업 추진
기타	2005~2022	기타 존치구역(천호11~14구역)	존치구역 개별사업 추진

※ 단계별 추진계획은 각단계의 총량의 범위 및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조정가능

하.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거. 폐기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너. 방재계획 : 변경없음

더. 정보화계획 : 변경없음

러. 에너지순환계획 : 변경없음

머. 특성화계획 : 변경없음

버. 기타계획 : 변경없음

서.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1) 구역별 정비계획 개요

구 역 명		구역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평균			최고(높이)	
			기준	계획	법적상한	완화	계획	기준	완화	계획	기준	계획
재정비 촉진구역	천호1	38,508.2	50이하	50이하	518이하	518.98	514.98	-	-	-	-	40층(135m)이하
	천호2	10,106.8	30이하	30이하	300이하	264.96	299.56	-	-	-	-	23층(70m)이하
	천호3	23,266.4	30이하	30이하	250이하	221.17	231.68	-	-	18층이하	-	21층(66m)이하

2) 구역별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구분		합계	분양(부분임대 포함)				임대				
			소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총계		1,695	1,525	626	714	185	170	21	119	30	-
천호1촉진구역	기정	999	882	258	482	142	117	-	99	18	-
	변경	999	882	352	384	146	117	-	99	18	-
천호2촉진구역		194	162	35	106	21	32	-	20	12	-
천호3촉진구역		502	481	239	224	18	21	21	-	-	-

3) 정비계획

가)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촉진사업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천호1구역	천호동 423-200번지 일원	38,508.2	-	38,508.2	-

(2) 정비계획

①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38,508.2	-	38,508.2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0,998.2	-	10,998.2	28.6	-
	공공청사	1,437.0	감) 30.8	1,406.2	3.7	-
	도 로	6,477.0	-	6,477.0	16.8	-
	공 원	3,084.2	증) 30.8	3,115.0	8.0	-
택지 (획지)	소 계	27,510.0	-	27,510.0	71.4	-
	획 지 1	27,510.0	-	27,510.0	71.4	-

②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406	20	보조간선 도로	618 (235)	천호동 217-134	천호동 550-6	일반 도로	-	2001. 6. 2.	-
기정	중로	3	7	12~15	집산도로	134 (134)	천호동 417-57	천호동 423-158	일반 도로	-	1969. 1.18.	-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399 (285)	천호동 357-1	천호동 397-16	일반 도로	-	1969. 1.18.	-

㉯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주차장	천호동 422-1	4,521.2	-	4,521.2	2015.10.15	천호1구역 (공원 및 공공청사 지하에 중복결정)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47-1	-	소공원	422-1번지 일원	3,084.2	증)30.8	3,115.0	-	-

※ 측량성과로 인한 변경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	공공청사	천호동422-1	1,437.0	감)30.8	1,406.2	09.11.26	천호1구역

※ 측량성과로 인한 변경

③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천호1재정비 촉진구역	38,508.2	획지1	27,510.0	천호동 423-200번지일원	126	-	22	104	-	-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계	38,508.2	-	27,510.0	-	220,577.42	-	50 이하	518 이하	40층이하 135m
	천호1 재정비 촉진구역		획지 1	27,510.0	천호동 423-200번지일원	220,577.42	공동주택, 판매 및 업무시설	50 이하	518 이하	지하5층~지상40층 135m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임대주택의 건설규모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 임대주택 건립 : (당해구역에 건설하는 주택전체 세대수의 17%)x(당해구역에 건설하는 전체 건축물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비율)로 산정된 비율 이상 · 60㎡ 이하 : 375세대(임대주택 117세대) · 60㎡ 초과 ~ 85㎡이하 : 482세대 · 85㎡ 초과 : 142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획지1(공동주택, 판매 및 업무시설 등)선변 : 3m									
기타사항	- 획지1과 주차장(공영주차장)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조성									
변경	계	38,508.2	-	27,510.0	-	230,515.89	-	50 이하	518 이하	40층이하 135m
	천호1 재정비 촉진구역		획지 1	27,510.0	천호동 423-200번지일원	230,515.89	공동주택, 판매 및 업무시설	50 이하	518 이하	지하5층~지상40층 135m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임대주택의 건설규모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 임대주택 건립 : (당해구역에 건설하는 주택전체 세대수의 17%)x(당해구역에 건설하는 전체 건축물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비율)로 산정된 비율 이상 · 60㎡ 이하 : 469세대(임대주택 117세대) · 60㎡ 초과 ~ 85㎡이하 : 384세대 · 85㎡ 초과 : 146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획지1(공동주택, 판매 및 업무시설 등)선변 : 3m									
기타사항	- 획지1과 주차장(공영주차장)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조성									

주 1)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확정되는 관련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주 2) 획지1은 성인전용시설(성인PC방 사행성게임장, 전화방, 성인용품점 등)을 불허함.

주 3) 보행로와 접한 판매시설 저층부는 3m이상 폭원의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공공보행로를 확보함.

주 4) 필로티부분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의 도입을 권장함.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④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⑤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⑥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분	가 구	면적(㎡)	획지			비고
			구 분	위 치	면적(㎡)	
기정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27,510.0	획지1	천호동 423-200번지일원	27,510.0	-

⑦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연면적(㎡)	세대규모(전용)				비고
					계	60㎡이하	60~85㎡	85㎡초과	
기정	1구역 (획지1)	별도의 획지로 구분하지 않음	별도의 동으로 구분하지 않음	계획 : 7,948.89㎡ (부대복리시설 면적제외)	117	117	-	-	법정 : 115세대
변경	1구역 (획지1)	별도의 획지로 구분하지 않음	별도의 동으로 구분하지 않음	계획 : 7,911.72㎡ (부대복리시설 면적제외)	117	117	-	-	법정 : 114세대

나) 천호2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건축사업) : 변경없음

다)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건축사업) : 변경없음

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총계		409,096.3	-	409,096.3	-
주거지역	소계	395,965.3	-	395,965.3	-
	제1종일반주거지역	49,403.9	-	49,403.9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8,205.4	-	138,205.4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106,072.1	-	106,072.1	-
	제3종일반주거지역	74,879.9	-	74,879.9	-
	준주거지역	27,404.0	-	27,404.0	-
상업지역	소계	13,131.0	-	13,131.0	-
	일반상업지역	13,131.0	-	13,131.0	-

2)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천호동355~332-2	10,934	456	양측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2호 (2009.11)	-

3)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10	25~33	주간선도로	3,000 (456)	풍납동 광로 5	암사동 강변	일반 도로	올림픽로	-	2009.11.30. (서고2009-472)
기정	중로	1	406	20~23	보조간선도로	235	천호동 217-134	천호동 550-6	일반 도로	구천면로	2001.6.2 (서고158) 2006.7.27 (서고2006-264)	구천면로 (천호1구역)
기정	소로	2	16	8	집산도로	549	천호동 367-1	천호동 393-20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399	천호동 357-1	천호동 397-16	일반 도로	-	2006.2.8 (서고제2006-49) 2009.1.2 (서고제2008-508)	천호1 · 2구역
기정	소로	2	44	8	국지도로	150	천호동 337-98	천호동 337-17	일반 도로			천호7구역
기정	중로	2	20	15	집산도로	65	천호동 357-12	천호동 357-1	일반 도로		2005.10.13 (강고2005-59)	존치시설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237	천호동 392-1	천호동 386-19	일반 도로			천호5구역
기정	중로	3	7	12~15	집산도로	134	천호동 417-57	천호동 423-158	일반 도로		1969.1.18	천호1구역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45	천호동 373-2	천호동 373-2	일반 도로			천호13구역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71	천호동 377	천호동 377	일반 도로			천호13구역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08	천호동 358-9	천호동 358-3	일반 도로			천호3구역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06	천호동 373-2	천호동 563-1	일반 도로		2006.2.8 (서고제2006-49)	천호2구역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214	천호동 361	천호동 362-3	일반 도로			천호11구역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73	천호동 357-1	천호동 373-2	일반 도로		2006.2.8 (서고제2006-49)	천호2구역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200	천호동 391-1	천호동 382-13	일반 도로		78.6.1	천호5구역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20	천호동 398-5	천호동 399-50	일반 도로			천호4구역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100	천호동 282-25	천호동 280-15	일반 도로		90.11.12	천호6구역

②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천호동329	7,004.0	-	7,004.0	-	천호7구역
기정	2	주차장	천호동422-1	4,521.2	-	4,521.2	-	천호1구역

나) 공간시설

① 공원·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	기정	14	천호근린공원	근린공원	천호동360	26,696.8	-	26,696.8	97.1.15	도로중복결정
	기정	21	천사공원	소공원	천호동363-5	1,617.2	-	1,617.2	72.4.22 09.11.26	천호5구역
	변경	47-1	-	소공원	천호동422-1	3,084.2	증)30.8	3,115.0	-	천호1구역
	기정	-	광진공원	어린이공원	천호동 338-19	1,672.7	-	1,672.7	-	천호7구역
녹지	기정	4	녹지	연결녹지	천호동423-96	1,881.8	-	1,881.8	13.12.12	천호3구역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	공공청사	-	천호동422-1	1,437.0	감)30.8	1,406.2	09.11.26	천호1구역

라) 방재시설

①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	천호동329	10,626.6	-	10,626.6	75.10.7	천호7구역

3. 관계도서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2) 및 강동구 도시계획과(☎02)3425-605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임] 천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천호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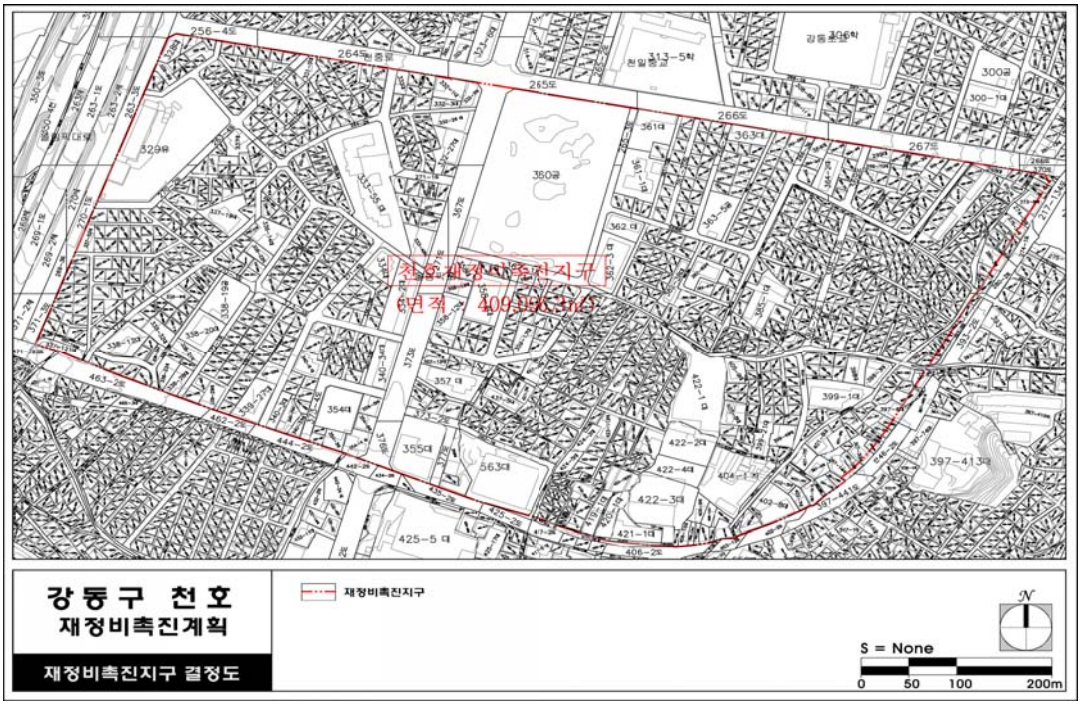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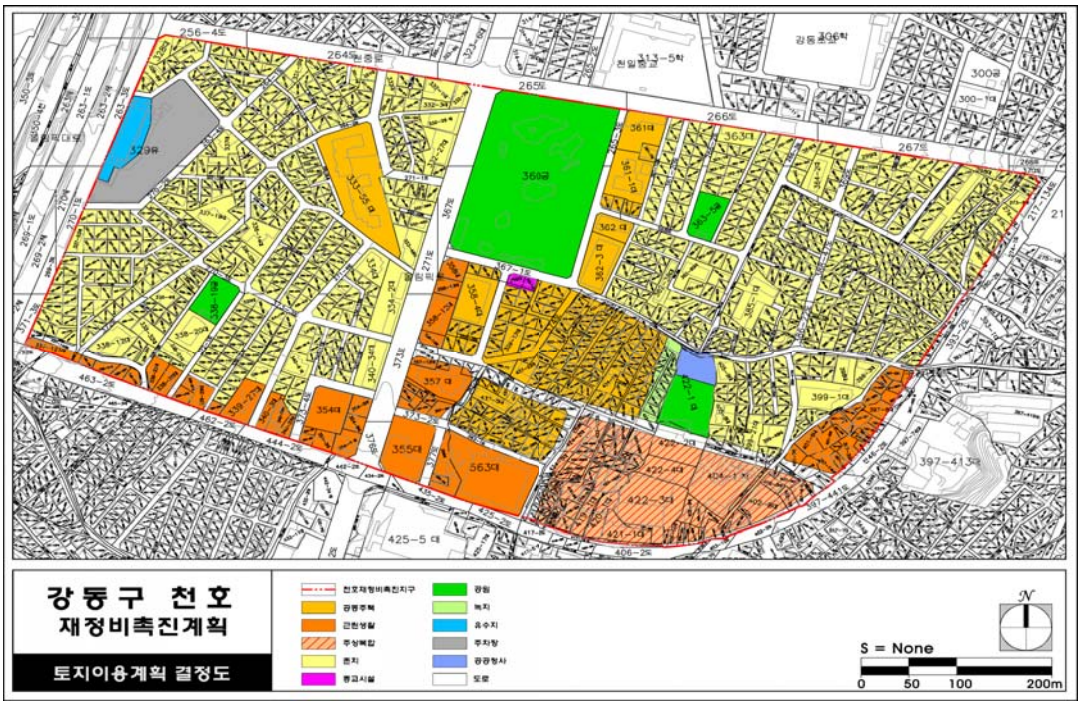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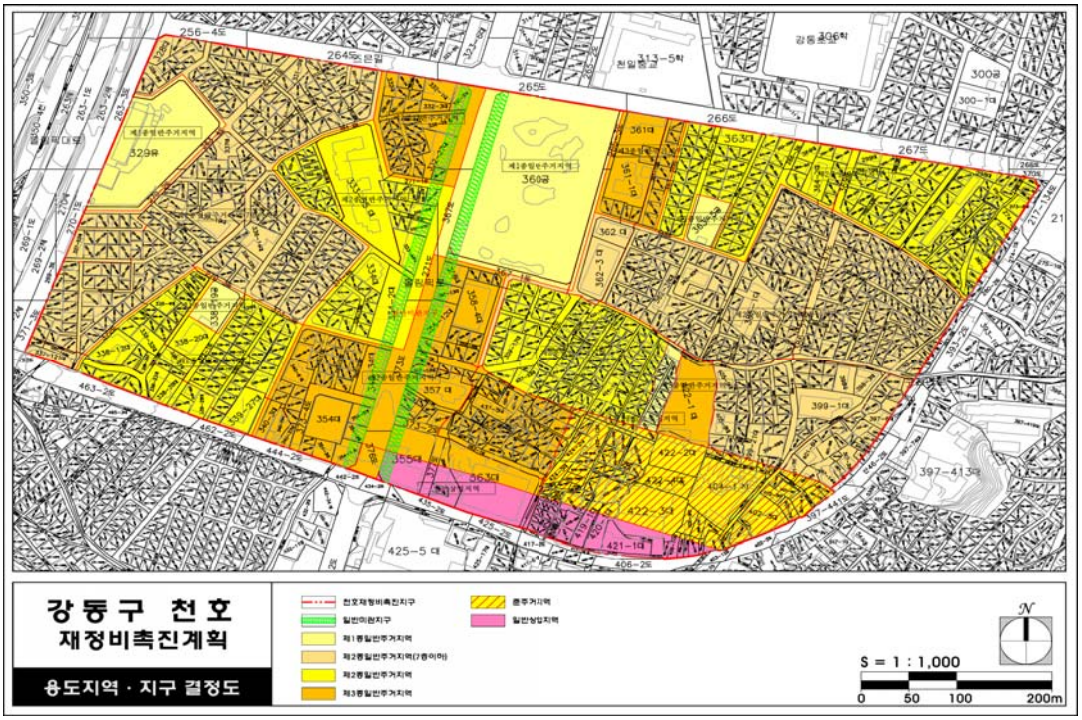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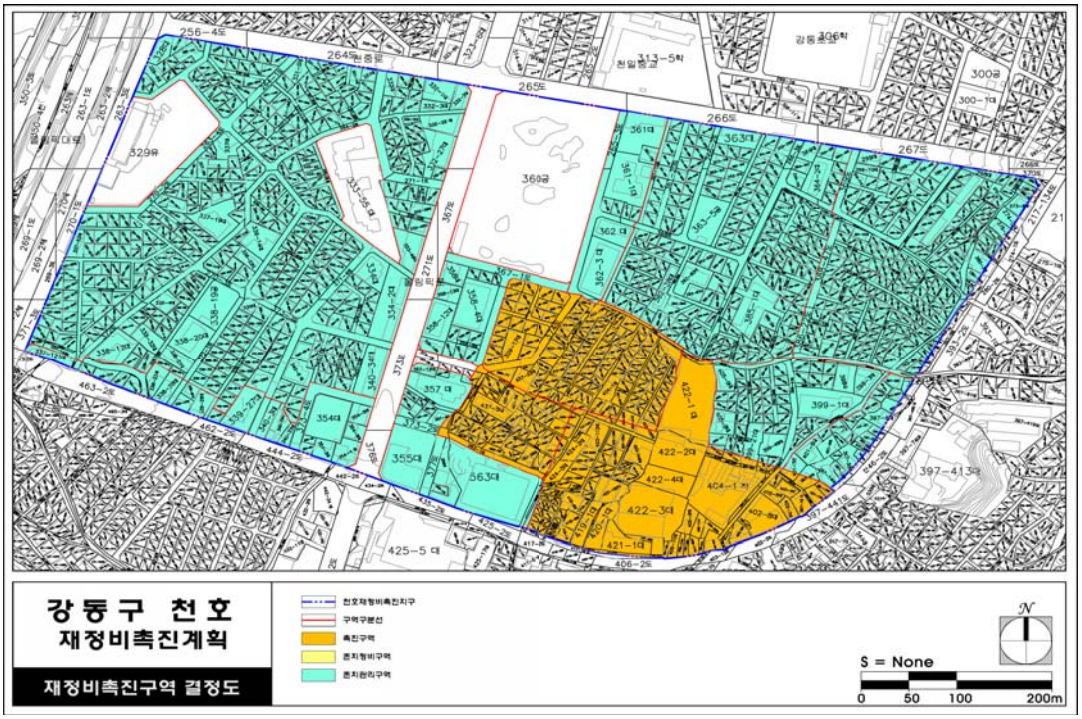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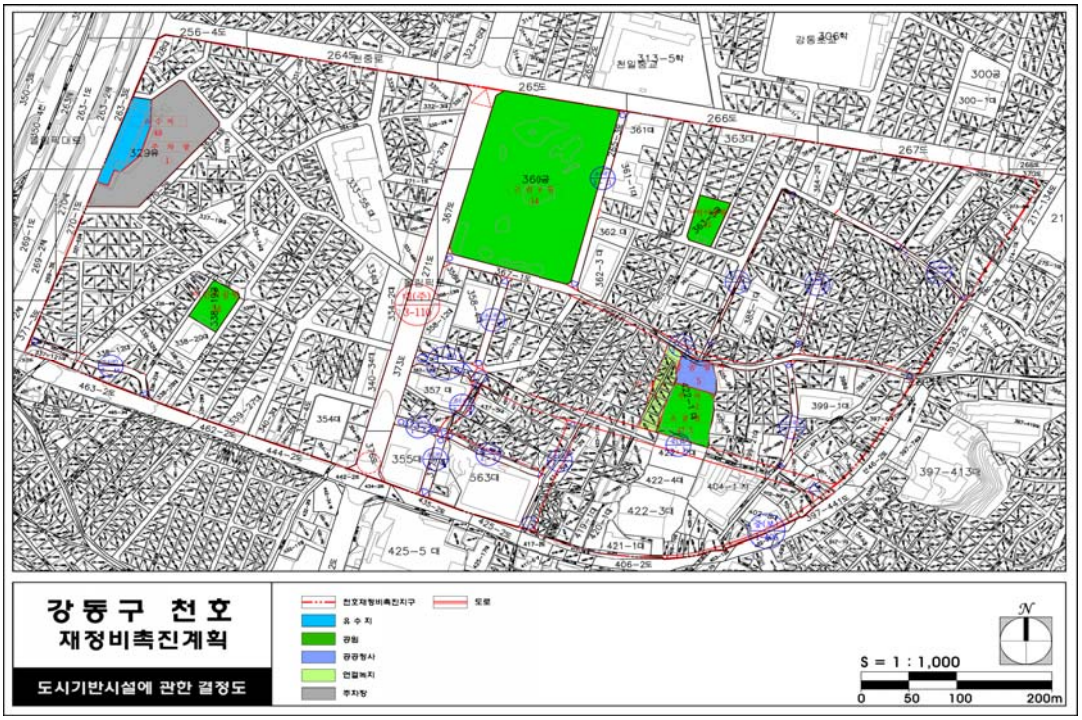

【천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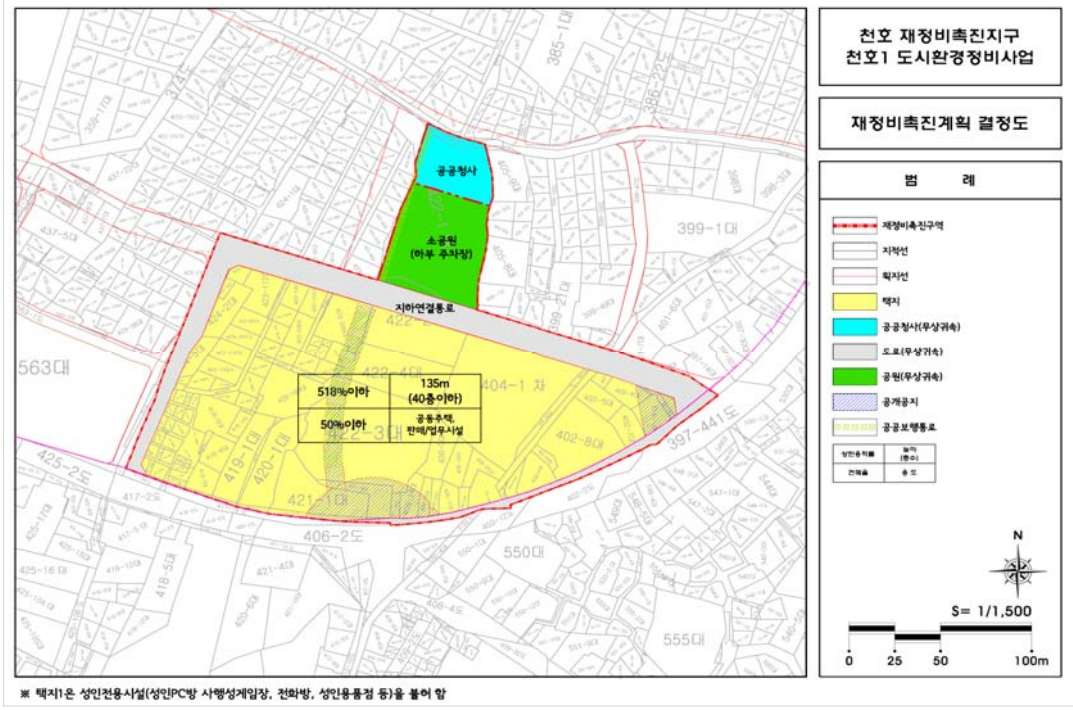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0호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45호로 결정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6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6.8.10.)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2014)」에서 제시한 비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정	①	국제교류복합지구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1,663,652	서 고 제1994-189호 (1994. 6. 7)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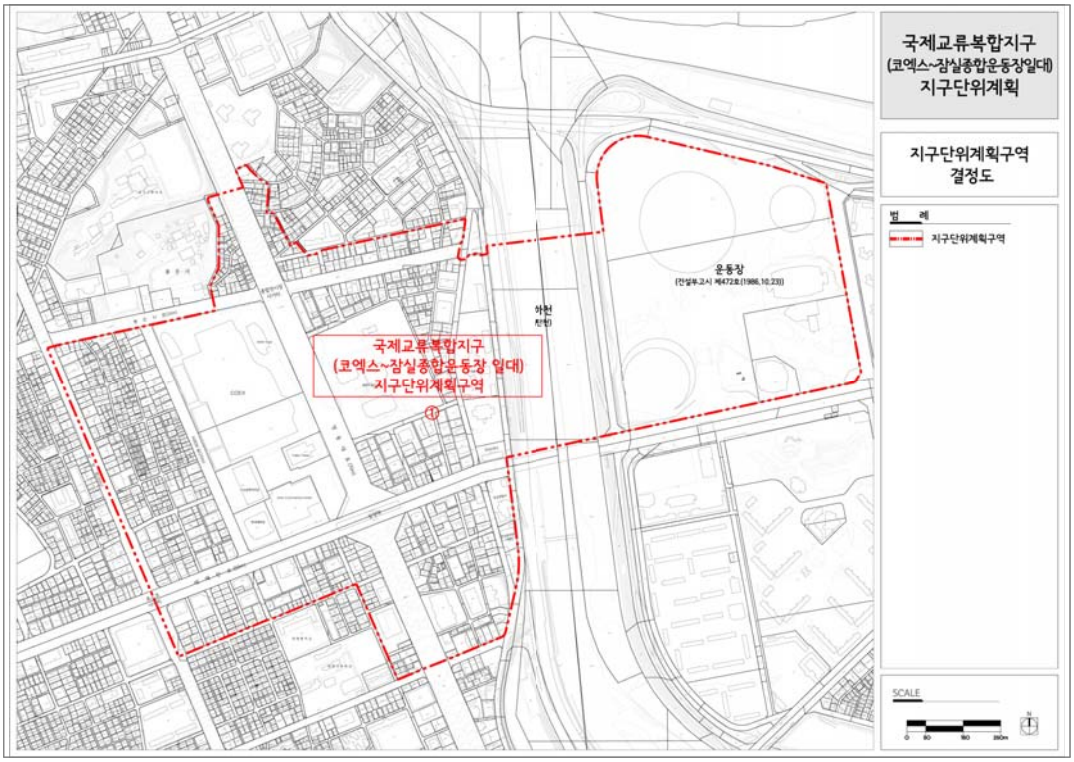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663,652	-	1,663,652	100.0	
주거지역	소계	728,653	-	728,653	43.8	
	제1종일반주거지역	5,230	-	5,230	0.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9,359.1	-	29,359.1	1.8	
	제2종일반주거지역	124,487	-	124,487	7.5	
	제3종일반주거지역	538,033	-	538,033	32.3	
	준주거지역	31,543.9	-	31,543.9	1.9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44,219	-	344,219	20.7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90,780	-	590,780	35.5	

※ 민간부문 시행지침(제11장(가구단위 주민제안에 관한 사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변경 가능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미관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테헤란로	중심지 미관지구	역삼동 822~삼성동 171-3 (삼성동157-31~삼성동171-3)	91,200 (21,600)	3,800 (900)	양측12m	건고 121호 (85. 2.26)	-
기정	②	영동대로 (삼성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삼성동 159~대치동 949-11	26,400	1,100	양측12m	서고 121호 (85. 5. 7)	-
기정	③	영동대로	중심지 미관지구	청담동 130~삼성동 107-11 (삼성동88~삼성동107-11)	29,160 (7,080)	1,250 (325)	양측12m	서고164호 (84. 4.22)	-
기정	④	봉은사로	중심지 미관지구	논현동 200-8~삼성동 110-2 (삼성동145~삼성동110-2)	102,720 (19,320)	4,280 (1,030)	양측12m	서고164호 (84. 4.22)	-
기정	⑤	삼 성 로	일 반 미관지구	청담~대치동 (삼성동145~대치동942-4)	72,168 (9,600)	3,007 (800)	양측12m	서고164호 (82. 4.22)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공용시설보호지구 : 폐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78호('16.9.8))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이하여백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가) 도 로

(1) 도로총괄표

유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71	55,353 (15,815)	1,736,686 (335,964)	5	19,308 (3,555)	774,661 (162,326)	9	9,371 (2,601)	416,292 (77,792)	57	26,674 (9,659)	545,733 (95,846)
광 로	2	11,410 (2,380)	643,100 (146,400)	1	3,630 (1,370)	254,100 (95,900)	1	7,780 (1,010)	389,000 (50,500)	-	-	-
대 로	6	33,503 (4,203)	996,443 (116,581)	2	13,850 (1,565)	484,750 (54,775)	1	662	19,860	3	18,991 (1,976)	491,833 (41,946)
중로	11	3,772 (2,564)	59,375 (35,215)	1	1,750 (542)	35,000 (10,840)	-	-	-	10	2,022	24,375
소로	52	6,668	37,768	1	78	811	7	929	7,432	44	5,661	29,525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2)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기정	광로	1	13	70	주간선도로	3,630 (1,370)	영동대교 남단 (삼성동 88)	광장 86 (대치동 1005-8)	일반 도로	-	건고198호 (71. 4. 7)	영동대로
기정	광로	2	20	50	주간선도로	7,780 (1,010)	광로 21 (대치동 1012-13)	송파동 광로19 (대치동 1012-1)	일반 도로	-	건고324호 (74. 9.24)	테헤란로
기정	대로	1	20	35	보조 간선	4,900 (895)	광로 14 (삼성동 145)	광로 28 (대치동 942-4)	일반 도로	-	건고388호 (84. 9. 25)	삼 성 로
기정	대로	1	21	35	보조 간선	8,950 (670)	광로 21 (삼성동 77-24)	삼성동 3-70 (삼성동 163-1)	일반 도로	-	건고137호 (77. 7. 9)	봉은사로
기정	대로	2	601	30	보조 간선	662	대로 1-21 (삼성동 147-2)	광로 2-1 (삼성동 158-23)	일반 도로	-	-	아 셈 길
기정	대로	3	70	25 (15)	보조 간선	7,500 (880)	청담동 중로1-136 (대로1-21)	대치동 광로2-19 (대치동 998-4대)	일반 도로	-	건고198호 (74. 4. 7)	무동도길
변경	**대로**	**3**	**70**	**25 (15~20)**	**보조 간선**	**7,500 (880)**	**청담동 중로1-136 (대로1-21)**	**대치동 광로2-19 (대치동 998-4대)**	**일반 도로**	**-**	**건고198호 (74. 4. 7)**	**무동도길**
기정	대로	3	192	27	도시 고속도로	9,416 (560)	송파구 장지동 717 (삼성동 186-4)	광진구 노유동 96-4 (삼성동 186-6)	자동차 전용도로	-	서고시 6-43 (99.3.2)	동부간선
기정	대로	3	70	25	-	1,875 (536)	청담동 중1-136 (삼성동 172-2)	대치동 대로1-22 (삼성동 172-69)	-	-	건설부 324 (74.9.24)	탄천서로
기정	중로	1	86	20	-	1,750 (542)	잠실동 중1-136 (잠실동 4)	잠실동 대1-22 (잠실동 4)	-	-	건설부 198 (71.4.8)	탄천동로
기정	중로	3	604	12	집산 도로	232	삼성동 156-5	삼성동 154-13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3**	**604**	**12**	**집산 도로**	**232**	**삼성동 156-5**	**삼성동 154-13**	**보행자 우선도로**	**-**	**-**	**-**
기정	중로	3	605	12	집산 도로	180	삼성동 107대	삼성동 107-7대	일반 도로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기정	중로	3	606	12	집산 도로	201	삼성동 160-18대	삼성동 106-29도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3**	**606**	**12**	**집산 도로**	**201**	**삼성동 160-18대**	**삼성동 106-29도**	**일반도로, 보행자우선도로**	**-**	**-**	**-**
기정	중로	3	607	12	집산 도로	300	삼성동 168	삼성동 170-1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3**	**607**	**12~15**	**집산 도로**	**300**	**삼성동 168**	**삼성동 170-1**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608	12	집산 도로	168	삼성동 168-22	삼성동 168-16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3**	**608**	**12**	**집산 도로**	**168**	**삼성동 168-22**	**삼성동 168-16**	**보행자 우선도로**	**-**	**-**	**-**
기정	중로	3	804	12	집산 도로	135	대치동 942-10	대치동 942-17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805	12	집산 도로	135	대치동 943-19	대치동 943-27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806	12	집산 도로	211	대치동 945-6	대치동 947-7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3**	**806**	**12**	**집산 도로**	**211**	**대치동 945-6**	**대치동 947-7**	**일반도로, 보행자우선도로**	**-**	**-**	**-**
기정	중로	3	807	12	집산 도로	121	대치동 995-16	대치동 995-24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808	12	집산 도로	248	대치동 1001	대치동 999-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601	8	국지 도로	166	삼성동 157-13	삼성동 157-39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2**	**601**	**8**	**국지 도로**	**166**	**삼성동 157-13**	**삼성동 157-39**	**보행자 우선도로**	**-**	**-**	**-**
기정	소로	2	602	8	국지 도로	169	삼성동 169-24	삼성동 169-14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802	8	국지 도로	136	대치동 942	대치동 942-5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2**	**802**	**8**	**국지 도로**	**136**	**대치동 942**	**대치동 942-5**	**보행자 우선도로**	**-**	**-**	**-**
기정	소로	2	803	8	국지 도로	134	대치동 943-1	대치동 943-17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2**	**803**	**8**	**국지 도로**	**134**	**대치동 943-1**	**대치동 943-17**	**보행자 우선도로**	**-**	**-**	**-**
기정	소로	2	804	8	국지 도로	132	대치동 945	대치동 945-30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805	8	국지 도로	72	대치동 949	대치동 949-1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806	8	국지 도로	120	대치동 996-1	대치동 996-15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09	6	국지 도로	511	삼성동 145-4	삼성동 156-7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10	6	국지 도로	496	삼성동 146-2	삼성동 155-15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11	6	국지 도로	231	삼성동 145-19	삼성동 147-16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12	6	국지 도로	231	삼성동 150-19	삼성동 148-16	일반 도로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기정	소로	3	613	6	국지 도로	233	삼성동 156	삼성동 154-9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14	4	국지 도로	98	삼성동169-6	삼성동 169-10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15	4	국지 도로	143	삼성동 153-1	삼성동 153-65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16	4	국지 도로	110	삼성동 157-10	삼성동 157-17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17	4	국지 도로	115	삼성동 158-1	삼성동 158-7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18	4	국지 도로	105	삼성동 158-5	삼성동 158-15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19	6	국지 도로	140	삼성동 77-25	삼성동 77-1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20	4	국지 도로	50	삼성동 77-7	삼성동 77-3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21	4	국지 도로	60	삼성동 77-18	삼성동 77-15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22	6	국지 도로	67	삼성동 90	삼성동 90-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23	4	국지 도로	60	삼성동 90-8	삼성동 90-11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24	6	국지 도로	33	삼성동 91	삼성동 90-1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25	4	국지 도로	57	삼성동 91-28	삼성동 91-4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26	6	국지 도로	54	삼성동 91-34	삼성동 91-24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27	6	국지 도로	61	삼성동 108-14	삼성동 108-6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28	4~6	국지 도로	60	삼성동 109-21	삼성동 109-15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29	6	국지 도로	64	삼성동 109-7	삼성동 109-10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30	4	국지 도로	103	삼성동 160-15	삼성동 160-30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31	6	국지 도로	303	삼성동 165	삼성동 166-8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32	6	국지 도로	211	삼성동 162-13	삼성동 165-15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33	6	국지 도로	310	삼성동 161-17	삼성동 163-3	일반 도로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기정	소로	3	634	6	국지 도로	78	삼성동 165-15	삼성동 164-6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1**	**634**	**10**	**국지 도로**	**78**	**삼성동 165-15**	**삼성동 164-6**	**보행자 우선도로**	**-**	**-**	**-**
기정	소로	3	635	4	국지 도로	108	삼성동 161-13	삼성동 161-15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36	6	국지 도로	68	삼성동 161-7	삼성동 161-8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37	4	국지 도로	134	삼성동 162-22	삼성동 162-15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38	4	국지 도로	67	삼성동 165-12	삼성동 165-10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39	4	국지 도로	180	삼성동 168-21	삼성동 168-29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640	4	국지 도로	105	삼성동169	삼성동 169-5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812	4	국지 도로	115	대치동 944-23	대치동 944-20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813	4	국지 도로	108	대치동 945	대치동 945-7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814	4	국지 도로	88	대치동 945-25	대치동 945-20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815	6	국지 도로	72	대치동 947-5	대치동 947-7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3**	**815**	**6**	**국지 도로**	**72**	**대치동 947-5**	**대치동 947-7**	**보행자 우선도로**	**-**	**-**	**-**
기정	소로	3	816	4	국지 도로	74	대치동 949-14	대치동 949-7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817	4	국지 도로	122	대치동 995-21	대치동 995-25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818	6	국지 도로	240	대치동 1001-1	대치동 999-1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819	6	국지 도로	92	대치동 1005	대치동 1005-4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820	4	국지 도로	95	대치동 1001-6	대치동 1001-1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821	4	국지 도로	71	대치동 1005-2	대치동 1005-5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822	6	국지 도로	270	대치동 1000	대치동 1004-6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823	6	국지 도로	260	대치동 999	대치동 1004-8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824	4	국지 도로	72	대치동 1004-6	대치동 1004-1	일반 도로	-	-	-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70	대로 3-70	•일부구간 확폭	•교통영향평가('16.7) 심의결과 반영
중로 3-607	중로 3-607		
중로 3-604	중로 3-604	•사용형태 변경 -일반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12년 10월 31일)에 따라 '교통처리계획' 내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시기반시설계획에 반영
중로 3-806	중로 3-806		
소로 2-601	소로 2-601		
소로 2-802	소로 2-802		
소로 2-803	소로 2-803		
소로 3-815	소로 3-815		•보행축 연결구간으로 보행 활성화 및 보행자의 안전, 편의 고려
중로 3-608	중로 3-608		
중로 3-606	중로 3-606		
소로 3-634	소로 1-634	•사용형태 변경(일반도로→보행자우선도로) •도로 4m 확폭	•가구 및 획지계획 공동개발 특별지정 기반시설 확충 계획 반영

※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확장)(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45호(2015.5.21.))에 따른 도로 포함 사항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기정	대로	3	192	27	도시고속도로	9,416 (560)	송파구 장지동 717 (삼성동 186-4)	광진구 노유동 96-4 (삼성동 186-6)	자동차전용도로	-	서고시 6-43 (99.3.2)	동부간선
기정	대로	3	70	25	-	1,875 (536)	청담동 중1-136 (삼성동 172-2)	대치동 대로1-22 (삼성동 172-69)	-	-	건설부 324 (74.9.24)	탄천서로
기정	중로	1	86	20	-	1.750 (542)	잠실동 중1-136 (잠실동 4)	잠실동 대1-22 (잠실동 4)	-	-	건설부 198 (71.4.8)	탄천동로

나) 자동차 정류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강남구 삼성동 159-6	13,000.5	-	13,000.5	서고 204호 (85. 3. 26)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가) 광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삼성 제1광장	교통광장	강남구 삼성동 70 일대	23,080 (5,311)	-	23,080 (5,311)	건고 137호 (77. 7. 9)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3) 방재시설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확장)(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45호 (2015.5.21.))에 따른 포함)

가) 하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연장 (㎞)	폭원 (m)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시점	종점					
기정	①	하천 (탄천)	지방하천	성남시계	한강 합류점	8.8 (0.5)	368	2,238,400 (129,756)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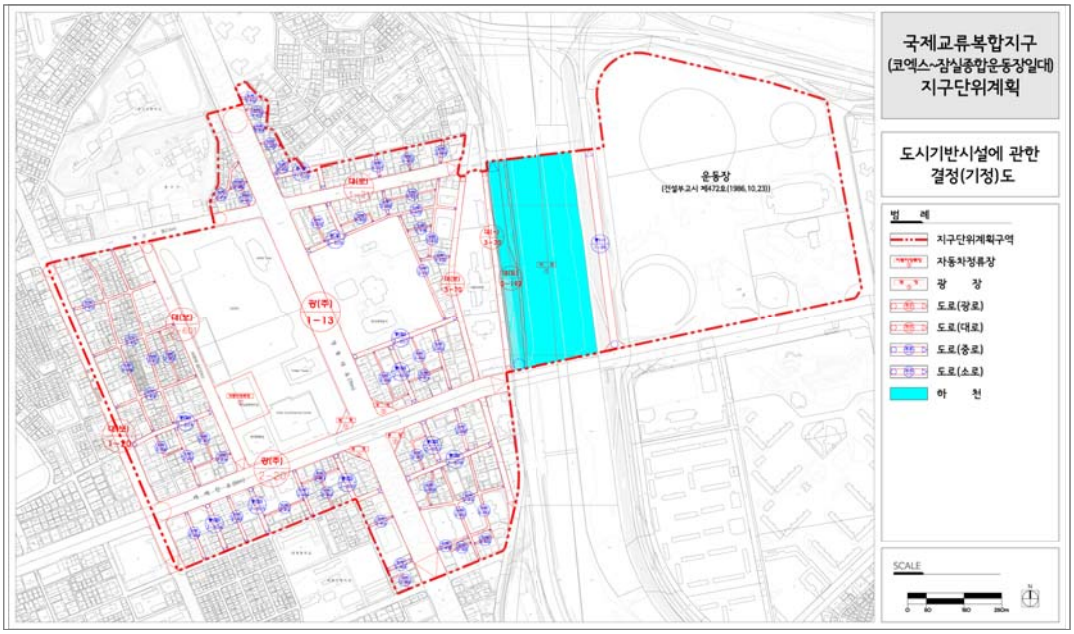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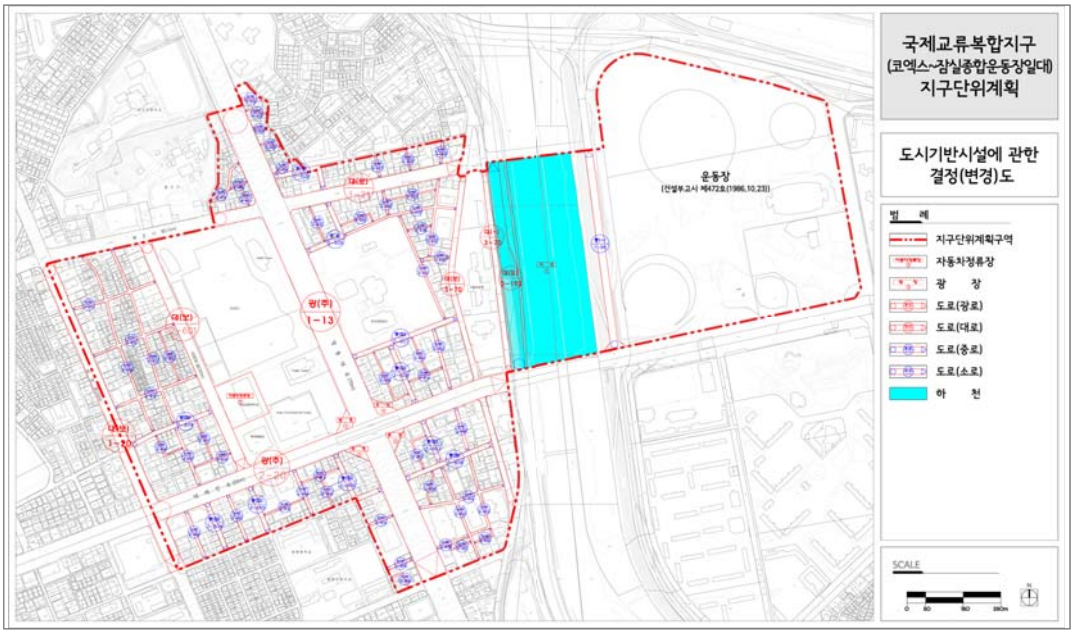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가구		•6m이상 도로로 구획되는 블록을 기준으로 가구를 설정(특별계획구역 제외)	•좌 동	전구역
공동개발	지정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용도지역 및 가로변 위계 등 인근 개발규모와의 조화가 필요한 경우 •기공동개발된 필지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동일소유 필지	•맹지형 필지 또는 부정형/세장형 필지 •주요간선도로변(테헤란로, 영동대로, 봉은사로) 기공동개발/동일소유 필지로, 용도지역 및 가로변 위계 등 인근 개발규모와의 조화가 필요한 경우	-
	권장	•계획적 유도가 필요한 경우	•폐지	-
	특별지정	-	•도로 기반시설 확보 (보행자우선도로변 폭 4m 이상) -적용필지 : 강남구 삼성동 166, 166-1, 166-2, 166-3, 166-4	주보행축 연결구간

※ 공동개발(특별지정)은 보행자우선도로변 폭 4m이상 확폭을 포함하는 경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하여 일부만 공동개발 가능. 그 외 변경은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미적용

2) 최대개발규모(신설)

도면표시	위 치			최대개발규모	비 고
I	업무복합지역	테헤란로변	간선부	6,000㎡	결정도 참조
			이면부	3,000㎡	
		봉은사로변	간선부	3,500㎡	
			이면부	2,000㎡	
II	도심서비스 지역	아셈로이면	간선부	3,500㎡	
			이면부	1,000㎡	
		봉은사로변북측(서측)	간선부	1,000㎡	
			이면부	1,000㎡	
		봉은사로변북측(동측)	간선부	3,000㎡	
			이면부	2,000㎡	

※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획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최대개발규모가 큰 필지의 기준을 적용
※ 최대개발규모 내 개발 시 부지 정형화를 하여야 하며, 부정형 또는 요철형, 세장형(편측 개발) 대지 지양
※ 최대개발규모 초과 기존 필지/대지 예외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동개발	지정 기준 변경 및 권장 폐지	•가로변 위계, 인근 개발규모 및 공동개발 실효성 등 고려 계획적 공동개발 필요 필지에 한해 공동개발(지정) 계획
	특별지정 신설	•주보행축 연결구간내 기반시설 확충 통한 양호한 보행공간 조성 유도
최대개발규모 신설		•최대개발규모내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 및 주변여건에 어울리는 개발규모 유도로 과도한 개발규모 차이 방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	
기정	A1	7,429.0	기정	대치동 942대	3,329.8	-	-
			기정	대치동 942-1대 942-2대 942-7대 942-8대	654.9 676.6 328.4 321.0	1,980.9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유지)
			기정	대치동 942-3대	533.6	-	-
			기정	대치동 942-4주	538.0	-	-
			기정	대치동 942-5대	520.0	-	-
			기정	대치동 942-6대	526.7	-	-
기정	A2	6,938.1	기정	대치동 942-10대	3,575.7	-	-
			기정	대치동 942-13대	840.6	-	-
			기정	대치동 942-15대	420.4	-	-
			기정	대치동 942-16대	426.7	-	-
			기정	대치동 942-17대	413.6	-	-
			기정	대치동 942-18대	420.5	-	-
			기정	대치동 942-19대	420.3	-	-
			기정	대치동 942-20대	420.3	-	-
기정	A3	6,697.6	기정	대치동 943대 943-1대 943-2대 943-3대 943-4대 943-5대 943-6대 943-7대	358.5 373.3 373.3 374.7 374.5 372.9 373.2 374.8	2,975.2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대치동 943-8대	374.9	-	-
			기정	대치동 943-9대	373.4	-	-
			기정	대치동 943-10대	373.2	-	-
			기정	대치동 943-11대	374.7	-	-
			기정	대치동 943-12대	374.8	-	-
			기정	대치동 943-13대	373.1	-	-
			기정	대치동 943-14대	373.3	-	-
			기정	대치동 943-15대	374.9	-	-
			기정	대치동 943-16대	365.9	-	-
			기정	대치동 943-17대	364.2	-	-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	
기정	A4	6,939.8	기정	대치동 943-19대 943-23대	1,678.2 399.3	2,077.5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대치동 943-24대	2,240.9	-	-
			기정	대치동 943-26대	440.5	-	-
			기정	대치동 943-27대	1,310.6	-	-
			기정	대치동 943-29대	440.5	-	-
			기정	대치동 943-30대	429.8	-	-
기정	A5	9,404.4	기정	대치동 944대 944-11대	706.5 66.1	772.6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부정형/세장형 필지 포함)
			기정	대치동 944-1대	3,507.8	-	-
			기정	대치동 944-31대	5,124.0	-	-
기정	A6	5,573.7	기정	대치동 944-20대	405.3	-	-
			기정	대치동 944-21대 944-26대 944-27대 944-28대	827.7 279.1 270.8 232.4	1,610.0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규모 유도)
			변경	대치동 944-21대	827.7	-	•폐지
				대치동 944-26대	279.1	-	
				대치동 944-27대	270.8	-	
				대치동 944-28대	232.4	-	
			기정	대치동 944-22대	1,357.8	-	-
			기정	대치동 944-23대	502.2	-	-
			기정	대치동 944-24대	735.2	-	-
			기정	대치동 944-25대	400.4	-	-
			기정	대치동 944-29대	279.4	-	-
				대치동 944-30대	283.4	-	
기정	A7	4,014.3	기정	대치동 945대	813.2	-	-
			기정	대치동 945-1대	1,129.4	-	-
			기정	대치동 945-2대	633.3	-	-
			기정	대치동 945-3대 945-4대	345.1 343.8	688.9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대치동 945-5대 945-6대 945-7대 945-8대	227.3 201.8 197.0 123.4	749.5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	
기정	A8	4,740.2	기정	대치동 945-20대	571.4	-	-
			기정	대치동 945-21대 대치동 945-22대	270.7 305.5	576.2	•공동개발 권장(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대치동 945-21대**	**270.7**	**-**	**•폐지**
				대치동 945-22대	**305.5**	**-**	
			기정	대치동 945-23대	371.7	-	-
			기정	대치동 945-24대	371.5	-	-
			기정	대치동 945-25대	269.5	-	•단독개발, 합벽건축
				대치동 945-26대	140.8	-	•단독개발, 합벽건축
			변경	대치동 945-25대	269.5	-	•폐지
				대치동 945-26대	140.8	-	
			기정	대치동 945-27대	915.3	-	-
			기정	대치동 945-28대	351.4	-	-
			기정	대치동 945-29대	594.1	-	-
			기정	대치동 945-30대	578.3	-	-
기정	A9	4,682.9	기정	대치동 945-10대	1,813.0	-	-
			기정	대치동 945-11대 945-12대 945-13대 945-14대	652.9 300.6 652.2 192.4	1,798.1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변경	**대치동 945-11대**	**652.9**	**-**	**•폐지**
				대치동 945-12대	**300.6**	**-**	
				대치동 945-13대	**652.2**	**-**	
				대치동 945-14대	**192.4**	**-**	
			기정	대치동 945-15대	581.4	-	-
			기정	대치동 945-16대 945-17대 945-18대	212.6 107.8 170.0	490.4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변경	**대치동 945-16대**	**212.6**	**-**	**•폐지**
				대치동 945-17대	**107.8**	**-**	
				대치동 945-18대	**170.0**	**-**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	
기정	A10	7,602.7	기정	대치동	946대	322.6	-	-
			기정	대치동	946-1대 946-4대 946-8대 946-10대 946-11대 946-19대 946-20대 946-21대	266.8 269.9 554.4 645.6 509.0 423.8 420.9 417.3	3,507.7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대치동	946-12대 946-13대 946-14대	649.9 500.5 650.4	1,800.8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대치동	946-15대	367.7	-	-
			기정	대치동	946-16대	354.8	-	-
			기정	대치동	946-18대	1,249.1	-	-
기정	A11	4,942.2	기정	대치동	947대 947-1대	437.8 362.4	800.2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 유도)
			변경	**대치동**	**947대**	**437.8**	**-**	**•폐지**
				대치동	**947-1대**	**362.4**	**-**	
			기정	대치동	947-2대	719.1	-	-
			기정	대치동	947-3대 947-4대 947-5대 947-6대 947-7대	214.0 248.3 277.1 209.5 2,474.0	3,422.9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A12	8,744.6	기정	대치동	948주 948-1대 948-3대 948-6도 948-7주 948-9주 948-10주 948-11대	8267.1	8267.1	•공동개발 지정
			변경	**대치동**	**948대**	**8267.1**	**-**	**•폐지(필지 합병)**
			기정	대치동	948-2대	477.5	-	-
기정	A13	4,703.4	기정	대치동	949대	576.2	-	-
				대치동	949-1대	852.0	-	-
			기정	대치동	949-3대 949-4대 949-5대 949-6대 949-7대	210.0 222.0 218.8 218.4 412.8	1,282.0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대치동	949-8대	740.7	-	-
				대치동	949-9대	213.8	-	-
				대치동	949-11대	726.8	-	-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대지면적(㎡)	
기정	B1	10,280.7	기정	대치동	995-7대	629.9	-	-
			기정	대치동	995-8대 995-9대 995-10대 995-11대 995-12대 995-13대	568.9 243.5 315.3 710.2 522.8 411.4	2,772.1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대치동	995-14대	1,777.3	-	-
			기정	대치동	995-16대	1,485.8	-	-
			기정	대치동	995-21대 995-22대 995-28대	393.4 355.4 618.1	1,366.9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대치동**	**995-21대**	**393.4**	**-**	**•폐지**
				대치동	**995-22대**	**355.4**	**-**	
				대치동	**995-28대**	**618.1**	**-**	
			기정	대치동	995-23대	458.5	-	-
			기정	대치동	995-24대	359.8	-	-
			기정	대치동	995-25대 995-26대 995-27대	535.9 146.2 248.5	930.6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동일소유)
			변경	**대치동**	**995-25대**	**535.9**	**-**	**•폐지**
				대치동	**995-26대**	**146.2**	**-**	
				대치동	**995-27대**	**248.5**	**-**	
기정	B2	9,448.0	기정	대치동	996대	744.7	-	-
			기정	대치동	996-1대	1,246.5	-	-
			기정	대치동	996-6대 996-7대	573.5 473.6	1,047.1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대치동**	**996-6대**	**573.5**	**-**	**•폐지**
				대치동	**996-7대**	**473.6**	**-**	
			기정	대치동	996-8대	1,162.9	-	-
			기정	대치동	996-9대	309.8	-	-
변경	**B2**	**9,375.2**	기정	대치동	996-10대 996-11도 996-12대 996-13대	287.7 72.8 275.9 259.6	896.0	•공동개발 지정
			변경	**대치동**	**996-12대**	**896.0**	**-**	**•폐지(필지 합병)**
			기정	대치동	996-14대	857.8	-	-
			기정	대치동	996-15대	746.6	-	-
			기정	대치동	996-16대	1,435.2	-	-
			기정	대치동	996-17대	928.6	-	-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	
기정	B3	7,763.5	기정	대치동 997대 997-1대 997-2대 997-3대	656.8 21.1 351.0 367.3	1,396.2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맹지형/부정형 필지 포함)
			기정	대치동 997-4대	1,890.2	-	-
			기정	대치동 997-8대	869.4	-	-
			기정	대치동 997-9대	878.2	-	-
			기정	대치동 997-10대	1,505.1	-	-
			기정	대치동 997-11대	782.3	-	-
			기정	대치동 997-12대 997-13대	143.2 298.9	442.1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대치동 997-12대**	**143.2**	**-**	**•폐지**
				대치동 997-13대	**298.9**	**-**	
기정	B4	11,895.5	기정	대치동 998대	6,664.4	-	-
			기정	대치동 998-1대 998-4대	2,956.0 2,275.1	5,231.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기공동개발)
			변경	**대치동 998-1대**	**2,956.0**	**-**	**•폐지**
				대치동 998-4대	**2,275.1**	**-**	
기정	B5	8,243.7	기정	대치동 1001대	1,807.3	-	-
			기정	대치동 1001-1대	590.2	-	-
			기정	대치동 1001-3대	369.2	-	-
			기정	대치동 1001-4대 1001-5대 1001-6대	413.7 350.1 216.0	979.8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대치동 1001-4대**	**413.7**	**-**	**•폐지**
				대치동 1001-5대	**350.1**	**-**	
				대치동 1001-6대	**216.0**	**-**	
			기정	대치동 1001-8대 1001-9대 1001-10대	603.6 90.2 298.1	991.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대치동 1001-8대**	**603.6**	**-**	**•폐지**
				대치동 1001-9대	**90.2**	**-**	
				대치동 1001-10대	**298.1**	**-**	
			기정	대치동 1001-11대 1001-13대 1001-14대 1001-15대	164.1 300.6 55.1 493.0	1,012.8	•1001-13, 14, 15 공동개발 지정(동일소유, 기공동개발)과 1001-11 공동개발 권장(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대치동 1001-11대**	**164.1**	**-**	**•폐지**
				대치동 1001-13대 1001-14대 1001-15대	**300.6 55.1 493.0**	**848.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맹지형/부정형/세장형필지 포함)**
			기정	대치동 1001-16대	451.5	-	-
			기정	대치동 1001-18대	550.6	-	-
			기정	대치동 1001-20대	678.9	-	-
			기정	대치동 1001-21대 1001-22대 1001-23대 1001-24대	55.8 185.5 77.4 98.2	416.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맹지형/부정형/세장형필지 포함)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	
기정	B6	9,548.6	기정	대치동	1002대	9,548.6	-	-
기정	B7	6,107.0	기정	대치동	1005대	1,609.6	-	
			기정	대치동	1005-8대	564.9	-	
			기정	대치동	1005-2대	217.5	-	-
			기정	대치동	1005-3대	231.3	-	-
			기정	대치동	1005-4대	228.2	-	-
			기정	대치동	1005-5대 1005-6대	852.5 2106.2	2,958.7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B8	6,596.2	기정	대치동	1000대 1000-14대	159.6 96.4	256.0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동일소유)
			변경	**대치동**	**1000대**	**159.6**	**-**	**•폐지**
				대치동	**1000-14대**	**96.4**	**-**	
			기정	대치동	1000-1대	375.7	-	-
			기정	대치동	1000-2대	824.7	-	-
			기정	대치동	1000-3대	1,094.6	-	-
			기정	대치동	1000-4대	381.8	-	-
			기정	대치동	1000-5대	229.4	-	-
			기정	대치동	1000-6대	211.5	-	-
			기정	대치동	1000-7대	430.5	-	-
			기정	대치동	1000-8대 1000-9대	222.9 284.0	506.9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동일소유)
			변경	**대치동**	**1000-8대**	**222.9**	**-**	**•폐지**
				대치동	**1000-9대**	**284.0**	**-**	
			기정	대치동	1000-10대	187.7	-	-
			기정	대치동	1000-12대	2,097.4	-	-
기정	B9	6,776.3	기정	대치동	999대	527.6	-	
			기정	대치동	999-1대	346.1	-	
			기정	대치동	999-2대	699.4	-	-
			기정	대치동	999-3대	649.5	-	-
			기정	대치동	999-4대	687.1	-	-
			기정	대치동	999-5대	576.6	-	-
			기정	대치동	999-6대 999-7대	239.5 686.0	925.5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대치동**	**999-6대**	**239.5**	**-**	**•폐지**
				대치동	**999-7대**	**686.0**	**-**	
			기정	대치동	999-8대	1,192.1	-	-
			기정	대치동	999-9대	334.8	-	-
			기정	대치동	999-10대	508.0	-	-
			기정	대치동	999-11대	157.1	-	-
			기정	대치동	999-12대	172.5	-	-
기정	B10	5,035.4	기정	대치동	1003대	5,035.4	-	-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	
기정	B11	11,767.5	기정	대치동 1004대	5,431.6	-	-
			기정	대치동 1004-1대 대치동 1004-2대 대치동 1004-3대 대치동 1004-4대 대치동 1004-5대 대치동 1004-6대	892.5 910.2 816.0 846.4 846.4 777.0	5,088.5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대치동 1004-8대	935.1	-	-
기정	C1	10,169.2	기정	삼성동 160대	2,648.8	-	-
			기정	삼성동 160-11대	241.2	-	-
			기정	삼성동 160-12대	1,506.2	-	-
			기정	삼성동 160-15대 160-16대	279.9 83.5	363.4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160-28대	724.3	-	-
			기정	삼성동 160-18대	2,122.3	-	-
			기정	삼성동 160-20대	356.5	-	-
			기정	삼성동 160-21대	857.7	-	-
			기정	삼성동 160-22대	324.2	-	-
			기정	삼성동 160-23대	409.2	-	-
기정	C2	10,843.3	기정	삼성동 161대 161-1대	753.9 545.5	1,299.4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61대**	**753.9**	**-**	**•폐지**
				삼성동 161-1대	**545.5**	**-**	
			기정	삼성동 161-2대 161-3대	669.6 629.7	1,299.3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동일소유)
			변경	**삼성동 161-2대**	**1,299.3**	**-**	**•폐지(필지 합병)**
			기정	삼성동 161-4대 161-5대	494.3 477.9	972.2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161-6대 161-7대	742.0 494.5	1,236.5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61-6대**	**742.0**	**-**	**•폐지**
				삼성동 161-7대	**494.5**	**-**	
			기정	삼성동 161-8대	748.3	-	-
			기정	삼성동 161-9대	871.8	-	-
			기정	삼성동 161-10대 161-11대	258.6 228.8	487.4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61-10대**	**258.6**	**-**	•폐지
				삼성동 161-11대	**228.8**	**-**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	
기정	C2		기정	삼성동 161-12대	439.8	-	-
			기정	삼성동 161-13대	792.0	-	-
			기정	삼성동 161-15대 161-16대	531.5 568.8	1,100.3	•공동개발 지정 (기존공동개발, 동일소유)
			변경	**삼성동 161-15대**	**531.5**	**-**	**•폐지**
				삼성동 161-16대	**568.8**	**-**	
			기정	삼성동 161-17대	767.9	-	-
			기정	삼성동 161-18대	393.4	-	-
기정	C3	9,184.8	기정	삼성동 162대	450.8	-	-
			기정	삼성동 162-1대	653.1	-	-
			기정	삼성동 162-2대	589.7	-	-
			기정	삼성동 162-5대 162-4대 162-6대	205.8 94.0 94.6	394.4	•162-4, 6 공동개발 지정과 162-5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62-4대	94.0	-	•폐지
				삼성동 162-5대	205.8	-	
				삼성동 162-6대	94.6	-	
			기정	삼성동 162-7대 162-8대	117.5 211.5	329.0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162-11대	551.4	-	-
			기정	삼성동 162-12대	427.5	-	-
			기정	삼성동 162-13대	348.1	-	-
			기정	삼성동 162-15대 162-16대 162-17대	144.5 110.4 491.0	745.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기공동개발)
			변경	**삼성동 162-15대**	**144.5**	**-**	**•폐지**
				삼성동 162-16대	**110.4**	**-**	
				삼성동 162-17대	**491.0**	**-**	
			기정	삼성동 162-18대	220.7	-	-
			기정	삼성동 162-30대	220.7	-	-
			기정	삼성동 162-19대	419.0	-	-
			기정	삼성동 162-20대 162-21대	205.4 205.3	410.7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규모유도, 기공동개발)
			변경	**삼성동 162-20대**	**205.4**	**-**	**•폐지**
				삼성동 162-21대	**205.3**	**-**	
			기정	삼성동 162-22대	397.2	-	-
			기정	삼성동 162-23대	584.4	-	-
			기정	삼성동 162-24대	418.2	-	-
			기정	삼성동 162-25대 162-28대	673.0 179.0	852.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기공동개발)
			변경	**삼성동 162-25대**	**673.0**	**-**	**•폐지**
				삼성동 162-28대	**179.0**	**-**	
			기정	삼성동 162-29대	617.9	-	-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	
기정	C4	4,443.4	기정	삼성동	163대	513.4	-	-
			기정	삼성동	163-1주 163-2주 163-3대	893.2 379.3 2,657.5	3,930.0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C5	79,341.8	기정	삼성동	167대	79,341.8	-	•특별계획구역(현대자동차부지)
기정	C6	7,189.8	기정	삼성동	165대	366.8	-	-
			기정	삼성동	165-1대	499.5	-	-
			기정	삼성동	165-8대	370.8	-	-
			기정	삼성동	165-2대	909.2	-	-
			기정	삼성동	165-3대	431.8	-	-
			기정	삼성동	165-4대	310.8	-	-
			기정	삼성동	165-5대 165-6대 165-7대	121.4 191.7 195.2	508.3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변경	**삼성동**	**165-5대**	**121.4**	**-**	**•폐지**
				삼성동	**165-6대**	**191.7**	**-**	
				삼성동	**165-7대**	**195.2**	**-**	
			기정	삼성동	165-10대	194.4	-	-
			기정	삼성동	165-11대	963.2	-	-
			기정	삼성동	165-12대	411.3	-	-
			기정	삼성동	165-13대	347.2	-	-
			기정	삼성동	165-14대	1,005.9	-	-
			기정	삼성동	165-15대	575.0	-	-
기정	C7	6,730.7	기정	삼성동	164대	4,351.5	-	-
			기정	삼성동	164-3대	579.8	-	-
			기정	삼성동	164-4대	605.2	-	-
			기정	삼성동	164-5대	588.3	-	-
			기정	삼성동	164-6대	605.9	-	-
기정	C8	7,922.5	기정	삼성동	166대	996.3	-	-
				삼성동	166-1대	748.2	-	-
				삼성동	166-2대	569.8	-	-
				삼성동	166-3대	834.7	-	-
				삼성동	166-4대	757.4	-	-
변경	**C8**	**7,608.5**	**변경**	**삼성동**	**166대**	**996.3**	**901.4**	**•공동개발 특별지정 (주보행축 연결구간 기반시설 확보)**
					166-1대	**748.2**	**666.6**	
					166-2대	**569.8**	**432.4**	**3,592.5**
					166-3대	**834.7**	**-**	
					166-4대	**757.4**	**-**	
			기정	삼성동	166-5대	1,025.8	-	-
			기정	삼성동	166-6대	1,225.5	-	-
			기정	삼성동	166-7대	1,019.7	-	-
			기정	삼성동	166-8대	745.1	-	-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	
기정	C9	15,022.4	기정	삼성동 168대	703.4	-	-
			기정	삼성동 168-1대 168-2대	690.2 620.8	1,311.0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168-3대 168-4대 168-5대	666.4 462.0 663.8	1,792.2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168-6대 168-8대 168-18대 168-19대	405.5 275.3 412.6 649.6	1,743.0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168-12대	1,041.1	-	-
			기정	삼성동 168-16대	475.3	-	-
			기정	삼성동 168-20대	1,119.6	-	-
			기정	삼성동 168-21대	730.8	-	-
			기정	삼성동 168-22대	951.8	-	-
			기정	삼성동 168-23대	1,722.7	-	-
			기정	삼성동 168-26대	1,651.4	-	-
			기정	삼성동 168-27대 168-28대 168-29대	572.1 345.7 130.5	1,048.3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동일소유)
			변경	삼성동 168-27대	572.1	-	•폐지
				삼성동 168-28대	345.7	-	
				삼성동 168-29대	130.5	-	
기정	C10	17,169.5	기정	삼성동 169대	3,208.8	-	-
			기정	삼성동 169-1대	1,020.8	-	-
			기정	삼성동 169-4대 169-5대	237.2 309.3	546.5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69-4대**	**237.2**	**-**	•폐지
				삼성동 169-5대	**309.3**	**-**	
			기정	삼성동 169-6대	859.9	-	-
			기정	삼성동 169-8대 169-24대	1,373.7 1,476.3	2,850.0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동일소유)
			변경	**삼성동 169-8대**	**1,373.7**	**-**	•폐지
				삼성동 169-24대	**1,476.3**	**-**	
			기정	삼성동 169-9대	1,037.0	-	-
			기정	삼성동 169-10대	1,230.1	-	-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대지면적(㎡)	
기정	C10		기정	삼성동	169-11대 169-12대	262.5 938.9	1,201.4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동일소유)
			변경	**삼성동**	**169-11대**	**262.5**	**-**	**•폐지**
				삼성동	**169-12대**	**938.9**	**-**	
			기정	삼성동	169-13대	569.8	-	-
			기정	삼성동	169-14대	1,107.0	-	-
			기정	삼성동	169-25대	488.0	-	-
			기정	삼성동	169-17주 169-18주	808.1 27.5	835.6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부정형/세장형 필지 포함)
			기정	삼성동	169-19대 169-21대 169-22대 169-23대 169-20대	172.6 229.4 386.2 573.7 20.3	1,382.2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부정형/세장형 필지 포함)
기정	C11	10,962.4	기정	삼성동	170대 170-12대	931.8 1,030.4	1,962.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기공동개발)
			변경	**삼성동**	**170대**	**931.8**	**-**	**•폐지**
				삼성동	**170-12대**	**1,030.4**	**-**	
			기정	삼성동	170-1대 170-2대	1,300.1 773.9	2,074.0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C11**	**10,852.2**	**변경**	**삼성동**	**170-1대**	**1,300.1**	**1,189.0**	**•폐지**
				삼성동	**170-2대**	**773.9**	**-**	
			기정	삼성동	170-3대	624.7	-	-
			기정	삼성동	170-4대	495.2	-	-
			기정	삼성동	170-5대	2,152.4	-	-
			기정	삼성동	170-7대	1,096.0	-	-
			기정	삼성동	170-8대	672.4	-	-
			기정	삼성동	170-9대	1,105.9	-	-
			기정	삼성동	170-11대	779.6	-	-
기정	C12	42,532.4	기정	삼성동	171대	8,893.7	31,543.9	•특별계획구역 (서울의료원부지)
				삼성동	171-1대	22,650.2		
			변경	**삼성동**	**171대 171-1대 ①**	**13,791.8**	**31,543.9**	**•특별계획구역 (서울의료원부지)**
				삼성동	**171-1대 ②**	**17,752.1**		
			기정	삼성동	171-2대	10,988.5	-	•특별계획구역 (舊한국감정원부지)
기정	C13	3,380.5	기정	삼성동	171-3대	3,380.5	-	-
변경	**C13**	**3,154.7**	**변경**	**삼성동**	**171-3대**	**3,380.5**	**3,154.7**	-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	
기정	D1	190,386.3	기정	삼성동 159대	87,534.3	148,784.0	•특별계획구역(한국종합무역센타)
			기정	삼성동 159-1대	7,614.0		
			기정	삼성동 159-9대	53,635.7		
			기정	삼성동 159-6대	13,000.5	41,602.3	•특별계획구역(한국종합무역센타남측)
			기정	삼성동 159-7대	10,198.4		
			기정	삼성동 159-8대	18,403.4		
기정	E1	11,543.1	기정	삼성동 145대 145-1대	431.3 643.1	1,074.4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145-2대 145-3대 145-4대	356.8 359.0 358.4	1,074.2	•145-3, 4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과 145-2공동개발 권장(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45-2대**	**356.8**	**-**	**•폐지**
				삼성동 145-3대 145-4대	**359.0 358.4**	**717.4**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145-5대	312.2	-	-
			기정	삼성동 145-7대 145-8대	348.3 1,232.8	1,581.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기정	삼성동 145-9대	1,893.3	-	-
			기정	삼성동 145-10대 145-11대 145-12대	264.1 215.9 287.3	767.3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변경	**삼성동 145-10대**	**264.1**	**-**	**•폐지**
				삼성동 145-11대	**215.9**	**-**	
				삼성동 145-12대	**287.3**	**-**	
			기정	삼성동 145-14대	443.1	-	-
			기정	삼성동 145-16대	491.3	-	-
			기정	삼성동 145-18대	932.9	-	-
			기정	삼성동 145-19대	537.9	-	-
			기정	삼성동 145-20대	430.1	-	-
			기정	삼성동 145-21대	280.9	-	-
			기정	삼성동 145-22대 145-26대	294.9 248.3	543.2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규모유도, 동일소유)
			변경	**삼성동 145-22대**	**294.9**	**-**	**•폐지**
				삼성동 145-26대	**248.3**	**-**	
			기정	삼성동 145-23대	275.1	-	-
			기정	삼성동 145-29대	454.5	-	-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	
기정	E2	7,638.5	기정	삼성동 146 146-1대 146-2대	201.7 118.4 1,424.9	1,745.0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146-5대	406.0	-	-
			기정	삼성동 146-7대	380.1	-	-
			기정	삼성동 146-10대	273.3	-	-
			기정	삼성동 146-11대 146-30대	298.5 201.3	499.8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46-11대 146-30대**	**298.5 201.3**	**499.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맹지형/세장형필지 포함)
			기정	삼성동 146-13대	256.0	-	-
			기정	삼성동 146-14대	252.7	-	-
			기정	삼성동 146-15대	257.6	-	-
			기정	삼성동 146-16대	243.9	-	-
			기정	삼성동 146-17대	216.4	-	-
			기정	삼성동 146-18대	226.7	-	-
			기정	삼성동 146-19대	226.2	-	-
			기정	삼성동 146-20대	226.5	-	-
			기정	삼성동 146-21대	219.5	-	-
			기정	삼성동 146-22대	414.6	-	-
			기정	삼성동 146-23대 146-24대	224.6 311.6	536.2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46-23대**	**224.6**	**-**	•폐지
				삼성동 146-24대	**311.6**	**-**	
			기정	삼성동 146-25대 146-26대	195.9 262.4	458.3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46-25대**	**195.9**	**-**	•폐지
				삼성동 146-26대	**262.4**	**-**	
			기정	삼성동 146-27대 146-28대	231.3 225.5	456.8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46-27대**	**231.3**	**-**	•폐지
				삼성동 146-28대	**225.5**	**-**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	
기정	E3	7,924.6	기정	삼성동 147대	607.3	-	-
			기정	삼성동 147-2대	998.0	-	-
			기정	삼성동 147-3대 147-4대	301.3 201.8	503.1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47-3대**	**301.3**	**-**	**•폐지**
				삼성동 147-4대	**201.8**	**-**	
			기정	삼성동 147-5대 147-6대	199.8 284.3	484.1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47-5대**	**199.8**	**-**	**•폐지**
				삼성동 147-6대	**284.3**	**-**	
			기정	삼성동 147-7대	482.6	-	-
			기정	삼성동 147-8대	181.6	-	-
			기정	삼성동 147-10대 147-17대 147-18대	186.8 1,761.1 763.2	2,711.1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147-11대 147-12대	196.2 159.9	356.1	•공동개발 권장
			변경	**삼성동 147-11대**	**196.2**	**-**	**•폐지**
				삼성동 147-12대	**159.9**	**-**	
			기정	삼성동 147-13대 147-14대	141.0 209.0	350.0	•공동개발 권장
			변경	**삼성동 147-13대**	**141.0**	**-**	**•폐지**
				삼성동 147-14대	**209.0**	**-**	
			기정	삼성동 147-15대 147-16대	543.8 628.2	1,172.0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E4	9,803.8	기정	삼성동 150대	486.4	-	-
			기정	삼성동 150-1대 150-6대	545.8 545.7	1,091.5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150-2대	363.4	-	-
			기정	삼성동 150-3대	362.8	-	-
			기정	삼성동 150-4대	303.6	-	-
			기정	삼성동 150-5대 150-29대	572.9 572.7	1,145.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기공동개발)
			변경	**삼성동 150-5대**	**572.9**	**-**	**•폐지**
				삼성동 150-29대	**572.7**	**-**	
			기정	삼성동 150-7대	1,034.5	-	-
			기정	삼성동 150-10대	293.3	-	-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	
기정	E4		기정	삼성동 150-11대	222.1	-	-
			기정	삼성동 150-12대	224.1	-	-
			기정	삼성동 150-14대	217.3	-	-
			기정	삼성동 150-15대	222.2	-	-
			기정	삼성동 150-17대	281.2	-	-
			기정	삼성동 150-19대	644.6	-	-
			기정	삼성동 150-20대	628.5	-	-
			기정	삼성동 150-21대	229.8	-	-
			기정	삼성동 150-22대 150-23대	200.6 95.0	295.6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50-22대 150-23대**	**200.6 95.0**	**295.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맹지형/세장형필지 포함)**
			기정	삼성동 150-24대	254.4	-	-
			기정	삼성동 150-25대	277.4	-	-
			기정	삼성동 150-30대	1,034.6	-	-
기정	E5	7,793.6	기정	삼성동 149대	424.2	-	-
			기정	삼성동 149-1대	297.8	-	-
			기정	삼성동 149-2대	256.2	-	-
			기정	삼성동 149-3대	250.9	-	-
			기정	삼성동 149-4대	194.5	-	-
			기정	삼성동 149-5대	196.7	-	-
			기정	삼성동 149-6대	192.1	-	-
			기정	삼성동 149-8대	206.2	-	-
			기정	삼성동 149-10대	175.3	-	-
			기정	삼성동 149-11대	504.9	-	-
			기정	삼성동 149-12대	195.5	-	-
			기정	삼성동 149-13대	259.8	-	-
			기정	삼성동 149-15대	269.0	-	-
			기정	삼성동 149-16대	226.0	-	-
			기정	삼성동 149-17대	173.8	-	-
			기정	삼성동 149-18대	206.9	-	-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	
기정	E5		기정	삼성동	149-19대 149-33대	322.6 166.4	489.0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규모유도, 동일소유)
			변경	**삼성동**	**149-19대**	**322.6**	**-**	•폐지
				삼성동	**149-33대**	**166.4**	**-**	
			기정	삼성동	149-20대	359.9	-	-
			기정	삼성동	149-21대	397.2	-	-
			기정	삼성동	149-22대	298.9	-	-
			기정	삼성동	149-23대	239.2	-	-
			기정	삼성동	149-24대 149-25대	294.3 226.8	521.1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변경	**삼성동**	**149-24대**	**294.3**	**-**	•폐지
				삼성동	**149-25대**	**226.8**	**-**	
			기정	삼성동	149-26대	161.9	-	-
			기정	삼성동	149-27대	172.4	-	-
			기정	삼성동	149-28대	171.5	-	-
			기정	삼성동	149-29대	353.3	-	-
			기정	삼성동	149-30대 149-31대	190.1 132.8	322.9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49-30대**	**190.1**	**-**	•폐지
				삼성동	**149-31대**	**132.8**	**-**	
기정	E6	9,108.2	기정	삼성동	148대	635.2	-	-
			기정	삼성동	148-1대 148-2대 148-3대 148-4대 148-5대 148-6대 148-7대 148-8대 148-11대	1,329.9 780.7 549.9 363.9 337.3 414.8 472.3 662.2 689.0	5,600.0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기정	삼성동	148-9대 148-10대	429.9 431.4	861.3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148-12대	254.8	-	-
			기정	삼성동	148-13대	295.1	-	-
			기정	삼성동	148-14대	529.3	-	-
			기정	삼성동	148-15대 148-16대	310.0 622.5	932.5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	
기정	E7	9,831.6	기정	삼성동	151-1대	673.3	-	-
			기정	삼성동	151-2대	1,173.8	-	-
			기정	삼성동	151-4대	533.8	-	-
			기정	삼성동	151-5대	599.4	-	-
			기정	삼성동	151-6대	661.0	-	-
			기정	삼성동	151-7대 151-11도 151-12대 151-13대	2,411.6 102.2 165.5 180.7	2,860.0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151-18대 151-26대	324.5 254.3	578.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기공동개발)
			변경	**삼성동**	**151-18대**	**324.5**	**-**	**•폐지**
				삼성동	**151-26대**	**254.3**	**-**	
			기정	삼성동	151-19대	442.5	-	-
			기정	삼성동	151-20대	292.5	-	-
			기정	삼성동	151-21대	434.3	-	-
			기정	삼성동	151-23대	414.5	-	-
			기정	삼성동	151-27대 151-28대	327.0 325.9	652.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변경	**삼성동**	**151-27대**	**327.0**	**-**	**•폐지**
				삼성동	**151-28대**	**325.9**	**-**	
			기정	삼성동	151-29대	414.3	-	-
기정	E8	8,714.9	기정	삼성동	152대	284.9	-	-
			기정	삼성동	152-2대 152-7대	72.6 77.1	149.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기공동개발)
			변경	**삼성동**	**152-2대**	**72.6**	**-**	**•폐지**
				삼성동	**152-7대**	**77.1**	**-**	
			기정	삼성동	152-3대 152-6대	66.6 70.0	136.6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52-3대**	**66.6**	**-**	**•폐지**
				삼성동	**152-6대**	**70.0**	**-**	
			기정	삼성동	152-4대	139.1	-	-
			기정	삼성동	152-9대 152-14대	77.3 69.0	146.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기공동개발)
			변경	**삼성동**	**152-9대**	**77.3**	**-**	**•폐지**
				삼성동	**152-14대**	**69.0**	**-**	
			기정	삼성동	152-10대 152-13대	70.2 65.9	136.1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52-10대**	**70.2**	**-**	**•폐지**
				삼성동	**152-13대**	**65.9**	**-**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	
기정	E8		기정	삼성동	152-11대	139.1	-	-
			기정	삼성동	152-16대	142.1	-	-
			기정	삼성동	152-17대 152-20대	68.7 65.4	134.1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52-17대**	**68.7**	**-**	•폐지
				삼성동	**152-20대**	**65.4**	**-**	
			기정	삼성동	152-18대 152-19대	72.5 68.6	141.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기공동개발)
			변경	**삼성동**	**152-18대**	**72.5**	**-**	•폐지
				삼성동	**152-19대**	**68.6**	**-**	
			기정	삼성동	152-23대 152-24대	66.5 67.4	133.9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52-23대**	**66.5**	**-**	•폐지
				삼성동	**152-24대**	**67.4**	**-**	
			기정	삼성동	152-25대 152-26대	74.6 72.1	146.7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52-25대**	**74.6**	**-**	•폐지
				삼성동	**152-26대**	**72.1**	**-**	
			기정	삼성동	152-27대	136.9	-	-
			기정	삼성동	152-30대 152-35대	67.9 71.3	139.2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52-30대**	**67.9**	**-**	•폐지
				삼성동	**152-35대**	**71.3**	**-**	
			기정	삼성동	152-31대 152-34대	65.7 67.2	132.9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52-31대**	**65.7**	**-**	•폐지
				삼성동	**152-34대**	**67.2**	**-**	
			기정	삼성동	152-32대 152-33대	74.2 75.2	149.4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52-32대**	**74.2**	**-**	•폐지
				삼성동	**152-33대**	**75.2**	**-**	
			기정	삼성동	152-37대 152-42대	60.8 70.9	131.7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52-37대**	**60.8**	**-**	•폐지
				삼성동	**152-42대**	**70.9**	**-**	
			기정	삼성동	152-38대 152-41대	64.0 71.9	135.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기공동개발)
			변경	**삼성동**	**152-38대**	**64.0**	**-**	•폐지
				삼성동	**152-41대**	**71.9**	**-**	
			기정	삼성동	152-39대 152-40대	71.6 76.7	148.3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52-39대**	**71.6**	**-**	•폐지
				삼성동	**152-40대**	**76.7**	**-**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대지면적(㎡)	
기정	E8		기정	삼성동	152-44대 152-49대	64.3 65.4	129.7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규모 유도)
			변경	**삼성동**	**152-44대**	**64.3**	**-**	**•폐지**
				삼성동	**152-49대**	**65.4**	**-**	
			기정	삼성동	152-45대 152-48대	71.5 66.4	137.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기공동개발)
			변경	**삼성동**	**152-45대**	**71.5**	**-**	**•폐지**
				삼성동	**152-48대**	**66.4**	**-**	
			기정	삼성동	152-46대 152-47대	76.2 97.1	173.3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규모 유도)
			변경	**삼성동**	**152-46대**	**76.2**	**-**	**•폐지**
				삼성동	**152-47대**	**97.1**	**-**	
			기정	삼성동	152-51대	227.5	-	-
			기정	삼성동	152-52대	180.8	-	-
			기정	삼성동	152-54대	256.3	-	-
			기정	삼성동	152-55대	257.6	-	-
			기정	삼성동	152-56대	252.9	-	-
			기정	삼성동	152-57대	237.8	-	-
			기정	삼성동	152-58대	233.3	-	-
			기정	삼성동	152-59대	237.8	-	-
			기정	삼성동	152-60대	1,153.8	-	-
			기정	삼성동	152-61대	343.1	-	-
			기정	삼성동	152-62대	343.2	-	-
			기정	삼성동	152-64대	278.0		-
			기정	삼성동	152-67대	476.6	-	-
기정	E9	13,237.6	기정	삼성동	153대 153-3대 153-4대	331.8 302.1 319.0	952.9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동일소유)
			변경	**삼성동**	**153대**	**331.8**	**-**	**•폐지**
				삼성동	**153-3대**	**302.1**	**-**	
				삼성동	**153-4대**	**319.0**	**-**	
			기정	삼성동	153-1대	320.6	-	-
			기정	삼성동	153-2대	278.4	-	-
			기정	삼성동	153-5대	279.6	-	-
			기정	삼성동	153-6대	236.0	-	-
			기정	삼성동	153-7대 153-8대	247.5 208.1	455.6	•공동개발 권장
			변경	**삼성동**	**153-7대**	**247.5**	**-**	**•폐지**
				삼성동	**153-8대**	**208.1**	**-**	
			기정	삼성동	153-9대 153-10대	208.6 246.2	454.8	•공동개발 권장
			변경	**삼성동**	**153-9대**	**208.6**	**-**	**•폐지**
				삼성동	**153-10대**	**246.2**	**-**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	
기정	E9		기정	삼성동	153-11대	234.4	-	-
			기정	삼성동	153-12대	221.5	-	-
			기정	삼성동	153-13대	290.2	-	-
			기정	삼성동	153-14대 153-15대	257.7 189.2	446.9	•공동개발 권장
			변경	**삼성동**	**153-14대**	**257.7**	**-**	**•폐지**
				삼성동	**153-15대**	**189.2**	**-**	
			기정	삼성동	153-16대	193.4	-	-
			기정	삼성동	153-17대	191.8	-	-
			기정	삼성동	153-19대	209.6	-	• 단독개발
			기정	삼성동	153-20대	151.4	-	• 단독개발
			기정	삼성동	153-21대 153-22대 153-24대 153-25대	18.4 3.6 159.8 253.0	434.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부정형/세장형필지 포함)
			기정	삼성동	153-23대 153-65대	202.2 202.3	404.5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변경	**삼성동**	**153-23대**	**202.2**	**-**	**•폐지**
				삼성동	**153-65대**	**202.3**	**-**	
			기정	삼성동	153-28대	402.7	-	-
			기정	삼성동	153-29대	383.6	-	-
			기정	삼성동	153-30대 153-34대	141.1 172.6	313.7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53-30대**	**141.1**	**-**	**•폐지**
				삼성동	**153-34대**	**172.6**	**-**	
			기정	삼성동	153-31대 153-32대	225.4 157.7	383.1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53-31대**	**225.4**	**-**	**•폐지**
				삼성동	**153-32대**	**157.7**	**-**	
			기정	삼성동	153-33대	379.6	-	-
			기정	삼성동	153-35대 153-36대 153-37대 153-42대	180.5 154.3 182.6 197.5	714.9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53-35대 153-36대 153-37대 153-42대**	**180.5 154.3 182.6 197.5**	**714.9**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153-38대	379.1	-	-
			기정	삼성동	153-39대 153-41대	131.0 119.5	250.5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53-39대**	**131.0**	**-**	**•폐지**
				삼성동	**153-41대**	**119.5**	**-**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대지면적(㎡)	
기정	E9		기정	삼성동 153-43대	221.2	444.0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153-44대	222.8		
			변경	**삼성동 153-43대**	**221.2**	**-**	**•폐지**
				삼성동 153-44대	**222.8**	**-**	
			기정	삼성동 153-53대	231.1	480.0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153-54대	248.9		
			변경	**삼성동 153-53대**	**231.1**	**-**	**•폐지**
				삼성동 153-54대	**248.9**	**-**	
			기정	삼성동 153-55대	280.2	518.6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153-61대	118.5		
				153-62대	119.9		
			기정	삼성동 153-63대	237.3	-	-
			기정	삼성동 153-45대	120.5	263.7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153-46대	143.2		
			변경	**삼성동 153-45대**	**120.5**	**-**	**•폐지**
				삼성동 153-46대	**143.2**	**-**	
			기정	삼성동 153-47대	156.6	289.6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153-48대	133.0		
			변경	**삼성동 153-47대**	**156.6**	**-**	**•폐지**
				삼성동 153-48대	**133.0**	**-**	
			기정	삼성동 153-51대	123.4	228.4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규모유도, 동일소유)
				153-52대	105.0		
			변경	**삼성동 153-51대**	**123.4**	**-**	**•폐지**
				삼성동 153-52대	**105.0**	**-**	
			기정	삼성동 153-56대	223.2	385.6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153-57대	162.4		
			변경	**삼성동 153-56대**	**223.2**	**-**	**•폐지**
				삼성동 153-57대	**162.4**	**-**	
			기정	삼성동 153-58대	90.1	-	-
			기정	삼성동 153-59대	93.0	-	-
			기정	삼성동 153-60대	189.0	-	-
			기정	삼성동 153-64대	290.2	-	-
기정	E10	6,360.4	기정	삼성동 156대	555.7	1,741.7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156-1대	251.5		
				156-2대	683.0		
				156-15대	251.5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	
기정	E10		기정	삼성동	156-3대 156-4대	485.7 484.7	970.4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156-5대 156-6대	462.8 452.7	915.5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56-5대	462.8	-	•폐지
				삼성동	156-6대	452.7	-	
			기정	삼성동	156-7대	1053.2	-	-
			기정	삼성동	156-8대 156-9대	237.7 234.3	472.0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56-8대**	**237.7**	**-**	**•폐지**
				삼성동	**156-9대**	**234.3**	**-**	
			기정	삼성동	156-11대	234.2	-	-
			기정	삼성동	156-12대	242.1	-	-
			기정	삼성동	156-13대	660.5	-	-
기정	E11	5,275.6	기정	삼성동	155대 155-1대	330.8 335.3	666.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변경	**삼성동**	**155대**	**330.8**	**-**	**•폐지**
				삼성동	**155-1대**	**335.3**	**-**	
			기정	삼성동	155-2대	189.7	-	-
			기정	삼성동	155-16대	188.9	-	-
			기정	삼성동	155-17대	200.5	-	-
			기정	삼성동	155-3대	608.3	-	-
			기정	삼성동	155-4대 155-5대	328.5 511.7	840.2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55-4대**	**328.5**	**-**	**•폐지**
				삼성동	**155-5대**	**511.7**	**-**	
			기정	삼성동	155-6대 155-7대 155-20대	252.6 217.8 165.2	635.6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55-6대**	**252.6**	**-**	**•폐지**
				삼성동	**155-7대**	**217.8**	**-**	
				삼성동	**155-20대**	**165.2**	**-**	
			기정	삼성동	155-8대 155-9대 155-18대 155-19대	177.0 158.9 326.9 237.1	899.9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55-8대**	**177.0**	**-**	**•폐지**
				삼성동	**155-9대**	**158.9**	**-**	
				삼성동	**155-18대**	**326.9**	**-**	
				삼성동	**155-19대**	**237.1**	**-**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	
기정	E11		기정	삼성동	155-10대 155-11대	182.5 114.0	296.5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55-10대**	**182.5**	**-**	**•폐지**
				삼성동	**155-11대**	**114.0**	**-**	
			기정	삼성동	155-12대	235.5	-	-
			기정	삼성동	155-13대 155-14대 155-15대	321.0 89.3 104.1	514.4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변경	**삼성동**	**155-13대**	**321.0**	**-**	**•폐지**
				삼성동	**155-14대**	**89.3**	**-**	
				삼성동	**155-15대**	**104.1**	**-**	
기정	E12	9,674.5	기정	삼성동	154대	185.2	-	-
			기정	삼성동	154-1대 154-5대	317.0 937.5	1,254.5	•공동개발 지정
			변경	**삼성동**	**154-1대**	**317.0**	**-**	**•폐지**
				삼성동	**154-5대**	**937.5**	**-**	
			기정	삼성동	154-2대	287.4	-	-
			기정	삼성동	154-3대	534.4	-	-
			기정	삼성동	154-8대	462.7	-	-
			기정	삼성동	154-9대	1,030.0	-	-
			기정	삼성동	154-10대	662.2	-	-
			기정	삼성동	154-11대 154-12대	590.7 600.1	1,190.8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동일소유)
				삼성동	154-13대 154-14대 154-15대	253.0 302.7 297.0	852.7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54-11대 154-12대 154-14대**	**590.7 600.1 302.7**	**1,493.5**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삼성동	**154-13대**	**253.0**	**-**	**•폐지**
				삼성동	**154-15대**	**297.0**	**-**	
			기정	삼성동	154-16대	1,354.5	-	-
			기정	삼성동	154-17대	1,284.6	-	-
			기정	삼성동	154-18대	431.1	-	-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	
기정	E13	19,598.7	기정	삼성동	157대	1,065.2	-	-
			기정	삼성동	157-1대 157-2대 157-6대 157-7대	617.4 628.4 403.6 544.3	2,193.7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157-3대	1,279.6	-	-
			기정	삼성동	157-4대	488.8	-	-
			기정	삼성동	157-5대	403.6	-	-
			기정	삼성동	157-8대	1,501.2	-	-
			기정	삼성동	157-10대 157-11대	282.1 277.3	559.4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57-10대**	**282.1**	**-**	**•폐지**
				삼성동	**157-11대**	**277.3**	**-**	
			기정	삼성동	157-12대 157-13대	273.0 268.6	541.6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57-12대**	**273.0**	**-**	**•폐지**
				삼성동	**157-13대**	**268.6**	**-**	
			기정	삼성동	157-14대	677.9	-	-
			기정	삼성동	157-15대	491.2	-	-
			기정	삼성동	157-16대	605.8	-	-
			기정	삼성동	157-17대	441.6	-	-
			기정	삼성동	157-18대	428.2	-	-
			기정	삼성동	157-19대	504.5	-	-
			기정	삼성동	157-21대	486.8	-	-
			기정	삼성동	157-22대	419.9	-	-
			기정	삼성동	157-23대	427.1	-	-
			기정	삼성동	157-27대 157-29대 157-31대	518.9 612.4 560.1	1,691.4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157-33대 157-35대	614.8 522.1	1,136.9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157-36대	1,075.0	-	-
			기정	삼성동	157-37대 157-38대 157-39대	468.7 345.1 583.1	1,396.9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	
기정	E14	17,661.2	기정	삼성동	158대	728.8	-	-
			기정	삼성동	158-1대 158-2대 158-3대	251.1 226.8 679.6	1,157.5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58-1대**	**251.1**	**-**	**•폐지**
				삼성동	**158-2대**	**226.8**	**-**	
				삼성동	**158-3대**	**679.6**	**-**	
			기정	삼성동	158-4대	1,374.1	-	-
			기정	삼성동	158-5대 158-27대	926.0 463.0	1,389.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변경	**삼성동**	**158-5대**	**926.0**	**-**	**•폐지**
				삼성동	**158-27대**	**463.0**	**-**	
			기정	삼성동	158-6대	182.4	-	-
			기정	삼성동	158-7대	333.3	-	-
			기정	삼성동	158-9대 158-24대	539.7 991.7	1,531.4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158-10대 158-11대	1,367.4 428.1	1,795.5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158-12대	545.8	-	-
			기정	삼성동	158-13대	526.5	-	-
			기정	삼성동	158-14대	862.1	-	-
			기정	삼성동	158-15대	234.9	-	-
			기정	삼성동	158-16대	2,233.2	-	-
			기정	삼성동	158-17대 158-18대 158-19대 158-20대 158-21대 158-22대	19.6 12.8 293.4 372.4 244.2 486.0	1,428.4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규모 유도)
			변경	**삼성동**	**158-17대 158-18대 158-19대**	**19.6 12.8 293.4**	**325.8**	**•공동개발 지정 (동일 소유)**
				삼성동	**158-20대 158-22대**	**372.4 486.0**	**858.4**	**•공동개발 지정 (동일 소유)**
				삼성동	**158-21대**	**244.2**	**244.2**	**•공동개발 해제 (단독개발)**
			기정	삼성동	158-23대	1,522.1	-	-
			기정	삼성동	158-25대	679.7	-	-
			기정	삼성동	158-26대	226.8	-	-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	
기정	F1	7,544.2	기정	삼성동	76대	1,623.4	-	-
			기정	삼성동	76-1대 76-30대	416.0 285.8	701.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76-2대 76-31대	532.6 169.1	701.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76-3대	338.8	-	-
			기정	삼성동	76-4대 76-5대	120.8 251.4	372.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76-6대 76-7대	120.5 140.5	261.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변경	**삼성동**	**76-6대**	**120.5**	**-**	**•폐지**
				삼성동	**76-7대**	**140.5**	**-**	
			기정	삼성동	76-8대	176.1	-	-
			기정	삼성동	76-9대 76-10대 76-19대	89.9 267.4 116.5	473.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변경	**삼성동**	**76-9대**	**89.9**	**-**	**•폐지**
				삼성동	**76-10대**	**267.4**	**-**	
				삼성동	**76-19대**	**116.5**	**-**	
			기정	삼성동	76-26대 76-27대 76-28대	195.2 195.2 195.0	585.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변경	**삼성동**	**76-26대**	**195.2**	**-**	**•폐지**
				삼성동	**76-27대**	**195.2**	**-**	
				삼성동	**76-28대**	**195.0**	**-**	
			기정	삼성동	76-11대	231.0	-	-
			기정	삼성동	76-12대	151.6	-	-
			기정	삼성동	76-13대 76-14대	212.7 101.9	314.6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동일소유)
			변경	**삼성동**	**76-13대**	**314.6**	**-**	**•폐지(필지 합병)**
			기정	삼성동	76-15대	104.8	-	-
			기정	삼성동	76-16대	237.1	-	-
			기정	삼성동	76-20대	198.0	-	-
			기정	삼성동	76-21대	194.0	-	-
			기정	삼성동	76-22대	208.4	-	-
			기정	삼성동	76-23대	193.1	-	-
			기정	삼성동	76-24대	195.2	-	-
			기정	삼성동	76-25대	195.1	-	-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	
기정	F2	7,523.3	기정	삼성동	77-1대	292.2	-	-
			기정	삼성동	77-2대 77-3대 77-4대	336.6 108.0 65.8	510.4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77-2대**	**336.6**	**-**	**•폐지**
				삼성동	**77-3대**	**108.0**	**-**	
				삼성동	**77-4대**	**65.8**	**-**	
			기정	삼성동	77대	291.3	-	-
			기정	삼성동	77-6대	251.0	-	-
			기정	삼성동	77-5대 77-29대	141.3 66.0	207.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세장형필지 포함)
			기정	삼성동	77-7대	118.1	-	-
			기정	삼성동	77-9대 77-10대	202.3 237.7	440.0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77-11대 77-12대	210.4 161.4	371.8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77-13대	326.0	-	-
			기정	삼성동	77-15대	291.0	-	-
			기정	삼성동	77-16대 77-17대	189.8 243.6	433.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변경	**삼성동**	**77-16대**	**189.8**	**-**	**•폐지**
				삼성동	**77-17대**	**243.6**	**-**	
			기정	삼성동	77-18대	237.5	-	-
			기정	삼성동	77-19대	804.3	-	-
			기정	삼성동	77-20대	407.2	-	-
			기정	삼성동	77-21대	357.4	-	-
			기정	삼성동	77-22대	357.4	-	-
			기정	삼성동	77-24대	310.5	-	-
			기정	삼성동	77-25대	230.6	-	-
			기정	삼성동	77-23대	558.6	-	-
			기정	삼성동	77-27대 77-28대	154.0 98.5	252.5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77-27대**	**154.0**	**-**	**•폐지**
				삼성동	**77-28대**	**98.5**	**-**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	
기정	G1	6,027.0	기정	삼성동 88대	1,579.5	-	-
			기정	삼성동 90대	518.4	-	-
			기정	삼성동 90-1대	361.8	-	-
			기정	삼성동 90-2대	223.7	-	-
			기정	삼성동 90-3대	247.8	-	-
			기정	삼성동 90-4대	174.4	-	-
			기정	삼성동 90-5대	165.1	-	-
			기정	삼성동 90-6대	224.1	-	-
			기정	삼성동 90-8대	174.7	-	• 단독개발
			기정	삼성동 90-9대	191.3	-	• 단독개발
			기정	삼성동 90-10대	182.2	-	-
			기정	삼성동 90-11대	176.0	-	-
			기정	삼성동 90-12대	393.2	-	-
			기정	삼성동 90-14대	476.6	-	-
			기정	삼성동 90-27대	253.1	-	-
기정	G2	7,174.1	기정	삼성동 91대 91-1대	208.9 499.0	707.9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91-2대	553.4	-	-
			기정	삼성동 91-4대	90.6	-	-
			기정	삼성동 91-5대	281.6	-	-
			기정	삼성동 91-6대	114.3	-	-
			기정	삼성동 91-7대	244.2	-	-
			기정	삼성동 91-28주 91-29주 91-30대	260.6 105.0 315.2	680.8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91-31대 91-32대 91-33대 91-34대	105.2 90.2 96.1 365.1	656.6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91-24대	342.7	-	-
			기정	삼성동 91-25대	596.6	-	-
			기정	삼성동 91-26대	568.2	-	-
			기정	삼성동 91-27대	300.6	-	-
			기정	삼성동 91-42대	259.8	-	-
			기정	삼성동 106-5대	241.3	-	-
			기정	삼성동 106-6대	519.5	-	-
			기정	삼성동 106-8대	343.8	-	-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대지면적(㎡)	
기정	G3	5,931.8	기정	삼성동	107대 107-1대 107-2대 107-10대 107-11대	205.2 105.4 109.1 583.3 379.1	1,382.1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107-3대	240.1	-	-
			기정	삼성동	107-4대	425.4	-	-
			기정	삼성동	107-5대 107-12대 107-13대	497.4 320.8 319.8	1,138.0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동일소유)
			변경	**삼성동**	**107-5대**	**497.4**	**-**	**•폐지**
				삼성동	**107-12대**	**320.8**	**-**	
				삼성동	**107-13대**	**319.8**	**-**	
			기정	삼성동	107-6대	768.5	-	-
			기정	삼성동	107-7대	797.0	-	•공동개발 지정(동일소유) •공개공지 조성(24㎡)
				삼성동	107-8대	666.6	-	
			변경	**삼성동**	**107-7대**	**1,463.6**	**-**	**•폐지(필지 합병)** **•공개공지 조성(24㎡)**
			기정	삼성동	107-9대	514.1	-	-
기정	G4	8,829.8	기정	삼성동	108대 108-12대	221.6 221.5	443.1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08대**	**221.6**	**-**	**•폐지**
				삼성동	**108-12대**	**221.5**	**-**	
			기정	삼성동	108-1대 108-13대	438.0 498.5	936.5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변경	**삼성동**	**108-1대**	**438.0**	**-**	**•폐지**
				삼성동	**108-13대**	**498.5**	**-**	
			기정	삼성동	108-2대	602.2	-	-
			기정	삼성동	108-3대	465.1	-	-
			기정	삼성동	108-4대 108-7대 108-8대	487.0 547.2 708.5	1,742.7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08-4대**	**487.0**	**-**	**•폐지**
				삼성동	**108-7대 108-8대**	**547.2 708.5**	**1,255.7**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108-5대	922.4	-	-
			기정	삼성동	108-6대	1,244.1	-	-
			기정	삼성동	108-14대	922.2	-	-
			기정	삼성동	108-9대 108-10대 108-11대	440.4 453.3 657.8	1,551.5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	
기정	G5	10,283.8	기정	삼성동	109대	450.1	-	-
			기정	삼성동	109-1대	570.0	-	-
			기정	삼성동	109-18대	584.4	-	-
			기정	삼성동	109-19대	741.5	-	-
			기정	삼성동	109-21대	898.1	-	-
			기정	삼성동	109-2대 109-17대	792.7 293.9	1,086.6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109-15대 109-16대	204.9 221.8	426.7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109-4대	815.2	-	-
			기정	삼성동	109-5대	458.2	-	-
			기정	삼성동	109-6대	1,786.7	-	-
			기정	삼성동	109-7대	484.8	-	-
			기정	삼성동	109-8대	458.2	-	-
			기정	삼성동	109-9대 109-10대	235.1 217.4	452.5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09-9대**	**235.1**	**-**	**•폐지**
				삼성동	**109-10대**	**217.4**	**-**	
			기정	삼성동	109-12대	469.3	-	-
			기정	삼성동	109-13대 109-14대	116.9 228.0	344.9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G6	3,469.0	기정	삼성동	110-1대	982.9	-	-
			기정	삼성동	110-2대	1,391.8	-	-
			기정	삼성동	110-3대 110-4대	608.9 174.1	783.0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동일소유, 간선도로변 적정규모 유지)
			기정	삼성동	110-5대 110대	173.7 137.6	311.3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변경	**삼성동**	**110-5대**	**173.7**	**-**	**•폐지**
				삼성동	**110대**	**137.6**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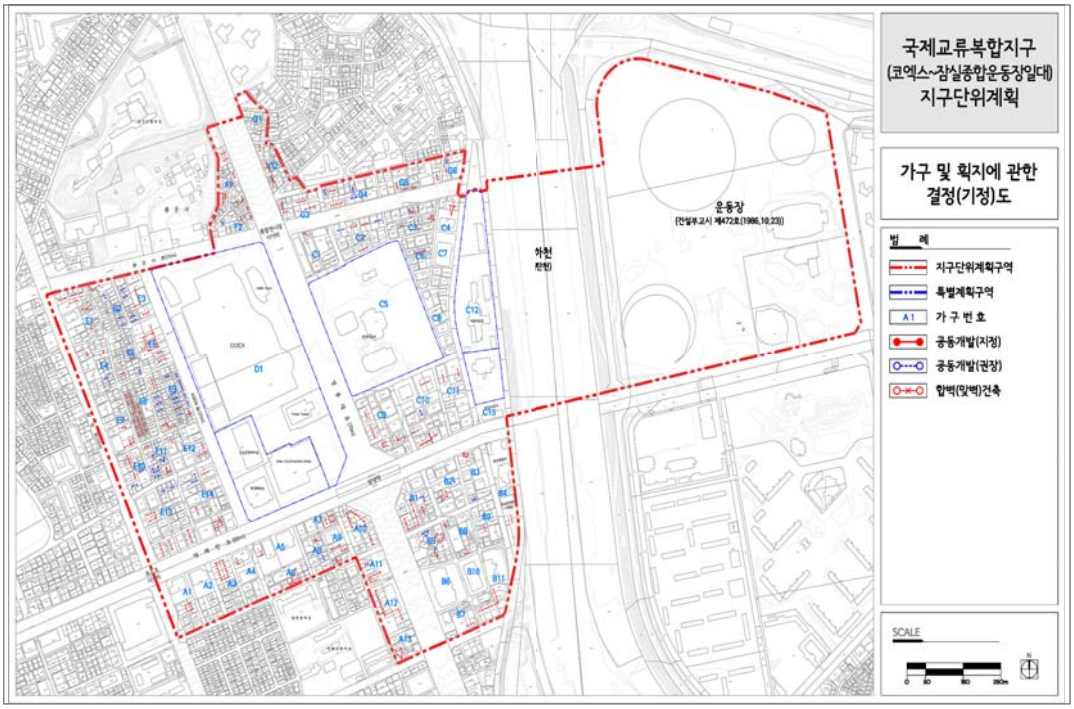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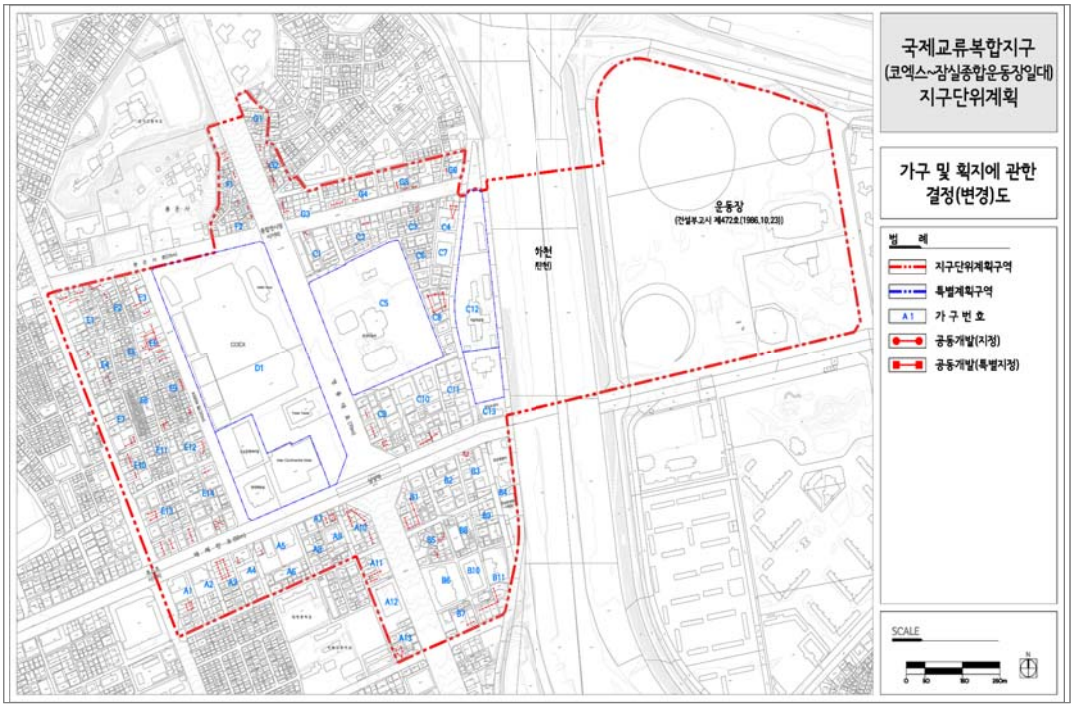

▌최대개발규모 결정(신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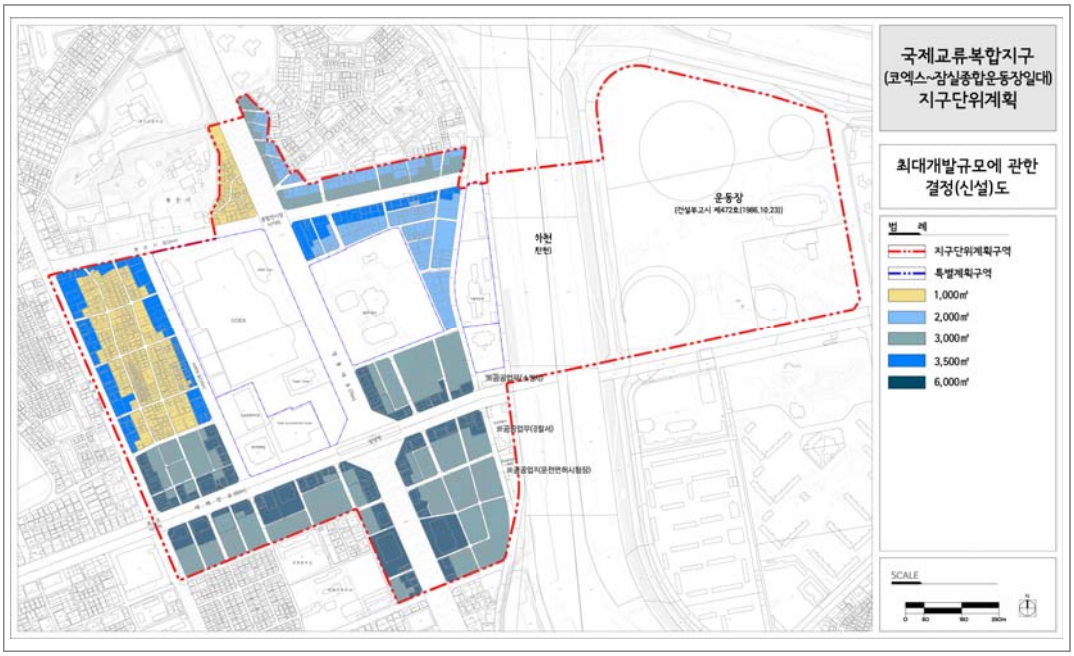

- 이하여백 -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용도계획

가) 불허용도

구분	도면표시	위치	전층	특정층2)	비고
기정	1	영동대로, 테헤란로, 봉은사로 가로변 및 이면부	·미관지구 해당지역은 당해 미관지구 불허용도 ·공용시설보호지구는 당해 공용시설보호지구 불허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공장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숙박시설 (단, 관광호텔 제외)	-
	2	한국종합무역 센타일대	·미관지구 해당지역은 당해 미관지구 불허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공장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3	기타 일반주거지역	·미관지구 해당지역은 당해 미관지구 불허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공장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1) 상기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각호에 의한 분류임 2) 특정층은 1층 또는 도로, 보도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층을 말함 ※ 서울의료원부지 특별계획구역은 당해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적용함				
변경	1	업무복합 지역	• 미관지구 해당지역은 당해 미관지구 불허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집회장중 예식장, 마권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공장시설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 운수시설**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위락시설(관광숙박시설 내 위락시설 제외)**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결정도 참조
	2	도심서비스 지역	• 미관지구 해당지역은 당해 미관지구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시설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상기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분류 준용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관련법에 따라 적용** **※ 특별계획구역은 당해 특별계획구역 지침 적용**				

■ 건축물의 불허용도 계획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적용 위치/명칭 변경 및 단서조항 변경	•지역별 입지여건 및 계획방향 반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반영 •특별계획구역은 당해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따르도록 하여 적용시 혼란 방지
•불허용도 추가/조정	•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 고려 불허용도 정비 •지역별 유도방안 반영, 체류기반 강화를 위한 업무복합지역내 숙박시설 허용범위 확대

▌건축물 불허용도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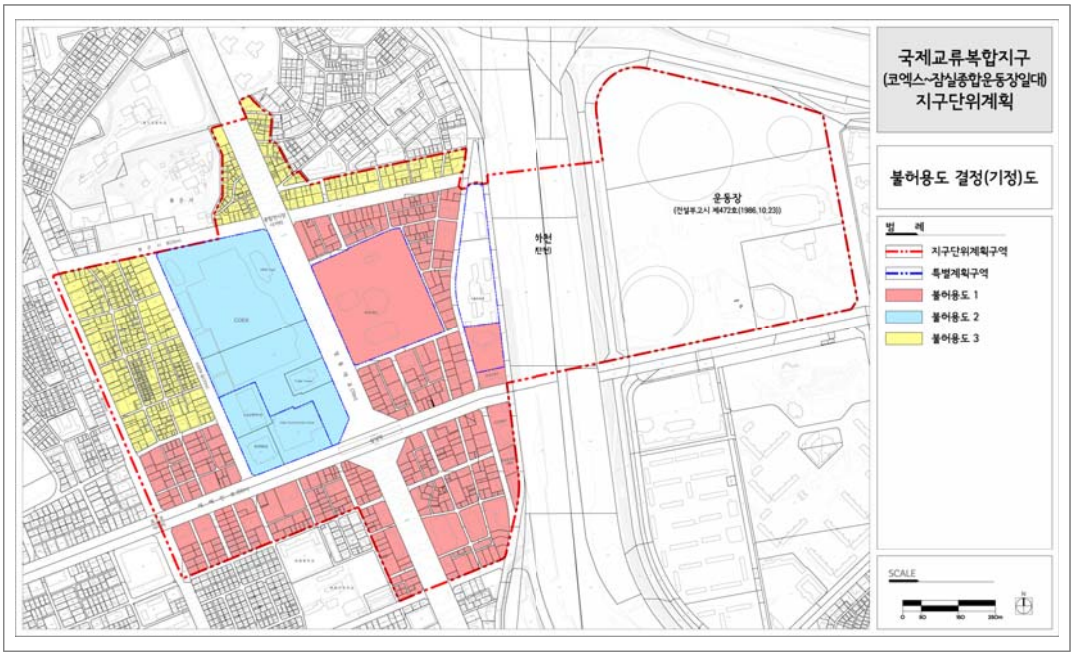

▌건축물 불허용도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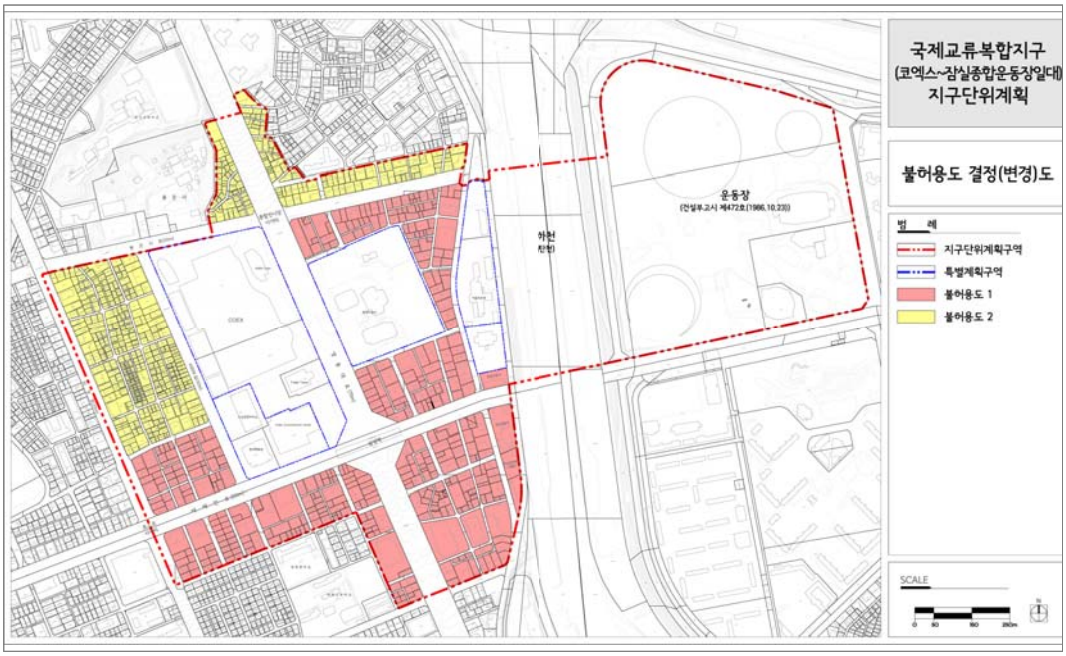

나) 권장용도

구분	도면표시	위치	전층	특정층4)	비고
기정	Ⅰ	영동대로, 테헤란로, 봉은사로 가로변 및 이면부	·관광호텔(상업지역에 한함) ·노유자시설 ※공용시설보호지구는 당해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가로활성화용도3)	제2·3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업무시설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음
	Ⅱ	기타 일반주거지역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 제외) ·노유자시설		
	Ⅲ	특별계획구역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단, 한국전력부지 특별계획구역에 한함) ·관광호텔(상업지역에 한함) ·노유자시설 ※공용시설보호지구는 당해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	-
	1) 상기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각호에 의한 분류임 2)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전층' 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지상층연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지상층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이상, '특정층' 의 경우 당해층 전용면적의 50%이상인 경우를 수용된 것으로 봄 단, 노유자시설은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지상층연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지상층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5%이상 3) 가로활성화용도라 함은 공공에 기여하는 용도 또는 업무 및 사무실이외의 보행활동을 지원하는 용도 중 관련 청이 인정하는 용도임 -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 - 예) 공공기여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문화, 전시, 공연 보행활동을 지원하는 용도 : 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등), 판매시설 4) 특정층은 1층 또는 도로, 보도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층을 말함 ※ 서울의료원부지 특별계획구역은 당해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적용함		

구분	도면표시	위치	전층	1층	비고
변경	Ⅰ	업무복합 지역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용품소매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보행친화적 가로활성화용도1)	결정도 참조
	Ⅱ	도심서비스 지역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면부)		
	주1) 보행친화적 가로활성화 용도라 함은 가로에 시각적 특성을 부여하고 가로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용도 등으로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청에서 인정하는 용도임 ※ 상기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및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 편의시설업의 분류 준용** **※ 권장용도 면적은 해당 용도의 해당층(전층/1층) 지상부 바닥면적 합계가 해당층(전층/1층) 지상부 전체 바닥면적(주차장 제외)의 50%이상인 경우 수용** **※ 특별계획구역은 당해 특별계획구역 지침 적용**			

라) 용도완화

구분	계획
기정	• Ⅰ영동대로, 테헤란로, 봉은사로 가로변 및 이면부 / Ⅱ기타 일반주거지역 - 제2·3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업무시설 지상층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음
변경	• 제2·3종 일반주거지역내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의 면적 제한을 받지 않음

▌건축물의 권장용도/용도완화 계획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적용 위치 변경 -영동대로, 테헤란로, 봉은사로 가로변 및 이면부/기타 일반주거지역/특별계획구역 →업무복합지역/도심서비스지역	•지역별 입지여건 및 계획방향 반영 •특별계획구역은 당해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따르도록 하여 적용시 혼란 방지
•지역별 권장용도 변경 •가로활성화용도 적용 층(특정층→1층) 및 용도 구체화	•지역별 유도방안 반영, 지역별 용도 차등 적용 · 관리를 통해 특성화 유도 -업무복합지역 : 국제교류복합지구 핵심산업 육성 지원/고밀 업무지구 형성 및 저층부 가로활성화 -도심서비스지역 :기존 기능(주거/음식문화특화지역/관광특구 인접) 강화 및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완화 시설 변경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위상 고려 적정 규모의 업무시설 유도

▌건축물 권장용도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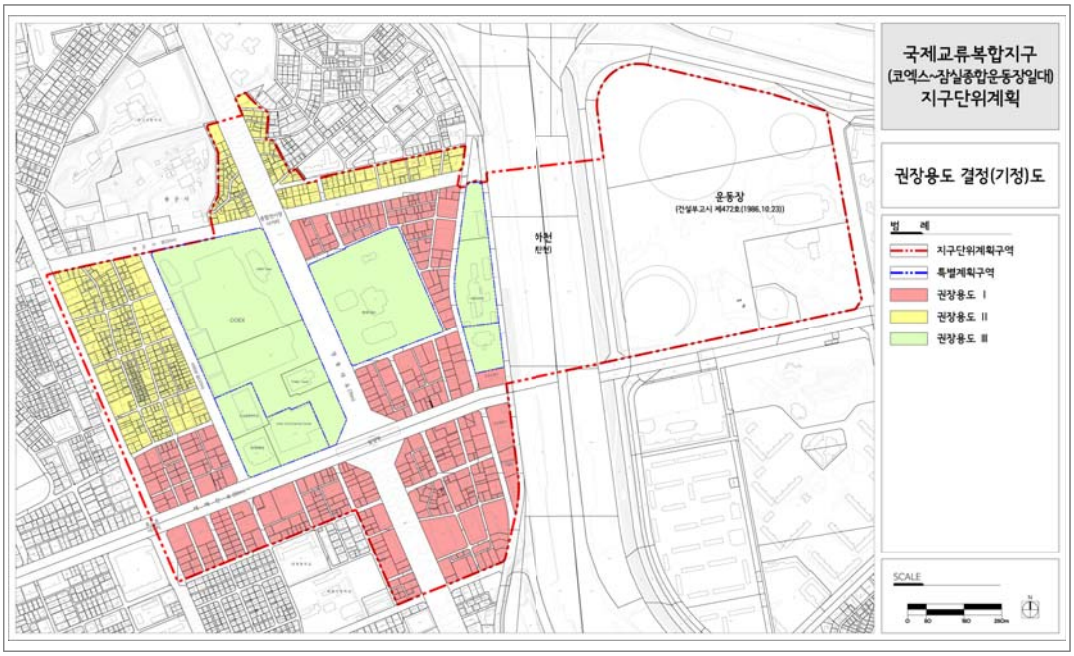

▌건축물 권장용도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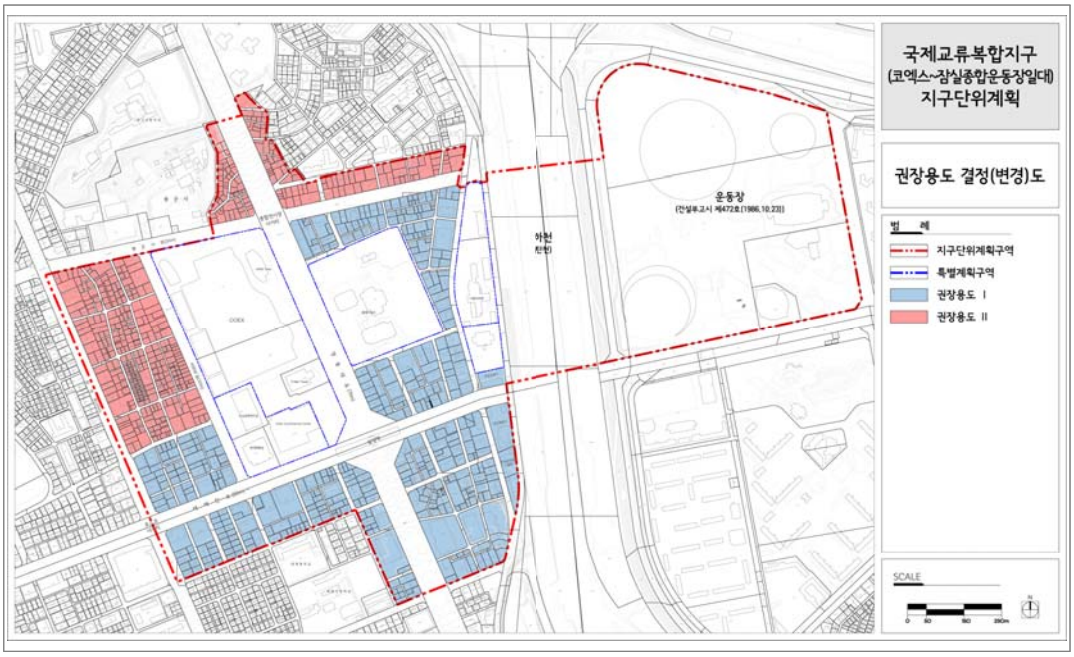

라) 지정용도

구분	도면표시	위 치	전 층	1층	비 고
기정	-	삼성동 158-13 (서고 제2013-458호)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적용
		대치동 995-16 (서고 제2015-61호)			
		삼성동 168-3,4,5 (서고 제2015-366호)			
		대치동 995-8,9,10,11,12,13 (서고 제2015-366호)			
		삼성동 168-6,8,18,19 (서고 제2015-366호)			
		삼성동 91-28,29,30 (서고 제2015-393호)			
변경	A	삼성동 158-13 (서고 제2013-458호)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적용
		대치동 995-16 (서고 제2015-61호)			
		삼성동 168-3,4,5 (서고 제2015-366호)			
		대치동 995-8,9,10,11,12,13 (서고 제2015-366호)			
		삼성동 168-6,8,18,19 (서고 제2015-366호)			
		삼성동 91-28,29,30 (서고 제2015-393호)			
	B	**삼성동 166, 166-1, 166-2, 166-3, 166-4**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용품소매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보행친화적 가로활성화용도1)**	**공동개발(특별지정)시**
	C	**삼성동 154-13, 154-14, 154-15, 154-16, 154-17, 155-10, 155-11,155-12, 155-14, 155-15, 156-5, 156-6, 156-7, 157, 157-8, 157-10, 157-11, 157-12, 157-13, 158, 158-1, 158-9, 158-24, 160-18, 160-20, 160-21, 160-23, 161, 161-13, 161-17, 164-5, 164-6, 165-15, 166, 166-1, 166-2, 168-16, 168-22, 168-23, 168-26, 168-27, 168-29, 169, 169-1, 169-6, 169-11, 169-23**	**-**		**보행자 우선도로변**

주1) 보행친화적 가로활성화 용도라 함은 가로에 시각적 특성을 부여하고 가로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용도 등으로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청에서 인정하는 용도임

※ 상기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분류 준용

※ 지정용도의 면적은 해당 용도의 지정층 바닥면적 합계가 지정층 전체 바닥면적(주차장 제외)의 50%이상일 경우 수용

▌건축물의 지정용도 계획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동개발(특별지정), 보행축 상 보행자우선도로변에 1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적용	•보행축 가로활성화 유도

▌건축물 지정용도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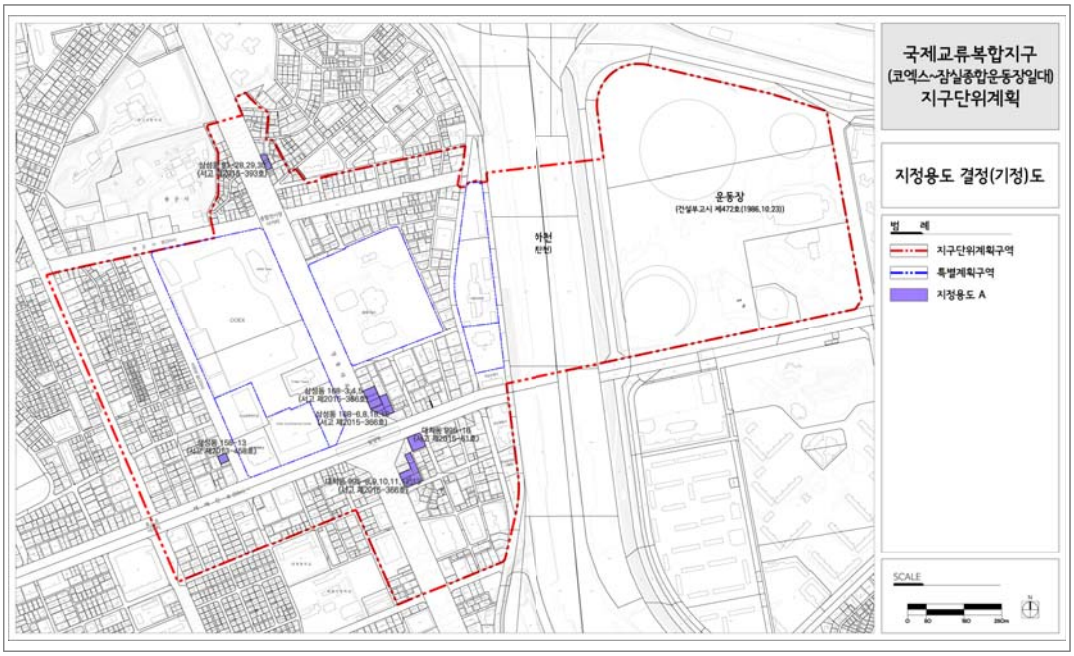

▌건축물 지정용도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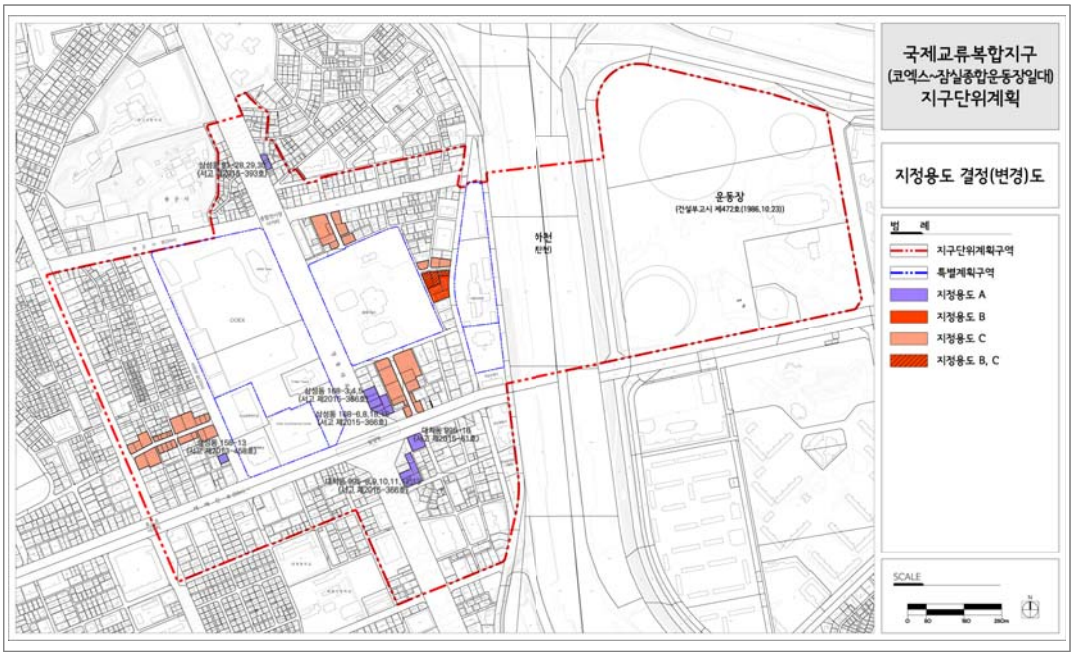

2) 건축물의 개발밀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 건폐율 계획(기정)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준주거지역	60% 이하	
상업지역	기타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60% 이하	

■ 건폐율 계획(변경)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특별계획구역은 당해 특별계획구역 지침 적용

■ 건폐율 계획 변경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건폐율 적용 구분 변경 및 단서조항 추가 -준주거지역 삭제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삭제 -단서조항 추가 ▸특별계획구역 별도 지침 적용	•특별계획구역은 당해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따르도록 하여 적용시 혼란 방지 ※기정 준주거지역 : 서울의료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건폐율 결정 (서울시고시 제2015-144(2015.5.21.))

나) 용적률 계획

▌용적률 계획(기정)

용도지역		기 준	허 용	상 한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00%이하	800%이하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허용용적률× (1+1.3× 가중치× α) 이내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	-	50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20%이하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180%이하	200%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130%이하	150%이하	
준주거지역	서울의료원부지 특별계획구역	200%이하	330%이하	400%이하
삼성동 158-13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의 경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345% 이하) ※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준수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대치동 995-16	제3종일반주거지역	220% 이하	250% 이하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의 경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228.8% 이하)[1] ※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준수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삼성동 168-3,4,5	제3종일반주거지역	355.14% 이하	445.59% 이하	715% 이하[2]
	일반상업지역			
대치동 995-8,9,10, 11,12,13	제3종일반주거지역	285.8% 이하	345.2% 이하	555.7% 이하[2]
	일반상업지역			
삼성동 168-6,8,18,19	제3종일반주거지역	334.76% 이하	416.10% 이하	620% 이하[2]
	일반상업지역			
삼성동 91-28,29,30	제2종일반주거지역	498.7% 이하	655.28% 이하	910% 이하[2]
	일반상업지역			

※ 한국종합무역센타, 한국전력부지, 舊한국감정원 특별계획구역의 용적률 계획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재검토

※ 용적률 계획기준 변경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함

주1)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상한용적률 638% 이하 적용

2)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2014.2월)」 적용

■ 용적률 계획(변경)

용도지역	기 준	허 용	상 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이하**	15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내**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이하**	20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이하**	250%이하	
일반상업지역	600%이하	800%이하	

※ 특별계획구역은 당해 특별계획구역 지침 적용

▪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필지

용도지역		기 준	허 용	상 한
삼성동 158-13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의 경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345% 이하) ※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준수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대치동 995-16	제3종일반주거지역	220% 이하	250% 이하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의 경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228.8% 이하)[1] ※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준수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800% 이하	
삼성동 168-3,4,5	제3종일반주거지역	355.14% 이하	445.59% 이하	715% 이하[2]
	일반상업지역			
대치동 995-8,9,10, 11,12,13	제3종일반주거지역	285.8% 이하	345.2% 이하	555.7% 이하[2]
	일반상업지역			
삼성동 168-6,8,18,19	제3종일반주거지역	334.76% 이하	416.10% 이하	620% 이하[2]
	일반상업지역			
삼성동 91-28,29,30	제2종일반주거지역	498.7% 이하	655.28% 이하	910% 이하[2]
	일반상업지역			

주1)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상한용적률 638% 이하 적용
2)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2014.2월)」 적용

■ 용적률 계획 변경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변경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6) 개정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체계 반영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상한용적률 변경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계획과 중복 내용 삭제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6) 반영
•용도지역 구분 및 단서조항 변경	•특별계획구역의 용적률 계획은 당해 특별계획구역 지침 적용

▌건축물 용적률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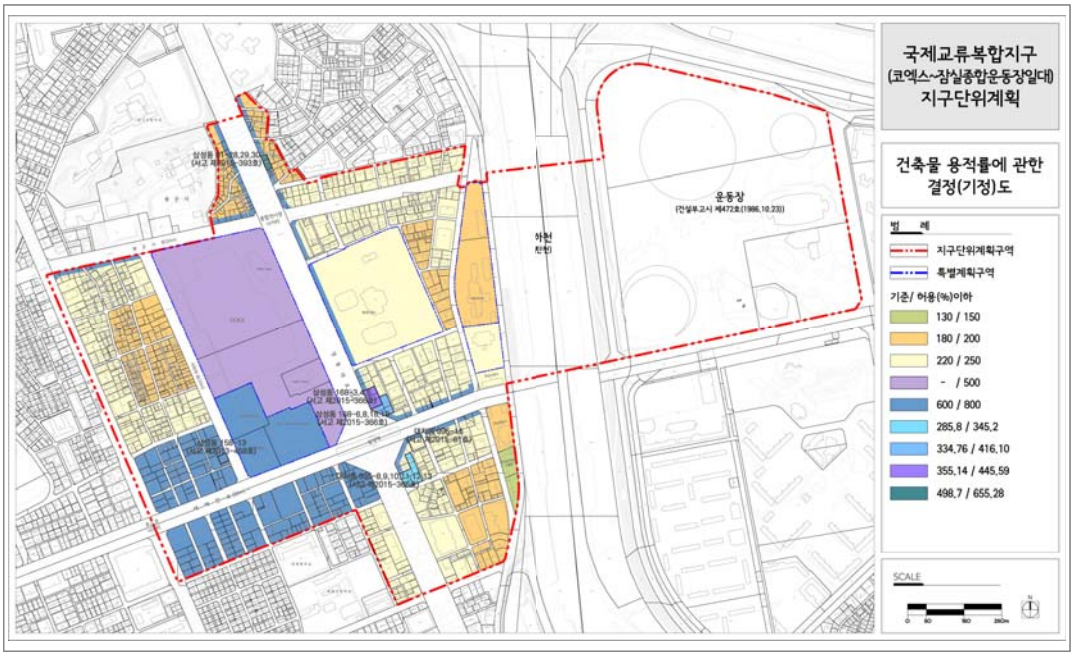

▌건축물 용적률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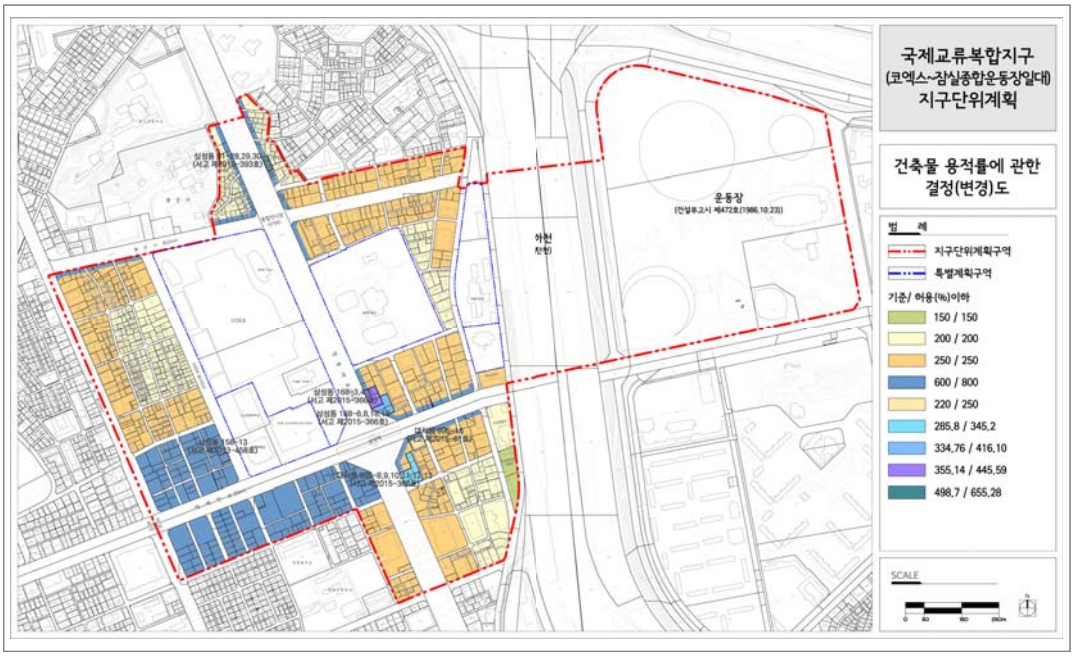

다) 높이계획

▌건축물 높이계획(기정)

-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이하)을 배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 따른 높이계획 적용
-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획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기준높이가 높은 필지의 높이기준을 적용
- 제1종일반주거지역, 한국전력부지 특별계획구역, 서울의료원부지 특별계획구역, 舊한국감정원 특별계획구역은 기준/최고높이 계획을 적용하지 아니 함. 단, 한국전력부지 특별계획구역, 서울의료원부지 특별계획구역, 舊한국감정원부지 특별계획구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최고높이계획 수립 및 결정

구 분	계획내용	
	기준높이	최고높이
영동대로/봉은사로/테헤란로 일부	80m 이하	105m 이하
삼성로/아셈길/봉은사로 일부구간	60m 이하	80m 이하
영동대로, 테헤란로, 봉은사로, 아셈길 일부구간 및 이면부 / 상업지역과 연접한 주거지역 블록	30m 이하	45m 이하
포스코~삼성역사거리 구간 테헤란로	90m 이하	110m 이하
포스코~삼성역사거리 구간 테헤란로 이면부	39m 이하	55m 이하
	35m 이하	55m 이하
	34m 이하	55m 이하
		45m 이하
기타 일반주거지역	20m 이하	25m 이하

구 분	간선가로구역								이면가로구역	
	기준높이				최고높이				기준높이	최고높이
	대지면적 3000㎡ 미만	대지면적 3,000~ 5,000㎡ 미만	대지면적 5,000㎡~ 10,000㎡ 미만	대지면적 10,000㎡ 이상	대지면적 3,000㎡ 미만	대지면적 3,000~ 5,000㎡미만	대지면적 5,000㎡~ 10,000㎡ 미만	대지면적 10,000㎡ 이상		
삼성역사거리, 한국종합무역센타 일대 특별계획구역	100m이하	120m이하	200m이하	200m이하	120m이하	150m이하	250m이하	250m이하	40m이하	70m이하
									44m이하	70m이하
종합전시장사거리	90m이하	110m이하	110m이하	110m이하	110m이하	140m이하	140m이하	140m이하	30m이하	45m이하
										55m이하
포스코사거리	90m이하	110m이하	110m이하	110m이하	110m이하	140m이하	140m이하	140m이하	34m이하	45m이하
										55m이하

※ 기준 및 최고높이 변경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함

▌건축물 높이계획(변경)

-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획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기준높이가 높은 필지의 높이기준을 적용
- 특별계획구역은 당해 특별계획구역 지침 적용

구 분	계 획 내 용	
	기준높이	최고높이
영동대로/봉은사로/테헤란로 일부	80m 이하	105m 이하
삼성로/아셈길/봉은사로 일부구간	60m 이하	80m 이하
영동대로, 테헤란로, 봉은사로, 아셈길 일부구간 및 이면부 / 상업지역과 연접한 주거지역 블록	30m 이하	45m 이하
	50m 이하[1)]	**70m 이하[1)]**
포스코~삼성역사거리 구간 테헤란로	90m 이하	110m 이하
포스코~삼성역사거리 구간 테헤란로 이면부	**45m 이하**	**55m 이하**
	40m 이하	**55m 이하**
기타 일반주거지역	20m 이하	25m 이하

※ 주거지연접구역의 해제로 하나의 대지에 상이한 높이기준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건축높이 적용구분선'으로 구분 적용함

구 분	간선가로구역				이면가로구역	
	기준높이		최고높이		기준높이	최고높이
	최대개발규모 이하	**최대개발규모 초과**	**최대개발규모 이하**	**최대개발규모 초과**		
삼성역사거리	120m이하	200m이하	150m이하	250m이하	40m이하	70m이하
					50m이하	**70m이하**
종합전시장사거리	90m이하	110m이하	110m이하	140m이하	**40m이하**	**70m이하**
포스코사거리	**100m이하**	**120m이하**	**120m이하**	**150m이하**	-	-

※ 기준 및 최고높이 변경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함
주1) 공동개발(특별지정)시

▌건축물 높이계획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한국종합무역센타 일대 특별계획구역' 제외 •공동개발(특별지정)시 기준/최고높이 계획 추가	•특별계획구역은 당해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따르도록 하여 적용시 혼란 방지 •가구 및 획지계획(공동개발(특별지정)) 반영
• '포스코~삼성역사거리 구간 테헤란로 이면부' 적용 구역 단순화, 기준/최고높이 변경 • '간선가로구역' 및 '이면가로구역' 기준/최고높이 및 대지면적 구분 변경	•기존 높이계획 방향 유지 하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6) 등 변화된 관련법/기준 및 '가구 및 획지계획(최대개발규모)'을 고려하여 높이계획 재검토

▌건축물 높이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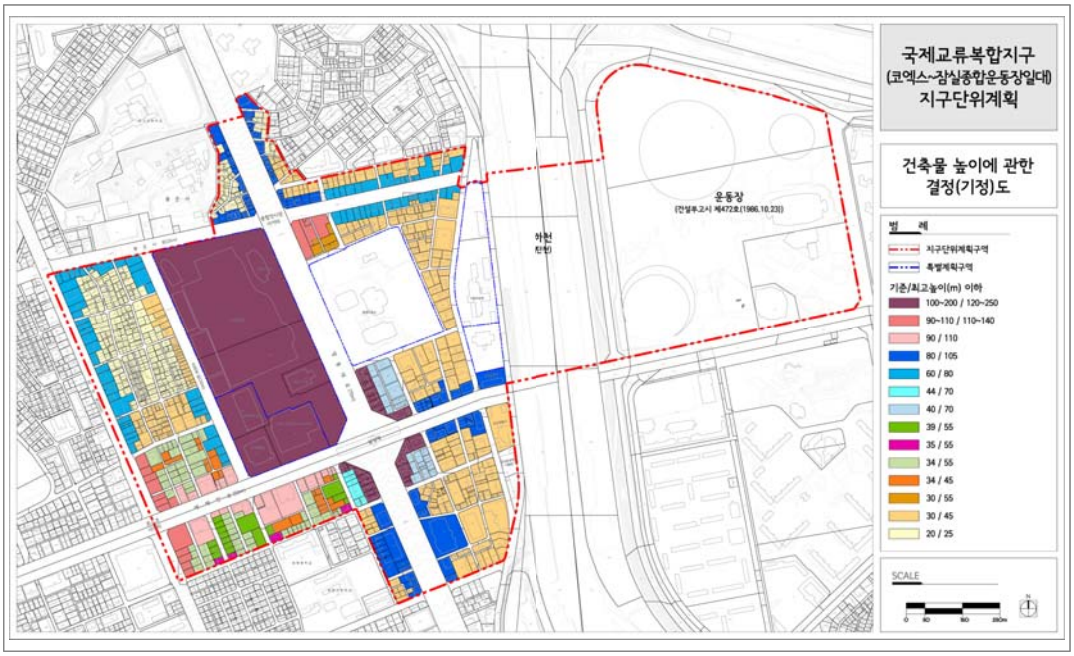

▌건축물 높이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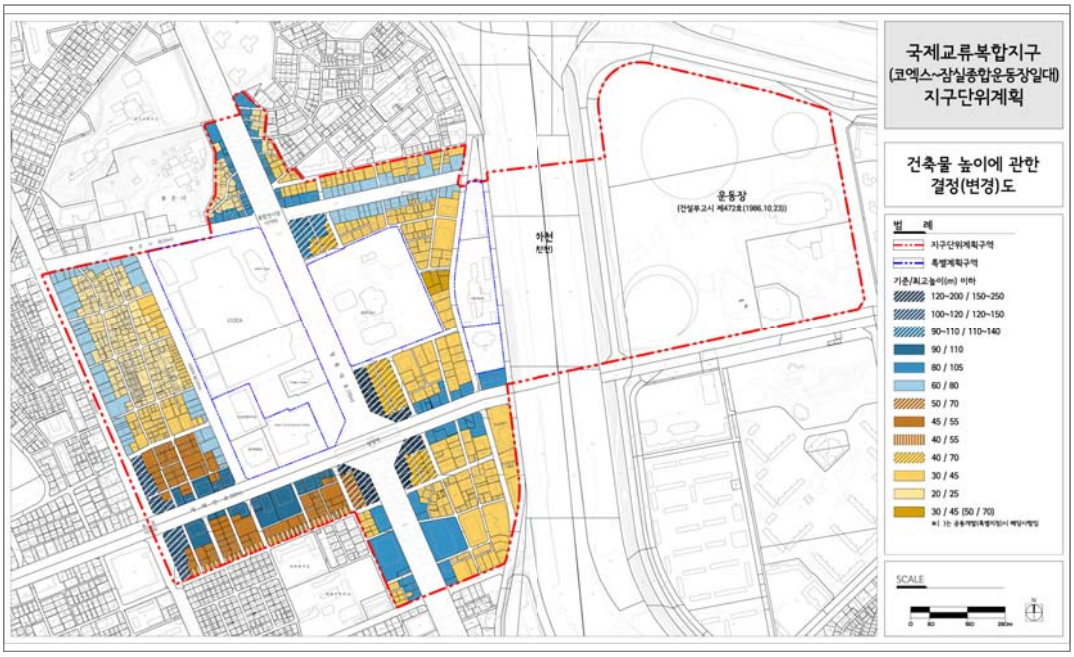

3) 건축물의 배치 및 외관·형태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배치	건축물방향성(신설)	-	**·건축물 주된 벽면의 방향이 전면도로 방향과 일치되도록 배치**	-
	건축지정선	·건축물 1~3층까지의 벽면의 위치가 건축지정선 길이의 1/2이상 접해야 함 - 테헤란로변 : 3~5m	·테헤란로변 : **3m, 5m**	결정도 참조
	건축한계선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음 - 한국종합무역센타일대 : 3~30m (일부 공공보행통로변 포함) - 테헤란로 및 가각부 : 5~10m - 기타 이면부 : 1~2m ·대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변 건축한계선 폐지 ·그외 건축한계선 미지정 필지들에 건축한계선 신설, 대규모 필지 및 보행자우선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 일부확폭 (변경)	·한국종합무역센타일대 : **3~15m** ·테헤란로 및 가각부 : 5~10m ·기타 이면부 : 1~2m	결정도 참조
형태	1층 바닥높이	·상업용도건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의 차이를 10㎝미만으로 조성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좌 동	-
	기존 건축물과 조화	·연접대지에 기존 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 건물과 일치해야 함 ·좌우 양측 건물의 층고, 1층 개구부의 높이, 난간벽 높이가 서로 다를 때에는 두 건물 중 전면 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	·좌 동	-
	개구부가 없는 벽면의 처리	·폭 20m이상의 가로 및 폭 12m이상 가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의 가로 노출 금지	·좌 동	-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영동대로, 테헤란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벽 면적의 50%이상 투시벽 설치 ·12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 설치	·영동대로, 테헤란로, **봉은사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벽 면적의 50%이상 투시벽 설치 ·좌 동	-
	1층부 점포폭원 및 수직분절요소(신설)	-	**·개별 점포 폭원 10m이내 권장** **·수직분절요소 5~10m간격으로 설치 권장**	-

구분		계 획 내 용 (계속)		비고
		기 정	변 경	
외관 등	측면 이격공지 차폐	·대지의 측면 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미만이고,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는 차폐 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	·좌 동	-
	지하층 출입구 설치	·지하층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출입구에는 지붕구조를 설치할 수 없음	**·폐 지**	-
	외벽면 통일성 (신설)	-	**·모든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물과의 조화 유지 권장** **: 외벽 재료는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 사용** **·외벽은 원칙적으로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 유지 권장**	-
	건축설비의 노출 (신설)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 도로변 노출 금지 권장**	-
	야간조명 및 야간광고	·테헤란로변 야간경관조명 및 야간광고 -전면부 야간경관조명 및 야간광고의 통합디자인을 해당청에서 기제시하고, 그 디자인에 맞춰 광고물 등 설치 -LED 등의 발광물질은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10층 이하에 설치 -야간경관조명 및 야간광고의 설치 및 변경시 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함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조명 설치권장	·좌 동	-
	옥외광고물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 「서울특별시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서울시고시제2004-158호)」 준수	·좌 동	-

※ 건축선의 축소변경(폐지포함)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함
※ 특별계획구역은 당해 특별계획구역 지침 적용

▌건축물의 배치 및 외관·형태 등에 관한 계획 변경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구분 항목 용어 조정		·서울시 관련 기준 반영
·신설	-건축물방향성 -외벽면통일성 -건축설비의 노출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만 있던 지침을 통합하여 정비
	-1층부 점포폭원 및 수직분절요소	·가로변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상가 폭 제시로 저층부 가로 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
·변경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시행지침 중복내용 삭제(계획 변경 없음)
	-투시벽 및 투시형셔터	·주요 간선가로 '봉은사로' 추가
	-야간조명 및 야간광고, 옥외광고물	·서울시 관련 기준 반영 '환경친화요소'에서 위치 조정(계획 변경 없음)
·폐지	-지하층 출입구 설치	·실효성이 낮은 계획 정비
·특별계획구역 별도 지침 적용		·특별계획구역은 당해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따르도록 하여 적용시 혼란 방지

▌건축물배치에 관한 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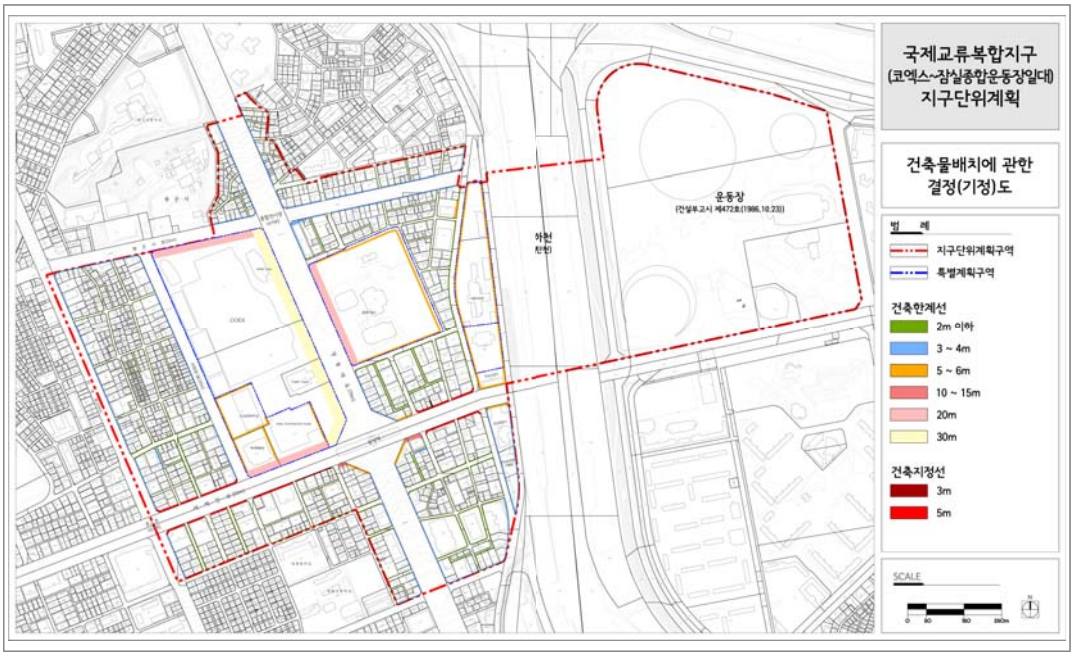

▌건축물배치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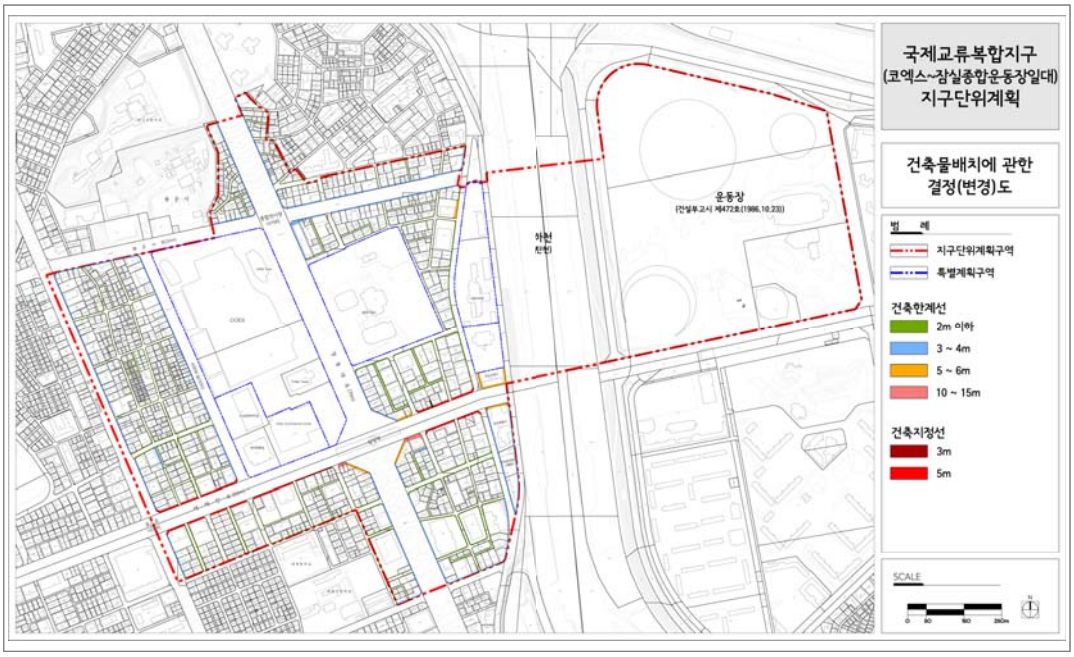

3.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1)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보도형 전면공지 – 간선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보도와 단차없이 조성 ·차도형 전면공지 – 이면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조성 지침 –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좌 동	미관지구에 의한 공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
	공개공지	·공개공지 설치시에는 연면적, 대지면적 및 역세권 여부를 판단하여 기능상 분류를 하고 그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간선변 보도와 접하게 조성, 인접필지에 공개공지가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서로 인접 배치하여 조성함을 권장 ·전면공지 및 쌈지형 공지와 중복지정 불가(단, 전면공지와 중복하여 위치지정한 경우는 제외)	·좌 동	피로티형 침상형 개방형
	쌈지형공지	·전면 도로변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점에 확보 ·최소폭 5m 이상, 최소면적 45㎡ 이상, 피로티 구조시 유효높이 6m이상 ·인접 대지의 쌈지형공지와는 일체형 조성 ·접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	·좌 동	–
	대지내조경 (차폐식재)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3m이상의 폭으로 높이 1.5m이상의 수목을 ㎡당 0.2본 이상 밀식 식재하여야 함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공간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폐식재 조성 ·서울시 건축조례 제20조의 규정 준용	·좌 동 ·좌 동 ·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의 규정 준용	–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전구역 14개소 (폭3.5~10m이상, 건축한계선)	·좌 동 ·전구역 **7개소 (폭 4, 6m)**	–
	보차혼용통로	·24시간 일반인 및 차량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전구역 21개소 (폭 4~6m이상)	·좌 동 ·전구역 **15개소 (폭 4~6m)**	–

※ 특별계획구역은 당해 특별계획구역 지침 적용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계획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지내조경(차폐식재) 관련 조항 변경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2009.11.11.) 반영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 개소 및 폭 변경	•지형 및 신축 건축물, 실효성 등 고려 일부 효용성 미비한 지역 폐지 •가구 및 획지계획 및 차량출입불허구간 계획 반영 •특별계획구역 제외
•단서조항 추가	•특별계획구역은 당해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따르도록하여 적용시 혼란 방지

2)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차량출입 불허구간	·폭 20m이상 도로변으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단, 대지의 분할 등에 의해 부득이하게 차량출입 불허구간에서 차량출입이 허용되어야 할 경우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	·폭 20m이상 **도로 및 탄천변**으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단, 대지의 분할 등에 의해 부득이하게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 차량출입이 허용되어야 할 경우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	
주차출입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에서의 차량출입구설치	·주차출입방향이 표시되지 않은 대지 중 2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차량출입구는 접하는 6m이상 도로중 폭이 가장 좁은 도로에 설치하여야 함. 단, 대지에 접한 도로폭이 6m미만인 경우에는 건축선을 후퇴하여 6m이상(기존도로폭 포함)의 통로를 확보하여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함 ·단, 대지에 보차혼용통로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통로내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함	·좌 동	
보행자 우선도로	·오픈스페이스 및 테헤란로와 연계되는 주요 이면 가로변의 보행자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 ·전구역 7개소 – 선릉공원 및 탄천변 신설 2개소 – 일부 구간 폐지 2개소	·폐지	

※ 특별계획구역은 당해 특별계획구역 지침 적용

※ 탄천나들목은 잠실운동장 개발 및 올림픽대로 지하화 등 구조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탄천나들목 4개 방향을 살리는 방안의 검토를 포함하여 자치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의 교통처리계획을 수립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차량출입불허구간 탄천변 추가	•탄천변 도로 지하화 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보행자 우선도로 폐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12년 10월 31일)에 따라 도시기반시설계획에 반영
•단서조항 추가	•특별계획구역은 당해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따르도록하여 적용시 혼란 방지

3)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변 경	
옥외광고물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 「서울특별시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서울시고시제2004-158호)」 준수	폐지 (* '건축물의 배치 및 외관·형태 등' 으로 위치 조정)	
야간경관조명 및 야간광고	·테헤란로변 야간경관조명 및 야간광고 -전면부 야간경관조명 및 야간광고의 통합디자인을 해당청에서 기제시하고, 그 디자인에 맞춰 광고물 등 설치 -LED 등의 발광물질은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10층 이하에 설치 -야간경관조명 및 야간광고의 설치 및 변경시 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함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조명 설치권장	폐지 (* '건축물의 배치 및 외관·형태 등' 으로 위치 조정)	
자연지반보존 (신설)	-	·지층부의 바닥이나 비건폐지를 자연재료 또는 투수성 재료로 조성하고 당해 지하부에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권장	
옥상녹화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2001. 10.24) 에 의한 설치 권장	·좌 동	
벽면녹화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좌 동	
녹색주차장 (신설)	-	·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 등 서울특별시 기준에 의한 설치 권장	
중수도 (신설)	-	·「하수도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한 설치 권장	
빗물관리시설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 권장	·좌 동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 따라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이행	
신 · 재생 에너지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에 의한 설치 권장	·좌 동	
에너지절약 (신설)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에 의한 설치 권장	
생태면적률	·건축물의 신축시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2004.6)」 및 서울시 시설계획과 - 12271(2007.12.21)에 따른 생태면적률의 적용 권장	·건축물의 신축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4)」 및 서울시 시설계획과 - 12271(2007.12.21)에 따른 생태면적률의 적용 권장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기준에 따라 설치 권장	·좌 동	

▌환경친화요소 등에 관한 계획 변경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변경	•관련규정 변경 반영
•신설	-자연지반보존 -녹색주차장 -중수도 -에너지절약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만 있던 지침을 통합하여 정비
•폐지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조명 및 야간광고	•서울시 관련 기준 반영 '건축물의 배치 및 외관형태 등' 으로 위치 조정
•단서조항추가	-빗물관리시설	•서울시관련기준에 따른 대상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토록 명시, 빗물관리시설 설치 유도

- 이하여백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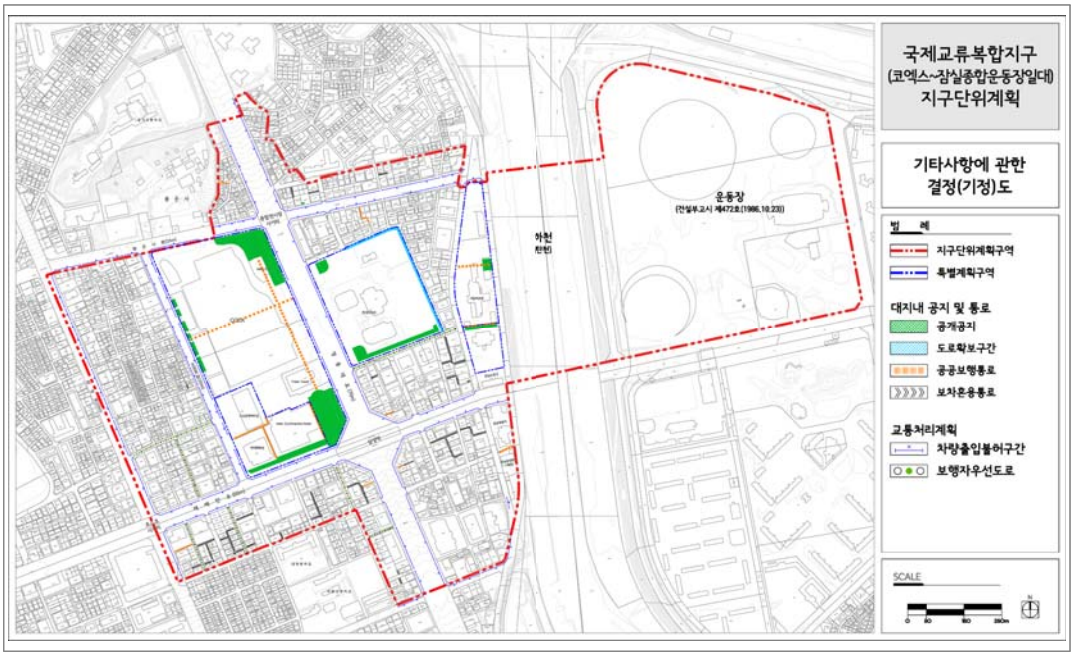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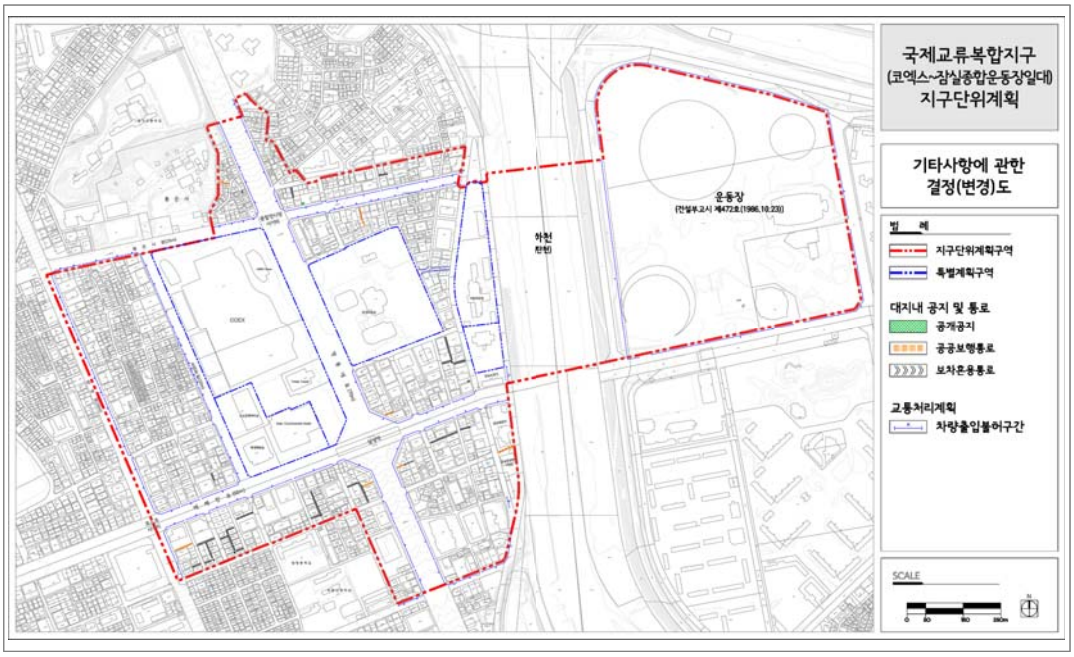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	삼성동 159외 2번지	148,784.0	-	148,784.0	
기정	②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삼성동 159-8외 2번지	41,602.3	-	41,602.3	
기정	③	한국전력부지 특별계획구역	삼성동 167번지	79,341.8	-	79,341.8	
변경	③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삼성동 167번지	79,341.8	-	79,341.8	
기정	④	서울의료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삼성동171-1외 1번지	31,543.9	-	31,543.9	
기정	⑤	舊한국감정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삼성동 171-2번지	10,988.5	-	10,988.5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및 舊한국감정원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사전협상 결과를 반영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변경)

※민간부문 시행지침(제11장(가구단위 주민제안에 관한 사항))에 따른 가구단위 주민제안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추가 지정

▌특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한국전력부지 특별계획구역 명칭 변경 →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공공기관 이전 및 부지매각 등 변화된 여건 반영
•단서조항 추가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및 舊한국감정원부지 특별계획구역은 향후 사전협상에 따라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지침을 변경토록 명시 •가구단위주민제안시 특별계획구역을 추가 지정토록 명시

▌특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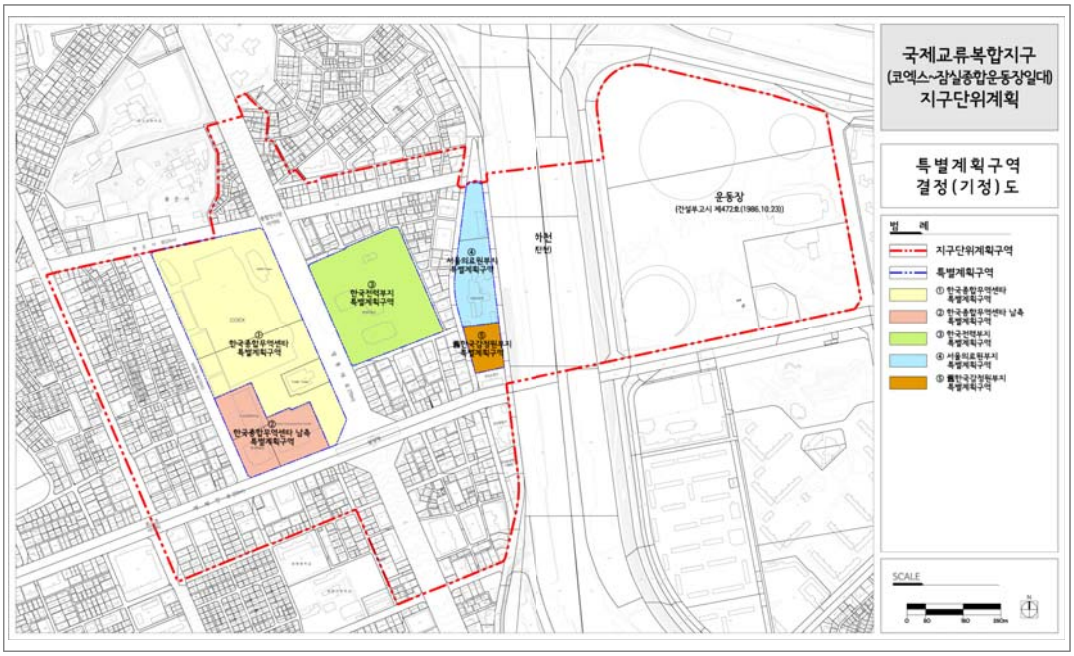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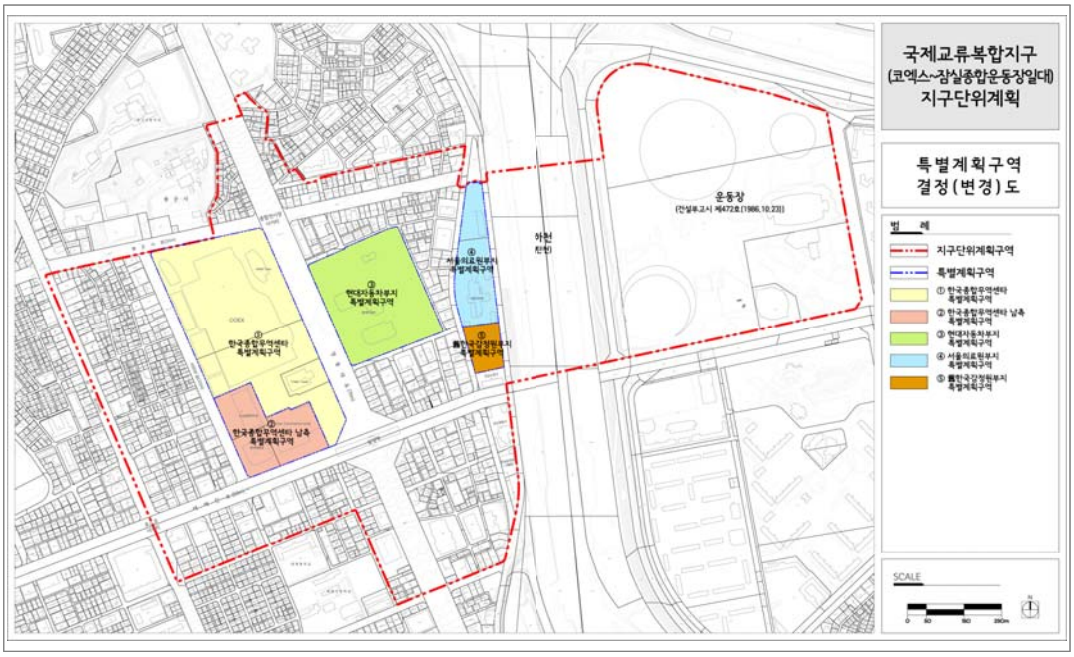

2)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가)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위 치			•삼성동 159외 2번지	•좌 동	
면 적			•148,784.0㎡	•좌 동	
용도지역 / 용도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영동대로, 테헤란로,봉은사로변 폭 12m)	•좌 동	
가구 및 획지계획			•가구 D1	•좌 동	
건축물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전층 불허용도 •미관지구 해당지역은 당해 미관지구 불허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공장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특정층 불허용도 •숙박시설(단, 관광호텔 제외) ※특정층은 1층 또는 도로, 보도에서 직접출입이 가능한 층을 말함	•좌 동	
		권장용도	○전층 권장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관광호텔(상업지역에 한함) •노유자시설	•좌 동	
	밀도	건폐율	•60%이하	•좌 동	
		허용 용적률	•허용 500%이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재검토	•좌 동	
		상한 용적률	•허용용적률 × (1+1.3× 가중치× α)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좌 동	
		높이	•기준/최고높이 : 100~200m이하/120~250m이하 (도로사선제한 (H=1.5D이하) 배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적용)	•기준/최고높이 : 200m이하/250m이하	
	배치	건축 한계선	•영동대로변 30m •봉은사로변 20m •서측도로 대지경계선(아셈길변) 3m	•좌 동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공개 공지	•북동측 공개공지는 남동측의 밀레니엄광장 면적이상으로 설치하며, 향후 지하철9호선 과의 연계를 고려 침상형으로 계획 •대상지 면적의 13%이상 확보	•좌 동	
		조경 면적	•대지면적의 15%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	•좌 동	
		공공 보행통로	-	•2개소 -지하철 2호선 및 9호선 역사를 지하층에서 직접 연결 -영동대로~아셈길을 연결 ※실내형의 경우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일정시간 폐쇄할 수 있음	결정도 참 조
		보차 혼용통로	-	•1개소 -영동대로~아셈길을 연결(폭 10m)	
		지하연결 통로	-	•영동대로변 1개소(폭 6m이상)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교통처리계획	보행동선계획	•봉은사로, 영동대로변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폭 20m의 가로광장 설치 •지하철 2호선 및 9호선 역사가 지하층에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보행자통로 확보 •영동대로~아셈길을 연결하는 24시간 개방 연결통로개설 •영동대로 관통 지하차량출입구 및 보행자 출입구 개설 •보차혼용통로 및 보행전용도로의 보도와 차도 사이에 단차를 두어 보행의 안전 도모	•봉은사로, 영동대로변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폭 20m의 가로광장 설치 •영동대로 지하 연결 보행자 출입구 개설 •보차혼용통로 및 보행전용도로의 보도와 차도 사이에 단차를 두어 보행의 안전 도모	결정도 참 조
		차량출입불허구간	•폭30m이상 가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좌 동	
		서비스 차량출입구	•서측도로에 서비스 및 주차장 진출입 통로를 차량출입 동선과 별도로 설치하고 폭 20m 이하로 함	•좌 동	
		도로조성지침	•영동대로변 – 미관지구 후퇴선(3m) 포함하여 폭20m 가로광장 조성 – 삼성역 부근 버스베이와 우회전 포켓을 포함하여 폭3m, 길이 425m의 완화차선 설치 •봉은사로변 – 미관지구 후퇴선(3m) 포함하여 폭20m 가로광장 조성 – 전구간 폭3m, 길이 300m의 완화차선 설치 •서측도로변(아셈길) – 서측도로로부터 3m후퇴하여 폭9m 보도설치 – 폭3m, 길이 260m의 완화차선 설치 •내부통과도로 – 폭10m의 대상지 내부 통과도로 조성 •내부순환도로 – 폭6m 이상 대상지 내부순환통과도로 조성	•좌 동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준/최고높이계획 변경	•관련법 개정 반영 도로사선제한 삭제 및 명확한 높이제시로 적용시 혼란 방지
•공공보행통로 1개소 위치 조정 •보차혼용통로 1개소 추가	•주보행축 연계
•영동대로변 지하연결통로 1개소 신설	•영동대로 지하 공공공간과 연계, 입체적 보행환경 조성
•차량출입불허구간 조정(지침도)	•현황 반영

나)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수립(서울시고시 제2010-299(2010.8.19.))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기 정</th><th>비고</th></tr>
<tr><td colspan="3">위 치</td><td>•삼성동 159-8외 2번지</td><td></td></tr>
<tr><td colspan="3">면 적</td><td>•41,602.3㎡</td><td></td></tr>
<tr><td colspan="3">용도지역 / 용도지구</td><td>•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테헤란로변 폭 12m)</td><td></td></tr>
<tr><td colspan="3">도시기반시설</td><td>•자동차정류장 (159-6번지, 13,000.5㎡)</td><td></td></tr>
<tr><td colspan="3">가구 및 획지계획</td><td>•가구 D1
•획지
<table><tr><th>획지번호</th><th>위치</th><th>면적(㎡)</th></tr><tr><td>①</td><td>삼성동 159-8</td><td>18,403.4</td></tr><tr><td>②</td><td>삼성동 159-7</td><td>10,198.4</td></tr><tr><td>③</td><td>삼성동 159-6</td><td>13,000.5</td></tr></table></td><td></td></tr>
<tr><td rowspan="11">건축물에 관한 계획</td><td rowspan="3">용도</td><td>불허 용도</td><td>○전층 불허용도
•미관지구 해당지역은 당해 미관지구 불허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격리병원,장례식장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공장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특정층 불허용도
•숙박시설(단, 관광호텔 제외)
※특정층은 1층 또는 도로, 보도에서 직접출입이 가능한 층을 말함</td><td></td></tr>
<tr><td>권장 용도</td><td>○전층 권장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관광호텔(상업지역에 한함) •노유자시설</td><td></td></tr>
<tr><td>지정 용도</td><td>○최상층 지정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단, 관광호텔은 최상층 및 지상3~4층)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단, 관광호텔에 한함)</td><td></td></tr>
<tr><td rowspan="4">밀도</td><td>건폐율</td><td>•60%이하</td><td></td></tr>
<tr><td>기준/허용용적률</td><td>•기준 600%이하 / 허용 800%이하</td><td></td></tr>
<tr><td>상한 용적률</td><td>•허용용적률 × (1+1.3× 가중치× α)
※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td><td></td></tr>
<tr><td>높이</td><td>•기준높이 : 200m이하
•최고높이 : 250m이하</td><td></td></tr>
<tr><td>배치</td><td>건축한계선</td><td>•인터콘티넨탈 호텔, 현대백화점 테헤란로변 폭 20m
•현대백화점, 공항터미널 아셈길변 폭 5m
•특별계획구역내 주요 시설변 폭 5m</td><td></td></tr>
<tr><td rowspan="4">외관·형태 등</td><td>1층바닥높이</td><td>•상업용도건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의 차이를 10㎝미만으로 조성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td><td></td></tr>
<tr><td>기존건축물과 조화</td><td>•연접대지에 기존 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 건물과 일치해야 함
•좌우 양측 건물의 층고, 1층개구부의 높이, 난간벽 높이가 서로 다를 때에는 두 건물 중 전면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함</td><td></td></tr>
<tr><td>외벽</td><td>•폭 20㎝이상의 가로 및 폭 12m이상 가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의 가로노출 금지</td><td></td></tr>
<tr><td>투시벽</td><td>•테헤란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벽 면적의 50%이상 투시벽 설치</td><td></td></tr>
</table>

구 분			기 정	비고
건축물에 관한 계획	외관·형태 등	측면 이격공지 차폐	•대지의 측면 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미만이고,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는 차폐 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	
		셔터	•12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 설치	
		지하층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출입구에는 지붕구조를 설치할 수 없음	
		탑상형 건축물	•건폐율 40%이하의 탑상형 건축물 입지 권장	
		피로티	•공공보행통로 옆 : 폭 5m이상, 높이 6m이상 확보 •건축물 입구 : 폭 8m 이상, 높이 6m 이상 확보 •건축물 내부 : 폭 12m 이상, 높이 15m 이상 확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공개공지	•인터콘티넨탈호텔 : 테헤란로변 폭11~15m 공개공지 설치 •현대백화점 : 테헤란로변 폭10m 공개공지 설치 •공개공지 안에 있는 기존 지하비상출입구는 건축물 내부 이전. 단, 선큰형태의 침상형공지로 조성시 제외 •공개공지내 차량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면적만큼을 부지내 공개공지로 추가 확보. 단, 차량출입로 등으로 사용되어 대체 조성되는 공개공지는 공개공지 대체조성 위치에 기존공개공지 지정위치와 연계하여 조성	
		공공보행통로	•인터콘티넨탈호텔 : 부지 우측 공공보행통로 설치 (폭5m) •현대백화점 : 부지 우측 공공보행통로 설치 (폭5m) •도심공항터미널 : 부지 남측 공공보행통로 설치 (폭5m)	
	교통처리 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테헤란로 및 아셈길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기존 인터콘티넨탈호텔부지, 현대백화점부지, 도심공항터미널 기존 차량진출입구 유지. 단, 인터콘티넨탈호텔과 현대백화점 사이의 출입구는 공공보행통로 확보를 위해 최소폭 3m로 존치하고, 바닥재의 재질 및 패턴 등 변화를 통해 보행의 연속성 유지)	
	경관 및 환경친화 요소	생태 면적률	•생태면적률 20% 이상	

주1) 상기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각호에 의한 분류임
2)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전층' 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이상, '1층전면' 의 경우 당해층 전용면적의 50%이상인 경우를 수용된 것으로 봄
3) 특정층은 1층 또는 도로, 보도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층을 말함
4) 현대백화점 남측 저층부는 가로활성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유럽풍 카페 및 간이 야외공연장 설치

※현대백화점 배치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사항) : 건축한계선까지 증축하고 전면부 보행지장물(12m 계단실) 이전설치
- 전면부 계단실(폭 12m)을 폐지하여 공지 및 보행공간 추가(현재 6.5m→변경 20m) 확보(건물 안으로 이전설치)
- 대상지내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2m×2m, 2열, 215.5m)은 사업자 부담(현대백화점 및 인터콘티넨탈호텔)으로 이전 설치하되, 하수암거 이전시 여건상 사유지내 매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지내 부지제공(별도 구분지상권 설정)
- 옥상 생태공원 및 친환경에너지시설을 조성 설치하여 24시간 전면개방(전용E/V설치)

※인터콘티넨탈호텔은 테헤란로변의 공개공지내 차량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면적만큼은 공개공지로 확보하고 선큰형태의 침상형 공지로 조성시 조성면적의 1/2이상을 부지내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확보(공개공지 등 대체조성 위치지정 – 건축계획에 의거 위치변경 가능)

※교통영향평가('16.7)에 따른 테헤란로 전면공지 내 택시 베이 설치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단서조항 추가 –테헤란로 전면공지 내 택시베이 설치	•교통영향평가('16.7) 심의결과 반영
•차량출입불허구간 조정(지침도)	•현황 반영

▌한국종합무역센타,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지침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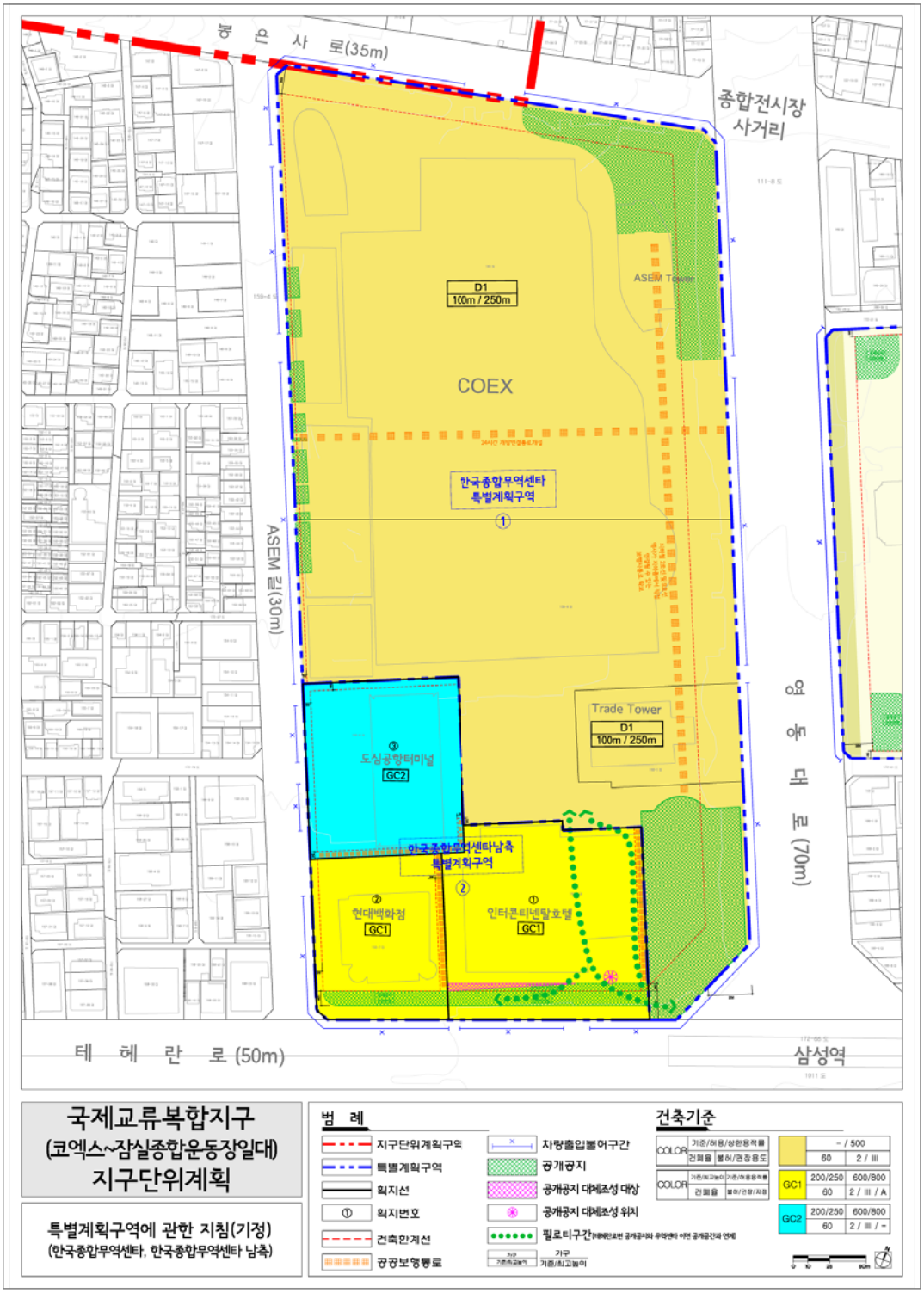

▌한국종합무역센타,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지침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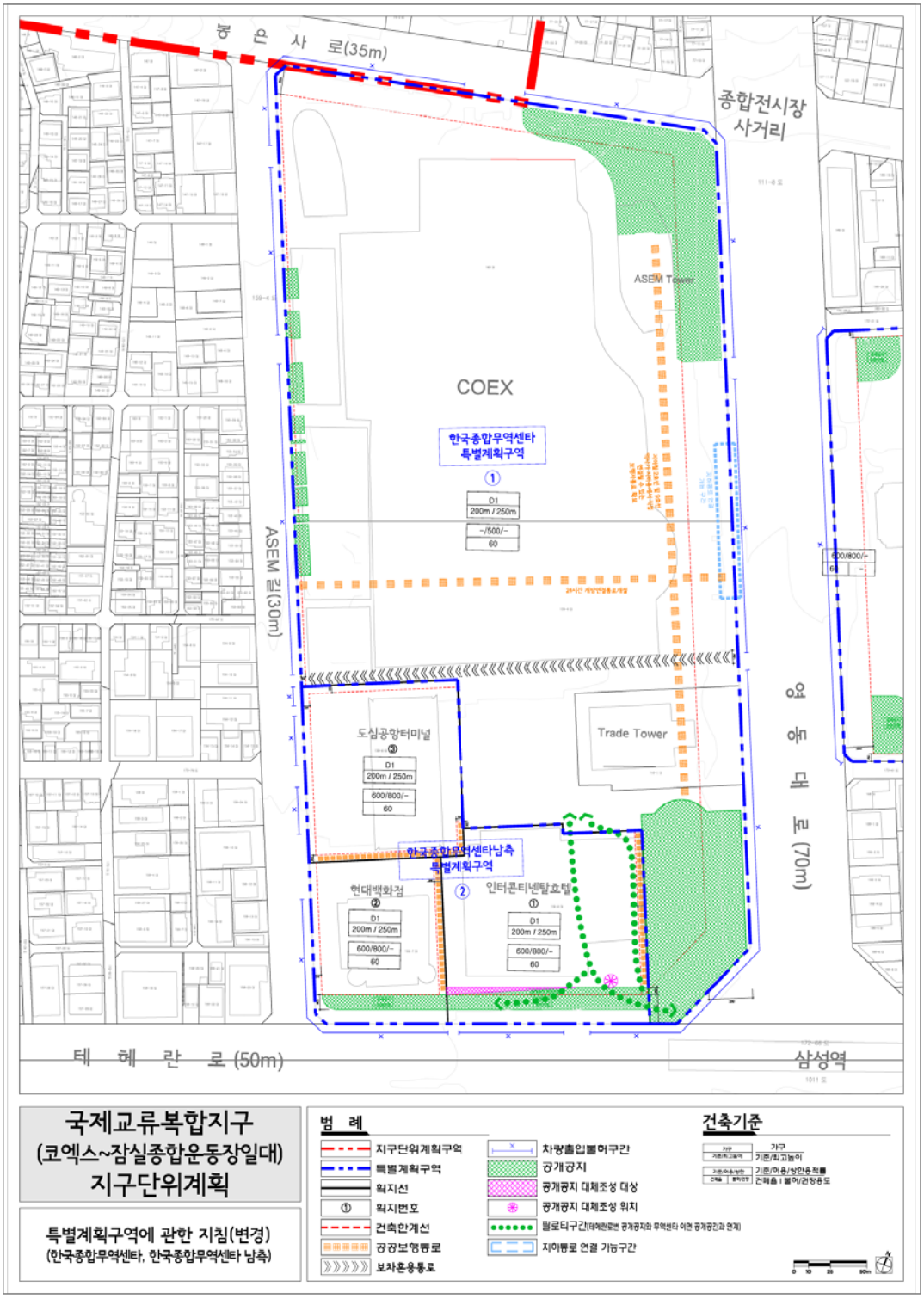

다)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 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비고
위 치			•삼성동 167번지	
면 적			•79,341.8㎡	
용도지역 / 용도지구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영동대로변 폭 12m) •공용시설보호지구	
도시기반시설			•현대자동차부지 이면도로 확폭 (폭 6m→12m, 연장 470m)	
가구 및 획지계획			•가구 C5	
건축물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 용도	○전층 불허용도 •미관지구 해당지역은 당해 미관지구 불허용도 •공용시설보호지구는 당해 공용시설보호지구 불허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공장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특정층 불허용도 •숙박시설(단, 관광호텔 제외) ※특정층은 1층 또는 도로, 보도에서 직접출입이 가능한 층을 말함	
		권장 용도	○전층 권장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관광호텔(상업지역에 한함) •노유자시설 ※공용시설보호지구는 당해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제2·3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업무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음	
	밀도	건폐율	•일반상업지역 : 6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이하	
		기준/허용 용적률	•일반상업지역 : 기준 600% 이하 / 허용80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준 220% / 허용 250% 이하	
		상한 용적률	•허용용적률 × (1+1.3× 가중치× α)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높이	•도로사선제한 (H=1.5D이하) 적용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최고높이계획 수립	
	배치	건축한계선	• 영동대로변 폭 20m • 이면가로변 폭 5m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공개공지	• 공개공지 2개소 위치 및 면적 지정 (대지면적의 15%이상 확보)	
	교통처리 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영동대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및 舊한국감정원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사전협상 결과를 반영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변경)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를 고려하여 도입용도 체계 등을 정비하고, 용도지역·용적률·높이 등의 사항은 향후 변화된 구역여건을 감안하여 결정(변경)할 수 있음

※현대자동차부지와 서울의료원부지 사이에 있는 C6, C7, C8가구가 주민동의 등을 통해 특별계획구역에 편입되고자 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변경(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과 서울의료원부지/舊한국감정원부지 특별계획구역 포함)을 통하여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대규모 개발계획 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높이계획 등에 대한 변경을 검토 할 수 있음

라) 서울의료원부지 특별계획구역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위 치				•삼성동 171 외 1번지		•좌동		
가구 및 획지계획	가구			•가구 C12		•좌동		
	획지			•삼성동 171대	•삼성동 171-1대	**•삼성동 171대, 171-1대**	**•삼성동 171-1대**	
면 적				•8,893.7㎡	•22,650.2㎡	**•13,791.8㎡**	**•17,752.1㎡**	
용도지역 / 용도지구				•준주거지역 •공용시설보호지구		•준주거지역		
건축물에 관한 계획	용도	지정용도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3,000㎡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회의장 1,500㎡이상)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관광숙박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3,000㎡이상, 지하 설치면적 인정)**	•좌동	
		권장용도	전층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공용시설보호지구는 당해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관광숙박시설 부대시설로 회의·컨벤션 시설 (1,500㎡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공용시설보호지구는 당해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광숙박시설 부대시설로 회의·컨벤션 시설 (1,500㎡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특정층	•특정층 가로활성화 용도		•좌동		
		불허용도		○전층 불허용도 •공용시설보호지구는 당해 공용시설보호지구 불허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공장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특정층 불허용도 •숙박시설(단, 관광호텔 제외)	○전층 불허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공장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특정층 불허용도 •숙박시설(단, 관광호텔 제외)		
	밀도	건폐율		•60%이하		•좌동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기준 200% 이하 / 허용 330% 이하 / 상한 400% 이하		•좌동		
		높이		•도로사선제한 (H=1.5D이하) 적용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최고높이계획 수립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1)** **-H = (W + L/2) X A**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최고높이계획 수립		
	배치	건축한계선		•가로변 폭 5m		•좌동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공공보행통로		•2개소 : 폭 10m(주보행축), 폭 3m(舊한국감정원변)		**•1개소 : 폭 3m(舊한국감정원변)**		
		공개공지		•공개공지 1개소 위치지정 (공공보행통로와 보행교 결절점)		-		
	교통처리 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봉은사로 및 탄천서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좌동		
도시기반시설				-		**• 획지면적의 14% 이상 -도로 확폭 5m, 공공공지 위치 지정(주보행축 연계)**		**기부채납**

주1) 서울시 고시 제2016-178호(2016.6.30.)에 따른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
※상기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각호에 의한 분류임
※지정용도의 면적은 해당 용도의 지상부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바닥면적(주차장 제외)의 50%이상일 경우에 수용된 것으로 봄. 단, 전시장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상부 지정용도 설치면적으로 인정
※권장용도 중 '특정층'의 면적은 당해층 전체 전용면적의 50%이상인 경우를 수용된 것으로 봄. 단, 전층 권장용도 또는 전시장/회의장을 특정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면적을 제외한 당해층 전용면적의 50%인 경우 수용
※가로활성화용도라 함은 공공에 기여하는 용도 또는 업무 및 사무실이외의 보행활동을 지원하는 용도 중 관련청이 인정하는 용도임
-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자치구 포함)에서 인정하는 용도
- 예) 공공기여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문화, 전시, 공연
보행활동을 지원하는 용도 : 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등), 판매시설
※특정층은 1층 또는 도로, 보도 및 탄천변, 공공보행통로와 면하여 직접 출입이 가능한 층을 말함
※공공보행통로는 향후 세부개발계획수립시 방향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위치 및 선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탄천변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 공개공지 / 실내형 공공보행통로 조성 시에는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름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용도 계획은 '코엑스~잠실운동장일대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된 MICE 지원기능을 반영하여 입안 전 주관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추후 수립되는 이 일대의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하는 건축물용도를 반영하여야 함
※舊한국감정원부지 특별계획구역과 서울의료원부지 특별계획구역이 통합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변경을 통하여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서울의료원부지 특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획지 및 지정용도계획 변경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획지 및 용도계획 등 변경
•높이계획 변경	•건축법 도로사선 제한 폐지 반영, 서울시 관련기준 적용
•도시기반시설 계획 신설	•주보행축 실현 및 교통개선대책 등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 계획(기부채납)
•권장/불허용도 변경	•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 반영

- 이하여백 -

마) 舊한국감정원 특별계획구역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위 치			•삼성동 171-2	•좌동	
면 적			•10,988.5㎡	•좌동	
용도지역 / 용도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용시설보호지구	•좌동	
도시기반시설			-	**•봉은사로 114길 도로 확폭 (폭 15m→20m)**	
가구 및 획지계획			•가구 C12	•좌동	
건축물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전층 불허용도 •미관지구 해당지역은 당해 미관지구 불허용도 •공용시설보호지구는 당해 공용시설보호지구 불허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공장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특정층 불허용도 •숙박시설(단, 관광호텔 제외) ※특정층은 1층 또는 도로, 보도에서 직접출입이 가능한 층을 말함	•좌동	
		권장용도	○전층 권장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관광호텔(상업지역에 한함) •노유자시설 ※공용시설보호지구는 당해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제2·3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업무시설의 지상층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음	•좌동	
	밀도	건폐율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이하	•좌동	
		기준/허용 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준 220% / 허용 250% 이하	•좌동	
		상한 용적률	•허용용적률 × (1+1.3× 가중치× α)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좌동	
		높이	•도로사선제한 (H=1.5D이하) 적용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최고높이계획 수립	•좌동	
	배치	건축한계선	•가로변 폭 5m	•좌동	
기타 사항 관한 계획	대지내공지 및 통로	공공보행통로	•1개소 : 폭 3m(서울의료원변)	•좌동	
		공개공지	•공개공지 1개소 위치지정	•좌동	
	교통처리 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봉은사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좌동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및 舊한국감정원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사전협상 결과를 반영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변경)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를 고려하여 도입용도 체계 등을 정비하고, 용도지역·용적률·높이 등의 사항은 향후 변화된 구역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변경)할 수 있음
※舊한국감정원부지 특별계획구역과 서울의료원부지 특별계획구역이 통합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변경을 통하여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舊한국감정원 특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봉은사로 114길 도로 확폭 (폭 15m→20m)	•교통영향평가('16.7) 심의결과 반영

▌한국전력부지, 서울의료원부지, 舊한국감정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침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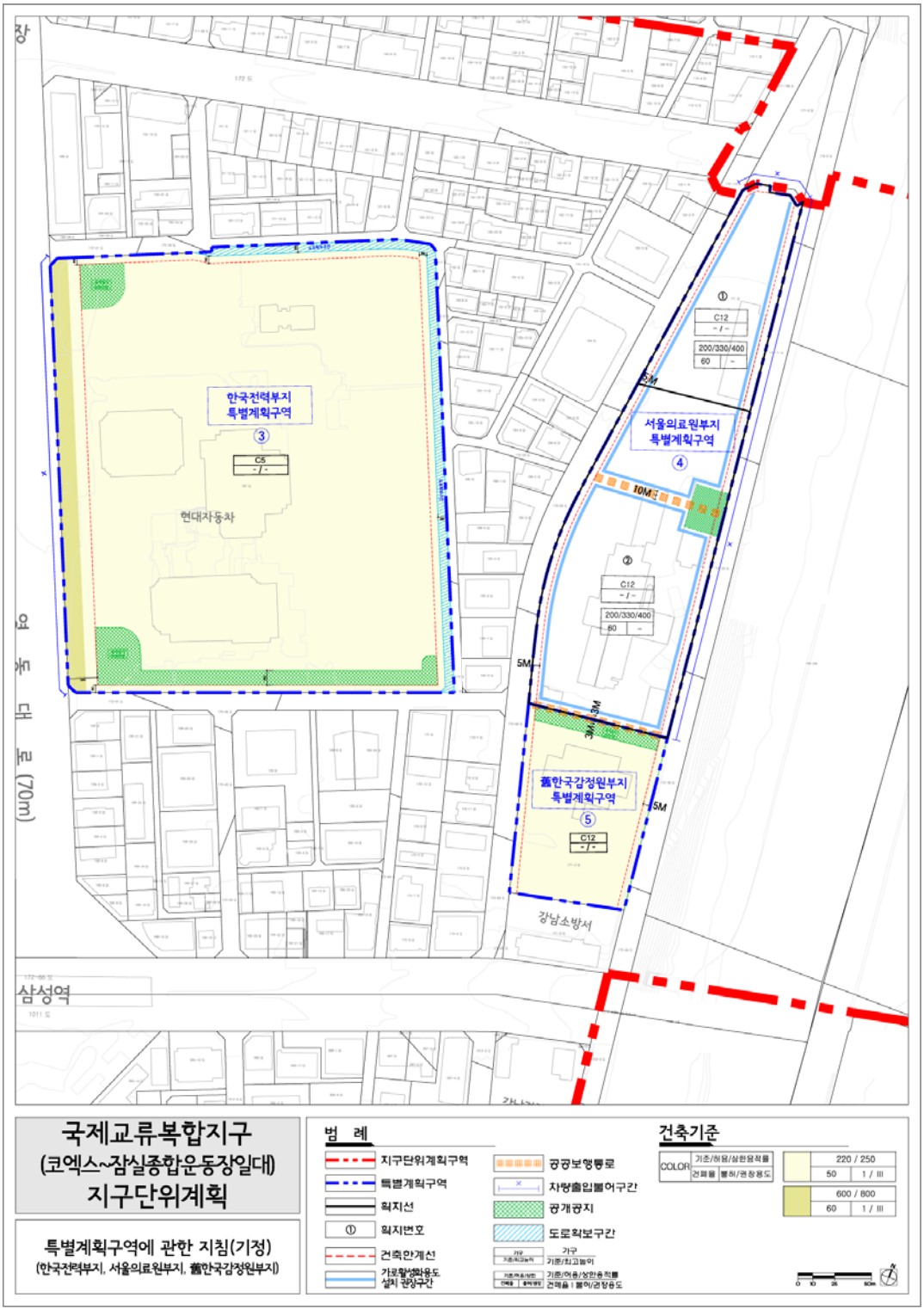

▌현대자동차부지, 서울의료원부지, 舊한국감정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침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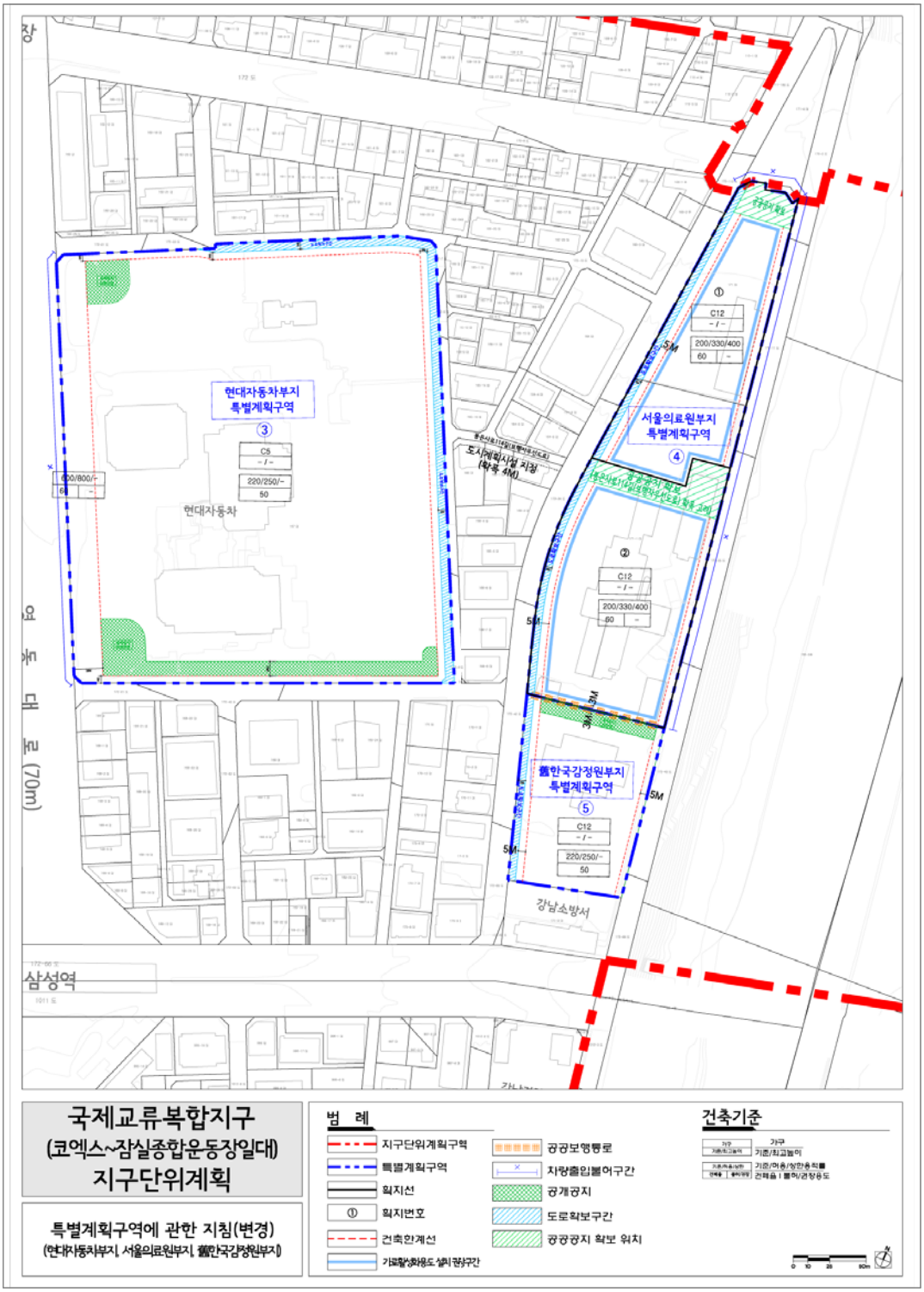

5.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1)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용적률 인센티브(기정)

항목 \ 내용			완화기준	비고
공동개발 및 맞벽건축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α	◦n=공동개발 필지수, n=2→α=0.1, n=3→α=0.2 n=4이상→α=0.3
	맞벽건축	준수시	기준용적률× 0.05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0.1	건축연면적(주차장제외)의 20%이상시. 단, 노유자시설은 건축연면적(주차장제외)의 5%이상
		특정층 권장 (규모 및 위치준수시)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1층바닥면적)× 0.2	해당 층면적의 50% 이상시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위치준수시	기준용적률× 0.05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α	◦피로티 구조 α=0.5 ◦침상형 구조 α=1.0 ◦개방형 구조 α=1.0
	쌈지형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 α	◦피로티 구조 α=0.5 ◦개방형 구조 α=1.0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 1.5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 α	◦피로티 구조 α=0.5 ◦개방형 구조 α=1.0
	보차혼용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	
건축물 외관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등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0.0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적용
	야간경관조명	준수시	기준용적률× 0.05	서울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받아 설치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준수시	기준용적률× (보존면적/대지면적)× 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녹화면적/대지면적)× 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으로서 기준용적률× 0.05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0.04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이용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0.04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0.05 또는 대지면적× 0.02 이상 설치
	신·재생에너지시설 (탄소마일리지 포함)	준수시	기준용적률× 0.05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에너지절감율	1등급	기준용적률× 0.08	◦대상:일반건축물(주상복합건축물 포함) ◦「에너지 절감률」, 「에너지 기능지표」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의 등급설정 및 등급별 인센티브 차등 적용 ◦각요소의 인센티브 산정시 중복 계상 불허
		2등급	기준용적률× 0.05	
	에너지성능지표	1등급	기준용적률× 0.08	
		2등급	기준용적률× 0.05	
	친환경건축물인증	1등급	기준용적률× 0.08	
		2등급	기준용적률× 0.05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Σ(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전층' 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지상층연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지상층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이상, '특정층' 의 경우 당해층 전용면적의 50%이상인 경우를 수용된 것으로 봄. 단, 노유자시설은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지상층연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지상층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5%이상
3. 대지내 공지 및 대지내 통로에 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예,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에 공개공지 또는 보행통로 조성시 등)
4.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한계선보다 추가하여 후퇴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건축한계선 추가 확보시에는 소수점 단위의 건축한계선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높이완화와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5.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광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6.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최소 20%는 친환경계획요소의 사용시에만 제공됨
7. 탄소마일리지 : 강남구 '탄소마일리지 제도' 를 따름
8. 조성 및 시설 설치기준은 서울시 기준에 적합해야 함

※ 용적률 완화 항목에 따른 인센티브는 기준높이 완화와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 본 계획 결정이전 기 공동개발(준공된 건축물)된 필지의 경우 공동개발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배제
※ 서울의료원부지 특별계획구역은 별도 적용

▌용적률 인센티브(변경)

항목 \ 내용				완화기준		비고
계획유도항목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 × 0.1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피로티 구조 α=0.5 ◦침상형 구조 α=1.0 ◦개방형 구조 α=1.0
		쌈지형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위치준수시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0.5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피로티/실내형 구조 α=0.5 ◦개방형 구조 α=1.0
		보차혼용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		
	건축물 용도	지정/권장용도 전층	준수시	기준용적률×(지정·권장용도면적÷연면적)×0.15		◦지상층 바닥면적의 50%이상시(주차장 제외)
		지정/권장용도 1층	준수시	기준용적률 × 0.1		◦1층 바닥면적의 50%이상시(주차장 제외)
	보행개선	지하연결통로	설치시	기준용적률 × 0.1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건축물 형태		준수시	기준용적률 × 0.2		
	주차계획	공동주차통로 공동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0.1		
친환경항목	환경친화적 건축물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0.04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관리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0.04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0.05 또는 대지면적× 0.02 이상 설치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녹화면적/대지면적) × 0.1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준수시	기준용적률× (보존면적/대지면적) × 0.2		◦자연토양 및 투수성포장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 × 0.2		
		녹색건축물인증	최우수 : 0.12	기준용적률 X α	세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 기준용적률 X 0.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우수 : 0.08			
			우량 : 0.04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 0.08	기준용적률 X α		
			2등급 : 0.06			
			3등급 : 0.04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1등급 : 0.12	기준용적률 X α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2등급 : 0.10			
			3등급 : 0.08			
			4등급 : 0.06			
			5등급 : 0.04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친환경 인센티브는 30%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7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3.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음
4. 지정용도의 면적은 해당 용도의 지정층 바닥면적 합계가 지정층 전체 바닥면적(주차장 제외)의 50%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함
5. 권장용도의 면적은 해당 용도의 해당층(전층/1층) 지상부 바닥면적 합계가 해당층(전층/1층) 지상부 전체 바닥면적(주차장 제외)의 50%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함
6. 대지내 공지 및 대지내 통로에 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예,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에 공개공지 또는 보행통로 조성시 등)
7. 건축한계선 등 인센티브 적용부분 지하부의 자연지반 보존은 중복하여 계상
8. 성격이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상 불가
9. 조성 및 시설 설치기준은 서울시 기준에 적합해야 함
10. 기타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인허가권자와 협의 하에 결정

※ 용적률 완화 항목에 따른 인센티브는 기준높이 완화와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 본 계획 결정이전 기 공동개발(준공된 건축물)된 필지의 경우 공동개발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배제
※ 서울의료원부지 특별계획구역은 별도 적용,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및 舊한국감정원부지 특별계획구역은 향후 사전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지침에 따라 별도 적용

▪ 서울의료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인센티브(변경없음)

<table>
<tr><th colspan="5">항목 \ 내용</th><th>완화기준</th><th>비 고</th></tr>
<tr><td rowspan="10">계획유도항목</td><td rowspan="3">대지내 공지</td><td rowspan="2" colspan="2">공개공지</td><td>위치준수시</td><td>기준용적률× 0.05</td><td></td></tr>
<tr><td>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td><td>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td><td>◦피로티 구조 α=0.5
◦침상형 구조 α=1.0
◦개방형 구조 α=1.0</td></tr>
<tr><td colspan="2">건축한계선</td><td>위치준수시</td><td>기준용적률×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1.0</td><td></td></tr>
<tr><td>대지내 통로</td><td colspan="2">공공보행통로</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 α</td><td>◦피로티/실내형 구조 α=0.5
◦개방형 구조 α=1.0</td></tr>
<tr><td rowspan="3">건축물 용도</td><td colspan="2">지정용도</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지정용도면적÷연면적)× 0.4</td><td>◦지상층 바닥면적의 50%이상시(주차장 제외)</td></tr>
<tr><td rowspan="2">권장용도</td><td>전층권장</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연면적)× 1</td><td>◦주차장 제외</td></tr>
<tr><td>특정층 가로활성화용도</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1</td><td>◦해당층 면적의 50%이상시</td></tr>
<tr><td>건축물 개방</td><td colspan="2">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td><td>설치시</td><td>기준용적률× (제공면적÷연면적)× 4</td><td>◦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도시계획위원회(자치구 포함)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td></tr>
<tr><td rowspan="10">친환경항목</td><td rowspan="10">환경친화적 건축물</td><td colspan="2">중수도시설 설치</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0.04</td><td>◦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td></tr>
<tr><td colspan="2">빗물관리시설 설치</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0.04</td><td>◦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0.05 또는 대지면적× 0.02 이상 설치</td></tr>
<tr><td colspan="2">옥상녹화</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녹화면적/대지면적)× 0.1</td><td>◦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td></tr>
<tr><td colspan="2">자연지반 보존</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보존면적/대지면적)× 0.2</td><td>◦자연토양 및 투수성포장
◦지하구조물 미설치시</td></tr>
<tr><td colspan="2">녹색주차장</td><td>준수시</td><td>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 0.2</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3">녹색건축물인증</td><td>최우수 : 0.12</td><td rowspan="3">기준용적률 X α</td><td rowspan="8">세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 기준용적률 X 0.4</td><td rowspan="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td></tr>
<tr><td>우수 : 0.08</td></tr>
<tr><td>우량 : 0.04</td></tr>
<tr><td colspan="2" rowspan="3">에너지효율등급 인증</td><td>1등급 : 0.08</td><td rowspan="3">기준용적률 X α</td></tr>
<tr><td>2등급 : 0.06</td></tr>
<tr><td>3등급 : 0.04</td></tr>
<tr><td colspan="2" rowspan="5">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td><td>1등급 : 0.12</td><td rowspan="5">기준용적률 X α</td><td rowspan="5">◦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td></tr>
<tr><td>2등급 : 0.10</td></tr>
<tr><td>3등급 : 0.08</td></tr>
<tr><td>4등급 : 0.06</td></tr>
<tr><td>5등급 : 0.04</td></tr>
</table>

주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지정용도의 면적은 해당 용도의 지상부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바닥면적(주차장 제외)의 50%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함. 단, 전시장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상부 지정용도 설치면적으로 인정
3) 권장용도 중 '특정층'의 면적은 당해층 전체 전용면적의 50%이상인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함. 단, 전층 권장용도 또는 전시장/회의장을 특정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면적을 제외한 당해층 전용면적의 50%인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함
4) 대지내 공지 및 대지내 통로에 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예,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에 공개공지 또는 보행통로 조성시 등)
5)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친환경 인센티브는 30%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7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6)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음
7)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인센티브 항목은 중복하여 적용치 않으며, 해당 항목 중 선택 적용 가능함
8) 조성 및 시설 설치기준은 서울시 기준에 적합해야 함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기정)

상한용적률 적용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제 제7조 준수

※ 상한용적률 적용 인센티브는 기준높이 완화와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변경)

<table>
<tr><td rowspan="2">상한용적률 적용</td><td>공공시설 부지를 제공(기부채납),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기부채납)하는 경우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제 제7조 준수
※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시의 환산 부지면적 등 산정 방법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 제공된 (환산)부지 면적은 기준높이 완화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다만, 제공된 (환산)부지면적을 용적률 완화(상한용적률) 및 기준높이완화에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음</td></tr>
<tr><td>공동개발(특별지정)하는 경우
<table>
<tr><th>위 치</th><th>공동개발 필지수</th><th>상한용적률 인센티브</th></tr>
<tr><td>강남구 삼성동
166, 166-1, 166-2, 166-3, 166-4</td><td>5필지
(3,906.4㎡)</td><td>40% 이하</td></tr>
</table>
※ 공동개발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공동개발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공시설 부지 제공(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는 별도 적용
※ 공동개발(특별지정)은 보행자우선도로변 폭 4m이상 확폭을 포함하는 경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하여 일부만 공동개발 가능. 그 외 변경은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미적용</td></tr>
</table>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변경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항목 및 완화내용 변경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6)을 적용하여 계획 목적 달성 위한 인센티브 항목 변경

2) 높이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기준높이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기정)

기준높이 완화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1] 조성시 기준높이×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 + {기준높이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등 면적의 절반÷ 대지면적)} ◦ 기부채납시[2] 기준높이× {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 당초의 대지면적)} 주1) '공개공간' 이라 함은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건폐율 강화에 의한 공개공간,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지하철연결통로 등을 말함 - 공개공간 항목 중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시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된 전면공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지하철연결통로' 는 폭 4m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라 설치 면적의 2분의 1만 산입한다. - '피로티구조'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라 설치면적의 2분의 1만 산입한다. 주2)기부채납에 따른 완화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공된 부지 면적은 용적률 완화(상한용적률)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다만, 제공된 부지면적을 용적률 완화(상한용적률) 및 기준높이완화에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기준높이 완화 항목에 따른 인센티브는 용적률 완화와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 6m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가 기준높이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한계선으로 전면공지 조성' 항목의 우선 적용을 권장하며, 이 때 추가되는 전면공지 폭에 대해서 소수점은 인정하지 않음 ※ 기준높이 완화기준 변경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함

▌기준높이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변경)

기준높이 완화

구분			계획내용	항목별 적용 지역	
				기준/허용용적률 동일 일반주거지역	그 외 지역
공개공지 조성시			기준높이×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 + {기준높이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등 면적의 절반÷ 대지면적)}	○	○
기부채납시 (공공시설 부지,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기준높이× {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 당초의 대지면적)}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준수시	기준높이× 0.1		-
건축물 용 도	지정/권장 용도	전층 준수시	기준높이×(지정·권장용도면적÷주차장 제외 연면적) × 0.5		
		1층 준수시	기준높이× 0.1		
대지내 공 지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위치준수시	기준높이×[(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1.0		
대지내 통 로	공공보행통로	준수시	기준높이× (조성면적 ÷ 대지면적)× α ※개방형 구조 α=1.0, 피로티/실내형 구조 α=0.5		
	보차혼용통로	준수시	기준높이× (조성면적 ÷ 대지면적)		
건축물 형태		준수시	기준높이 × 0.2		
주차계획	공동주차통로 공동주차장	조성시	기준높이 × 0.1		

주) 1. 최고높이 산출 : 기준높이 + Σ(각 항목별 인센티브높이) ≦ 최고높이
2. 기부채납에 따른 완화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공된 부지 면적은 용적률 완화(상한용적률)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다만, 제공된 부지면적을 용적률 완화(상한용적률) 및 기준높이완화에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음
3.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시의 환산 부지면적 등 산정 방법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을 준용함
4. 지정용도의 면적은 해당 용도의 지정층 바닥면적 합계가 지정층 전체 바닥면적(주차장 제외)의 50%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함
5. 권장용도의 면적은 해당 용도의 해당층(전층/1층) 지상부 바닥면적 합계가 해당층(전층/1층) 지상부 전체 바닥면적(주차장 제외)의 50%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함
6. 6m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가 기준높이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한계선' 항목의 우선 적용을 권장
7. 대지내 공지 및 대지내 통로에 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예,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에 공개공지 또는 보행통로 조성시 등)
8. 성격이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상 불가
9. 조성 및 시설 설치기준은 서울시 기준에 적합해야 함
10. 기타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인허가권자와 협의 하에 결정
11. 본 계획 결정이전 기 공동개발(준공된 건축물)된 필지의 경우 공동개발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배제

▌기준높이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변경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기준높이 인센티브 완화 항목 및 완화내용 변경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6)을 적용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라 높이인센티브 항목 수정 · 신설 및 선별적 적용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권한 : 구청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 미 한 사 항		비 고
기 정	변 경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좌 동	변경없음
가구 및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자율적 공동개발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자율적 공동개발	변경 (최대개발규모 계획과 정합성 고려)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제외)의 위치변경 및 조성방법 변경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제외) 및 대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 변경(신설 포함)	변경 (내용 통합)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의 성격·설계계획(위치변경 및 신규설치)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좌 동	변경없음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좌 동	변경없음

※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 · 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 · 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 적용

※ 경미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은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1.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해 변경 가능한 사항 : 공동개발(특별지정), 기준 및 최고높이 계획, 건축선의 축소 변경(폐지포함)
2.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해 변경 가능한 사항 : 공동개발(지정)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1), 동남권계획반(☎02-2213-8229), 강남구 도시계획과(☎02-3423-6112), 송파구 도시계획과(☎02-2147-3005)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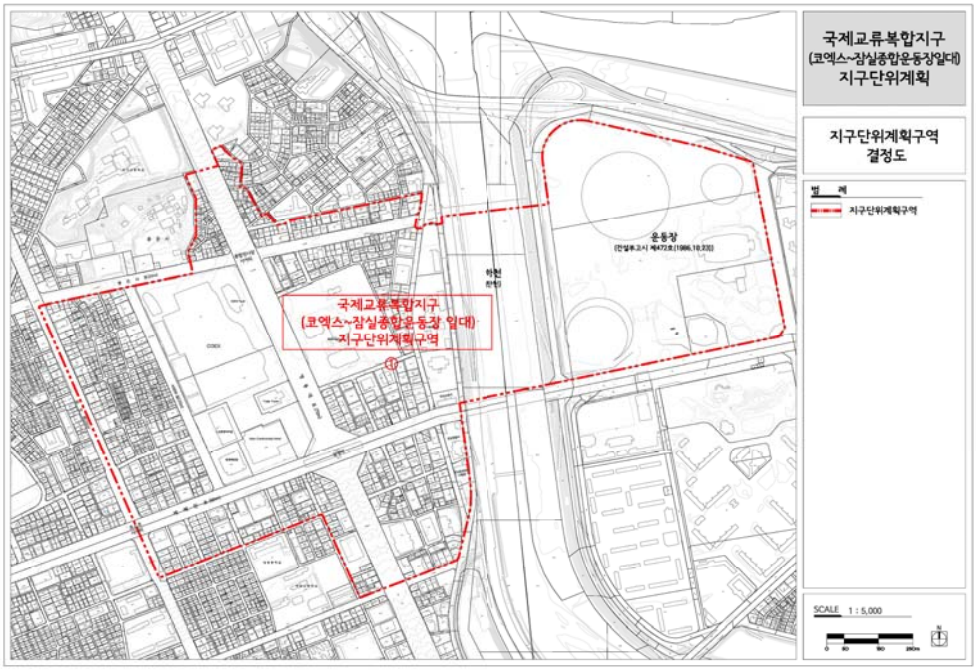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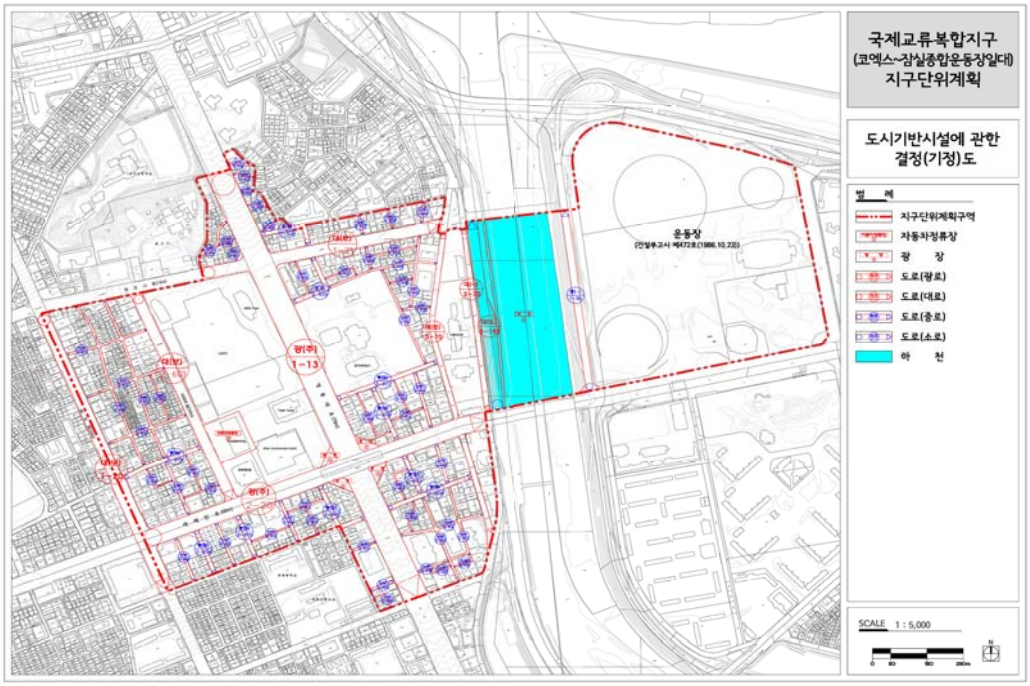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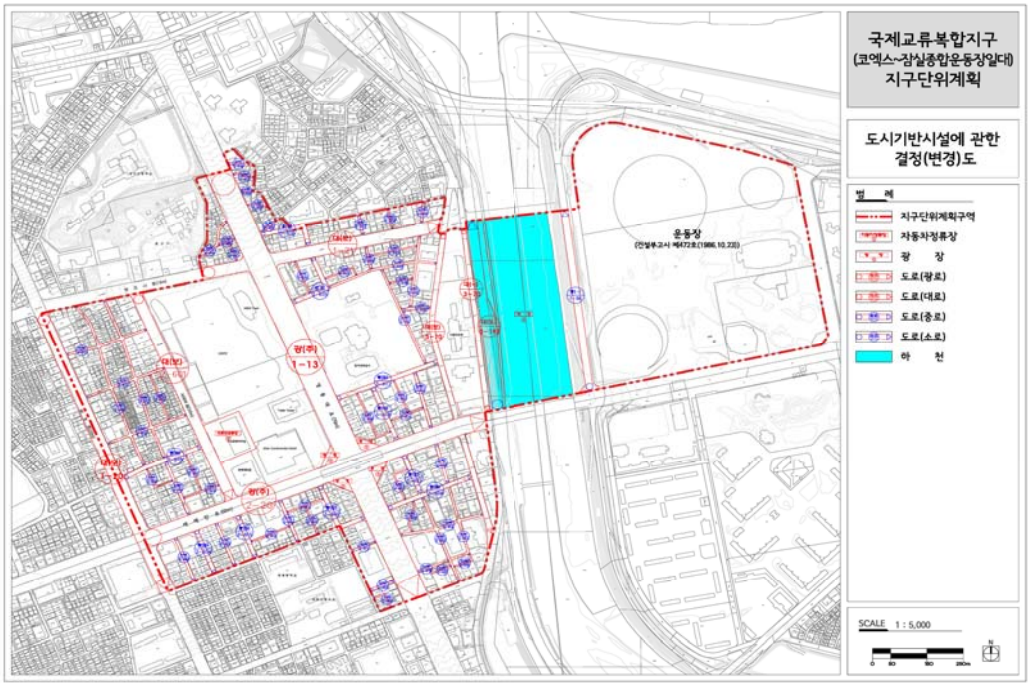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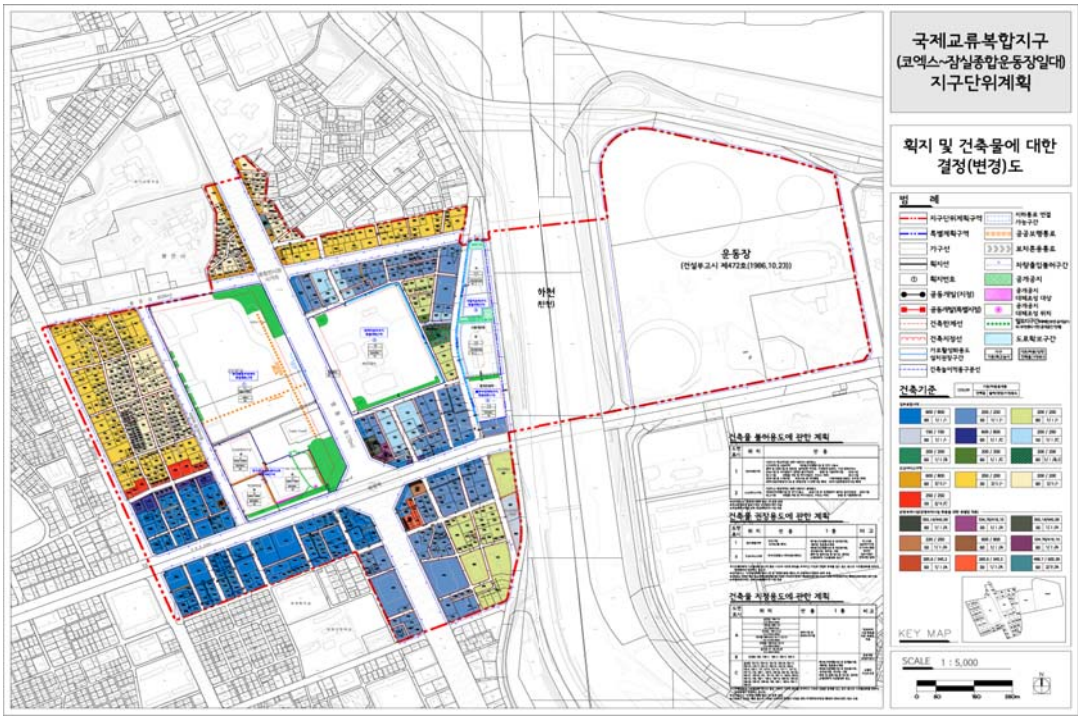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지형도면 고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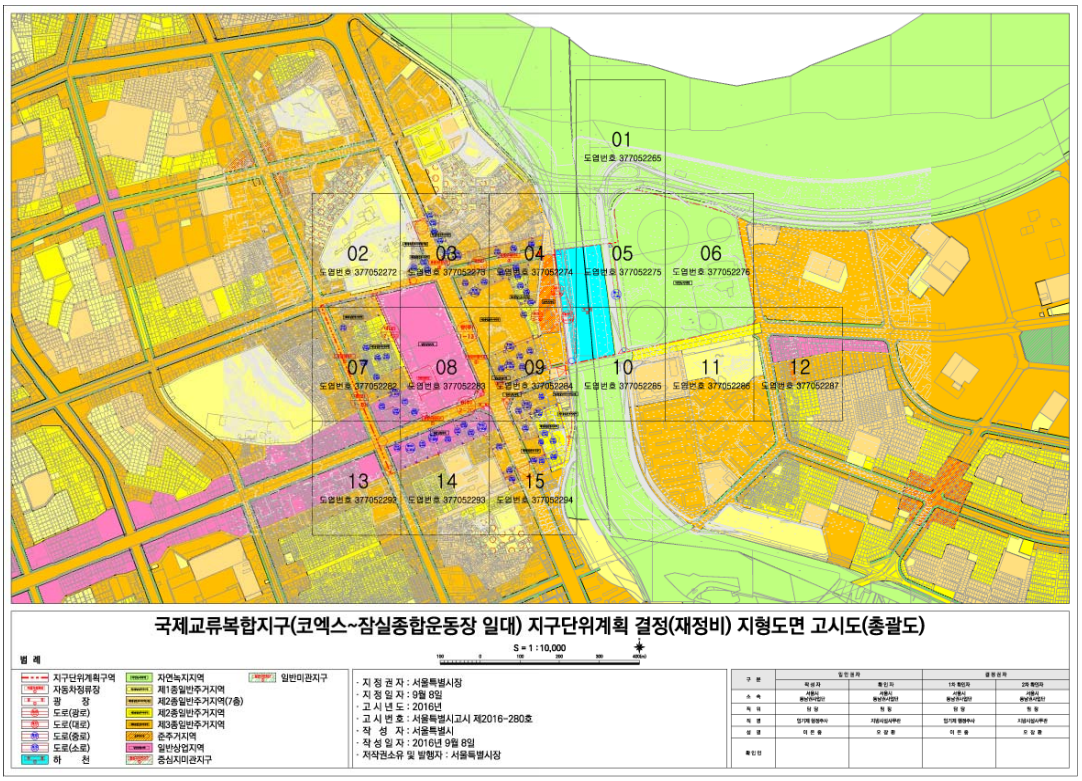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재정비) 지형도면 고시도 01

도엽번호 377052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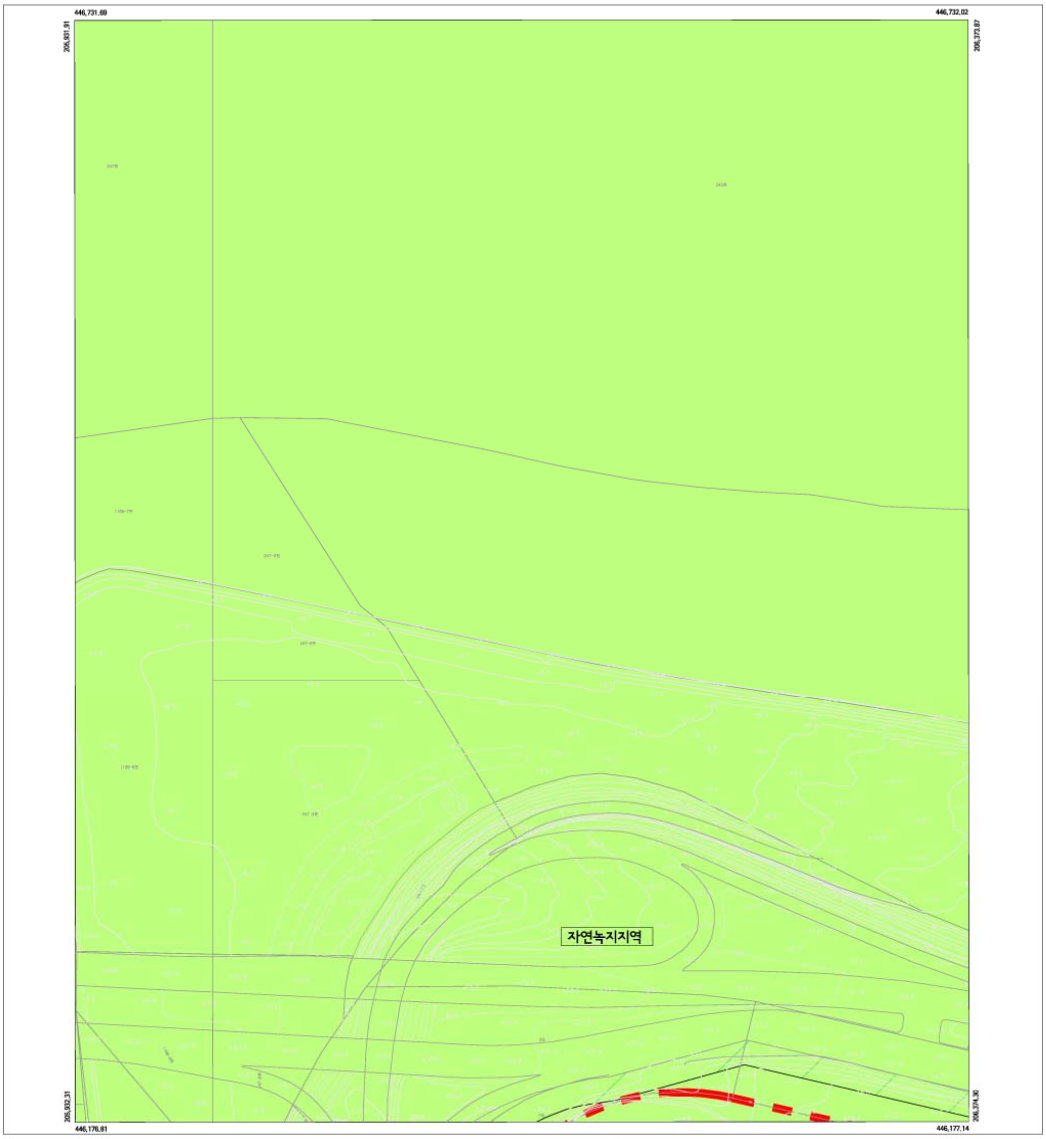

S = 1 : 1,000

범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자동차정류장
- 광 장
- 도로(광로)
- 도로(대로)
- 도로(중로)
- 도로(소로)
- 하 천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중심지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 지 정 권 자 : 서울특별시장
- 지 정 일 자 : 9월 8일
- 고 시 년 도 : 2016년
- 고 시 번 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0호
- 작 성 자 : 서울특별시
- 작 성 일 자 : 2016년 9월 8일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서울특별시장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 성 자	확 인 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직 위	담 당	팀 장	담 당	팀 장
직 명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사십사무관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사십사무관
성 명	이 은 중	오 장 환	이 은 중	오 장 환
확인인				

색 인 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재정비) 지형도면 고시도 02

도엽번호 377052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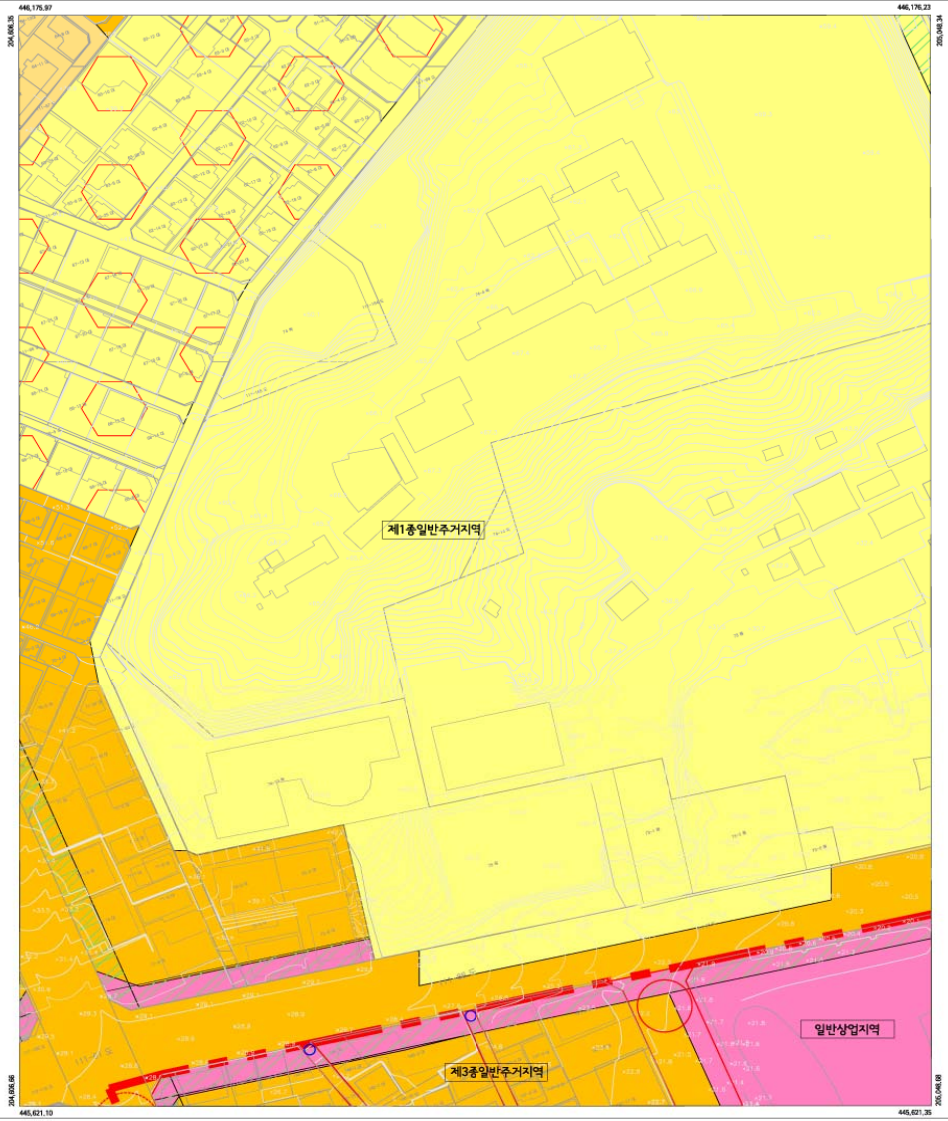

S = 1 : 1,000

범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자동차정류장
- 광 장
- 도로(광로)
- 도로(대로)
- 도로(중로)
- 도로(소로)
- 하 천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중심지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 지 정 권 자 : 서울특별시장
· 지 정 일 자 : 9월 8일
· 고 시 년 도 : 2016년
· 고 시 번 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0호
· 작 성 자 : 서울특별시
· 작 성 일 자 : 2016년 9월 8일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서울특별시장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 성 자	확 인 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직 위	담 당	팀 장	담 당	팀 장
직 명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 명	이 은 송	오 장 환	이 은 송	오 장 환
확인란				

색 인 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재정비) 지형도면 고시도 03

도엽번호 377052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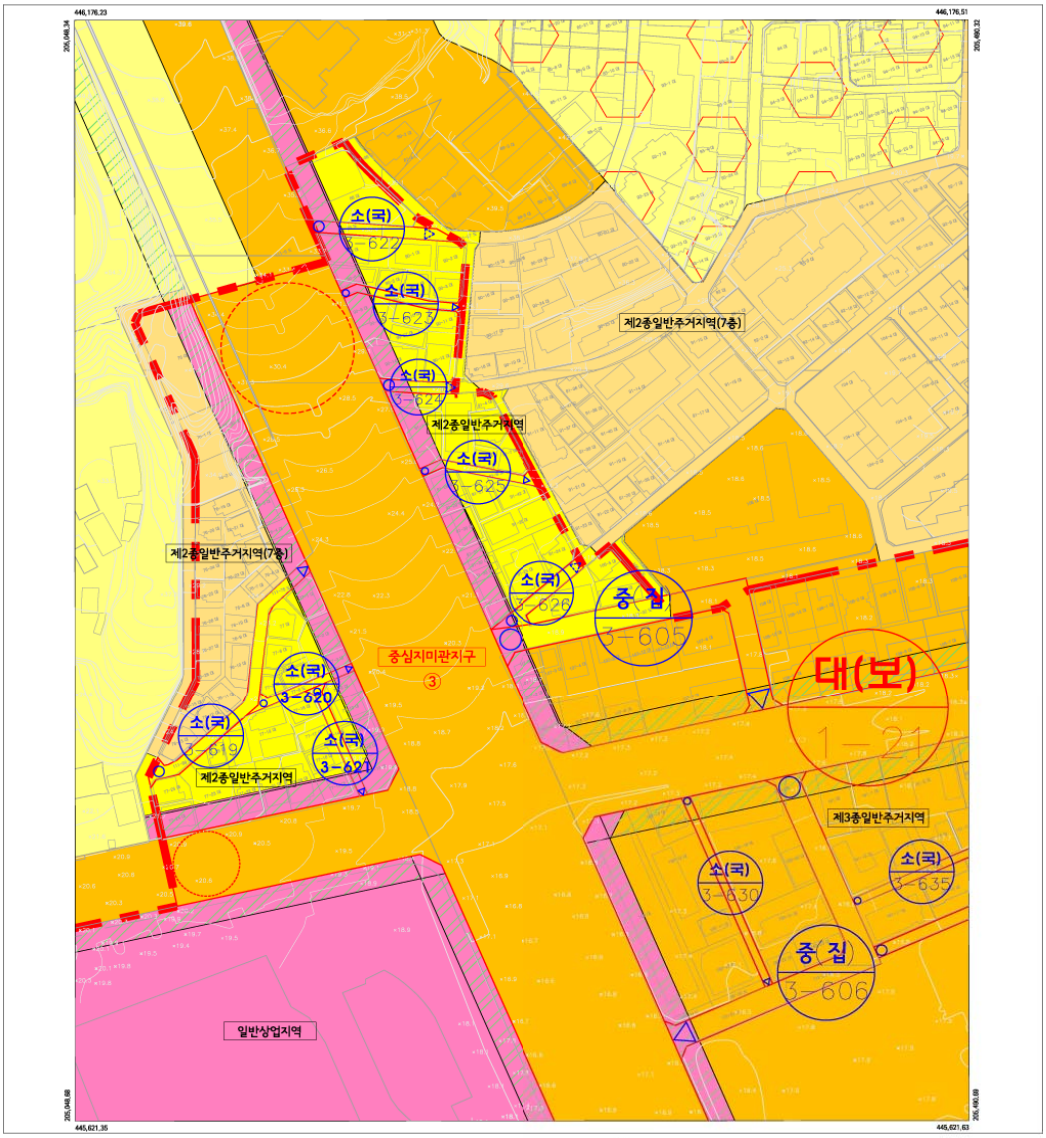

범 례

S = 1 : 1,000

색 인 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 자동차정류장
- 광 장
- 도로(광로)
- 도로(대로)
- 도로(중로)
- 도로(소로)
- 하 천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중심지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 지 정 권 자 : 서울특별시장
- 지 정 일 자 : 9월 8일
- 고 시 년 도 : 2016년
- 고 시 번 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0호
- 작 성 자 : 서울특별시
- 작 성 일 자 : 2016년 9월 8일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서울특별시장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 성 자	확 인 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직 위	담 당	팀 장	담 당	팀 장
직 명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 명	이 은 중	오 장 환	이 은 중	오 장 환
확 인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재정비) 지형도면 고시도 04

도엽번호 377052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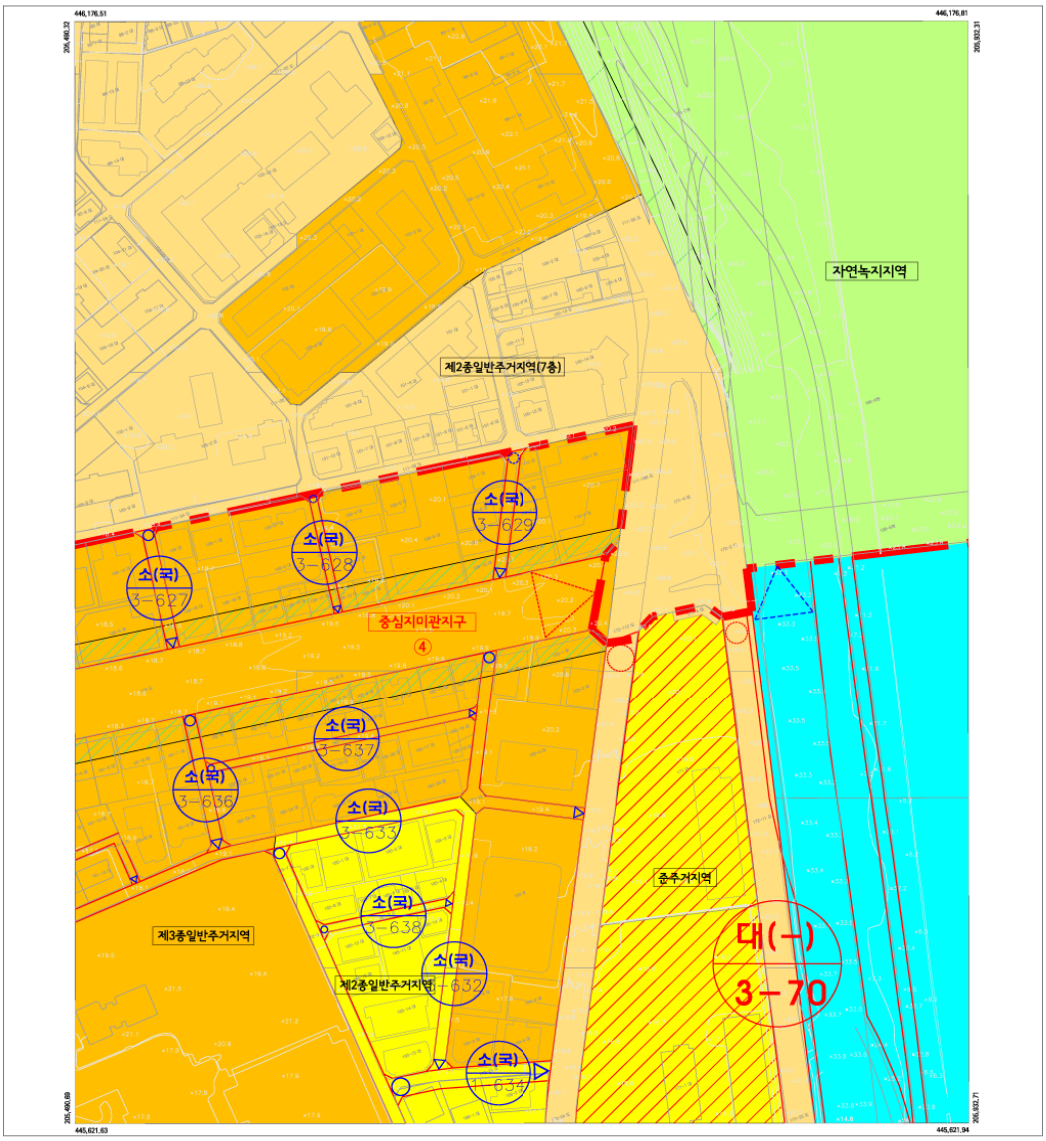

S = 1 : 1,000

범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자동차정류장
- 광 장
- 도로(광로)
- 도로(대로)
- 도로(중로)
- 도로(소로)
- 하 천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중심지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 지 정 권 자 : 서울특별시장
- 지 정 일 자 : 9월 8일
- 고 시 년 도 : 2016년
- 고 시 번 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0호
- 작 성 자 : 서울특별시
- 작 성 일 자 : 2016년 9월 8일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서울특별시장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직 위	담 당	팀 장	담 당	팀 장
직 명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 명	이 은 중	오 장 환	이 은 중	오 장 환
확인인				

색 인 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재정비) 지형도면 고시도 05

도엽번호 377052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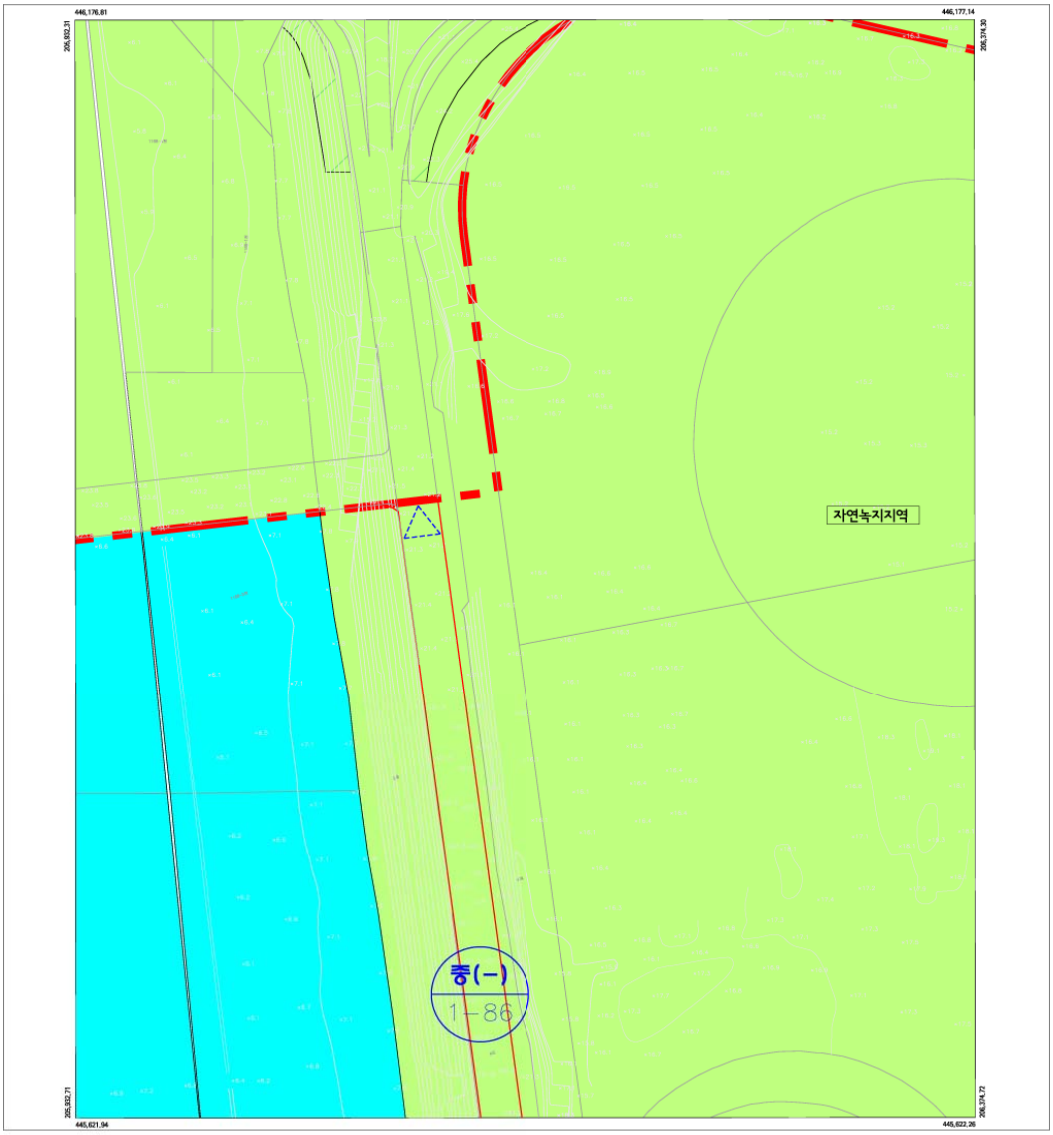

S = 1 : 1,000

범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자동차정류장
- 광 장
- 도로(광로)
- 도로(대로)
- 도로(중로)
- 도로(소로)
- 하 천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중심지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 지 정 권 자 : 서울특별시장
· 지 정 일 자 : 9월 8일
· 고 시 년 도 : 2016년
· 고 시 번 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0호
· 작 성 자 : 서울특별시
· 작 성 일 자 : 2016년 9월 8일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서울특별시장

구 분	입안조자		결정권자	
	작성자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직 위	담 당	팀 장	담 당	팀 장
직 명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 명	이 은 중	오 장 환	이 은 중	오 장 환
확인인				

색 인 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재정비) 지형도면 고시도 06

도엽번호 377052276

S = 1 : 1,000

범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자동차정류장
- 광 장
- 도로(광로)
- 도로(대로)
- 도로(중로)
- 도로(소로)
- 하 천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중심지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 지 정 권 자 : 서울특별시장
· 지 정 일 자 : 9월 8일
· 고 시 년 도 : 2016년
· 고 시 번 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0호
· 작 성 자 : 서울특별시
· 작 성 일 자 : 2016년 9월 8일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서울특별시장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 성 자	확 인 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직 위	담 당	팀 장	담 당	팀 장
직 명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 명	이 은 중	오 장 환	이 은 중	오 장 환
확인인				

색 인 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재정비) 지형도면 고시도 07

도엽번호 377052282

S = 1 : 1,000

범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자동차정류장
- 광 장
- 도로(광로)
- 도로(대로)
- 도로(중로)
- 도로(소로)
- 하 천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중심지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 지 정 권 자 : 서울특별시장
- 지 정 일 자 : 9월 8일
- 고 시 년 도 : 2016년
- 고 시 번 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0호
- 작 성 자 : 서울특별시
- 작 성 일 자 : 2016년 9월 8일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서울특별시장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 성 자	확 인 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직 위	담 당	팀 장	담 당	팀 장
직 명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 명	이 은 송	오 장 환	이 은 송	오 장 환
확인인				

색 인 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재정비) 지형도면 고시도 08

도엽번호 377052283

S = 1 : 1,000

범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자동차정류장
- 광 장
- 도로(광로)
- 도로(대로)
- 도로(중로)
- 도로(소로)
- 하 천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중심지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 지 정 권 자 : 서울특별시장
· 지 정 일 자 : 9월 8일
· 고 시 년 도 : 2016년
· 고 시 번 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0호
· 작 성 자 : 서울특별시
· 작 성 일 자 : 2016년 9월 8일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서울특별시장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직 위	담 당	팀 장	담 당	팀 장
직 명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 명	이 은 중	오 장 환	이 은 중	오 장 환
확인인				

색 인 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재정비) 지형도면 고시도 09

도엽번호 377052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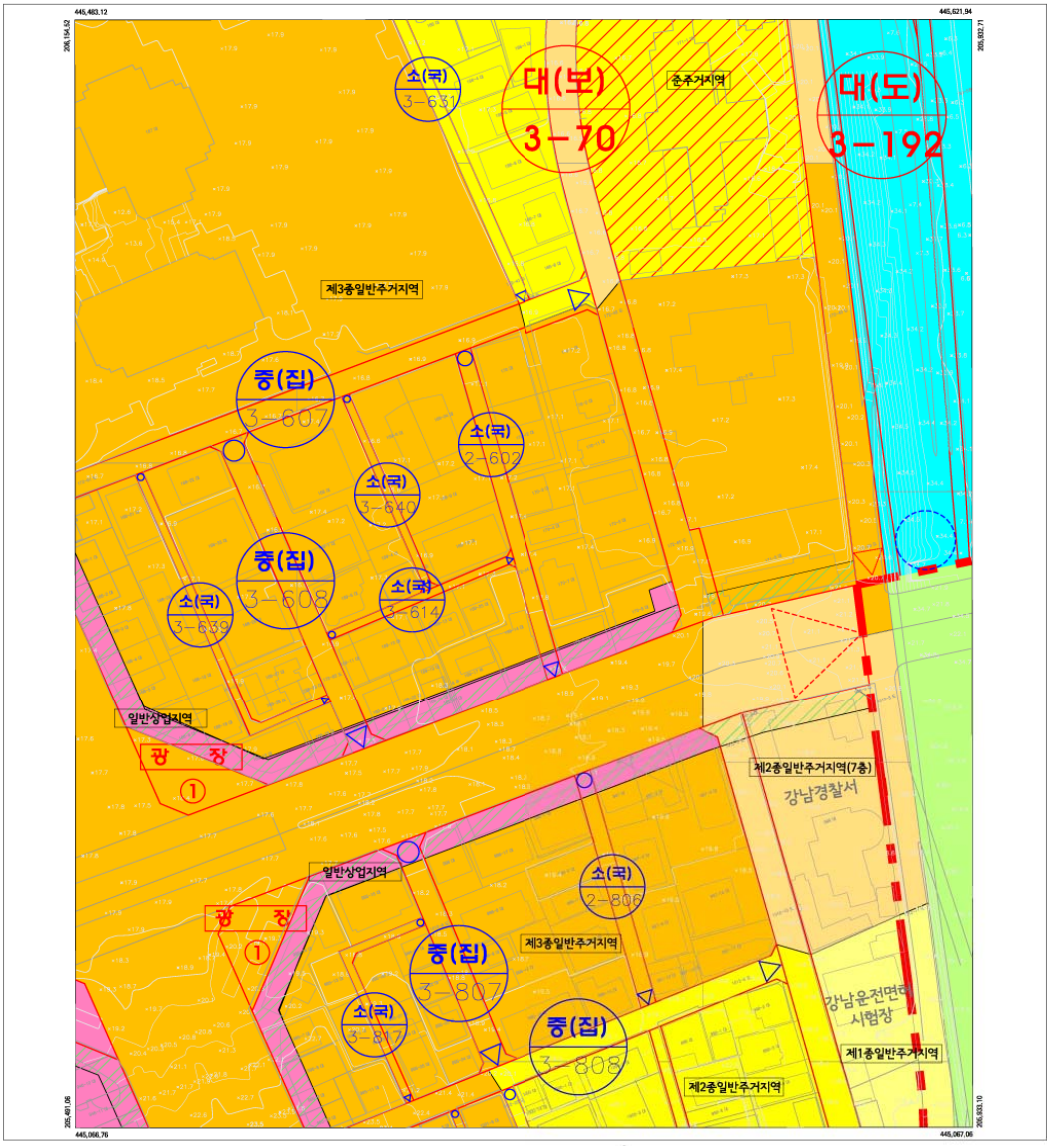

S = 1 : 1,000

범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자동차정류장
- 광 장
- 도로(광로)
- 도로(대로)
- 도로(중로)
- 도로(소로)
- 하 천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중심지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 지 정 권 자 : 서울특별시장
- 지 정 일 자 : 9월 8일
- 고 시 년 도 : 2016년
- 고 시 번 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0호
- 작 성 자 : 서울특별시
- 작 성 일 자 : 2016년 9월 8일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서울특별시장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 성 자	확 인 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직 위	담 당	팀 장	담 당	팀 장
직 명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 명	이 은 중	오 장 환	이 은 중	오 장 환
확인인				

색 인 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재정비) 지형도면 고시도 10

도엽번호 377052285

S = 1 : 1,000

범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자동차정류장
- 광 장
- 도로(광로)
- 도로(대로)
- 도로(중로)
- 도로(소로)
- 하 천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중심지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 지 정 권 자 : 서울특별시장
- 지 정 일 자 : 9월 8일
- 고 시 년 도 : 2016년
- 고 시 번 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0호
- 작 성 자 : 서울특별시
- 작 성 일 자 : 2016년 9월 8일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서울특별시장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 성 자	확 인 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직 위	담 당	팀 장	담 당	팀 장
직 명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 명	이 은 중	오 장 환	이 은 중	오 장 환
확인인				

색 인 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재정비) 지형도면 고시도 11

도엽번호 377052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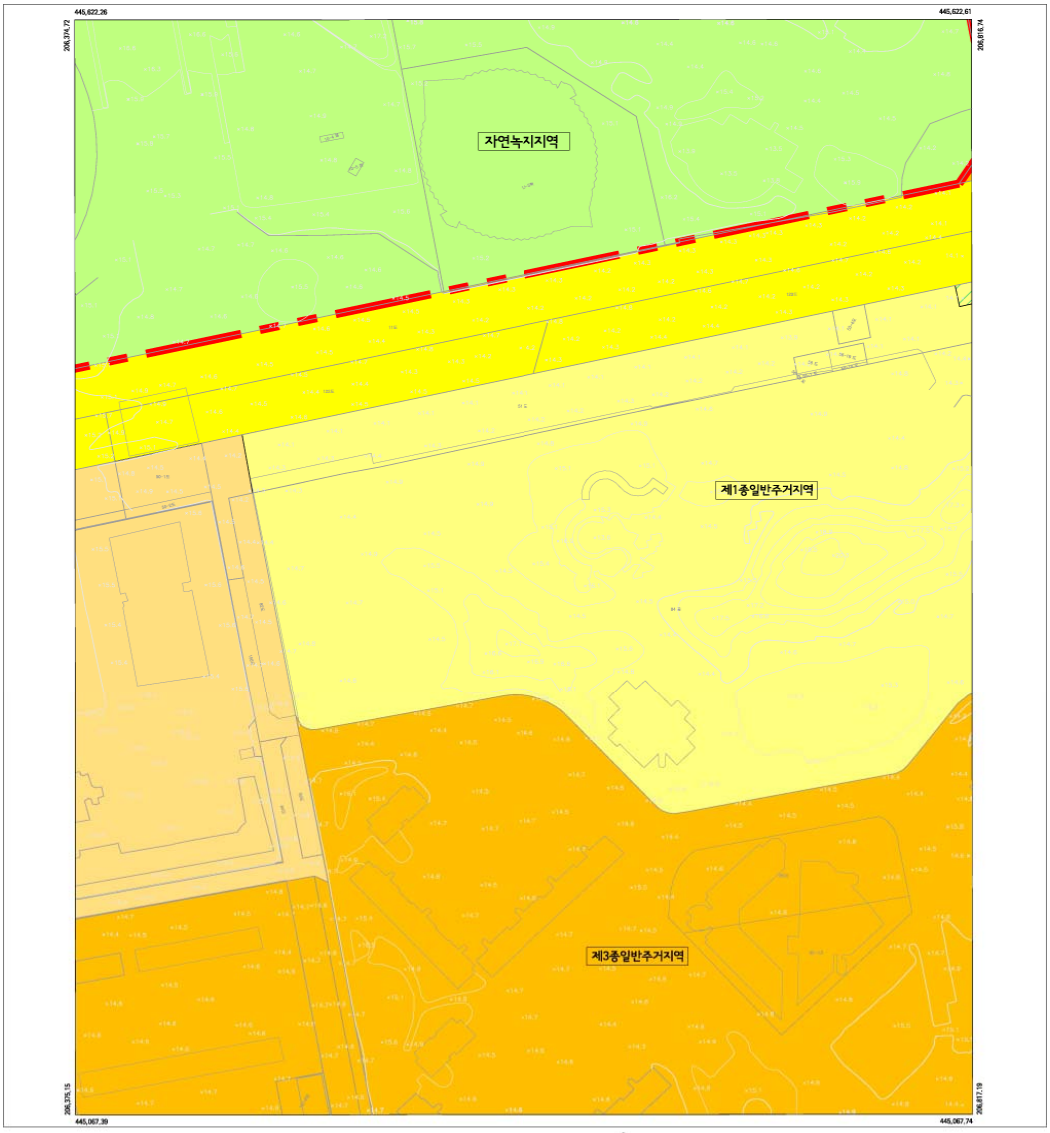

S = 1 : 1,000

범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자동차정류장
- 광 장
- 도로(광로)
- 도로(대로)
- 도로(중로)
- 도로(소로)
- 하 천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중심지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 지 정 권 자 : 서울특별시장
· 지 정 일 자 : 9월 8일
· 고 시 년 도 : 2016년
· 고 시 번 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0호
· 작 성 자 : 서울특별시
· 작 성 일 자 : 2016년 9월 8일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서울특별시장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직 위	담 당	팀 장	담 당	팀 장
직 명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 명	이 은 중	오 정 환	이 은 중	오 정 환
확인인				

색 인 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재정비) 지형도면 고시도 12

도엽번호 377052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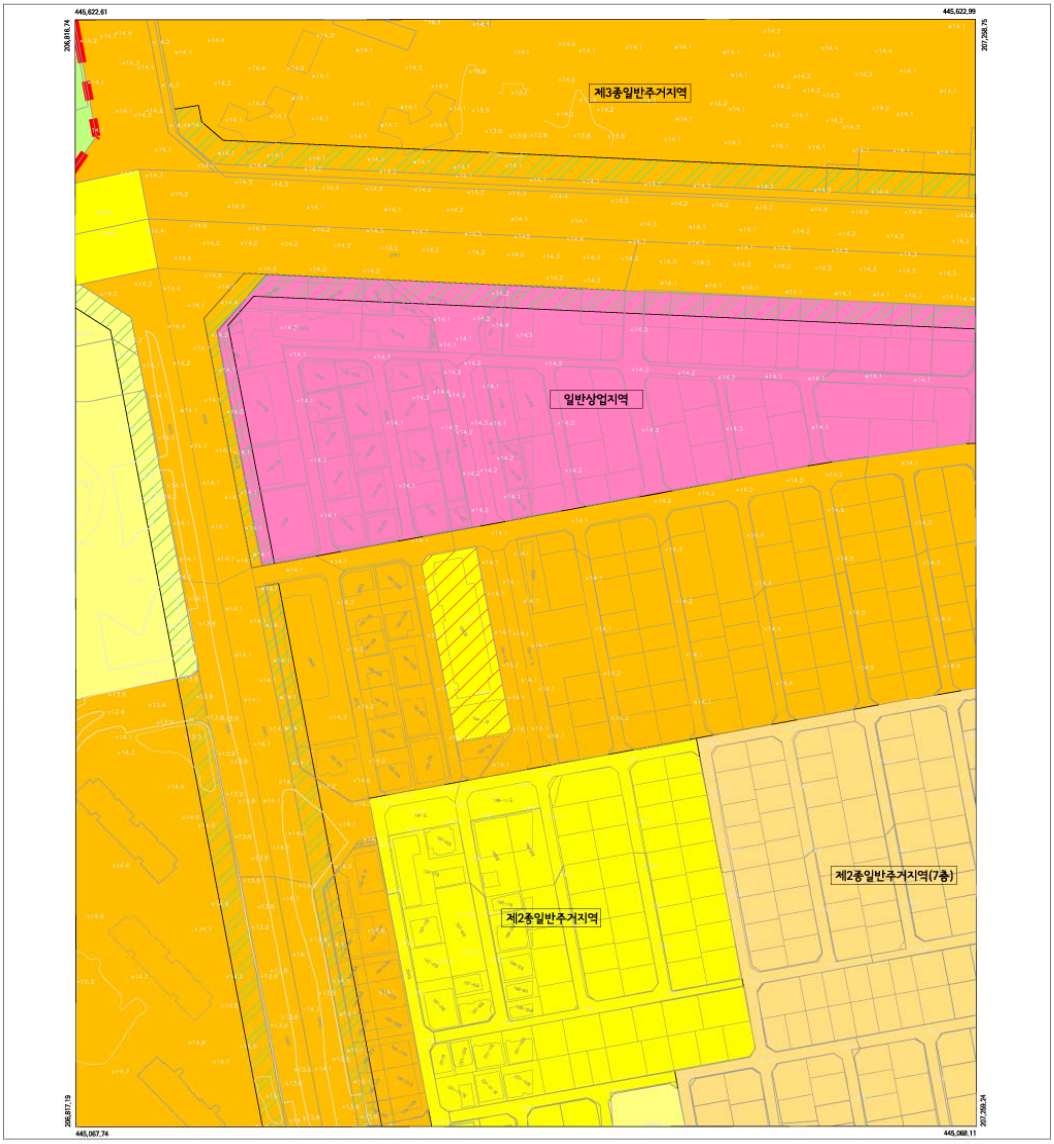

S = 1 : 1,000

범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자동차정류장
- 광 장
- 도로(광로)
- 도로(대로)
- 도로(중로)
- 도로(소로)
- 하 천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중심지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 지 정 권 자 : 서울특별시장
- 지 정 일 자 : 9월 8일
- 고 시 년 도 : 2016년
- 고 시 번 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0호
- 작 성 자 : 서울특별시
- 작 성 일 자 : 2016년 9월 8일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서울특별시장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 성 자	확 인 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직 위	담 당	팀 장	담 당	팀 장
직 명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 명	이 은 종	오 장 환	이 은 종	오 장 환
확인인				

색 인 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재정비) 지형도면 고시도 13

도엽번호 377052292

S = 1 : 1,000

범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자동차정류장
- 광 장
- 도로(광로)
- 도로(대로)
- 도로(중로)
- 도로(소로)
- 하 천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중심지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 지 정 권 자 : 서울특별시장
- 지 정 일 자 : 9월 8일
- 고 시 년 도 : 2016년
- 고 시 번 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0호
- 작 성 자 : 서울특별시
- 작 성 일 자 : 2016년 9월 8일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서울특별시장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직 위	담 당	팀 장	담 당	팀 장
직 명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 명	이 은 홍	오 장 환	이 은 홍	오 장 환
확인인				

색 인 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재정비) 지형도면 고시도 14

도엽번호 377052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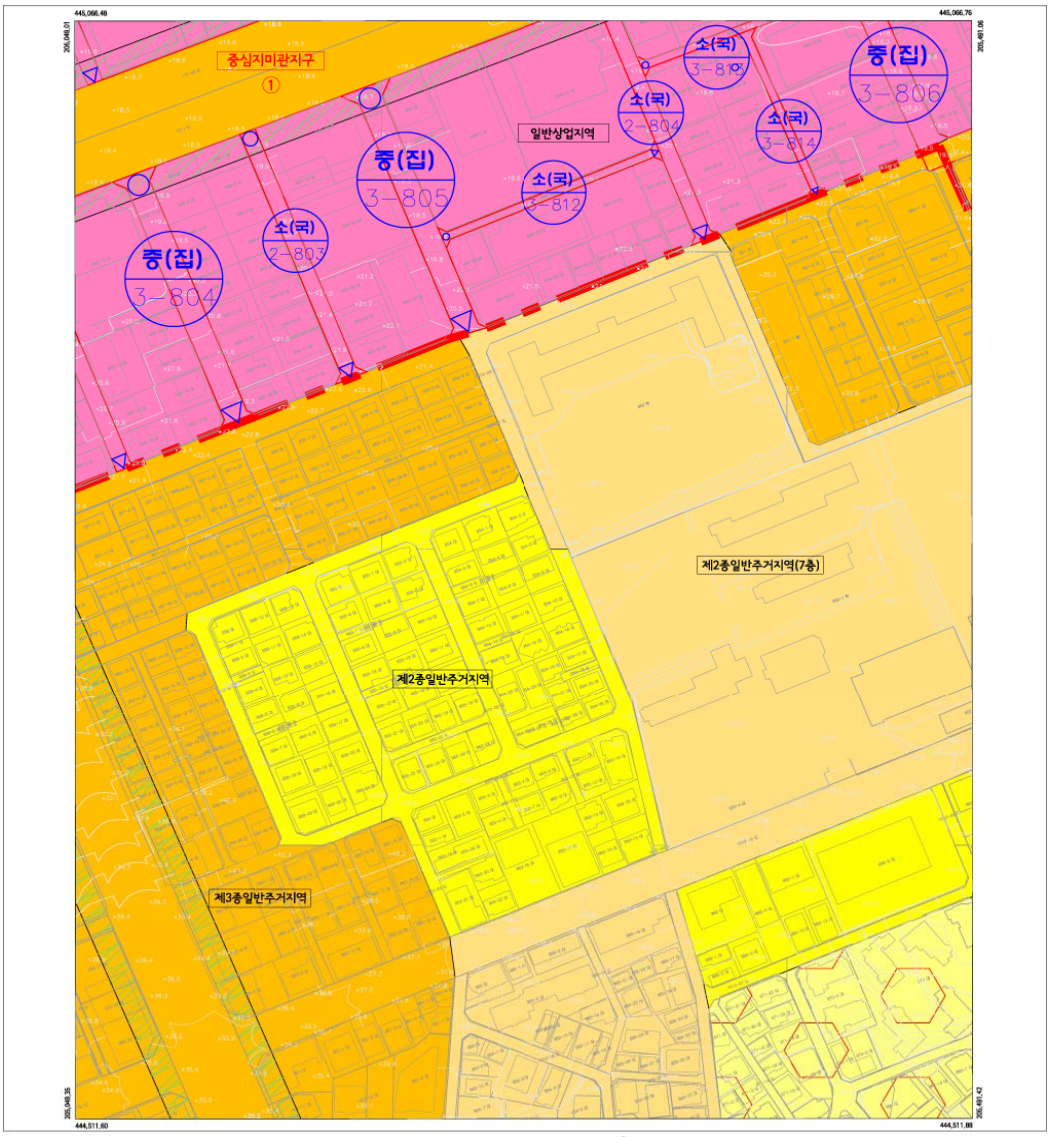

범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자동차정류장
- 광 장
- 도로(광로)
- 도로(대로)
- 도로(중로)
- 도로(소로)
- 하 천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중심지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S = 1 : 1,000

- 지 정 권 자 : 서울특별시장
- 지 정 일 자 : 9월 8일
- 고 시 년 도 : 2016년
- 고 시 번 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0호
- 작 성 자 : 서울특별시
- 작 성 일 자 : 2016년 9월 8일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서울특별시장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 성 자	확 인 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서울시 중남권사업단	서울시 중남권사업단	서울시 중남권사업단	서울시 중남권사업단
직 위	담 당	팀 장	담 당	팀 장
직 명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 명	이 은 중	오 장 환	이 은 중	오 장 환
확인인				

색 인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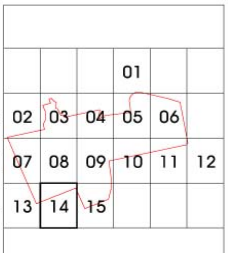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재정비) 지형도면 고시도 15

도엽번호 377052294

S = 1 : 1,000

범 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자동차정류장
- 광 장
- 도로(광로)
- 도로(대로)
- 도로(중로)
- 도로(소로)
- 하 천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중심지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 지 정 권 자 : 서울특별시장
- 지 정 일 자 : 9월 8일
- 고 시 년 도 : 2016년
- 고 시 번 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0호
- 작 성 자 : 서울특별시
- 작 성 일 자 : 2016년 9월 8일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서울특별시장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 성 자	확 인 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직 위	담 당	팀 장	담 당	팀 장
직 명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임기제 행정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 명	이 은 중	오 장 환	이 은 중	오 장 환
확인인				

색 인 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1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64호(2016.06.1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09호(2016.07.21.)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한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경미한 변경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의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경미한 변경결정 및 변경사유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체육공원	도봉구 도봉동 8번지 일대	49,819	(증)11	49,830	'10.10.07 (서고 343)	자연녹지 그린벨트

   나. 변경사유 : 지번분할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변경(※선형 변경없음)
   다.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지형도면(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2.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나. 사업 시행지 (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8번지 일대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변경)
      1) 면적 ┌ 당초 : 49,819㎡
             └ 변경 : 49,830㎡
      2) 내용 : 토지 및 지장물(물건) 보상 후 테니스장 설치 등 공원조성
   라.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장(사무수임자 도봉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고시일 ~ 2017.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조서
   사.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단(☎02-2133-8282), 도봉구청 공원녹지과(☎02-2091-3753)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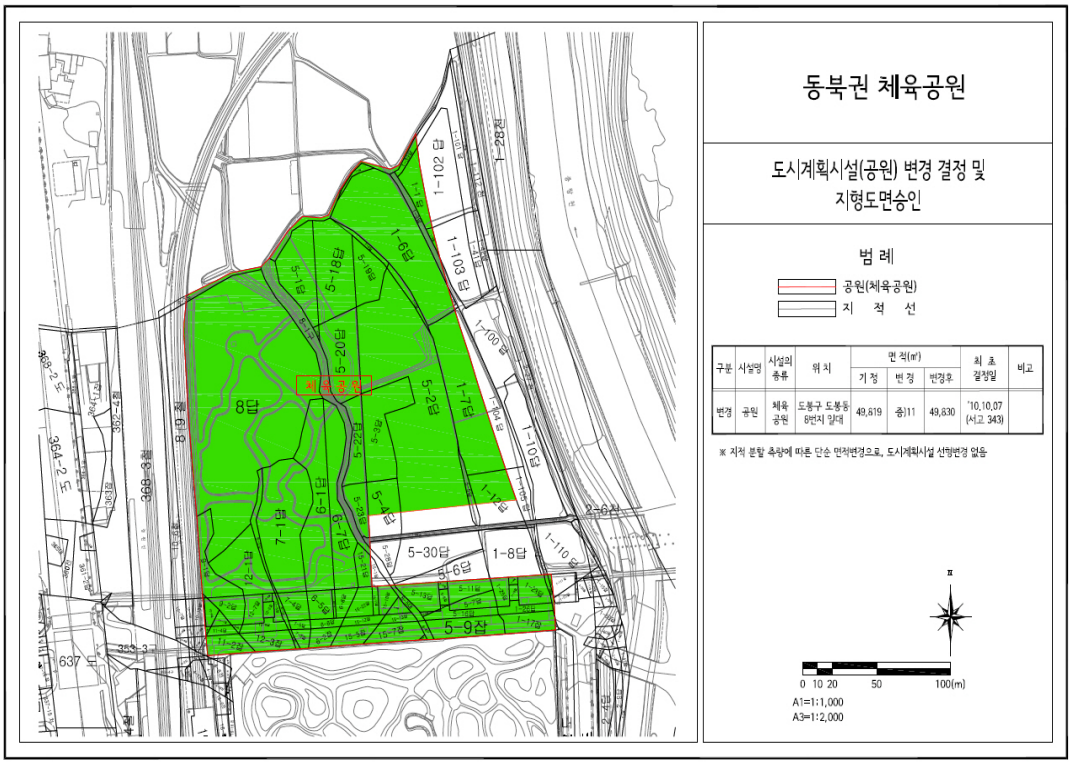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도봉동 1-1	답	443	443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시				
2	도봉동 1-2	답	36	36	의정부시 평화로 15번길 15(호원동)	박영옥				
3	도봉동 1-3	답	66	66	도봉구 도봉산길 54-14(도봉동)	재단법인 송석문화재단				
4	도봉동 1-4	답	142	142	의정부시 경의로 132번길 87-14, 302동1106호(의정부,신도아파트)	신진철				
5	도봉동 1-5	답	155	155	도봉구 도봉산길 54-14(도봉동)	재단법인 송석문화재단				
6	도봉동 1-6	답	3,390	3,390	도봉구 도봉로 175길 29, 302호 (도봉동, 삼성하이츠 빌라)	심유섭				
					도봉구 도봉로 136길 111,202동703호 (창동, 현대2차아파트)	최명선				
					중랑구 중랑천로 20, 6동714호 (면목동, 현대아파트)	이영자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10	박래성	근저당권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120,101동 206호(쌍용아파트)	이영숙				
					경기도 파주시 동패로 117,306동 1301호(동패동, 교하벽산아파트)	이석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	도봉동 1-7	답	2,309	2,309	도봉구 도봉산길 17 204호 (도봉동,우영아파트)	김종옥	도봉구 해등로 166(쌍문동)	북부농협 협동조합 (도봉역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8	도봉동 1-9	답	237	237	도봉구 도봉산길 54-14(도봉동)	재단법인 송석문화재단				
9	도봉동 1-116	답	528	528	도봉구 노해로 218-1(쌍문동)	강금수				1-12분할
10	도봉동 5-32	답	5,990	5,990	도봉구 도봉산길 54-14(도봉동)	재단법인 송석문화재단				5-2분할
11	도봉동 5-3	답	1,408	1,408	강북구 수유동 176-67	신상기				
12	도봉동 5-33	답	464	464	강북구 수유동 176-67	신상기				5-4분할
13	도봉동 5-34	답	85	85	도봉구 도봉산길 54-14(도봉동)	재단법인 송석문화재단				5-5분할
14	도봉동 5-19	답	667	667	도봉구 마들로 735-8, 101동 1111호(도봉동, 현대우성아파트)	강명숙				
15	도봉동 1-39	답	91	91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시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목(수령/높이/직경)		수량	소 유 권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1	도봉동 1-6	부속건물	비닐하우스(쇠파이프)		2,544.7㎡	도봉구 도봉로 175길 29, 302호	심유섭 외 4인				
2	도봉동 1-4	부속건물	비닐하우스(쇠파이프)		89.4 ㎡	의정부시 경의로 132번길 87-14 302동1106호(의정부,신도아파트)	신진철				
		수목	두릅	군식	50㎡						
			매실	15~20년/2.5m/10cm	2주						
			사과	15~20년/3.0m/10cm	1주						
3	도봉동 5-19	부속건물	비닐하우스(쇠파이프)		143.5 ㎡	도봉구 마들로 735-8, 101동 1111호(도봉동, 현대우성아파트)	강명숙				
		수목	복숭아	15~20년/4.0m/15cm	1주						
			포도나무	15~20년/1.8m/5cm	20주						
			살구	15~20년/4.0m/15cm	1주						
			산수유	15~20년/3.0m/12cm	2주						
			은행	15~20년/7.0m/25cm	2주						

물 건 조 서

사업명 : 동북권체육공원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목(수령/높이/직경)		수량	소 유 권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4	도봉동 5-2	부속건물	비닐하우스(쇠파이프)		191.3㎡	도봉구 도봉산길 54-14 (도봉동)	재단법인 송석문화재단				
			비닐하우스(쇠파이프)		95.2㎡						
			압축판넬		18.75㎡						
		공작물	화장실(이동식)		1개소						
			창고(블록조)		9 ㎡						
			그늘막(목재)		9 ㎡						
			자가수도		8개소						
		수목	자두	10~15년/3.0m/7cm	35주						
			복숭아	10~15년/3.0m/7cm	4주						
			블루베리	5~10년/1.5m/2.5cm	20주						
			꽃사과	5~10년/3.0m/10cm	6주						
			앵두	10~15년/2.5m/5cm	13주						

물 건 조 서

사업명 : 동북권체육공원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목(수령/높이/직경)		수량	소 유 권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5	도봉동 1-7	부속건물	비닐하우스(쇠파이프)		1134.9㎡	도봉구 도봉산길 17 204호 (도봉동,우영아파트)	김종옥				
			작업장(압축패널)		36.0㎡						
			농작물모종판		7,000개						
		수목	복숭아	5~10년/3.0m/7cm	2주						
			살 구	10~15년/4.0m/15cm	1주						
			살 구	4~5년/3.0m/5cm	2주						
			자 두	5~10년/4.5m/10cm	1주						
			엄나무	5~10년/3.5m/15cm	1주						
			오가피	10~15년/3.0m/5cm	1주						
			무궁화	5~10년/3.0m/7cm	1주						
			자 두	20~25년/5.0m/15cm	3주						
			감나무	25~30년/5.0m/30cm	1주						
6	도봉동 5-32	공작물	물탱크(FRP)		1개소	도봉구 도봉산길 54-14(도봉동)	재단법인 송석문화재단				
			세면대(스텐인레스)		1개소						
		부속건물	비닐하우스(쇠파이프)		670.6㎡						

물 건 조 서

사업명 : 동북권체육공원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목(수령/높이/직경)		수량	소 유 권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7	도봉동 1-116	부속건물	비닐하우스(쇠파이프)		461.4㎡	도봉구 노해로 218-1	강금수				
8	도봉동 5-3	수목	벗나무	5~10년/7m/10cm	273주	강북구 수유동 176-67	신상기				
			이팝나무	5~10년/3.5m/7cm	93주						
			포도나무	10~15년/2.0m/5cm	22주						
			엄나무	5~10년/4.0m/10cm	5주						
			오가피	5~10년/2.0m/5cm	15주						
			두릅	5~10년/2.0m/3cm	7주						
			살구	5~10년/3.5m/7cm	5주						
			블루베리	5~10년/1.5m/3cm	26주						
			매실	5~10년3.5m/5cm	5주						
9	도봉동 5-33	수목	대추	5~10년/4m/7cm	3주	강북구 수유동 176-67	신상기				
			자두	5~10년/3.5m/5cm	3주						
			사과	5~10년/3.0m/5cm	4주						
			배	5~10년/4.0m/7cm	5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2호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8호(2004.2.25.)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48호(2005.12.30.)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1·2지구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04호(2016.4.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05호(2016.4.7.)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개발제한구역 내 낙후지역 시가지를 개발·정비하여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임대 및 분양주택의 건립을 통해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시 서북권역의 관문도시로서 새로운 지구중심 창출
- 지역특성을 고려한 녹지보전방안의 제시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건전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유도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일원
- 면 적
  - 당 초 : 3,492,567.8㎡
  - 변 경 : 3,492,556.2㎡(감 11.6㎡)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시행자 : SH공사(사장 변창흠)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길 621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구 분	당초	변경
1지구	2004.02.25. ~ 2015.12.31.	2004.02.25. ~ 2017.12.31.
2지구	2005.12.30. ~ 2015.12.31.	2005.12.30. ~ 2017.12.31.
3지구	2006.12.28. ~ 2015.12.31.	2006.12.28. ~ 2017.12.31.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변경 없음)
  • 수용 및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 실시계획인가도서의 내용과 같음 : 별첨 1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전화 : 02-2133-7217), 은평구 도시계획과(전화 : 02-351-7413) 및 SH공사(전화 : 02-3410-7597)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해당 없음

10.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도서 : 별첨 1

11.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
  • 기 실시계획 변경인가 시 조건부여 사항 이행할 것.
  • 금회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관련 제반 영향평가 협의의견 및 관계기관 등의 협의내용은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할 것.

< 별첨 1 >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3,492,567.8	감) 11.6	3,492,556.2	100.0	
주거 용지	소 계		1,366,765.1	증) 17,219.8	1,383,984.9	39.6	
	주 택 용 지		1,337,820.7	증) 10,830.7	1,348,651.4	38.6	
		단독주택용지	66,581.8	감) 332.6	66,249.2	1.9	
		공동주택용지 (아파트)	1,271,238.9	증) 11,163.3	1,282,402.2	36.7	
	준주거용지		21,903.1	증) 6,389.1	28,292.2	0.8	
	근린생활시설용지		7,041.3	-	7,041.3	0.2	
상업 용지	소 계		88,761.3	감) 1,120.6	87,640.7	2.5	
	일반상업		88,761.3	감) 1,120.6	87,640.7	2.5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1,897,247.8	증) 2,836.8	1,900,084.6	54.4	
	도로		497,964.6	감) 9,884.2	488,080.4	14.1	· 중복 결정된 도로 12,224.4㎡는 하천면적에 편입
	주차장		20,964.3	감) 3.7	20,960.6	0.6	6개소
	자동차정류장		16,529.5	증) 0.1	16,529.6	0.5	1개소
	철도시설		9,104.8	감) 569.0	8,535.8	0.2	· 중복 결정된 철도(본선:15,392.5㎡)는 하천 1,236.2㎡*, 도로 11,741.5㎡, 근린공원 2,314.9㎡, 완충녹지 99.9㎡에 편입 · 중복 결정된 철도(구파발역:3,974.8㎡)는 도로 3,837.9㎡, 공원 136.9㎡에 편입 · 철도(구파발역)와 입체적 결정된 1,035.6㎡는 상업용지에 편입
	완충녹지		34,709.6	증) 1,700.2	36,409.8	1.0	
	연결녹지		26,050.7	감) 98.7	25,952.0	0.7	· 중복 결정된 연결녹지 58.9㎡는 하천면적에 편입
	경관녹지		-	증) 133.2	133.2	0.0	
	도시자연공원		9,055.5	증) 76.7	9,132.2	0.3	
	근린공원		785,483.3	감) 323.3	785,160.0	22.5	
	문화공원		65,272.6	증) 6.8	65,279.4	1.9	
	소공원		1,391.6	증) 0.4	1,392.0	0.0	
	공공공지		671.5	증) 0.6	672.1	0.0	

* 철도와 중복 결정된 하천 1,236.2㎡중 947.9㎡는 도로와 중복 결정됨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도시기반시설용지	자원회수시설	8,511.9	증) 0.6	8,512.5	0.2	1개소
	수도시설	-	-	-	0.0	·중복 결정된 수도시설 7,856.5㎡는 근린공원 면적에 편입
	공동구	587.3	감) 66.9	520.4	0.0	관리사무소, 환기구 (매설연장 : 990m)
	공공청사	64,459.1	감) 1.3	64,457.8	1.8	6개소
	학교	142,165.5	감) 2.8	142,162.7	4.1	초5, 중2, 고4
	박물관	-	-	-	0.0	·중복 결정된 박물관 6,530.1㎡는 문화공원 면적에 편입
	체육시설	6,547.1	증) 0.2	6,547.3	0.2	1개소
	도서관	1,323.7	-	1,323.7	0.0	
	사회복지시설	15,842.5	감) 1.5	15,841.0	0.5	3개소
	하천	144,173.1	증) 11,859.9	156,033.0	4.5	
	유수지	13,293.9	증) 6.7	13,300.6	0.4	3개소 ·중복 결정된 유수지(2개소) : 9,208.7㎡는 근린공원 면적에 편입
	종합의료시설	21,611.6	증) 1.0	21,612.6	0.6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1,534.1	증) 1.8	11,535.9	0.3	1개소
기타시설용지	소 계	139,793.6	감) 18,947.6	120,846.0	3.5	
	주차장용지	1,968.9	증) 0.8	1,969.7	0.1	부설주차장 3개소
	종교시설	32,324.9	증) 13.6	32,338.5	0.9	26개소
	유통시설	8,040.0	감) 0.7	8,039.3	0.2	1개소
	주유소	6,315.3	증) 4.9	6,320.2	0.2	6개소
	유치원	3,886.2	증) 3.6	3,889.8	0.1	6개소
	공익시설	13,174.1	증) 341.7	13,515.8	0.4	5개소
	군사시설	3,915.9	감) 3.4	3,912.5	0.1	5개소
	편익시설	54,957.2	감) 12,974.4	41,982.8	1.3	9개소
	자동차관련	8,478.8	증) 0.1	8,478.9	0.2	3개소
	도시지원시설용지	6,334.4	감) 6,334.4	-	0.0	-
	커뮤니티시설용지	397.9	증) 0.6	398.5	0.0	2개소

※ 도시지원시설→준주거용지 변경에 따른 2016.2.23, 도시재정비위원회 조건부 가결(자원회수시설에 접한 임대주택의 주거환경개선 및 지원(시설)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할 것)에 대해 아래사항 반영

1. 건축계획시 자원회수시설 및 폐기물 반입차량 동선과 건축물을 최대한 이격하고 차폐용 수목식재
2. 건축물 내 편익시설로 수영장 및 헬스장 설치
3. 임대료는 행복주택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

2. 주택공급계획(변경)

1) 지구별 인구수용 및 주택공급계획

- 당 초

구 분	계	1지구	2지구	3지구	비 고
수용인구 (인)	48,786	13,367	14,375	21,044	
주택공급 (호)	17,464	4,774	5,134	7,556	

- 변 경

구 분	계	1지구	2지구	3지구	비 고
수용인구 (인)	49,763	13,367	15,355	21,041	
주택공급 (호)	17,813	4,774	5,484	7,555	

2) 지구별 주택공급계획 : 별첨 2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은평구 진관동 일원	3,492,567.8	감) 11.6	3,492,556.2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면적변경 - 3,492,567.8㎡ → 3,492,556.2㎡ (감 11.6㎡)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은평재정비촉진지구도시개발사업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일원	3,492,567.8	감) 11.6	3,492,556.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변경 - 3,492,567.8㎡ → 3,492,556.2㎡ (감 11.6㎡)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3)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3,492,567.8	감) 11.6	3,492,556.2	100.0	
주 거 지 역	2,279,386.1	증) 117.6	2,279,503.7	65.2	
전용주거지역	864,059.7	증) 266.7	864,326.4	24.7	
제1종 전용주거지역	123,528.3	감) 1.9	123,526.4	3.5	
제2종 전용주거지역	740,531.4	증) 268.6	740,800.0	21.2	용적률 150% 이하
일반주거지역	1,346,560.7	감) 27.3	1,346,533.4	38.5	
제1종 일반주거지역	45,840.0	증) 2.2	45,842.2	1.3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00,720.7	감) 29.5	1,300,691.2	37.2	
준주거지역	68,765.7	감) 121.8	68,643.9	2.0	
일 반 상 업 지 역	137,509.0	감) 592.1	136,916.9	3.9	
자 연 녹 지 지 역	1,075,672.7	증) 462.9	1,076,135.6	30.9	

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11항에 의거하여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50% 이하로 함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진관동 92-27 일원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99.4	·종합의료시설 경계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진관동 92-27 일원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7.2	
3	진관동 일원	제1종전용주거지역		감) 1.9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변경
4	진관동 일원	제2종전용주거지역		증) 268.6	
5	진관동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증) 2.2	
6	진관동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증) 26.5	
7	진관동 일원	준주거지역		감) 29.6	
8	진관동 일원	일반상업지역		감) 592.1	
9	진관동 일원	자연녹지지역		증) 370.7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기정)

구 분		류 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합 계			-	129	28,498.8	497,964.6	
일 반 도 로	소 계		-	1	2,481.2	104,758.3	
	광로	3 류	40	1	2,481.2	104,758.3	
	소 계		-	4	3,347.6	95,945.4	
	대로	1 류	35-37	1	151.6	5,686.0	
		3 류	25	3	3,196.0	90,259.4	
	소 계		-	34	15,035.2	245,689.9	
	중로	1 류	20	8	6,781.2	142,059.2	
		2 류	15-19.9	12	3,047.2	36,469.6	
		3 류	12	14	5,206.8	67,161.1	
	소 계		-	90	7,634.8	51,571.0	
	소로	1 류	10~11	10	792.4	7,819.7	
		2 류	8~9	18	2,201.2	18,523.4	
		3 류	4~6	62	4,641.2	25,227.9	

■ 도로 총괄표(변경)

구 분		류 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합 계			-	131	28,579.0	500,304.8	※ 일부노선은 하천과 중복결정 (12,224.4㎡)
일 반 도 로	소 계		-	1	2,481.2	104,566.4	
	광로	3 류	40	1	2,481.2	104,566.4	
	소 계		-	4	3,347.6	96,823.7	
	대로	1 류	35-37	1	151.6	5,520.8	
		3 류	25	3	3,196.0	91,302.9	
	소 계		-	34	15,045.0	245,797.5	
	중로	1 류	20	8	6,806.0	142,139.3	
		2 류	15-19.9	12	3,047.2	36,627.6	
		3 류	12	14	5,191.8	67,030.6	
	소 계		-	92	7,705.2	53,117.2	
	소로	1 류	10~16.7	10	765.9	7,837.9	
		2 류	8~9	18	2,169.4	18,668.9	
		3 류	4~6	64	4,769.9	26,610.4	

※ 세부내용 : 별첨 3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0,964.3	감) 3.7	20,960.6		
변경	1	주차장	진관동 77-7 일원	5,078.2	감) 1.2	5,077.0	서고시458 06.12.28	
변경	2	주차장	진관동 71-3 일원	788.9	-	788.9	서고시458 06.12.28	
변경	3	주차장	진관동 68-12 일원	4,744.4	감) 0.1	4,744.3	서고시458 06.12.28	
변경	4	주차장	진관동 125-12 일원	5,339.3	감) 2.9	5,336.4	서고시458 06.12.28	
변경	5	주차장	진관동 66-1 일원	3,073.7	감) 0.1	3,073.6	서고시448 05.12.30	
변경	6	주차장	진관동 209-28 일원	1,939.8	증) 0.6	1,940.4	서고시448 05.12.30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선형 및 면적변경 - 5,078.2㎡→5,077.0㎡(감 1.2㎡)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2	주차장	·선형변경	
3	주차장	·선형 및 면적변경 - 4,744.4㎡→4,744.3㎡(감 0.1㎡)	
4	주차장	·선형 및 면적변경 - 5,339.3㎡→5,336.4㎡(감 2.9㎡)	
5	주차장	·선형 및 면적변경 - 3,073.7㎡→3,073.6㎡(감 0.1㎡)	
6	주차장	·선형 및 면적변경 - 1,939.8㎡→1,940.4㎡(증 0.6㎡)	

다) 철도

■ 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계							36.51㎞	28,938.7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진관동 60-18	진관동 53-12	구파발역	621.8	9,104.8	서고시5804.02.25	재정비촉진계획에 누락된 기존 철도결정고시 사항을 반영하고, 기 결정된 노선에 촉진계획으로 이중 결정된 노선 폐지 일부 중복결정 - 도로 11,741.5㎡. - 공원 2,314.9㎡ - 완충녹지 99.9㎡ - 하천 1,236.2㎡
폐지	1	철도	도시철도	진관동 60-18	진관동 53-12	구파발역	-	-	-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 3호선)	서울시계 (진관내동)	수서간	-	36.51㎞ (1,919.0)	- (23,928.3)	건고시5380.02.27	
기정	1	-	고속철도 (구파발역)	진관내동 551-1 부근			206	3,600	서고시28781.08.01	일부 중복결정 - 도로 3,837.9㎡. - 공원 136.9㎡ 일부 입체결정 - 1,035.6㎡
변경	1	철도	도시철도 (구파발역)	진관동 67-26 부근			206	5,010.4	〃	

주) ( )는 사업대상지 내 연장 및 면적임

■ 철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철도 (도시철도)	·지구내 철도 폐지 ·철도 본선 기결정 고시사항 반영	· 건설부고시 제53호(1980.02.27),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21호 (1995.02.02)로 기 결정된 지하철3호선 본선에 대한 고시내용을 반영 · 은평지구 내 기 결정된 철도시설은 건설부고시 제53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21호의 결정사항에 포함된 사항이므로 기정 시설 반영에 따라 시설폐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	철도 (구파발역)	·구파발역 누락분 반영 ·상업10-1BL 계획내용 반영	· 서울특별시고시 제287호(1981.08.01)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로 기 결정된 구파발역에 대한 고시내용을 반영 · 상업용지 10-1BL 개발에 따라 정거장 출입구와 환기구 등 시설 일부 변경내용 반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길이(m)	폭(m)	높이(m)(해수면 기준)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증) 1,035.6	1,035.6		
신설	①-1	철도(정거장)	진관동 67-25 일원	33.4	8.1	22.7~38.2	-	증) 245.8	245.8		출입구
	①-2	철도(정거장)	진관동 69-11 일원	33.1	12.4	23.8~31.5	-	증) 409.2	409.2		연결통로
신설	②-1	철도(정거장)	진관동 69-11 일원	27.7	4.4	25.0~33.4	-	증) 123.2	123.2		환기구
	②-2	철도(정거장)	진관동 69-11 일원	27.7	4.9	27.6~33.4	-	증) 144.5	144.5		환기구
신설	③	철도(정거장)	진관동 86-24 일원	25.7	4.2	24.7~33.9	-	증) 95.0	95.0		출입구
신설	④	철도(정거장)	진관동 86-31 일원	4.2	4.6	28.7~33.3	-	증) 17.9	17.9		환기구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1	철도(정거장)	·도시철도(구파발역)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 구파발역의 출입구, 연결통로 및 환기구 일부가 상업용지(사유지)내에 포함됨에 따라 구분지상권 설정을 위한 입체적 시설 결정
①-2	철도(정거장)	·도시철도(구파발역)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②-1	철도(정거장)	·도시철도(구파발역)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②-2	철도(정거장)	·도시철도(구파발역)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③	철도(정거장)	·도시철도(구파발역)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④	철도(정거장)	·도시철도(구파발역)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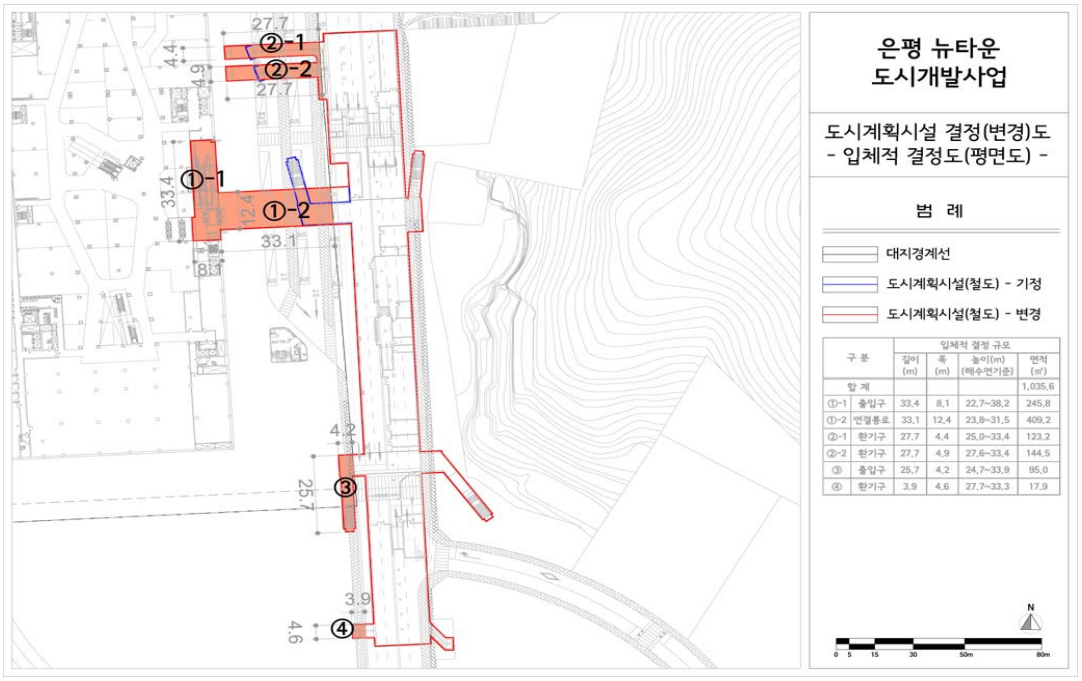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단면도

①-1 출입구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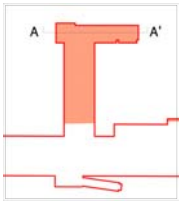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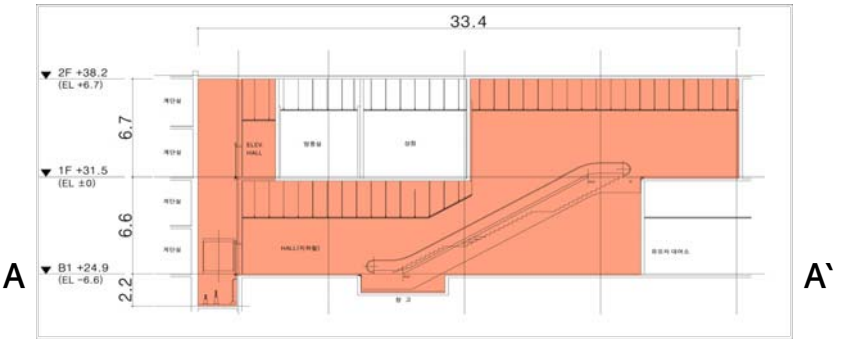

①-2 연결통로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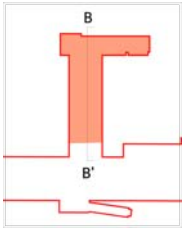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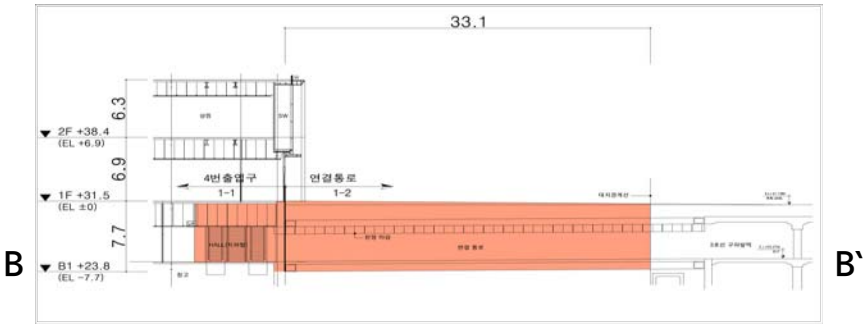

②-1 환기구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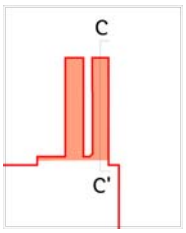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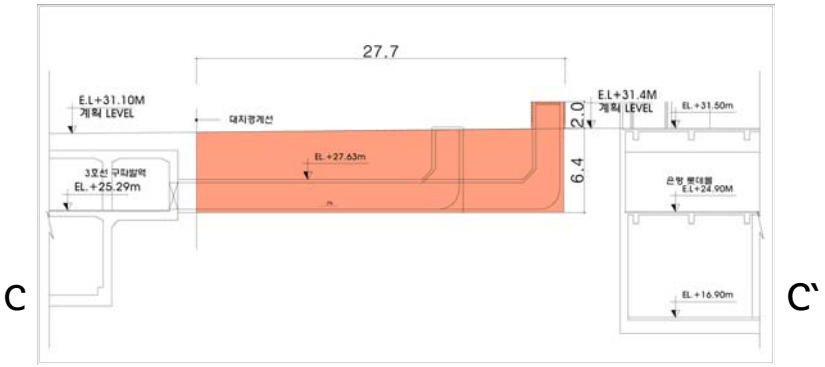

②-2 환기구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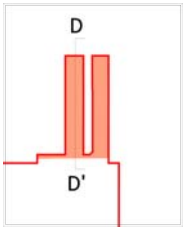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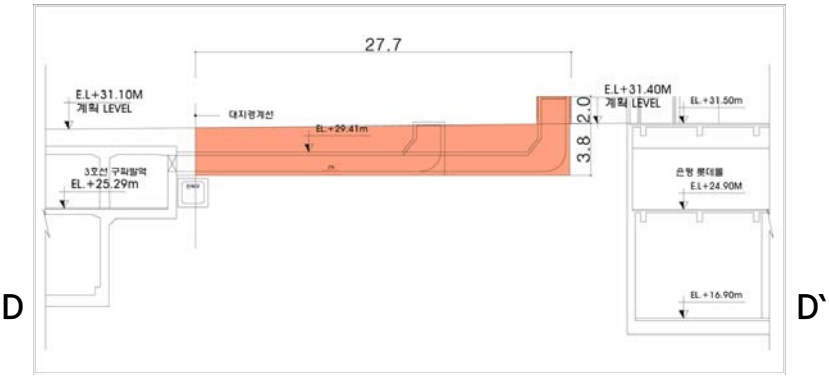

③ 출입구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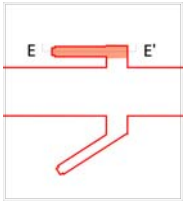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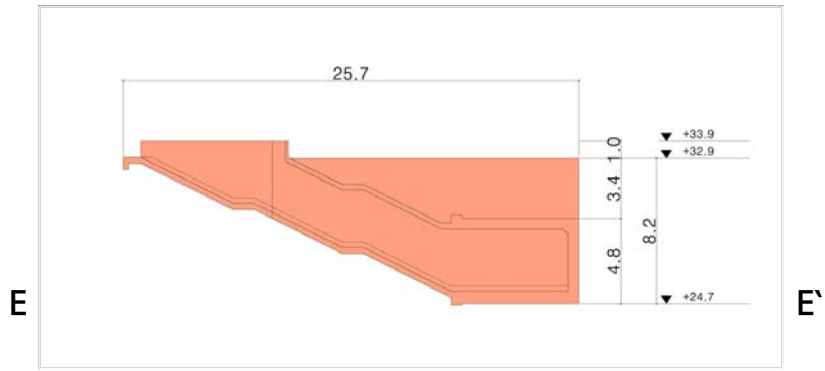

④ 환기구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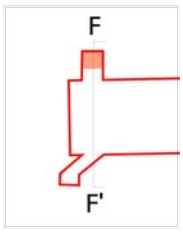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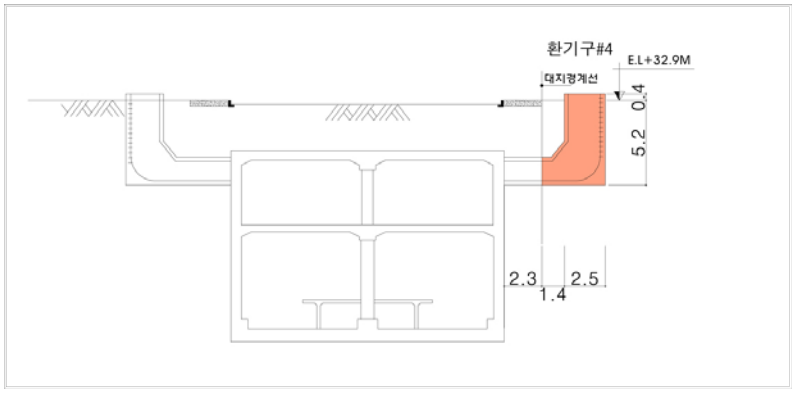

라) 자동차정류장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6,529.5	증) 0.1	16,529.6		
변경	1	자동차정류장	공영 차고지	진관동 78-6 일원	16,529.5	증) 0.1	16,529.6	서고시377 07.10.18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자동차정류장	·선형 및 면적변경 - 16,529.5㎡→16,529.6㎡(증 0.1㎡)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2) 공간시설

가)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0,760.3	증) 1,793.6	62,553.9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진관동 57-14 일원	6,050.9	증) 1,687.7	7,738.6	서고시458 06.12.28	철도(본선)중복 : 99.9㎡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진관동 133-25 일원	11,122.3	감) 23.7	11,098.6	서고시458 06.12.28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진관동 35-19일원	11,480.2	증) 40.8	11,521.0	서고시415 04.12.20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진관동 72-18 일원	1,701.8	감) 2.6	1,699.2	서고시458 06.12.28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진관동 164-27 일원	4,354.4	감) 2.0	4,352.4	서고시377 07.10.18	
변경	1	녹지	연결녹지	진관동 124일원	7,561.9	증) 1.9	7,563.8	서고시377 07.10.18	
변경	2	녹지	연결녹지	진관동 45-25 일원	17,224.8	감) 43.3	17,181.5	서고시219 12.08.16	하천-1 중복 : 58.9㎡
변경	3	녹지	연결녹지	진관동 164-15 일원	1,264.0	증) 1.6	1,265.6	서고시219 12.08.16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진관동 234-26 일원	-	증) 133.2	133.2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완충녹지	·선형 및 면적변경 - 6,050.9㎡→7,738.6㎡(증 1,687.7㎡)	· BL2-14 신설에 따라 도로변 완충녹지 설치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2	완충녹지	·선형 및 면적변경 - 11,122.3㎡→11,098.6㎡(감 23.7㎡)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3	완충녹지	·선형 및 면적변경 - 11,480.2㎡→11,521.0㎡(증 40.8㎡)	
4	완충녹지	·선형 및 면적변경 - 1,701.8㎡→1,699.2㎡(감 2.6㎡)	
5	완충녹지	·선형 및 면적변경 - 4,354.4㎡→4,352.4㎡(감 2.0㎡)	
1	연결녹지	·선형 및 면적변경 - 7,561.9㎡→7,563.8㎡(증 1.9㎡)	
2	연결녹지	·선형 및 면적변경 - 17,224.8㎡→17,181.5㎡(감 43.3㎡) ·하천과 중복결정(58.9㎡)	
3	연결녹지	·선형 및 면적변경 - 1,264.0㎡→1,265.6㎡(증 1.6㎡)	
1	경관녹지	·시설 신설 - A=133.2㎡	· BL2-14 신설에 따라 도로변 경관녹지 설치

나) 공원

■ 공원 총괄표

구 분	개소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8	861,203.0	감) 239.4	860,963.6
도시자연공원	1	9,055.5	증) 76.7	9,132.2
근린공원	11	785,483.3	감) 323.3	785,160.0
문화공원	3	65,272.6	증) 6.8	65,279.4
소공원	3	1,391.6	증) 0.4	1,392.0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61,203.0	감) 239.4	860,963.6		
변경	1	서오릉도시자연공원	갈현동,구파발동, 진관내동 일대	1,091,902.5 (9,055.5)	- (증 76.7)	1,091,902.5 (9,132.2)	건고시138 77.07.14	
변경	1	갈현근린공원	불광동 458-1 일대	253,629.0 (83,770.0)	- (감 17.5)	253,629.0 (83,752.5)	건고시138 77.07.14	
변경	2	진관근린공원	진관동 산97-3 일대	1,313,671.9 (329,880.9)	- (감 3.5)	1,313,671.9 (329,877.4)	건고시138 77.07.14	철도(구파발역)중복 : 136.9㎡
기정	3	제3호근린공원	진관동 11-16 일원	4,749.8	-	4,749.8	서고시219 12.08.16	
기정	4	제4호근린공원	진관동 13-20 일원	16,176.1	-	16,176.1	서고시219 12.08.16	
기정	5	제5호근린공원	진관동 31-5 일원	5,569.1	-	5,569.1	서고시219 12.08.16	
변경	6	제6호근린공원	진관동 98-4일원	4,550.6	증) 1.0	4,551.6	서고시219 12.08.16	철도(본선)중복 : 2,314.9㎡
변경	7	제7호근린공원	진관동 산100-44 일원	147,441.6	감) 234.4	147,207.2	서고시219 12.08.16	수도 중복 : 7,856.5㎡
변경	8	제8호근린공원	진관동 179-5 일원	7,202.8	증) 0.3	7,203.1	서고시219 12.08.16	
변경	9	제9호근린공원	진관동 206-21 일원	12,018.2	감) 2.1	12,016.1	서고시219 12.08.16	
변경	10	제10호근린공원	진관동 산106-17 일원	128,953.7	감) 34.8	128,918.9	서고시219 12.08.16	
변경	11	제11호근린공원	진관동 125-22 일원	45,170.5	감) 32.3	45,138.2	서고시219 12.08.16	
변경	1	제1호문화공원	진관동 53-5 일원	6,857.1	증) 1.3	6,858.4	서고시219 12.08.16	
변경	2	제2호문화공원	진관동 135-26 일원	55,721.8	감) 2.4	55,719.4	서고시219 12.08.16	박물관 중복 : 6,530.1㎡
변경	3	제3호문화공원	진관동 58-18 일원	2,693.7	증) 7.9	2,701.6	서고시175 13.05.30	
변경	1	제1호소공원	진관동 158-14 일원	1,087.8	증) 0.5	1,088.3	서고시219 12.08.16	
변경	2	제2호소공원	진관동 127-27 일원	245.1	-	245.1	서고시272 13.08.22	
변경	3	제3호소공원	진관동 132-17 일원	58.7	감) 0.1	58.6	서고시272 13.08.22	

주) ( )는 사업대상지 내 면적임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서오릉 도시자연공원	·선형 및 면적변경 – 9,055.5㎡→9,132.2㎡(증 76.7㎡)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
1	갈현 근린공원	·선형 및 면적변경 – 83,770.0㎡→83,752.5㎡(감 17.5㎡)	
2	진관 근린공원	·선형 및 면적변경 – 329,880.9㎡→329,877.4㎡(감 3.5㎡)	
6	제6호 근린공원	·선형 및 면적변경 – 4,550.6㎡→4,551.6㎡(증 1.0㎡)	
7	제7호 근린공원	·선형 및 면적변경 – 147,441.6㎡→147,207.2㎡(감 234.4㎡)	· 소로3-77호선 신설 및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8	제8호 근린공원	·선형 및 면적변경 – 7,202.8㎡→7,203.1㎡(증 0.3㎡)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
9	제9호 근린공원	·선형 및 면적변경 – 12,018.2㎡→12,016.1㎡(감 2.1㎡)	
10	제10호 근린공원	·선형 및 면적변경 – 128,953.7㎡→128,918.9㎡(감 34.8㎡)	
11	제11호 근린공원	·선형 및 면적변경 – 45,170.5㎡→45,138.2㎡(감 32.3㎡)	
1	제1호 문화공원	·선형 및 면적변경 – 6,857.1㎡→6,858.4㎡(증 1.3㎡)	
2	제2호 문화공원	·선형 및 면적변경 – 55,721.8㎡→55,719.4㎡(감 2.4㎡)	
3	제3호 문화공원	·선형 및 면적변경 – 2,693.7㎡→2,701.6㎡(증 7.9㎡)	
1	제1호 소공원	·선형 및 면적변경 – 1,087.8㎡→1,088.3㎡(증 0.5㎡)	
2	제2호 소공원	·선형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
3	제3호 소공원	·선형 및 면적변경 – 58.7㎡→58.6㎡(감 0.1㎡)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71.5	증) 0.6	672.1		
변경	1	공공공지	진관동 125-2 일원	590.9	증) 0.6	591.5	서고시398 10.11.11	
변경	2	공공공지	진관동 132 일원	80.6	-	80.6	서고시146 12.06.06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공지	·선형 및 면적변경 - 590.9㎡→591.5㎡(증 0.6㎡)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2	공공공지	·선형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자원회수시설

■ 자원회수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511.9	증) 0.6	8,512.5		
변경	1	자원회수시설	진관동 122-6 일원	8,511.9	증) 0.6	8,512.5	서고시458 06.12.28	

■ 자원회수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자원회수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8,511.9㎡→8,512.5㎡(증 0.6㎡)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나) 수도(배수지)

■ 수도(배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853.9	증) 2.6	7,856.5		
기정	1	수도공급 시설	진관동 246-20 일원	7,853.9	-	-	서고시398 83.07.29	제7호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변경	1	수도공급 설비	진관동 246-20 일원	-	증) 2.6	7,856.5	〃	

■ 수도(배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수도공급설비	·시설명 변경 ·선형 및 면적변경 - 7,853.9㎡→7,856.5㎡(증 2.6㎡)	·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공급시설을 수도공급설비로 시설명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다) 공동구

■ 공동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90.0	-	990.0	587.3	감)66.9	520.4		
기정	1	공동구	진관동 85-6 일원	990.0	-	990.0	-	-	-	서고시458 06.12.28	
변경	2	공동구	진관동 산100-44 일원	-	-	-	562.3	감)61.1	501.2	서고시268 08.07.31	
변경	3	공동구	진관동 83-23 일원	-	-	-	25.0	감) 5.8	19.2	서고시268 08.07.31	

■ 공동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공동구	·선형 및 면적변경 - 562.3㎡→501.2㎡(감 61.1㎡)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3	공동구	·선형 및 면적변경 - 25.0㎡→19.2㎡(감 5.8㎡)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4,459.1	감) 1.3	64,457.8		
변경	1	공공청사	진관동 224-1 일원	2,549.2	증) 0.6	2,549.8	서고시415 04.12.20	
변경	2	공공청사	진관동 산100-23일원	483.7	-	483.7	서고시19 10.01.21	
변경	3	공공청사	진관동 240-9 일원	6,770.5	감) 0.6	6,769.9	서고시377 07.10.18	
변경	5	공공청사	진관동 223-5 일원	5,209.7	감) 0.2	5,209.5	서고시377 07.10.18	
변경	6	공공청사	진관동 110-26 일원	48,950.1	감) 2.1	48,948.0	서고시377 07.10.18	
변경	7	공공청사	진관동 208-17 일원	495.9	증) 1.0	496.9	서고시19 10.01.21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선형 및 면적변경 - 2,549.2㎡→2,549.8㎡(증 0.6㎡)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2	공공청사	·선형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
3	공공청사	·선형 및 면적변경 - 6,770.5㎡→6,769.9㎡(감 0.6㎡)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5	공공청사	·선형 및 면적변경 - 5,209.7㎡→5,209.5㎡(감 0.2㎡)	
6	공공청사	·선형 및 면적변경 - 48,950.1㎡→48,948.0㎡(감 2.1㎡)	
7	공공청사	·선형 및 면적변경 - 495.9㎡→496.9㎡(증 1.0㎡)	

나) 학교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2,165.5	감) 2.8	142,162.7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진관동 14-13 일원	11,455.2	-	11,455.2	서고시415 04.12.20	진관초등학교
변경	2	학교	초등학교	진관동 41-23일원	9,812.7	증) 0.1	9,812.8	서고시458 06.12.28	은빛초등학교
변경	3	학교	초등학교	진관동 246-5 일원	10,222.2	증) 0.9	10,223.1	서고시458 06.12.28	-
변경	4	학교	초등학교	진관동 165-32 일원	10,027.6	증) 1.2	10,028.8	서고시448 05.12.30	은진초등학교
변경	5	학교	초등학교	진관동 200-23 일원	10,049.9	감) 0.7	10,049.2	서고시448 05.12.30	신도초등학교
기정	6	학교	중학교	진관동 24-23 일원	12,090.7	-	12,090.7	서고시415 04.12.20	진관중학교
변경	7	학교	중학교	진관동 207 일원	11,086.3	증) 2.3	11,088.6	서고시458 06.12.28	신도중학교
기정	8	학교	고등학교	진관동 24-16 일원	13,949.8	-	13,949.8	서고시415 04.12.20	진관고등학교
변경	9	학교	고등학교	진관동 134-2 일원	26,447.6	감) 2.7	26,444.9	서고시377 07.10.18	하나고등학교
변경	10	학교	고등학교	진관동 197-20 일원	13,398.2	감) 3.1	13,395.1	서교고시50 87.08.27	메디택고등학교 (존치시설)
변경	11	학교	고등학교	진관동 243-1 일원	13,625.3	감) 0.8	13,624.5	서고시458 06.12.28	신도고등학교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학교	·선형 및 면적변경 - 9,812.7㎡→9,812.8㎡(증 0.1㎡)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3	학교	·선형 및 면적변경 - 10,222.2㎡→10,223.1㎡(증 0.9㎡)	
4	학교	·선형 및 면적변경 - 10,027.6㎡→10,028.8㎡(증 1.2㎡)	
5	학교	·선형 및 면적변경 - 10,049.9㎡→10,049.2㎡(감 0.7㎡)	
7	학교	·선형 및 면적변경 - 11,086.3㎡→11,088.6㎡(증 2.3㎡)	
9	학교	·선형 및 면적변경 - 26,447.6㎡→26,444.9㎡(감 2.7㎡)	
10	학교	·선형 및 면적변경 - 13,398.2㎡→13,395.1㎡(감 3.1㎡)	
11	학교	·선형 및 면적변경 - 13,625.3㎡→13,624.5㎡(감 0.8㎡)	

다) 박물관

■ 박물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530.4	감) 0.3	6,530.1		
변경	1	문화시설	박물관	진관동 135-5일원	6,530.4	감) 0.3	6,530.1	서고시219 12.08.16	제2호 문화공원내 중복결정

■ 박물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문화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6,530.4㎡→6,530.1㎡(감 0.3㎡) ·제2호 문화공원과 중복결정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라) 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547.1	증) 0.2	6,547.3		
변경	1	체육시설		진관동 75-4 일원	6,547.1	증) 0.2	6,547.3	서고시377 07.10.18	

■ 체육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체육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6,547.1㎡→6,547.3㎡(증 0.2㎡)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마) 도서관

■ 도서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23.7	-	1,323.7		
변경		도서관	진관동 141-27 일원	1,323.7	-	1,323.7	서고시175 13.05.30	

■ 도서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도서관	·선형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

바)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5,842.5	감) 1.5	15,841.0		
변경	1	사회복지시설	진관동 156-6 일원	10,069.6	감) 0.5	10,069.1	서은고시51 96.11.29	존치시설 (은평노인종합복지관)
변경	2	사회복지시설	진관동 250 일원	3,272.8	감) 0.2	3,272.6	서고시458 06.12.28	존치시설 (인덕원)
변경	3	사회복지시설	진관동 221-25 일원	2,500.1	감) 0.8	2,499.3	서고시377 07.10.18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사회복지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10,069.6㎡→10,069.1㎡(감 0.5㎡)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2	사회복지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3,272.8㎡→3,272.6㎡(감 0.2㎡)	
3	사회복지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2,500.1㎡→2,499.3㎡(감 0.8㎡)	

(5) 방재시설

가) 하천

■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382	144,173.1	증)11,859.9	156,033.0		
변경	1	하천	소하천	진관동 72-22	진관동 332	2.181	45,136.6	증)3,803.9	48,940.5	서고시415 04.12.20	일부 중복결정 -도로 3,173.2㎡ -녹지 58.9㎡ -철도 572.2㎡
변경	2	하천	소하천	진관동 46-15	진관동 산109-12	4.201	99,036.5	증)8,056.0	107,092.5	서고시448 05.12.30	일부 중복결정 -도로 9,051.2㎡

■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하천 (소하천)	·선형 및 면적변경 – 45,136.6㎡→48,940.5㎡(증 3,803.9㎡)	· 관계부서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단절된 하천계획을 연결하고, 상부의 도로(교량)의 중복 결정함에 따른 면적 증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2	하천 (소하천)	·선형 및 면적변경 – 99,036.5㎡→107,092.5㎡(증 8,056.0㎡)	· 관계부서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단절된 하천계획을 연결하고, 상부의 도로(교량)의 중복 결정함에 따른 면적 증가 · 종합의료시설 교량 위치이동에 따른 하천 면적 조정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나)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2,502.1	증) 7.2	22,509.3		
기정	1	유수지	유수시설	진관동 13-30 일원	5,439.1	–	5,439.1	서고시415 04.12.20	제4호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변경	2	유수지	유수시설	진관동 72-26 일원	13,293.9	증) 6.7	13,300.6	서고시458 06.12.28	
변경	3	유수지	저류시설	진관동 131-13 일원	3,769.1	증) 0.5	3,769.6	서고시458 06.12.28	제11호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유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유수지	·선형 및 면적변경 – 13,293.9㎡→13,300.6㎡(증 6.7㎡)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3	유수지	·선형 및 면적변경 – 3,769.1㎡→3,769.6㎡(증 0.5㎡)	

(6) 보건위생시설

가) 종합의료시설

■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1,611.6	증) 1.0	21,612.6		
변경	1	종합의료시설	진관동 93-6 일원	21,611.6	증) 1.0	21,612.6	서고시125 11.05.12	

■ 유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종합의료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21,611.6㎡→21,612.6㎡(증 1.0㎡) ·부지 경계조정	· 통일로 혼잡 개선 및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병원 진출입 교량의 위치 변경에 따른 부지 경계조정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7) 환경기초시설

가)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1,534.1	증) 1.8	11,535.9		
변경	1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진관동 76-20 일원	11,534.1	증) 1.8	11,535.9	서고시458 06.12.28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폐기물 처리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11,534.1㎡→11,535.9㎡(증 1.8㎡)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5) 기타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1) 종교시설

■ 종교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2,324.9	증) 13.6	32,338.5	
변경	1	종교	진관동 71-4 일원	2,450.1	증) 3.4	2,453.5	존치시설 (흥창사)
변경	2	종교	진관동 41 일원	990.7	증) 2.4	993.1	
변경	3	종교	진관동 41 일원	339.2	증) 1.2	340.4	
기정	4	종교	진관동 16-11 일원	669.8	-	669.8	
기정	5	종교	진관동 산99-22 일원	280.7	-	280.7	존치시설 (관음사)
변경	6	종교	진관동 산100-46 일원	677.7	-	677.7	
기정	7	종교	진관동 산100-22 일원	1,325.4	-	1,325.4	
변경	8	종교	진관동 65-25 일원	1,158.0	증) 0.1	1,158.1	
변경	9	종교	진관동 175-429 일원	2,311.9	증) 3.6	2,315.5	
변경	10	종교	진관동 121-17 일원	864.0	증) 0.1	864.1	존치시설 (시연사)
변경	11	종교	진관동 242-24 일원	1,131.5	증) 0.1	1,131.6	존치시설 (사현사)
변경	12	종교	진관동 221-27 일원	2,156.6	증) 1.2	2,157.8	존치시설 (구파발성당)
변경	13	종교	진관동 170-3 일원	2,467.5	증) 0.3	2,467.8	존치시설 (구파발교회)
변경	14	종교	진관동 231-5 일원	677.7	감) 0.1	677.6	
변경	15	종교	진관동 160-7 일원	666.7	증) 0.1	666.8	
변경	16	종교	진관동 162-25 일원	166.1	-	166.1	
변경	17	종교	진관동 196-9 일원	1,157.2	증) 0.8	1,158.0	
변경	18	종교	진관동 209-15 일원	1,489.1	증) 1.1	1,490.2	
변경	20	종교	진관동 125-12 일원	667.0	감) 0.3	666.7	
변경	22	종교	진관동 145-2 일원	665.9	감) 0.2	665.7	
변경	24	종교	진관동 산109-14 일원	6,385.2	감) 0.3	6,384.9	존치시설 (선림사)
변경	25	종교	진관동 산109-20 일원	663.4	증) 0.2	663.6	
변경	26	종교	진관동 136-3 일원	310.0	감) 0.8	309.2	존치시설 (흥덕사)
변경	27	종교	진관동 164-11 일원	669.3	-	669.3	
변경	28	종교	진관동 175-324 일원	1,324.2	증) 0.7	1,324.9	존치시설 (기자촌교회)
변경	29	종교	진관동 92-13	660.0	-	660.0	

■ 종교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종교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2,450.1㎡→2,453.5㎡(증 3.4㎡)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2	종교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990.7㎡→993.1㎡(증 2.4㎡)	
3	종교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339.2㎡→340.4㎡(증 1.2㎡)	
6	종교시설	·선형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
8	종교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1,158.0㎡→1,158.1㎡(증 0.1㎡)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9	종교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2,311.9㎡→2,315.5㎡(증 3.6㎡)	
10	종교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864.0㎡→864.1㎡(증 0.1㎡)	
11	종교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1,135.1㎡→1,135.6㎡(증 0.1㎡)	
12	종교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2,156.6㎡→2,157.8㎡(증 1.2㎡)	
13	종교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2,467.5㎡→2,467.8㎡(증 0.3㎡)	
14	종교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677.7㎡→677.6㎡(감 0.1㎡)	
15	종교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666.7㎡→666.8㎡(증 0.1㎡)	
16	종교시설	·선형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
17	종교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1,157.2㎡→1,158.0㎡(증 0.8㎡)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18	종교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1,489.1㎡→1,490.2㎡(증 1.1㎡)	
20	종교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667.0㎡→666.7㎡(감 0.3㎡)	
22	종교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665.9㎡→665.7㎡(감 0.2㎡)	
24	종교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6,385.2㎡→6,384.9㎡(감 0.3㎡)	
25	종교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663.4㎡→663.6㎡(증 0.2㎡)	
26	종교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310.0㎡→309.2㎡(감 0.8㎡)	
27	종교시설	·선형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
28	종교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1,324.2㎡→1,324.9㎡(증 0.7㎡)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29	종교시설	·선형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

(2) 유통시설(화훼)

■ 유통시설(화훼)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040.0	감) 0.7	8,039.3	
변경	1	유통시설(화훼)	진관동 75-29 일원	8,040.0	감) 0.7	8,039.3	

■ 유통시설(화훼)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유통시설 (화훼)	·선형 및 면적변경 - 8,040.0㎡→8,039.3㎡(감 0.7㎡)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3) 주유소시설

■ 주유소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315.3	증) 4.9	6,320.2	
변경	1	주유소	진관동 73-22 일원	707.1	증) 2.9	710.0	
변경	2	주유소	진관동 75-18 일원	815.7	증) 0.1	815.8	
변경	3	주유소	진관동 76-6 일원	2,486.6	감) 0.2	2,486.4	
변경	4	주유소	진관동 240-27 일원	745.4	감) 0.2	745.2	
변경	5	주유소	진관동 161-10 일원	760.5	증) 2.2	762.7	
변경	6	주유소	진관동 93-19 일원	800.0	증) 0.1	800.1	

■ 주유소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유소	·선형 및 면적변경 - 707.1㎡→710.0㎡(증 2.9㎡)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2	주유소	·선형 및 면적변경 - 815.7㎡→815.8㎡(증 0.1㎡)	
3	주유소	·선형 및 면적변경 - 2,486.6㎡→2,486.4㎡(감 0.2㎡)	
4	주유소	·선형 및 면적변경 - 745.4㎡→745.2㎡(감 0.2㎡)	
5	주유소	·선형 및 면적변경 - 760.5㎡→762.7㎡(증 2.2㎡)	
6	주유소	·선형 및 면적변경 - 800.0㎡→800.1㎡(증 0.1㎡)	

(4) 유치원시설

■ 유치원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886.2	증) 3.6	3,889.8	
기정	1	유치원	진관동 5-10 일원	623.8	-	623.8	
기정	2	유치원	진관동 26-16 일원	628.4	-	628.4	
변경	3	유치원	진관동 41 일원	684.4	증) 2.1	686.5	
변경	4	유치원	진관동 209-24 일원	629.9	증) 0.8	630.7	
변경	5	유치원	진관동 168-24 일원	626.7	증) 0.6	627.3	
변경	6	유치원	진관동 206-19 일원	693.0	증) 0.1	693.1	

■ 유치원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유치원	·선형 및 면적변경 - 684.4㎡→686.5㎡(증 2.1㎡)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4	유치원	·선형 및 면적변경 - 629.9㎡→630.7㎡(증 0.8㎡)	
5	유치원	·선형 및 면적변경 - 626.7㎡→627.3㎡(증 0.6㎡)	
6	유치원	·선형 및 면적변경 - 693.0㎡→693.1㎡(증 0.1㎡)	

(5) 공익시설

■ 공익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174.1	증) 341.7	13,515.8	
변경	1	공익	진관동 산100-23 일원	6,936.2	증) 11.3	6,947.5	
변경	2	공익	진관동 164-11 일원	4,273.8	감) 0.3	4,273.5	
변경	3	공익	진관동 산110 일원	1,602.4	-	1,602.4	
변경	4	공익	진관동 125-29	361.7	감) 0.4	361.3	
신설	5	공익	진관동 128-18 일원	-	증) 331.1	331.1	

■ 공익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익	·선형 및 면적변경 - 6,936.2㎡→6,947.5㎡(증 11.3㎡)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2	공익	·선형 및 면적변경 - 4,273.8㎡→4,273.5㎡(감 0.3㎡)	
3	공익	·선형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
4	공익	·선형 및 면적변경 - 361.7㎡→361.3㎡(감 0.4㎡)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5	공익	·시설 신설	· 은평구의 은평 한(韓)문화 너나들이센터 건립요청에 따라 은평 역사한옥박물관과 인접한 단독주택용지를 공익시설로 변경

(6) 군사시설

■ 군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915.9	감) 3.4	3,912.5	
변경	1	군사	진관동 1-25 일원	1,148.0	증) 0.5	1,148.5	
변경	2	군사	진관동 43-1 일원	1,200.5	-	1,200.5	
변경	3	군사	진관동 산100-44 일원	1,179.2	감) 2.7	1,176.5	
변경	4	군사	진관동 42-26 일원	103.3	감) 1.2	102.1	
변경	5	군사	진관동 산100-44 일원	284.9	-	284.9	

■ 군사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군사	·선형 및 면적변경 - 1,148.0㎡→1,148.5㎡(증 0.5㎡)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2	군사	·선형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
3	군사	·선형 및 면적변경 - 1,179.2㎡→1,176.5㎡(감 2.7㎡)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4	군사	·선형 및 면적변경 - 103.3㎡→102.1㎡(감 1.2㎡)	
5	군사	·선형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

(7) 편익시설

■ 편익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4,957.2	감) 12,974.4	41,982.8	
변경	2	편익	진관동 161-23 일원	3,308.2	감) 1.7	3,306.5	
폐지	3	편익	진관동 235-28 일원	12,986.2	감) 12,986.2	-	
변경	4	편익	진관동 213-9 일원	7,591.6	증) 5.1	7,596.7	
변경	5	편익	진관동 208-10 일원	8,631.7	증) 10.5	8,642.2	
변경	7	편익	진관동 158-28 일원	2,272.5	-	2,272.5	
변경	8	편익	진관동 160-4 일원	7,485.6	-	7,485.6	
변경	9	편익	진관동 163-5 일원	6,251.4	감) 5.9	6,245.5	
변경	11	편익	진관동 162-13 일원	3,849.5	증) 2.4	3,851.9	
변경	12	편익	진관동 158-28 일원	1,523.0	증) 1.2	1,524.2	
변경	13	편익	진관동 66-27 일원	1,057.5	증) 0.2	1,057.7	

■ 편익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편익	·선형 및 면적변경 - 3,308.2㎡→3,306.5㎡(감 1.7㎡)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3	편익	·시설폐지	· 은평지구 장기 미매각부지에 서울시 정책사업인 '서울리츠' 사업을 시행하여 은평지구 지역경제활성화 및 공공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편익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4	편익	·선형 및 면적변경 - 7,591.6㎡→7,596.7㎡(증 5.1㎡)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5	편익	·선형 및 면적변경 - 8,631.7㎡→8,642.2㎡(증 10.5㎡)	
7	편익	·선형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
8	편익	·선형변경	
9	편익	·선형 및 면적변경 - 6,251.4㎡→6,245.5㎡(감 5.9㎡)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11	편익	·선형 및 면적변경 - 3,849.5㎡→3,851.9㎡(증 2.4㎡)	
12	편익	·선형 및 면적변경 - 1,523.0㎡→1,524.2㎡(증 1.2㎡)	
13	편익	·선형 및 면적변경 - 1,057.5㎡→1,057.7㎡(증 0.2㎡)	

(8) 자동차관련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478.8	증) 0.1	8,478.9	
변경	1	자동차관련시설	진관동 76-16 일원	1,800.7	증) 0.1	1,800.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차고지
변경	2	자동차관련시설	진관동 76-1 일원	3,679.0	증) 0.5	3,679.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차고지
변경	3	자동차관련시설	진관동 76-7 일원	2,999.1	감) 0.5	2,99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차고지

■ 자동차관련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자동차 관련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1,800.7㎡→1,800.8㎡(증 0.1㎡)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2	자동차 관련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3,679.0㎡→3,679.5㎡(증 0.5㎡)	
3	자동차 관련시설	·선형 및 면적변경 - 2,999.1㎡→2,998.6㎡(감 0.5㎡)	

(9) 주차장(부설주차장)

■ 주차장(부설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968.9	증) 0.8	1,969.7	
변경	10	주차장	진관동 127-20 일원	496.5	증) 0.5	497.0	부설주차장
변경	11	주차장	진관동 127-22 일원	366.5	증) 0.2	366.7	부설주차장
변경	12	주차장	진관동 132-17 일원	1,105.9	증) 0.1	1,106.0	부설주차장

■ 주차장(부설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주차장	·선형 및 면적변경 - 496.5㎡→497.0㎡(증 0.5㎡)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11	주차장	·선형 및 면적변경 - 366.5㎡→366.7㎡(증 0.2㎡)	
12	주차장	·선형 및 면적변경 - 1,105.9㎡→1,106.0㎡(증 0.1㎡)	

(10) 도시지원시설

■ 도시지원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도시지원시설	진관동 83-6 일원	6,334.4	감) 6,334.4	-	도시형공장

■ 주차장(부설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도시지원시설	·시설폐지	· 은평지구 장기 미매각부지에 서울시 정책사업인 '서울리츠' 사업을 시행하여 은평지구 지역경제활성화 및 공공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

(11) 커뮤니티시설

■ 커뮤니티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97.9	증) 0.6	398.5	
변경	1	커뮤니티시설	진관동 132-17	273.9	증) 0.6	274.5	노유자시설
변경	2	커뮤니티시설	진관동 126-8 일원	124.0	-	124.0	노유자시설

■ 커뮤니티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커뮤니티	·선형 및 면적변경 - 273.9㎡→274.5㎡(증 0.6㎡)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2	커뮤니티	·선형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

4.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내용 및 조서 : 별첨 4

5.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 변경 없음

< 별첨 2 > 지구별 주택공급계획

● 기 정

주택유형	세대수 (호)											
	계				임 대				분 양			
	소계	1지구	2지구	3지구	소계	1지구	2지구	3지구	전체	1지구	2지구	3지구
계	17,464	4,774	5,134	7,556	6,914	1,699	1,623	3,592	10,550	3,075	3,511	3,964
단독주택	257	-	-	257	-	-	-	-	257	-	-	257
아파트	17,207	4,774	5,134	7,299	6,914	1,699	1,623	3,592	10,293	3,075	3,511	3,707
전용면적 60㎡이하	5,098	1,696	1,373	2,029	4,018	1,448	819	1,751	1,080	248	554	278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7,018	1,451	2,176	3,391	2,896	251	804	1,841	4,122	1,200	1,372	1,550
전용면적 85㎡초과	5,091	1,627	1,585	1,879	-	-	-	-	5,091	1,627	1,585	1,879

● 변 경

주택유형	세대수 (호)											
	계				임 대				분 양			
	소계	1지구	2지구	3지구	소계	1지구	2지구	3지구	전체	1지구	2지구	3지구
계	17,813	4,774	5,484	7,555	7,264	1,699	1,973	3,592	10,549	3,075	3,511	3,963
단독주택	256	-	-	256	-	-	-	-	256	-	-	256
아파트	17,557	4,774	5,484	7,299	7,264	1,699	1,973	3,592	10,293	3,075	3,511	3,707
전용면적 60㎡이하	5,448	1,696	1,723	2,029	4,368	1,448	1,169	1,751	1,080	248	554	278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7,018	1,451	2,176	3,391	2,896	251	804	1,841	4,122	1,200	1,372	1,550
전용면적 85㎡초과	5,091	1,627	1,585	1,879	-	-	-	-	5,091	1,627	1,585	1,879

< 별첨 3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1	40	주간선 도로	2,481.2	구역계 진관동 242-10	구역계 진관동 74-20	일반 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광로	3	1	40	주간선 도로	2,481.2	구역계 진관동 242-10	구역계 진관동 74-20	일반 도로		〃	하천-2 중복 : 513.3㎡ 철도(본선)중복 : 4,282.8㎡
기정	대로	1	1	37	주간선 도로	151.6	광3-1 진관동 72-16	대3-1 진관동 54-2	일반 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대로	1	1	37	주간선 도로	151.6	광3-1 진관동 72-16	대3-1 진관동 54-2	일반 도로		〃	하천-2 중복 : 685.1㎡
기정	대로	3	1	28	주간선 도로	50.5	대1-1 진관동 72-22	구역계 진관동 72-23	일반 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대로	3	1	28	주간선 도로	50.5	대1-1 진관동 72-22	구역계 진관동 72-23	일반 도로		〃	하천-1 중복 : 1,349.3㎡
기정	대로	3	2	25	보조간선 도로	1,035.5	광3-1 진관동 235	대3-55 진관동 159-9	일반 도로		서고시448 05.12.30	
변경	대로	3	2	25	보조간선 도로	1,035.5	광3-1 진관동 235	대3-55 진관동 159-9	일반 도로		〃	하천-2 중복 : 1,125.1㎡
기정	대로	3	55	20~35	보조간선 도로	5,000 (2,238.6)	대1-12 불광동	- 진관동 299	일반 도로		건고시2493 66.06.21	
변경	대로	3	55	20~35	보조간선 도로	5,000 (2,238.6)	대1-12 불광동	- 진관동 299	일반 도로		〃	하천-2 중복 : 1,984.5㎡
기정	중로	1	1	20	보조간선 도로	2,046.1	대1-1 진관동 53-31	대3-55 진관동 1-21	일반 도로		서고시415 04.12.20	
변경	중로	1	1	20	보조간선 도로	2,046.1	대1-1 진관동 53-31	대3-55 진관동 1-21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2	20	집산 도로	1,211.3	중1-4 진관동 25-13	중1-1 진관동 3-22	일반 도로		서고시415 04.12.20	
기정	중로	1	3	20	보조간선 도로	59.4	중1-1 진관동 44	구역계 진관동 53-12	일반 도로		서고시415 04.12.20	
변경	중로	1	3	20	보조간선 도로	59.4	중1-1 진관동 44	구역계 진관동 53-12	일반 도로		〃	하천-1 중복 : 1,138.2㎡

주) ( )는 사업대상지 내 연장임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4	20	집산도로	943.8	광3-1 진관동 70-14	중1-1 진관동 34-10	일반도로		서고시415 04.12.20	
변경	중로	1	4	20~23	집산도로	943.8	광3-1 진관동 70-14	중1-1 진관동 34-10	일반도로		〃	하천-2 중복 : 821.8㎡ 철도(본선)중복 : 335.6㎡
기정	중로	1	5	20~26	집산도로	481.2	중1-4 진관동 69-16	중1-6 진관동 87-22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중로	1	5	20~26	집산도로	481.2	중1-4 진관동 69-16	중1-6 진관동 87-22	일반도로		〃	하천-2,철도(본선) 중복: 947.9㎡ 철도(구파발역)중복 : 3,837.9㎡ 철도(본선)중복 : 3,982.3㎡
기정	중로	1	6	20~23	집산도로	1,290.7	광3-1 진관동 93-16	대3-55 진관동 149-17	일반도로		서고시448 05.12.30	
변경	중로	1	6	20~23	집산도로	1,290.7	광3-1 진관동 93-16	대3-55 진관동 149-17	일반도로		〃	하천-2 중복 : 676.2㎡ 철도(본선)중복 : 352.1㎡
기정	중로	1	7	24	국지도로	619.1	중1-1 진관동 45	중1-4 진관동 69-1	일반도로		서고시377 07.10.18	
변경	중로	1	7	24	국지도로	619.1	중1-1 진관동 45	중1-4 진관동 69-1	일반도로		〃	철도(본선)중복 : 1,236.4㎡
기정	중로	1	8	20~23	집산도로	129.6	광3-1 진관동 92-22	종합의료시설 진관동 92-27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중로	1	8	20~23	집산도로	154.4	광3-1 진관동 92-22	종합의료시설 진관동 92-27	일반도로		〃	하천-2 중복 : 409.6㎡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183.5	중1-1 진관동 11-21	중1-2 진관동 13-3	일반도로		서고시415 04.12.20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179.2	중1-1 진관동 30-9	중1-2 진관동 28-4	일반도로		서고시415 04.12.20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138.6	광3-1 진관동 74-22	구역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12-4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중로	2	3	15	집산도로	138.6	광3-1 진관동 74-22	구역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12-4	일반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4	15	국지도로	76.5	중1-4 진관동 64-15	중3-2 진관동 64-15	일반도로		서고시448 05.12.30	
변경	중로	2	4	15	국지도로	76.5	중1-4 진관동 64-15	중3-2 진관동 64-15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5	15	보조간선도로	1,008.5	대1-1 진관동 72-22	구역계 진관동 75-5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중로	2	5	15	보조간선도로	1,008.5	대1-1 진관동 72-22	구역계 진관동 75-5	일반도로		〃	하천-1 중복 : 246.3㎡
기정	중로	2	6	15~22.5	집산도로	431.4	대3-2 진관동 164-27	중1-6 진관동 87-22	일반도로		서고시448 05.12.30	
변경	중로	2	6	15~22.5	집산도로	431.4	대3-2 진관동 164-27	중1-6 진관동 87-22	일반도로		〃	철도(본선)중복 : 1,365.0㎡
기정	중로	2	7	15	국지도로	54.9	중1-6 진관동 210-1	중3-13 진관동 209-31	일반도로		서고시448 05.12.30	
기정	중로	2	8	15	집산도로	384.4	대3-2 진관동 163-17	중1-6 진관동 199-1	일반도로		서고시448 05.12.30	
변경	중로	2	8	15	집산도로	384.4	대3-2 진관동 163-17	중1-6 진관동 199-1	일반도로		〃	하천-2 중복 : 495.6㎡
기정	중로	2	9	15	집산도로	96.0	중1-6 진관동 170-4	중3-13 진관동 170-30	일반도로		서고시448 05.12.30	
기정	중로	2	10	15~19.9	집산	484.9	대3-55 진관동 149-17	근린공원⑩ 진관동 175-153	일반도로		서고시377 07.10.18	
변경	중로	2	10	15~19.9	집산	484.9	대3-55 진관동 149-17	근린공원⑩ 진관동 175-153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1	17	국지도로	2.8	대3-55 진관동 134-27	고등학교⑨ 진관동 134-22	일반도로		서고시377 07.10.18	
변경	중로	2	11	17	국지도로	2.8	대3-55 진관동 134-27	고등학교⑨ 진관동 134-22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2	15	특수도로	6.5	광3-1 진관동 241-26	고등학교⑪ 진관동 134-22	일반도로		서고시306 11.10.20	
변경	중로	2	12	15	특수도로	6.5	광3-1 진관동 241-26	고등학교⑪ 진관동 134-22	일반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507.5	중1-2 진관동 25-22	소3-12 진관동 16-8	일반 도로		서고시415 04.12.20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207.2	중1-7 진관동 60-20	중2-4 진관동 65-27	일반 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중로	3	2	12	국지 도로	192.2	중1-7 진관동 60-20	중2-4 진관동 65-27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3	12	국지 도로	253.5	중1-4 진관동 43-18	중1-7 진관동 38-16	일반 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중로	3	3	12	국지 도로	253.5	중1-4 진관동 43-18	중1-7 진관동 38-16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4	12	국지 도로	211.4	중1-5 진관동 86-28	중1-6 진관동 225-4	일반 도로		서고시19 10.01.21	
변경	중로	3	4	12	국지 도로	211.4	중1-5 진관동 86-28	중1-6 진관동 225-4	일반 도로		〃	하천-2 중복 : 189.1㎡
기정	중로	3	5	12	국지 도로	61.7	중1-4 진관동 66-20	주차장③ 진관동 67-7	일반 도로		서고시377 07.10.18	
변경	중로	3	5	12	국지 도로	61.7	중1-4 진관동 66-20	주차장③ 진관동 67-7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6	12~20	집산 도로	751.8	대3-55 진관동 139-7	중3-8 진관동 125-31	일반 도로		서고시377 07.10.18	
변경	중로	3	6	12~20	집산 도로	751.8	대3-55 진관동 139-7	중3-8 진관동 125-31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8	12	집산 도로	468.1	대3-55 진관동 128-28	구역계 진관동 125-10	일반 도로		서고시377 07.10.18	
변경	중로	3	8	12	집산 도로	468.1	대3-55 진관동 128-28	구역계 진관동 125-10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9	12	집산 도로	687.5	대3-55 진관동 159-16	구역계 진관동 152-30	일반 도로		서고시377 07.10.18	
변경	중로	3	9	12	집산 도로	687.5	대3-55 진관동 159-16	구역계 진관동 152-30	일반 도로		〃	하천-2 중복 : 296.7㎡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0	12	국지도로	388.6	중1-2 진관동 13-3	소3-2 진관동 17-3	일반도로		서고시448 05.12.30	
변경	중로	3	10	12	국지도로	388.6	중1-2 진관동 13-3	소3-2 진관동 17-3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11	12	국지도로	129.4	중1-7 진관동 49-8	공동주택 진관동 51-19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중로	3	11	12	국지도로	129.4	중1-7 진관동 49-8	공동주택 진관동 51-19	일반도로		〃	하천-2 중복 : 222.2㎡
기정	중로	3	12	12	국지도로	141.8	중1-7 진관동 60-12	완충녹지 진관동 57-3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하천-2 중복 : 278.1㎡
기정	중로	3	13	12	집산도로	1,136.0	대3-55 진관동 139-8	중2-9 진관동 170-30	일반도로		서고시448 05.12.30	
변경	중로	3	13	12	집산도로	1,136.0	대3-55 진관동 139-8	중2-9 진관동 170-30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14	12	국지도로	54.9	대3-2 진관동 164-14	구역계 진관동 164-21	일반도로		서고시448 05.12.30	
변경	중로	3	14	12	국지도로	54.9	대3-2 진관동 164-14	구역계 진관동 164-2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15	12	국지도로	207.4	중1-6 진관동 88-20	중2-6 진관동 87-22	일반도로		서고시19 10.01.21	
변경	중로	3	15	12	국지도로	207.4	중1-6 진관동 88-20	중2-6 진관동 87-22	일반도로		〃	철도(본선)중복 : 187.3㎡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42.2	광3-1 진관동 70-30	구역계 진관동 71-3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소로	1	1	10~16.7	국지도로	142.2	광3-1 진관동 70-30	구역계 진관동 71-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82.4	광3-1 진관동 82-29	구역계 진관동 122-1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소로	1	2	10	국지도로	182.4	광3-1 진관동 82-29	구역계 진관동 122-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30.0	중2-8 진관동 206-11	공동주택 진관동 156-8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4	11	국지도로	120.6	중3-1 진관동 15-18	중3-10 진관동 16-9	일반도로		서고시448 05.12.30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5.0	대3-2 진관동 164-27	공동주택 진관동 164-28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소로	1	5	10	국지도로	5.0	대3-2 진관동 164-27	공동주택 진관동 164-2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25.1	소1-1 진관동 산100-43	군사시설③ 진관동 산100-44	일반도로		서고시377 07.10.18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22.2	중1-6 진관동 168-25	종교시설 진관동 223-28	일반도로		서고시19 10.01.21	
기정	소로	1	8	8~11	국지도로	169.5	중3-8 진관동 127-20	소2-1 진관동 128-8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소로	1	8	8~11	국지도로	169.5	중3-8 진관동 127-20	소2-1 진관동 128-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9	11	국지도로	19.6	중3-8 진관동 127-23	소3-19 진관동 132-17	일반도로		서고시407 11.12.29	
기정	소로	1	10	10.4	국지도로	75.8	중1-8 진관동 108-9	공공청사⑥ 진관동 93-1	일반도로		서고시428 13.12.12	
변경	소로	1	10	10.4	국지도로	49.3	중1-8 진관동 108-9	공공청사⑥ 진관동 93-1	일반도로		〃	하천-2 중복 : 218.6㎡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39.6	대3-55 진관동 135-7	중3-6 진관동 126-25	일반도로		서고시377 07.10.18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82.7	소2-1 진관동 128-9	소2-15 진관동 산105-10	일반도로		서고시377 07.10.18	
변경	소로	2	2	8	국지도로	182.7	소2-1 진관동 128-9	소2-15 진관동 산105-1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72.4	소2-2 진관동 128-11	소2-16 진관동 127-8	일반도로		서고시377 07.10.18	
변경	소로	2	3	8	국지도로	72.4	소2-2 진관동 128-11	소2-16 진관동 127-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4	9	국지도로	54.2	중1-1 진관동 2-3	구역계 진관동 1-19	일반도로		서고시448 05.12.30	하천-1 중복 : 439.4㎡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159.1	중3-9 진관동 산109-16	종교시설 진관동 151-26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소로	2	5	8	국지도로	159.1	중3-9 진관동 산109-16	종교시설 진관동 151-26	일반도로		〃	하천-2 중복 : 4.2㎡
기정	소로	2	6	8~9	국지도로	514.9	중3-13 진관동 210-2	구역계 진관동 216-1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소로	2	6	8~9	국지도로	514.9	중3-13 진관동 210-2	구역계 진관동 216-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54.6	중2-8 진관동 199-4	보행자도로 진관동 208-3	일반도로		서고시448 05.12.30	
변경	소로	2	7	8	국지도로	54.6	중2-8 진관동 199-4	보행자도로 진관동 208-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68.4	소2-3 진관동 126-22	소2-16 진관동 126-22	일반도로		서고시377 07.10.18	
변경	소로	2	8	8	국지도로	68.4	소2-3 진관동 126-22	소2-16 진관동 126-2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97.5	대3-55 진관동 131-8	구역계 진관동 130-13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소로	2	9	8	국지도로	97.5	대3-55 진관동 131-8	구역계 진관동 130-1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113.8	중3-6 진관동 127-3	소2-1 진관동 127-11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소로	2	11	8	국지도로	113.8	중3-6 진관동 127-3	소2-1 진관동 127-1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69.8	중3-6 진관동 124-26	소2-13 진관동 124-4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소로	2	12	8	국지도로	69.8	중3-6 진관동 124-26	소2-13 진관동 124-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95.6	소3-18 진관동 125-1	소3-9 진관동 124-3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소로	2	13	8	국지도로	95.6	소3-18 진관동 125-1	소3-9 진관동 124-3	일반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66.9	중3-6 진관동 124-27	복지시설 진관동 산104-14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소로	2	15	8	국지도로	66.9	중3-6 진관동 124-27	복지시설 진관동 산104-1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155.2	소2-1 진관동 127-8	소2-15 진관동 126-18	일반도로		서고시377 07.10.18	
변경	소로	2	16	8	국지도로	155.2	소2-1 진관동 127-8	소2-15 진관동 126-1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8	9	국지도로	135.1	광3-1 진관동 248-21	초등학교③ 진관동 248-15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소로	2	18	9	국지도로	135.1	광3-1 진관동 248-21	초등학교③ 진관동 248-1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9	9	특수도로	36.7	중3-6 진관동 126-22	소2-16 진관동 126-22	보행자전용도로		서고시377 07.10.18	
기정	소로	2	20	9	국지도로	12.0	소3-51 진관동 110	공공청사⑥ 진관동 109-21	일반도로		서고시428 13.12.12	하천-2 중복 : 120.8㎡
기정	소로	2	21	8	국지도로	40.9	광3-1 진관동 78-19	자동차관련시설② 진관동 76-7	일반도로		서고시268 08. 7.31	
변경	소로	2	21	8	국지도로	40.9	광3-1 진관동 78-19	자동차관련시설② 진관동 76-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	5	국지도로	65.1	중3-10 진관동 16-11	구역계 진관동 16-18	일반도로		서고시415 04.12.20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42.0	중3-10 진관동 산99-14	구역계 진관동 산99-21	일반도로		서고시415 04.12.20	
변경	소로	3	2	6	국지도로	142.0	중3-10 진관동 산99-14	구역계 진관동 산99-2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231.3	중1-2 진관동 24-22	구역계 진관동 24-5	일반도로		서고시415 04.12.20	
기정	소로	3	4	4	국지도로	109.2	중1-4 진관동 64-40	중1-4 진관동 18-29	일반도로		서고시448 05.12.30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5	4~8	국지도로	267.0	광3-1 진관동 74-3	광3-1 진관동 73-31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소로	3	5	4~8	국지도로	267.0	광3-1 진관동 74-3	광3-1 진관동 73-3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7	7	국지도로	122.0	수도시설 진관동 246-20	구역계 진관동 246-25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소로	3	7	7	국지도로	122.0	수도시설 진관동 246-20	구역계 진관동 246-2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35.8	중3-5 진관동 66-21	- 진관동 66-24	일반도로		서고시175 13.05.30	
변경	소로	3	8	6	국지도로	35.8	중3-5 진관동 66-21	- 진관동 66-2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9	4	특수도로	3.5	소2-13 진관동 124-3	구역계 진관동 124-3	일반도로		서고시306 11.10.20	
변경	소로	3	9	4	특수도로	3.5	소2-13 진관동 124-3	구역계 진관동 124-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08.8	대3-55 진관동 산105-7	종교시설㉖ 진관동 산103-25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소로	3	10	6	국지도로	108.8	대3-55 진관동 산105-7	종교시설㉖ 진관동 산103-2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37.9	대3-55 진관동 144-29	근린공원⑩ 진관동 산106-11	일반도로		서고시377 07.10.18	
기정	소로	3	12	6	국지도로	314.4	중3-1 진관동 16-8	구역계 진관동 산100-14	일반도로		서고시377 07.10.18	
기정	소로	3	13	6	국지도로	48.0	소2-15 진관동 124-22	소3-24 진관동 136-23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소로	3	13	6	국지도로	48.0	소2-15 진관동 124-22	소3-24 진관동 136-2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4	6	국지도로	227.9	소1-8 진관동 127-22	소3-15 진관동 128-3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소로	3	14	6	국지도로	227.9	소1-8 진관동 127-22	소3-15 진관동 128-3	일반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5	6	국지도로	143.8	소3-14 진관동 127-24	소1-8 진관동 128-6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소로	3	15	6	국지도로	143.8	소3-14 진관동 127-24	소1-8 진관동 128-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6	6	국지도로	184.5	소1-8 진관동 127-20	소1-8 진관동 127-30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소로	3	16	6	국지도로	184.5	소1-8 진관동 127-20	소1-8 진관동 127-3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7	6	국지도로	51.3	소3-16 진관동 127-18	소3-16 진관동 127-18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기정	소로	3	18	6	국지도로	277.6	중3-6 진관동 126-24	소3-37 진관동 125-2	일반도로		서고시377 07.10.18	
변경	소로	3	18	6	국지도로	277.6	중3-6 진관동 126-24	소3-37 진관동 125-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9	6	국지도로	250.4	중3-8 진관동 125-29	완충녹지② 진관동 128-28	일반도로		서고시377 07.10.18	
변경	소로	3	19	6	국지도로	250.4	중3-8 진관동 125-29	완충녹지② 진관동 128-2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20	6	국지도로	21.5	중3-6 진관동 126-30	구역계 진관동 125-25	일반도로		서고시377 07.10.18	
변경	소로	3	20	6	국지도로	21.5	중3-6 진관동 126-30	구역계 진관동 125-2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21	4	국지도로	19.2	중3-6 진관동 126-6	소3-66 진관동 125-29	일반도로		서고시377 07.10.18	
기정	소로	3	22	4	국지도로	15.9	중3-6 진관동 126-5	단독주택 진관동 126-5	일반도로		서고시377 07.10.18	
변경	소로	3	22	4	국지도로	15.9	중3-6 진관동 126-5	단독주택 진관동 126-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23	7	국지도로	18.0	소3-7 진관동 246-20	종교시설 진관동 242-24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소로	3	23	4	국지도로	26.8	소3-7 진관동 246-20	종교시설 진관동 242-24	일반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4	6	국지도로	36.1	중3-6 진관동 124-16	문화공원② 진관동 136-22	일반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소로	3	24	6	국지도로	36.1	중3-6 진관동 124-16	문화공원② 진관동 136-2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25	6	국지도로	28.1	광3-1 진관동 73-18	구역계 진관동 73-22	일반도로		서고시268 08. 7.31	
변경	소로	3	25	6	국지도로	28.1	광3-1 진관동 73-18	구역계 진관동 73-2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26	7	국지도로	83.7	대3-55 진관동 2-25	중1-1 진관동 산99-5	일반도로		서고시268 08. 7.31	
기정	소로	3	27	4~4.2	국지도로	196.1	소2-1 진관동 135-6	대3-55 진관동 136-7	일반도로		서고시268 08. 7.31	
변경	소로	3	27	4~4.2	국지도로	196.1	소2-1 진관동 135-6	대3-55 진관동 136-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28	6	국지도로	6.4	중3-6 진관동 137-14	문화공원② 진관동 144	일반도로		서고시268 08. 7.31	
변경	소로	3	28	6	국지도로	6.4	중3-6 진관동 137-14	문화공원② 진관동 14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31	2	특수도로	20.0	중3-8 진관동 127-24	소3-57 진관동 130-21	보행자전용도로		서고시377 07.10.18	
기정	소로	3	32	2	특수도로	21.0	중3-8 진관동 127-23	소3-14 진관동 127-24	보행자전용도로		서고시377 07.10.18	
변경	소로	3	32	2	특수도로	21.0	중3-8 진관동 127-23	소3-14 진관동 127-24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35	4	특수도로	28.2	중3-3 진관동 41	공동주택 진관동 41-23	보행자전용도로		서고시458 06.12.28	
변경	소로	3	35	4	특수도로	28.2	중3-3 진관동 41	공동주택 진관동 41-23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36	4	특수도로	22.8	소3-18 진관동 125	구역계 진관동 125	보행자전용도로		서고시377 07.10.18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7	4	특수 도로	6.6	소3-18 진관동 125-2	구역계 진관동 125-2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시377 07.10.18	
변경	소로	3	37	4	특수 도로	6.6	소3-18 진관동 125-2	구역계 진관동 125-2	보행자 전용 도로		〃	
기정	소로	3	38	5	특수 도로	47.6	중2-8 진관동 206-9	공동주택 진관동 205-18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시448 05.12.30	
변경	소로	3	38	5	특수 도로	47.6	중2-8 진관동 206-9	공동주택 진관동 205-18	보행자 전용 도로		〃	
기정	소로	3	39	4	특수 도로	81.5	대3-55 진관동 207-23	소2-7 진관동 208-3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시458 06.12.28	
기정	소로	3	42	2~3	특수 도로	43.3	소3-15 진관동 127-27	소1-8 진관동 127-31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시377 07.10.18	
기정	소로	3	43	3	특수 도로	24.4	소1-8 진관동 127-31	근린공원⑪ 진관동 127-4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시377 07.10.18	
변경	소로	3	43	3	특수 도로	24.4	소1-8 진관동 127-31	근린공원⑪ 진관동 127-4	보행자 전용 도로		〃	
기정	소로	3	44	3	특수 도로	65.2	중3-4 진관동 222-24	근린공원② 진관동 221-30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시377 07.10.18	
변경	소로	3	44	3	특수 도로	65.2	중3-4 진관동 222-24	근린공원② 진관동 221-30	보행자 전용 도로		〃	
기정	소로	3	46	4	특수 도로	33.2	소3-18 진관동 125-2	구역계 진관동 125-2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시377 07.10.18	
변경	소로	3	46	4	특수 도로	33.2	소3-18 진관동 125-2	구역계 진관동 125-2	보행자 전용 도로		〃	
기정	소로	3	47	4	특수 도로	6.7	소2-13 진관동 124-3	연결녹지 진관동 124-2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시377 07.10.18	
변경	소로	3	47	4	특수 도로	6.7	소2-13 진관동 124-3	연결녹지 진관동 124-2	보행자 전용 도로		〃	
기정	소로	3	48	3	특수 도로	64.5	중1-4 진관동 66-11	중3-2 진관동 66-7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시377 07.10.18	
변경	소로	3	48	3	특수 도로	64.5	중1-4 진관동 66-11	중3-2 진관동 66-7	보행자 전용 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49	5	특수도로	67.8	중1-4 진관동 66-11	중3-2 진관동 62-8	보행자전용도로		서고시377 07.10.18	
변경	소로	3	49	5	특수도로	67.8	중1-4 진관동 66-11	중3-2 진관동 62-8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50	6	특수도로	5.0	대3-55 진관동 207-2	중학교⑦ 진관동 207-2	보행자전용도로		서고시398 10.11.11	
변경	소로	3	50	6	특수도로	5.0	대3-55 진관동 207-2	중학교⑦ 진관동 207-2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51	6	국지도로	251.0	소1-10 진관동 108-1	종교시설⑩ 진관동 110-28	보차혼용도로		서고시125 11.05.12	
변경	소로	3	51	6	국지도로	251.0	소1-10 진관동 108-1	종교시설⑩ 진관동 110-28	보차혼용도로		〃	하천-2 중복 : 6.6㎡
기정	소로	3	52	6	국지도로	24.9	대3-55 진관동 135-14	소3-27 진관동 136-16	일반도로		서고시125 11.05.12	
변경	소로	3	52	6	국지도로	24.9	대3-55 진관동 135-14	소3-27 진관동 136-1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54	6	국지도로	60.3	소3-14 진관동 128-24	소3-15 진관동 127-27	일반도로		서고시407 11.12.29	
변경	소로	3	54	6	국지도로	60.3	소3-14 진관동 128-24	소3-15 진관동 127-2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58	2	특수도로	21.6	중3-8 진관동 127-20	소3-19 진관동 127-22	보행자전용도로		서고시407 11.12.29	
변경	소로	3	58	2	특수도로	21.6	중3-8 진관동 127-20	소3-19 진관동 127-22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59	3	특수도로	18.0	소3-19 진관동 125-29	근린공원⑪ 진관동 125-29	보행자전용도로		서고시407 11.12.29	
기정	소로	3	60	3	특수도로	47.8	중3-8 진관동 125-25	소3-19 진관동 125-29	보행자전용도로		서고시407 11.12.29	
변경	소로	3	60	3	특수도로	47.8	중3-8 진관동 125-25	소3-19 진관동 125-29	보행자전용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61	2	특수 도로	34.3	소3-14 진관동 128-21	소3-54 진관동 128-23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시407 11.12.29	
변경	소로	3	61	2	특수 도로	34.3	소3-14 진관동 128-21	소3-54 진관동 128-23	보행자 전용 도로		〃	
기정	소로	3	62	2~3	특수 도로	54.5	소2-1 진관동 134-31	소3-14 진관동 134-17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시407 11.12.29	
변경	소로	3	62	2~3	특수 도로	54.5	소2-1 진관동 134-31	소3-14 진관동 134-17	보행자 전용 도로		〃	
기정	소로	3	63	2	특수 도로	22.0	소2-1 진관동 128-19	소3-15 진관동 128-3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시407 11.12.29	
기정	소로	3	64	3	특수 도로	21.8	소2-1 진관동 127-9	근린공원⑪ 진관동 127-2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시407 11.12.29	
기정	소로	3	66	3	특수 도로	11.0	소3-21 진관동 125-29	소3-65 진관동 126-2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시407 11.12.29	
변경	소로	3	66	3	특수 도로	11.0	소3-21 진관동 125-29	소3-65 진관동 126-2	보행자 전용 도로		〃	
기정	소로	3	67	4	국지 도로	265.3	소3-19 진관동 132-17	소3-19 진관동 128-28	보차 혼용 도로		서고시272 13.08.22	
변경	소로	3	67	4	국지 도로	265.3	소3-19 진관동 132-17	소3-19 진관동 128-28	보차 혼용 도로		〃	
기정	소로	3	68	4	국지 도로	24.6	소3-19 진관동 127-22	단독주택 진관동 127-22	보차 혼용 도로		서고시272 13.08.22	
기정	소로	3	69	2	특수 도로	15.2	근린공원⑪ 진관동 132-17	소3-67 진관동 132-17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시272 13.08.22	
변경	소로	3	69	2	특수 도로	15.2	근린공원⑪ 진관동 132-17	소3-67 진관동 132-17	보행자 전용 도로		〃	
기정	소로	3	70	2	특수 도로	31.0	소3-67 진관동 132-17	소3-67 진관동 132-22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시272 13.08.22	
변경	소로	3	70	2	특수 도로	31.0	소3-67 진관동 132-17	소3-67 진관동 132-22	보행자 전용 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71	2	특수도로	12.7	소3-67 진관동 130-19	완충녹지② 진관동 129-6	보행자전용도로		서고시272 13.08.22	
변경	소로	3	71	2	특수도로	12.7	소3-67 진관동 130-19	완충녹지② 진관동 129-6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72	2	특수도로	15.5	근린공원⑪ 진관동 132-16	소3-67 진관동 132-16	보행자전용도로		서고시272 13.08.22	
기정	소로	3	73	2	특수도로	31.0	소3-67 진관동 132-16	소3-67 진관동 132-16	보행자전용도로		서고시272 13.08.22	
기정	소로	3	74	2	특수도로	14.9	소3-67 진관동 132-18	완충녹지② 진관동 132-6	보행자전용도로		서고시272 13.08.22	
기정	소로	3	75	2	특수도로	15.0	소3-67 진관동 132	완충녹지② 진관동 132-1	보행자전용도로		서고시272 13.08.22	
변경	소로	3	75	2	특수도로	15.0	소3-67 진관동 132	완충녹지② 진관동 132-1	보행자전용도로		〃	
신설	소로	3	76	7	국지도로	164.5	중1-5 진관동 86-31	- 진관동 85-7	일반도로			하천-2 중복 : 55.7㎡
신설	소로	3	77	7	국지도로	20.9	소3-7 진관동 246-24	- 진관동 247	일반도로			

주) 하천과 중복된 도로면적은 토지이용계획상 하천면적으로 편입됨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3-1	광로3-1	· 면적변경 - 104,753.8㎡→104,566.4㎡(감 191.9㎡) · 하천과 중복결정(513.3㎡) · 철도(본선)와 중복결정(4,282.8㎡)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
대로1-1	대로1-1	· 면적변경 - 5,686.0㎡→5,520.8㎡(감 165.2㎡) · 하천과 중복결정(685.1㎡)	
대로3-1	대로3-1	· 면적변경 - 1,500.3㎡→1,545.9㎡(증 45.6㎡) · 하천과 중복결정(1,349.3㎡)	
대로3-2	대로3-2	· 면적변경 - 28,251.2㎡→28,249.4㎡(감 1.8㎡) · 하천과 중복결정(1,125.1㎡)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55	대로3-55	· 면적변경 - 60,507.9㎡→61,507.6㎡(증 999.7㎡) · 하천과 중복결정(1,984.5㎡)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
중로1-1	중로1-1	· 면적변경 - 47,396.2㎡→46,627.8㎡(감 768.4㎡)	
중로1-3	중로1-3	· 면적변경 - 1,586.1㎡→1,582.3㎡(감 3.8㎡) · 하천과 중복결정(1,138.2㎡)	
중로1-4	중로1-4	· 폭원변경 - 폭원 : 20m→20~23m (하천인접부근 1차로 확장) - 연장 : 943.8m(변경없음) · 면적변경 - 19,035.2㎡→19,292.0㎡(증 256.8㎡) · 하천과 중복결정(821.8㎡) · 철도(본선)와 중복결정(335.6㎡)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 · 은평지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내용을 반영하여 중심상업지 하천 내 인접도로를 1차로 확장
중로1-5	중로1-5	· 폭원변경 - 폭원 : 20~26m→20~26m (하천인접부근 1차로 확장) - 연장 : 481.2m(변경없음) · 면적변경 - 10,853.7㎡→11,014.0㎡(증 160.6㎡) · 하천, 철도와 중복결정(947.9㎡) · 철도(본선)와 중복결정(3,982.3㎡) · 철도(구파발역)와 중복결정(3,837.9㎡)	
중로1-6	중로1-6	· 면적변경 - 27,070.8㎡→27,068.5㎡(감 2.3㎡) · 하천과 중복결정(676.2㎡) · 철도(본선)와 중복결정(352.1㎡)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
중로1-7	중로1-7	· 면적변경 - 8,365.1㎡→8,374.5㎡(증 9.4㎡) · 철도(본선)와 중복결정(1,236.4㎡)	
중로1-8	중로1-8	· 폭원변경 - 폭원 : 20~23m(변경없음) - 연장 : 129.6m→154.4m(증 24.8m) · 면적변경 - 2,891.6㎡→3,319.7㎡(증 428.1㎡) · 하천과 중복결정(409.6㎡)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 · 통일로 혼잡 개선 및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병원 진출입 교량의 위치 변경에 따른 연장 및 면적 변경
중로2-3	중로2-3	· 면적변경 - 1,570.6㎡→1,570.4㎡(감 0.2㎡)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
중로2-4	중로2-4	· 면적변경 - 1,016.0㎡→1,179.5㎡(증 163.5㎡)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5	중로2-5	· 면적변경 - 4,339.5㎡→4,336.3㎡(감 3.2㎡) · 하천과 중복결정(246.3㎡)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
중로2-6	중로2-6	· 면적변경 - 7,382.5㎡→7,383.2㎡(증 0.7㎡) · 철도(본선)와 중복결정(1,365.0㎡)	
중로2-8	중로2-8	· 면적변경 - 5,992.3㎡→5,992.1㎡(감 0.2㎡) · 하천과 중복결정(495.6㎡)	
중로2-10	중로2-10	· 면적변경 - 8,098.1㎡→8,095.7㎡(감 2.4㎡)	
중로2-11	중로2-11	· 면적변경 - 56.6㎡→56.5㎡(감 0.1㎡)	
중로2-12	중로2-12	· 면적변경 - 95.0㎡→94.9㎡(감 0.1㎡)	
중로3-2	중로3-2	· 연장변경 - 207.2m→192.2m(감 15m) · 면적변경 - 2,503.8㎡→2,339.6㎡(감 164.2㎡)	
중로3-3	중로3-3	· 면적변경 - 3,500.5㎡→3,524.4㎡(증 23.9㎡)	
중로3-4	중로3-4	· 면적변경 - 2,570.3㎡→2,569.8㎡(감 0.5㎡) · 하천과 중복결정(189.1㎡)	
중로3-5	중로3-5	· 면적변경 - 758.7㎡→756.1㎡(감 2.6㎡)	
중로3-6	중로3-6	· 면적변경 - 9,559.4㎡→9,562.2㎡(증 2.8㎡)	
중로3-8	중로3-8	· 면적변경 - 5,633.2㎡→5,634.5㎡(증 1.3㎡)	
중로3-9	중로3-9	· 면적변경 - 9,631.4㎡→9,649.2㎡(증 17.8㎡) · 하천과 중복결정(296.7㎡)	
중로3-10	중로3-10	· 면적변경 - 4,804.3㎡→4,805.7㎡(증 1.4㎡)	
중로3-11	중로3-11	· 면적변경 - 1,565.8㎡→1,558.5㎡(감 7.3㎡) · 하천과 중복결정(222.2㎡)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13	중로3-13	· 면적변경 - 14,427.7㎡→14,425.5㎡(감 2.2㎡)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
중로3-14	중로3-14	· 면적변경 - 676.3㎡→676.2㎡(감 0.1㎡)	
중로3-15	중로3-15	· 면적변경 - 3,167.5㎡→3,166.7㎡(감 0.8㎡) · 철도(본선)와 중복결정(187.3㎡)	
소로1-1	소로1-1	· 폭원변경 - 10m→10~16.7m · 면적변경 - 1,434.5㎡→1,508.9㎡(증 74.4㎡)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폭원 및 면적 변경
소로1-2	소로1-2	· 면적변경 - 1,839.7㎡→1,837.7㎡(감 2.0㎡)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
소로1-5	소로1-5	· 면적변경 - 63.4㎡→63.5㎡(증 0.1㎡)	
소로1-8	소로1-8	· 면적변경 - 1,488.5㎡→1,489.9㎡(증 1.4㎡)	
소로1-10	소로1-10	· 노선 축소 - 폭원 : 10.4m(변경없음) - 연장 : 75.8m→49.3m(감 26.5m) · 면적변경 - 595.5㎡→539.8㎡(감 55.7㎡) · 하천과 중복결정(218.6㎡)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 · 중로1-8호선 교량의 위치 변경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2-2	소로2-2	· 면적변경 - 1,477.6㎡→1,492.4㎡(증 14.8㎡)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
소로2-3	소로2-3	· 면적변경 - 679.0㎡→664.6㎡(감 14.4㎡)	
소로2-5	소로2-5	· 면적변경 - 1,261.7㎡→1,260.8㎡(감 0.9㎡) · 하천과 중복결정(4.2㎡)	
소로2-6	소로2-6	· 면적변경 - 4,293.4㎡→4,291.1㎡(감 2.3㎡)	
소로2-7	소로2-7	· 선형변경	
소로2-8	소로2-8	· 면적변경 - 693.9㎡→701.5㎡(증 7.6㎡)	
소로2-9	소로2-9	· 면적변경 - 911.8㎡→942.3㎡(증 30.5)	
소로2-11	소로2-11	· 면적변경 - 935.3㎡→934.4㎡(감 0.9㎡)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2	소로2-12	· 면적변경 - 607.9㎡→607.2㎡(감 0.7㎡)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
소로2-13	소로2-13	· 면적변경 - 1,038.1㎡→1,034.7㎡(감 3.4㎡)	
소로2-15	소로2-15	· 면적변경 - 543.8㎡→544.0㎡(증 0.2㎡)	
소로2-16	소로2-16	· 면적변경 - 1,263.5㎡→1,256.9㎡(감 6.6㎡)	
소로2-18	소로2-18	· 면적변경 - 1,204.5㎡→1,205.2㎡(증 0.7㎡)	
소로2-21	소로2-21	· 면적변경 - 339.7㎡→339.8㎡(증 0.1㎡)	
소로3-2	소로3-2	· 면적변경 - 943.1㎡→941.8㎡(감 1.3㎡)	
소로3-5	소로3-5	· 면적변경 - 1,830.6㎡→1,831.1㎡(증 0.5㎡)	
소로3-7	소로3-7	· 면적변경 - 876.2㎡→941.2㎡(증 65.0㎡)	
소로3-8	소로3-8	· 면적변경 - 227.0㎡→226.8㎡(감 0.2㎡)	
소로3-9	소로3-9	· 면적변경 - 14.2㎡→14.5㎡(증 0.3㎡)	
소로3-10	소로3-10	· 면적변경 - 665.2㎡→664.9㎡(감 0.3㎡)	
소로3-13	소로3-13	· 면적변경 - 324.4㎡→324.3㎡(감 0.1㎡)	
소로3-14	소로3-14	· 면적변경 - 1,458.1㎡→1,460.5㎡(증 2.4㎡)	
소로3-15	소로3-15	· 면적변경 - 913.3㎡→913.1㎡(감 0.2㎡)	
소로3-16	소로3-16	· 면적변경 - 1,127.4㎡→1,125.8㎡(감 1.6㎡)	
소로3-18	소로3-18	· 면적변경 - 1,987.1㎡→1,982.9㎡(감 4.2㎡)	
소로3-19	소로3-19	· 면적변경 - 1,521.3㎡→1,521.4㎡(증 0.1㎡)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20	소로3-20	· 면적변경 - 146.0㎡→145.9㎡(감 0.1㎡)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
소로3-22	소로3-22	· 면적변경 - 71.8㎡→71.9㎡(증 0.1㎡)	
소로3-23	소로3-23	· 연장 및 폭원변경 - 연장 18.0m→26.8m(증 8.8m) - 폭원 7m→4m · 면적변경 - 139.1㎡→125.5㎡(감 13.6㎡)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노선위치, 선형, 폭원 및 면적 변경
소로3-24	소로3-24	· 면적변경 - 240.2㎡→240.7㎡(증 0.5㎡)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
소로3-25	소로3-25	· 면적변경 - 181.5㎡→182.1㎡(증 0.6㎡)	
소로3-27	소로3-27	· 면적변경 - 826.2㎡→826.0㎡(감 0.2㎡)	
소로3-28	소로3-28	· 면적변경 - 38.4㎡→38.8㎡(증 0.4㎡)	
소로3-32	소로3-32	· 면적변경 - 42.0㎡→41.9㎡(감 0.1㎡)	
소로3-35	소로3-35	· 면적변경 - 113.2㎡→113.4㎡(증 0.2㎡)	
소로3-37	소로3-37	· 면적변경 - 26.8㎡→26.9㎡(증 0.1㎡)	
소로3-38	소로3-38	· 면적변경 - 238.0㎡→238.2㎡(증 0.2㎡)	
소로3-43	소로3-43	· 면적변경 - 70.5㎡→71.1㎡(증 0.6㎡)	
소로3-44	소로3-44	· 면적변경 - 195.5㎡→195.3㎡(감 0.2㎡)	
소로3-46	소로3-46	· 면적변경 - 132.9㎡→133.2㎡(증 0.3㎡)	
소로3-47	소로3-47	· 면적변경 - 27.2㎡→27.5㎡(증 0.3㎡)	
소로3-48	소로3-48	· 면적변경 - 193.6㎡→193.8㎡(증 0.2㎡)	
소로3-49	소로3-49	· 면적변경 - 340.4㎡→340.3㎡(감 0.1㎡)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50	소로3-50	· 면적변경 - 12.2㎡→11.2㎡(감 1.0㎡)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
소로3-51	소로3-51	· 면적변경 - 1,512.9㎡1,513.2→㎡(증 0.3㎡) · 하천과 중복결정(6.6㎡)	
소로3-52	소로3-52	· 면적변경 - 174.7㎡174.6→㎡(감 0.1㎡)	
소로3-54	소로3-54	· 면적변경 - 544.2㎡→543.8㎡(감 0.4㎡)	
소로3-58	소로3-58	· 면적변경 - 43.2㎡→43.1㎡(감 0.1㎡)	
소로3-60	소로3-60	· 면적변경 - 143.3㎡→143.6㎡(증 0.3㎡)	
소로3-61	소로3-61	· 면적변경 - 76.9㎡→76.8㎡(감 0.1㎡)	
소로3-62	소로3-62	· 면적변경 - 121.3㎡→121.2㎡(감 0.1㎡)	
소로3-66	소로3-66	· 면적변경 - 22.0㎡→21.9㎡(감 0.1㎡)	
소로3-67	소로3-67	· 면적변경 - 1,150.9㎡→1,151.1㎡(증 0.2㎡)	
소로3-69	소로3-69	· 면적변경 - 30.1㎡→30.0㎡(감 0.1㎡)	
소로3-70	소로3-70	· 면적변경 - 61.7㎡→61.5㎡(감 0.2㎡)	
소로3-71	소로3-71	· 면적변경 - 25.3㎡→25.4㎡(증 0.1㎡)	
소로3-75	소로3-75	· 면적변경 - 30.0㎡→30.1㎡(증 0.1㎡)	
-	소로3-76	· 노선 신설 - 폭원 : 7.0m - 연장 : 164.5m - 면적 : 1,179.2㎡ · 하천과 중복결정(55.7㎡)	· 서울시 건축, 경관, 교통 통합심의 결과 반영 (조건부 동의, 2014.10.28)
-	소로3-77	· 노선 신설 - 폭원 : 7.0m - 연장 : 20.9m - 면적 : 154.9㎡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노선 신설

< 별첨 4 > 지구단위계획 내용 및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은평재정비촉진지구도시개발사업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일원	3,492,567.8	감) 11.6	3,492,556.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변경 - 3,492,567.8㎡ → 3,492,556.2㎡ (감 11.6㎡)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첨 1의 3.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같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별첨 1의 3.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같음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동주택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기정	계	-	1,271,238.9	
변경	계	-	1,282,402.2	
기정	BL 1-1	진관동 32-9 일원	39,804.6	
기정	BL 1-2	진관동 31-8 일원	27,322.2	
기정	BL 1-3	진관동 29-15 일원	19,203.4	
기정	BL 1-4	진관동 7-21 일원	19,462.9	
변경	BL 1-4	진관동 7-21 일원	19,462.8	
기정	BL 1-5	진관동 10-8 일원	27,242.4	
기정	BL 1-6	진관동 3-10 일원	21,395.2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기정	BL 1-7	진관동 4-31 일원	29,545.5	
기정	BL 1-8	진관동 13-2 일원	17,087.8	
기정	BL 1-9	진관동 13-17 일원	10,714.7	
기정	BL 1-10	진관동 25-20 일원	19,618.8	
기정	BL 1-11	진관동 24-25 일원	13,319.7	
기정	BL 1-12	진관동 23-3 일원	35,907.7	
기정	BL 1-13	진관동 18-24 일원	33,498.6	
기정	BL 1-14	진관동 17-20 일원	35,794.8	
기정	BL 1-15	진관동 16-29 일원	21,638.2	
변경	BL 1-15	진관동 16-29 일원	21,639.4	
기정	BL 2-1	진관동 99-23 일원	57,603.4	
변경	BL 2-1	진관동 99-23 일원	57,605.9	
기정	BL 2-2	진관동 185 일원	30,549.3	
변경	BL 2-2	진관동 185 일원	30,548.5	
기정	BL 2-3	진관동 203-8 일원	52,427.3	
변경	BL 2-3	진관동 203-8 일원	52,426.9	
기정	BL 2-4	진관동 175-706 일원	8,695.1	
변경	BL 2-4	진관동 175-706 일원	8,694.6	
기정	BL 2-5	진관동 191-29 일원	25,389.1	
변경	BL 2-5	진관동 191-29 일원	25,388.8	
기정	BL 2-6	진관동 175-245 일원	29,001.9	
변경	BL 2-6	진관동 175-245 일원	29,001.2	
기정	BL 2-7	진관동 217-16 일원	50,512.1	
변경	BL 2-7	진관동 217-16 일원	50,517.6	
기정	BL 2-8	진관동 212-28 일원	37,086.4	
변경	BL 2-8	진관동 212-28 일원	37,087.0	
기정	BL 2-9	진관동 213-28 일원	33,086.8	
변경	BL 2-9	진관동 213-28 일원	33,085.9	
기정	BL 2-10	진관동 156-21 일원	17,602.1	
변경	BL 2-10	진관동 156-21 일원	17,599.0	
기정	BL 2-11	진관동 186-29 일원	30,147.5	
변경	BL 2-11	진관동 186-29 일원	30,152.4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기정	BL 2-12	진관동 232-1 일원	34,603.6	
변경	BL 2-12	진관동 232-1 일원	34,602.0	
기정	BL 2-13	진관동 236-25 일원	15,577.4	
변경	BL 2-13	진관동 236-25 일원	15,576.8	
신설	BL 2-14	진관동 235-28 일원	11,196.7	
기정	BL 3-1	진관동 47-24 일원	31,027.1	
변경	BL 3-1	진관동 47-24 일원	31,050.1	
기정	BL 3-2	진관동 39-16 일원	45,326.5	
변경	BL 3-2	진관동 39-16 일원	45,237.0	
기정	BL 3-3	진관동 63-27 일원	56,862.1	
변경	BL 3-3	진관동 63-27 일원	56,863.7	
기정	BL 3-4	진관동 61-28 일원	23,531.0	
변경	BL 3-4	진관동 61-28 일원	23,523.1	
기정	BL 3-5	진관동 52-7 일원	41,177.9	
변경	BL 3-5	진관동 52-7 일원	41,186.2	
기정	BL 3-6	진관동 140-16 일원	18,583.8	
변경	BL 3-6	진관동 140-16 일원	18,585.4	
기정	BL 3-7	진관동 137-25 일원	17,987.0	
변경	BL 3-7	진관동 137-25 일원	17,984.0	
기정	BL 3-8	진관동 144-9 일원	32,742.1	
변경	BL 3-8	진관동 144-9 일원	32,745.7	
기정	BL 3-9	진관동 150-20 일원	61,871.6	
변경	BL 3-9	진관동 150-20 일원	61,878.0	
기정	BL 3-10	진관동 152-28 일원	14,236.3	
변경	BL 3-10	진관동 152-28 일원	14,232.0	
기정	BL 3-11	진관동 152-12 일원	13,760.9	
변경	BL 3-11	진관동 152-12 일원	13,761.0	
기정	BL 3-12	진관동 146-18 일원	31,255.7	
변경	BL 3-12	진관동 146-18 일원	31,257.4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기정	소계		64,107.6	
	BL 3-13A	진관동 175-204 일원	59,247.9	
	BL 3-13B	진관동 175-481 일원	1,652.2	
	BL 3-13C	진관동 175-405 일원	1,624.5	
	BL 3-13D	진관동 175-419 일원	1,583.0	
변경	소계		64,126.8	
	BL 3-13A	진관동 175-204 일원	59,268.6	
	BL 3-13B	진관동 175-481 일원	1,652.7	
	BL 3-13C	진관동 175-405 일원	1,624.5	
	BL 3-13D	진관동 175-419 일원	1,581.0	
기정	BL 3-14	진관동 149-4 일원	24,930.8	
변경	BL 3-14	진관동 149-4 일원	24,930.9	

■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공동주택용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BL2-14	· 은평지구 장기 미매각부지에 서울시 정책사업인 '서울리츠' 사업을 시행하여 은평지구 지역경제활성화 및 공공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편익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 단독주택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단독 1	①	소계		2,767.6	
변경	단독 1	①	소계		2,768.1	
기정	단독 1	①	-1	진관동 128-27 일원	227.1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①	-1	진관동 128-27 일원	228.3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①	-2	진관동 128-24 일원	233.7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①	-2	진관동 128-24 일원	233.8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①	-3	진관동 128-24 일원	240.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①	-3	진관동 128-24 일원	239.3	한옥지정구역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단독 1	①	-4	진관동 127-24 일원	242.9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①	-4	진관동 127-24 일원	243.0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①	-5	진관동 127-24 일원	243.6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①	-6	진관동 127-23 일원	232.6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①	-6	진관동 127-23 일원	232.8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①	-7	진관동 127-23 일원	236.6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①	-8	진관동 127-20 일원	197.1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①	-8	진관동 127-20 일원	196.9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①	-9	진관동 127-20 일원	212.6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①	-10	진관동 127-20 일원	234.2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①	-10	진관동 127-20 일원	234.3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①	-11	진관동 127-18 일원	235.0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①	-12	진관동 127-18 일원	232.2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①	-12	진관동 127-18 일원	231.9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②	소계		3,616.8	
변경	단독 1	②	소계		3,615.1	
기정	단독 1	②	-1	진관동 128-24 일원	192.1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②	-1	진관동 128-24 일원	192.0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②	-2	진관동 128-24 일원	195.3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②	-2	진관동 128-24 일원	195.2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②	-3	진관동 128-24 일원	204.7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②	-3	진관동 128-24 일원	204.2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②	-4	진관동 128-24 일원	232.2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②	-4	진관동 128-24 일원	231.7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②	-5	진관동 128-24 일원	231.3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②	-5	진관동 128-24 일원	230.9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②	-6	진관동 127-25 일원	235.0	한옥지정구역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단독 1	②	-7	진관동 128-24 일원	207.5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②	-7	진관동 128-24 일원	207.4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②	-8	진관동 128-24 일원	191.6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②	-9	진관동 128-24 일원	182.3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②	-9	진관동 128-24 일원	182.4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②	-10	진관동 128-24 일원	200.1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②	-10	진관동 128-24 일원	200.2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②	-11	진관동 134-13 일원	195.1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②	-11	진관동 134-13 일원	195.0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②	-12	진관동 134-16 일원	195.0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②	-13	진관동 134-16 일원	200.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②	-13	진관동 134-16 일원	199.8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②	-14	진관동 128-22 일원	230.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②	-14	진관동 128-22 일원	230.2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②	-15	진관동 128-21 일원	230.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②	-15	진관동 128-21 일원	230.5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②	-16	진관동 128-22 일원	245.4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②	-16	진관동 128-22 일원	245.3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②	-17	진관동 128-22 일원	249.2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②	-17	진관동 128-22 일원	248.7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③	소계		3,664.6	
변경	단독 1	③	소계		3,662.8	
기정	단독 1	③	-1	진관동 127-22 일원	206.6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③	-1	진관동 127-22 일원	205.8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③	-2	진관동 127-22 일원	230.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③	-2	진관동 127-22 일원	230.3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③	-3	진관동 127-27 일원	230.5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③	-3	진관동 127-27 일원	230.6	한옥지정구역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단독 1	③	-4	진관동 127-27 일원	230.2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③	-4	진관동 127-27 일원	230.4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③	-5	진관동 127-27 일원	230.2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③	-5	진관동 127-27 일원	230.4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③	-6	진관동 127-27 일원	202.7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③	-6	진관동 127-27 일원	202.9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③	-7	진관동 128-4 일원	195.4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③	-7	진관동 128-4 일원	195.5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③	-8	진관동 128-7 일원	195.1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③	-9	진관동 128-3 일원	195.4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③	-10	진관동 128-5 일원	200.1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③	-11	진관동 128-5 일원	222.4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③	-12	진관동 127-29 일원	220.5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③	-12	진관동 127-29 일원	220.1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③	-13	진관동 127-29 일원	207.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③	-13	진관동 127-29 일원	206.9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③	-14	진관동 127-26 일원	208.3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③	-14	진관동 127-26 일원	207.8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③	-15	진관동 127-27 일원	230.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③	-15	진관동 127-27 일원	229.6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③	-16	진관동 127-22 일원	230.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③	-16	진관동 127-22 일원	229.6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③	-17	진관동 127-20 일원	230.2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③	-17	진관동 127-20 일원	229.9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④	소계		2,890.0	
변경	단독 1	④	소계		2,889.7	
기정	단독 1	④	-1	진관동 134-30 일원	258.1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④	-1	진관동 134-30 일원	258.0	한옥지정구역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단독 1	④	-2	진관동 134-30 일원	200.7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④	-2	진관동 134-30 일원	200.8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④	-3	진관동 128-3 일원	201.5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④	-3	진관동 128-3 일원	201.4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④	-4	진관동 128-3 일원	170.0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④	-5	진관동 128-3 일원	171.7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④	-6	진관동 134-30 일원	271.8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④	-7	진관동 135 일원	236.1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④	-7	진관동 135 일원	236.2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④	-8	진관동 135 일원	236.1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④	-9	진관동 128-19 일원	236.1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④	-9	진관동 128-19 일원	236.0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④	-10	진관동 128-20 일원	236.1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④	-10	진관동 128-20 일원	236.0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④	-11	진관동 128-19 일원	220.9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④	-11	진관동 128-19 일원	221.0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④	-12	진관동 128-3 일원	220.9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④	-12	진관동 128-3 일원	220.8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④	-13	진관동 128-8 일원	230.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④	-13	진관동 128-8 일원	229.9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⑤	소계		1,131.4	
변경	단독 1	⑤	소계		1,130.2	
기정	단독 1	⑤	-1	진관동 126-1 일원	405.4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⑤	-1	진관동 126-1 일원	405.1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⑤	-2	진관동 125-29 일원	316.1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⑤	-3	진관동 126-3 일원	409.9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⑤	-3	진관동 126-3 일원	409.0	한옥지정구역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단독 1	⑥	소계		1,545.3	
변경	단독 1	⑥	소계		1,546.6	
기정	단독 1	⑥	-1	진관동 127-20 일원	173.3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⑥	-1	진관동 127-20 일원	173.4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⑥	-2	진관동 127-20 일원	177.6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⑥	-3	진관동 127-20 일원	200.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⑥	-3	진관동 127-20 일원	200.5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⑥	-4	진관동 127-20 일원	197.0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⑥	-5	진관동 127-20 일원	200.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⑥	-5	진관동 127-20 일원	200.4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⑥	-6	진관동 127-18 일원	199.3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⑥	-6	진관동 127-18 일원	199.2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⑥	-7	진관동 127-16 일원	200.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⑥	-7	진관동 127-16 일원	200.3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⑥	-8	진관동 127-18 일원	198.1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⑥	-8	진관동 127-18 일원	198.2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⑦	소계		1,453.6	
변경	단독 1	⑦	소계		1,452.0	
기정	단독 1	⑦	-1	진관동 127-18 일원	186.3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⑦	-2	진관동 127-18 일원	193.1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⑦	-2	진관동 127-18 일원	193.2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⑦	-3	진관동 127-18 일원	193.1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⑦	-4	진관동 127-15 일원	191.3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⑦	-4	진관동 127-15 일원	191.2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⑦	-5	진관동 127-15 일원	230.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⑦	-5	진관동 127-15 일원	229.4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⑦	-6	진관동 127-15 일원	229.8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⑦	-6	진관동 127-15 일원	229.6	한옥지정구역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단독 1	⑦	-7	진관동 127-15 일원	230.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⑦	-7	진관동 127-15 일원	239.2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⑧	소계		3,695.8	
변경	단독 1	⑧	소계		3,695.9	
기정	단독 1	⑧	-1	진관동 128 일원	241.3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⑧	-1	진관동 128 일원	241.6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⑧	-2	진관동 127-16 일원	254.4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⑧	-2	진관동 127-16 일원	253.5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⑧	-3	진관동 127-15 일원	260.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⑧	-3	진관동 127-15 일원	259.9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⑧	-4	진관동 127-15 일원	271.1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⑧	-4	진관동 127-15 일원	271.3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⑧	-5	진관동 127-31 일원	265.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⑧	-5	진관동 127-31 일원	265.5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⑧	-6	진관동 127-31 일원	264.1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⑧	-7	진관동 128-2 일원	264.1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⑧	-7	진관동 128-2 일원	264.2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⑧	-8	진관동 128-5 일원	264.1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⑧	-8	진관동 128-5 일원	264.0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⑧	-9	진관동 128-8 일원	230.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⑧	-9	진관동 128-8 일원	230.1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⑧	-10	진관동 128-8 일원	231.9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⑧	-11	진관동 127-9 일원	230.0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⑧	-12	진관동 127-2 일원	230.0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⑧	-13	진관동 127-2 일원	230.0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⑧	-14	진관동 127-2 일원	230.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⑧	-14	진관동 127-2 일원	229.9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1	⑧	-15	진관동 127-11 일원	229.8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1	⑧	-15	진관동 127-11 일원	229.9	한옥지정구역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단독 1	⑨	소계		2,849.4	
변경	단독 1	⑨	소계		2,848.4	
기정	단독 1	⑨	-1	진관동 127-1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⑨	-1	진관동 127-1 일원	329.1	
기정	단독 1	⑨	-2	진관동 127-1 일원	209.4	
변경	단독 1	⑨	-2	진관동 127-1 일원	209.2	
기정	단독 1	⑨	-3	진관동 126-29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⑨	-3	진관동 126-29 일원	330.1	
기정	단독 1	⑨	-4	진관동 127-1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⑨	-4	진관동 127-1 일원	329.9	
기정	단독 1	⑨	-5	진관동 126-25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⑨	-5	진관동 126-25 일원	330.1	
기정	단독 1	⑨	-6	진관동 126-25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⑨	-6	진관동 126-25 일원	330.1	
기정	단독 1	⑨	-7	진관동 126-25 일원	330.0	
기정	단독 1	⑨	-8	진관동 126-25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⑨	-8	진관동 126-25 일원	329.9	
기정	단독 1	⑨	-9	진관동 126-25 일원	330.0	
기정	단독 1	⑩	소계		790.0	
변경	단독 1	⑩	소계		459.9	
기정	단독 1	⑩	-1	진관동 128-18 일원	330.0	
폐지	단독 1	⑩	-1	진관동 128-18 일원	-	
기정	단독 1	⑩	-2	진관동 128-17 일원	230.0	
변경	단독 1	⑩	-2	진관동 128-17 일원	230.1	
기정	단독 1	⑩	-3	진관동 128-18 일원	230.0	
변경	단독 1	⑩	-3	진관동 128-18 일원	229.8	
기정	단독 1	⑪	소계		2,640.0	
기정	단독 1	⑪	-1	진관동 128-10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⑪	-1	진관동 128-10 일원	329.9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단독 1	⑪	-2	진관동 128-13 일원	330.0	
기정	단독 1	⑪	-3	진관동 127-13 일원	330.0	
기정	단독 1	⑪	-4	진관동 127-8 일원	330.0	
기정	단독 1	⑪	-5	진관동 127-12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⑪	-5	진관동 127-12 일원	329.9	
기정	단독 1	⑪	-6	진관동 127-8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⑪	-6	진관동 127-8 일원	330.1	
기정	단독 1	⑪	-7	진관동 127-12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⑪	-7	진관동 127-12 일원	330.1	
기정	단독 1	⑪	-8	진관동 127-8 일원	330.0	
기정	단독 1	⑫	소계		3,860.0	
변경	단독 1	⑫	소계		3,860.1	
기정	단독 1	⑫	-1	진관동 128-16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⑫	-1	진관동 128-16 일원	329.8	
기정	단독 1	⑫	-2	진관동 126-22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⑫	-2	진관동 126-22 일원	330.2	
기정	단독 1	⑫	-3	진관동 126-19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⑫	-3	진관동 126-19 일원	329.0	
기정	단독 1	⑫	-4	진관동 126-22 일원	330.0	
기정	단독 1	⑫	-5	진관동 126-19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⑫	-5	진관동 126-19 일원	330.5	
기정	단독 1	⑫	-6	진관동 126-22 일원	330.0	
기정	단독 1	⑫	-7	진관동 126-16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⑫	-7	진관동 126-16 일원	330.4	
기정	단독 1	⑫	-8	진관동 126-22 일원	330.0	
기정	단독 1	⑫	-9	진관동 126-16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⑫	-9	진관동 126-16 일원	329.9	
기정	단독 1	⑫	-10	진관동 126-16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⑫	-10	진관동 126-16 일원	330.1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단독 1	⑫	-11	진관동 126-17 일원	330.0	
기정	단독 1	⑫	-12	진관동 126-17 일원	230.0	
변경	단독 1	⑫	-12	진관동 126-17 일원	230.2	
기정	단독 1	⑬	소계		560.0	
변경	단독 1	⑬	소계		560.5	
기정	단독 1	⑬	-1	진관동 126-22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⑬	-1	진관동 126-22 일원	330.2	
기정	단독 1	⑬	-2	진관동 126-22 일원	230.0	
변경	단독 1	⑬	-2	진관동 126-22 일원	230.3	
기정	단독 1	⑭	소계		5,280.0	
변경	단독 1	⑭	소계		5,279.0	
기정	단독 1	⑭	-1	진관동 127-8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⑭	-1	진관동 127-8 일원	329.2	
기정	단독 1	⑭	-2	진관동 126-25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⑭	-2	진관동 126-25 일원	330.8	
기정	단독 1	⑭	-3	진관동 127-8 일원	330.0	
기정	단독 1	⑭	-4	진관동 126-22 일원	330.0	
기정	단독 1	⑭	-5	진관동 126-22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⑭	-5	진관동 126-22 일원	329.7	
기정	단독 1	⑭	-6	진관동 126-22 일원	330.0	
기정	단독 1	⑭	-7	진관동 126-22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⑭	-7	진관동 126-22 일원	329.4	
기정	단독 1	⑭	-8	진관동 126-22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⑭	-8	진관동 126-22 일원	330.6	
기정	단독 1	⑭	-9	진관동 126-22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⑭	-9	진관동 126-22 일원	329.5	
기정	단독 1	⑭	-10	진관동 126-16 일원	330.0	
기정	단독 1	⑭	-11	진관동 126-16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⑭	-11	진관동 126-16 일원	329.9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단독 1	⑭	-12	진관동 126-16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⑭	-12	진관동 126-16 일원	330.2	
기정	단독 1	⑭	-13	진관동 126-17 일원	330.0	
기정	단독 1	⑭	-14	진관동 126-17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⑭	-14	진관동 126-17 일원	330.1	
기정	단독 1	⑭	-15	진관동 126-17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⑭	-15	진관동 126-17 일원	329.8	
기정	단독 1	⑭	-16	진관동 126-17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⑭	-16	진관동 126-17 일원	329.8	
기정	단독 1	⑮	소계		2,110.0	
변경	단독 1	⑮	소계		2,109.2	
기정	단독 1	⑮	-1	진관동 124-23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⑮	-1	진관동 124-23 일원	329.7	
기정	단독 1	⑮	-2	진관동 124-22 일원	230.0	
변경	단독 1	⑮	-2	진관동 124-22 일원	229.9	
기정	단독 1	⑮	-3	진관동 124-23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⑮	-3	진관동 124-23 일원	330.1	
기정	단독 1	⑮	-4	진관동 136-22 일원	230.0	
변경	단독 1	⑮	-4	진관동 136-22 일원	230.1	
기정	단독 1	⑮	-5	진관동 124-13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⑮	-5	진관동 124-13 일원	329.8	
기정	단독 1	⑮	-6	진관동 124-24 일원	330.0	
기정	단독 1	⑮	-7	진관동 124-24 일원	330.0	
변경	단독 1	⑮	-7	진관동 124-24 일원	329.6	
기정	단독 1	⑯	소계		1,026.1	
변경	단독 1	⑯	소계		1,025.6	
기정	단독 1	⑯	-1	진관동 136-31 일원	345.0	
변경	단독 1	⑯	-1	진관동 136-31 일원	344.9	
기정	단독 1	⑯	-2	진관동 136-31 일원	345.3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단독 1	⑯	-3	진관동 124-9 일원	335.8	
변경	단독 1	⑯	-3	진관동 124-9 일원	335.4	
기정	단독 2	①	소계		1,480.8	
변경	단독 2	①	소계		1,481.2	
기정	단독 2	①	-1	진관동 126-8 일원	339.6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2	①	-1	진관동 126-8 일원	339.8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2	①	-2	진관동 126-5 일원	299.3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2	①	-2	진관동 126-5 일원	299.4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2	①	-3	진관동 126-5 일원	333.5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2	①	-3	진관동 126-5 일원	333.6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2	①	-4	진관동 126-10 일원	309.3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2	①	-4	진관동 126-10 일원	309.2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2	①	-5	진관동 126-10 일원	199.1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2	①	-5	진관동 126-10 일원	199.2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2	②	소계		3,300.0	
변경	단독 2	②	소계		3,299.7	
기정	단독 2	②	-1	진관동 126-12 일원	330.0	
변경	단독 2	②	-1	진관동 126-12 일원	329.7	
기정	단독 2	②	-2	진관동 126-14 일원	330.0	
변경	단독 2	②	-2	진관동 126-14 일원	329.8	
기정	단독 2	②	-3	진관동 126-14 일원	330.0	
변경	단독 2	②	-3	진관동 126-14 일원	330.2	
기정	단독 2	②	-4	진관동 126-14 일원	330.0	
기정	단독 2	②	-5	진관동 126-14 일원	330.0	
변경	단독 2	②	-5	진관동 126-14 일원	330.4	
기정	단독 2	②	-6	진관동 125 일원	330.0	
변경	단독 2	②	-6	진관동 125 일원	329.7	
기정	단독 2	②	-7	진관동 125 일원	330.0	
변경	단독 2	②	-7	진관동 125 일원	329.8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단독 2	②	-8	진관동 125 일원	330.0	
기정	단독 2	②	-9	진관동 125 일원	330.0	
변경	단독 2	②	-9	진관동 125 일원	330.2	
기정	단독 2	②	-10	진관동 125 일원	330.0	
변경	단독 2	②	-10	진관동 125 일원	329.9	
기정	단독 2	③	소계		4,190.0	
변경	단독 2	③	소계		4,192.1	
기정	단독 2	③	-1	진관동 124-26 일원	330.0	
변경	단독 2	③	-1	진관동 124-26 일원	329.5	
기정	단독 2	③	-2	진관동 124-26 일원	330.0	
변경	단독 2	③	-2	진관동 124-26 일원	329.9	
기정	단독 2	③	-3	진관동 124-29 일원	330.0	
변경	단독 2	③	-3	진관동 124-29 일원	330.1	
기정	단독 2	③	-4	진관동 124-26 일원	330.0	
기정	단독 2	③	-5	진관동 124-26 일원	330.0	
변경	단독 2	③	-5	진관동 124-26 일원	330.1	
기정	단독 2	③	-6	진관동 124-26 일원	330.0	
변경	단독 2	③	-6	진관동 124-26 일원	330.2	
기정	단독 2	③	-7	진관동 124-26 일원	330.0	
변경	단독 2	③	-7	진관동 124-26 일원	330.4	
기정	단독 2	③	-8	진관동 124-7 일원	330.0	
기정	단독 2	③	-9	진관동 124-7 일원	330.0	
변경	단독 2	③	-9	진관동 124-7 일원	331.0	
기정	단독 2	③	-10	진관동 124-7 일원	330.0	
기정	단독 2	③	-11	진관동 124-7 일원	330.0	
변경	단독 2	③	-11	진관동 124-7 일원	330.6	
기정	단독 2	③	-12	진관동 124-3 일원	330.0	
변경	단독 2	③	-12	진관동 124-3 일원	330.6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단독 2	③	-13	진관동 124-5 일원	230.0	
변경	단독 2	③	-13	진관동 124-5 일원	229.7	
기정	단독 2	④	소계		5,609.2	
변경	단독 2	④	소계		5,612.1	
기정	단독 2	④	-1	진관동 125-1 일원	330.0	
기정	단독 2	④	-2	진관동 125-1 일원	330.0	
변경	단독 2	④	-2	진관동 125-1 일원	330.2	
기정	단독 2	④	-3	진관동 125-7 일원	330.0	
변경	단독 2	④	-3	진관동 125-7 일원	330.1	
기정	단독 2	④	-4	진관동 125-4 일원	230.0	
기정	단독 2	④	-5	진관동 125-3 일원	330.0	
변경	단독 2	④	-5	진관동 125-3 일원	330.3	
기정	단독 2	④	-6	진관동 125-6 일원	330.0	
변경	단독 2	④	-6	진관동 125-6 일원	331.1	
기정	단독 2	④	-7	진관동 125-2 일원	330.0	
변경	단독 2	④	-7	진관동 125-2 일원	330.6	
기정	단독 2	④	-8	진관동 125-2 일원	236.1	
변경	단독 2	④	-8	진관동 125-2 일원	236.5	
기정	단독 2	④	-9	진관동 125-2 일원	293.1	
변경	단독 2	④	-9	진관동 125-2 일원	293.9	
기정	단독 2	④	-10	진관동 125-2 일원	330.0	
변경	단독 2	④	-10	진관동 125-2 일원	330.5	
기정	단독 2	④	-11	진관동 125-2 일원	230.0	
변경	단독 2	④	-11	진관동 125-2 일원	229.7	
기정	단독 2	④	-12	진관동 125-2 일원	330.0	
변경	단독 2	④	-12	진관동 125-2 일원	329.5	
기정	단독 2	④	-13	진관동 125-2 일원	330.0	
기정	단독 2	④	-14	진관동 125 일원	330.0	
변경	단독 2	④	-14	진관동 125 일원	329.7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단독 2	④	-15	진관동 125 일원	330.0	
변경	단독 2	④	-15	진관동 125 일원	330.1	
기정	단독 2	④	-16	진관동 125 일원	330.0	
기정	단독 2	④	-17	진관동 125 일원	330.0	
변경	단독 2	④	-17	진관동 125 일원	329.9	
기정	단독 2	④	-18	진관동 124-31 일원	330.0	
기정	단독 3	①	소계		953.5	
변경	단독 3	①	소계		954.0	
기정	단독 3	①	-1	진관동128-28 일원	191.3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①	-1	진관동128-28 일원	191.5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①	-2	진관동128-27 일원	193.7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①	-2	진관동128-27 일원	193.8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①	-3	진관동127-24 일원	190.3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①	-3	진관동127-24 일원	190.4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①	-4	진관동127-24 일원	188.7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①	-4	진관동127-24 일원	188.8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①	-5	진관동127-23 일원	189.5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①	소계		2,444.8	
변경	단독 3	①	소계		2,444.9	
기정	단독 3	②	-1	진관동 132-13 일원	329.9	존치시설
기정	단독 3	②	-2	진관동132 일원	170.5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②	-2	진관동132 일원	170.6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②	-3	진관동132-9 일원	248.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②	-3	진관동132-9 일원	248.2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②	-4	진관동132 일원	165.0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②	-5	진관동132 일원	165.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②	-5	진관동132 일원	164.9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②	-6	진관동132-5 일원	159.6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②	-6	진관동132-5 일원	159.7	한옥지정구역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단독 3	②	-7	진관동132-19 일원	165.1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②	-7	진관동132-19 일원	165.0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②	-8	진관동132-19 일원	165.0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②	-9	진관동129-6 일원	178.3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②	-10	진관동129-6 일원	135.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②	-10	진관동129-6 일원	134.9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②	-11	진관동129-1 일원	175.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②	-11	진관동129-1 일원	174.9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②	-12	진관동129-1 일원	175.3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②	-12	진관동129-1 일원	175.4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②	-13	진관동128-28 일원	213.1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③	소계		2,335.8	
변경	단독 3	③	소계		2,336.0	
기정	단독 3	③	-1	진관동 132 일원	161.1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③	-2	진관동 132-16 일원	161.8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③	-2	진관동 132-16 일원	161.9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③	-3	진관동 132-16 일원	165.0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③	-4	진관동 132-16 일원	165.0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③	-5	진관동 132-16 일원	135.0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③	-6	진관동 132-16 일원	135.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③	-6	진관동 132-16 일원	135.1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③	-7	진관동 132-16 일원	176.7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③	-7	진관동 132-16 일원	176.6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③	-8	진관동 132-16 일원	176.6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③	-8	진관동 132-16 일원	176.5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③	-9	진관동 132-16 일원	176.7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③	-10	진관동 132-16 일원	176.5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③	-11	진관동 132-16 일원	176.7	한옥지정구역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단독 3	③	-12	진관동 132-16 일원	176.5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③	-12	진관동 132-16 일원	176.6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③	-13	진관동 132-16 일원	176.7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③	-14	진관동 132-17 일원	176.5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③	-14	진관동 132-17 일원	176.6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④	소계		2,394.1	
변경	단독 3	④	소계		2,393.1	
기정	단독 3	④	-1	진관동 132-16 일원	167.5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④	-1	진관동 132-16 일원	166.8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④	-2	진관동 132-16 일원	165.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④	-2	진관동 132-16 일원	164.7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④	-3	진관동 132-16 일원	135.0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④	-4	진관동 132-16 일원	176.3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④	-5	진관동 132-17 일원	174.2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④	-6	진관동 132-17 일원	171.9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④	-6	진관동 132-17 일원	172.0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④	-7	진관동 132-17 일원	172.7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④	-8	진관동 127-22 일원	164.6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④	-9	진관동 132-24 일원	184.2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④	-10	진관동 127-22 일원	163.5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④	-10	진관동 127-22 일원	163.6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④	-11	진관동 132-17 일원	163.5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④	-12	진관동 127-22 일원	163.6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④	-13	진관동 127-22 일원	162.1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④	-13	진관동 127-22 일원	162.0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④	-14	진관동 132-26 일원	230.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④	-14	진관동 132-26 일원	229.9	한옥지정구역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단독 3	⑤	소계		1,406.9	
변경	단독 3	⑤	소계		1,407.8	
기정	단독 3	⑤	-1	진관동 127-23 일원	282.6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⑤	-1	진관동 127-23 일원	282.8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⑤	-2	진관동 127-23 일원	270.9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⑤	-2	진관동 127-23 일원	271.4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⑤	-3	진관동 127-22 일원	283.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⑤	-3	진관동 127-22 일원	283.4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⑤	-4	진관동 125-29 일원	290.2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⑤	-4	진관동 125-29 일원	289.8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⑤	-5	진관동 125-29 일원	280.2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⑤	-5	진관동 125-29 일원	280.4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⑥	소계		2,586.1	
변경	단독 3	⑥	소계		2,585.2	
기정	단독 3	⑥	-1	진관동125-29 일원	387.8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⑥	-1	진관동125-29 일원	387.9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⑥	-2	진관동125-29 일원	353.9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⑥	-2	진관동125-29 일원	353.7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⑥	-3	진관동125-29 일원	273.9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⑥	-4	진관동125-29 일원	277.5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⑥	-5	진관동125-29 일원	303.0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⑥	-6	진관동125-29 일원	330.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⑥	-6	진관동125-29 일원	329.6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⑥	-7	진관동125-29 일원	330.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⑥	-7	진관동125-29 일원	329.7	한옥지정구역
기정	단독 3	⑥	-8	진관동125-29 일원	330.0	한옥지정구역
변경	단독 3	⑥	-8	진관동125-29 일원	329.9	한옥지정구역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단독주택용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단독1-⑩-1	· 은평구의 은평 한(韓)문화 너나들이센터 건립요청에 따라 은평 역사한옥박물관과 인접한 단독주택용지를 공익시설로 변경

◦ 준주거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21,903.1	
변경	계				28,292.2	
기정	준주거	①	소계		21,903.1	
변경	준주거	①	소계		21,903.3	
기정	준주거	①	-1	진관동 91-4 일원	2,644.0	
변경	준주거	①	-1	진관동 91-4 일원	2,643.5	
기정	준주거	①	-2	진관동 90-3 일원	2,640.8	
변경	준주거	①	-2	진관동 90-3 일원	2,640.6	
기정	준주거	①	-3	진관동 91-3 일원	2,404.4	
변경	준주거	①	-3	진관동 91-3 일원	2,404.6	
기정	준주거	①	-4	진관동 90-22 일원	2,061.5	
변경	준주거	①	-4	진관동 90-22 일원	2,061.6	
기정	준주거	①	-5	진관동 95-15 일원	2,489.8	
변경	준주거	①	-5	진관동 95-15 일원	2,489.0	
기정	준주거	①	-6	진관동 95-5 일원	2,069.1	
변경	준주거	①	-6	진관동 95-5 일원	2,069.2	
기정	준주거	①	-7	진관동 97-10 일원	7,593.5	
변경	준주거	①	-7	진관동 97-10 일원	7,594.8	
신설	소계				6,388.9	
신설	준주거	②		진관동 83-6 일원	6,388.9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준주거시설용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준주거②	· 은평지구 장기 미매각부지에 서울시 정책사업인 '서울리츠' 사업을 시행하여 은평지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

◦ 상업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88,761.3	
변경	계				87,640.7	
기정	상업	①	-	진관동 59-18 일원	4,945.2	
변경	상업	①	-	진관동 59-18 일원	4,945.2	
기정	상업	②	-	진관동 60-19 일원	2,464.7	
변경	상업	②	-	진관동 60-19 일원	2,464.7	
기정	상업	③	-	진관동 60-18 일원	4,988.2	
변경	상업	③	-	진관동 60-18 일원	4,988.3	
기정	상업	④	-	진관동 66-13 일원	4,916.2	
기정	상업	⑤	소계		2,831.1	
변경	상업	⑤	소계		2,831.2	
기정	상업	⑤	-1	진관동 68-16 일원	390.3	
기정	상업	⑤	-2	진관동 68-21 일원	606.1	
기정	상업	⑤	-3	진관동 69-5 일원	1,834.7	
변경	상업	⑤	-3	진관동 69-5 일원	1,834.8	
기정	상업	⑥	-	진관동 87 일원	2,462.1	
변경	상업	⑥	-	진관동 87 일원	2,460.1	
기정	상업	⑦	-	진관동 87-3 일원	3,811.5	
변경	상업	⑦	-	진관동 87-3 일원	3,812.3	
기정	상업	⑧	-	진관동 87-13 일원	3,043.2	
변경	상업	⑧	-	진관동 87-13 일원	3,041.7	
기정	상업	⑨	-	진관동 59-7 일원	8,873.9	
변경	상업	⑨	-	진관동 59-7 일원	8,889.3	
기정	상업	⑩	소계		42,275.1	
변경	상업	⑩	소계		41,143.0	
기정	상업	⑩	-1	진관동 79-15 일원	33,023.9	특별계획구역
변경	상업	⑩	-1	진관동 79-15 일원	33,024.3	특별계획구역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상업	⑩	-2	진관동 85-13 일원	9,251.2	특별계획구역
변경	상업	⑩	-2	진관동 85-13 일원	8,118.7	특별계획구역
기정	상업	⑪	-	진관동 88-13 일원	8,150.1	특별계획구역
변경	상업	⑪	-	진관동 88-13 일원	8,150.4	특별계획구역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상업용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상업 ⑩-2	· 서울시 건축, 경관, 교통 통합심의 결과 반영(조건부 동의, 2014.10.28)을 위한 진입도로 신설에 따른 면적변경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7,041.3	
변경	계					
기정	근생	①	소계		1,488.1	
기정	근생	①	-1	진관동 산99-5 일원	330.0	
변경	근생	①	-1	진관동 산99-5 일원	330.1	
기정	근생	①	-2	진관동 2-1 일원	828.1	
기정	근생	①	-3	진관동 2-25 일원	330.0	
변경	근생	①	-3	진관동 2-25 일원	329.9	
기정	근생	②	소계		3,960.0	
변경	근생	②	소계		3,959.9	
기정	근생	②	-1	진관동 134-31 일원	330.0	
변경	근생	②	-1	진관동 134-31 일원	330.1	
기정	근생	②	-2	진관동 134-31 일원	330.0	
변경	근생	②	-2	진관동 134-31 일원	329.9	
기정	근생	②	-3	진관동 134-31 일원	330.0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근생	②	-4	진관동 134-31 일원	330.0	
변경	근생	②	-4	진관동 134-31 일원	329.9	
기정	근생	②	-5	진관동 134-31 일원	330.0	
변경	근생	②	-5	진관동 134-31 일원	329.9	
기정	근생	②	-6	진관동 135-10 일원	330.0	
기정	근생	②	-7	진관동 135-14 일원	330.0	
변경	근생	②	-7	진관동 135-14 일원	330.1	
기정	근생	②	-8	진관동 135-16 일원	330.0	
기정	근생	②	-9	진관동 135-18 일원	330.0	
기정	근생	②	-10	진관동 135-19 일원	330.0	
기정	근생	②	-11	진관동 135-20 일원	330.0	
기정	근생	②	-12	진관동 135-20 일원	330.0	
기정	근생	③	-	진관동 73-20 일원	677.9	
변경	근생	③	-	진관동 73-20 일원	677.7	
기정	근생	④	소계		915.3	
변경	근생	④	소계		915.6	
기정	근생	④	-1	진관동 126-11 일원	492.2	
변경	근생	④	-1	진관동 126-11 일원	492.5	
기정	근생	④	-2	진관동 126-11 일원	423.1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근린생활시설용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주차장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20,964.3	
변경	계				20,960.6	
기정	주	①	-	진관동 77-7 일원	5,078.2	
변경	주	①	-	진관동 77-7 일원	5,077.0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주	②	-	진관동 71-3 일원	788.9	
기정	주	③	-	진관동 68-12 일원	4,744.4	
변경	주	③	-	진관동 68-12 일원	4,744.3	
기정	주	④	-	진관동 125-12 일원	5,339.3	
변경	주	④	-	진관동 125-12 일원	5,336.4	
기정	주	⑤	-	진관동 66-1 일원	3,073.7	
변경	주	⑤	-	진관동 66-1 일원	3,073.6	
기정	주	⑥	-	진관동 209-28 일원	1,939.8	
변경	주	⑥	-	진관동 209-28 일원	1,940.4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주차장용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자동차정류장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16,529.5	
변경	계				16,529.6	
기정	차고지	①	-	진관동 78-6 일원	16,529.5	
변경	차고지	①	-	진관동 78-6 일원	16,529.6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자동차정류장용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자원회수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8,511.9	
변경	계				8,512.5	
기정	자원	①	-	진관동 122-6 일원	8,511.9	
변경	자원	①	-	진관동 122-6 일원	8,512.5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자원회수시설용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수도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7,853.9	
변경	계				7,856.5	
기정	수도공급설 비	①	-	진관동 246-20 일원	7,853.9	제7호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변경	수도공급설 비	①	-	진관동 246-20 일원	7,856.5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수도시설용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공동구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587.3	
변경	계				520.4	
기정	공동구	②	-	진관동 산100-44 일원	562.3	관리사무소
변경	공동구	②	-	진관동 산100-44 일원	501.2	
기정	공동구	③	-	진관동 83-23일원	25.0	환기구
변경	공동구	③	-	진관동 83-23일원	19.2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공동구용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공공청사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64,459.1	
변경	계				64,457.8	
기정	공공	①	-	진관동 224-1 일원	2,549.2	
변경	공공	①	-	진관동 224-1 일원	2,549.8	
기정	공공	②	-	진관동 산100-23 일원	483.7	
기정	공공	③	-	진관동 240-9 일원	6,770.5	
변경	공공	③	-	진관동 240-9 일원	6,769.9	
기정	공공	⑤	-	진관동 223-5 일원	5,209.7	
변경	공공	⑤	-	진관동 223-5 일원	5,209.5	
기정	공공	⑥	-	진관동 110-26 일원	48,950.1	
변경	공공	⑥	-	진관동 110-26 일원	48,948.0	
기정	공공	⑦	-	진관동 208-17 일원	495.9	
변경	공공	⑦	-	진관동 208-17 일원	496.9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공공청사용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학교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142,165.5	
변경	계				142,162.7	
기정	초	①	-	진관동 14-13 일원	11,455.2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초	②	-	진관동 41-23 일원	9,812.7	
변경	초	②	-	진관동 41-23 일원	9,812.8	
기정	초	③	-	진관동 246-5 일원	10,222.2	
변경	초	③	-	진관동 246-5 일원	10,223.1	
기정	초	④	-	진관동 165-32 일원	10,027.6	
변경	초	④	-	진관동 165-32 일원	10,028.8	
기정	초	⑤	-	진관동 200-23 일원	10,049.9	
변경	초	⑤	-	진관동 200-23 일원	10,049.2	
기정	중	⑥	-	진관동 24-23 일원	12,090.7	
기정	중	⑦	-	진관동 207 일원	11,086.3	
변경	중	⑦	-	진관동 207 일원	11,088.6	
기정	고	⑧	-	진관동 24-16 일원	13,949.8	
기정	고	⑨	-	진관동 134-2 일원	26,447.6	
변경	고	⑨	-	진관동 134-2 일원	26,444.9	
기정	고	⑩	-	진관동 197-20 일원	13,398.2	
변경	고	⑩	-	진관동 197-20 일원	13,395.1	
기정	고	⑪	-	진관동 243-1 일원	13,625.3	
변경	고	⑪	-	진관동 243-1 일원	13,624.5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학교용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박물관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6,530.4	
변경	계				6,530.1	
기정	박물관	①	-	진관동 135-5 일원	6,530.4	제2호 문화공원 내 중복결정
변경	박물관	①	-	진관동 135-5 일원	6,530.1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박물관용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체육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6,547.1	
변경	계				6,547.3	
기정	체육	①	-	진관동 75-4 일원	6,547.1	
변경	체육	①	-	진관동 75-4 일원	6,547.3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체육시설용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도서관시설용지(변경 없음)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계					1,323.7	
기정	도서관	①	-	진관동 141-27 일원	1,323.7	

◦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15,842.5	
변경	계				15,841.0	
기정	사회	①	-	진관동 156-6 일원	10,069.6	존치시설 (은평노인종합복지관)
변경	사회	①	-	진관동 156-6 일원	10,069.1	
기정	사회	②	-	진관동 250 일원	3,272.8	존치시설 (인덕원)
변경	사회	②	-	진관동 250 일원	3,272.6	
기정	사회	③	-	진관동 221-25 일원	2,500.1	
변경	사회	③	-	진관동 221-25 일원	2,499.3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사회복지시설용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유수지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22,502.1	
변경	계				22,509.3	
기정	유수	①	-	진관동 13-30 일원	5,439.1	제4호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기정	유수	②	-	진관동 72-26 일원	13,293.9	
변경	유수	②	-	진관동 72-26 일원	13,300.6	
기정	유수	③	-	진관동 131-13 일원	3,769.1	제11호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변경	유수	③	-	진관동 131-13 일원	3,769.6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유수지용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종합의료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21,611.6	
변경	계				21,612.6	
기정	의료	①	-	진관동 93-6 일원	21,611.6	
변경	의료	①	-	진관동 93-6 일원	21,612.6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종합의료시설용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폐기물처리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11,534.1	
변경	계				11,535.9	
기정	폐기물	①	-	진관동 76-20 일원	11,534.1	
변경	폐기물	①	-	진관동 76-20 일원	11,535.9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폐기물처리시설용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종교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32,324.9	
변경	계				32,338.5	
기정	종	①	-	진관동 71-4 일원	2,450.1	존치시설
변경	종	①	-	진관동 71-4 일원	2,453.5	
기정	종	②	-	진관동 41 일원	990.7	
변경	종	②	-	진관동 41 일원	993.1	
기정	종	③	-	진관동 41 일원	339.2	
변경	종	③	-	진관동 41 일원	340.4	
기정	종	④	소계		669.8	
기정	종	④	-1	진관동 16-11 일원	168.3	
변경	종	④	-1	진관동 16-11 일원	168.5	
기정	종	④	-2	진관동 16-19 일원	166.4	
기정	종	④	-3	진관동 16-11 일원	335.1	
변경	종	④	-3	진관동 16-11 일원	334.9	
기정	종	⑤	-	진관동 산99-22 일원	280.7	존치시설
기정	종	⑥		진관동 산100-46 일원	677.7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종	⑦	소계		1,325.4	
기정	종	⑦	-1	진관동 산100-22일원	165.4	
변경	종	⑦	-1	진관동 산100-22일원	165.3	
기정	종	⑦	-2	진관동 산100-22일원	166.0	
기정	종	⑦	-3	진관동 산100-22일원	663.9	
변경	종	⑦	-3	진관동 산100-22일원	664.0	
기정	종	⑦	-4	진관동 산100-22일원	165.1	
기정	종	⑦	-5	진관동 산100-22일원	165.0	
기정	종	⑧	소계		1,158.0	
변경	종	⑧	소계		1,158.1	
기정	종	⑧	-1	진관동 65-25 일원	165.6	
변경	종	⑧	-1	진관동 65-25 일원	165.5	
기정	종	⑧	-2	진관동 65-25 일원	992.4	
변경	종	⑧	-2	진관동 65-25 일원	992.6	
기정	종	⑨	-	진관동 175-429 일원	2,311.9	
변경	종	⑨	-	진관동 175-429 일원	2,315.5	
기정	종	⑩	-	진관동 121-17 일원	864.0	존치시설
변경	종	⑩	-	진관동 121-17 일원	864.1	
기정	종	⑪	-	진관동 242-24 일원	1,131.5	존치시설
변경	종	⑪	-	진관동 242-24 일원	1,131.6	
기정	종	⑫	-	진관동 221-27 일원	2,156.6	존치시설
변경	종	⑫	-	진관동 221-27 일원	2,157.8	
기정	종	⑬	-	진관동 170-3 일원	2,467.5	존치시설
변경	종	⑬	-	진관동 170-3 일원	2,467.8	
기정	종	⑭	소계		677.7	
변경	종	⑭	소계		677.6	
기정	종	⑭	-1	진관동 231-5 일원	340.6	
변경	종	⑭	-1	진관동 231-5 일원	340.4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종	⑭	-2	진관동 231-5 일원	337.1	
변경	종	⑭	-2	진관동 231-5 일원	337.2	
기정	종	⑮	소계		666.7	
변경	종	⑮	소계		666.8	
기정	종	⑮	-1	진관동 160-7 일원	333.5	
변경	종	⑮	-1	진관동 160-7 일원	333.6	
기정	종	⑮	-2	진관동 160-7 일원	333.2	
기정	종	⑯	-1	진관동 162-17 일원	166.1	
기정	종	⑰	소계		1,157.2	
변경	종	⑰	소계		1,158.0	
기정	종	⑰	-1	진관동 196-9 일원	992.2	
변경	종	⑰	-1	진관동 196-9 일원	992.7	
기정	종	⑰	-2	진관동 196-9 일원	165.0	
변경	종	⑰	-2	진관동 196-9 일원	165.3	
기정	종	⑱	소계		1,489.1	
변경	종	⑱	소계		1,490.2	
기정	종	⑱	-1	진관동 209-15 일원	1,322.3	
변경	종	⑱	-1	진관동 209-15 일원	1,323.4	
기정	종	⑱	-2	진관동 209-15 일원	166.8	
기정	종	⑳	소계		667.0	
변경	종	⑳	소계		666.7	
기정	종	⑳	-1	진관동 125-12 일원	333.6	
기정	종	⑳	-2	진관동 125-12 일원	333.4	
변경	종	⑳	-2	진관동 125-12 일원	333.1	
기정	종	㉒	소계		665.9	
변경	종	㉒	소계		665.7	
기정	종	㉒	-1	진관동 145-2 일원	333.3	
변경	종	㉒	-1	진관동 145-2 일원	333.1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종	㉒	-2	진관동 144-30 일원	166.3	
변경	종	㉒	-2	진관동 144-30 일원	166.2	
기정	종	㉒	-3	진관동 144-30 일원	166.3	
변경	종	㉒	-3	진관동 144-30 일원	166.4	
기정	종	㉔	-	진관동 산109-14 일원	6,385.2	존치시설
변경	종	㉔	-	진관동 산109-14 일원	6,384.9	
기정	종	㉕	소계		663.4	
변경	종	㉕	소계		663.6	
기정	종	㉕	-1	진관동 산109-20 일원	332.1	
변경	종	㉕	-1	진관동 산109-20 일원	331.8	
기정	종	㉕	-2	진관동 산109-20 일원	165.8	
변경	종	㉕	-2	진관동 산109-20 일원	166.1	
기정	종	㉕	-3	진관동 산109-20 일원	165.5	
변경	종	㉕	-3	진관동 산109-20 일원	165.7	
기정	종	㉖	-	진관동 136-3 일원	310.0	존치시설
변경	종	㉖	-	진관동 136-3 일원	309.2	
기정	종	㉗	소계		669.3	
기정	종	㉗	-1	진관동 164-11 일원	331.1	
변경	종	㉗	-1	진관동 164-11 일원	330.9	
기정	종	㉗	-2	진관동 164-11 일원	338.2	
변경	종	㉗	-2	진관동 164-11 일원	338.4	
기정	종	㉘	-	진관동 175-324 일원	1,324.2	존치시설
변경	종	㉘	-	진관동 175-324 일원	1,324.9	
기정	종	㉙	-	진관동 92-13 일원	660.0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종교시설용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유통시설(화훼)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8,040.0	
변경	계				8,039.3	
기정	화훼	①	-	진관동 75-29 일원	8,040.0	
변경	화훼	①	-	진관동 75-29 일원	8,039.3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유통시설(화훼)용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주유소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6,315.3	
변경	계				6,320.2	
기정	주유	①	-	진관동 73-22 일원	707.1	
변경	주유	①	-	진관동 73-22 일원	710.0	
기정	주유	②	-	진관동 75-18 일원	815.7	
변경	주유	②	-	진관동 75-18 일원	815.8	
기정	주유	③	-	진관동 76-6 일원	2,486.6	
변경	주유	③	-	진관동 76-6 일원	2,486.4	
기정	주유	④	-	진관동 240-27 일원	745.4	
변경	주유	④	-	진관동 240-27 일원	745.2	
기정	주유	⑤	-	진관동 161-10 일원	760.5	
변경	주유	⑤	-	진관동 161-10 일원	762.7	
기정	주유	⑥	-	진관동 92-13 일원	800.0	
변경	주유	⑥	-	진관동 92-13 일원	800.1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주유소용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유치원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3,886.2	
변경	계				3,889.8	
기정	유	①	-	진관동 5-10 일원	623.8	
기정	유	②	-	진관동 26-16 일원	628.4	
기정	유	③	-	진관동 41 일원	684.4	
변경	유	③	-	진관동 41 일원	686.5	
기정	유	④	-	진관동 209-24 일원	629.9	
변경	유	④	-	진관동 209-24 일원	630.7	
기정	유	⑤	-	진관동 168-24 일원	626.7	
변경	유	⑤	-	진관동 168-24 일원	627.3	
기정	유	⑥	-	진관동 206-19 일원	693.0	
변경	유	⑥	-	진관동 206-19 일원	693.1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유치원용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공익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13,174.1	
변경	계				13,515.8	
기정	공익	①	-	진관동 산100-23 일원	6,936.2	
변경	공익	①	-	진관동 산100-23 일원	6,947.5	
기정	공익	②	-	진관동 164-11 일원	4,273.8	
변경	공익	②	-	진관동 164-11 일원	4,273.5	
기정	공익	③	-	진관동 산110 일원	1,602.4	
기정	공익	④	-	진관동 125-29 일원	361.7	한옥지정구역
변경	공익	④	-	진관동 125-29 일원	361.3	
신설	공익	⑤	-	진관동 128-18 일원	331.1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공익시설용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공익⑤	· 은평구의 은평 한(韓)문화 너나들이센터 건립요청에 따라 은평 역사한옥박물관과 인접한 단독주택용지를 공익시설로 변경

◦ 군사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3,915.9	
변경	계				3,912.5	
기정	군	①	–	진관동 1-25 일원	1,148.0	
변경	군	①	–	진관동 1-25 일원	1,148.5	
기정	군	②	–	진관동 43-1 일원	1,200.5	
기정	군	③	–	진관동 산100-44 일원	1,179.2	
변경	군	③	–	진관동 산100-44 일원	1,176.5	
기정	군	④	–	진관동 42-26 일원	103.3	
변경	군	④	–	진관동 42-26 일원	102.1	
기정	군	⑤	–	진관동 산100-44 일원	284.9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군사시설용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편익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54,957.2	
변경	계				41,982.8	
기정	편익	②	–	진관동 161-23 일원	3,308.2	
변경	편익	②	–	진관동 161-23 일원	3,306.5	
기정	편익	③	–	진관동 235-28 일원	12,986.2	
폐지	편익	③	–	진관동 235-28 일원	–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편익	④	-	진관동 213-9 일원	7,591.6	
변경	편익	④	-	진관동 213-9 일원	7,596.7	
기정	편익	⑤	-	진관동 208-10 일원	8,631.7	
변경	편익	⑤	-	진관동 208-10 일원	8,642.2	
기정	편익	⑦	-	진관동 158-28 일원	2,272.5	
기정	편익	⑧	-	진관동 160-4 일원	7,485.6	
기정	편익	⑨	소계		6,251.4	
변경	편익	⑨	소계		6,245.5	
기정	편익	⑨	-1	진관동 163-5 일원	2,975.2	
변경	편익	⑨	-1	진관동 163-5 일원	2,975.5	
기정	편익	⑨	-2	진관동 161-10 일원	3,276.2	
변경	편익	⑨	-2	진관동 161-10 일원	3,270.0	
기정	편익	⑪	-	진관동 162-13 일원	3,849.5	
변경	편익	⑪	-	진관동 162-13 일원	3,851.9	
기정	편익	⑫	-	진관동 158-28 일원	1,523.0	
변경	편익	⑫	-	진관동 158-28 일원	1,524.2	
기정	편익	⑬	-	진관동 66-27 일원	1,057.5	
변경	편익	⑬	-	진관동 66-27 일원	1,057.7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편익시설용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편익 ③	· 은평지구 장기 미매각부지에 서울시 정책사업인 '서울리츠' 사업을 시행하여 은평지구 지역 경제활성화 및 공공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편익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 자동차관련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8,478.8	
변경	계				8,478.9	
기정	자동차	①	-	진관동 76-16 일원	1,800.7	
변경	자동차	①	-	진관동 76-16 일원	1,800.8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자동차	②	-	진관동 76-1 일원	3,679.0	
변경	자동차	②	-	진관동 76-1 일원	3,679.5	
기정	자동차	③	-	진관동 76-7 일원	2,999.1	
변경	자동차	③	-	진관동 76-7 일원	2,998.6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자동차관련시설용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주차장시설용지(부설주차장)(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1,968.9	
변경	계				1,969.7	
기정	주	⑩	-	진관동 127-20 일원	496.5	부설주차장
변경	주	⑩	-	진관동 127-20 일원	497.0	
기정	주	⑪	-	진관동 127-22 일원	366.5	부설주차장
변경	주	⑪	-	진관동 127-22 일원	366.7	
기정	주	⑫	-	진관동 132-17 일원	1,105.9	부설주차장
변경	주	⑫	-	진관동 132-17 일원	1,106.0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주차장시설용지 (부설주차장)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6,334.4	
폐지	계				-	
기정	지원	①	-	진관동 83-6 일원	6,334.4	
폐지	지원	①	-	진관동 83-6 일원	-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도시지원시설용지	· 은평지구 장기 미매각부지에 서울시 정책사업인 '서울리츠' 사업을 시행하여 은평지구 지역 경제활성화 및 공공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

◦ 커뮤니티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397.9	
변경	계				398.5	
기정	커뮤니티	①	-	진관동 126-8 일원	273.9	노유자시설
변경	커뮤니티	①	-	진관동 126-8 일원	274.5	
기정	커뮤니티	②	-	진관동 132-17	124.0	노유자시설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커뮤니티시설용지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동주택용지(변경)

구분	도 면 번 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신설	BL	BL 2-14	용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임대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5층 이하	
			배치	·시각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배치 계획 ·주변공원과 조화된 환경친화적 아파트 배치 권장 ·주풍향을 고려한 건축배치	
			형태	·시각적, 심리적인 중압감을 해소하고 일조 및 조망의 측면을 고려한 주동의 형태 결정 ·아파트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대지경계선), 3.5m(간선도로변) 5.0m(통일로 완충녹지변), 30m(주유소 경계변)	

※ BL2-14를 제외한 공동주택용지는 변경없음

◦ 단독주택용지(변경 없음)

◦ 단독주택용지(한옥지정구역)(정정)

구분	도 면 번 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단독	단독 1 ①-1~7, 단독 3 ①-1~5	용도	·허용용도 : 단독주택 (단독주택에 한함) : 1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공방포함),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공공도서관(1,000㎡미만),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에 한함),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허용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출판사)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근린형 한옥건축 용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	
			배치	·주출입구는 주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2층은 주도로에 면하여 배치	
			형태	·한옥건축지정 : 한옥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르도록 함.	
			색채	·원색의 사용을 금함	
			건축선	·1층 벽면지정선: 간선도로변으로부터 1.2m ·2층 벽면지정선: 간선도로변으로부터 2.4m	
정정	단독	단독 1 ①-1~7, 단독 3 ①-1~5	용도	·허용용도 : 단독주택 (단독주택에 한함) : 1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공방포함),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공공도서관(1,000㎡미만),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에 한함),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완화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출판사)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완화용도 이외의 용도	근린형 한옥건축 용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	
			배치	·주출입구는 주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2층은 주도로에 면하여 배치	
			형태	·한옥건축지정 : 한옥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르도록 함.	
			색채	·원색의 사용을 금함	
			건축선	·1층 벽면지정선: 간선도로변으로부터 1.2m ·2층 벽면지정선: 간선도로변으로부터 2.4m	

구분	도 면 번 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단독	단독 1 ⑤-1~2	용도	·허용용도 : 단독주택 (단독주택에 한함) : 1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공방 포함),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공공도서관(1,000㎡미만),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에 한함),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허용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출판사)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근린형 한옥건축 용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	
			배치	·주출입구는 주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2층은 주도로에 면하여 배치	
			형태	·한옥건축지정 : 한옥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르도록 함.	
			색채	·원색의 사용을 금함	
			건축선	-	
정정	단독	단독 1 ⑤-1~2	용도	·허용용도 : 단독주택 (단독주택에 한함) : 1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공방 포함),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공공도서관(1,000㎡미만),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에 한함),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완화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출판사)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완화용도 이외의 용도	근린형 한옥건축 용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	
			배치	·주출입구는 주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2층은 주도로에 면하여 배치	
			형태	·한옥건축지정 : 한옥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르도록 함.	
			색채	·원색의 사용을 금함	
			건축선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68호(2013.12.26)중 근린형 한옥건축용지 용도를 정정
- 허용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출판사) → 완화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출판사)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완화용도 이외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없음)

◦ 준주거시설용지(변경)

구분	도 면 번 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신설	준주거	준주거 ②	용도	·허용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 시설별 제한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 업무시설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준주택에 한하며, 주거 및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제외한 비주거용도 비율을 용적률의 10% 이상 확보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20층 이하	
			배치	·자원회수시설과 최대한 이격하여 주동배치, 각 세대 주향조정, 대지경계부 수목 밀실식재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 최소화되도록 건축계획	
			형태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도로면에 면한 1층 전면 외벽면의 50%이상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 설치 ·동일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없이 재료와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니도록 계획	
			색채	·밝은 색조계열을 사용하며 원색의 사용을 금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 2~7m	
	※ 도시지원시설→준주거용지 변경에 따른 2016.2.23, 도시재정비위원회 조건부 가결(자원회수시설에 접한 임대주택의 주거환경개선 및 지원(시설)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할 것)에 대해 아래사항 반영 1. 건축계획시 자원회수시설 및 폐기물 반입차량 동선과 건축물을 최대한 이격하고 차폐용 수목식재 2. 건축물 내 편익시설로 수영장 및 헬스장 설치 3. 임대료는 행복주택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				

※ 준주거 ①은 변경 없음

◦ 상업용지(변경 없음)

◦ 주차장용지(변경 없음)

◦ 자동차정류장용지(변경 없음)

◦ 공동구시설용지(변경 없음)

◦ 자원회수시설용지(변경 없음)

◦ 공공청사용지(변경 없음)

◦ 학교시설용지(변경 없음)

◦ 도서관용지(변경 없음)

◦ 체육시설용지(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 없음)
◦ 폐기물처리시설용지(변경 없음)
◦ 종교용지(변경 없음)
◦ 유통시설(화훼)용지(변경 없음)
◦ 주유소용지(변경 없음)
◦ 공익시설용지(변경 및 정정)

구분	도 면 번 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공익	공익 4	용도	·허용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청사) ·완화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전시장(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	
			배치	–	
			형태	·동일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없이 재료와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니도록 계획	
			색채	·원색의 사용을 금함	
			건축선	·벽면한계선 : 가로에 면한 대지경계로부터 1.2m	
정정	공익	공익 4	용도	·허용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청사) ·완화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전시장(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완화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	
			배치	–	
			형태	·동일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없이 재료와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니도록 계획	
			색채	·원색의 사용을 금함	
			건축선	·벽면한계선 : 가로에 면한 대지경계로부터 1.2m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2호(2013.03.28)중 공익 4의 불허용도 규정 정정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완화용도 이외의 용도

구분	도 면 번 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신설	공익	공익 5	용도	·허용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청사) ·완화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전시장(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완화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층 이하(8m이하) 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 가.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지붕의 경사가 3: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 미터 이하인 건축물 ·한옥건축시 최고층수 2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	
			배치	-	
			형태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	
			색채	·원색의 사용을 금함	
			건축선	-	

※ 공익 1~3은 변경 없음

◦ 편익시설용지(변경)

구분	도 면 번 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편익	편익 3	용도	·허용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방송통신시설 ※ 시설별 제한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동일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없이 재료와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니도록 계획	
			색채	·원색의 사용을 금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 3m	
폐지	편익	편익 3			

※ 편익-3을 제외한 나머지 편익용지는 변경 없음

◦ 종합의료시설용지(변경 없음)
◦ 자동차관련시설용지(변경 없음)
◦ 군사시설용지(변경 없음)
◦ 주차장용지(부설주차장)(변경 없음)
◦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

구분	도 면 번 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지원	지원 1	용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동법 제28조의5에서 규정하는 용도 ※ 공장의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제7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20층 이하	
			배치	-	
			형태	·동일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없이 재료와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니도록 계획	
			색채	·원색의 사용을 금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 2~7m	
폐지	지원	지원 1			

◦ 커뮤니티시설용지(변경 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일반사항(변경 없음)
◦ 공동주택용지(변경)

구분	도 면 번 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신설	BL	BL 2-1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간선도로변, 주유소경계 지정위치 외곽녹지(차폐기능 포함, 3~5m) 설치	

※ BL2-14를 제외한 공동주택용지는 변경 없음
◦ 단독주택용지(변경 없음)
◦ 단독주택용지(한옥지정구역)(변경 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없음)

◦ 준주거용지(변경)

구분	도 면 번 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신설	준주거	준주거②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녹지를 제외한 인접대지 경계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3~7m 외곽녹지 설치	

※ 준주거 ①은 변경 없음

◦ 상업용지(변경 없음)
◦ 주차장용지(변경 없음)
◦ 자동차정류장용지(변경 없음)
◦ 자원회수시설용지(변경 없음)
◦ 공공청사용지(변경 없음)
◦ 학교시설용지(변경 없음)
◦ 체육시설용지(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 없음)
◦ 폐기물처리시설용지(변경 없음)
◦ 종교용지(변경 없음)
◦ 유통시설(화훼)용지(변경 없음)
◦ 주유소용지(변경 없음)
◦ 공익시설용지(변경 없음)
◦ 군사시설용지(변경 없음)
◦ 편익시설용지(변경)

구분	도 면 번 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편익	편익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차량출입불허(허용)구간 지정 ·녹지를 제외한 인접대지 경계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2~3m 외곽녹지 설치	
폐지	편익	편익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편익-3을 제외한 나머지 편익용지는 변경없음

◦ 종합의료시설용지(변경 없음)
◦ 자동차관련시설용지(변경 없음)
◦ 주차장시설용지(부설주차장)(변경 없음)
◦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

구분	도 면 번 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편익	편익1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차량출입불허(허용)구간 지정 ·녹지를 제외한 인접대지 경계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2~7m 외곽녹지 설치	
폐지	편익	편익1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라.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특별계획구역 지정(변경)

구역번호	면 적(㎡)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0,425.2	감) 1,131.8	49,293.4	-
특 1	50,425.2	감) 1,131.8	49,293.4	상업 10-1, 10-2, 11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특 1	상업 10, 11	특별계획구역의 개발계획 내용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계획 내용을 개발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52조, 영 제45조에서 규정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사업계획의 개요 : 사업기간, 사업의 규모, 수용용도 (2) 건축계획의 구상 ·건축물의 외관디자인 (시뮬레이션 도면첨부) ·건축물의 접지부 처리구상 (구조 및 용도) ·옥외공간 계획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시행지침 이행사항 (3) 경관계획 ·시뮬레이션 도면 포함

2)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3) 특별계획구역 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마.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합계	-	-	-	50,425.2	특별계획구역
	상업	⑩	-1	진관동 79-15 일원	33,023.9	
			-2	진관동 85-13 일원	9,251.2	
	상업	⑪	-	진관동 88-13 일원	8,150.1	
변경	합계	-	-	-	49,293.4	특별계획구역
	상업	⑩	-1	진관동 79-15 일원	33,024.3	
			-2	진관동 85-13 일원	8,118.7	
	상업	⑪	-	진관동 88-13 일원	8,150.4	

■ 변경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상업 ⑩-1, ⑪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상업 ⑩-2	· 서울시 건축, 경관, 교통 통합심의 결과 반영(조건부 동의, 2014.10.28)을 위한 진입도로 신설에 따른 면적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3호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1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22호(2005.3.10.)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4.13.)로 정비구역지정 결정, 종로구고시 제2007-32호(2007.7.12.)로 구역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71호(2008.3.13.)로 변경지정, 종로구고시 제2009-15호(2009.3.19.)로 돈의문도시환경정비계획·구역지정변경(경미한 변경), 종로구고시 제2013-23호(2013.3.14.)로 돈의문도시환경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종로구고시 제2013-76호(2013.10.24.)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종로구고시 제2014-35호(2014.5.15.)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9호(2015.6.11.)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제)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1구역)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종로구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지 구 명	유 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 정	증 감	변 경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종로구 평동 164 일대	199,968.3	증) 70.5	200,038.8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심기능 및 노후·불량한 주거기능의 종합적 개선을 통한 직주근접형 도심 커뮤니티공간 조성

•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는 지번누락 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지구내에 주거·상업·업무 등의 새로운 도시기능 창출을 위한 토대 마련 및 열악한 도심기능 및 노후·불량한 주거기능의 종합적 개선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돈의문 1				돈의문 2 (변경없음)		돈의문 3 (변경없음)		비고
		면 적(㎡)			구성비 (%)	면 적(㎡)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60,053.2	증)70.5	160,123.7	100.0	144,407.4	증)70.5	144,477.9	100.0	6,801.4	100.0	8,844.4	100.0	
택지 (획지)	계	111,100.1	증)727.9	111,828.0	69.8	99,189.2	증)727.9	99,917.1	69.1	5,510.1	81.0	6,400.8	72.4	
	주택 용지	94,385.3	증)727.9	95,113.2	59.4	94,385.3	증)727.9	95,113.2	65.8	-	-	-	-	
	종교 시설	1,671.2	-	1,671.2	1.0	1,671.2	-	1,671.2	1.1	-	-	-	-	
	상업 업무	15,043.6	-	15,043.6	9.4	3,132.7	-	3,132.7	2.2	5,510.1	81.0	6,400.8	72.4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48,953.1	감)657.4	48,295.7	30.2	45,218.2	감)657.4	44,560.8	30.9	1,291.3	19.0	2,443.6	27.6	
	공원	14,567.7	감)7,499.5	7,068.2	4.4	13,733.7	감)7,499.5	6,234.2	4.3	834.0	12.3	-	-	
	녹지	961.1	증)196.7	1,157.8	0.7	961.1	증)196.7	1,157.8	0.8	-	-	-	-	
	도로	26,591	증)280.7	26,871.7	16.8	23,813.3	증)280.7	24,094	16.7	457.3	6.7	2,320.4	26.2	
	공공 공지	2,132.5	감)2,009.3	123.2	0.1	2,009.3	감)2,009.3	-	0.0	-	-	123.2	1.4	
	광장	689.2	감)68.0	621.2	0.4	689.2	감)68.0	621.2	0.4	-	-	-	-	
	공공 청사	4,011.6	감)599.5	3,412.1	2.1	4,011.6	감)599.5	3,412.1	2.4	-	-	-	-	
	문화 시설	-	증)9,041.5	9,041.5	5.7	-	증)9,041.5	9,041.5	6.3	-	-	-	-	

※ 200,038.8㎡(지구면적) - 32,192㎡(돈의문4,5,6존치구역) - 7,723.1㎡(존치건물) = 160,123.7㎡

-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는 지번누락 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

2)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분	개 소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	4	4,011.6	증) 8,442.0	12,453.6	
문화시설	-	1	-	증) 9,041.5	9,041.5	
공공청사	3	3	4,011.6	감) 599.5	3,412.1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구분	명칭	개소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	9	18,350.5	감) 9,380.1	8,970.4	
공원	소계	4	5	14,567.7	감) 7,499.5	7,068.2	
	어린이공원	2	2	4,036.9	-	4,036.9	
	근린공원	1	-	10,039.4	감) 10,039.4	-	
	소공원	1	3	491.4	증) 2,539.9	3,031.3	
녹지	완충녹지	1	2	961.1	증) 196.7	1,157.8	
기타	소계	4	2	2,821.7	감) 2,077.3	744.4	
	공공공지	3	1	2,132.5	감) 2,009.3	123.2	
	광장	1	1	689.2	감) 68.0	621.2	

5) 교통계획(변경없음)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변경)인가전에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추진

- 대상지에서 통일로변으로 진출하는 좌회전 신호 신설
- 새문안로~종로구간 버스전용차로 계획을 확인하여 추후 교통처리계획에 반영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구역명	면 적(㎡)			사업방식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99,968.3	증) 70.5	200,038.8	
돈의문	촉진구역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152,130.5	증) 70.5	152,201.0	도시환경정비사업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6,801.4	-	6,801.4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	8,844.4	-	8,844.4	
	존치정비구역	돈의문4존치정비구역	12,720.0	-	12,720.0	
돈의문	존치관리구역	돈의문5존치관리구역	16,617.0	-	16,617.0	지구단위계획구역
		돈의문6존치관리구역	2,855.0	-	2,855.0	

-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는 지번누락 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

8)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1) 돈의문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44,407.4	증)70.5	144,477.9	100.0	
주거지역	소 계		140,593.0	증)70.5	140,663.5	97.4	
	일반주거	제1종	18,884.1	-	18,884.1	13.1	
		제2종(7층이하)	4,720.8	-	4,720.8	3.3	
		제2종(12층이하)	40,840.1	-	40,840.1	28.3	
		제3종	76,148.0	증)70.5	76,218.5	52.7	
상업지역	일반상업		3,814.4	-	3,814.4	2.6	

• 지번누락 정정으로 인한 면적 변경

(2) 돈의문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3) 돈의문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계획(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1) 돈의문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

구분			존치 면적 (㎡)	현 황(㎡)			사업구역 계획(㎡)					공공용지 부담율 (%)
명칭		면적 (㎡)		계	대지	공공용지	계	사업시행 면적(㎡)	공공용지 부담계획(㎡)			
									소계	기존	부담	
기정	돈의문 1	144,407.4	548.5	143,858.9	111,798.5	32,060.4	143,858.9	102,652.3	41,206.6	32,060.4	9,146.2	8.18
변경		144,477.9	548.5	143,929.4	111,869.0	32,060.4	143,929.4	102,780.7	41,148.7	32,060.4	9,088.3	8.12

(2) 돈의문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3) 돈의문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계획(해당없음)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1) 돈의문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원	152,130.5	증) 70.5	152,201.0	

• 촉진구역 변경 없는 지번누락 정정으로 인한 면적 변경

나)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4,407.4	증)70.5	144,477.9	100.0	존치면적(7,723.1㎡)제외
택지 (획지)	계	99,189.2	증)727.9	99,917.1	69.1	
	주택용지	94,385.3	증)727.9	95,113.2	65.8	· 지번누락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 : 증)60.4㎡ · 광장 면적 감소에 따른 획지1-2 면적 증가 : 증)68.0㎡ · 파출소 이전에 따른 획지1-9 신설 : 증)599.5㎡
	종교시설	1,671.2	-	1,671.2	1.1	
	상업업무	3,132.7	-	3,132.7	2.2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정비기반시설등	소계	45,218.2	감)657.4	44,560.8	30.9	
	공원	13,733.7	감)7,499.5	6,234.2	4.3	·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계획에 따른 면적 감소 : 감)9,312.1㎡ · 공공공지5 폐지 및 공원 신설 : 증)1,812.6㎡
	녹지	961.1	증)196.7	1,157.8	0.8	· 공공공지2 폐지 및 녹지 신설 : 증)196.7㎡
	도로	23,813.3	증)280.7	24,094.0	16.7	· 중로3-40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 증)270.6㎡ · 지번누락정정의 단순한 토지면적 변경: 증)10.1㎡
	공공공지	2,009.3	감)2,009.3	-	0.0	· 공공공지2 폐지 : 감)196.7㎡ · 공공공지5 폐지 : 감)1,812.6㎡
	광장	689.2	감)68.0	621.2	0.4	· 지적현황측량 및 획지1-2 계획용적률을 고려한 선형 조정
	공공청사	4,011.6	감)599.5	3,412.1	2.4	· 주민센터 면적 감소 : 감)367.1㎡ · 파출소 면적 감소 : 감)232.4㎡
	문화시설	-	증)9,041.5	9,041.5	6.3	·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계획에 따른 문화시설 신설

(나) 용도지역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44,407.4	증)70.5	144,477.9	100.0	
주거지역	소 계		140,593.0	증)70.5	140,663.5	97.4	
	일반주거	제1종	18,884.1	-	18,884.1	13.1	
		제2종 (7층이하)	4,720.8	-	4,720.8	3.3	
		제2종 (12층이하)	40,840.1	-	40,840.1	28.3	
		제3종	76,148.0	증)70.5	76,218.5	52.7	
상업지역	일반상업		3,814.4	-	3,814.4	2.6	

• 지번누락 정정으로 인한 면적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① 도 로

결정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	35-40	주간선도로	4,750 (770)	봉래동2가43	홍은동450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3	16	집산도로	199	교남동55-1	송월동98-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0	13	집산도로	807	평동7-35	교북동35-8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40	13~16.5	집산도로	815	평동9-1	교북동35-8	일반도로	선형변경 폭원확대 노선연장
기정	중로	3	100	13	집산도로	148	교북동10-38	행촌동37-26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01	13	집산도로	350 (205)	평동209-1	송월동68-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1	11	국지도로	224	평동13-30	평동3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2	8	국지도로	314	송월동 2-2	행촌동1-66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03	4	국지도로	64	교북동 35-7	교북동10-9	일반도로	

주) ( )안은 구역내 연장임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40	중로3-40	• 변경 - 선형변경 - 폭원 : B=13m→13~16.5m - 연장 : L=807m → 815m	•중로3-40호선 선형변경, 폭원 확대 및 노선 연장

② 공원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①	공원	어린이공원	송월동 2-3 일원	3,202.9	-	3,202.9	
폐 지	②	공원	근린공원	신문로2가 37 일원	10,039.4	감)10,039.4	-	
기 정	③	공원	소공원	교북동 10-38 일원	491.4	-	491.4	
신 설	④	공원	소공원	송월동 94-1 일원	-	증)1,812.6	1,812.6	
신 설	⑤	공원	소공원	신문로2가 54 일원	-	증)727.3	727.3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공원	• 폐지 – 면적 : 10,039.4㎡	•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계획에 따른 근린공원 폐지
④	공원	• 신설 – 면적 : 1,812.6㎡	• 어린이공원과 연계한 소공원 조성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 등을 제공
⑤	공원	• 신설 – 면적 : 727.3㎡	•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계획에 따른 소공원 설치

③ 녹지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평동 108 일원	961.1	–	961.1	
신설	②	녹지	완충녹지	평동 16-1 일원	–	증)196.7	196.7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②	녹지	• 신설 – 면적 : 196.7㎡	•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완충녹지 설치

④ 광장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광장	일반광장	교남동 58-5 일원	689.2	감)68.0	621.2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광장	• 변경 – 면적 : 689.2㎡ → 621.2㎡ (감:68.0㎡)	• 지적현황측량 및 획지1-2 계획용적률을 고려한 선형 조정

⑤ 공공공지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②	공공공지	공공공지	평동 16-1 일원	196.7	감)196.7	–	
폐지	⑤	공공공지	공공공지	송월동 32-43 일원	1,812.6	감)1,812.6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공공공지	• 폐지 – 면적 : 196.7㎡	• 완충녹지 설치로 인한 공공공지 폐지
⑤	공공공지	• 폐지 – 면적 : 1,812.6㎡	• 소공원 설치로 인한 공공공지 폐지

⑥ 공공청사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청사	주민센터	행촌동 180-10 일원	915.6	감)367.1	548.5	
폐지	②	공공청사	파출소	송월동 116 일원	599.5	감)599.5	–	
기정	③	공공청사	교통순찰대	행촌동 158-8 일원	2,496.5	–	2,496.5	
신설	④	공공청사	파출소	행촌동 180-17 일원	–	증)367.1	367.1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 변경 – 면적 : 915.6㎡ → 548.5㎡ (감:367.1㎡)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축소
②	공공청사	• 폐지 – 면적 : 599.5㎡	• 관할 치안구역을 고려해 주민센터 인근에 배치
④	공공청사	• 신설 – 면적 : 367.1㎡	• 관할 치안구역을 고려해 주민센터 인근에 배치

⑦ 문화시설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문화시설	–	신문로2가 6 일원	–	증)9,041.5	9,041.5	

※ 문화시설(토지 및 시설물)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조성 및 관리함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①	문화시설	• 신설 – 면적 : 9,041.5㎡	•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계획에 따른 문화시설 신설

■ 건축물규모 결정 조서

시설명	건폐율	용적율	높이	비고
문화시설	60%이하	150%이하	4층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시설의 종류	면 적	비 고
관리사무소	612㎡	
휴게시설	7개소	
어린이놀이터	2,979㎡	
근린생활시설	9,631㎡	
주민운동시설	1,466㎡	
경로당	705㎡	
주민공동시설	5,226㎡	
보육시설	796㎡	
문고	816㎡	

※ 상기 면적은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및 획지		정비계량계획(동)			
	명 칭	위 치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철거후 신축	철거후 이주
기정	돈의문1 구역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원	152,130.5	-	-	880	5	871	4
변경			152,201.0	-	-	880	53	820	7

②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획지 구분	위치	면적(㎡)	건폐율 (%)	용적률(%)		층수 (지상/지하)	높이 (m)	주용도	비고
					기준	상한				
기정	1-1	행촌동 27-1	12,766.10	50이하	-	250이하	23/3이하	70이하	주거	

결정 구분	획지 구분	위치	면적(㎡)	건폐율 (%)	용적률(%)		층수 (지상 /지하)	높이 (m)	주용도	비고
					기준	상한				
기정	1-2	홍파동 42-1	54,347.70	50이하	-	253이하	23/4이하	70이하	주거 /판매	지번누락의 정정 및 광장 면적감소
변경			54,476.10	50이하	-	253이하	23/4이하			
기정	1-3	평동 13-1	26,281.40	50이하	-	250이하	23/5이하	70이하	주거/판매	
기정	1-4	교북동 11-2	4,122.80	-	-	-	-	-	주거/판매 /업무	
			990.10	50이하	-	250이하	23/5이하	70이하	주거	주거
			3,132.70	60이하	-	583이하	25/5이하	73이하	주거/판매 /업무	상업
기정	1-5	행촌동 37-26	968.80	50이하	-	250이하	5이하	-	종교시설	
기정	1-6	홍파동 5-18	702.40	50이하	-	250이하	5이하	-	종교시설	
기정	1-7	행촌동 158-8	2,496.5	50이하	-	250이하	8이하	30이하	공공청사 (교통순찰대)	
기정	1-8	행촌동 180-10	915.60	50이하	-	250이하	5이하	20이하	공공청사 (주민 자치센터)	
변경			548.5							
기정	1-9	송월동 116	599.50	50이하	-	250이하	5이하	20이하	공공청사 (파출소)	
변경				50이하	-	250이하	5이하		주거/판매 /근린생활시설	
신설	1-10	행촌동 180-17	367.1	50이하	-	250이하	5이하	20이하	공공청사 (파출소)	
신설	1-11	신문로2가 6	9,041.5	60이하	-	150이하	4이하	-	문화시설	

주) 획지 1-3의 부속용도의 경우 한양도성에 인접한 북측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은 카페테리아 및 스낵바 등 젊은이들의 이용공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함

<table>
<tr><th>구 분</th><th>기 정</th><th>변 경</th></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없음)</td><td colspan="2">○건설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165㎡이하
○건설비율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90.5%
–세대당 전용면적 85㎡이상 9.5%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전용 면적</th><th colspan="2">세 대 수</th><th rowspan="2">비 율</th><th rowspan="2">비 고</th></tr>
<tr><th>소 계</th></tr>
<tr><td>계</td><td>–</td><td>2,415</td><td>2,415</td><td>100%</td><td></td></tr>
<tr><td rowspan="9">전용 면적 85㎡ 미만</td><td>33㎡</td><td>16</td><td rowspan="9">2,185</td><td>0.6%</td><td rowspan="9"></td></tr>
<tr><td>37㎡</td><td>91</td><td>3.8%</td></tr>
<tr><td>39㎡</td><td>232</td><td>9.6%</td></tr>
<tr><td>42㎡</td><td>136</td><td>5.6%</td></tr>
<tr><td>44㎡</td><td>68</td><td>2.8%</td></tr>
<tr><td>45㎡</td><td>75</td><td>3.1%</td></tr>
<tr><td>59㎡</td><td>400</td><td>16.6%</td></tr>
<tr><td>77㎡</td><td>71</td><td>2.9%</td></tr>
<tr><td>84㎡</td><td>1,096</td><td>45.4%</td></tr>
<tr><td rowspan="3">전용 면적 85㎡ 이상</td><td>101㎡</td><td>130</td><td rowspan="3">230</td><td>5.4%</td><td rowspan="3"></td></tr>
<tr><td>116㎡</td><td>79</td><td>3.3%</td></tr>
<tr><td>138㎡</td><td>21</td><td>0.9%</td></tr>
</table>
</td></tr>
<tr><td>건축한계선</td><td>○지구내 대부분 가로변 : 3m
○중로3–101호선 상업지역 동측, 중로3–40호선 임대주택부지 남측도로변 일부: 6m
○중로3–40호선 임대주택부지 북측도로변 일부 : 8m
○중로2–43호선 북측 도로변 : 10m
○사직로변 임대주택부지 : 10m

※세부 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td><td>○지구내 대부분 가로변 : 3m
○중로3–101호선 상업지역 동측, 중로3–40호선 임대주택부지 남측도로변 일부: 6m
○중로3–40호선 임대주택부지 북측도로변 일부 : 8m
○중로2–43호선 북측 도로변 : 10m
○사직로변 임대주택부지 : 10m
○새문안로 문화시설용지 : 3m(신설)
※세부 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td></tr>
<tr><td>벽면한계선 (변경없음)</td><td colspan="2">○의주로에서 인왕산녹지축 연결 보행자도로 : 15m
○생활가로변 : 17m
○생활가로변 1층 벽면한계선 : 5m
※세부 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td></tr>
<tr><td>차량진입금지구간 (주차장 설치기준 100%완화)</td><td colspan="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6조 제6항 제3호에 의거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통행이 제한되도록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완화하는 사항임
– 획지1–11(문화시설) 및 공원5
– 획지1–8공공청사(주민자치센터)</td></tr>
</table>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아)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본 사업지구 전체는 주거지 및 상업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현황 없음
(자) 가구 및 획지에 관한계획(해당사항 없음)
(차) 환경성검토결과(변경없음)
(카)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공동주택			비고
	총 세대수	임대주택	구성비(%)	
세대수	2,415	496	20.5	

구분	공동주택				비고
	합계	40㎡이하	40~50㎡이하	50~60㎡이하	
세대수	496	232	204	60	
구성비(%)	100.0	46.8	41.1	12.1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변경)인가전에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할 것
- 박물관마을 계획시 무장애설계 및 방재계획
- 대상지에서 통일로변으로 진출하는 좌회전 신호 신설
- 새문안로~종로구간 버스전용차로 계획을 확인하여 추후 교통처리계획에 반영

5.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외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없음

6.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도서 참조 : 생략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19),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02-2148-269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7. 지형도면의 작성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형도면

■ 재정비촉진지구 및 구역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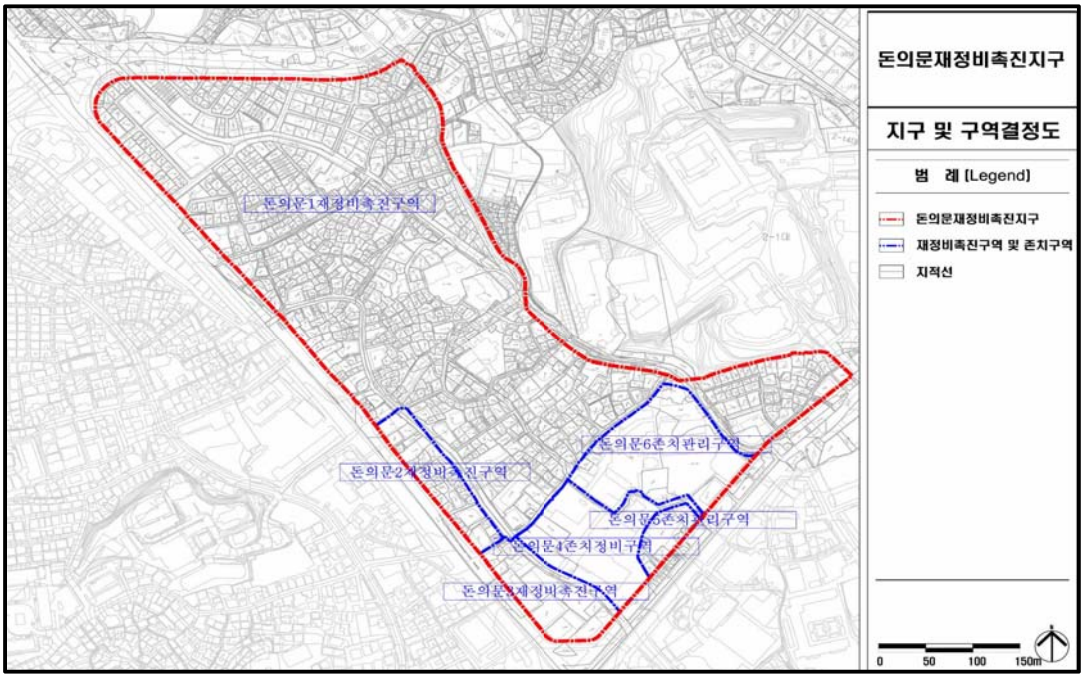

■ 지형도면고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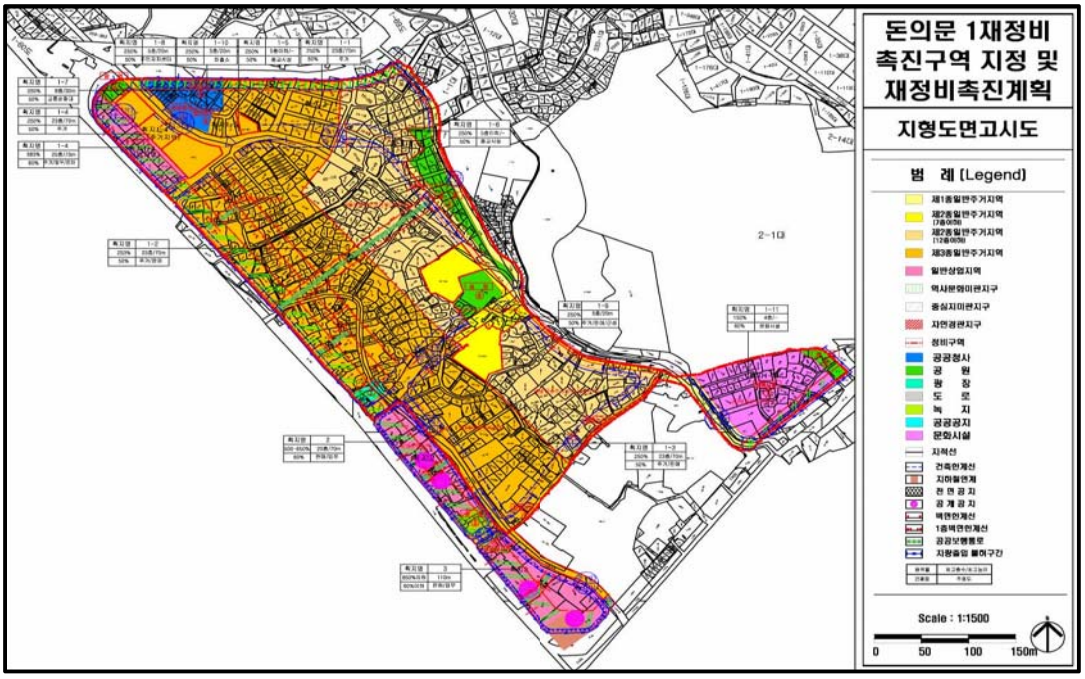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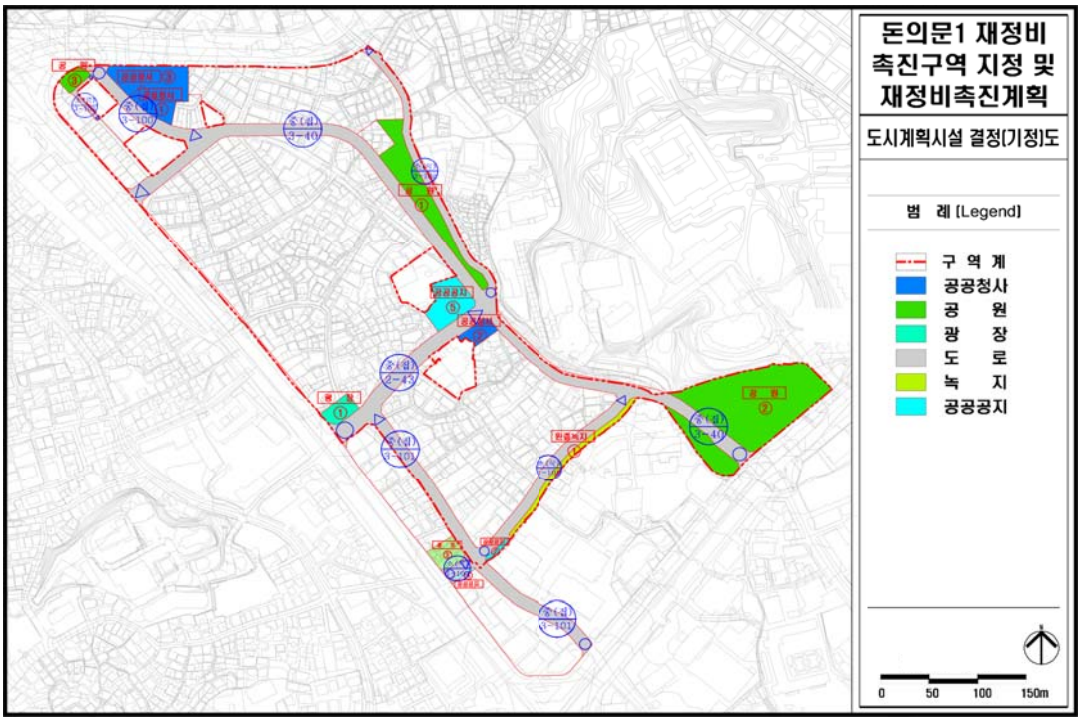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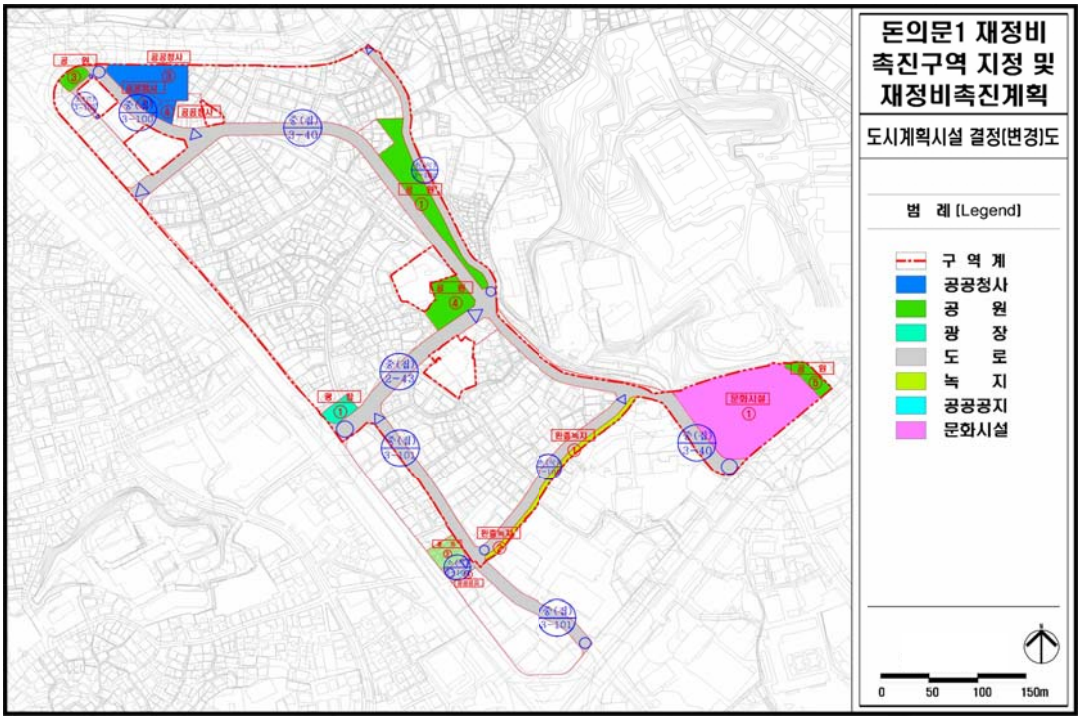

■ 용도지역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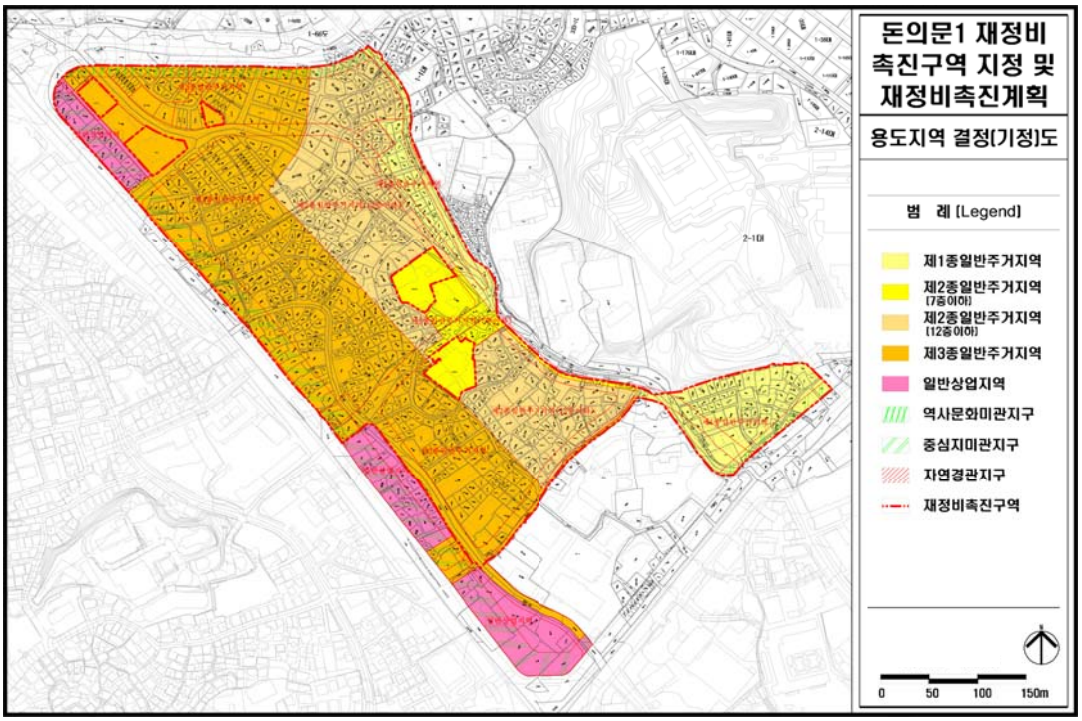

■ 용도지역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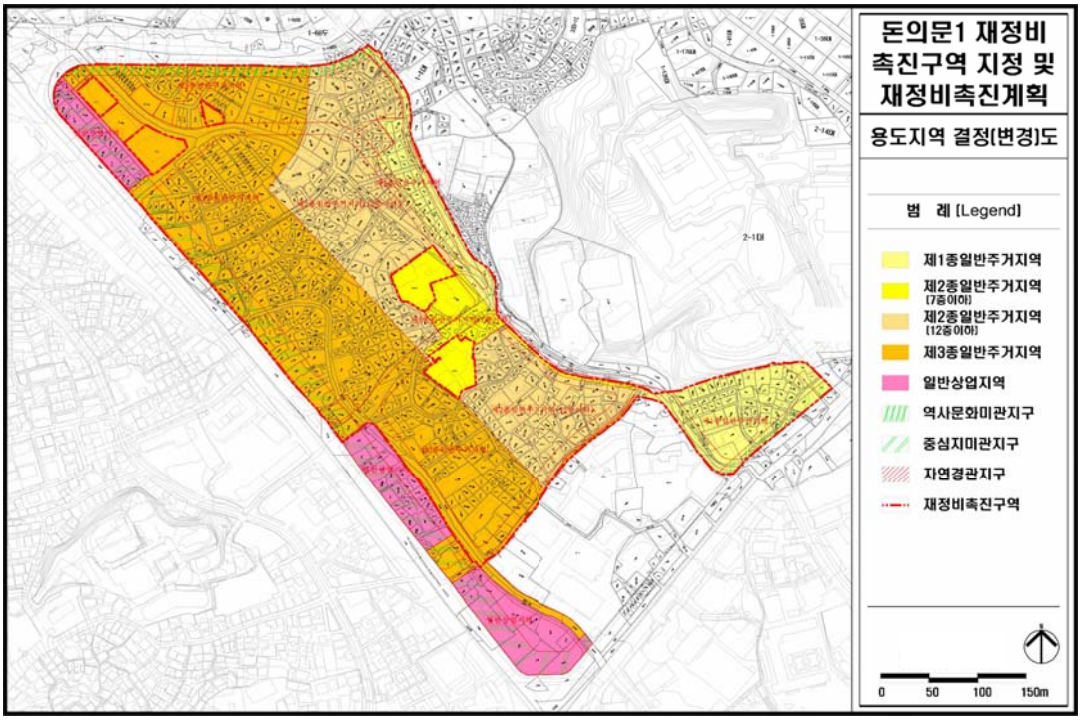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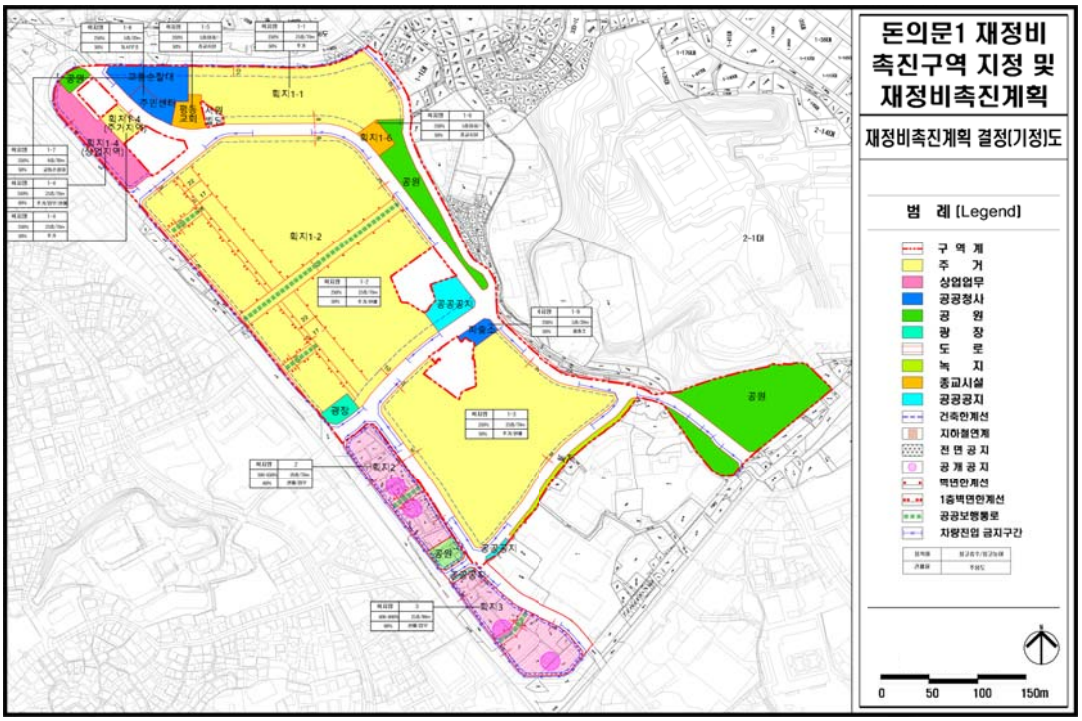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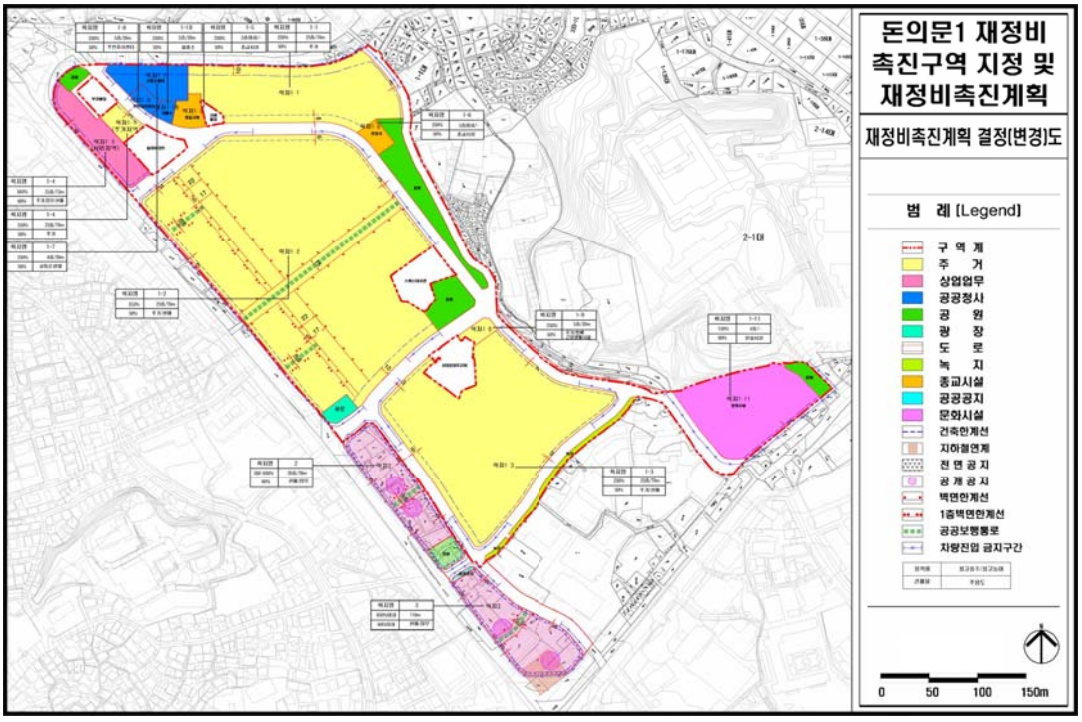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4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지정목적이 상실된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 하고자,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보호수 지정해제 수목내역

지정번호	위 치	수 종	주수	수령 (년)	규 격		토지 소유자	비고
					수고 (m)	흉고둘레 (m)		
서9-4	강북구 번동 93	느티나무	1	180	13	2.8	서울 특별시	

2. 지정해제 사유 : 보호수 주간부가 많이 고사되어 보호수 지정목적이 상실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5호

이문 · 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신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2010-365호(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2012-78호(2012.4.5), 제2012-162호(2012.06.28), 제2012-359호(2012.12.27.), 제2013-263호(2013.08.08.), 제2014-89호(2014.03.13), 제2014-290호(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2015.01.22.), 제2015-206호(2015.7.16), 제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2016.04.21), 제2016-148호(2016.5.26.), 제2016-233호(2016.08.04), 제2016-269호(2016.09.01)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신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

명칭	유형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	1,010,862.5	감)44,292.0	966,570.5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사유
변경	동대문구 이문동 256-371번지 일대	•구역제척 - 면적1,010,862.5㎡→966,570.5㎡ (감 44,292.0㎡)	•촉진지구 결정 당시 편입된 동대문구 관내 잔여부지(존치관리지역)에 대해 촉진지구로 유지해야 되는 필요성 미미하여, 촉진지구에서 제척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20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1) 기본방향 (변경없음)

2) 개발방향 (변경없음)

3) 주요 지표 설정 : 변경

구 분		현 황		계 획		비 고
인구 및 가구	인구	기정	39,910인	기정	46,032인	• 촉진지구 축소에 따른 인구 축소
		변경	38,162인	변경	44,284인	
	세대수	기정	18,234 세대 (2.19인/세대)	기정	19,986세대 (2.30인/세대)	• 촉진지구 축소에 따른 세대수 축소 • 존치지역 및 미취사세대 수용임대주택 계획 포함 • 세대수 현황 - 1인 세대 : 46.2% - 2인 세대 : 17.3%
		변경	17,435세대 (2.19인/세대)	변경	19,187세대 (2.30인/세대)	
	주택호수	기정	8,482호	기정	19,986호	• 촉진지구 축소에 따른 주택호수 축소
		변경	8,110호	변경	19,614호	
기반시설	도로	기정	15.9%	15.2%		•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 촉진지구 축소에 따른 현황 도로비율 축소
		변경	15.4%			
	공원녹지	0.3% (세대당 0.2㎡)		기정	7.5% (세대당3.8㎡)	• 중앙공원(1개소), 어린이공원(6개소), 소공원(4개소), 연결녹지, 철도변완충녹지
				변경	7.6% (세대당3.9㎡)	
교육시설	초등학교	1개소		2개소		• 기존 1개소 : 이문초등학교 • 신설 1개소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공공편익시설	공공청사	4개소		3개소		• 이문1동, 휘경1동 동사무소 존치 • 건강증진센터 이전 설치 (이문3-1구역)
	복합커뮤니티센터	-		5개소		• 생활권단위별 노인복지, 유아보육, 주민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설치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			비 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1,010,862.5	감) 44,292.0	966,570.5	100.0%	
주거용지	소 계	592,746.3	감) 45,100.0	547,646.3	56.7%	
	공동주택[1]	531,450.8	감) 13,888.0	517,562.8	53.5%	중앙 · 삼익 · 금호(사업완료) 포함
	주상복합[2]	54,335.5	감) 31,212.0	23,123.5	2.4%	KCC 웰츠타워 등
	종교시설	6,960.0	-	6,960.0	0.7%	7개소
근생용지	소계	95,125.0	증) 9,713.0	104,838.0	10.8%	
	상업업무[3]	95,125.0	증) 9,713.0	104,838.0	10.8%	신이문 · 이문 · 회기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시설용지	소 계	322,991.2	감) 8,905.0	314,086.2	32.5%	
	도 로[3]	153,880.2	감) 6,785.0	147,095.2	15.2%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철 도	51,845.0	-	51,845.0	5.4%	
	공 원[4]	41,257.0	감) 2,433.0	38,824.0	4.0%	회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개발 공원포함(1,417㎡)
	녹 지	34,217.0	-	34,217.0	3.5%	연결녹지, 철도변 완충녹지
	학 교	23,534.0	-	23,534.0	2.4%	기존(이문초등학교), 신설(초등학교 1개교)
	복합커뮤니티센터	9,781.0	-	9,781.0	1.0%	5개소
	공공청사 등[5]	7,753.0	감) 2,353.0	5,400.0	0.6%	공공청사, 광장, 공공공지, 방수설비
	주 차 장[6]	724.0	증) 2,666.0	3,390.0	0.4%	

※ 변경사유 :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및 신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와 신이문·이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해제 및 축소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

1) 이문2구역 해제 및 신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해제에 따른 면적 변경(주상복합→상업업무)
3)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및 신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제척에 따른 면적 감소
4)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5)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광장폐지 및 공공공지변경)
6) 신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 해제에 따른 주차장 변경 및 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 변경에 따른 주차장 환원 및 결정

2) 인구·주택수용계획 : 변경

주택유형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9,986	감)799	19,187	46,032	감)1,748	44,284	
촉진구역(공동주택)	소계	14,216	-	14,216	32,697	-	32,697	
	60㎡ 이하	7,162	-	7,162	16,473	-	16,473	미취사가구 수용 -20㎡(200호),30㎡(100호)
	60㎡~85㎡	5,331	-	5,331	12,261	-	12,261	
	85㎡ 초과	1,723	-	1,723	3,963	-	3,963	
존치지역	소계	5,770	감)799	4,971	13,335	감)1,748	11,587	
	단독주택	4,254	감)799	3,455	9,830	감)1,748	8,082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1,516	-	1,516	3,505	-	3,505	존치건축물

주) 세대당 인구 2.30인 적용 (미취사가구 수용주택 별도 적용)
※ 변경사유 : 촉진지구 및 신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로 인한 주택수·인구수 축소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

구분		개소			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24	감)2	22	74,057	감)2,433	71,624	
공원	소 계	13	감)2	11	39,840	감)2,433	37,407	
	근린공원	1	-	1	11,924	-	11,924	
	어린이공원	7	감)1	6	18,389	감)1,833	16,556	
	소공원	5	감)1	4	9,527	감)600	8,927	
녹지	소계	11	-	11	34,217	-	34,217	
	연결녹지	6	-	6	13,303	-	13,303	
	완충녹지	5	-	5	20,914	-	20,914	

주) 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폐지

5) 교통계획 (변경없음)

6) 경관계획 (변경없음)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촉진지구		1,010,862.5	감) 44,292.0	966,570.5	100.0%	
촉진구역		673,031.0	감) 4,522.0	668,509.0	69.2%	
이문1구역		144,964.0	-	144,964.0	15.0%	
이문2구역		98,497.0	감) 4,522.0	93,975.0	9.7%	구역지정 요건완화
이문3구역		157,814.0	-	57,814.0	16.3%	결합개발 구역
이문3-1구역		136,573.0	-	136,573.0	14.1%	구역지정 요건완화, 역세권
이문3-2구역		21,241.0	-	21,241.0	2.2%	구릉지
이문4구역		151,388.0	-	151,388.0	15.7%	
휘경1구역		12,915.0	-	12,915.0	1.3%	정비구역 기지정
휘경2구역		43,329.0	-	43,329.0	4.5%	
휘경3구역		64,124.0	-	64,124.0	6.6%	
존치지역		337,831.5	감) 39,770.0	298,061.5	30.8%	
지구단위 계획구역	소 계	242,998.5	감) 30,512.0	212,486.5	22.0%	
	①	60,079.0	감) 30,512.0	29,567.0	3.1%	신이문지구단위계획 (촉진지구내)
	②	67,183.0	-	67,183.0	7.0%	이문지구단위계획
	③	115,736.5	-	115,736.5	12.0%	회기지구단위계획 (촉진지구내)
존치시설 및 건축물	소 계	94,833.0	감) 9,258	85,575.0	8.9%	
	④	9,258.0	감) 9,258	-	0.0%	신이문재건축
	⑤	15,534.0	-	15,534.0	1.6%	이문초등학교
	⑥	4,877.0	-	4,877.0	0.5%	웰츠타워(주상복합) 등
	⑦	12,993.0	-	12,993.0	1.3%	이문로
	⑧	11,776.0	-	11,776.0	1.2%	중앙하이츠 아파트
	⑨	17,118.0	-	17,118.0	1.8%	경원선
	⑩	8,446.0	-	8,446.0	0.9%	삼익아파트
	⑪	1,319.0	-	1,319.0	0.1%	빗물펌프장(방수설비)
	⑫	7,228.0	-	7,228.0	0.7%	중앙선
	⑬	6,284.0	-	6,284.0	0.7%	기타 존치건축물

※ 변경사유 : 이문2구역 변경, 신이문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제척 반영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계		1,010,862.5	감) 44,292.0	966,570.5	100.0%	
주거지역	소 계	989,759.5	감) 39,246.0	950,513.5	98.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1,241.0	-	21,241.0	2.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1]	150,743.0	증) 89,518.0	240,261.0	24.9%	
	제2종일반주거지역	534,079.0	감) 128,741.0	405,338.0	41.9%	
	제3종일반주거지역	156,665.0	감) 4,545.0	152,120.0	15.7%	
	준주거지역[1]	127,031.5	증) 4,522.0	131,553.5	13.6%	
상업지역	소 계	21,103.0	감) 5,046.0	16,057.0	1.7%	
	일반상업지역	1,103.0	감) 5,046.0	16,057.0	1.7%	

※ 변경사유 : 이문2구역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포함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

가) 촉진지구 계획기반시설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촉진지구면적		1,010,862.5	감) 44,292.0	966,570.5	100.0	
기반시설	소 계	322,991.2	감) 8,905.0	314,086.2	32.5%	
	도 로	153,880.2	감) 6,785.0	147,095.2	15.2%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철 도	51,845.0	-	51,845.0	5.4%	
	공 원	41,257.0	감) 2,433.0	38,824.0	4.0%	
	녹 지	34,217.0	-	34,217.0	3.5%	연결녹지, 철도변 완충녹지
	학 교	23,534.0	-	23,534.0	2.4%	기존(이문초등학교), 신설(초등학교 1개교)
	복합커뮤니티센터	9,781.0	-	9,781.0	1.0%	5개소
	공공청사 등	7,753.0	감) 2,353.0	5,400.0	0.6%	공공청사, 광장, 공공공지, 방수설비
	주 차 장	724.0	증) 2,666.0	3,390.0	0.4%	

나) 부담주체별 설치계획

구 분	공공부문	민간부문
사업주체	공공시행	민간(조합)시행
사업내용	• 이문로 도로확장 (L=1,040m) • 중로2-142 (이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L=231) • 소로1-1 (이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L=113m) • 소로3-7 (이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L=10m) • 소로3-8 (신이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L=171m) • 지하차도 1개소 (L=307.5m) • 보도육교 1개소 (B=4.0m, L=35.0m) • 주차장(신이문 지구단위계획구역) • 공공공지(신이문·이문 지구단위계획구역) • 초등학교 1개소 • 복합커뮤니티센터 3개소	• 촉진구역내 정비기반시설 -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 • 복합커뮤니티센터 2개소(휘경3구역)

주) 지구외 남측 지하보· 차도(M1-370)는 중·장기적으로 개설 검토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기타계획(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특성화계획,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 (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없음)

18) 재정비촉진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 : 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

(1)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결정

명칭	유형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이문 · 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동대문구 이문 · 휘경동 일원	1,010,862.5	감)44,292.0	966,570.5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사유
변경	동대문구 이문동 256-371번지 일대	•구역제척 - 면적1,010,862.5㎡→966,570.5㎡ (감 44,292.0㎡)	•촉진지구 결정 당시 편입된 동대문구 관내 잔여부지(존치관리지역)에 대해 촉진지구로 유지해야 되는 필요성 미미하여, 촉진지구에서 제척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1)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결정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계		1,010,862.5	감) 44,292.0	966,570.5	100.0%	
주거지역	소 계	989,759.5	감) 39,246.0	950,513.5	98.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1,241.0	-	21,241.0	2.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1]	150,743.0	증) 89,518.0	240,261.0	24.9%	
	제2종일반주거지역	534,079.0	감) 128,741.0	405,338.0	41.9%	
	제3종일반주거지역	156,665.0	감) 4,545.0	152,120.0	15.7%	
	준주거지역1)	127,031.5	증) 4,522.0	131,553.5	13.6%	
상업지역	소 계	21,103.0	감) 5,046.0	16,057.0	1.7%	
	일반상업지역	21,103.0	감) 5,046.0	16,057.0	1.7%	

※ 변경사유 : 이문2구역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포함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①	신이문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이문동 241 일원	70,190.0	
변경		신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문동 217-8 일원	39,678.0	
기정	②	이문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이문동 305-151 일원	67,183.0	
변경		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정	③	회기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휘경동 319-5 일원	130,701.5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47	5,555	128,198	12	1,306	80,465	18	1,806	36,834	17	2,443	10,899
대로	1	145	404	0	0	0	0	0	0	1	145	404
중로	17	1,408	100,624	10	938	76,433	6	383	23,147	1	87	1,044
소로	29	4,002	27,152	2	368	4,032	12	1,423	13,687	15	2,190	9,451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0	25~30	보조 간선	11,600 (145)	군자동 광로5호선	수유동 중1-47호선	일반 도로		건고시177 (1962.12.8)	
기정	중로	1	9	20~25	보조 간선	4,000 (1,040)	휘경지서앞 중1-8호선	번동98-1 대3-39호선	일반 도로		총고시722 (1936.12.26)	
변경	중로	1	9	20~25	보조 간선	4,000 (818)	휘경지서앞 중1-8호선	번동98-1 대3-39호선	일반 도로			촉진지구 제척 (신이문 지구)
기정	중로	1	10	21.3	집산 도로	595	이문동 288-65	휘경동 147-6	일반 도로		건고시177 (1962.12.8)	
변경	중로	1	10	21.3	집산 도로	595	이문동 288-65번지	휘경동 147-6번지	일반 도로	-		지적선 불일치, 감속차로 삭제 등으로 선형 일부 조정
기정	중로	1	63	20	집산 도로	2,250 (446)	이문동 255-2	석관동 247-1	일반 도로		건고시2493 (1966.6.21)	
변경	중로	1	63	20	집산 도로	2,250 (220)	이문동 255-2	석관동 247-1	일반 도로			지적선 불일치에 따른 선형조정
기정	중로	1	432	20	집산 도로	378	이문동 291-26	이문동 264-3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중로	1	433	20	집산 도로	463	이문동 86-139	이문동 258-25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중로	1	434	20	집산 도로	407	휘경동 150-26번지	이문동 105-18번지	일반 도로		1976.4.7 (건고 46)	
변경	중로	1	434	20~23	집산 도로	407	휘경동 150-26번지	이문동 105-18번지	일반 도로			이문 특별계획구역1 해제에 따른 선형 변경
기정	중로	1	435	20	특수 도로	185	휘경동 147-6	휘경동 119-46	보행자 도로		건고시177 (1962.12.8)	
기정	중로	1	365	20	집산 도로	260	휘경동 328-1	휘경동 319-9	일반 도로		서고 271 (1994.8.11)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437	18~20	집산 도로	307	휘경동 77-7	휘경동 255-39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중로	1		15~21	집산 도로	273	이문동 304-14	이문동 292-178	일반 도로		서고2002-143 (2002.05.02)	
기정	중로	2	142	15~20	집산 도로	427 (231)	휘경2동 42-4번지	휘경동 139-27번지	일반 도로		1976.4.7 (건고 46)	
변경	중로	2	142	15~20	집산 도로	427 (231)	휘경2동 42-4번지	휘경동 139-27번지	일반 도로			이문 특별계획구역2 축소에 따른 선형 변경
기정	중로	2	143	15	집산 도로	200	휘경동 101-10번지	휘경동 175-4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중로	2	451	18	국지 도로	120	이문동 255-7	이문동 255-12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중로	2	452	15	집산 도로	216	이문동 256-128	이문동 164-15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중로	2	453	15	집산 도로	228	이문동 150-6	이문동 256-127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중로	2	454	15~19	집산 도로	472	이문동 175-31	이문동 255-187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450	12	국지 도로	87	이문동 87-1	이문동 89-3	일반 도로	-	동고 1994-29 (1994.6.24)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13	이문동 85-26	이문동 78-6	일반 도로	-	서고 2002-143 (2002.05.02)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65	이문동 82-25	이문동 78-10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폐지	소로	1	2	10	국지 도로	65	이문동 82-25	이문동 78-10	일반 도로	-		이문 특별계획구역1 해제에 따른 도로폐지
기정	소로	1	3	10~12 (12)	국지 도로	200	휘경동 154-8	휘경동 146-127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변경	소로	1	3	10~12 (12)	국지 도로	200	휘경동 154-8번지	휘경동 146-127번지	일반 도로	-	-	이문 특별계획구역2 변경(축소)에 따른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23	휘경동 317-1	휘경동 267-128	일반 도로	-	서고 2000-242 (2000.8.22)	
기정	소로	2	2	9	국지 도로	62	휘경1동 109-1	휘경1동 42-9	일반 도로	-	서고 2005-408 (2005.12.22)	
기정	소로	2	3	8~15	국지 도로	276 (180)	이문동 264-203	이문동 398-8	일반 도로		건고 521 (1981.12.31)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262	휘경1동 86-6	휘경1동 255-9	일반 도로	-	서고 2005-408 (2005.12.22)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75	휘경동 192-6	휘경동 192-8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83	이문동 251-3	이문동 243-8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폐지	소로	2	6	8	국지 도로	83	이문동 251-3	이문동 243-8	일반 도로	-		신이문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 및 특별계획구역4 해제에 따른 도로 폐지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48	휘경동 259	휘경동 244-1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57	휘경동 254	휘경동 247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30	휘경동 336	휘경동 338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80	이문동 120-36	이문동 354-5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73	이문동 264-420	이문동 264-420	일반 도로		건고 521 (1981.12.31)	
기정	소로	2	12	8~12	국지 도로	300 (220)	이문2동 271-7	이문2동 291-67	일반 도로		건고 768 (1964.1.24)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230	휘경동 267-42	휘경동 255-40	일반 도로	-	건고1997-194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1	이문동 305-94	이문동 305-93	일반 도로	-	서고 2002-143 (2002.05.02)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11	이문동 305-94번지	이문동 305-93번지	일반 도로		-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반영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45	이문동 309-11	이문동 309-3	일반 도로	-	서고 2002-143 (2002.05.02)	
기정	소로	3	5	4	국지 도로	30	이문동 288-63	이문동 288-64	일반 도로	-	서고 2002-143 (2002.05.02)	
신설	소로	3	6	4	국지 도로	21	휘경동 161-1번지	휘경동 154-18번지	일반 도로	-	-	이문 특별계획구역2 내 도로 신설
신설	소로	3	7	4	국지 도로	10	이문동 78-9번지	이문동 78-8번지	일반 도로			외대앞역 인접필지 진입도로 확보 (이문지구)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8	2~6	국지 도로	171	이문동 220-26	이문동 167-1	일반 도로		2002.6.12 (서고 211)	이문2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도로환원 (신이문지구)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900 (370)	휘경동 192-19	휘경동 145-40	일반 도로	-	건고1997-194	
기정	소로	3	11	4	특수 도로	245	이문동 170-130	이문동 220-363	보행자 전용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3	12	4	특수 도로	345	이문동 135-138	이문동 170-123	보행자 전용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3	13	4	특수 도로	346	이문동 120-35	이문동 173-35	보행자 전용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3	14	4	특수 도로	248	이문동 304-14	이문동 135-117	보행자 전용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3	15	2~4	특수 도로	205	이문동 78-7	이문동 121-78도	보행자 전용	-	건고1994-116 (1994.4.18)	
기정	소로	3	18	4	국지 도로	10.7	휘경동 319-22	휘경동 319-22	일반 도로	-	동고2006-50호 (2006.5.4)	
기정	소로	3	19	4	국지 도로	51	중로 1-365	휘경동 183-113	일반 도로	-	서고2000-242 (2000.8.22)	
기정	소로	3	20	6	국지 도로	23	이문동 240-8번지	이문동 242-53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폐지	소로	3	20	6	국지 도로	23	이문동 240-8번지	이문동 242-53번지	일반 도로	-		촉진지구 및 신이문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에 따른 도로 폐지
기정	소로	3	21	4~8	국지 도로	120	이문동 292-46	이문동 292-70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9	중로 1-9	• 촉진지구내 노선 축소 - 연장: 1,040 → 818m	• 전체 노선 변화는 없으나 촉진지구 축소로 지구내 노선 축소
중로 1-10	중로 1-10	• 선형변경	• 이문지구 가감속차로 삭제 및 지적선 불일치에 따른 선형변경
중로 1-63	중로 1-63	• 촉진지구내 노선 축소 - 연장: 446m → 220m - 폭원: 20m	• 신이문지구 지적선 불일치에 따른 선형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434	중로 1-434	• 폭원 및 선형 일부변경 - 폭원 : 20m → 20~23m	• 이문지구 특별계획구역1 해제에 따른 도로 선형 일부 변경
중로 2-142	중로 2-142	• 선형변경	• 이문지구 내 특별계획구역2 변경(축소)에 따른 선형 일부 변경
소로 1-2	소로 1-2	• 노선폐지	• 이문지구 내 특별계획구역1 해제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1-3	소로 1-3	• 선형변경	• 이문지구 내 특별계획구역2 변경(축소)에 따른 선형 변경
소로 2-6	-	• 노선폐지	• 신이문지구 내 특별계획구역4 해제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 3-1	소로 3-1	• 선형변경	• 이문지구 내 동대문구 고시 제2014-83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반영
-	소로 3-6	• 신설 - 연장: 21m - 폭원: 4m	• 이문지구 특별계획구역2 변경(축소)에 따라 교차로변 필지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	소로 3-7	• 신설 - 연장 : 10m - 폭원 : 4m	• 외대앞역 인접 필지들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 4m 결정
-	소로 3-8	• 신설 - 연장 : 171m - 폭원 : 2~6m	• 이문2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도로 환원
소로 3-20	-	• 노선폐지	• 촉진지구 및 신이문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에 따른 폐지

②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주차장	이문동 220-20 일원	1,175	서고 2002-211 (2002.6.12)	광장중복결정 (지상부조성)
변경	①	주차장	이문동 220-20 일원	1,422	-	증) 247 광장폐지 (지상부조성)
기정	②	주차장	이문동 306-14 일원	724	동고-8 (1995.2.24)	
변경	②	주차장	이문동 306-14 일원	1,276	-	증) 552
신설	③	주차장	휘경동 165-15 일원	-	증)692	692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 면적증가 : 1,175㎡ → 1,422㎡ 증) 247㎡	• 신이문지구 특별계획구역1 해제에 따른 주차장 환원 및 조정
②	주차장	• 면적증가 : 724㎡ → 1,276㎡ 증) 552㎡	• 이문지구 특별계획구역2 결정으로 폐지되었던 주차장을 특별계획구역2 구역계 변경(축소)으로 주차장 환원
③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692㎡	• 이문지구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주차장 결정

③ 철도 : 변경없음

■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①	철도	일반 철도	동대문구 전농동 588-1	중랑구 망우동 도시계획구역계	청량리역 회기역 망우역 송곡여고	7,230	248,958.3	서고74-154 (74.10.23)	중앙선
기정	②	철도	일반 철도	한강로3가 (용산역)	성북역 도봉구시계	-	25.7km	- (17,118)	건고64 (78.1.29)	경원선
기정	③	철도	일반 철도	이문동 220일대	-	-	-	4,400	건고64 (78.3.29)	신이문역
기정	④	철도	일반 철도	이문동 134, 135일대	-	-	-	9,200	서고289 (79.6.30)	이문역
기정	⑤	철도	일반 철도	휘경동 317-101일대	-	-	520	18,184	건고64 (78.3.29)	회기역

(2) 공간시설

① 광장

■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광장	-	이문동 220-20 일원	1,175	건고 445 (81.12.12)	주차장중복결정 (지하조성)
폐지	①	광장	-	이문동 220-20 일원	-		감) 1,175
기정	②	광장	-	이문동 217-28 일원	1,260		
폐지	②	광장	-	이문동 217-28 일원	-		감) 1,260

■ 광장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광장	• 폐지	• 신이문지구 특별계획구역1 해제에 따른 광장① 폐지
②	광장	• 폐지	• 신이문지구 특별계획구역2 해제에 따른 광장② 폐지

② 녹지 : 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이문동 168-20 일원	6,769 (2,817)	서고2007-496 ('08.1.7)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이문동 116-12 일원	3,790	서고2007-496 ('08.1.7)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이문동 135-52 일원	2,785 (2,624)	서고2007-496 ('08.1.7)	
기정	④	녹지	완충녹지	이문동 78-7 일원	315	서고2007-496 ('08.1.7)	
기정	⑤	녹지	완충녹지	휘경동 194-1 일원	7,205	서고2007-496 ('08.1.7)	
기정	⑥	녹지	연결녹지	이문동 256-303 일원	840	서고2007-496 ('08.1.7)	
기정	⑦	녹지	연결녹지	이문동256-124 일원	1,853	서고2007-496 (2008.01.07)	
기정	⑨	녹지	연결녹지	이문동 292-42 일원	1,492	서고2007-496 ('08.1.7)	
기정	⑩	녹지	연결녹지	이문동 86-141 일원	4,365	서고2007-496 ('08.1.7)	
기정	⑪	녹지	연결녹지	휘경동 150-9 일원	1,315	서고2007-496 ('08.1.7)	
기정	⑫	녹지	연결녹지	휘경동 140-18 일원	3,438	서고2007-496 ('08.1.7)	

③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중앙공원	근린공원	이문동 138-1 일원	11,924	-	11,924	서고2007-496 ('08.1.7)	
기정	②	회기공원	소공원	휘경동 194-28 일원	647	-	647	서고2007-496 ('08.1.7)	
기정	③	신이공원	어린이공원	이문동 256-225 일원	1,850	-	1,850	서고2007-496 ('08.1.7)	
기정	④	해누리공원	어린이공원	이문동 256-313 일원	2,005	-	2,005	서고2007-496 ('08.1.7)	
기정	⑤	새롬공원	어린이공원	이문동 175-1 일원	4,360	-	4,360	서고2007-496 ('08.1.7)	
기정	⑥	달누리공원	어린이공원	이문동 264-421 일원	1,749	-	1,749	서고2007-496 ('08.1.7)	
기정	⑨	별누리공원	어린이공원	이문동 86-36 일원	3,190	-	3,190	서고2007-496 ('08.1.7)	
기정 폐지	⑩	휘경공원	어린이공원	휘경동 165-11 일원	1,833	감)1,833	-	서고2007-496 ('08.1.7)	
기정	⑫	아름공원	어린이공원	휘경동 118-10 일원	3,402	-	3,402	서고2007-496 ('08.1.7)	
기정	⑬	소공원13	소공원	이문동 255-116 일원	1,479	-	1,479	서고2007-496 ('08.1.7)	
기정	⑭	독구말공원	소공원	이문동 294-2 일원	1,181	-	1,181	서고2007-496 ('08.1.7)	
기정 폐지	⑮	이문공원	소공원	이문동 82-13 일원	600	감)600	-	서고2007-496 ('08.1.7)	
기정	A	마을 오름공원	소공원	이문동 393-1 일원	5,620	-	5,620	서고2014-290 ('14.8.21)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⑩	휘경공원	• 시설폐지 - 면적 = 1,833㎡	•이문지구 특별계획구역2 변경(축소)에 따른 폐지
⑮	이문공원	• 시설폐지 - 면적 = 600㎡	•이문지구 특별계획구역1 해제에 따른 공원 폐지

④ 공공공지 :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휘경동 269-2 일원	217		217	서고2000-242 (2000.08.29)	
기정	②	공공공지	이문동 82-45 일원	240	-	240	서고 1974-108 (1974.08.06)	
기정 폐지	③	공공공지	이문동 252-2 일원	26	감)26	-	서고2007-496 ('08.1.7)	
기정	⑤	공공공지	이문동 88-24 일원	380	-	380	서고2007-496 ('08.1.7)	
기정	⑥	공공공지	휘경동 104-9 일원	788	-	788	서고2007-496 ('08.1.7)	
신설	⑦	공공공지	이문동 220-282일원	-	증)108	108	서고2002-211 (2002.06.12)	

■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신이문지구 축소 및 특별계획구역4 해제에 따른 공공공지 폐지
⑦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이문2촉진구역에 해제에 따른 공공공지 환원

(3)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① 열공급설비

■ 열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열공급설비	이문동 138-1 일원	11,912	-	11,912	서고2007-496 ('08.1.7)	시설중복결정 -중앙공원(지하)

(4)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①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동사무소	이문동 120-1 일원	1,202	-	1,202	동고 83 (2001.10.27)	이문1동 동사무소
기정	②	공공청사	동사무소	휘경동 135-9 일원	803	-	803	동고 107 (1997.11.6)	휘경1동 동사무소
기정	③	공공청사	-	이문동 304-6 일원	343	-	343	서고2007-496 ('08.1.7)	건강증진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②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A	사회복지시설	이문동 264-120 일원	2,176	-	2,176	서고2014-290 ('14.8.21)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기정	B	사회복지시설	휘경동 100-35 일원	2,300	-	2,300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기정	C	사회복지시설	휘경동 100-41 일원	1,200	-	1,200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③ 학교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학교	초등학교	이문동 164-26 일원	15,534	-	15,534	서고 439 (1977.12.19)	
기정	③	학교	초등학교	이문동 87-14 일원	8,000	-	8,000	서고2007-496 ('08.1.7)	

(5) 방재시설 : 변경없음

① 방수설비

■ 방수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방수설비	휘경동 146-104 일원	1,319	-	1,319	동고 2002-81 (2002.09.24)	

(5) 환경기초시설 : 변경없음

① 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이문동 145-4 일원	700	-	700	서고2007-496 ('08.1.7)	시설중복결정 -중앙공원(지하)

19) 신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조서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신이문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이문동 241번지 일대	70,190	-	70,19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11호 (2002.6.15)	
변경		신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이문동 217-8번지 일대	70,190	감)30,512	39,678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	-	• 구역명 변경 및 구역계 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2.4.15)으로 제1종·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을 삭제하였으므로 구역명 변경 •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계와 지적선의 오차 정정 및 대표지번 변경
	㉮	동대문구 이문동 256-371번지 일대	• 구역제척 - 면적 : 35,319㎡	• 촉진지구 결정 당시 동대문구 관내 잔여부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확장)하여 편입된 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유지해야 되는 필요성이 미미하여 제척
	㉯	동대문구 이문동 237-55번지 일대	• 구역편입 - 면적 : 4,807㎡	• 이문2촉진구역에 편입된 구역이 촉진구역 해제에 따라 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

(2)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계		70,190	감) 30,512	39,678	100.0	편입(㉰)구역은 촉진구역 해제에 따라 준주거지역 으로 환원
주거지역	소계	65,144	감) 25,466	39,678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0,264	감) 1,978	8,286	20.9	
	제2종일반주거지역	23,630	감) 23,465	165	0.4	
	제3종일반주거지역	4,580	감) 4,545	35	0.1	
	준주거지역	26,670	증) 4,522	31,192	78.6	
상업지역	소계	5,046	감) 5,046	0	0.0	
	일반상업지역	5,046	감) 5,046	0	0.0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이문동 220-286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지역	4,522㎡	기준300%이하 허용360%이하	•이문2촉진구역 해제에 따라 준주거지역 으로 환원

■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③	미관 지구	일반 미관지구	이문동217-8	280,500 (1,620)	7,510 (140)	양측 12	서울특별시 고시 제164호 (1982.4.22)	

주)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연장 및 면적임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1. 교통시설

①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3	515	15,734	1	220	4,732	-	-	-	2	295	11,002
대로	1	145	10,096	-	-	-	-	-	-	1	145	10,096
중로	1	220	4,732	1	220	4,732	-	-	-	-	-	-
소로	1	150	906	-	-	-	-	-	-	1	150	906

주)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0	25~30	보조 간선	11,600 (145)	군자동 광로5호선	수유동 중1-47호선	일반 도로		1962.12.8 (건고시 177)	
기정	중로	1	63	20	집산 도로	2,250 (446)	이문동 255-2	석관동 247-1	일반 도로		1966.6.21 (건고시 2493)	
변경	중로	1	63	20	집산 도로	2,250 (220)	이문동 255-2	석관동 247-1	일반 도로			지적선 불일치에 따른 선형조정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83	이문동 251-3번지	이문동 243-8번지	일반 도로			
폐지	소로	2	6	8	국지 도로	83	이문동 251-3번지	이문동 243-8번지	일반 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 및 특별계획구역4 해제에 따른 도로 폐지
신설	소로	3	8	2~6	국지 도로	171 (150)	이문동 220-26	이문동 167-1	일반 도로		2002.6.12 (서고 211)	이문2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도로환원
기정	소로	3	20	6	국지 도로	23	이문동 240-8번지	이문동 242-53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폐지	소로	3	20	6	국지 도로	23	이문동 240-8번지	이문동 242-53번지	일반 도로	-		촉진지구 및 신이문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에 따른 도로 폐지

주)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과 면적임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63	중로 1-63	• 선형조정	• 지적선 불일치 및 촉진지구 축소에 따른 도로선형 조정
소로 2-6	-	• 노선폐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 및 특별계획구역4 해제에 따른 도로폐지
-	소로 3-8	• 신설 - 연장 : 171m - 폭 : 2~6m	• 이문2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도로 환원
소로 3-20	-	•노선폐지	• 촉진지구 및 신이문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에 따른 폐지

②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이문동 220-20일원	1,175	증) 247	1,422	2002.6.12 (서고 2002-211)	
변경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 면적증가 - 1,175㎡ → 1,422㎡ 증) 247㎡	• 특별계획구역1 해제에 따른 주차장 환원 및 조정

③ 철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②	철도	일반 철도	한강로3가 (용산역)	성북역 도봉구시계	-	25.7km	-	건고64 (78.1.29)	경원선
기정	③	철도	일반 철도	이문동 220일대	-	-	-	4,400	건고64 (78.3.29)	신이문역

2. 공간시설

① 광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광장	-	이문동 220-20일원	1,175	감) 1,175	-	건고 445 (81.12.12)	주차장중복결정 (지하조성)
폐지									
기정	②	광장	-	이문동 217-28일원	1,260	감) 1,260	-		
폐지									

■ 광장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광장	• 폐지	• 특별계획구역1 해제에 따른 광장① 폐지
②	광장	• 폐지	• 특별계획구역2 해제에 따른 광장② 폐지

②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폐지	③	공공공지	이문동 252-2일원	26	감)26	-		
신설	⑦	공공공지	이문동 220-282일원	-	증)108	108	서고2002-211 (2002.06.12)	

■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공공공지	• 폐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 및 특별계획구역4 해제에 따른 공공공지 폐지
⑦	공공공지	• 신설	• 이문2촉진구역에 해제에 따른 공공공지 환원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최소개발규모

구 분		최소개발규모(㎡)		비 고
		기정	변경	
간선변	이문로변	150	-	• 최소개발규모 폐지
	한천로변, 신이문로변	150	-	
이 면 부		90	-	

② 최대개발규모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기정	변경	
간선변	이문로변	2,000	-	
	한천로변, 신이문로변	1,000	1,000	
이 면 부		600	600	

주1)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규정 적용

주2) 적용제외

- 기 개발된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③ 가구 및 획지계획

■ 계획기준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획지 계획	•연접한 동일소유필지로서 기공동개발 된 2이상의 필지 •연접한 동일소유필지로서 기공동개발 되지 않은 2이상의 필지 •개별소유필지로서 기공동개발된 2이상의 필지(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 것만 획지로 계획) •개별소유필지로서 계획적 유도(법적 최소대지분할 규모이하, 맹지 등)가 필요한 2이상의 필지	•연접한 동일소유의 기 공동개발 필지 중 계획적 유도가 필요한 필지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①	S1	3,327	이문동 251-5대	330	846	
			이문동 251-7대	516		
②			이문동 251-24대	10	232	
			이문동 254-40대	222		
③			이문동 254-12대	86	106	
			이문동 255-19대	20		
-	S2	2,014	-	-	-	
-	S3	2,401	-	-	-	
①	S4	1,638	이문동 255-32대	160	911	
			이문동 256-367대	751		
②			이문동 255-33대	16	267	
			이문동 256-23대	79		
			이문동 256-24대	172		
③			이문동 255-34대	37	176	
			이문동 255-128대	139		
④			이문동 255-129대	65	284	
			이문동 256-20대	13		
			이문동 256-26대	206		
-	S5	911	-	-	-	
①	S6	898	이문동 251-3대	4	411	
			이문동 251-9대	189		
			이문동 251-17대	27		
			이문동 251-18대	99		
			이문동 254-24대	92		
②			이문동 254-39대	125	136	
			이문동 254-41도	1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①	S7	1,501	이문동 256-28대	172	294	
			이문동 256-360대	122		
②			이문동 256-358대	109	218	
			이문동 256-359대	109		
①	S8	1,029	이문동 256-363대	93	162	
			이문동 256-364대	69		
②			이문동 255-227대	16	89	
			이문동 255-382대	4		
			이문동 256-361대	69		
③			이문동 255-225대	73	192	
			이문동 255-226대	86		
			이문동 255-432대	6		
			이문동 255-433대	4		
			이문동 256-362대	20		
			이문동 256-374대	3		
①	S9	460	이문동 255-213대	13	244	
			이문동 256-366대	231		
②			이문동 164-22대	20	216	
			이문동 255-393대	147		
			이문동 357-3구	23		
			이문동 358-3대	26		
①	S10	728	이문동 242-28대	116	420	
			이문동 242-50대	83		
			이문동 242-51대	60		
			이문동 242-53도	60		
			이문동 357-3구	101		
②			이문동 164-6도	23	308	
			이문동 164-10도	2		
			이문동 240-2대	130		
			이문동 357-3구	153		
①	S11	3,728	이문동 238-16대	102	204	
			이문동 238-17대	102		
-	S12	491	-	-	-	
-	S13	228	-	-	-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①	S1	1,772.2	이문동 238-5	56	72	특별계획구역 3 해제
			이문동 237-144	16		
-	S2	2,200.6	-	-	-	
①	S3	784.5	이문동 220-111	74	279	특별계획구역 2 해제
			이문동 220-112	94		
			이문동 220-365	20		
			이문동 220-113	91		
①	S4	800.5	이문동 220-105	94	184	
			이문동 220-106	94		
-	S5	1,060.8	-	-	-	
①	S6	4,598.5	이문동 217-1	132	350	
			이문동 217-13	155		
			이문동 219-13	63		
②			이문동 219-10	69	148	
			이문동 219-11	79		
③			이문동 220-325	79	89	
			이문동 220-354	10		
④			이문동 220-326	86	93	
			이문동 220-356	7		
-	S7	249.6	-	-	-	특별계획구역 1 해제 및 해제된 이문2구역 일부 편입
-	S8	304.6	-	-	-	
-	S9	395.8	-	-	-	
-	S10	459.8	-	-	-	
-	S11	1,946.2	-	-	-	
-	S12	277.2	-	-	-	
①	S13	331.6	이문동 220-13	53	66	
			이문동 220-27	10		
			이문동 220-318	3		
-	S14	1,709.6	-	-	-	
-	S15	168.6	-	-	-	

주) 가구면적은 cad구적

④ 공동개발계획

■ 계획기준

구 분	계획기준		비 고
	기 정	변 경	
공동개발 (지정)	-	•획지계획이 지정되지 않은 연접한 동일소유 필지로서 기 공동개발 된 2이상의 필지 중 다른 소유 필지와 공동개발 (권장)으로 계획된 필지 •연접한 동일소유 필지로서 미 공동개발 된 2이상의 필지	
공동개발 (권장)	•적정규모 · 정형화 · 이면도로에서의 주 차출입유도 등을 계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접한 개별소유필지로서 계획적 유도(부정형·세장형, 과소필지, 맹지 등)가 필요한 2이상의 필지 •건축선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단일 필지의 건축효용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 필지와 연접한 2이상의 필지 •도시계획시설 잔여부지와 연접한 필지	
자율적 공동개발	-	•연접한 2이상의 필지 (공동개발 지정/권장 계획된 필지 포함 가능)	

■ 공동개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고
		동명	지번	필지	계	
신설	S4	이문동	220-8	28	38	· 공동개발(권장)
			220-200	10		
신설	S4	이문동	220-187	6	69	· 공동개발(권장)
			220-237	63		
신설	S4	이문동	220-188	73	153	· 공동개발(지정)
			220-189	80		
신설	S6	이문동	217-14	73	146	· 공동개발(지정)
			217-15	73		
신설	S6	이문동	218-18	96	165	· 공동개발(권장)
			219-9	69		
신설	S6	이문동	217-10	146	235	· 217-10, 218-56은 공동개발(지정) · 219-12는 공동개발(권장)
			218-56	20		
			219-12	69		
신설	S6	이문동	220-201	76	273	· 공동개발(권장)
			220-202	197		

구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고
		동명	지번	필지	계	
신설	S7	이문동	237-47	36	112	· 공동개발(권장)
			237-135	76		
신설	S11	이문동	220-219	42.3	49.3	· 공동개발(권장) · 220-219(구적면적)
			220-280	7		
신설	S11	이문동	220-324	79	111.1	· 공동개발(권장) · 220-295(구적면적)
			220-295	32.1		
신설	S13	이문동	220-297	83	156.2	· 공동개발(권장) · 220-295(구적면적)
			220-300	73.2		
		이문동	220-299	83	93.8	· 공동개발(권장) · 168-3(구적면적)
			168-3	10.8		
신설	S14	이문동	220-302	73	162	· 220-302, 220-303은 공동개발(지정) · 220-319는 공동개발(권장)
			220-303	83		
			220-319	6		
신설	S14	이문동	220-217	48.9	55.9	· 공동개발(권장) · 220-217(구적면적)
			220-281	7		
신설	S14	이문동	220-312	63	92.2	· 공동개발(권장) · 220-313(구적면적)
			220-313	29.2		
신설	S15	이문동	220-316	43	56.8	· 공동개발(권장) · 220-320(구적면적)
			220-320	13.8		
신설	S15	이문동	220-315	63	114	· 공동개발(권장) · 220-313(구적면적)
			220-20	51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건축물용도

■ 기정

● 불허용도

구분	도면표시	전층
불허용도	1 (간선변)	• 미관지구내 불허용도(미관지구에 해당하는 획지에 한함) • 단독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2 (이면부)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 권장용도

구분	도면표시	전층
권장용도1)	A (간선변)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B (이면부)	

주1) 권장용도의 경우 전층권장용도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2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봄

■ 변경

● 불허용도

구분	도면표시		용도
불허용도	1 (간선변)	전층	•미관지구내 불허용도(미관지구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에 한함) •장례식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공장 및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1층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2 (이면부)	전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에 한함) •장례식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공장 및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라 운용

● 권장용도

구분	도면표시		용도
권장 용도1)	A (간선변)	전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의료시설 중 병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2)(1층 근린생활시설 도입시), 학원(입시학원 제외), 연구소, 도서관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B (이면부)	전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2)(1층 근린생활시설 도입시), 학원(입시학원 제외), 연구소, 도서관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주1) 권장용도의 경우 전층권장용도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2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봄
주2)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20%이상) 설치시 도입 가능

● 지정용도

구분	도면표시		용도
지정 용도1)	a (간선변)	1층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 중 상점

주1) 공용면적(승강기, 계단, 화장실 등 설비시설 포함)을 제외한 바닥면적 70%이상 설치시 준수된 것으로 봄
※ 지정용도 중 일부 용도만 도입가능

② 건축물의 개발밀도

■ 건폐율계획 (변경없음)

구분		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60%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준주거지역	60%	60%	건폐율 변경은 없으나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 적용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0%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주1)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
주2) 주차장은 주차장 관련 법률에 따름

■ 용적률계획

위 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2종일반주거지역		200%		–	–		–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척
준주거지역	간선도로변	300%	360%	400%	300%	360%	400%	
	이면부	300%	330%	400%				
	재개발구역 인접필지	300%	360%	400%	–	–	–	
일반상업지역	이문로변	600%	800%	–	–	–	–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척

주1)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

주2) 준주거 지역의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산식에 따르며, 조례 개정시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주3)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기존 준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 모두 적용. 단, 준주거지역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주4) 준주거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주거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중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말함

주5) 준주거지역내 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방법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배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건립
300%	360%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α/β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beta-\alpha)/\beta$
		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	

주6) 주차장은 주차장 관련 법률에 따름

③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기정

항 목			완화조건	산 정 방 식	비 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2필지 α= 0.1 • 3필지 α= 0.15 • 4필지이상 α= 0.2 (동일소유자는 1필지로 계산, 국공유지는 필지계산에서 제외)
공동개발	공동개발(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0.5α	• 2필지 α= 0.2 • 3필지이상 α= 0.3
대지분할/대지교환	–		준수시	기준용적률×0.2	• 단, 국공유지 현황도로 분할은 제외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전층	준수시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 제외건축연면적)×0.2	• 건축연면적의 20% 이상시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위치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 α=0.5 • 개방형구조 α=1 • 건축법상 설치의무면적은 제외
	쌈지형공지		위치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 α=0.5 • 개방형구조 α=1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 미관지구에 의한 건축선후퇴로 발생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시 제외
	1층부 벽면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5	
대지내통로	공공보행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 α=0.5 • 개방형구조 α=1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건축물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야간경관조명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 건축물 시공 전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받아 설치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건축물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2	• 서울시 보급형옥상녹화기준 준수시
	벽면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0.03	•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내용 준수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등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생태면적률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 기준 준수시
	신·재생에너지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 총 건축공사비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시설비에 투자할 경우 또는 계획 총 에너지사용량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

상한용적률	기부채납시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변경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친환경 인센티브는 100분의 30 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친환경 인센티브인 친환경 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전층권장용도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20%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4. 1층지정용도의 경우는 공용면적(승강기, 계단, 화장실 등 설비시설 포함)을 제외한 바닥면적 70%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5.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으로 결정된 부분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다.
6.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7. 공동개발 등으로 서로 다른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이 적용될 경우 전면도로가 넓은 필지의 인센티브 유형을 적용하며, 도로의 폭원, 성격이 유사한 경우에는 유리한 인센티브 유형을 적용한다.
8.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환경친화 및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 1등급) : 기준용적률 x 0.12 • 우수(그린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 우량(그린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 2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 기준용적률 x 0.25이내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중수도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빗물저류 · 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주차장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 0.05 이내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유형

용도지역	공간 특성	유형	건폐율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계획방향
준주거 지역	간선변 (신이문로, 한천로)	D1	60%	300%	360%	• 획지, 쌈지형공지,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등
		D2	60%	300%	360%	• 공동개발, 쌈지형공지,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등
		D3	60%	300%	360%	• 공동개발, 쌈지형공지, 권장용도 등
	이면부	D4	60%	300%	360%	• 공동개발,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등
		D5	60%	300%	360%	• 공동개발, 권장용도 등
		D6	60%	300%	360%	• 획지, 권장용도 등

▷ 인센티브 유형 (D1)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간선변 (신이문로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획지단위개발, 쌈지형 공지, 건축한계선, 전층권장용도, 1층권장용도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유도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0.01	
	대지 내 공지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개방형구조 : 0.1 피로티구조 : 0.05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5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 제외한 건축연면적)×0.1	
		1층 지정	기준용적률×(지정용도면적/1층바닥면적)×0.15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 인센티브 유형 (D2)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간선변 (신이문로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쌈지형 공지, 권장용도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유도	공동개발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α	1필지 : α=0.01 2필지이상 : α=0.02
		공동개발 (권장)	기준용적률×0.03	
	대지 내 공지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개방형구조 : 0.1 피로티구조 : 0.05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3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 제외한 건축연면적)×0.1	
		1층 지정	기준용적률×(지정용도면적/1층바닥면적)×0.15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 인센티브 유형 (D3)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간선변 (한천로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쌈지형 공지, 권장용도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유도	공동개발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α	1필지 : α=0.01 2필지이상 : α=0.02
		공동개발 (지정)	기준용적률×0.01	
		공동개발 (권장)	기준용적률×0.03	
	대지 내 공지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개방형구조 : 0.1 피로티구조 : 0.05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 제외한 건축연면적) ×0.2	
		1층 지정	기준용적률×(지정용도면적/1층바닥면적)×0.15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 인센티브 유형 (D4)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이면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유도	공동개발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0.01	1필지 : α=0.01 2필지이상 : α=0.02
		공동개발 (지정)	기준용적률×0.01	
		공동개발 (권장)	기준용적률×0.02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0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 제외한 건축연면적)×0.5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 인센티브 유형 (D5)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이면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권장용도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유도	공동개발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α	1필지 : α=0.1 2필지이상 : α=0.2
		공동개발 (지정)	기준용적률×0.01	
		공동개발 (권장)	기준용적률×0.2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 제외한 건축연면적)×0.5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 인센티브 유형 (D6)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이면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획지단위개발, 권장용도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유도	획지 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0.1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 제외한 건축연면적)×0.5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④ 높이계획

위 치		기정		변경		비 고
		기준높이	최고높이	기준높이	최고높이	
간선변	이문로변	50m 이하	60m 이하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한천로변	50m 이하	60m 이하	50m 이하	60m 이하	특별계획구역 해제 필지는 간선/이면에 따라 구분
	신이문로	-	40m 이하	-	40m 이하	
이 면 부		-	30m 이하	-	30m 이하	
특별계획구역1,2,3,4		-	100m 이하	-	-	

■ 높이계획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변경없음)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준높이 완화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조성시1) - 기준높이×(공개공지 등의 면적÷대지면적) • 저층부(5층, 20m이하) 건폐율 40%이하 조성시 - 기준높이×0.1 • 완화차선 조성시 - 기준높이×0.1	
최고높이 완화2)	• 기부채납 - 기준높이 또는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주1)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설치의무면적을 전부 포함
주2)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⑤ 건축물 건축선·배치·형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변경	
배치	벽면 한계선	• 폐지 • 보행통로확보 1개소 신설 (특별계획구역2)	• 특별계획구역2 해제에 따른 벽면한계선 폐지	
	건축 한계선	• 이문로변, 한천로변 : 3m • 신이문로 : 2m • 이면부 : 1~4m	• 한천로변 : 3m • 신이문로 : 2m • 이면부 : 1m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형태	고층부 탑상형 건축물	•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10층이상 건축물의 경우 5층이상 부분에 대하여 고층부 탑상형 권장 • 고층부 탑상형의 경우 고층부의 건폐율은 40%이하 및 장변과 단변의 길이 2분의1 이상	•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10층이상 건축물의 경우 5층이상 부분에 대하여 고층부 탑상형 권장 • 고층부 탑상형의 경우 고층부의 건폐율은 40%이하 및 장변과 단변의 길이 2분의1 이상	
	1층부 형태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연접대지내 기존 건축물의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하여야 함 • 구역내 모든 건축물의 1층개구부 및 1층부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 • 간선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간선도로로 1층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설치해서는 아니됨(단, 부득이한 경우, 1층부 벽면에 조경 및 벽화처리계획을 제출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투시벽 설치 : 간선도로변 1층벽면의 50%이상 • 투시형셔터 설치 : 간선도로변의 1층 설치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연접대지내 기존 건축물의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하여야 함 • 구역내 모든 건축물의 1층개구부 및 1층부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 • 간선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간선도로로 1층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설치해서는 아니됨(단, 부득이한 경우, 1층부 벽면에 조경 및 벽화처리계획을 제출하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투시벽 설치 : 간선도로변 1층벽면의 50%이상 • 투시형셔터 설치 : 간선도로변의 1층 설치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대지내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제어기준		비고
		기정	변경	
대지내 공지	쌈지형 공지	• 최소면적 25㎡, 최소폭 5m로 간선변 및 가각부의 정해진 위치에 조성 •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 전구역 : 4개소(서울시 건축조례상의 공개공지 설치대상은 쌈지형공지 형태로 공개공지 설치)	•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전면공지	• 한천로변, 이문로변 : 3m • 신이문로 : 2m • 이면부 : 1~6m • 공개공지 및 쌈지형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 한천로변 : 3m • 신이문로 : 2m • 이면부 : 1m • 공개공지 및 쌈지형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공개공지	• 서울시 건축조례의 설치대상은 쌈지형공지 형태로 공개공지 설치 • 전면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 서울시 건축조례의 설치대상은 쌈지형공지 형태로 공개공지 설치 • 전면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통로	공공보행 통로	• 특별계획구역지정에 따른 공동개발로 기존 공공보행통로 폐지 • 특별계획구역 2-1과 2-2가 통합개발할 시 공공보행통로 조성 : 폭원 8m	• 폐지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②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 정	변 경	
차량출입불허구간	• 간선도로변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 불허 단, 이면도로에서의 차량출입 불가 필지에 한하여 일부 허용	• 간선도로변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불허	한천로변 신이문로변
(공동)주차출입구	• 차량출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애물 설치 금지 • 이면부에서 주차출입이 불가능한 일부필지에 지정	• 차량출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애물 설치 금지	
주차장 설치방식	-	•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함	
주차장 설치완화1)	-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출입이 불가한 필지의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 100%완화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출입이 가능한 필지 중 주변 여건, 대지 현황 등 고려시 주차출입이 어려운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한천로변 신이문로변

주1) 주차장 설치완화 대상 필지 중 간선·이면간 필지 또는 간선·간선간 필지의 공동개발로 이면도로에서 주차출입이 가능할 경우 주차장 설치완화 미적용

■ 주차장 설치완화시 설치비용 면제 항목

항목	계획내용	비고
주차장 설치비용 면제 항목	• 하단의 5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 준수시 주차장 설치비용 100% 면제하고, 2가지 준수시 주차장 설치비용 50% 면제 (설치비용은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에 따름) ① 간선변 1층부 지정용도 100% 도입시 (공용면적 제외) ② 간선변 건축한계선 1m이상 추가 확보시 ③ 공개공지(쌈지형공지) 설치시 - 설치의무 대상인 경우 : 법적 설치기준의 50% 추가 설치시 - 설치의무 비대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5%이상 또는 25㎡이상 중 큰면적으로 설치시 ④ 개방화장실 설치시 (개방화장실 인지할 수 있는 표지 부착) ⑤ 대지내 또는 건축물내 가로지장물(분전반 등) 수용시	한천로변 신이문로변

주) 상기 항목은 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준높이 완화 항목과 중복계상 불가

③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옥상녹화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2001.10.24)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2001.10.24)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벽면녹화	•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기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	
생태면적률	•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2004.6)' 에 의해 적용할 것을 권장	•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2004.6)' 에 의해 적용할 것을 권장	
옥외광고물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서울시고시2004-158호)" 기준을 준수 • 재정비 촉진지구 등 광고물 관리계획 준수	-	
건축물외관	•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관은 조립식, 무피복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 • 건축물의 외벽 재료는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를 사용	•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관은 조립식, 무피복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 • 건축물의 외벽 재료는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를 사용	
빗물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 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 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신·재생에너지 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 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관한 규칙' 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야간경관조명	• 간선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히는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경우 권장	• 간선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히는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경우 권장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특별계획구역의 총괄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특별계획구역 1	이문동 220-226번지 일대	5,753	감)5,753	-	
폐지	특별계획구역 2	이문동 220-124번지 일대	8,450	감)8,450	-	
폐지	특별계획구역 3	이문동 237-137번지 일대	4,390	감)4,390	-	
폐지	특별계획구역 4	이문동 250-1번지 일대	4,063	감)4,063	-	

■ 특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특별계획구역 1	이문동 220-226번지 일대	• 구역폐지 -감)5,753㎡	• 장기간 개발지연으로 열악한 환경이 가중되고, 사업진행에 대한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미약하여 해제
특별계획구역 2	이문동 220-124번지 일대	• 구역폐지 -감)8,450㎡	• 장기간 개발지연으로 열악한 환경이 가중되고, 사업진행에 대한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미약하여 해제
특별계획구역 3	이문동 237-137번지 일대	• 구역폐지 -감)4,390㎡	• 장기간 개발지연으로 열악한 환경이 가중되고, 사업진행에 대한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미약하여 해제
특별계획구역 4	이문동 250-1번지 일대	• 구역폐지 -감)4,063㎡	• 재정비촉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로 인한 해제

②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 특별계획구역 1 : 폐지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이문동 220-226번지 일대	
면 적			• 5,753㎡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용도지구			-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15%이상 설치(기반시설 순부담비율 기준) • 공공시설 조성후 기부채납(지침도 참조)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A	
		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 300% 이하	
		허용 용적률(%)	• 360% 이하	
		상한 용적률(%)	• 400% 이하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건축물 높이	기준높이	-	
		최고높이	• 100m 이하	
		최고높이 완화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 단,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변 6m	
건축물 형태			• 고층부 탑상형 권장	
교통처리계획			• 주차출입구 지정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간선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허용용적률 360%중 주거복합건물에서는 공동주택 용적률은 250%이하에서, 오피스텔 등 기타용도는 잔여 용적률 이하로 결정한다

■ 특별계획구역 2(2-1. 2-2) : 폐지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이문동 220-124번지 일대	
면 적			• 8,450㎡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용도지구			• 일반미관지구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15%이상 설치(기반시설 순부담비율 기준) • 공공시설 조성후 기부채납(지침도 참조)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A	
		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 300% 이하	
		허용 용적률(%)	• 360% 이하	
		상한 용적률(%)	• 400% 이하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건축물 높이	기준높이	–	
		최고높이	• 100m 이하	
		최고높이 완화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 전의 대지면적)] – 단,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변 및 이면부 3m	
	벽면한계선		• 특별계획구역 2-1, 2-2를 공동개발시 지정	
건축물 형태			• 고층부 탑상형 권장	
교통처리계획			• 간선부에서 차량진출입 금지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간선변 및 이면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쌈지형공지		• 특별계획구역 2-1에 1개소 지정	
	공공보행통로		• 특별계획구역 2-1, 2-2를 공동개발시 지정된 위치에 8m이상으로 조성 – 개별개발시 2-1구역에서 도로로 조성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허용용적률 360%중 주거복합건물에서는 공동주택 용적률은 250%이하에서, 오피스텔 등 기타용도는 잔여 용적률 이하로 결정한다

■ 특별계획구역 3 : 폐지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이문동 237-137번지 일대	
면 적			• 4,390㎡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용도지구			-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15%이상 설치(기반시설 순부담비율 기준) • 공공시설 조성후 기부채납(지침도 참조)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A	
		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 300% 이하	
		허용 용적률(%)	• 360% 이하	
		상한 용적률(%)	• 400% 이하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건축물 높이	기준높이	-	
		최고높이	• 100m 이하	
		최고높이 완화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 단,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변 3m	
건축물 형태			• 고층부 탑상형 권장	
교통처리계획			• 주차출입구 지정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간선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허용용적률 360%중 주거복합건물에서는 공동주택 용적률은 250%이하에서, 오피스텔 등 기타용도는 잔여 용적률 이하로 결정한다

■ 특별계획구역 4 : 폐지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이문동 250-1번지 일대	
면 적			• 4,063㎡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15%이상 설치(기반시설 순부담비율 기준) • 공공시설 조성후 기부채납(지침도 참조)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A	
		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1	
	건폐율(%)		•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준용	
	용적률(%)			
	건축물 높이	기준높이	-	
		최고높이	• 100m 이하	
		최고높이 완화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 단,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변 3m • 이면부 2m~3m	
건축물 형태			• 고층부 탑상형 권장	
교통처리계획			• 간선부에서 차량진출입 금지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간선변 및 이면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대지안의 공지(공개공지, 쌈지형공지,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등)의 위치변경 및 조성방법(신설·폐지 포함)의 변경
3.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4. 지정된 차량출입구 위치변경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신설, 폐지 제외)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변경(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20) 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조서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이문 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이문동 305-151번지 일대	67,183	-	67,183	서고시 2002-143호 (2002.4.30)	
변경		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	동대문구 이문동 305-151번지 일대	•구역명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2012.4.15)으로 제1종·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을 삭제하였으므로 구역명 변경

(2)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계		67,183	-	67,183	100.0	-
주거지역	소계	65,681	-	65,681	97.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2,809	-	22,809	34.0	
	준주거지역	42,872	-	42,872	63.8	
상업지역	소계	1,502	-	1,502	2.2	
	일반상업지역	1,502	-	1,502	2.2	

■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시조사~ 이문동	48,000 (1,967)	2,000 (163)	양측 12	1982.4.22 (서고164호)	이문로변

주)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연장 및 면적임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1. 교통시설

①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2	1,429	19,323	6	1,254	17,285	1	58	1,488	5		550
중로	5	999	16,754	4	941	15,266	1	58	1,488	-		-
소로	7	430	2,569	2	313	2,019	-	-	-	5	117	550

주)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9	20~25	보조 간선	4,000 (168)	휘경지서앞 중1-8호선	번동98-1 대3-39호선	일반 도로		총고시722 (1936.12.26)	완화차로
기정	중로	1	10	21.3	집산 도로	595 (442)	이문동 288-65번지	휘경동 147-6번지	일반 도로		1962.12.8 (건고시 177)	
변경	중로	1	10	21.3	집산 도로	595 (442)	이문동 288-65번지	휘경동 147-6번지	일반 도로			지적선 불일치에 따른 선형일부조정 가감속차로 삭제에 따른 선형변경
기정	중로	1		15~21	집산 도로	273	이문동 304-14	이문동 292-178	일반 도로		서고2002-143 (2002.05.02)	
기정	중로	1	434	20	집산 도로	407 (58)	휘경동 150-26번지	이문동 105-18번지	일반 도로		1976.4.7 (건고 46)	
변경	중로	1	434	20~23	집산 도로	407 (58)	휘경동 150-26번지	이문동 105-18번지	일반 도로			특별계획구역1 해제에 따른 선형변경
기정	중로	2	142	15~20	집산 도로	427 (58)	휘경2동 42-4번지	휘경동 139-27번지	일반 도로		1976.4.7 (건고 46)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중로	2	142	15~20	집산 도로	427 (58)	휘경2동 42-4번지	휘경동 139-27번지	일반 도로			특별계획구역2 축소에 따른 선형변경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13	이문동 85-26번지	이문동 78-6번지	일반 도로		2002.05.02 (서고 2002-143)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65	이문동 82-25번지	이문동 78-10번지	일반 도로			
폐지	소로	1	2	10	국지 도로	65	이문동 82-25번지	이문동 78-10번지	일반 도로			특별계획구역1 해제에 따른 도로폐지
기정	소로	1	3	10~12 (12)	국지 도로	200 (145)	휘경동 154-8번지	휘경동 146-127번지	일반 도로		서고2007-496 ('08.1.7)	
변경	소로	1	3	10~12 (12)	국지 도로	200 (200)	휘경동 154-8번지	휘경동 146-127번지	일반 도로			특별계획구역2변경 (축소)에 따른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1	이문동 305-94번지	이문동 305-93번지	일반 도로		2002.05.02 (서고 2002-143)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11	이문동 305-94번지	이문동 305-93번지	일반 도로		-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반영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45	이문동 309-11번지	이문동 309-3번지	일반 도로		2002.05.02 (서고 2002-143)	
기정	소로	3	5	4	국지 도로	30	이문동 288-63번지	이문동 288-64번지	일반 도로		2002.05.02 (서고 2002-143)	
신설	소로	3	6	4	국지 도로	21	이문동 161-1번지	이문동 154-18번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7	4	국지 도로	10	이문동 78-9번지	이문동 78-8번지	일반 도로			

주) ( )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의 연장 및 면적임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10	중로 1-10	• 선형변경	• 가감속차로 삭제 및 지적선 불일치에 따른 선형변경
중로 1-434	중로 1-434	• 폭원 및 선형 일부 변경 - 폭원 : 20m → 20~23m	• 특별계획구역1 해제에 따른 도로 선형 일부 변경
중로 2-142	중로 2-142	• 선형변경	• 특별계획구역2 변경(축소)에 따른 선형 일부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2	소로 1-2	• 노선폐지	• 특별계획구역1 해제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 1-3	소로 1-3	• 선형 변경	• 특별계획구역2 변경(축소)에 따른 선형 변경
소로 3-1	소로 3-1	• 선형변경	• 동대문구 고시 제2014-83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반영
-	소로 3-6	•신설 - 연장: 21m - 폭원: 4m	• 이문지구 특별계획구역2 변경(축소)에 따라 교차로변 필지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	소로 3-7	• 신설 - 연장 : 10m - 폭원 : 4m	• 외대앞역 인접 필지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 폭4m 결정

②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②	주차장	이문동 306-14일원	724	증)552	1,276	1995.2.24 (동고-8)	
신설	③	주차장	휘경동 165-15 일원	-	증)692	692	-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주차장	• 면적증가 : 724→1,276 = 552㎡	• 특별계획구역2 지정으로 폐지되었던 주차장을 특별계획구역2 변경(축소)으로 주차장 환원
③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692㎡	• 이문지구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주차장 결정

③ 철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②	철도	일반 철도	한강로3가 (용산역)	성북역 도봉구시계	-	25.7km	-	건고64 (78.1.29)	경원선
기정	④	철도	일반 철도	이문동 134, 135번지일대	-	-	-	9,200	서고289 (79.6.30)	이문역

2. 공간시설

①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이문동 135-52일원	2,785 (205)	-	2,785 (205)	서고 2007-496 (2008.1.7)	

주) ( )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의 연장 및 면적임

②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폐지	⑩	휘경공원	어린이공원	휘경동 165-11 일원	1,833	감) 1,833	-	서고 2007-496 (2008.1.7)
기정 폐지	⑮	이문공원	소공원	이문동 82-13 일원	600	감) 600	-	서고 2007-496 (2008.1.7)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⑩	휘경공원	• 시설폐지 - 면적 = 1,833㎡	• 특별계획구역2 변경(축소)에 따른 폐지
⑮	이문공원	• 시설폐지 - 면적 = 600㎡	• 특별계획구역1 해제에 따른 공원 폐지

③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공공공지	이문동 82-45일원	240	-	240	1974.08.06 (서고 1974-108)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최소개발규모

구 분		최소개발규모(㎡)		비 고
		기정	변경	
간선변	이문로변	150	-	• 최소개발규모 폐지
	휘경로변	90	-	
이 면 부		90	-	

② 최대개발규모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기정	변경	
간선변	이문로변	2,000	2,000	-
	휘경로변	1,000	1,000	
이면부		600	600	

주1)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규정 적용
주2) 적용제외
- 기 개발된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공동개발 결정(변경)조서 상 최대개발규모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된 필지

③ 가구 및 획지계획

■ 계획기준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획지 계획	•연접한 동일소유필지로서 기공동개발 된 2이상의 필지 •연접한 동일소유필지로서 기공동개발 되지 않은 2이상의 필지 •개별소유필지로서 기공동개발된 2이상의 필지(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 것만 획지로 계획) •개별소유필지로서 계획적 유도(법적 \최소대지분할 규모이하, 맹지 등)가 필요한 2이상의 필지	•연접한 동일소유의 기 공동개발 필지 중 계획적 유도가 필요한 필지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①	E1	2,445	이문동 288-12대	185	502	
			이문동 288-13대	165		
			이문동 288-14대	152		
②			이문동 288-7대	208	413	
			이문동 288-8대	205		
①	E2	1,521	이문동 288-26대	136	265	
			이문동 288-27대	129		
②			이문동 288-68대	116	123	
			이문동 288-69대	7		
③			이문동 288-23대	116	123	
			이문동 288-24대	7		
①	E3	1,171	이문동 288-36대	218	292	
			이문동 288-82대	58		
			이문동 288-85대	16		
②			이문동 288-33대	21	91	
			이문동 288-73대	40		
			이문동 363-23대	30		
③			이문동 288-84대	3	195	
			이문동 288-87대	19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①	E4	759	이문동 363-17대	132	214	
			이문동 363-21대	59		
			이문동 363-42대	23		
①	E5	1,897	이문동 305-2대	595	691	
			이문동 368-4대	96		
②			이문동 305-151대	651	694	
			이문동 368-6 대	43		
③			이문동 305-152대	496	512	
			이문동 368-7 대	16		
①	E6	1,288	이문동 304-19대	122	403	
			이문동 363-5대	264		
			이문동 363-51 대	17		
②			이문동 304-20대	116	228	
			이문동 304-21대	112		
①	E7	1,248	이문동 304-25대	132	231	
			이문동 304-26대	99		
②			이문동 304-27대	93	357	
			이문동 304-28대	132		
			이문동 304-29대	132		
①	E8	1,249	이문동 288-60대	155	632	
			이문동 288-61대	146		
			이문동 288-65대	331		
②			이문동 288-64대	194	326	
			이문동 288-94대	132		
①	E9	1,266	이문동 288-50대	129	618	
			이문동 288-51대	116		
			이문동 288-52대	33		
			이문동 288-57대	162		
			이문동 288-58대	178		
-	E10	1,620	-	-	-	
①	E11	1,209	이문동 305-60대	142	284	
			이문동 305-72대	142		
-	E12	1,873	-	-	-	
①	E13	4,021	이문동 305-8대	41	205	
			이문동 305-132대	73		
			이문동 305-138대	91		
②			이문동 305-133대	73	146	
			이문동 305-135대	73		
③			이문동 305-147대	10	109	
			이문동 305-154대	9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④	E13	4,021	이문동 306-8도	19	402	
			이문동 306-10대	107		
			이문동 306-11대	58		
			이문동 309-7대	10		
			이문동 309-18대	10		
			이문동 309-20대	99		
			이문동 309-24대	96		
			이문동 309-26도	3		
⑤			이문동 306-12대	62	146	
			이문동 306-13대	84		
⑥			이문동 309-2대	96	390	
			이문동 309-19대	73		
			이문동 309-21대	10		
			이문동 309-10대	9		
			이문동 309-17대	86		
			이문동 309-25대	10		
			이문동 309-11대	10		
			이문동 309-16대	96		
⑦			이문동 309-3대	7	96	
			이문동 309-23대	89		
⑧			이문동 309-8대	10	140	
			이문동 309-9대	1		
			이문동 309-22대	99		
			이문동 309-27도	30		
⑨			이문동 305-95대	83	182	
			이문동 305-96대	20		
			이문동 305-136대	79		
⑩			이문동 305-94대	67	256	
			이문동 305-140 대	86		
			이문동 305-141대	103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①	E1	2,480.4	이문동 288-7	208	416	
			이문동 288-8	208		
①	E2	1,549.6	이문동 288-23	116	123	
			이문동 288-24	7		
②			이문동 288-68	116	123	
			이문동 288-69	7		
③			이문동 288-26	136	265	
			이문동 288-27	129		
-	E3	1,173.7	-	-	-	
①	E4	762.8	이문동 363-17	132	214	
			이문동 363-21	59		
			이문동 363-42	23		
-	E5	1,908.7	-	-	-	
①	E6	1,240.8	이문동 304-19	122	403	
			이문동 363-5	264		
			이문동 363-51	17		
②			이문동 304-20	116	228	
			이문동 304-21	112		
①	E7	1,258.7	이문동 304-25	132	231	
			이문동 304-26	99		
-	E8	1,270.6	-	-	-	
①	E9	1,276.0	이문동 288-50	129	618	
			이문동 288-51	116		
			이문동 288-52	33		
			이문동 288-57	162		
			이문동 288-58	178		
-	E10	1,608.7	-	-	-	
①	E11	1,202.0	이문동 305-60	142	284	
			이문동 305-72	142		
-	E12	1,863.5	-	-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①	E13	3,963.6	이문동 305-94	75	125	
			이문동 305-171	50		
②			이문동 305-8	41	205	
			이문동 305-132	73		
			이문동 305-138	91		
③			이문동 305-133	73	146	
			이문동 305-135	73		
④			이문동 306-12	62	146	
			이문동 306-13	84		
-	E14	2,047.3	-	-	-	특별계획구역1 해제
-	E15	834.4	-	-	-	
-	E16	723.9	-	-	-	
-	E17	1,270.1	-	-	-	
①	E18	860.8	이문동 77-13	380	864	
			이문동 77-16	484		
-	E19	244.7	-	-	-	
-	E20	411.0	-	-	-	특별계획구역2 변경 (구역축소)
①	E21	540.4	휘경동 146-114	97	127	
			휘경동 163-19	30		
②			휘경동 163-15	36	115	
			휘경동 163-20	79		
①	E22	759.0	휘경동 163-16	139	172	
			휘경동 163-22	33		
-	E23	341.0	-	-	-	
-	E24	1,369.5	-	-	-	
	E25	596.4				

주) cad구적 면적임

④ 공동개발계획

■ 계획기준

구 분	계획기준		비 고
	기 정	변 경	
공동개발(지정)	-	•획지계획이 지정되지 않은 연접한 동일소유 필지로서 기 공동개발 된 2이상의 필지 중 다른 소유 필지와 공동개발(권장)으로 계획된 필지 •연접한 동일소유 필지로서 미 공동개발 된 2이상의 필지	
공동개발(권장)	•적정규모 · 정형화 · 이면도로에서의 주 차출입유도 등을 계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접한 개별소유필지로서 계획적 유도(부정형·세장형, 과소필지, 맹지 등)가 필요한 2이상의 필지 •건축선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단일 필지의 건축효용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 필지와 연접한 2이상의 필지 •도시계획시설 잔여부지와 연접한 필지	
자율적 공동개발	-	•연접한 2이상의 필지 (공동개발 지정/권장 계획된 필지 포함 가능)	

■ 공동개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고
		동명	지번	필지	계	
신설	E3	이문동	288-23	21	91	· 공동개발(지정)
			288-33	40		
			288-73	30		
신설	E3	이문동	288-84	3	195	· 공동개발(지정)
			288-87	192		
기정	E3	이문동	288-80	8	69	· 공동개발(권장)
			288-81	61		
신설	E3	이문동	288-36	218	292	· 공동개발(지정)
			288-85	16		
			288-82	58		
신설	E3	이문동	288-37	181	182	· 공동개발(권장)
			288-83	1		
신설	E5	이문동	305-152	496	512	· 공동개발(지정)
			368-7	16		
신설	E6	이문동	363-7	112	114	· 공동개발(권장) · 363-48(구적면적)
			363-48	2		
기정	E6	이문동	304-15	96	201	· 공동개발(권장)
			363-2	105		

구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고
		동명	지번	필지	계	
변경			304-15	96	96	· 단독개발
			363-2	105	105	· 단독개발
신설	E7	이문동	304-28	132	357	· 304-28, 304-29는 공동개발(지정) · 304-27은 공동개발(권장)
			304-29	132		
			304-27	93		
신설	E10	이문동	288-43	162	172	· 공동개발(권장)
			288-67	10		
신설	E10	이문동	288-41	178	350	· 공동개발(지정)
			288-42	172		
기정	E11	이문동	305-61	141	283	· 공동개발(권장)
			305-71	142		
변경			305-61	141	141	· 단독개발
			305-71	142	142	· 단독개발
기정	E11	이문동	305-62	136	278	· 공동개발(권장)
			305-70	142		
변경			305-62	136	136	· 단독개발
			305-70	142	142	· 단독개발
기정	E12	이문동	305-92	93	169.6	· 공동개발(권장) · 305-93(구적면적)
			305-93	76.6		
변경			305-92	93	141.1	· 공동개발(권장) · 305-93(구적면적) – 도로편입(감_28.5㎡)
			305-93	48.1		
기정	E13	이문동	305-63	111	240	· 공동개발(권장)
			305-69	129		
변경			305-63	111	111	· 단독개발
			305-69	129	129	· 단독개발
기정	E13	이문동	305-142	185	344	· 공동개발(권장)
			306-4	159		
변경			305-142	185	185	· 단독개발
			306-4	159	159	· 단독개발
기정	E13	이문동	305-64	104	223	· 공동개발(권장)
			305-68	119		
변경			305-64	104	104	· 단독개발
			305-68	119	119	· 단독개발
기정	E13	이문동	305-65	196	312	· 공동개발(권장)
			305-67	116		
변경			305-65	196	196	· 단독개발
			305-67	116	116	· 단독개발

구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고
		동명	지번	필지	계	
신설	E13	이문동	305-140	86	189	· 공동개발(권장)
			305-141	103		
신설	E13	이문동	305-95	83	182	· 공동개발(권장)
			305-96	20		
			305-136	79		
신설	E13	이문동	305-147	10	109	· 공동개발(권장)
			305-154	99		
신설	E13	이문동	309-17	86	96	· 공동개발(권장)
			309-25	10		
신설	E14	이문동	78-9	53.3	55.3	· 공동개발(권장) · 78-9(구적면적)
			82-17	2		
신설	E14	이문동	78-10	59.4	62.4	· 공동개발(권장) · 78-10(구적면적)
			82-18	3		
신설	E14	이문동	78-11	95.8	103.8	· 공동개발(권장) · 78-11(구적면적)
			82-19	8		
신설	E15	이문동	78-23	10	53	· 공동개발(권장)
			78-36	43		
신설	E15	이문동	82-39	81	85	· 공동개발(권장)
			82-40	4		
신설	E15	이문동	82-41	90	160	· 공동개발(권장)
			82-42	70		
신설	E16	이문동	78-14	14.8	90.8	· 공동개발(권장) · 78-14(구적면적)
			78-15	76		
신설	E17	이문동	77-4	152	213.5	· 77-8, 77-9, 77-10은 공동개발(지정) · 77-4는 공동개발(권장) · 77-10(구적면적) · 77-9(구적면적) · 77-8(구적면적)
			77-8	14.6		
			77-9	23.8		
			77-10	23.1		
신설	E19	이문동	77-25	81	158	· 공동개발(지정)
			85-52	77		
신설	E24	휘경동	161-10	1,023.4	1,363.4	· 공동개발(권장) · 161-10(구적면적) · 146-43(구적면적) · 162-8, 10, 11(대장면적) ※최대개발규모 제외
			146-43	9		
			162-8	89		
			162-10	76		
			162-11	166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건축물용도

■ 기정

● 불허용도

구분	도면표시	전층
불허용도	1 (간선변)	• 미관지구내 불허용도(미관지구에 해당하는 획지에 한함) •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관광호텔 제외) • 단독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2 (이면부)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 권장용도

구분	도면표시	전층
권장용도1)	A (간선변)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근린생활시설중 외국어학원, 외국전문 서점 · 음식점 • 일용품 판매점 중 외국문화관련 악세사리 소매점 용도
	B (이면부)	

주1) 권장용도의 경우 전층권장용도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2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봄

■ 변경

● 불허용도

구분	도면표시		용도
불허용도	1 (간선변)	전층	•미관지구내 불허용도(미관지구에 한함)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에 한함) •장례식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공장 및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1층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2 (이면부)	전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에 한함) •장례식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공장 및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라 운용

● 권장용도

구분	도면표시		용도
권장용도[1]	A (간선변)	전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의료시설 중 병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2)(1층 근린생활시설 도입시), 학원(입시학원 제외), 연구소, 도서관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B (이면부)	전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2)(1층 근린생활시설 도입시), 학원(입시학원 제외), 연구소, 도서관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주1) 권장용도의 경우 전층권장용도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2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봄
주2)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20%이상) 설치시 도입 가능

● 지정용도

구분	도면표시		용도
지정용도1)	a (간선변)	1층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 중 상점

주1) 공용면적(승강기, 계단, 화장실 등 설비시설 포함)을 제외한 바닥면적 70%이상 설치시 준수된 것으로 봄
※ 지정용도 중 일부 용도만 도입가능

② 건축물의 개발밀도

■ 건폐율계획 (변경없음)

구분		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0%이하	60%이하	건폐율 변경은 없으나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 적용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0%이하	60%이하	

주1)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
주2) 주차장은 주차장 관련 법률에 따름

■ 용적률계획

위 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준주거지역	간선도로변	300%이하	360%이하	400%이하	300%이하	360%이하	400%이하	-
	이면부							
일반상업지역	이문로변	600%이하	800%이하	-	600%이하	800%이하	법정용적률 2배이하	

주1)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
주2) 준주거 지역의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산식에 따르며, 조례 개정시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주3)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기존 준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 모두 적용. 단, 준주거지역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주4) 준주거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주거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중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말함

주5)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내 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방법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배분	
			300%	비주거건립
준주거지역	300%	360%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α/β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beta-\alpha)/\beta$
			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	
일반상업지역	600%	360%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7/10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3/10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용도용적제 적용	

주6) 상업지역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준용
주7) 주차장은 주차장 관련 법률에 따름

③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기정

구분		완화조건	산정방식
획지에 관한사항	1. 규제적 공동건축	• 대지의 분할제한(시건축조례52조) 미달필지들간의 공동건축의 경우로 이를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2
		• 대지의 분할제한(시건축조례52조)미달필지들과 그러하지 아니한 필지간의 공동건축의 경우 이를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3
		• 대지의 분할제한(시건축조례52조)미달필지가 아닌 필지간에 규제에 의해 공동건축이 지정된 경우 이를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2. 선택적 공동건축	• 공동건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7
	3. 대지분할	• 대지분할 규제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3
	4. 맞벽건축	• 1·2·3항의 맞벽 건축시	공동건축인센티브 × 1/2
용도에 관한사항	5. 권장용도	• 권장용도 수용시(연면적의 5%이상)	(권장용도면적÷건축연면적) × 0.2 × 기준용적률
획지내 공지에 관한사항	6. 공개공지	•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 설치시	[{(제공면적-공개공지설치의무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률] × 1.0
		• 대지내조경 및 공개공지(건축법 제67조 설치대상 이외)를 쌈지공원형태로 조성시(단, 불하면적에 의한 쌈지공원 조성시 조성면적 제외)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률}×1.5
		• 쌈지공원 위치준수시	15%
	7. 전면공지	• 전면공지를 보도로 조성시	{(제공면적÷대지면적) × 기준 용적률}×1.0
		• 전면공지를 차도로 조성시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 용적률}×1.5
보행 동선에 관한사항	8.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조성시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 용적률}×1.5
	9. 지하연결통로 (지하콘크스등)	• 지하연결통로 조성시	30%
주차 및 차량동선에 관한사항	10. 공동주차 출입구	• 주차출입구를 인접필지와 공동으로 설치시	기준용적률 × 0.05
	11. 공동주차통로	• 주차통로를 공동으로 설치시	기준용적률 × 0.05
	12. 공동주차장	• 주차장을 인접필지와 공동으로 설치시	기준용적률 × 0.1
외관에 관한사항	13. 조명	• 야간조명 설치시(의릉길 및 한천로변)	15%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사항	14. 투수성포장	• 획지내 투수성바닥처리(포장이 아닌 흙, 잔디등)에 대하여 부여	15%
	15. 중수도시스템	• 중수도시스템 설치시	15%

■ 변경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친환경 인센티브는 100분의 30 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친환경 인센티브인 친환경 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전층권장용도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20%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4. 1층지정용도의 경우는 공용면적(승강기, 계단, 화장실 등 설비시설 포함)을 제외한 바닥면적 70%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5.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으로 결정된 부분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다.
6.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7. 공동개발 등으로 서로 다른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이 적용될 경우 전면도로가 넓은 필지의 인센티브 유형을 적용하며, 도로의 폭원, 성격이 유사한 경우에는 유리한 인센티브 유형을 적용한다.
8.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환경친화 및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 1등급) : 기준용적률 x 0.12 • 우수(그린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 우량(그린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 2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 기준용적률 x 0.25이내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중수도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빗물저류 · 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주차장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 0.05 이내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유형

용도지역	공간 특성	유형	건폐율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계획방향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간선변 (이문로, 휘경로)	D1	60%	600%	800%	• 획지계획, 쌈지형공지, 권장용도 등
				300%	360%	
		D2	60%	600%	800%	• 공동개발, 쌈지형공지,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등
				300%	360%	
		D3	60%	300%	360%	• 공동개발, 쌈지형공지,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등
		D4	60%	300%	360%	• 획지계획, 쌈지형공지,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등
준주거지역	이면부	D5	60%	300%	360%	• 공동개발,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등
		D6	60%	300%	360%	• 공동개발, 권장용도 등
		D7	60%	300%	360%	• 획지계획,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등
		D8	60%	300%	360%	• 획지계획, 권장용도 등
	간선변	특별계획구역2	60%	300%	360%	• 건축한계선 등

▷ 인센티브 유형 (D1)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간선변 (이문로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600%/800%,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획지계획, 쌈지형공지, 권장용도 등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획지 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0.01	
	대지 내 공지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개방형 구조 : α=1.0 필로티 구조 : α=0.5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 제외한 건축연면적) ×0.2	
		1층 지정	기준용적률×(지정용도면적/1층바닥면적)×0.2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 인센티브 유형 (D2)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간선변 (이문로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600%/800%,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쌈지형공지,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α	1필지 : α=0.02 2필지이상 : α=0.03
	대지 내 공지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개방형 구조 : α=0.5 필로티 구조 : α=0.25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5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 제외한 건축연면적)×0.2	
		1층 지정	기준용적률×(지정용도면적/1층바닥면적)×0.25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 인센티브 유형 (D3)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간선변 (휘경로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쌈지형공지,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α	1필지 : α=0.01 2필지이상 : α=0.02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0.01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0.02	
	대지 내 공지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개방형 구조 : α=0.2 필로티 구조 : α=0.1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3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 제외한 건축연면적)×0.1	
		1층 지정	기준용적률×(지정용도면적/1층바닥면적)×0.15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 인센티브 유형 (D4)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간선변 (휘경로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쌈지형공지,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획지 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0.01	
	대지 내 공지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개방형 구조 : α=0.2 필로티 구조 : α=0.1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3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 제외한 건축연면적) ×0.1	
		1층 지정	기준용적률×(지정용도면적/1층바닥면적)×0.15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 인센티브 유형 (D5)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이면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α	1필지 : α=0.02 2필지이상 : α=0.03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0.01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0.03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6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 제외한 건축연면적) ×0.6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 인센티브 유형 (D6)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이면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권장용도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α	1필지 : α=0.1 2필지이상 : α=0.15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0.15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 제외한 건축연면적)×0.7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 인센티브 유형 (D7)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이면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획지계획,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획지 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0.01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0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 제외한 건축연면적)×0.5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 인센티브 유형 (D8)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이면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권장용도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획지 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0.01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 제외한 건축연면적) ×0.8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 인센티브 유형 (특별계획구역2)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이면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건축한계선 등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0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④ 높이계획

위 치		기정		변경		비 고
		기준높이	최고높이	기준높이	최고높이	
간선변	이문로	50m 이하	60m 이하	50m 이하	60m 이하	특별계획구역 해제 필지는 간선/이면에 따라 구분
	휘경로	-	40m 이하	-	40m 이하	
이면부		-	30m 이하	-	30m 이하	
특별계획구역1		-	100m 이하	-	-	
특별계획구역2		-	100m 이하	-	70m 이하	

■ 높이계획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변경없음)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준높이 완화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조성시1) - 기준높이×(공개공지 등의 면적÷대지면적) • 저층부(5층, 20m이하) 건폐율 40%이하 조성시 - 기준높이×0.1 • 완화차선 조성시 - 기준높이×0.1	
최고높이 완화2)	• 기부채납 - 기준높이 또는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주1)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설치의무면적을 전부 포함
주2)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⑤ 건축물 건축선·배치·형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배치	벽면 한계선	• 보행통로 확보가 필요한 지역, 저층부 상업시설 전용몰 형성지역 도로중심에서 3m	• 벽면한계선 폐지 및 건축한계선으로 변경	
	건축 한계선	• 이문로변, 휘경로변 3m • 이면부 도로 및 통로개설시 도로중심에서 2~3m	• 이문로변, 휘경로변 : 2~3m • 이면부 1~3m	
형태	색채 및 재료	• 폭20m이상 가로에 면한 대지의 신축시 가로변의 기존건물과 형태, 재료, 색채조화 권장	• 폭20m이상 가로에 면한 대지의 신축시 가로변의 기존건물과 형태, 재료, 색채조화 권장	
	고층부 탑상형 건축물	•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10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5층이상 부분에 대하여 고층부 탑상형 권장 • 고층부 탑상형의 경우 고층부의 건폐율은 40%이하 및 장변과 단변의 길이 2분의1 이상	•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10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5층이상 부분에 대하여 고층부 탑상형 권장 • 고층부 탑상형의 경우 고층부의 건폐율은 40%이하 및 장변과 단변의 길이 2분의1 이상	
	1층부 형태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연접대지내 기존 건축물의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하여야 함 • 구역내 모든 건축물의 1층개구부 및 1층부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 • 간선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간선도로로 1층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설치해서는 아니됨(단, 부득이한 경우, 1층부 벽면에 조경 및 벽화처리계획을 제출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투시벽 설치 : 간선도로변 1층벽면의 50%이상 • 투시형 셔터 설치 : 간선도로변의 1층 설치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연접대지내 기존 건축물의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하여야 함 • 구역내 모든 건축물의 1층개구부 및 1층부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 • 간선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간선도로로 1층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설치해서는 아니됨(단, 부득이한 경우, 1층부 벽면에 조경 및 벽화처리계획을 제출하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투시벽 설치 : 간선도로변 1층벽면의 50%이상 • 투시형 셔터 설치 : 간선도로변의 1층 설치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대지내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제 어 기 준		비고
		기정	변경	
대지내 공지	쌈지형 공지	• 최소면적 25㎡, 최소폭 5m로 간선변 및 가각부의 정해진 위치에 조성 •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 전구역 : 11개소 (서울시 건축조례상의 공개공지 설치대상은 쌈지형공지 형태로 공개공지 설치)	• 최소면적 25㎡, 최소폭 5m로 간선변 및 가각부의 정해진 위치에 조성 •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 전구역 : 7개소 (서울시 건축조례상의 공개공지 설치대상은 쌈지형공지 형태로 공개공지 설치)	이문로변 휘경로변
	전면공지	• 이문로변, 휘경로변 : 3m • 이면부 : 1~2m • 공개공지 및 쌈지형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 이문로변, 휘경로변 : 2~3m • 이면부 1~3m • 공개공지 및 쌈지형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결정도 참조
	공개공지	• 서울시 건축조례상의 공개공지 설치대상은 쌈지형 공지형태로 공개공지 설치 • 전면공지 및 쌈지형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 서울시 건축조례상의 공개공지 설치대상은 쌈지형 공지형태로 공개공지 설치 • 전면공지 및 쌈지형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결정도 참조
통로	공공보행 통로	• 최소 2m 이상(벽면한계선과 연동)	• 폐 지	결정도 참조
	보차혼용 통로	• 최소 4m 이상	• 폐 지	현황도로로 사용중
	보행자 전용통로	• 기존 사도를 보행전용으로 운영	• 폐 지	결정도 참조
	보행자 우선도로	• 대학가 가로변 활동 수용공간 조성	• 폐 지	결정도 참조

②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 정	변 경	
차량출입불허구간	• 간선도로변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 불허 단, 이면도로에서의 차량출입 불가 필지에 한하여 일부 허용	• 간선도로변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 불허	결정도 참조
(공동)주차출입구	• 간선변 연접한 2필지의 공동주차출입 유도하여 간선변 접속 최소화	• 차량출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애물 설치 금지	결정도 참조
주차장 설치방식	• 이면부 영세필지의 공동주차장 설치 유도 • 차량통행이 어려운 4m 도로변 영세필지의 경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적용	•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함	-
주차장 설치완화1)	-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출입이 불가한 필지의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 100%완화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출입이 가능한 필지 중 주변 여건, 대지 현황 등 고려시 주차출입이 어려운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이문로변 휘경로변

주1) 주차장 설치완화 대상 필지 중 간선·이면간 필지 또는 간선·간선간 필지의 공동개발로 이면도로에서 주차출입이 가능할 경우 주차장 설치완화 미적용

■ 주차장 설치완화시 설치비용 면제 항목

항목	계획내용	비고
주차장 설치비용 면제 항목	• 하단의 5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 준수시 주차장 설치비용 100% 면제하고, 2가지 준수시 주차장 설치비용 50% 면제 (설치비용은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에 따름) ① 간선변 1층부 지정용도 100% 도입시 (공용면적 제외) ② 간선변 건축한계선 1m이상 추가 확보시 ③ 공개공지(쌈지형공지) 설치시 - 설치의무 대상인 경우 : 법적 설치기준의 50% 추가 설치시 - 설치의무 비대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5%이상 또는 25㎡이상 중 큰면적으로 설치시 ④ 개방화장실 설치시 (개방화장실 인지할 수 있는 표지 부착) ⑤ 대지내 또는 건축물내 가로지장물(분전반 등) 수용시	이문로변 휘경로변

주) 상기 항목은 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준높이 완화 항목과 중복계상 불가

③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 정	변 경	
옥상녹화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2001.10.24)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2001.10.24)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벽면녹화	•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기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	
생태면적률	•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2004.6)' 에 의해 적용할 것을 권장	•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2004.6)' 에 의해 적용할 것을 권장	
옥외광고물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서울시고시2004-158호)" 기준을 준수	-	
건축물외관	•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관은 조립식, 무피복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 • 건축물의 외벽 재료는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를 사용	•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관은 조립식, 무피복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 • 건축물의 외벽 재료는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를 사용	
빗물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 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 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신·재생에너지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 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관한 규칙' 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야간경관조명	• 간선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히는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경우 권장	• 간선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히는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경우 권장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특별계획구역의 총괄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특별계획구역 1	이문동 77-16번지 일대	7,950	감)7,950	-	
변경	특별계획구역 2	휘경동 161-37번지 일대	11,656	감)6,356.4	5,299.6	•세부개발계획수립중

■ 특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특별계획구역 1	이문동 77-16번지 일대	• 구역폐지 -감)7,950㎡	• 장기간 개발지연으로 열악한 환경이 가중되고, 사업진행에 대한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미약하여 해제
특별계획구역 2	휘경동 161-37번지 일대	• 구역축소 -5,299.6㎡ : 감)6,356.4㎡	• 역세권중심지로서 지역환경개선과 촉진계획 실현(외대역동로)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을 요구하는 필지를 중심으로 변경

②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 특별계획구역 1 : 폐지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동대문구 이문동 77-16번지 일대	
면 적			• 7,950㎡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			-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15%이상 설치(기반시설 순부담비율 기준) • 공공시설 조성후 기부채납(지침도 참조)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 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1	
		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A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 300% 이하	
		허용 용적률(%)	• 360% 이하	
		상한 용적률(%)	• 400% 이하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건축물 높이	최고높이	• 100m 이하	
		최고높이 완화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 전의 대지면적)] - 단,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건축한계선		• 외대역동길변 : 10m • 휘경로 · 이면도로변 : 3m • 소공원변 : 2m	
건축물 형태			• 고층부 탑상형 권장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에서 차량출입불허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공공공지		• 간선변 및 이면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쌈지형 공지		• 지정된 위치에 우선 조성(서울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지정대상일 경우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 적용)	
	소공원/도로		• 지침도에서 지정한 위치에 조성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허용용적률 360%중 주거복합건물에서는 공동주택 용적률은 250%이하에서, 오피스텔 등 기타용도는 잔여 용적률 이하로 결정한다

■ 특별계획구역 2 : 기정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동대문구 휘경동 161-10번지 일대	
면 적			• 11,656㎡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			-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15%이상 설치(기반시설 순부담비율 기준) • 공공시설 조성후 기부채납(지침도 참조)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 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1	
		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A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 300% 이하	
		허용 용적률(%)	• 360% 이하	
		상한 용적률(%)	• 400% 이하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건축물 높이	최고높이	• 100m 이하	
		최고높이 완화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 단,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건축한계선		• 외대역동길변 : 10m • 휘경로 · 이면도로변 : 3m • 공원변 : 2m	
건축물 형태			• 고층부 탑상형 권장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에서 차량출입불허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공공공지		• 간선변 및 이면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쌈지형 공지		• 지정된 위치에 우선 조성(서울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지정대상일 경우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 적용)	
	소공원/도로		• 지침도에서 지정한 위치에 조성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허용용적률 360%중 주거복합건물에서는 공동주택 용적률은 250%이하에서, 오피스텔 등 기타용도는 잔여 용적률 이하로 결정한다

■ 특별계획구역 2 : 변경(세부개발계획 준용)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동대문구 휘경동 161-37번지 일대	
면 적			• 5,299.6㎡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			-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15%이상 설치(기반시설 순부담비율 기준) • 공공시설 조성후 기부채납(지침도 참조)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 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1	
		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A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 300% 이하	
		허용 용적률(%)	• 360% 이하	
		상한 용적률(%)	• 400% 이하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건축물 높이	최고높이	• 70m 이하	
		최고높이 완화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 단,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건축한계선		• 외대역동로변 : 2m • 휘경로변 : 3m • 이면부 : 2m	
건축물 형태			• 고층부 탑상형 권장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에서 차량출입불허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공공공지		• 간선변 및 이면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쌈지형 공지		• 지정된 위치에 우선 조성(서울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지정대상일 경우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 적용)	
	소공원/도로		• 지침도에서 지정한 위치에 조성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허용용적률 360%중 주거복합건물에서는 공동주택 용적률은 250%이하에서, 오피스텔 등 기타용도는 잔여 용적률 이하로 결정한다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대지안의 공지(공개공지, 쌈지형공지,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등)의 위치변경 및 조성방법(신설·폐지 포함)의 변경 3.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4. 지정된 차량출입구 위치변경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신설, 폐지 제외)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변경(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계획 내용은「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도서」에 명시

6. 관계 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도서」참조 : 생략
(비치한 도서와 같음)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 2133-7228)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02) 2127-4947)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도면]

■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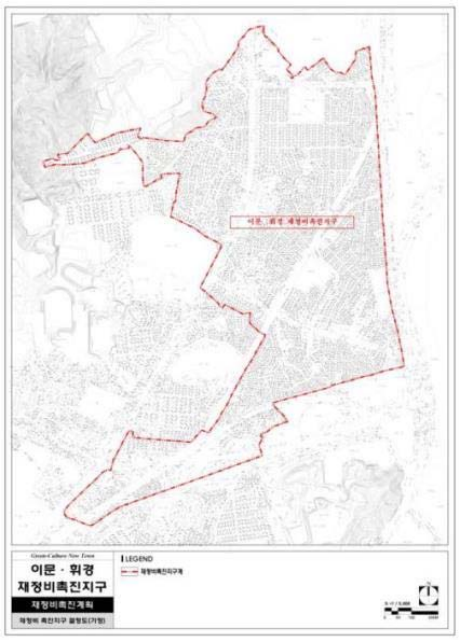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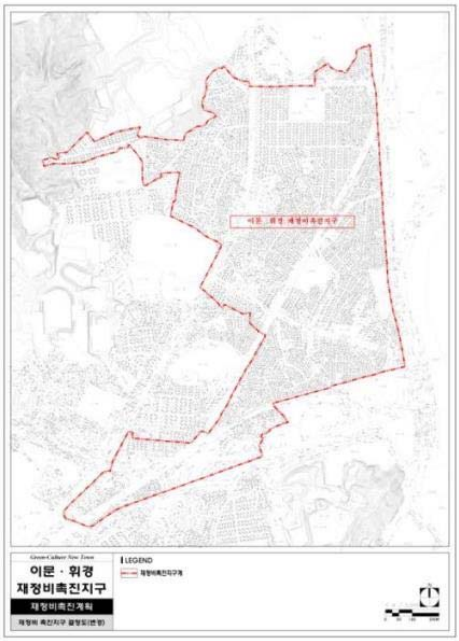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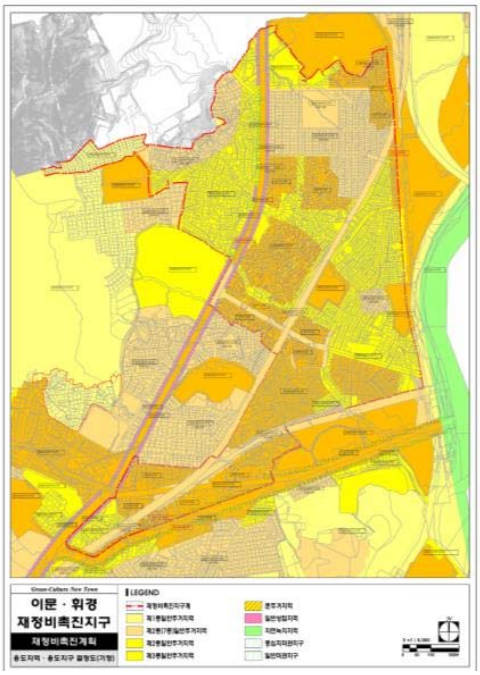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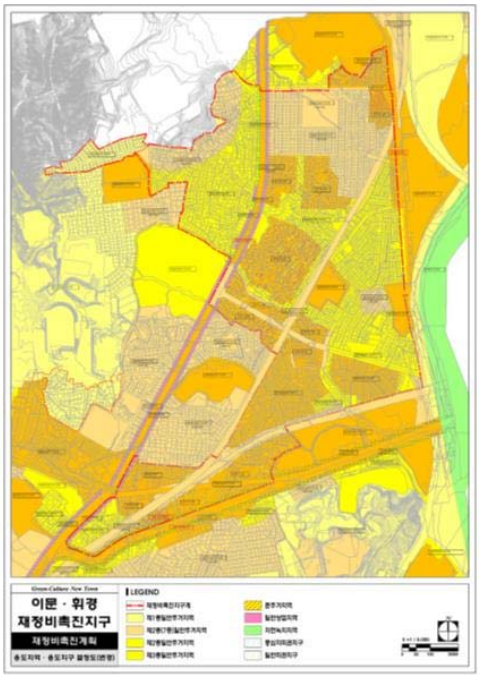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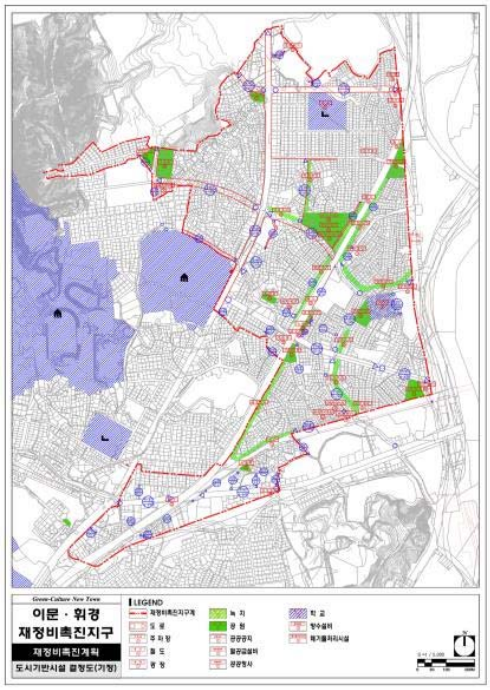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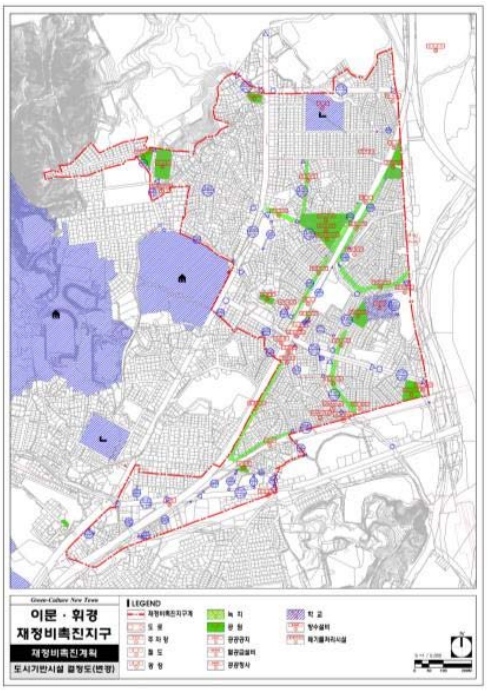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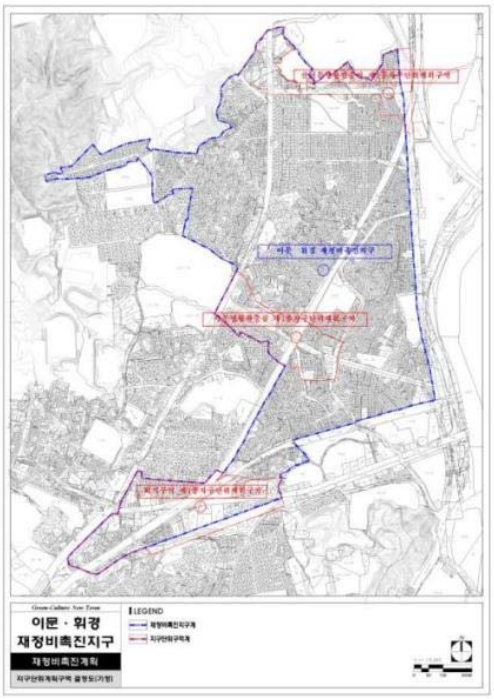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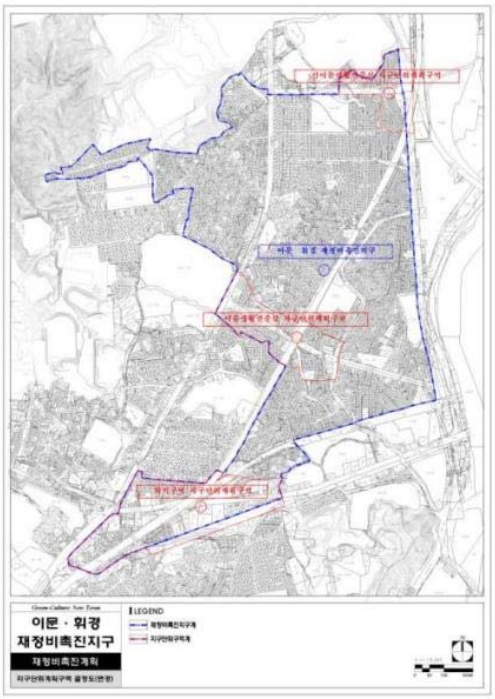

[신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면]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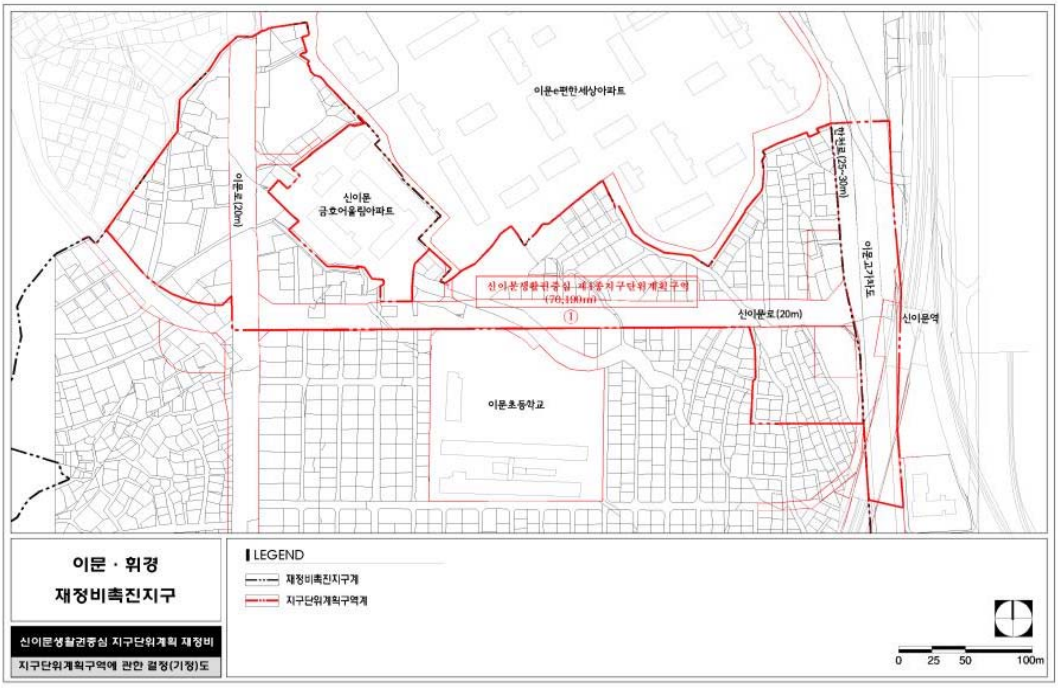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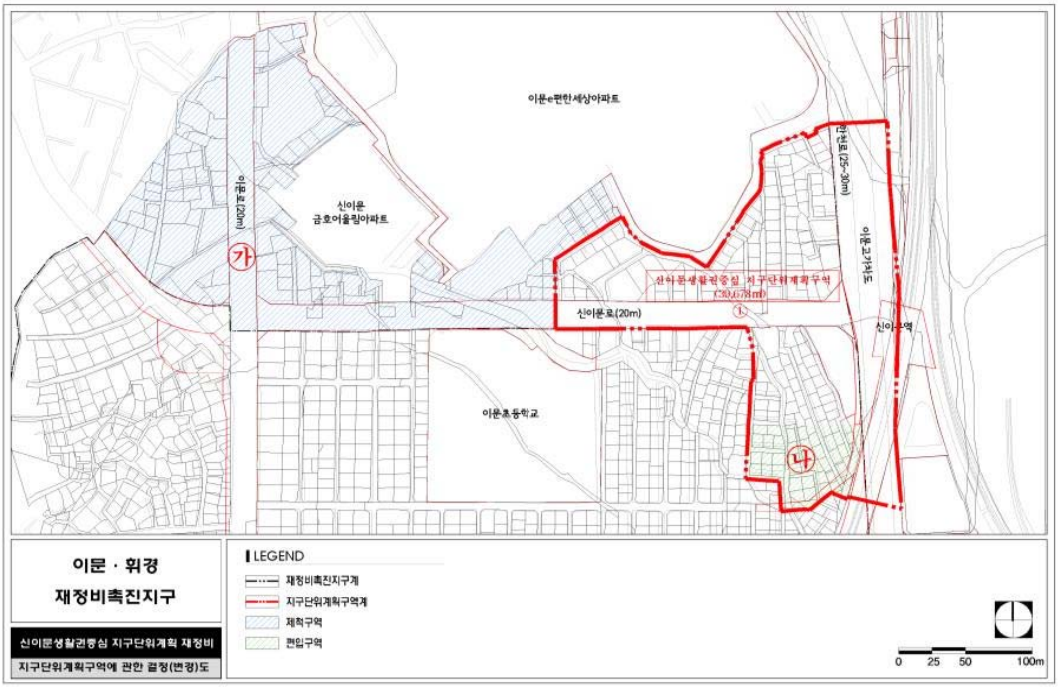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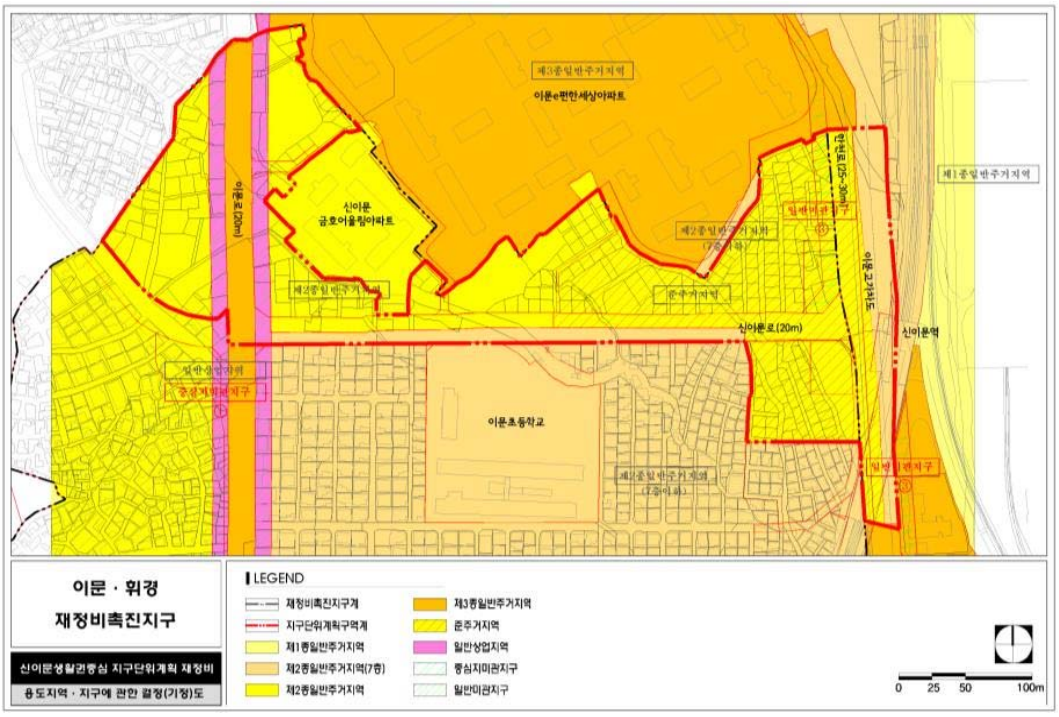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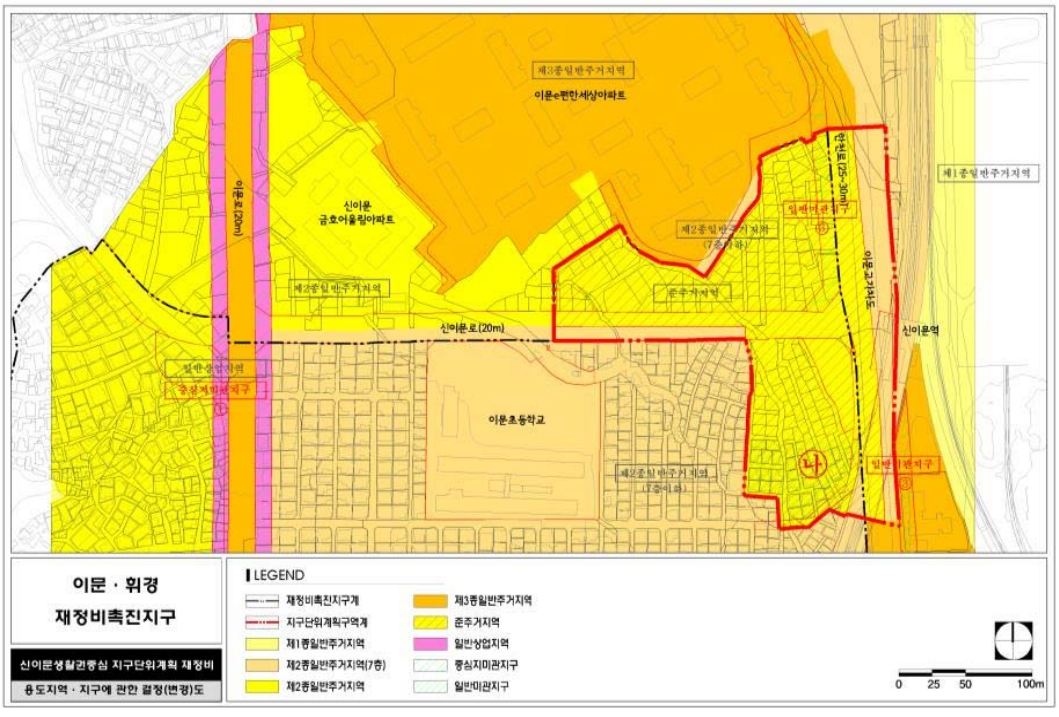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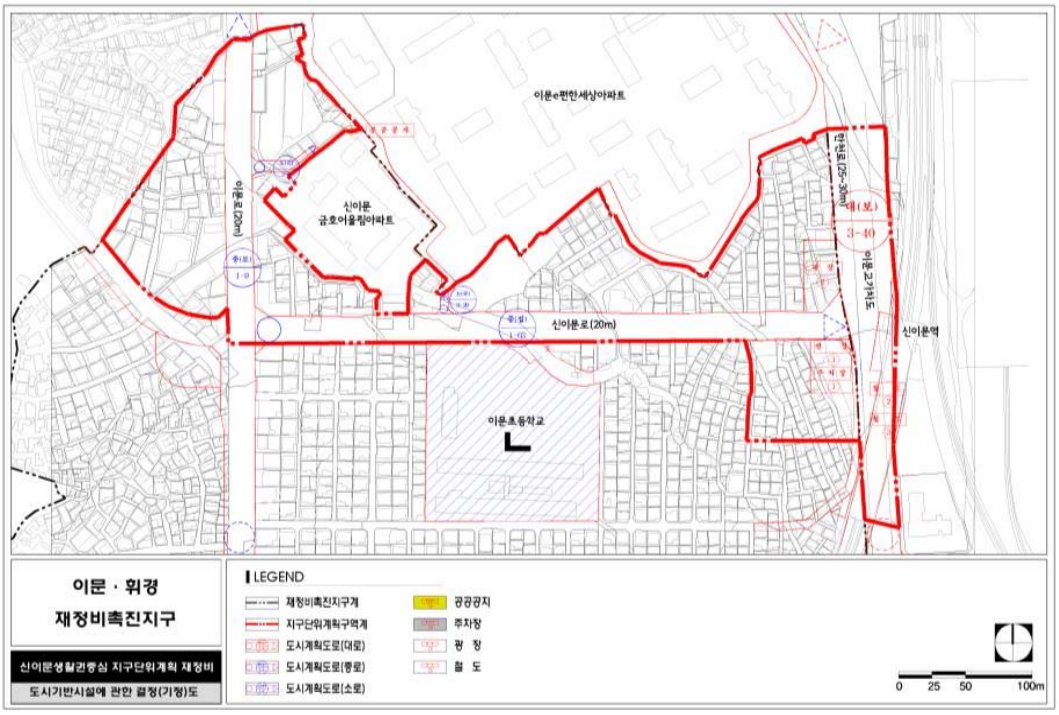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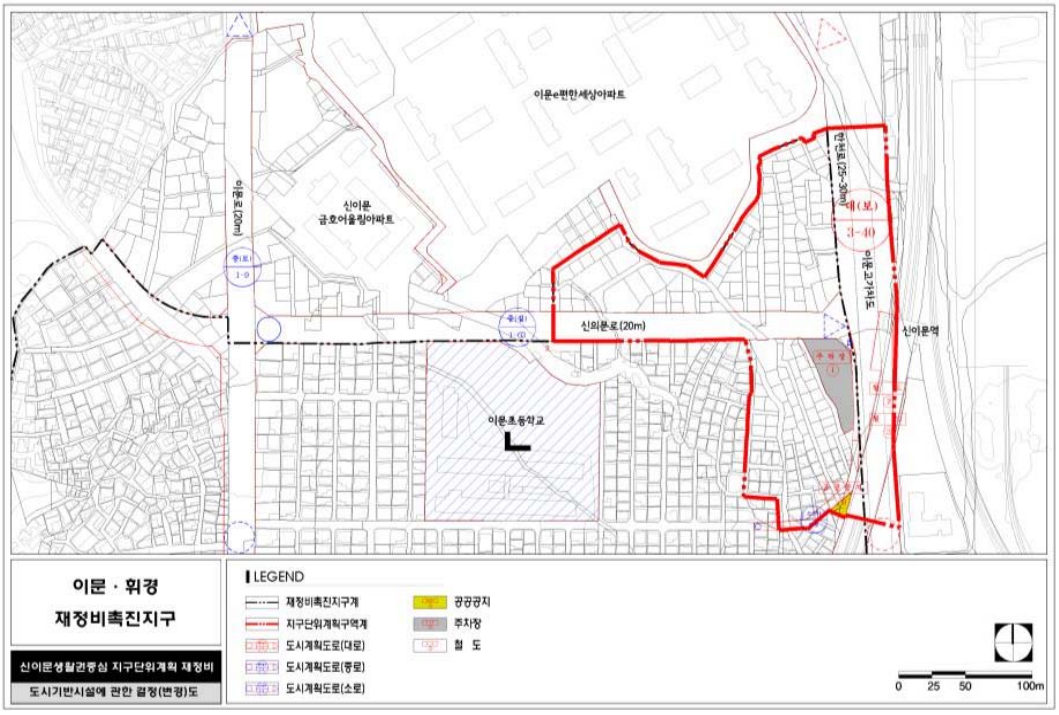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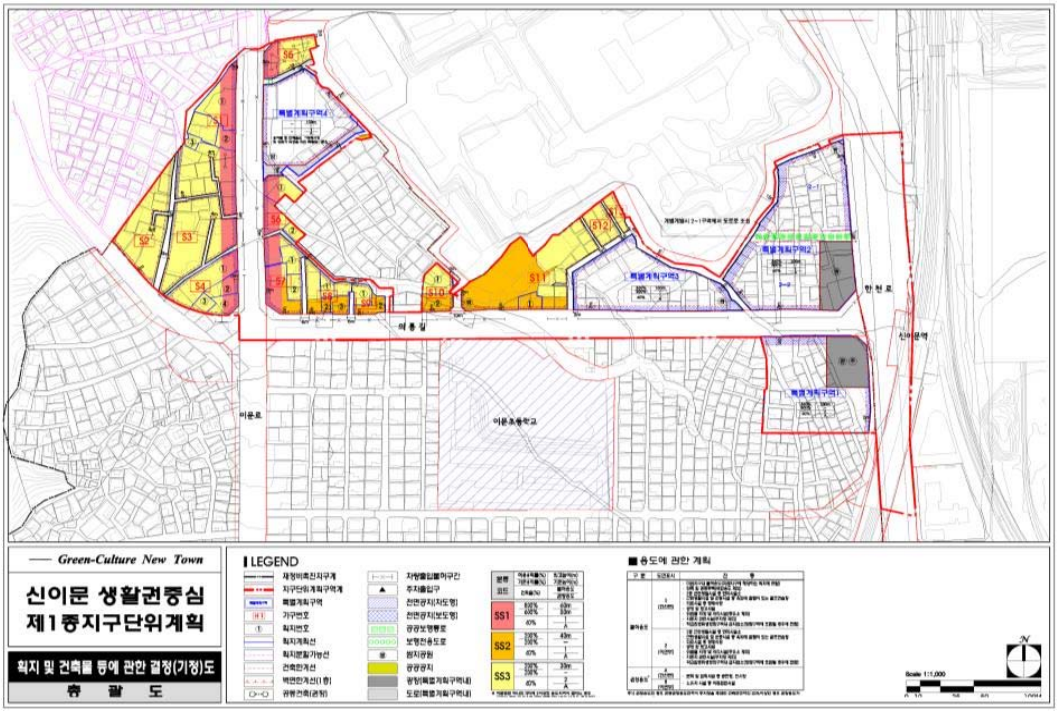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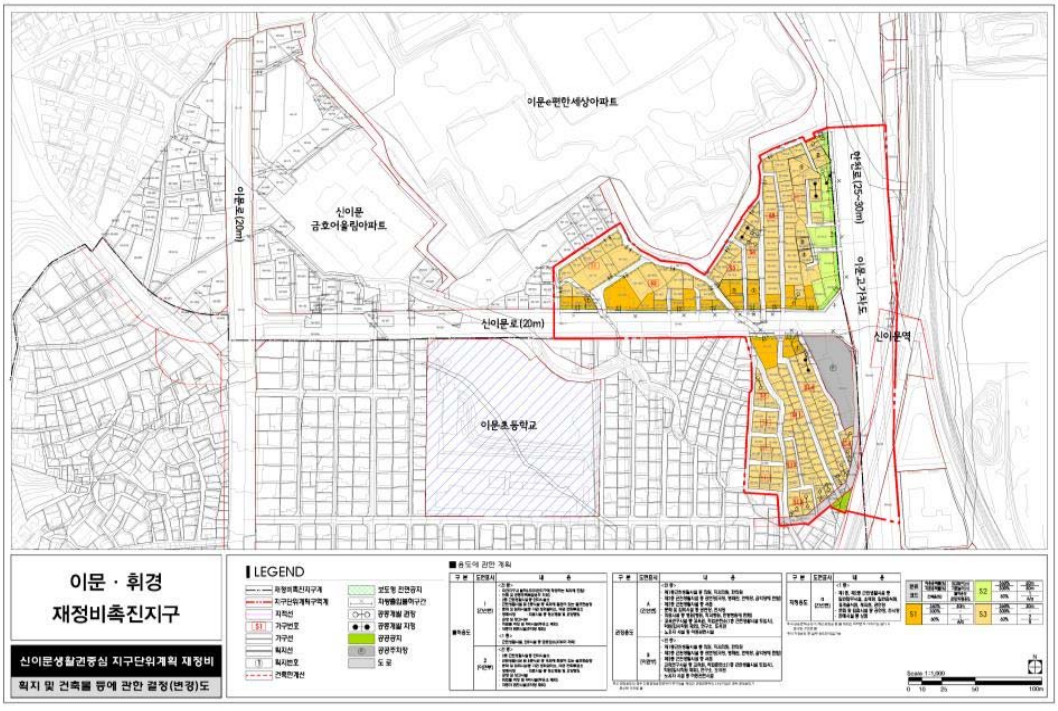

[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면]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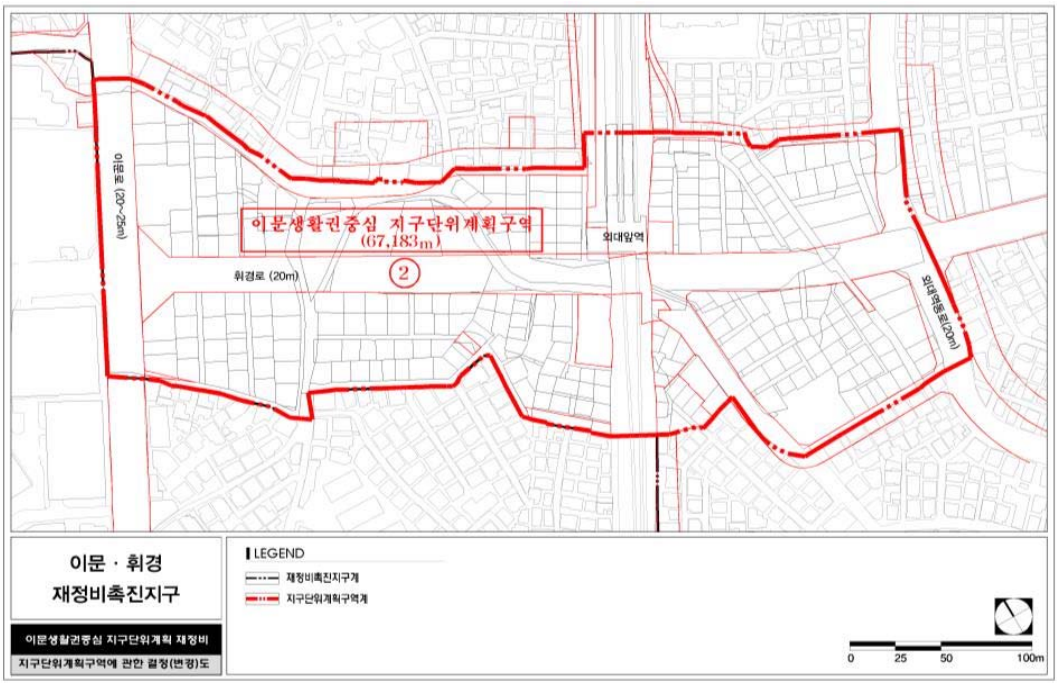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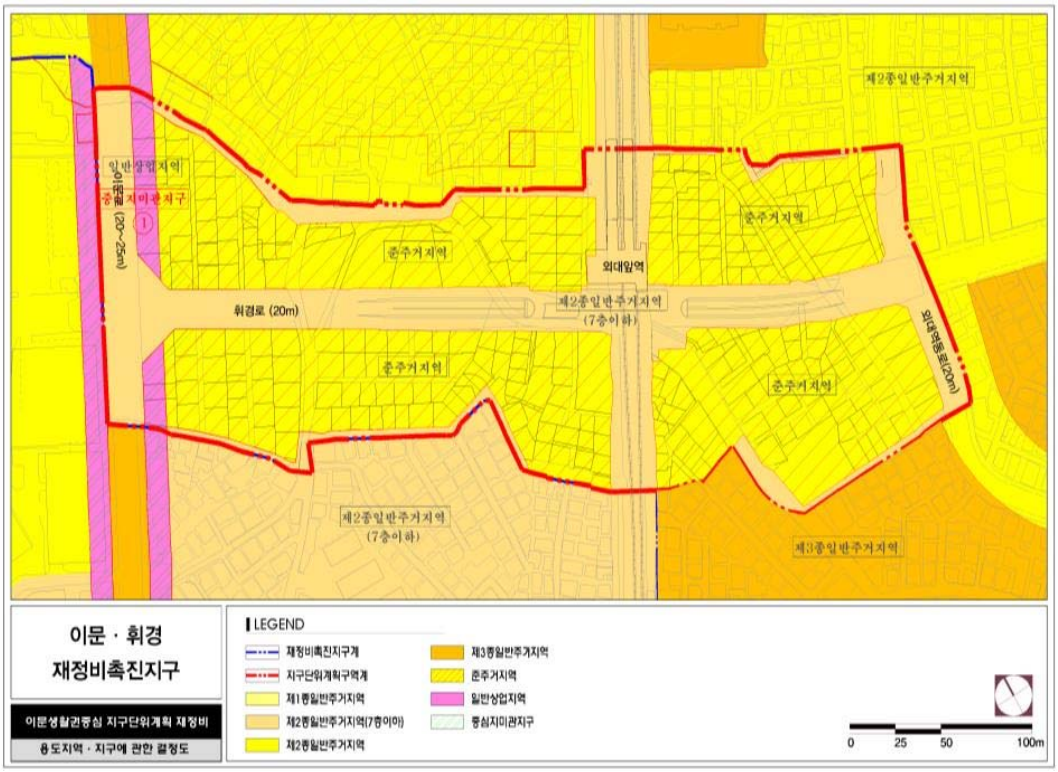

- 이하여백 -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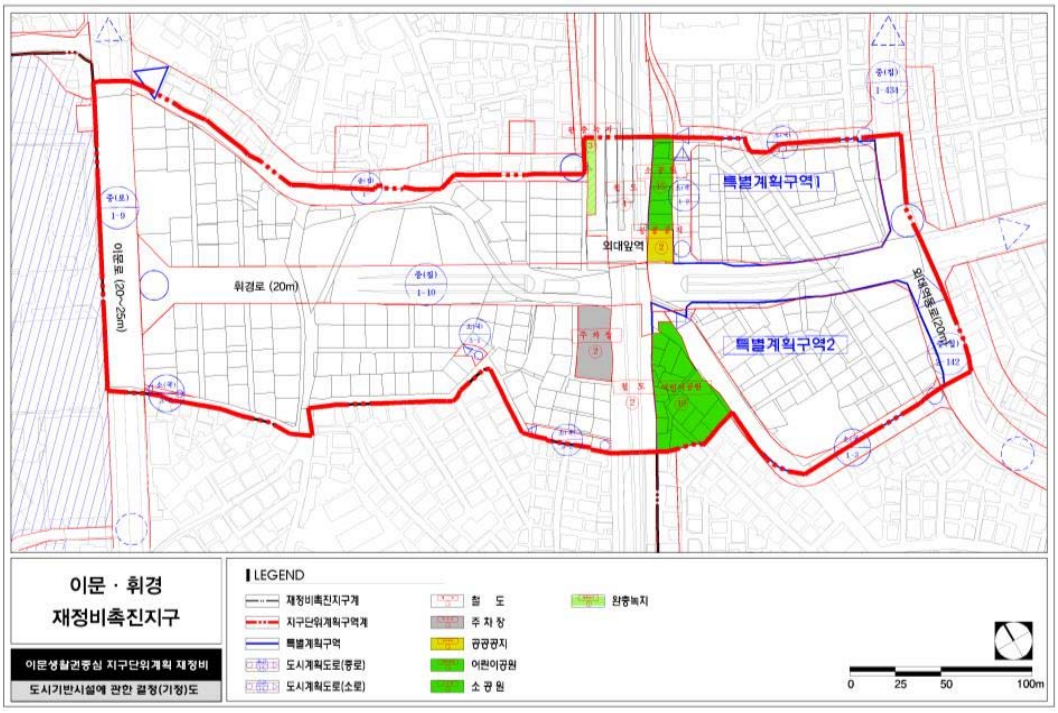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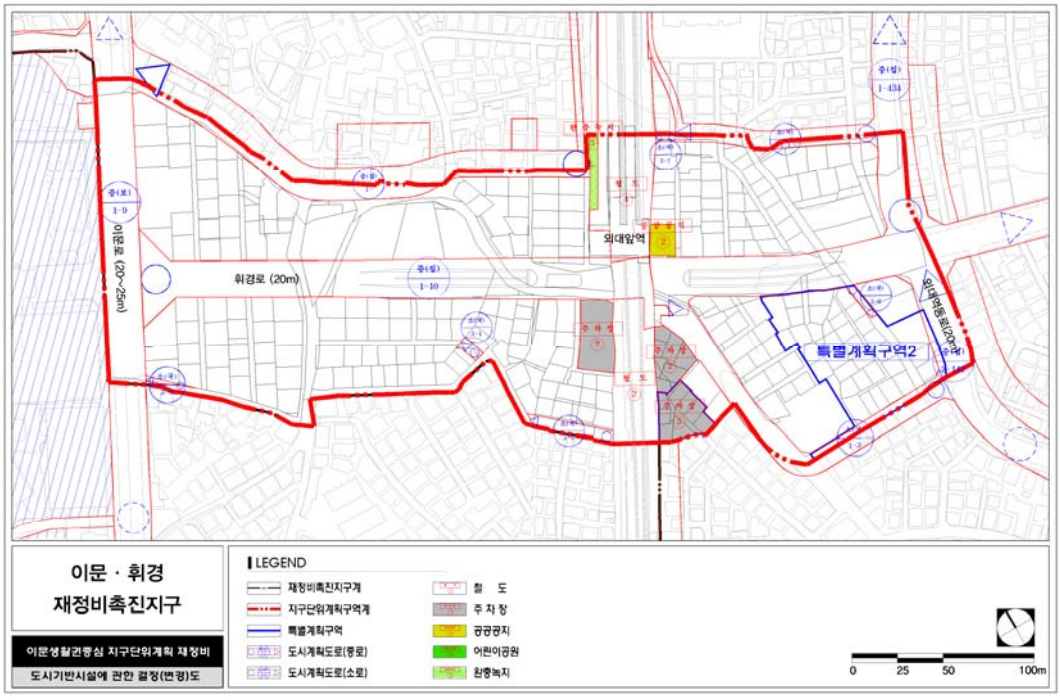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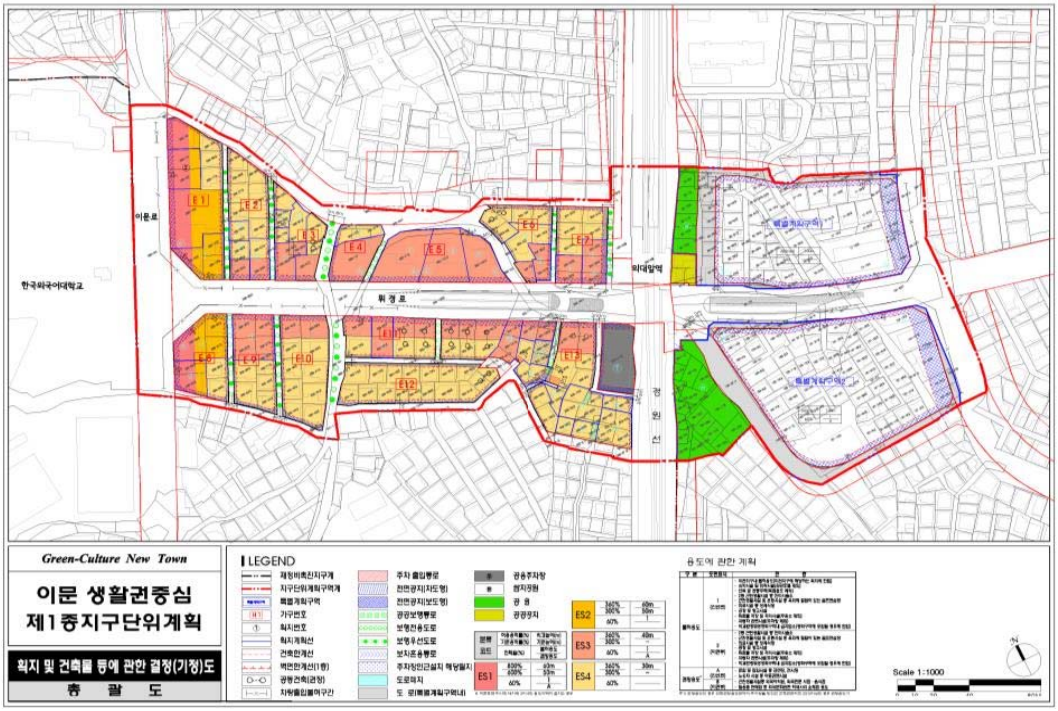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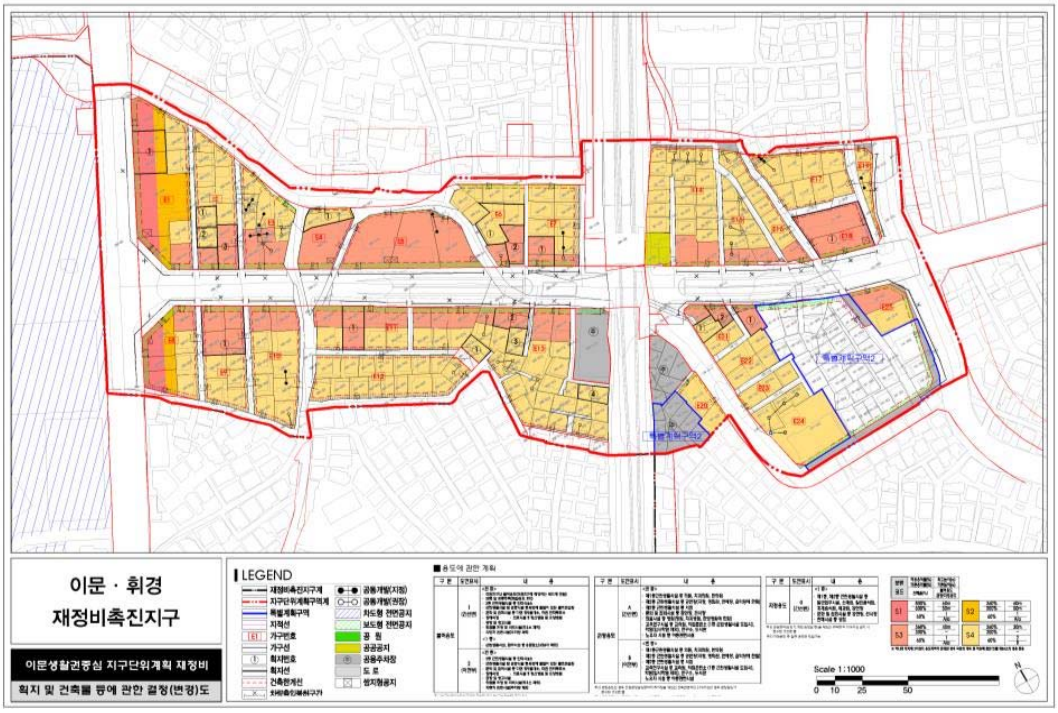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7호

대조 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1호(2009.05.07)로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10호(2013.04.04.)로 정비구역 변경(경미한사항) 지정 고시된 은평구 대조동 88, 89번지 일대 대조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변경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 명	지 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비 고
기정	C	3	대조동	88,89	11.1	190%	12	60%	3	주택 재개발	수복 (전면)	
변경	C	3	대조동	88,89	11.2	190%	12	60%	3	주택 재개발	수복 (전면)	측량 결과반영

2.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내용

가. 정비구역 변경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대조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은평구 대조동 88, 89번지 일대	111,948.0	증) 94.7	112,042.7	측량 결과반영

나. 정비계획 변경 내용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1,948.0	증) 94.7	112,042.7	10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18,284.0	증) 1,460.4	19,744.4	17.62	
	도 로		12,654.0	감) 132.5	12,521.5	11.17	
	공원	소계	5,630.0	증) 1,592.9	7,222.9	6.45	
		1	5,630.0	증) 617.7	6,247.7	5.58	어린이공원
		2	-	증) 975.2	975.2	0.87	소공원
택 지	소 계		93,664.0	감) 1,365.7	92,298.3	82.38	
	택지 1		47,240.0	감) 1,481.7	45,758.3	40.84	공동주택
	택지 2		44,134.0	증) 126.3	44,260.3	39.50	공동주택
	택지 3		1,690.0	감) 3.9	1,686.1	1.51	교육연구 및 종교시설
	택지 4		600.0	감) 6.4	593.6	0.53	교육연구시설(유치원)

2)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1,948.0	증) 94.7	112,042.7	100.00	측량결과 및 공원확보, 반영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5,413.0	증)1,423.7	16,836.7	15.03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96,535.0	감)1,329.0	95,206.0	84.97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 로 (변경없음)

나) 녹지 및 공원 결정조서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원1	어린이 공원	대조동 89-225번지일대	5,630.0	증) 617.7	6,247.7	서울고시2009-181호 (2009.5.7)
신설	공원2	소공원	대조동 69-10번지일대	-	증) 975.2	975.2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2,600	감) 456	2,144	
	주민운동시설	〃	1,750	증) 883	2,633	
	경로당	〃	350	증) 481	831	
	보육시설	〃	300	증) 752	1,052	
	작은도서관·독서실	〃	300	증) 462	762	
	북까페	〃	-	증) 175	175	
	다목적실	〃	-	증) 474	474	
	관리사무소	〃	360	증) 292	652	
	근린생활시설	〃	5,700	감) 2,551	3,149	
	휴게시설	〃	5개소	감) 3개소	2개소	
	교육연구시설(유치원) 부지	단지외	600	감) 6.4	593.6	

5) 건축시설 계획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 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주 된
용 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용적율
(%)</th><th rowspan="2">높이(m)
최고층수</th><th rowspan="2">비 고</th></tr>
<tr><th>명 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r>
<tr><td rowspan="4">기정</td><td rowspan="8">대조
제1
주택재
개발정
비구역</td><td rowspan="4">93,664.0</td><td>택지1</td><td>47,240.0</td><td>도면 참조</td><td rowspan="2">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td><td rowspan="2">30%
이하</td><td rowspan="2">237.99
%이하</td><td rowspan="2">80m,
25층이하
(평균18층이하)</td><td rowspan="2"></td></tr>
<tr><td>택지2</td><td>44,734.0</td><td>도면 참조</td></tr>
<tr><td>택지3</td><td>1,690.0</td><td>도면 참조</td><td>교육연구 및
종교시설</td><td colspan="4">관계법규에 의함</td></tr>
<tr><td>택지4</td><td>600.0</td><td>도면 참조</td><td>교육연구시설</td><td colspan="4">관계법규에 의함</td></tr>
<tr><td rowspan="4">변경</td><td rowspan="4">92,298.3</td><td>택지1</td><td>45,758.3</td><td>도면 참조</td><td rowspan="2">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td><td rowspan="2">30%
이하</td><td rowspan="2">243.8
%이하</td><td rowspan="2">80m,
25층이하
(평균18층이하)</td><td rowspan="2"></td></tr>
<tr><td>택지2</td><td>44,260.3</td><td>도면 참조</td></tr>
<tr><td>택지3</td><td>1,686.1</td><td>도면 참조</td><td>교육연구
시설 및 종교시설</td><td colspan="4">관계법규에 의함</td></tr>
<tr><td>택지4</td><td>593.6</td><td>도면 참조</td><td>교육연구시설</td><td colspan="4">관계법규에 의함</td></tr>
<tr><td rowspan="3">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10">
<table>
<tr><td>기정
(계획
용적률
210%
적용)</td><td>
○ 총건립세대:2,359세대(100%)
○ 건립규모
<table>
<tr><th colspan="2">건 립 규 모</th><th>기 준</th><th>세 대 수</th><th>비 고</th></tr>
<tr><td colspan="2">합 계</td><td>-</td><td>2,359세대(100%)</td><td></td></tr>
<tr><td rowspan="2">85㎡
이하</td><td>60㎡ 이하</td><td rowspan="2">총건립세대수 80%이상</td><td>1,114세대(47.22%)</td><td></td></tr>
<tr><td>60㎡~85㎡ 이하</td><td>1,205세대(51.08%)</td><td></td></tr>
<tr><td colspan="2">85㎡ 초과</td><td>총건립세대수 20%미만</td><td>40세대(1.7%)</td><td></td></tr>
</table>
○ 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 건설 세대수의 17.46%
<table>
<tr><th>건 립 규 모</th><th>기 준</th><th>세 대 수</th><th>비 고</th></tr>
<tr><td>합 계</td><td>총건립세대수 17%이상</td><td>412세대(100%)</td><td rowspan="5"></td></tr>
<tr><td>40㎡이하</td><td>임대주택의 40~50%</td><td>188세대(45.63%)</td></tr>
<tr><td>40㎡~50㎡이하</td><td>임대주택의 40~50%</td><td>182세대(44.18%)</td></tr>
<tr><td>50㎡~60㎡이하</td><td>임대주택의 10~20%</td><td>42세대(10.19%)</td></tr>
</table>
</td></tr>
<tr><td>증·감</td><td>
○ 증가 세대수 : 30세대
<table>
<tr><th colspan="2">건 립 규 모</th><th>세 대 수</th><th>비 고</th></tr>
<tr><td colspan="2">계</td><td>증) 30세대</td><td></td></tr>
<tr><td rowspan="2">85㎡
이하</td><td>60㎡ 이하</td><td>증) 186세대</td><td></td></tr>
<tr><td>60㎡~85㎡이하</td><td>감) 152세대</td><td></td></tr>
<tr><td colspan="2">85㎡ 초과</td><td>감) 4세대</td><td></td></tr>
</table>
</td></tr>
<tr><td>변경
(계획
용적률
210%
적용)</td><td>
○ 총건립세대:2,389세대(100%)
○ 건립규모
<table>
<tr><th colspan="2">건 립 규 모</th><th>기 준</th><th>세 대 수</th><th>비 고</th></tr>
<tr><td colspan="2">합 계</td><td>-</td><td>2,389세대(100%)</td><td rowspan="4"></td></tr>
<tr><td rowspan="2">85㎡
이하</td><td>60㎡ 이하</td><td rowspan="2">총건립세대수 80%이상</td><td>1,300세대(54.42%)</td></tr>
<tr><td>60㎡~85㎡ 이하</td><td>1,053세대(44.08%)</td></tr>
<tr><td colspan="2">85㎡ 초과</td><td>총건립세대수 20%미만</td><td>36세대(1.51%)</td></tr>
</table>
○ 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 건설 세대수의 17.50%
</td></tr>
</table>
</td></tr>
</table>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건 립 규 모	기 준	세 대 수	비 고
합 계	총건립세대수 17%이상	418세대(100%)	금회증가세대수(30)는 임대주택비율을 20%적용함
40㎡이하	임대주택의 40~50%	170세대(40.67%)	
40㎡~50㎡이하	임대주택의 40~50%	184세대(44.02%)	
50㎡~60㎡이하	임대주택의 10~20%	64세대(15.31%)	

심의완화 사항	-
건축물의건축선에 관한 계획	· 중로2류-1(폭15m)도로 경계선으로부터 택지내(택지1, 택지2) 5m 건축한계선 지정

○개발가능용적률산정(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111,948.0	93,664.0	18,284.0	527	7,786.6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택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18,284.0㎡ - 527㎡ - 7,786.6㎡ = 9,970.4㎡				
기준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10% (기정:190%+20%, 기본계획에 의거 기준용적률 상향)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60㎡이하 소형주택을 추가확보를 전제로 210% 적용				
개발가능 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1.3α) = 210% X (1+1.3×0.10644)= 239.05% (정비계획: 237.99%이하)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순부담) / 공공시설부지제공 후 대지면적 = 9,970.4 / 93,664.0 = 0.10644	

○개발가능용적률산정(변경)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112,042.70	92,298.3	19,744.4	527	7,786.6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19,744.4㎡ - 527㎡ - 7,786.6㎡ = 11,430.8㎡(종상향면적 대비 12.01%)				
기준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10%				
개발가능 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1.3α) = 210% x (1+1.3×0.12384)= 243.80 % (정비계획: 243.8%이하)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순부담) / 공공시설부지제공 후 대지면적 = 11,430.8 / 92,298.3 = 0.12384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 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대조1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359	증) 30	2,389	

7)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 립 위 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연면적:㎡)
기정	택지1, 2	412	38.5㎡/188세대, 45.4㎡/182세대, 52.2㎡/42세대	36,370.63
변경	택지1, 2	418 증) 6	39.01㎡/170세대, 44.07㎡/184세대, 51.35㎡/64세대	40,278.63

3. 관련도면: 붙임 참조

※ 붙임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02-2133-7187) 및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02-351-736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결정 관련도면

■ 정비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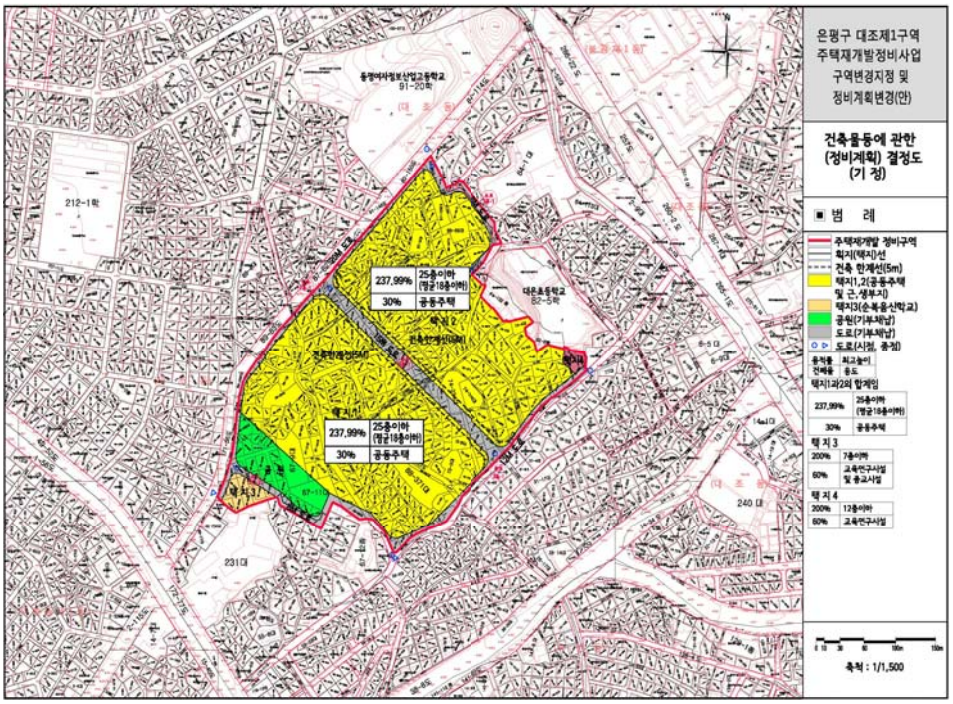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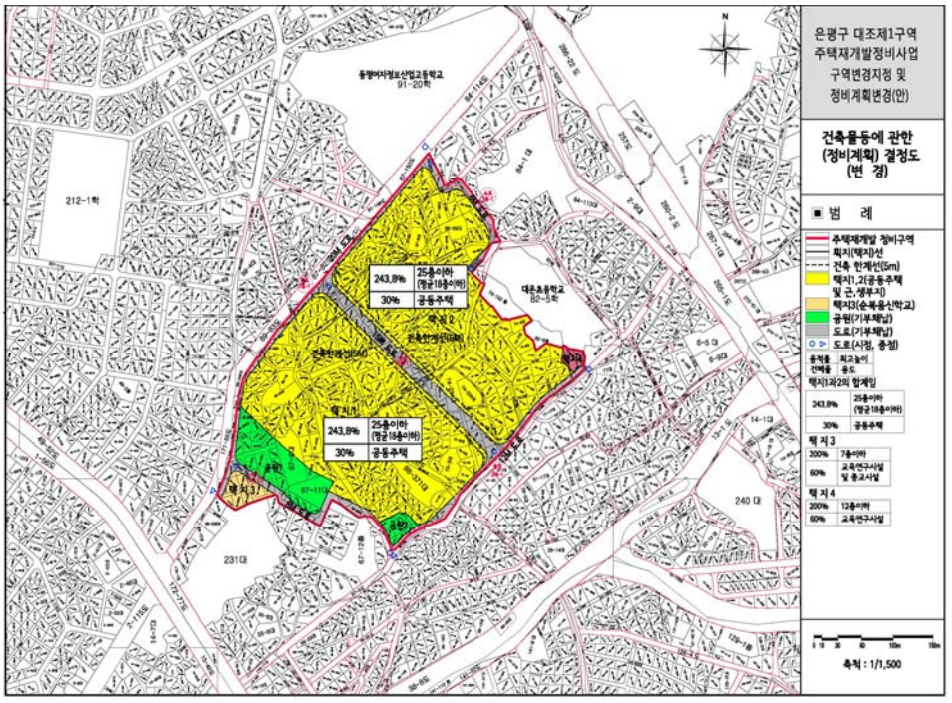

■ 용도지역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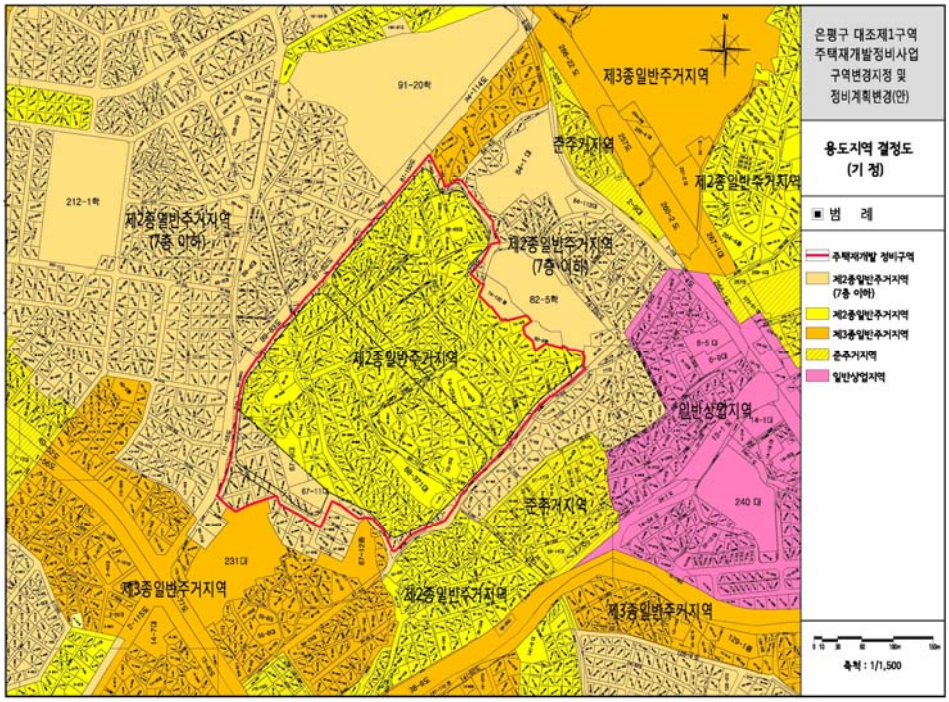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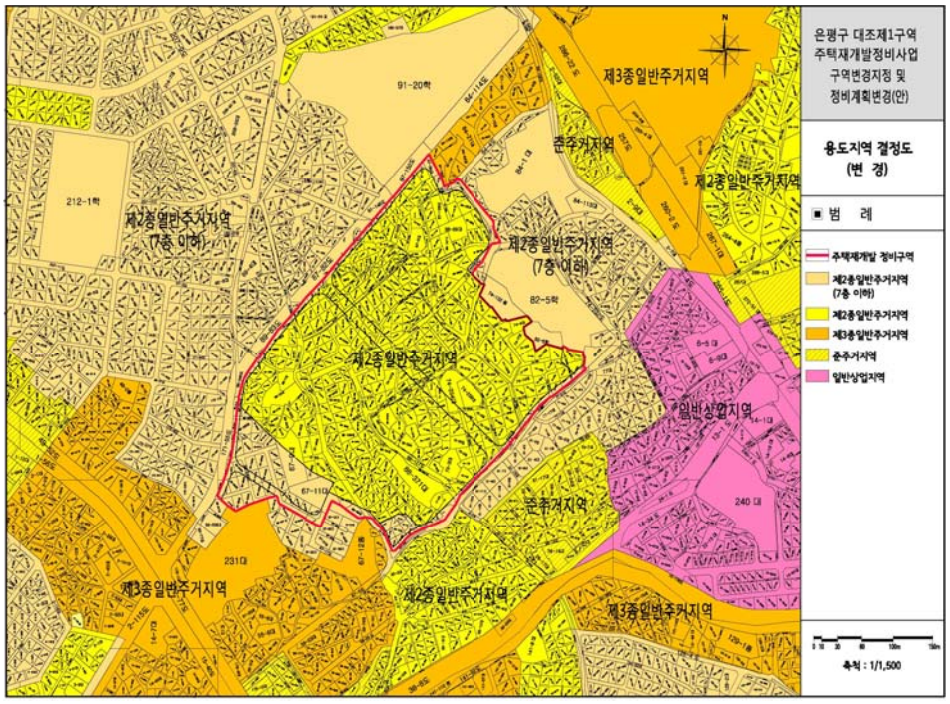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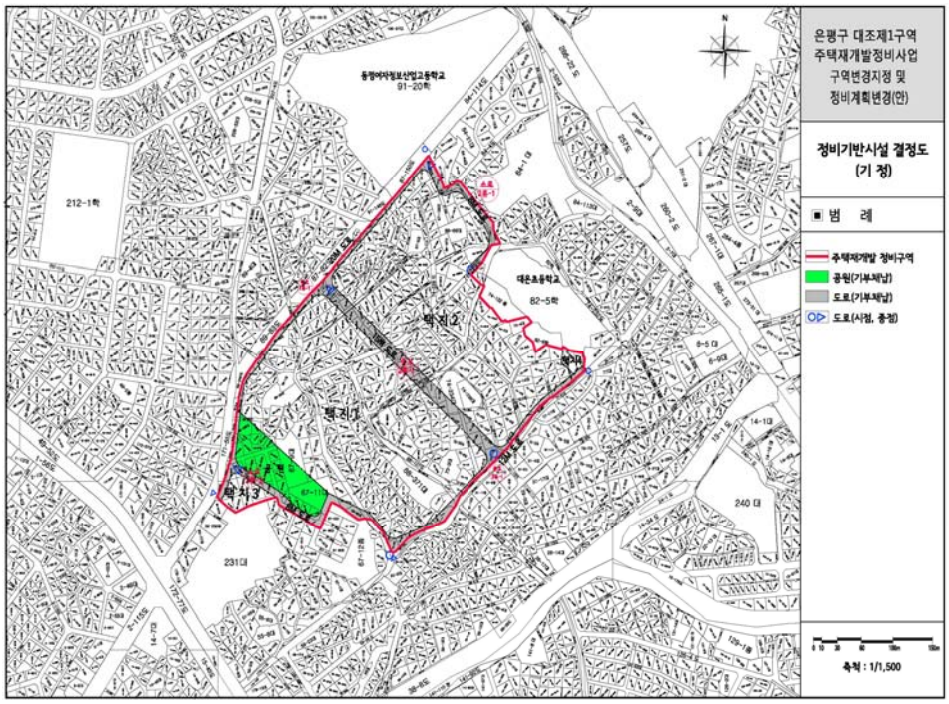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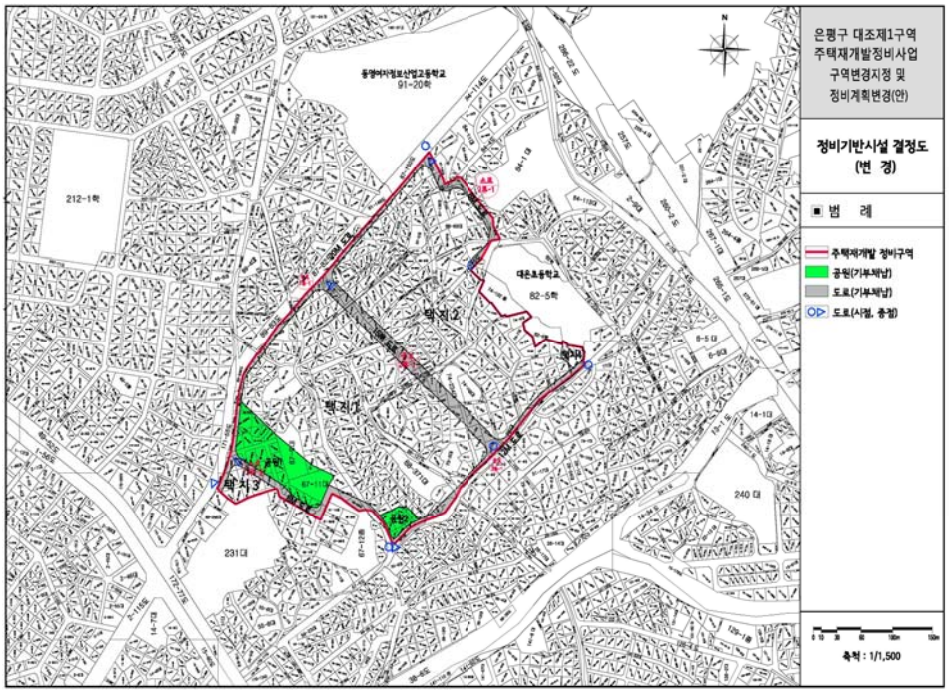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8호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분) 변경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에 대하여, 2016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2016.04.11.)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며,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 제4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변경 고시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2011년 10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변경 결정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임

Ⅱ.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

구분	동 명	지 번	면적 (㎡)	계 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기정	방배동	725	43,400	평균계획 용적률 (170,210)	50	-	2	공동	신삼호아파트
변경	방배동	725	44,106	평균계획 용적률 (170,210)	50	-	2	공동	신삼호아파트

※ 경미한 사항의 변경(구역면적의 20%미만의 변경인 경우) 사항임.

Ⅲ.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규	방배심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	증) 44,106	44,106	-

3. 정비계획 수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4,106	-	44,106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42,026	-	42,026	95.3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080	-	2,080	4.7	-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4,106	-	44,106	100.0	-
정비기반시설	소 계	3.7	증) 3,342.3	3,346	7.6	·순부담면적:3,042.0㎡(6.9%)
	도 로	3.7	증) 1,136.3	1,140	2.6	- 도로 : 837㎡
	공 원	-	증) 2,206.0	2,206	5.0	- 공원 : 2,205㎡
획지	공동주택용지	44,102.3	감) 3,342.3	40,760	92.4	-

주)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지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사평로	일 반 미관지구	동작동(이수교차로)~반포I.C	80,700	3,300	양측 12	건고시 제109호 1976.07.19	-
기정	-	방배로	일 반 미관지구	이수교 ~ 방배역	50,400	2,100	양측 12	건고시 제519호 1973.12.31	-

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51	40~65	간선도로	4,800	국립묘지앞	광로21호	일반도로	-	건고제137호(77.07.09)	사평로
변경	광로	2	51	40~65	간선도로	4,800(80)	국립묘지앞	광로21호	일반도로	-	-	일부구간 폭원확장 B=40m→44m L=80m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82	반포동 218-13	방배동 751	일반도로	-	-	-
변경	중로	2	1	10~15	국지도로	282(199)	반포동 218-13	방배동 751	일반도로	-	-	일부구간 폭원확장 B=10m→15m, L=199m

나)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광로 2-51	광로 2-51	•B= 40m → 40~44m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4m 도로 확폭
소로 1-1	중로 2-1	•B= 10m → 10~15m	•보행환경 개선 및 비상차로 확보를 위해 5m 도로 확폭

2) 공원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	도시 공원	어린이 공원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	증)2,206	2,206	-	-

나)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어린이 공원	• 신설 - 면적 : 2,206㎡	•지역주민들의 주민커뮤니티 공간 및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 신설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기 준 근 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창조적정비모델 설치기준	계획	비고
근 린 생활시설	•세대당 6㎡이하, 단 500㎡미만인 경우 500㎡ 가능	5,142.0㎡ 이하	-	관련법규에 의함	2,160㎡
관 리 사무소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확보 • 그 면적이 100㎡이상을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 가능	50.35㎡ 이상	-	관련법규에 의함	161.23㎡
주민 공동 시설	합 계(857세대)	•2.142.5㎡ 이상 = 857세대 x 2.5㎡	•2.678.13㎡ 이상 =857세대x2.5㎡x1.25	-	•2.815.75㎡
	•경로당	• 100~1,000 세대 미만 : 세대당 2.5㎡ • 설치의무시설 - 150세대 이상 :경로당,어린이놀이터 - 300세대 이상 :어린이집 추가 - 500세대 이상 :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추가	•300~1,000 세대 미만 : 세대당 2.5㎡ ×1.25	관련법규에 의함	270.06㎡
	•어린이집 - 500세대 이상의 경우, 40인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보육시설 설치 - 영유아 1인당 4.29㎡ 이상 확보 (보육실 포함)				647.53㎡
	•작은도서관 - 300세대 이상의 경우 33㎡이상, 6석이상, 1,000권 이상				163.55㎡
	•어린이놀이터				800.00㎡
	•주민운동시설				579.30㎡
	•지역문화센터				203.23㎡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152.08㎡

주)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은 857x2.5㎡ = 2,142.5㎡이상 설치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은 857x2.5㎡x1.25 = 2,678.13㎡이상 2,815.75㎡설치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서초구 방배동 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44,106	획지1	40,760	방배동 725번지	7	-	-	7	-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 법정상한		
신설	서초구 방배동 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44,106	획지1	40,760	방배동 725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50 이하	299.99 이하	96m 이하 32층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공급계획

※ 정비사업의 입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4-3적용

(조합원 분양주택을 기존 주택면적의 축소하거나 30%범위에서 확대건설,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주택 85㎡이하규모로 건설할 경우 4-1 및 4-2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세대수	비율(%)	비고
기존전용면적	계획전용면적	857	100.0	-
-	49.95㎡	73	8.5	임대주택
-	59.50㎡	68	7.9	임대주택
-	49.95㎡	31	3.6	분양주택
-	59.50㎡	44	5.1	분양주택
-	84.96㎡	160	18.7	분양주택
82.69㎡	84.96㎡	58	6.8	조합원
	98.39㎡	59	6.9	조합원
152.42㎡	116.32㎡	86	10.0	조합원
	160.19㎡	62	7.2	조합원
173.22㎡	132.09㎡	135	15.8	조합원
	160.19㎡	9	1.1	조합원
	182.05㎡	72	8.4	조합원

심의완화사항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248.17%)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9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획지 남측 변 9~10m

•공공보행통로 : 획지 남측 변 4m

※ 1.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

3)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table>
<tr><td>구 분</td><td colspan="5">산정내용</td></tr>
<tr><td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계(구역면적)</td><td>획지1(공동주택용지)</td><td>신설 정비기반시설</td><td>신설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td><td>대지(획지)내 용도폐지되는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td></tr>
<tr><td>44,106</td><td>40,760</td><td>3,346</td><td>3.0</td><td>0.7</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5">•순부담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3,346 - 3.0 - 0.7 -1(공원면적5%이상 추가면적 제외)-299.3(사평대로변 도로 면적)
= 3,042.0㎡</td></tr>
<tr><td>개발가능 용적률 산정</td><td colspan="5">•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β = 208% + 20% = 228%
※ β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table>
<tr><td colspan="2">구 분</td><td>판단기준</td><td>인센티브</td></tr>
<tr><td colspan="2">우수디자인 (5%)</td><td>• 「공동주택 심의기준」의 디자인 다양화기준의 권장기준 충족 후 건축위원회에서 인정 시</td><td>5%</td></tr>
<tr><td rowspan="2">지속가능형 건축구조 (10%이내)</td><td>라멘구조(10%)</td><td rowspan="2">•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세부평가기준에 충족하여야 함</td><td rowspan="2">10%</td></tr>
<tr><td>무량판구조(7%)</td></tr>
<tr><td rowspan="2">친환경/ 신재생에너지 (5% 이내)</td><td>신재생에너지 (2%)</td><td>• 건축비의 1%이상
※ 신·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td><td rowspan="2">5%</td></tr>
<tr><td>친환경 최우수등급 (3%)</td><td>• 친환경 건축물 인정
- 최우수(85점 이상)</td></tr>
<tr><td colspan="3">합 계</td><td>20%</td></tr>
<tr><td colspan="4">총 20% 적용</td></tr>
</table>
※ 위에서 적용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우수디자인,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 될 수 있음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α)
= 228% + (208 × 1.3 × 0.0746) = 248.17%
= 248.17%적용
※ α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면적
= 3,042.0 / 40,760 = 0.0746
•정비계획용적률 = 248.17%</td></tr>
<tr><td>법적상한 용적률</td><td colspan="5">•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9.99%이하 (⇒ 건축계획상의 용적률(299.99%)적용)</td></tr>
</table>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함.

사.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충분한 녹지공간의 조성 및 확보,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	-
재난방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공사시행	-

아.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관리처분 방법에 의함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현황 : 481세대 •계획 : 857세대 •증가예상 세대수 : 376세대	-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반경 400m이내 서래초등학교 위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 저감대책 및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등의 교육환경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강남교육지원청과 협의하였으며, 향후 실시계획 승인전 서울시교육청과 사전협의 예정	-

차.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대지합필	획지1	44,106	방배동 725번지일대	40,760	

타.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 수	세대수	세대규모		비고 (연면적)
				전용	공급	
방배동 725번지	40,760㎡	-	73	49.95㎡	68.66㎡	(기준:10,560.92㎡이상) (계획:10,580.70㎡)
			68	59.50㎡	81.89㎡	

※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 시 조정될 수 있음.

Ⅳ. 2016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 심의 결과

〈 금회 상정안으로 수정가결 〉
▶조건사항
- 어린이공원은 대상지 일대 지형을 고려하여 향후 공원 이용상의 문제가 없도록 동측 사평대로6길변, 남측 학교 및 북측 단지와의 단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로 계획
- 주민공동시설은 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배치
- 근린생활시설은 대상지 북측 사평대로변과 동측 사평대로6길 초입부까지 위치 조정
- 근린생활시설 전면부는 보행 편의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녹도가 아닌 보도 등 보행공간으로 확보

Ⅴ.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 첨부(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Ⅵ.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2133-7138) 및 서초구 주거개선과(☎2155-734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 게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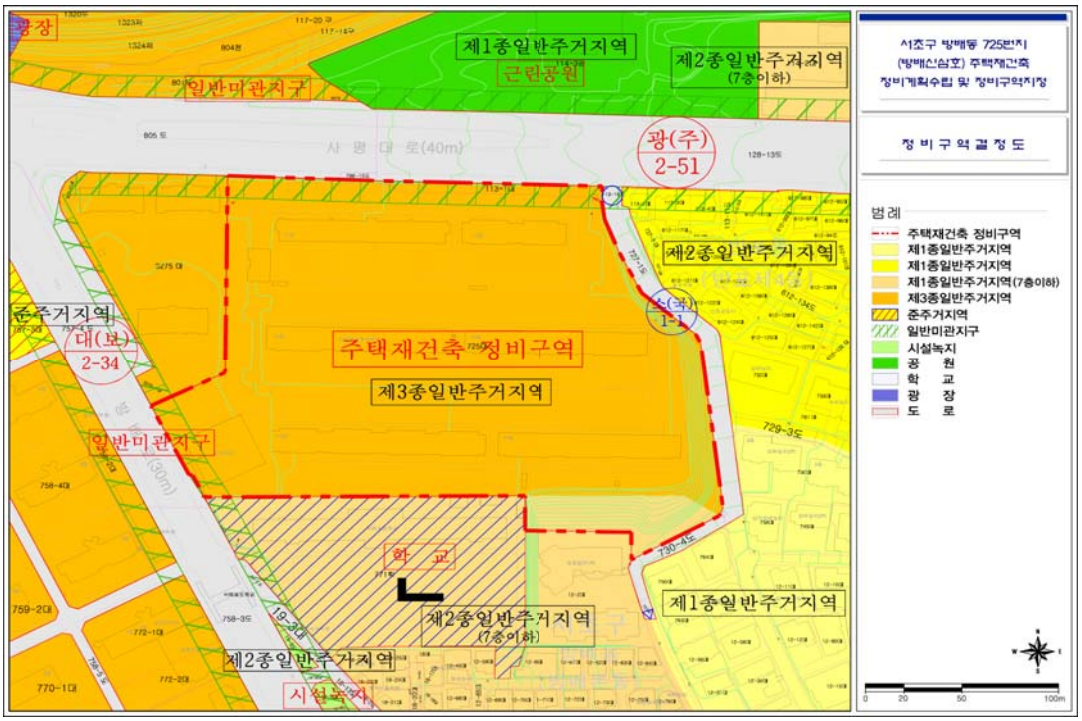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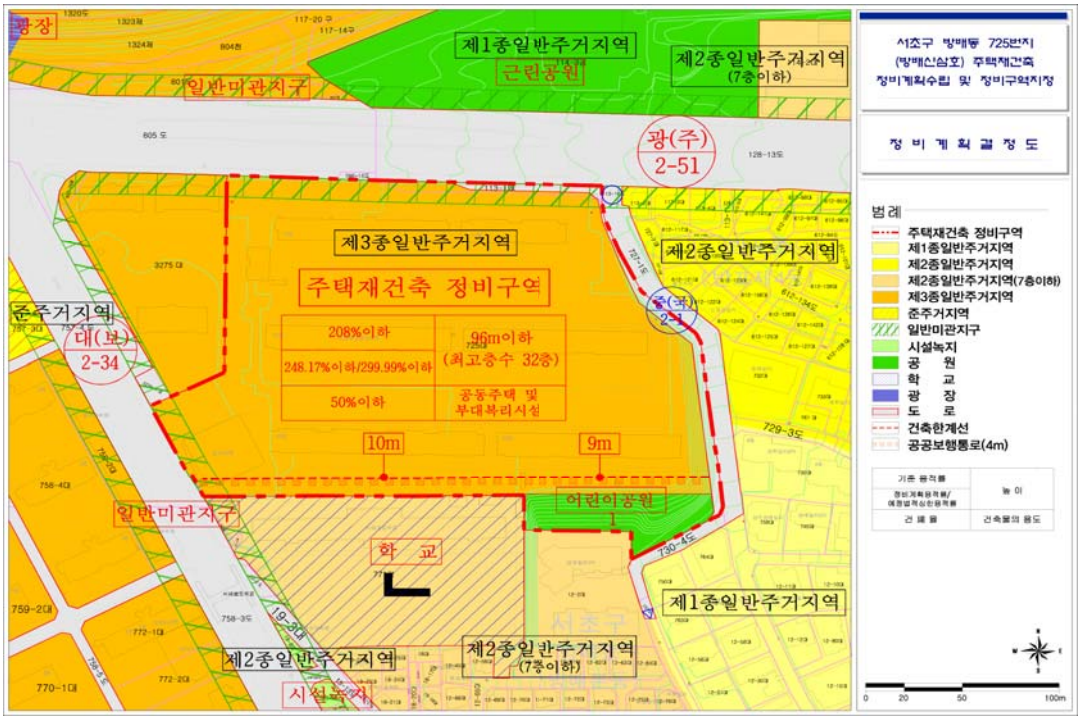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775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 사용기간
2016-77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대표 임종석)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02, 415호	○ 남북문화교류사업 및 평화통일교육사업	300 (현금)	전국	'16.8.2. ~'17.8.1. / '16.8.2. ~'18.12.31.
2016-78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대표 함세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83, 3층	○ 역사학자 임종국 선생 조형물 건립 비용 지원	50 (현금)	전국	'16.8.2. ~'17.2.1. / '16.8.2. ~'17.2.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776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 사용기간
2016-79	재단법인 대한정신건강재단 (대표 정한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521호	○ 대국민 정신건강 교육 및 연구, 정신질환자 복지후생 지원 사업	235 (현금)	전국	'16.8.8. ~'16.12.31. / '16.8.8. ~'16.12.31.
2016-80	사단법인 대한민국충효범국민운동본부 (대표 신석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39, 701호	○ 충효사상의 범국민운동 전개를 위한 기금 마련 (강연, 캠페인, 불우이웃돕기 등)	130 (현금 및 물품)	전국	'16.9.1. ~'17.8.31. / '16.9.1. ~'17.8.31.
2016-81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대표 오연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40-7	○ 만 19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 대한 지원	100 (현금)	전국	'16.9.1. ~'17.8.31. / '16.10.17. ~'17.9.30.
2015-60-1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 강명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6길 한통빌딩, 10층	○ 빈곤아동 지원 (생활, 교육, 문화, 의료부문)	900 (현금)	전국	'15.5.21. ~'16.5.20. / '15.5.21. ~'17.1.31.
			※ 변경내용 : 사용기간 변경 - 사용기한 : (당초) ' 16.7.20. (변경) ' 17.1.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02호

2016년도 제15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제15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심의일시 : 2016. 8. 24.(수) 10:00 ~ 12:30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 3건 16작품 (조각 2점, 회화 10점, 부조 4점)
라. 심의결과 : 승인 15작품, 부결 1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15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6년 제15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1-1	강서구 마곡보타닉파크타워	회화	Mountain light 180	○		
1-2		회화	남해별곡-기억	○		
1-3		회화	회화적풍경-seaⅣ	○		
1-4		회화	남해인상	○		
1-5		회화	석심(생명)1506	○		
1-6		회화	회화적풍경-TreeⅢ	○		
1-7		회화	생성과 소멸16053	○		
1-8		회화	Wavelength	○		
2-1	용산구 용산역전면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각	달마시안 가족의 나들이		○	안정성 결여,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작품설치위치 재검토 요망,
2-2		조각	Moving City	○		
2-3		부조	Resilience-숲	○		
2-4		부조	ECOFLOW	○		
2-5		부조	Transforming Cycles	○		
2-6		부조	Resilience-죽림	○		
3-1	강서구 마곡아이파크	회화	별꽃1,2	○		
3-2		회화	소풍1,2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0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통지

당 사 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1	111396	(주)신일건업	홍상철	서울 강남구 선릉로 622(삼성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능계1인 부족)	영업정지 사전 청문통지 2016.9.20 (10:00~12:00)
2	200991	(주)건창씨피에스	이준영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56길 78 , (양재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계1인 부족)	영업정지 사전 청문통지 2016.9.20 (10:00~12:00)
3	202247	(주)원텔레콤기술	신창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4 , 607호(도화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능계2인, 기술계2인 부족)	영업정지 처분 통지 2016.8.12 ~ 2016.11.09
4	202099	(주)엠아이씨앤씨	한창수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45, 비동 5층(가산동, 마이크로오피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능계1인, 기술계2인 부족)	영업정지 처분 통지 2016.8.12 ~ 2016.11.09
5	201217	(주)유티티	김영중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41(서초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능계1인, 기술계3인 부족)	영업정지 처분 통지 2016.8.12 ~ 2016.11.09
6	202320	링크로드(주)	김정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71, 1429호(서초동, 엘지에클라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능계2인, 기술계1인 부족)	영업정지 처분 통지 2016.8.12 ~ 2016.11.09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제13호, 동법시행령 제21조, 제50조(영업정지 등) 및 별표8의13
3. 공고기간 : 2016.08.30. ~ 2016.09.20.
   공고기간 : 2016.08.30. ~ 2016.11.09.
4. 문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자: 조용성(☎(02)2133-2897, 전자우편 q369369@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11호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등록)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은 전기공사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16.9.8.~ 9.22.(15일간)
2. 처분사유
   ○ 등록기준(기술능력) 미달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 보완
3. 행정처분 대상자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등록취소일
경기-03959	리앤시스	구진섭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33, 905호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2016.7.15

4. 행정처분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28조(등록취소 등)제1항 제2호
5. 전기공사업 등록 제한
   제28조(등록취소 등)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6. 등록증 반납 및 기타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 또는 관할구청 푸른환경과에 즉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2133-3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20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

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한성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89 번길 **, *동 ***호 (역곡동, **빌라)	일시: 2016.06.13. 06:13 장소: 마포구 성산로 성산2교앞 내용: 총중량 24.3톤(4.3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6.07.27. 납기일: 2016.09.30.
최남선	경기도 남양주시 진천읍 장현천 로 24번길 *, *층	일시: 2016.06.26. 06:23 장소: 용산구 한남대로 한남제2고가옆 내용: 축하중 11.1톤(1.1톤 초과)	과태료: 70만원 부과 처분일: 2016.07.27. 납기일: 2016.09.30.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이호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호	일시: 2016.04.15. 11:23 장소: 마포구 성산로 성산대교고정초소 내용: 총중량 36.45톤(4.45톤 초과)	과태료: 70만원 부과 처분일: 2016.05.26. 납기일: 2016.07.31.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16. 09. 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자우편: bis8810@seoul.go.kr
- 전화번호: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24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16. 9. 8. ~ 2016. 9. 21.(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주)큐앤티건설 (이종현)	건축공사업 01-2992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14길 12 (역삼동)	영업정지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법 제10조	등록말소 (2016.9.30.)	법 제83조 제3호의2
2	㈜바른건설 (한상일)	건축공사업 01-2864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8길 27 (문정동)	영업정지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법 제10조	등록말소 (2016.9.30.)	법 제83조 제3호의2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전화 02-2133-82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25호

설계업 · 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의2에 따라 설계업 · 감리업 등록및 양도 · 양수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설계업·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등록번호(업종)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전문감리업 (S-2-489)	주식회사 동훈전설 (110111-3190355)	정준모	도봉구 도봉로 631, 201호 (쌍문동, 미양빌딩)	'16.08.19
종합감리업 (S-1-450)	주식회사 한빛안전기술단 (110111-5382421)	조용선	구로구 디지털로 285, 807호 (구로동, 에이스트윈타워1차)	'16.07.25
전문설계업2종 (E-3-206)	나남에이엘디 주식회사 (110111-1 5 7 0 0 2 0)	신경용	구로구 디지털로 271, 312호 (구로동, 벽산디지털밸리3차)	'16.07.08

■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신고사항

구 분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비고
양도인	종합감리업 (S-1-356) 전문설계1종 (E-2-429)	주식회사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110111-0380545)	강기세 박형일 송기봉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86, 4층 (도곡동, 부영빌딩)	등록말소
양수인		주식회사 범씨엠건축사사무소 (110111-6074176)	조성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86, 4층 (도곡동, 부영빌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28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

컨설팅회사로 신규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업 체 명 : ㈜ 로엔컨설팅
2. 대 표 자 : 박상혁(1977.3.6)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 1104호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10)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10호
6. 등록일자 : 2016. 8. 31.
7. 전화번호 : 02-6959-608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32호

종합공사시공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통지를 하고 이 사실을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16.9.8.~ 2016.9.22.
2. 처분사전(등록말소)통지 사항

업체명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현당 종합건설 정현욱	건축공사업 01-3689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50길 11, 1층	국세청홈텍스 사업자등록폐업 (894-88-00117) -폐업일: 2016.6.30.	등록말소 (2016.10.7.)	법 제83조 제12호

3. 공고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설안전과 ☎(02)2133-82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33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

칙 제10조 [별표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처분대상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2. 예정된 행정처분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 : 10개 업체
   -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장금 200만원 : 9개 업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 미달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 증서 미제출 등)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6년 10월 7일 18:00 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7층 택시물류과
   - 담 당 자 : 박정우 (02-2133-2338)
6. 유의사항
   - 서면(별지 제11호 서식),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 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 .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업체

(행정처분내역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법인주소	보험 만료
1	435	알스팩코리아인터내쇼날(주)	정영민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호 (서초동, 중앙로 얄오피스텔)	2015-08-28
2	605	탑스타쉬핑(주)	김성수	서울시 중구 명동길 58, ***호(명동2가, 한송빌딩)	2015-06-29
3	895	(주)제이에이치종합물류	마정호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 금강리빙스텔 (신내동)	2015-07-14
4	1333	(주)엠알아이	조성문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호(공덕동)	2015-09-17
5	3449	씨투씨인터내셔날 주식회사	이준영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83 (염창동, 우림블루나인) A동 ***호 D실	2015-06-18
6	3649	주식회사 티지엘네트웍	임상진	서울시 마포구 양화진길** 7층(합정동)	2015-06-01
7	3651	주식회사 노아트랜스월드	황호균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34, 경희궁의아침오피스텔3단지 ****호 (내수동)	2015-07-18
8	4019	혜성인터내셔날로지스틱스(주)	임동준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스타밸리 ***호	2015-08-28
9	4193	(주)월드와이드로지스틱스	장남일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67길**, 3층 (삼성동)	2015-08-05
10	4213	(주)엘림머프글로벌	이정숙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16 (양재동, 하이브랜드) 패션관5층 ****-23	2015-09-28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업체

(행정처분내역 :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정지 60일또는 과징금 200만원)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법인주소	보험 만료
1	525	플러스종합물류(주)	권혁찬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 (내수동, 용비어천가) ***호	2015-12-27
2	2626	중해한국홀딩(주)	장소혜, 이소덕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다동)	2015-11-15
3	2838	(주)유엠엘	배민효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 ** (화곡동, 신화빌딩) 7층	2015-12-06
4	3739	해밀해운항공 주식회사	조재호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호 광화문오피시아빌딩 (사직동 163)	2015-12-19
5	3905	주식회사 서진항운	이승현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 용비어천가 (사직동 75) ***호	2015-11-30
6	3914	주식회사 에스티로지스	심동진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7 성지하이츠3차빌딩 ***호 (역삼동)	2015-12-09
7	4221	윌오션 (주)	조중현	서울시 중구 다동길 30 (다동) 삼덕빌딩 ***호	2015-10-07
8	4236	(주)티샵	이경임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 (연희동, 신라빌딩)	2015-11-18
9	4242	주식회사 케이엠에스로지스틱스	고경균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24나길 10, ***에이호 (도선동, 트윈빌)	2015-11-2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39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에 관한 등록 및 말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현황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폐업사유	비 고
1	현대비에스앤씨㈜	이휴원	2016.08.10.	서울160052	중구 퇴계로 272, 201호 (장충동2가)	2,651,672	신규등록
2	㈜피앤에스개발	표종훈	2016.08.11.	서울160053	강남구 학동로50길 23, 5층 (논현동, 에이치에스빌딩)	300,000	신규등록
3	㈜거묵산업	임거묵	2016.08.12.	서울160054	강남구 언주로30길 13, 1716호 (도곡동, 대림아크로텔)	300,000	신규등록
4	㈜금강코퍼레이션	임태형	2016.08.16.	서울160055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11층 (여의도동, 동우국제빌딩)	300,000	신규등록
5	에이케이인천국제물류센터㈜	최영보	2016.08.19.	서울160056	서초구 강남대로 331(서초동)	5,000,000	신규등록
6	롯데물산㈜	노병용	2016.08.24.	서울160058	송파구 올림픽로 300(신천동)	297,244,400	신규등록
7	㈜이순종합건설	차재윤	2016.08.26.	서울160059	구로구 공원로 3, 1109호 (구로동, 구로선경오피스텔)	550,000	신규등록
8	삼정건설산업㈜	박남석	2015.09.17.	서울160050	금천구 서부샛길 606, 제25층 제비2503호 (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510,000	전입등록
9	㈜용곡	김광영	2008.11.03.	서울160051	강남구 테헤란로86길 12, 10층 (대치동, TKOK빌딩)	800,000	전입등록
10	창성건설㈜	배창환 배동현	2009.12.03.	서울160057	강남구 학동로 160, 3층 (논현동, 창성빌딩)	3,000,000	전입등록
11	오성산업개발㈜	오승용	2015.07.17.	서울160060	서초구 방배로 230-1, 7층 (방배동, 융성빌딩)	900,000	전입등록
12	송도리테일피에프브이㈜	마크로버트마두라스	2013.12.16.	서울130077	강남구 영동대로 416, 6층 (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8,000,000	전 출 (인천시)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2133-4684~4686)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46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1) 다단계판매업 변경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주)에스알라이프앤글로벌	서울-제768호	이창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7, 6층 (역삼동, 창성재단빌딩) (02-6325-1010)	상 호 ('16.07.25)	라보스코리아(주)	(주)에스알라이프앤글로벌
				소재지 ('16.07.25)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21층(구의동, 테크노마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7, 6층 (역삼동,창성재단빌딩)
모데어코리아(주)	서울-제736호	최익성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14층 (서초동) (1544-2001)	전화번호 ('16.08.0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301호 (역삼동, 큰길타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583, 14층(서초동)
(주)라인인터내셔날	서울-제775호	원홍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502호 (역삼동, 역삼현대벤쳐텔) (02-2057-6000)	소재지 ('16.08.09)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9, 지하1층 (역삼동, PMK빌딩)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502호(역삼동, 역삼현대벤쳐텔)
(주)타임앤로우	서울-제800호	윤희양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802호 (삼성동, 현대타워) (1644-3212)	전화번호 ('16.08.12)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112길 23, 4층(삼성동,삼성빌딩)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802호 (삼성동, 현대타워)
(주)헤베니케	서울-제837호	이형규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30, 2층, 4층, 5층 (수서동, 에이펙스빌딩) (02-467-0300)	소재지 ('16.08.12)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306호(수서동)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30, 2층, 4층, 5층(수서동, 에이펙스빌딩)
(주)바이오숲	서울-제832호	안성훈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2, 5층 (논현동, 한일빌딩) (02-3443-9252)	소재지 ('16.03.04)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1026호(반포동, 가톨릭대학교의생명산업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2, 5층 (논현동, 한일빌딩)

2) 후원방문판매업 변경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마임 장안동부지사	서울 후- 제92호	조숙자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3길 11, 3층 (장안동) (02-2242-7456)	소재지 ('14.02.10.)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27가길 17, 3층 (장안동)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3길 11, 3층(장안동)
마임 남영동부	서울 후- 제95호	채옥균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9-1, 2층 2층(갈월동) (02-774-0012)	전화번호	02-774-0012	02-774-0045
알즈너 조은대리점	서울 후- 제652호	김춘희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18, 상가동 107호 (중계동,중계건영아파트 (070-8263-9088)	소재지 ('16.08.05)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27길 85, 1112동-217호 (상계동, 주공아파트)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18, 상가동 107호 (중계동,중계건영아파트
강남도곡 건강생활	서울 후- 제112호	황오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38길 38-5, 3층 (도곡동) (02-573-3323)	소재지 ('16.09.04)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28길 53, 4층 (도곡동, 대하빌딩)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38길 38-5, 3층 (도곡동)

3) 다단계판매업 폐업사항

신 고 인				신고사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폐업일자	폐업사유
(주)라인 인터내셔날	서울 - 제775호	원홍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502호(역삼동, 역삼현대젠쳐텔) (02-2057-6000)	'16.08.22.	영업부진
(주)쓰리에이치 라이프	서울 - 제171호	야마구찌히로미, 조문형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04, 3층(논현동, 아이캐슬2빌딩) (02-566-0625)	'16.08.31.	공제해지 (업종변경)

4)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사항

신 고 인				신고사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폐업일자	폐업사유
미아 김정문알로에	서울 후- 제44호	서영애	서울시 강북구 솔샘로 167, 상가 231호(미아동, 벽산아파트) (02-982-5983)	'16.08.02.	개인사정
리엔케이 송파잠실	서울 후- 제274호	김수연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9, 401호(잠실동, 부광빌딩) (02-3431-7559)	'16.08.02.	경영악화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폐업일자	폐업사유
이에스그룹 우주점	서울 후- 제418호	박병옥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40, 6층(쌍림동, 인쇄빌딩) (02-2277-2687)	'16.07.31.	영업부진
이에스그룹 조은점	서울 후- 제419호	박윤학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40, 6층(쌍림동, 인쇄빌딩) (02-2278-0583)	'16.07.31.	영업부진
이에스그룹 만나점	서울 후- 제421호	이영은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40, 6층(쌍림동, 인쇄빌딩) (02-2285-2676)	'16.07.31.	영업부진
유니베라	서울 후- 제410호	임애덕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274, 3층(상도1동, 세원빌딩) (02-816-3450)	'16.08.16.	영업부진
타파웨어스피드홈파티스	서울 후- 제355호	최진원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38길 80, 2층(내발산동, 명성빌딩) (02-2665-1520)	'16.07.31.	업종변경
동대문지사	서울 후- 제472호	김영민	서울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406 604호(용두동) (02-959-3388)	'16.08.18.	법인전환
김정문알로에 명성지사	서울 후- 제36호	백 연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41길 7, 201호(천호동) (02-475-5159)	'16.08.29.	영업부진
김정문알로에	서울 후- 제40호	최현수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97, (면목동) (02-444-0071)	'16.08.30.	개인사정
(주)리온메디코스	서울 후- 제543호	정춘옥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26길 15, (회기동) (02-1666-0309)	'16.08.31.	영업부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17) 또는 민생경제과(☎ 02-2133-5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47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제117조제1항,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신태호	강원도 태백시 소도길	일시 : 2016-04-05 06:20 장소 : 강변북로 내용 : 경기99바2168(트레일러)차량 폭 0.2미터 초과	처분일 : 2016. 5. 25. 과태료 : 30만원 최초납기일 : 2016. 7. 31 독촉일 : 2016. 8. 19.
최인규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일시 : 2016-04-08 16:35 장소 : 면목교 내용 : 경기06보7073(덤프)차량 총중량 4.75톤 초과	처분일 : 2016. 5. 25. 과태료 : 50만원 최초납기일 : 2016. 7. 31 독촉일 : 2016. 8. 19.
김상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로	일시 : 2016-04-23 16:48 장소 : 답십리 앞 부근 도로 내용 : 경기06보8158(덤프)차량 축하중 제4축 1.7톤 초과	처분일 : 2016. 5. 25. 과태료 : 50만원 최초납기일 : 2016. 7. 31 독촉일 : 2016. 8. 19.
홍은철	충청북도 충주시 만리산길	일시 : 2016-04-05 14:53 장소 : 강변북로 내용 : 충북91아5048(카고)차량 폭 0.28미터 초과	처분일 : 2016. 5. 25. 과태료 : 30만원 최초납기일 : 2016. 7. 31 독촉일 : 2016. 8. 19.
홍성화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일시 : 2016-04-07 03:44 장소 : 동부간선로 내용 : 전남98사8378(트레일러)차량 총중량 18.1톤 초과	처분일 : 2016. 5. 25. 과태료 : 300만원 최초납기일 : 2016. 7. 31 독촉일 : 2016. 8. 19.
김왕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일시 : 2016-04-04 10:27 장소 : 강변북로 내용 : 서울06자7038(덤프)차량 축하중 제3축 1.6톤 초과	처분일 : 2016. 5. 25. 과태료 : 50만원 최초납기일 : 2016. 7. 31 독촉일 : 2016. 8. 19.
최봉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안길	일시 : 2016-04-23 05:58 장소 : 동부간선도로 내용 : 경기98아6044(트레일러)차량 폭 0.47미터 초과	처분일 : 2016. 5. 25. 과태료 : 50만원 최초납기일 : 2016. 7. 31 독촉일 : 2016. 8. 19.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6. 9. 30.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관허사업,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210-1521, 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48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시청 시설계획과(☎ 2133-8412, fax : 2133-0739)
   서울시청 안전총괄과(☎ 2133-8041, fax : 768-8907)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2670-3540, fax : 2670-3593)
   다.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취지
      ○ 대통령 경호용 비밀시설로 사용됐던 여의대로 지하벙커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
      ○ 문화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문화 시설	문화 시설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	증) 957	957	-	도로(광로1-92, 여의대로)와 중복결정

○ 문화시설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문화 시설	문화 시설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대통령 경호용 비밀시설로 1970년대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의도 지하벙커를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

마. 관련도면 : 생략(열람장소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57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광장)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68호('16.9.1)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광장)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된 (가칭)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북권사업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따른 의견서는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태평로1가 60-6호 외 5필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광장) 사업
다. 사업의 명칭 : (가칭)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라. 사업의 규모 : 문화시설 A=1,558.3㎡, 광장 A=955.5㎡
마.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주소 :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바.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고방법 : 시보, 市홈페이지, 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 게제)
아.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북권사업과(☎2133-1562)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소재지·지번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 사업의 명칭 : (가칭)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권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율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2,152.2	1,558.3							
1	중구 태평로1가 60-6	대지	725.0	725.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100%				
2	종구 정동 3-3	대지	310.3	310.3	서울특별시	〃	100%				
3	중구 정동 3-6	대지	52.9	52.9	서울특별시	〃	100%				
4	중구 태평로1가 60-5	도로	337.9	171.8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00%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행정위임 및 도로관리청	사용 또는 수용
5	중구 태평로1가 60-20	도로	578.5	245.3	미래창조과학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3,5동	100%	우정사업본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행정위임재산관리 도로관리청	사용 또는 수용
6	중구 정동 3-9	도로	147.6	53.0	미래창조과학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3,5동	100%	우정사업본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행정위임재산관리 도로관리청	사용 또는 수용

※ 사용에 따른 필지별 정확한 면적은 공사 완료 후 측량 결과에 의함

수용 및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 사업의 명칭 : (가칭)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권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율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해 당 사 항” 없 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59호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에 대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심의를 완료하고, 기존 2016.3.17. ~ 3.31. 주민열람한 계획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구 역 명 :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관련도서 및 도면게재 생략)
2)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내용 : 게재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조성반(☎02-2133-8266),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12)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뉴스·소식 → 공고 → 고시·공고
5) 관련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와 같음)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16-95호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

도로법 제19조 1항 또는 제20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따라 도로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종 로 구 청 장

구 분		[V] 지정 [ ] 기존	[ ] 폐지 [ ] 변경
도로의 종류		구도	
노선번호		4901-J10-4-1 외 335	
노선명		평창-37 외 335	
기점		평창동 562-7 외 335	
종점		평창동 562-1 외 335	
주요 통과지			
총연장(킬로미터)		31.197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연장 (킬로미터)		

▢ 구도 노선 지정(신규) 세부내역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31,197		31,197		
1	평창-37	4901-J10-4-1	평창동 562-7	평창동 562-1	800		800		
2	평창-38	4901-J10-6-1	평창동 492-46	평창동 491-3	180		180		
3	평창-39	4901-J10-6-A1	평창동 491-12	평창동 491-5	51		51		
4	평창-40	4901-J10-6-A3	평창동 472	평창동 472	35		35		
5	평창-41	4901-J10-6-A5	평창동 402-1	평창동 402-1	20		20		
6	평창-42	4901-J10-7-1	평창동 474-3	평창동 419-1	1000		1000		
7	평창-43	4901-J10-7-A1	평창동 471-11	평창동 471-8	51		51		
8	평창-44	4901-J10-7-A3	평창동 471-9	평창동 471-1	71		71		
9	평창-45	4901-J10-34-A2	평창동 467-3	평창동 451-4	82		82		
10	평창-46	4901-J10-33-2	평창동 476-6	평창동 476-19	205		205		
11	평창-47	4901-J10-32-2	평창동 464-14	평창동 466-14	180		180		
12	평창-48	4901-J10-32-A1	평창동 451-8	평창동 451-15	57		57		
13	평창-49	4901-J10-44-1	평창동 1-5	평창동 415	67		67		
14	평창-50	4901-J10-42-A1	평창동 432-1	평창동 432-3	86		86		
15	평창-51	4901-J10-42-A3	평창동 430-1	평창동 425	165		165		
16	평창-52	4901-J10-30-1	평창동 460-4	평창동 140-3	935		935		
17	평창-53	4901-J10-30-A1	평창동 482-8	평창동 482-1	67		67		
18	평창-54	4901-J10-30-A3	평창동 484-4	평창동 484-6	58		58		
19	평창-55	4901-J10-30-A5	평창동 484-8	평창동 484-25	147		147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20	평창-56	4901-J10-30-A2	평창동 484-10	평창동 484-11	25		25		
21	평창-57	4901-J10-22-1	평창동 488-10	평창동 487-1	83		83		
22	평창-58	4901-J10-26-1	평창동 99-30	평창동 99-36	161		161		
23	평창-59	4901-J10-26-3	평창동 99-9	평창동 95-1	48		48		
24	평창-60	4901-J10-26-A2	평창동 99-39	평창동 99-40	20		20		
25	평창-61	4901-J10-26-A4	평창동 93-16	평창동 93-4	125		125		
26	평창-62	4901-J10-31-A2	평창동 465-5	평창동 465-5	25		25		
27	평창-63	4901-J10-31-A1	평창동 577-1	평창동 577-14	45		45		
28	평창-64	4901-J10-31-A3	평창동 465-14	평창동 465-3	110		110		
29	평창-65	4901-J10-40-A1	평창동 412-7	평창동 412-1	79		79		
30	평창-66	4901-J10-20-1	평창동 148-16	평창동 509-14	585		585		
31	평창-67	4901-J10-17-1	평창동 533-15	평창동 124-10	104		104		
32	평창-68	4901-J10-17-A1	평창동 533-9	평창동 533-11	33		33		
33	평창-69	4901-J10-13-2	평창동 360-19	평창동 362-5	365		365		
34	평창-70	4901-J10-15-1	평창동 379-2	평창동 387-3	160		160		
35	평창-71	4901-J10-15-A2	평창동 379-5	평창동 383	86		86		
36	평창-72	4901-J10-15-A4	평창동 388-5	평창동 388-1	86		86		
37	평창-73	4901-J10-15-A6	평창동 387-6	평창동 568-1	85		85		
38	평창-74	4901-J10-14-1	평창동 520-1	평창동 131-3	100		100		
39	평창-75	4901-J10-23-1	평창동 511-10	평창동 511-1	217		217		
40	평창-76	4901-J10-23-A1	평창동 512-38	평창동 512-37	60		60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41	평창-77	4901-J10-21-1	평창동 512-23	평창동 520-4	456		456		
42	평창-78	4901-J10-21-3	평창동 523-44	평창동 523-9	263		263		
43	평창-79	4901-J10-21-A1	평창동 515-15	평창동 148-18	245		245		
44	평창-80	4901-J10-21-A3	평창동 520-1	평창동 520-5	38		38		
45	평창-81	4901-J10-1	평창동 386-7	평창동 489-16	1320		1320		
46	평창-82	4901-J10-3	평창동 448	평창동 109-1	533		533		
47	평창-83	4901-J10-A2	평창동 298-12	평창동 298-8	77		77		
48	평창-84	4901-J10-A1	평창동 327-7	평창동 327-5	65		65		
49	평창-85	4901-J10-A4	평창동 570-1	평창동 570-5	55		55		
50	평창-86	4901-J10-A3	평창동 389-7	평창동 389-1	79		79		
51	평창-87	4901-J10-A6	평창동 509-1	평창동 495-5	85		85		
52	평창-88	4901-J10-A5	평창동 492-51	평창동 493-2	165		165		
53	평창-89	4901-J10-A7	평창동 446-12	평창동 446-11	53		53		
54	평창-90	4901-J10-A9	평창동 446-15	평창동 446-5	52		52		
55	평창-91	4901-J10-A11	평창동 446-16	평창동 446-16	39		39		
56	평창-92	4901-J10-A13	평창동 438-20	평창동 438-12	94		94		
57	평창-93	4901-J10-A8	평창동 432-6	평창동 432-10	60		60		
58	평창-94	4901-J10-25-1	평창동 80-1	평창동 100	93		93		
59	평창-95	4901-J10-25-3	평창동 92-4	평창동 505-1	376		376		
60	평창-96	4901-J10-25-A2	평창동 101-1	평창동 104-1	30		30		
61	평창-97	4901-J10-25-A1	평창동 90	평창동 484-16	45		45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62	평창-98	4901-J10-25-A3	평창동 91-7	평창동 89-17	64		64		
63	평창-99	4901-J10-25-A4	평창동 91-9	평창동 91-2	23		23		
64	평창-100	4901-J10-25-A5	평창동 505-1	평창동 505-10	65		65		
65	평창-101	4901-J10-24-2	평창동 66-32	평창동 108-9	255		255		
66	평창-102	4901-J10-24-4	평창동 108	평창동 108-1	137		137		
67	평창-103	4901-J10-24-A2	평창동 64-3	평창동 57-1	100		100		
68	평창-104	4901-J10-10-1	평창동 230-3	평창동 230-3	36		36		
69	평창-105	4901-J10-10-A2	평창동 234-8	평창동 234-6	40		40		
70	평창-106	4901-J10-8-1	평창동 274-10	평창동 260-14	266		266		
71	평창-107	4901-J10-8-3	평창동 252-1	평창동 산6-2	102		102		
72	평창-108	4901-J10-8-A2	평창동 246-3	평창동 245	42		42		
73	평창-109	4901-J10-8-A1	평창동 252-1	평창동 255	103		103		
74	평창-110	4901-J10-12-1	평창동 182-22	평창동 350-18	168		168		
75	평창-111	4901-J10-12-A1	평창동 177-7	평창동 177-14	48		48		
76	평창-112	4901-J10-12-A3	평창동 350-18	평창동 352-1	120		120		
77	평창-113	4901-J10-16-2	평창동 374-2	평창동 392	63		63		
78	평창-114	4901-J10-16-A2	평창동 549-18	평창동 549-11	72		72		
79	평창-115	4901-J10-11-1	평창동 310-1	평창동 350-11	220		220		
80	평창-116	4901-J10-11-3	평창동 350-4	평창동 376-9	385		385		
81	평창-117	4901-J10-11-5	평창동 123-2	평창동 530-2	205		205		
82	평창-118	4901-J10-11-A2	평창동 310	평창동 339	161		161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83	평창-119	4901-J10-11-A4	평창동 182-25	평창동 182-25	14		14		
84	평창-120	4901-J10-11-A6	평창동 182-25	평창동 182-1	54		54		
85	평창-121	4901-J10-11-A1	평창동 341	평창동 343-1	72		72		
86	평창-122	4901-J10-11-A8	평창동 344-3	평창동 344-6	55		55		
87	평창-123	4901-J10-11-A10	평창동 350-1	평창동 350-1	28		28		
88	평창-124	4901-J10-11-A12	평창동 360-16	평창동 360-11	67		67		
89	평창-125	4901-J10-11-A14	평창동 570-8	평창동 571-2	60		60		
90	평창-126	4901-J10-11-A16	평창동 365-1	평창동 570-10	30		30		
91	평창-127	4901-A1	평창동 309-1	평창동 312-2	16		16		
92	평창-128	4901-A3	평창동 158-6	평창동 191-2	55		55		
93	평창-129	4901-A5	평창동 158-1	평창동 158-2	82		82		
94	평창-130	4901-A7	평창동 153-1	평창동 155-2	80		80		
95	평창-131	4901-A9	평창동 152-2	평창동 201	41		41		
96	평창-132	4901-A11	평창동 148-7	평창동 148-14	35		35		
97	평창-133	4901-A13	평창동 148-5	평창동 207-1	245		245		
98	혜화-3	28-J29-10-2	혜화동 20-7	혜화동 22-103	81		81		
99	혜화-4	28-J29-10-A1	혜화동 20-7	혜화동 20-18	58		58		
100	혜화-5	28-J29-2-1	혜화동 108-1	혜화동 71-6	143		143		
101	혜화-6	28-J29-2-A2	혜화동 73-5	혜화동 70-3	72		72		
102	혜화-7	28-J29-2-A1	혜화동 79-4	혜화동 80-1	18		18		
103	혜화-8	28-J29-8-2	혜화동 16-9	혜화동 20-12	123		123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104	혜화-9	28-J29-8-A1	혜화동 15-54	혜화동 15-87	37		37		
105	혜화-10	28-J29-8-A3	혜화동 16-16	혜화동 15-60	45		45		
106	혜화-11	28-J29-8-A5	혜화동 15-53	혜화동 15-52	43		43		
107	혜화-12	28-J29-8-A7	혜화동 20-12	혜화동 20-22	51		51		
108	혜화-13	28-35-1	혜화동 102-2	혜화동 84-3	68		68		
109	혜화-14	28-35-3	혜화동 53-11	혜화동 23-2	264		264		
110	혜화-15	28-J29-6-1	혜화동 74-6	혜화동 15-130	173		173		
111	혜화-16	28-J29-6-A1	혜화동 74-6	혜화동 74-17	30		30		
112	혜화-17	28-J29-6-A3	혜화동 15-18	혜화동 15-92	61		61		
113	혜화-18	28-J29-6-A2	혜화동 22-38	혜화동 22-35	21		21		
114	혜화-19	28-J29-6-A4	혜화동 22-32	혜화동 22-7	28		28		
115	혜화-20	28-J29-6-A5	혜화동 22-22	혜화동 22-28	51		51		
116	혜화-21	28-J29-6-A6	혜화동 22-13	혜화동 22-12	45		45		
117	혜화-22	28-J29-6-A8	혜화동 15-76	혜화동 15-78	29		29		
118	혜화-23	28-35b-1	혜화동 71-10	혜화동 15-9	253		253		
119	혜화-24	28-35b-A2	혜화동 22-42	혜화동 22-42	16		16		
120	혜화-25	28-35b-A1	혜화동 22-59	혜화동 22-47	51		51		
121	혜화-26	28-J29-6a-A2	혜화동 15-169	혜화동 15-171	15		15		
122	혜화-27	29-14-A2	혜화동 198-1	혜화동 197-2	20		20		
123	혜화-28	29-14-A4	혜화동 163-18	혜화동 161-1	35		35		
124	혜화-29	28-J29-12-1	혜화동 10-19	혜화동 13-10	122		122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125	혜화-30	28-J29-12-A1	혜화동 10-25	혜화동 10-7	43		43		
126	혜화-31	28-34-1	혜화동 132-1	혜화동 166-4	135		135		
127	명륜2가-4	28-34-A2	명륜2가 20-1	명륜2가 21-8	30		30		
128	명륜2가-5	28-34-A4	명륜2가 23-1	명륜2가 27-1	31		31		
129	명륜2가-6	28-33-1	명륜2가 156-2	명륜2가 95-2	45		45		
130	명륜2가-7	28-31-1	명륜2가 195-8	명륜2가 195-2	25		25		
131	명륜2가-8	28-31-3	명륜2가 159-2	명륜2가 153	64		64		
132	명륜2가-9	28-31-A2	명륜2가 165	명륜2가 161-3	38		38		
133	명륜2가-10	28-31-A4	명륜2가 207-2	명륜2가 162-1	68		68		
134	명륜2가-11	28-J27-6-1	명륜2가 118-1	명륜2가 86-2	203		203		
135	명륜2가-12	28-J27-6-A2	명륜2가 85-2	명륜2가 86-22	40		40		
136	명륜2가-13	28-J27-4-2	명륜2가 43-1	명륜2가 8-1	138		138		
137	명륜2가-14	28-J27-4-A1	명륜2가 8-9	명륜2가 8-18	35		35		
138	혜화-32	28-J29-A2	혜화동 74-38	혜화동 74-37	33		33		
139	명륜1가-20	28-J29-A4	명륜1가 31-3	명륜1가 31-5	33		33		
140	명륜2가-15	28-J27-A8	명륜2가 203-2	명륜2가 203-1	16		16		
141	명륜2가-16	28-J27-A10	명륜2가 209-2	명륜2가 209-2	15		15		
142	명륜2가-17	28-J27-A12	명륜2가 148	명륜2가 150-1	57		57		
143	명륜2가-18	28-J27-A14	명륜2가 216-4	명륜3가 123-2	62		62		
144	명륜2가-19	28-J27-A16	명륜2가 142-2	명륜2가 141	19		19		
145	명륜2가-20	28-J27-A18	명륜2가 135	명륜2가 135-3	26		26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146	명륜2가-21	28-J27-A20	명륜2가 129-1	명륜2가 129-2	31		31		
147	명륜2가-22	28-J27-A22	명륜2가 74-1	명륜2가 76-1	32		32		
148	숭인1-1	51-57-1	숭인동 117	숭인동 72-61	120		120		
149	숭인1-2	51-57-A2	숭인동 99-2	숭인동 97	35		35		
150	숭인1-3	51-57-A4	숭인동 123	숭인동 138-2	60		60		
151	숭인1-4	51-57-A6	숭인동 72-50	숭인동 72-51	18		18		
152	숭인1-5	5111-8-1	숭인동 61-71	숭인동 61-103	138		138		
153	숭인1-6	5111-8-A1	숭인동 65-22	숭인동 65-1	70		70		
154	숭인1-7	5111-8-A3	숭인동 56-67	숭인동 56-38	40		40		
155	숭인1-8	5111-12a-1	숭인동 56-55	숭인동 56-227	36		36		
156	숭인1-9	5111-12a-A2	숭인동 58-427	숭인동 58-364	30		30		
157	숭인1-10	5111-12a-A1	숭인동 58-366	숭인동 58-376	30		30		
158	숭인1-11	5111-12a-A3	숭인동 58-446	숭인동 58-374	31		31		
159	숭인1-12	5111-12-1	숭인동 56-54	숭인동 57-10	93		93		
160	숭인1-13	5111-12-3	숭인동 56-50	숭인동 47-2	170		170		
161	숭인1-14	5111-12-A1	숭인동 56-78	숭인동 56-21	70		70		
162	숭인1-15	5111-12-A2	숭인동 56-29	숭인동 56-11	28		28		
163	숭인1-16	5111-12-A3	숭인동 56-28	숭인동 56-10	30		30		
164	숭인1-17	5111-14-1	숭인동 53-29	숭인동 48-2	240		240		
165	숭인1-18	5111-14-A1	숭인동 56-17	숭인동 57-10	86		86		
166	숭인1-19	5111-14-A2	숭인동 56-14	숭인동 56-14	11		11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167	숭인1-20	5111-14-A4	숭인동 46-2	숭인동 45	22		22		
168	숭인1-21	5111-16-1	숭인동 10-16	숭인동 16-2	115		115		
169	숭인1-22	5111-16-A2	숭인동 13	숭인동 12-4	13		13		
170	숭인1-23	51-63-1	숭인동 72-211	숭인동 72-216	38		38		
171	숭인1-24	51-63-2	숭인동 72-156	숭인동 72-233	45		45		
172	숭인1-25	5111-J36-1-1	숭인동 32-21	숭인동 32-26	67		67		
173	숭인1-26	5111-J36-1-A2	숭인동 32-20	숭인동 32-32	15		15		
174	숭인1-27	5111-J36-1-A1	숭인동 56-144	숭인동 56-144	23		23		
175	숭인1-28	5111-J36-1	숭인동 5-4	숭인동 5-76	95		95		
176	숭인1-29	5111-J36-3	숭인동 5-15	숭인동 12-20	100		100		
177	숭인1-30	5111-J36-5	숭인동 17-1	숭인동 24-3	90		90		
178	숭인1-31	5111-J36-A1	숭인동 5-93	숭인동 5-34	9		9		
179	숭인1-32	5111-J36-A3	숭인동 38	숭인동 37-2	20		20		
180	숭인1-33	5111-J36-A2	숭인동 27-6	숭인동 28-2	40		40		
181	창신3-1	5111-13-2	창신동 17-42	창신동 23-344	420		420		
182	창신3-2	5111-13-A2	창신동 23-814	창신동 23-373	78		78		
183	창신3-3	5111-13-A4	창신동 23-798	창신동 23-334	43		43		
184	창신3-4	5111-13a-1	창신동 23-816	창신동 23-317	112		112		
185	창신3-5	5111-13a-A2	창신동 23-366	창신동 23-432	61		61		
186	창신3-6	5111-11-2	창신동 128-14	창신동 23-264	167		167		
187	창신3-7	5111-11-A1	창신동 23-45	창신동 23-818	102		102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188	창신3-8	5111-11-A3	창신동 128-20	창신동 23-19	18		18		
189	창신3-9	5111-11-A5	창신동 23-34	창신동 23-97	37		37		
190	창신3-10	5111-11-A7	창신동 23-2	창신동 23-13	35		35		
191	창신3-11	5111-11-A9	창신동 23-280	창신동 23-290	40		40		
192	창신3-12	5111-17-2	창신동 20-15	창신동 703-8	227		227		
193	창신3-13	5111-17-A1	창신동 20-3	창신동 5-2	28		28		
194	창신3-14	5111-17-A3	창신동 18-20	창신동 1-91	13		13		
195	창신3-15	5111-17-A5	창신동 18-14	창신동18-12	15		15		
196	창신3-16	5111-17-A7	창신동 18-3	창신동 16-2	17		17		
197	창신3-17	5111-17-A9	창신동 18-8	창신동 16-5	15		15		
198	창신3-18	5111-17-A11	창신동 14-2	창신동 14-3	14		14		
199	창신3-19	5111-17-A13	창신동 14-4	창신동 14-16	26		26		
200	창신3-20	5111-17-A2	창신동 13-12	창신동 13-12	20		20		
201	창신1-1	51-51a-1	창신동 143-5	창신동 195-3	72		72		
202	창신1-2	51-51a-A2	창신동 151-1	창신동 150	17		17		
203	창신1-3	51-53-1	창신동 176	창신동 197-18	166		166		
204	창신1-4	51-53-A2	창신동 178	창신동 185	17		17		
205	창신1-5	51-53-A1	창신동 197-6	창신동 197-11	39		39		
206	창신1-6	51-53-A4	창신동 197-33	창신동 197-27	74		74		
207	창신1-7	51-53-A6	창신동 197-13	창신동 197-27	50		50		
208	창신1-8	51-J33-5d-1	창신동 138-28	창신동 138-51	120		120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209	창신1-9	51-J33-5d-A1	창신동 138-50	창신동 138-63	61		61		
210	창신1-10	5111-7-1	창신동 80-8	창신동 31-2	166		166		
211	창신1-11	5111-7-A1	창신동 73-2	창신동 76	51		51		
212	창신1-12	5111-7-A3	창신동 62-2	창신동 60	40		40		
213	창신1-13	5111-7-A5	창신동 67	창신동 48-1	23		23		
214	창신1-14	5111-7-A7	창신동 34	창신동 38-1	30		30		
215	창신1-15	5111-5-1	창신동 81-2	창신동 130-1	270		270		
216	창신1-16	5111-5-A1	창신동 237	창신동 247	49		49		
217	창신1-17	5111-5-A2	창신동 53-3	창신동 57	26		26		
218	창신1-18	5111-5-A4	창신동 50-1	창신동 50-1	10		10		
219	창신1-19	5111-5-A6	창신동 120-2	창신동 116	26		26		
220	창신1-20	5111-5-A8	창신동 115-3	창신동 115-7	7		7		
221	창신1-21	51-J33-5e-1	창신동 104	창신동 113	41		41		
222	창신1-22	51-50a-2	창신동 430-70	창신동 436-2	100		100		
223	창신1-23	51-50a-A1	창신동 430-34	창신동 430-41	12		12		
224	창신1-24	51-50c-2	창신동429-5	창신동 438-14	212		212		
225	창신1-25	51-50c-A1	창신동 438-18	창신동 438-1	22		22		
226	창신1-26	51-50d-2	창신동 410-5	창신동 409-3	43		43		
227	창신1-27	51-50d-4	창신동 403-2	창신동 436-73	65		65		
228	창신1-28	51-50d-A1	창신동 403-17	창신동 403-23	23		23		
229	창신1-29	51-46-1	창신동 444-14	창신동 438-14	90		90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230	창신1-30	51-46a-2	창신동 448-7	창신동 447-4	50		50		
231	창신1-31	51-46a-A2	창신동 460-11	창신동 460-3	32		32		
232	창신1-32	51-48-2	창신동 465	창신동 450-2	145		145		
233	창신1-33	51-48-A2	창신동 459-26	창신동 459-1	50		50		
234	창신1-34	51-48-A3	창신동 450-2	창신동 450-6	14		14		
235	창신1-35	51-52-2	창신동 528	창신동 393-12	274		274		
236	창신1-36	51-52-A1	창신동 416-2	창신동 413-5	43		43		
237	창신1-37	51-50-1	창신동 526-1	창신동 459-1	36		36		
238	창신1-38	51-50-3	창신동 459-45	창신동 433-5	74		74		
239	창신1-39	51-50-5	창신동 429-5	창신동 436-78	25		25		
240	창신1-40	51-50-A2	창신동 458-3	창신동 458-1	23		23		
241	창신1-41	51-50-A4	창신동 425-34	창신동 425-46	35		35		
242	창신1-42	51-54-1	창신동 340-11	창신동 415-7	78		78		
243	창신1-43	51-54-3	창신동 412-2	창신동 436-65	72		72		
244	창신1-44	51-54-A2	창신동 330-61	창신동 329-1	58		58		
245	창신1-45	51-54-A4	창신동 330-46	창신동 330-43	27		27		
246	창신1-46	51-54-A1	창신동 329-5	창신동 329-6	16		16		
247	창신1-47	51-54-A6	창신동 390-20	창신동 390-17	38		38		
248	창신1-48	51-44-2	창신동 446-1	창신동 427-12	198		198		
249	창신1-49	51-44-4	창신동 404-10	창신동 393-4	53		53		
250	창신1-50	51-44-A1	창신동 447-7	창신동 449-4	50		50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251	창신1-51	51-44-A3	창신동 430-18	창신동 430-52	38		38		
252	창신1-52	51-44-A5	창신동 430-5	창신동 449-3	21		21		
253	창신1-53	51-44-A7	창신동 419-2	창신동 419-6	23		23		
254	창신1-54	51-44-A9	창신동 419-4	창신동 423-3	41		41		
255	창신1-55	51-J33-5-1	창신동 226-35	창신동 83	188		188		
256	창신1-56	51-J33-5-A1	창신동 138-66	창신동 138-68	32		32		
257	창신1-57	51-J33-5-A3	창신동 96-2	창신동 96-1	25		25		
258	창신1-58	51-51-1	창신동 151-2	창신동 138-11	200		200		
259	창신2-1	51-51-A2	창신동 581-5	창신동 581-3	47		47		
260	창신2-2	51-51A-A1	창신동 581-26	창신동 581-27	14		14		
261	창신1-59	5111-2-2	창신동 401-7	창신동 398-3	242		242		
262	창신2-3	51-J33-8-1	창신동 130-70	창신동 130-130	63		63		
263	창신2-4	51-J33-8-3	창신동 130-122	창신동 23-575	154		154		
264	창신2-5	51-J33-6-A1	창신동 583-37	창신동 583-1	66		66		
265	창신2-6	51-J33-6-A3	창신동 593-13	창신동 593-6	25		25		
266	창신2-7	51-J33-6c-1	창신동 593-23	창신동 593-7	66		66		
267	창신2-8	51-J33-4a-1	창신동 640-51	창신동 640-243	82		82		
268	창신2-9	51-J33-4-2	창신동 656-4	창신동 660-111	73		73		
269	창신2-10	51-J33-4-A1	창신동 660-83	창신동 660-82	12		12		
270	창신2-11	51-J33-5b-1	창신동 583-14	창신동 583-40	152		152		
271	창신2-12	51-J33-2-2	창신동 687-9	창신동 687-15	45		45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272	창신2-13	51-J33-1-2	창신동 578-5	창신동 550-1	40		40		
273	창신2-14	51-J33-1-1	창신동 670	창신동 660-80	210		210		
274	창신2-15	51-J33-1-A2	창신동 679	창신동 680	12		12		
275	창신2-16	51-J33-1-A4	창신동 662-1	창신동 660-120	46		46		
276	창신2-17	51-J33-1-A3	창신동 660-18	창신동 660-17	32		32		
277	창신2-18	51-J33-1-A5	창신동 652	창신동 651-6	52		52		
278	창신2-19	51-J33-1-A6	창신동 660-23	창신동 660-127	36		36		
279	창신2-20	51-J33-10a-1	창신동 611-6	창신동 23-551	68		68		
280	창신2-21	51-J33-11-1	창신동 611-80	창신동 23-636	337		337		
281	창신2-22	51-J33-12-A1	창신동 23-326	창신동 611-48	44		44		
282	창신2-23	51-J33-12-A3	창신동 23-452	창신동 23-460	66		66		
283	창신2-24	51-J33-10-2	창신동 610-30	창신동 611-6	117		117		
284	창신2-25	51-J33-10-A1	창신동 610-21	창신동 610-22	23		23		
285	창신2-26	51-J33-10-A3	창신동 611-3	창신동 611-18	21		21		
286	창신2-27	51-J33-9-1	창신동 630-1	창신동 633-30	98		98		
287	창신2-28	51-J33-7-2	창신동 634	창신동 633-30	34		34		
288	창신2-29	51-J33-7-A1	창신동 633-31	창신동 633-26	11		11		
289	창신2-30	51-J33-7a-1	창신동 638-34	창신동 640-70	41		41		
290	창신2-31	51-J33-7a-A2	창신동 640-249	창신동 640-240	45		45		
291	창신2-32	51-J33-6a-2	창신동 595-245	창신동 130-80	151		151		
292	창신1-60	51-J33-6a-4	창신동 130-117	창신동 23-397	162		162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293	창신2-33	51-J33-1	창신동 687-28	창신동 651-26	130		130		
294	창신2-34	51-J33-3	창신동 651-14	창신동 633-3	333		333		
295	창신2-35	51-J33-5	창신동 598-2	창신동 23-824	234		234		
296	창신2-36	51-J33-7	창신동 611-62	창신동 611-44	90		90		
297	창신2-37	51-J33-A2	창신동 687-26	창신동 687-22	32		32		
298	창신2-38	51-J33-A4	창신동 687-4	창신동 687-13	59		59		
299	창신2-39	51-J33-A6	창신동 577	창신동 581-13	79		79		
300	창신2-40	51-J33-A8	창신동 583-97	창신동 583-30	25		25		
301	창신2-41	51-J33-A10	창신동 635-4	창신동 635-12	26		26		
302	창신2-42	51-J33-A12	창신동 593-4	창신동 593-2	31		31		
303	창신2-43	51-J33-A14	창신동 593-34	창신동 593-32	28		28		
304	창신2-44	51-J33-A16	창신동 594-8	창신동 593-28	40		40		
305	창신2-45	51-J33-A1	창신동 594-4	창신동 594-7	17		17		
306	창신2-46	51-J33-A3	창신동 629-36	창신동 629-51	63		63		
307	창신2-47	51-J33-A5	창신동 601-6	창신동 601	105		105		
308	창신2-48	51-J33-A18	창신동 615-26	창신동 615-25	14		14		
309	창신2-49	51-J33-A20	창신동 615-141	창신동 615-54	40		40		
310	창신2-50	51-J33-A22	창신동 611-46	창신동 611-49	52		52		
311	창신2-51	29-J34-5-1	창신동 611-52	창신동 23-679	410		410		
312	창신2-52	29-J34-5-A1	창신동 23-324	창신동 703-4	81		81		
313	창신2-53	51-J33-6b-1	창신동 23-673	창신동 23-672	26		26		
314	창신2-54	51-J32-1	창신동 668-75	창신동 668-65	26		26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315	창신2-55	51-J32-3	창신동 660-70	창신동 660-80	82		82		
316	창신2-56	51-J32-5	창신동 660-73	창신동 640-422	62		62		
317	창신2-57	51-J32-7	창신동 640-84	창신동 615-9	472		472		
318	창신2-58	51-J32-A1	창신동 660-119	창신동 660-169	26		26		
319	창신2-59	51-J32-A2	창신동 627-309	창신동 627-33	16		16		
320	창신2-60	51-J32-A4	창신동 626-14	창신동 626-31	20		20		
321	창신2-61	51-J32-A6	창신동 626-68	창신동 621-3	39		39		
322	창신2-62	51-J32-A8	창신동 617	창신동 613-1	22		22		
323	창신2-63	51-J32-A3	창신동 616-7	창신동 616-4	36		36		
324	창신2-64	51-J32-A5	창신동 615-20	창신동 615-1	40		40		
325	창신1-61	5111-A2	창신동 395-37	창신동 395-40	20		20		
326	숭인2-1	5111-A4	숭인동 313-14	숭인동 313-6	58		58		
327	창신1-62	5111-A6	창신동 265	창신동 241	94		94		
328	창신1-63	5111-A8	창신동 276-1	창신동 278	34		34		
329	창신1-64	5111-A10	창신동 25-6	창신동 26-2	28		28		
330	숭인1-34	5111-A12	숭인동 55-13	숭인동 55-13	11		11		
331	창신3-21	5111-A14	창신동 23-816	창신동 23-89	106		106		
332	창신3-22	5111-A16	창신동 17-12	창신동 23-817	18		18		
333	숭인1-35	5111-A18	숭인동 53-21	숭인동 53-2	26		26		
334	숭인1-36	5111-A20	숭인동 53-6	숭인동 52-7	22		22		
335	숭인1-37	5111-A22	숭인동 10-14	숭인동 11-1	55		55		
336	숭인1-3	5111-A2	숭인동 7-24	숭인동 7-3	22		22		

□ 지 형 도 (1/50,00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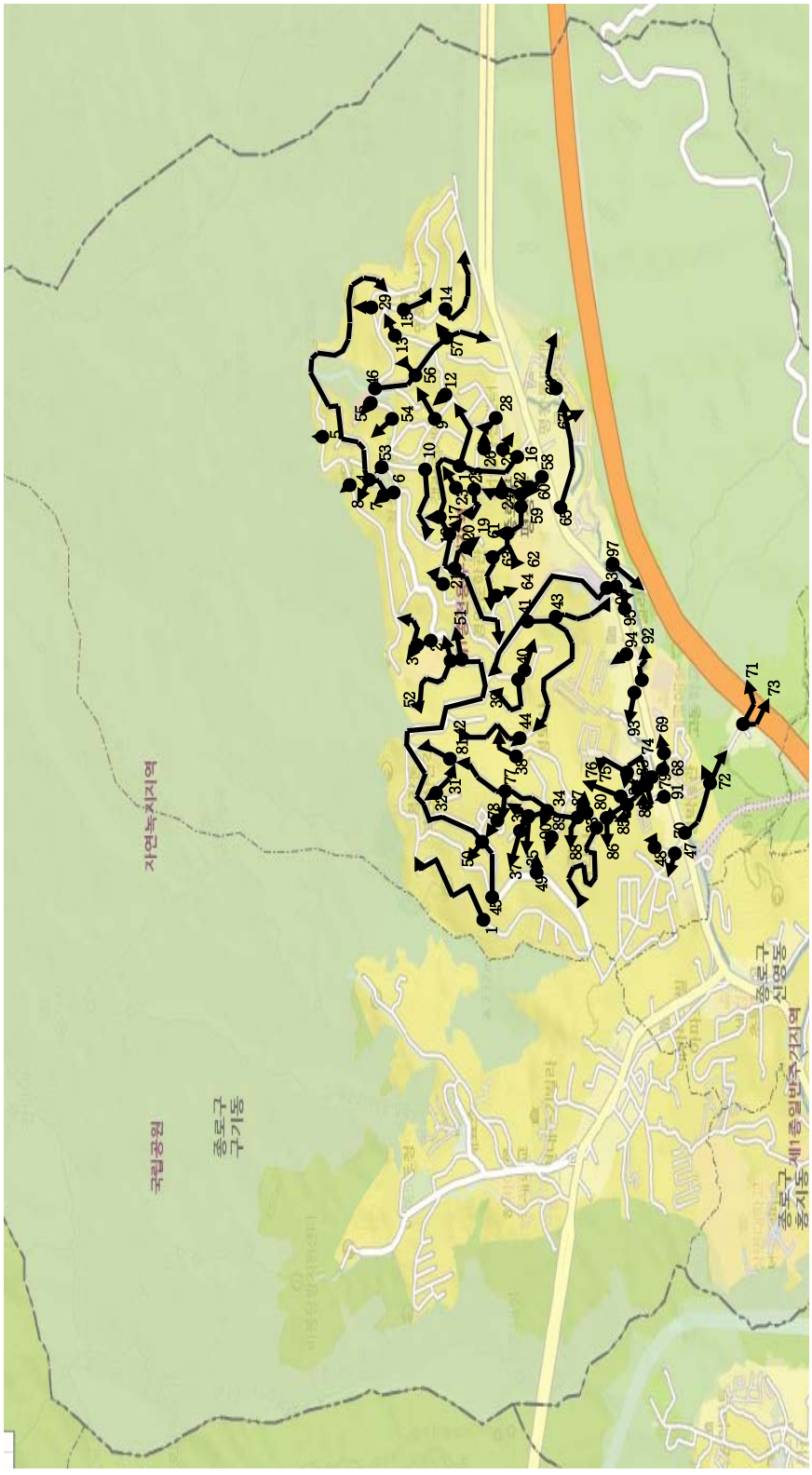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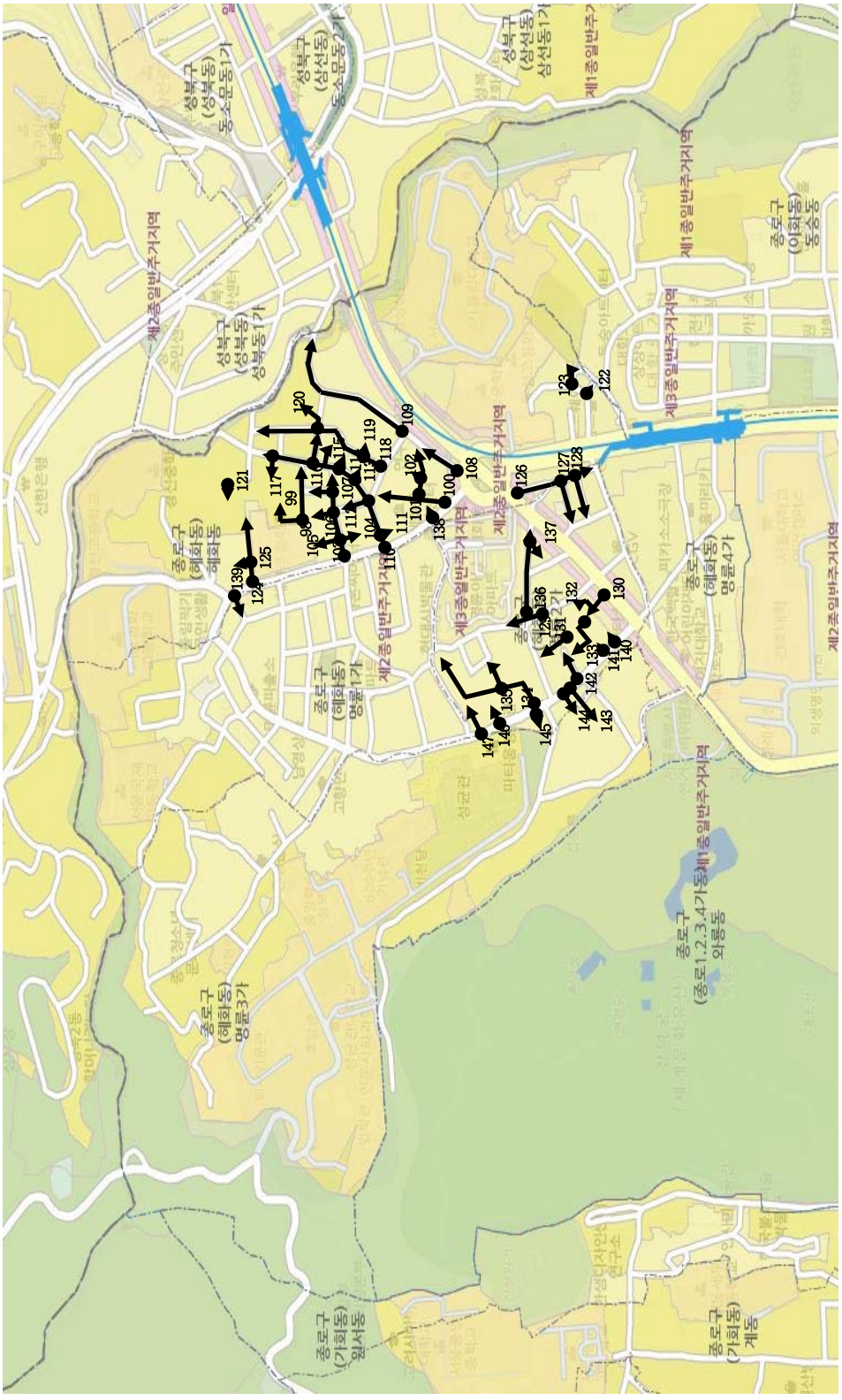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종로구 (혜화동) 혜화동
종로구 (혜화동) 명륜1가
종로구 (혜화동) 명륜3가
종로구 (혜화동) 명륜4가
종로구 (가회동) 원서동
종로구 (가회동) 계동
종로구 (종로1,2,3,4가동)제1종일반주거지역 와룡동
종로구 (이화동) 동숭동
성북구 (성북동) 동소문동1가
성북구 (삼선동) 동소문동2가
성북구 (성북동) 성북동1가
성북구 (삼선동) 삼선동1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성북구
(보문동)
보문동6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종로구
(숭인1동)
176
178
175
179
180
336
177
172
169
167
173
335
168
163
162
174
334
333
166
160
164
165
330
161
155
159
154
157
156
152
158
153
170
171
151
150
149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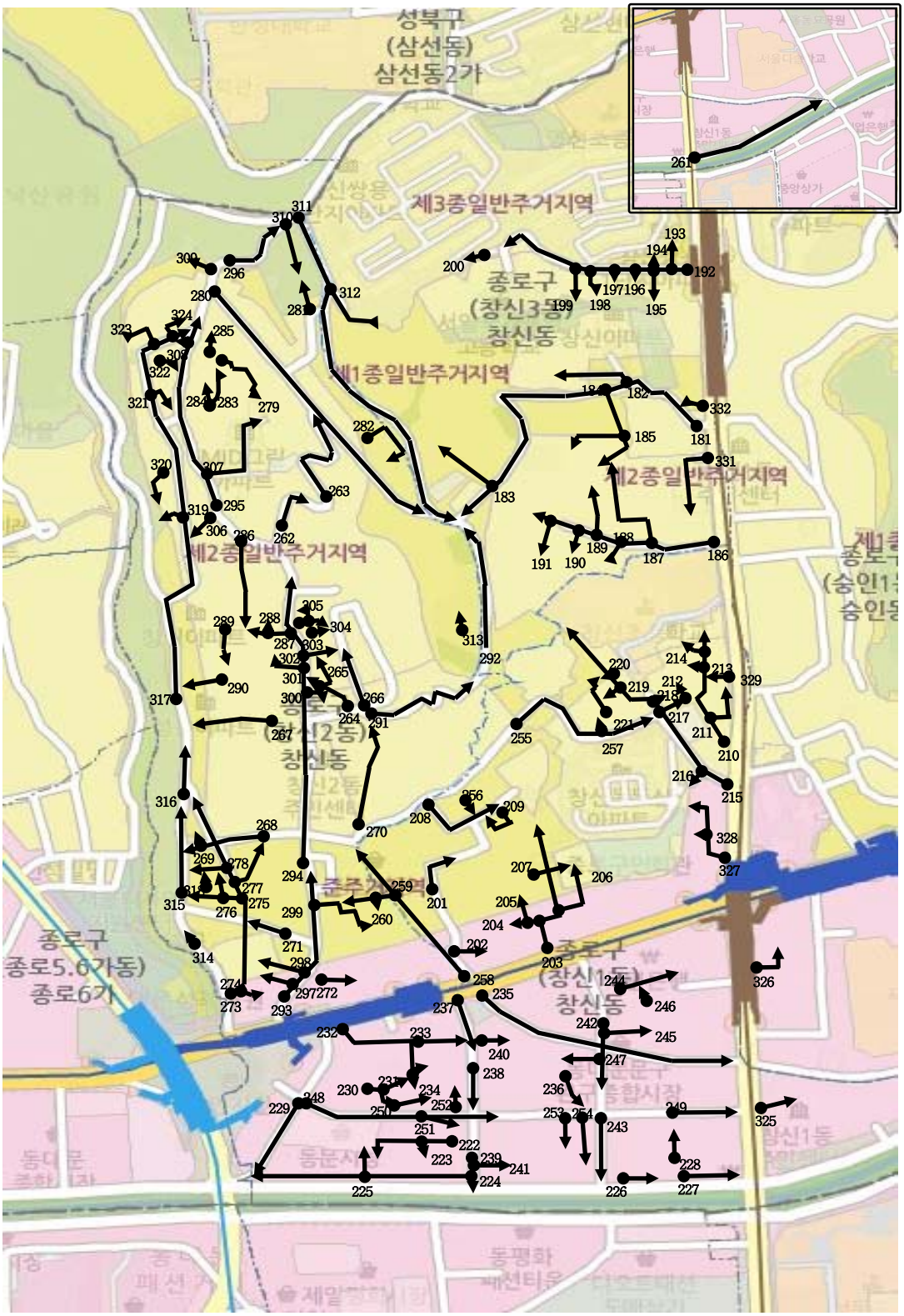
성북구
(삼선동)
삼선동2가
제3종일반주거지역
종로구
(창신3동)
창신동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종로구
(창신2동)
창신동
종로구
(종로5.6가동)
종로6가
종로구
(창신1동)
창신동
동평화
패션타운

◈ 노원구고시 제2016-8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조성] 실시계획 인가(변경)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687호(1989.11.23.)로 공원조성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72호(2002.5.10)로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5-88호(2015.2.5.)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5-7호(2015.3.12)로 실시계획인가고시(최초),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5-18호(2015.6.18)로 실시계획변경고시,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6-333호(2016.04.07.)로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6-40호(2016.05.04)로 실시계획변경고시(최종),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6-680호(2016.08.18.)로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152-4번지, 산151번지 일대 수락산 도시자연공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16년 9월 8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152-4번지, 산15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 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조성
  3) 사업내용 : 토지 보상 등
다. 사업규모 : 15,634㎡(당초 17,627㎡)
라.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열람장소 : 노원구청 공원녹지과(☎02-2116-3966)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별첨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조성

※최초사업인가일 : 2015.3.12.

기정										변경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계		17,627	17,627									17,627	15,634							
상계동 산152-4	임	16,718	16,718 (3/15)	임	이순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16, 605동 1004호 (신봉동, 신봉마을동부센트레빌6단지)				상계동 산152-35	임	1,993		임	이순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16, 605동 1004호 (신봉동, 신봉마을동부센트레빌6단지)				
			16,718 (1/10)	임	이영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83동 1406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임	이영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83동 1406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6,718 (1/10)	임	이인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83동 1406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임	이인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83동 1406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6,718 (1/5)	임	이지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76동 5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임	이지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76동 5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6,718 (4/20)	임	이혁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7동 6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임	이혁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7동 6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6,718 (1/10)	임	최미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0, 2동 603호(대치동, 개포1차우성아파트)								임	최미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0, 2동 603호(대치동, 개포1차우성아파트)				

기정										변경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 관계인		소유권 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 관계인		소유권 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6,718 (1/10)	임	최영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0, 7동 805호(개포동, 경남아파트)														
										상계동 산152-4	임	132	132 (3/15)	대	이순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16, 605동 1004호 (신봉동, 신봉마을동부센트레빌6단지)				
													132 (1/10)	대	이영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83동 1406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32 (1/10)	대	이인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83동 1406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32 (1/5)	대	이지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76동 5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32 (4/20)	대	이혁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7동 6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32 (1/10)	대	최미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0, 2동 603호(대치동, 개포1차우성아파트)				
													132 (1/10)	대	최영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0, 7동 805호(개포동, 경남아파트)				

기정											변경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 관계인		소유권 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 관계인		소유권 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임	14,593	14,593 (3/15)	임	이순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16, 605동 1004호 (신봉동, 신봉마을동부센트레빌6단지)				
														14,593 (1/10)	임	이영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83동 1406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4,593 (1/10)	임	이인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83동 1406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4,593 (1/5)	임	이지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76동 5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4,593 (4/20)	임	이혁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7동 6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4,593 (1/10)	임	최미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0, 2동 603호 (대치동, 개포1차우성아파트)				
														14,593 (1/10)	임	최영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0, 7동 805호 (개포동, 경남아파트)				
상계동 산151	임	909	909	임	이혁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7동 6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상계동 산151	임	909	909	임	이혁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7동 6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물 건 조 서

▣ 사업명 : 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조성

기 정						변 경						비고
소재지	물건의 종류(실제 이용현황)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소재지	물건의 종류(실제이용현황)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상계동 산152-4	건물 (주거용)	벽돌, 시멘트	50㎡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상계동 산152-4	건물 (주거용)	벽돌, 시멘트	50㎡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건물 (주거용)	벽돌, 시멘트	132㎡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건물 (주거용)	벽돌, 시멘트	132㎡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건물 (주거용)	벽돌, 시멘트	28㎡	미상			건물 (주거용)	벽돌, 시멘트	28㎡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장독대		13개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장독대	콘크리트	6개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수목	뽕나무	3주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수목	뽕나무	3주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개암나무	3주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개암나무	3주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매화나무	2주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매화나무	2주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벚나무	1주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벚나무	1주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단풍나무	2주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단풍나무	2주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잣나무	1주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잣나무	1주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미쓰김라일락	2주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미쓰김라일락	2주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철쭉	6주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철쭉	6주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기 정						변 경						
소재지	물건의 종류(실제 이용현황)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소재지	물건의 종류(실제이 용현황)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옥매	1주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옥매	1주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겹황매화	1주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겹황매화	1주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심야보일러		1대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에어컨		1대	이휘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상계동 산151	묘지		1구	이혁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7동 6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상계동 산151	묘지		1구	이혁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7동 6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석상	돌	4개	이혁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7동 6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돌철대문	돌, 철근 (3m×2.3m)	1개	이혁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7동 6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잔디	15m×10m	1식	이혁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7동 6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 은평구고시 제2016-77호

도시관리계획(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7호(2004.02.25)로 구역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75호(2006.03.09.)로 최종 결정된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녹번동 144-41 외 1필지의 소유자로부터 공동개발(2필지) 변경 제안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은 평 구 청 장

1. 변경결정 사유
   ○ 각각의 개별필지를 공동개발 가능토지로 변경하여 건축행위 추진
2. 지구단위계획(공동개발) 변경결정 조서(경미한 변경)
   ○ 공동개발 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기정	C-05	녹번동 144-41	202	-	○자율적 공동개발 : 144-41, 144-42
		녹번동 144-42	207	-	
변경	C-05	녹번동 144-41	202	409	○자율적 공동개발 : 144-41, 144-42 ※ 자율적 공동개발 2필지 (144-41, 144-42)는 공동개발이 가능함
		녹번동 144-42	207		

   ○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1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기 정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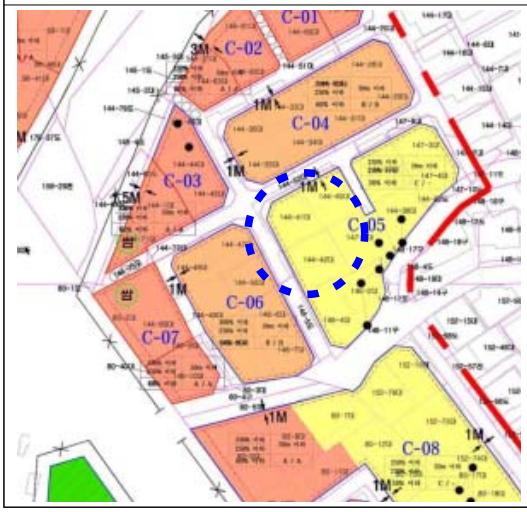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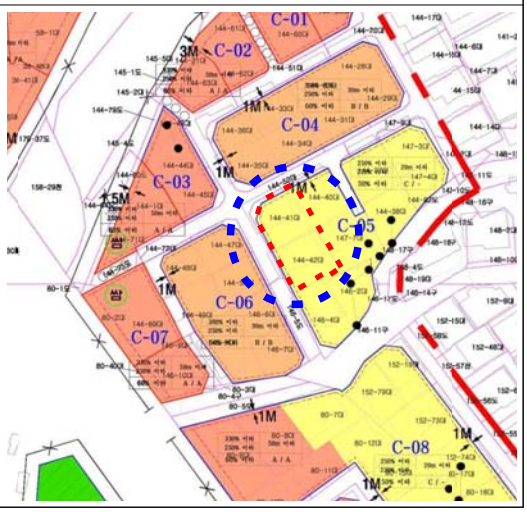

(공동개발 가능토지(2필지) : 녹번동 144-41, 144-42 - 면적 : 409㎡)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마포구고시 제2016-11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변경(경미한사항)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1994-139(1994.04.28.)호로 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4-116(2004.11.10.)호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3-3(2013.01.03)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 인가,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4-82(2014.05.08)호 및 제2015-151(2015.08.27.)호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마포구 토정로 56(당인동 1번지 외 68필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경미한사항) 인가하고, 같은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8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마포구 토정로 56(당인동 1번지외 68필지)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1)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2) 명칭 : 서울복합화력 1·2호기 건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일부변경)

1) 면적 : 118,779㎡(변경없음)

2) 규모

당 초	변 경	비 고
건축물 지하1층, 지상10층 연면적 98,605.55㎡	건축물 지하1층, 지상10층 연면적 99,621.40㎡	연면적 증 1,015.85㎡ (증 1.03%)
발전설비 800MW급 (가스터빈, 증기터빈, 배열회수 보일러)	발전설비 800MW급 (가스터빈, 증기터빈, 배열회수 보일러)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상호) : 한국중부발전(주) 사장 정창길
2) 주 소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보령북로 160
마. 사업의 시행기간 : 2013.01.03.~2017.12.31.(변경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변경없음)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동작구고시 제2016-7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07-1호(2007.1.4.)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6-13호(2016.2.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상도10구역 주변 도로개설공사(노량진동 315-7~상도동 362-36)”에 대하여
2.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동작구공고 제2016-744호(2016.8.18.)로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2016년 9월 8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동작구 노량진동 315-7번지 일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상도10구역 주변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폭 12m, 연장 282m(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동작구청장(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변경없음)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 초 : 2016. 2. 11 ~ 2016. 8. 31
○ 변 경 : 2016. 2. 11 ~ 201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무상귀속 대상 시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단위 : ㎡)

연번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상도동 363-253	대지	8	8	이자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63-18			
2	노량진동 314-43	도로	411	411	동작구	-			
3	노량진동 302-427	대지	32	32	동작구	-			
4	상도동 363-295	잡종지	164	151	국 (기획재정부)	-			
5	노량진동 314-88	도로	393	393	동작구	-			
6	노량진동 315-142	도로	257	235.4	동작구	-			
7	노량진동 산30-75	임야	614	614	동작구	-			
8	노량진동 302-426	대지	23	23	동작구	-			
9	상도동 363-254	대지	28	28	동작구	-			
10	노량진동 314-94	대지	3	3	서울특별시	-			
11	노량진동 315-135	도로	1,443	1,297	동작구	-			
12	상도동 363-59	도로	17	17	국 (기획재정부)	-			
13	노량진동 314-121	도로	3	3	동작구	-			
14	노량진동 314-118	도로	6	6	동작구	-			
15	노량진동 314-98	대지	71	71	서울특별시	-			
16	노량진동 314-97	대지	131	131	서울특별시	-			
계	16필지		3,604	3,423.4					

◈ 강동구고시 제2016-13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47호(2013. 5. 1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6-850호(2016. 6. 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6-108호(2016. 7. 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된 「둔촌동 105~105-3(둔촌마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토지분할 완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강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강동구 둔촌동 105~105-3간
   - 금회(1차) 사업 시행지 : 강동구 둔촌동 107-4, 강동구 둔촌동 108-55, 강동구 둔촌동 108-56, 강동구 둔촌동 산19-6
2. 사업의 종류(변경 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3.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둔촌동 105~105-3(둔촌마을)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변경 없음) : 도로개설 폭 4~6m, 연장 125m
   - 금회(1차) 사업구간 : 도로개설 폭 4~6m, 연장 45m
5.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 강동구청장(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6.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8. 12. 31일 까지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둔촌동 105~105-3(둔촌마을)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연번	구분	소재지번	지 적(㎡)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1	당초	둔촌동 107-3	314	21	대		하*주	서울시 강동구 **동 107-3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명일동지점)	근저당권	
	변경	둔촌동 107-4	21	21	대		하*주	서울시 강동구 **동 107-3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명일동지점)	근저당권	
2	당초	둔촌동 108-16	238	14	대		최*희	서울시 강동구 **동 92-3				
	변경	둔촌동 108-55	14	14	대		최*희	서울시 강동구 **동 92-3				
3	당초	둔촌동 108-52	40	17	도		강*준	105-3046 클리어 부룩 에보츠포드, 비씨, *******, 캐나다				
	변경	둔촌동 108-56	17	17	도		강*준	105-3046 클리어 부룩 에보츠포드, 비씨, *******, 캐나다				
4	당초	둔촌동 산19-1	496	100	임		이*환	서울서대문구 **동 287-12				
	변경	둔촌동 산19-6	100	100	임		이*환	서울서대문구 **동 287-12				

수용 및 사용할 물건조서

□ 사 업 명 : 둔촌동 105~105-3(둔촌마을)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연번	구분	소재지번	물건의 종류	용도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1	당초	둔촌동 107-3	지장물	담장	적벽돌 1.6m×15m	1식		하*주	서울시 강동구 **동 107-3				
			지장물	수목	-	19주							
	변경	둔촌동 107-4	지장물	담장	적벽돌 1.6m×15m	1식		하*주	서울시 강동구 **동 107-3				
			지장물	수목	-	19주							
2	당초	둔촌동 산19-1	지장물	비닐 하우스	철골 및 천막	35		이*환	서울서대문구 **동 287-12				
	변경	둔촌동 산19-6	지장물	비닐 하우스	철골 및 천막	35		이*환	서울서대문구 **동 287-12				

구 공 고

◈ 용산구공고 제2016-624호

도시관리계획(한남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2호(2013. 11. 28.)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4-47호(2014. 4. 23.)로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된 용산구 한남동 93번지 일원 한남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8일
용 산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16. 9. 9. ~ 9. 22. (14일간)
나. 열람장소 : 용산구청 7층 도시계획과 (☏ 2199-7423)
다. 열람내용 : 한남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계획(변경)
(1)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2) 공공시설 설치계획 : 변경
· 상한용적률 800%이하 범위 내 공공시설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가) 획지 ②-1

구분	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공시설연면적	1,212.0㎡	1,444.08㎡	• 청소년수련시설	• 사회복지시설
표준공사비	1,630,000원/㎡		• 국토해양부 고시 (2012년도 표준공사비)	
부지가액	12,480,000원/㎡		• 일반상업지역 최고 개별공시지가 : 6,240,000원/㎡ • 특별계획구역 ② 내 최고 공시지가 • 인근토지 실거래사례 없음 : 개별공시지가 2배	

구분	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부속토지	151.50㎡	180.51㎡	• 공공시설연면적 ÷ 상한용적률	
			· 1,212.0㎡÷800% = 151.50㎡ ※대지면적(2,700.2㎡)의 5.6%	· 1,444.08㎡÷800% = 180.51㎡ ※대지면적(2,915.5㎡)의 6.2%
환산 부지면적	158.30㎡	188.61㎡	• 표준건축비 × 공공시설연면적 ÷ 부지가액	
			· 1,630,000 원/㎡ × 1,212.0㎡ ÷ 12,480,000원/㎡ = 158.3㎡ ※대지면적(2,700.2㎡)의 5.9%	· 1,630,000 원/㎡ × 1,444.08㎡ ÷ 12,480,000원/㎡ = 188.61㎡ ※대지면적(2,915.5㎡)의 6.5%
총기부 채납면적	309.80㎡	369.12㎡	• 11.5% (부지 5.6%, 건축물 5.9%)	• 12.7% (부지 6.2%, 건축물 6.5%)

(나) 획지 ②-2

구분	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공시설연면적	1,281.8㎡	1,049.72㎡	• 청소년수련시설	
표준공사비	1,630,000원/㎡		• 국토해양부 고시 (2012년도 표준공사비)	
부지가액	12,480,000원/㎡		• 일반상업지역 최고 개별공시지가 : 6,240,000원/㎡ • 특별계획구역 ② 내 최고 공시지가 • 인근토지 실거래사례 없음 : 개별공시지가 2배	
부속토지	160.2㎡	131.21㎡	• 공공시설연면적 ÷ 상한용적률	
			· 1,281.8㎡÷800% = 160.2㎡ ※대지면적(2,502.2㎡)의 6.4%	· 1,049.72㎡÷800% = 131.21㎡ ※대지면적(2,286.9㎡)의 5.7%
환산 부지면적	167.4㎡	137.10㎡	• 표준건축비 × 공공시설연면적 ÷ 부지가액	
			· 1,630,000 원/㎡ × 1,281.8㎡ ÷ 12,480,000원/㎡ = 167.4㎡ ※대지면적(2,502.2㎡)의 6.7%	· 1,630,000 원/㎡ × 1,049.72㎡ ÷ 12,480,000원/㎡ = 137.1㎡ ※대지면적(2,286.9㎡)의 6.0%
총기부 채납면적	327.6㎡	268.31㎡	• 13.1% (부지 6.4%, 건축물 6.7%)	• 11.7% (부지 5.7%, 건축물 6.0%)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시설 설치계획	•②-1 획지 공공시설 용도 변경 - 청소년수련시설 →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용산 어린이 · 청소년종합타운 내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계획 반영 - 활용도가 높은 공공시설로 용도변경 -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에서 시설 운영
	•획지별 공공시설 설치연면적 변경 - ②-1 : 1,212.0㎡→1,444.08㎡ - ②-2 : 1,281.8㎡→1,049.72㎡	•기 변경(`14. 4. 23.)된 부지 정형화를 위한 획지계획 내용 반영 •공공시설 총 설치연면적 및 순부담률은 변경없음 - 총 설치연면적 : 2,493.8㎡ (토지환산 시 순부담률 10.1%)

(다) 공공시설 설치계획

시설구상	[②-1 획지] ■ 용산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내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계획 반영 • 사회복지시설 설치 : 일자리경제과 운영 –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회서비스 확대) [②-2 획지] ■ 지구중심의 기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용산구 시설운영 연계) • 용산구 가정복지과 문화센터 건립계획 반영 –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 자기실현(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문화센터 – 창의적 교육과 문화증진, 사회적 창의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 –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 및 권익증진을 도모코자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 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보드게임실, 자료열람실, 인터넷검색실, 휴게실 등. 끝 ○ 설치계획 • 각 획지별 동일기능 시설 도입을 통한 집적효과 및 공익기능강화 – ②-1 : 1,444.08㎡ (사회복지시설 :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 ②-2 : 1,049.72㎡ (청소년수련시설)

4) 건축물의 건축선·형태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라. 관련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강서구공고 제2016-101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6호(1976.08.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설치를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열람 장소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8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강서구 방화동 271-1~258-1

나. 사 업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 업 명 : 강서구 방화동 271-1~258-1간 도로개설공사

라. 사 업 규 모 : 도로개설(B=10m, L=200m) 등

마. 사업시행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 성 명 : 강서구청장

바.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17.12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 강서구청 도로과(☎2600-693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장

■ 공사명 : 방화동 271-1 ~ 258-1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방화동 272-1	구거	109	109	권우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1-162	1/1				
2	방화동 273-6	답	5	5	강용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80-42	1/29				
					심명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69-1 남양연립 나동 203호	6/29				
					강춘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324-1	4/29				
					강옥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323-3 옥산연립 다동 101	4/29				
					강주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09-138	4/29				
					강경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324-1	6/29				
					강민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69-1 남양연립 다동 203호	4/29	강서세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	근저당권	
3	방화동 272-25	도	4	4	유성남	충청북도 음성군 생두면 범암리 323	1/1				
4	방화동 182-52	대	9	9	권혁연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74-21	1/1				
5	방화동 183-1	전	139	139	서흥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459 동신아파트 104-503	1/1				

위 치 도

사 업 명	방화동 271-1~258-1간 도로개설공사

◈ 강서구공고 제2016-1085호

도시계획시설(꿩고개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14)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29호(1997. 2. 6)로 최초 조성계획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76호(2008.12.26)로 조성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강서구고시 제2016-46호(2016. 6.23)로 실시계획 인가한 도시계획시설 꿩고개근린공원에 대하여,
2.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3. 관계서류는 강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아래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8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사업의 명칭 : 꿩고개근린공원 조성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산136-8번지 외 4필지
다.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공원조성
라. 변 경 내 용 : 사업규모 변경
마. 사업의 규모
  1)당초 : 1,800㎡, 분묘 8기, 비석 1기
  2)변경 : 1,800㎡, 분묘 10기, 비석 1기
바.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사무수임자 강서구청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사.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7. 12. 31
아.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 : 별도첨부
자. 열람장소 :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 3층 공원녹지과(☎2600-4183)
차.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

연번	지번	지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지적(㎡)		공유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공유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합계	2필지		1,800	1,800							1,800	1,800							
1	방화동 산136-8	임야	900	900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0길 13-1, 402호	김용구				900	900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0길 13-1, 402호	김용구				동의 변경 없음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2길 29	이화생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2길 29	이화생				
2	방화동 산130-4	임야	900	900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 22	권순직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지상권	900	900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 22	권순직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지상권	동의 변경 없음
					1/2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400, 1025동 1304호	이태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지상권			1/2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400, 1025동 1304호	이태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지상권	

☐ 물건조서 : 분묘 등

연번	지번	지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물건의 종류 및 구조	수량	연고자			물건의 종류 및 구조	수량	연고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방화동 산136-8	임야	분묘	2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9, 2730동 1001호	권혁준		분묘	2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9, 2730동 1001호	권혁준		동의 변경 없음
2	방화동 산136-8	임야	분묘	2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금낭화로 24가길 19	이상칠		분묘	2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금낭화로 24가길 19	이상칠		동의 변경 없음
3	방화동 산136-8	임야	분묘	1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로 7, 1803호	강석주		분묘	1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로 7, 1803호	강석주		동의 변경 없음
4	방화동 산136-8	임야	비석(석재)	1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로 7, 1803호	강석주		비석(석재)	1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로 7, 1803호	강석주		동의 변경 없음
5	방화동 산136-3	임야	분묘	2기	경기도 김포시 걸포1로 39, 307동 1101호	유선용		분묘	2기	경기도 김포시 걸포1로 39, 307동 1101호	유선용		동의 변경 없음
6	방화동 산136-6	임야	분묘	1기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741	강보구		분묘	1기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741	강보구		동의 변경 없음
7	방화동 산135-1	임야						분묘	2기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741	강보구		추가 편입

◈ 구로구공고 제2016-108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건설부고시 제64호(1978.3.29)로 결정고시, 서울시고시 제319호(2000.11.10)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고시되고, 구로구공고 제2016-111호(2016.2.4)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 공고하여 구로구고시 제2016-25호(2016.3.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된「신도림동 437-1~435-17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2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437-1 ~ 435-17(경인로)

다. 공사완료(준공)현황

사 업 명 칭 (사 업 위 치)	사업규모	실시계획인가	공사기간	공사완료 (준공일)
신도림동 437-1~435-17간 도로확장공사 (신도림동 437-1~435-17)	차로확장 6차로→7차로 B=3m, L=130m	구로구고시 제2016-25호 (2016.03.03)	2016.03.21 ~2016.08.23	2016.08.18 (2016.08.23)

라. 위치도 : 1부 (게재생략)

◈ 구로구공고 제2016-108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시특별시고시 제2호(1974.01.1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고, 구로구고시 제2016-132호(2016.08.18)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한 『오류중학교 가각정비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로과(☎860-3124)에 비치하고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8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43번지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명 칭 : 오류중학교 가각정비공사
다. 사업규모 : 도로가각정비 A=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열람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토 지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오류중학교 가각정비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모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고척동 243	학교 용지	13,057	8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종로구 송월길48(신문로2가)				

※ 편입지번(고척동 243호)은 토지 분할전 지번으로 분할 후 지번이 변경될 수 있음.

물 건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오류중학교 가각정비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고척동 243	담장	조적조	1식	담장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종로구 송월길48(신문로2가)				
		휀스	메쉬,철재	1식	휀스						

◈ 영등포구공고 제2016-126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건설교통부고시 제768호('64.01.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6-79호('16.09.0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도림동 286-11~187-39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및 동법률 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등)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8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도림동 187-17 ~ 200-16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사업의 명칭 : 도림동 286-11 ~ 187-39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폭 6m, 연장 9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영등포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마. 사업의 기간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5년
바. 열람공고기간 :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아. 영등포구청 도로과에 관계서류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의견 있으실 때에는 열람공고기간 내 영등포구청 도로과(☎ 2670-3813)로 서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장

■ 사업의 명칭 : 도림동 287-11 ~ 187-37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 고
					성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1	도림동 187-17	대	7	7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2	도림동 187-18	대	149	3	박순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85-6	근저당권	도림2동 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53	
3	도림동 187-19	대	86	46	박용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87-19	근저당권	도림2동 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53	
4	도림동 187-21	대	112	2	나문갑 외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86-25				
5	도림동 187-65	대	50	47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6	도림동 187-66	대	43	43	조청자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26, 203동 306호(가좌동, 가좌주공아파트)				
7	도림동 200-2	대	66	60	정형철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50-5 한신아파트2차 201-1202				
8	도림동 200-3	대	63	19	손춘식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35-8				
9	도림동 200-16	대	205	87	김원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장

■ 사업의 명칭 : 도림동 287-11 ~ 187-37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1	도림동 187-19	주택 (1층)	목조	55	박용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11길 8-16(도림동)	근저당권	도림2동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2동 156-4	
		대문		1식						
		보일러실		1식						
2	도림동 187-66	주택 (1층)	목조	72	조청자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26, 203동 306호(가좌동, 가좌주공아파트)				
3	도림동 200-2	주택 (1층)	목조	85						무허가
4	도림동 200-3	주택 (1층)	목조	13	황미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001 관악현대아파트 118-304				
5	도림동 200-13	주택 (1층)	목조 및 시멘트 블록조	22	정세운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33 103동 601호(방배동, 삼환나띠르빌)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장
■ 사업의 명칭 : 도림동 287-11 ~ 187-37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6	도림동 200-14	주택 (1층)	목조 및 시멘트 블록조	42	정세운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33 103동 601호(방배동, 삼환나따르빌)				
		창고		1식						
7	도림동 200-15	주택 (1층)	목조	62						무허가
		부엌		1식						
		창고		1식						
8	도림동 200-16	주택 (1층)	목조	19						무허가
		창고		1식						
		화장실		1식						

▣ 위 치 도

◈ 서초구공고 제2016-1044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4(2016.06.15)호로 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결정된, 내곡공공주택지구 내 사회복지시설부지에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의 열람공고를 시행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공공주택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용지(신원동 340-3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 명칭 : 내곡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구 분	내 용		
대지면적	1,322㎡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도로현황	북동측 12m도로, 남동측 12m도로		
용 도	노유자시설		
건축면적	749.29㎡	건폐율	56.67% (법정 : 60% 이하)
연 면 적	4,034.12㎡		
용적률산정연면적	2,465.96㎡	용적률	189.92% (법정 : 200% 이하)
층 수	지하2층/지상4층 (법정: 5층 이하 지구단위계획)		
주차시설	18대(법정 18대)		

- 층별면적개요

구 분	주요용도	층별면적	비고
지상4층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548.21㎡	
지상3층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671.24㎡	
지상2층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659.04㎡	
지상1층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587.47㎡	
지상층 소계		2,465.96㎡	
지하1층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주차장	787.94㎡	
지하2층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기계실, 발전기실	780.22㎡	
합 계		4,034.12㎡	

라. 시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초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일 : 2015.08월
- 준공예정일 : 2018.06월

바.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건축과(02-2155-6856)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번호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서초구 신원동 340-3일원	답	1,322	-	SH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건축과(02-2155-68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공고 제2016-1048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4호(2009.09.28.)로 최초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되고 서초구고시 제2015-15호(2015.01.29.)호로 실시계획인가 된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우면동 763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10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대상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763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명칭 : 남서울농협 주차장용지 및 준주거용지 내 신축공사(주차장용지)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사업개요(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대지면적	2,152.40㎡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도로현황	남측 12m, 북측 12m, 서측 12m, 동측 12m		
용 도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부속시설 : 판매시설-상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건축면적	1,871.75㎡	건폐율	86.96% (법정 : 90% 이하)
연 면 적	12,158.31㎡		
용적률산정연면적	10,727.08㎡	용적률	498.38% (법정 : 500% 이하)
층 수	지하1층, 지상7층 (법정: 8층 이하 지구단위계획)		
주차시설	178면		

구분	시설면적(㎡)	비율(%)	비고
주차장	8,541.15	70.25	
자전거주차장	306.67	2.52	
판매시설	2,265.80	18.64	
근린생활시설	830.420	6.830	
화장실	214.27	1.762	
합계	12,158.31	100	

라. 시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서울농업협동조합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95

마. 사업시행기간
- 2015. 1. 29. ~ 2016. 9.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도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번호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서초구 우면동 763	주차장	2,152.4	-	남서울농업협동조합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95(양재동)	-	-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18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받은자		점용허가(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영업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표 이종열)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일로684, 1층 (녹번동 20동)	서래섬 상류 (한강상)	직접점용 (2,385.8㎡) 간접점용 (1,124.2㎡)	도선장 개·보수를 위한 하천점용	16. 9. 1 ~ 16.12.31 (122일간)	'16.8.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18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동작대교 ~ 행주대교	선박 1척 (부선 1척)	동작대교 보수공사	2016.9.1. ~ 2016.12.31.	2016. 9.1.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319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강동구청장
   -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679~고덕동 365-3번지
   - 면 적 : <당초> 7,386㎡(영구 6,386㎡, 일시 513㎡)
     <변경> 2,060㎡(영구 1,895㎡, 일시 16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고덕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 내 역 :

당 초	변 경
-하도정비공 L=480m -배수통관(D=1000mm) L=7.2m -저수로횡단연결통로 1개소 -차집관로 L=45m -낙차공 2개소 -산책로 397m, 조경 1식	-하도정비공 L=0m (삭제) -배수통관(D=1000mm) L=0m (삭제) -저수로횡단연결통로 1개소 -차집관로 L=45m -낙차공 0개소 (삭제) -산책로 248m(축소), 조경 1식(전망 데크 포함) -목교 1개소

5. 점용기간 : 영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32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지방항공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1번지 일원
   - 면　적 : <당초> 영구 8,133㎡
     <변경> 영구 8,195.2㎡, 일시 26.6m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헬리포트 설치
   - 내　역 :

당　초	변　경
- 활주로 20m×20m - 계류장 17.5m×17.5m(2개소) - 유도로 6m×6m - 주차장 1,236㎡ - Wind Cone 1기 - 여객청사(이동식 콘테이너) 3동 - 헬기장과 자전거도로사이 울타이 설치(H:0.5×L:110m) - 경관조명등(H=0.5m) 16본 설치	- 활주로 20m×20m - 계류장 17.5m×17.5m(2개소) - 유도로 6m×6m - 주차장 1,236㎡ - Wind Cone 1기 - 여객청사(이동식 콘테이너) 3동 - 헬기장과 자전거도로사이 울타이 설치(H:0.5×L:110m) - 경관조명등(H=0.5m) 16본 설치 - 헬기장등대 1식, 풍향등 1식 - 착륙구역주변등 20등 - 전력인입관로 1식

5. 점용기간(공사기간) : <당초>2016.02.05.~2021.02.04.
   <변경>2016.02.05.~2021.02.04..(2016.09.19.~2016.12.17.)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41 **문의 : ☎120**